수협 60주년 | SUHYUP 60th ANNIVERSARY

우리 바다, 우리 수협 수협 60년사 1962 —— 2022

수협중앙회

60 Years of SUHYUP

우리 바다, 우리 수협

수협 60년사

1962 —— 2022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수협중앙회

우리 바다, 우리 수협

수협 60년사

1962 —— 2022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수협중앙회

Contents
Story Book

006 INTRO
발간사
축사
숫자로 보는 수협
사진으로 보는 수협 60년

044 제1편
시대별 수협의 발전상

046 제1장 지난 50년의 발자취
047 제1절 정착기(1960년대)
047 1. 사업주체별 사업비
049 2. 사업종류별 사업비
052 제2절 고도성장기(1970년대)
052 1. 사업주체별 사업비
054 2. 사업종류별 사업비
056 제3절 사업구조 개편기(1980년대)
056 1. 사업주체별 사업비
057 2. 사업종류별 사업비
059 제4절 격변기(1990년대)
059 1. 사업주체별 사업비
060 2. 사업종류별 사업비
062 제5절 경영혁신 착수기(2000년대)
062 1. 사업주체별 사업비
063 2. 사업종류별 사업비
065 제6절 지난 50년간 수협의 재무상태와 손익
065 1. 자산
066 2. 부채
067 3. 손익

068 제2장 최근 10년의 발전상
069 제1절 총괄
071 제2절 주요 성과(10대 대표사업)
071 1.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기반 마련
074 2. 수협은행 발족과 경영개선
077 3.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078 4.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의 확충
080 5. 조합경영 정상화 정착
082 6. 회원조합의 중앙회에 대한 출자금 대폭 증가
084 7. 온라인 및 공영홈쇼핑 진출 등 유통다변화
086 8. 무역지원센터 개소 등 무역 증대 지원 강화
088 9. 공제보험 및 상호금융사업 약진
090 10. 수협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
094 제3절 어업인 권익보호 활동
094 1. 수산제도 개선
096 2. 조세감면과 사후환급 확대
098 3. 바닷모래 채취 반대운동
101 4. 해상풍력발전 반대운동
102 5. 수협재단 활동
106 6. 그 외 권익보호 활동
112 제4절 사업규모
112 1. 사업주체별
113 2. 사업종류별
116 제5절 자산규모 및 경영성과
116 1. 자산규모
117 2. 경영성과

120 제2편
수협운동사

122 제1장 수협운동의 태동
123 제1절 재래의 수산관계 계(契)
123 1. 계(契)의 역사와 종류
125 2. 수산관계의 계(契)
133 3. 어업계(漁業契)의 조합화 현상
134 제2절 한말(韓末)의 자생적 수산 3단체
134 1. 거제한산가조어기조합(巨濟閑山加助漁基組合)
136 2. 거제한산모곽전조합(巨濟閑山毛藿田組合)
136 3. 거제한산가조어기모곽전조합(巨濟閑山加助漁基毛藿田組合)
138 제3절 일제강점기의 수산단체
138 1. 일제강점기의 수산단체 제도
140 2. 어업조합의 설립과 보급
142 3. 수산조합의 설립
146 4. 수산회의 조직과 기능
148 제4절 광복 이후의 수산단체
148 1. 광복 직후의 수산단체
149 2. 미군정시대의 수산단체
149 3. 정부수립 이후의 수산단체
150 4. 1950년대의 수산단체

152 제2장 수산단체의 정비와 수협의 탄생
153 제1절 수산단체의 정비
155 제2절 협동조합운동의 전환
157 제3절 수협의 탄생과 수협운동의 전개
157 1. 수협의 탄생
158 2. 계통조직의 완성과 수협운동의 전개
162 제4절 수협운동의 주체와 역할
162 1. 수협운동의 주체
163 2. 수협의 역할
167 3. 중앙회와 어촌계의 역할

168 제3장 수협운동의 시련
169 제1절 UR협상타결과 대응
170 제2절 IMF 금융위기의 극복
170 1. IMF로 인한 수협의 금융위기
171 2.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조합경영 정상화
173 제3절 신 한일·한중어업협정의 영향
173 1. 신 한일어업협정의 특징
174 2. 한중어업협정의 특징
174 3. 어업협정의 영향과 수협의 대응

176 제4장 한국 수협의 국제적인 활동
177 제1절 ICA와 한국의 수산업협동조합
179 제2절 수협중앙회의 ICA 활동
179 1. ICA 가입 및 초기 주요활동(1979~2008년)
180 2. ICA 수산위원회 위원장국 취임 이후 주요활동(2009년~)

186 제3편
수협경영 변천사

188 제1장 수협법 및 제도
189 제1절 수협법 제정
189 1. 제정 경과
189 2. 제정 수협법의 주요 내용
192 제2절 수협법 개정
192 1. 개정 경과
193 2. 전부 개정 내용
197 제3절 현행 수협법의 주요 내용

200 제2장 수협조직
201 제1절 중앙회
201 1. 수협 발족 당시의 중앙회 조직
202 2. 2000년의 중앙회 조직
203 3. 현재의 중앙회 조직
204 제2절 회원조합
204 1. 수협 발족 당시의 회원조합
205 2. 회원조합 수의 변동
207 3. 회원조합의 조직
210 4. 조합원 수
212 제3절 어촌계
212 1. 어촌계 분포 현황
216 2. 어촌계의 특성
219 제4절 자회사
219 1. 수협은행
223 2. 수협노량진수산
228 3. 수협유통
231 4. 수협개발
234 5. 수협사료
238 6. 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

240 제3장 시대별 수협 비전
241 제1절 중앙회
241 1. '수산의 푸른 미래 창조'(2007년)
242 2. '하나의 가치, 하나의 힘, 최고의 협동조합'(2012년)
243 3.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 (2015년)
244 4. '더 강한 수협, 더 돈 되는 수산' (2019년)
245 제2절 수협은행
245 1. 수협의 미래 비전 및 발전전략(신용사업, 2012년)
246 2. 2017 새로운 시작, 2021 미래에 대한 확신(2016년)
247 3. 2022년 현재의 미션과 비전

248 제4편
수협사업 발전사

250 제1장 교육·지원사업
251 제1절 교육·지원 사업의 의의
251 1. 협동조합 교육·지원 사업의 역사
252 2. 수협 교육·지원사업의 의의
254 제2절 지난 50년의 사업성과
254 1. 총괄 분석
255 2. 시대별 분석
264 제3절 최근 10년간의 사업실적
264 1. 총괄 분석
265 2. 사업별 실적

292 제2장 경제사업
294 제1절 판매사업
294 1. 개요
320 2. 사업추진체계

Contents
Story Book

329 3. 발전과정
347 4. 사업실적

364 제2절 구매사업
364 1. 개요
370 2. 사업추진체계
373 3. 발전과정
378 4. 사업실적

381 제3절 이용가공사업
381 1. 개요
383 2. 사업추진체계
384 3. 발전과정
385 4. 사업실적

388 제4절 가격안정화사업
388 1. 개요
389 2. 사업추진체계
390 3. 발전과정
392 4. 사업실적

394 제3장 공제사업
395 제1절 개요
395 1. 의의
395 2. 특징
396 3. 사업추진체계
396 4. 공제사업의 종류

399 제2절 발전 과정
399 1. 1930~1950년대
399 2. 1960년대
400 3. 1970년대
400 4. 1980년대
401 5. 1990년대
401 6. 2000년대
404 7. 2010년대
407 8. 2020년대

410 제3절 부문별 사업실적
410 1. 사업실적 총괄
414 2. 생명공제
416 3. 손해공제
418 4. 정책보험
421 5.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422 제4절 경영실적
422 1. 자산의 조달과 운용
424 2. 수익성
425 3. 건전성
425 4. 자본적정성
425 5. 분쟁처리

426 제4장 상호금융사업
427 제1절 개요
427 1. 의의
427 2. 특징
428 3. 사업추진체계
428 4. 사업의 종류

430 제2절 발전 과정
430 1. 태동
430 2. 첫 출발
431 3. 조직 확충
431 4. 상호금융 관리강화
432 5. 상호금융 발전방안 수립(수협발전 5개년 계획)
436 6. 비이자 부문 영역 확장
437 7. 상호금융 경영목표 및 전략 수립(수협 비전 2021 발전계획)
438 8. 마케팅 역량 강화
438 9. 예탁금 비과세 기한연장
439 10. 근저당권 전자등기 시스템 도입

440 제3절 부문별 사업실적
440 1. 수신
443 2. 여신
448 3. 비이자 부문

451 제4절 경영실적
451 1. 수익성
452 2. 생산성
453 3. 건전성
455 4.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456 5. 적립금 비율
457 6. 영업망

458 제5장 수협은행(신용사업)
459 제1절 개요
459 1. 의의
460 2. 사업추진체계
460 3. 사업의 종류

467 제2절 발전과정
467 1. 신용사업 발전과정
486 2. 사업부문별 발전과정

503 제3절 부문별 사업실적
503 1. 수신사업
507 2. 여신사업
514 3. 수산정책금융
525 4. 해양투자금융
526 5. 외환사업
530 6. 카드사업
531 7. 펀드사업
532 8. IT 서비스
535 9. 신탁사업
537 10. 채권관리
539 11. 리스크관리
542 12. 준법감시

545 제4절 경영실적
545 1. 사업규모 총괄
546 2. 수익성
547 3. 생산성
549 4. 건전성
550 5. 신용평가등급
552 6. 영업망

554 부록
556 01. 수협 CI 및 브랜드
558 02. 수협중앙회·수협은행 임원 및 집행간부
560 03. 역대 회장
564 04. 역대 임원 명단
566 05. 조합장 및 상임이사(전무) 명단
567 06. 어촌계 명단
576 07. 주요 수산 통계
582 08. 중앙회 재무제표
588 09. 수협은행 재무제표

일러두기

1 이 책은 1962년부터 2022년까지 수협의 역사를 담았습니다.
2 시간의 흐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사건의 인과성과 입체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간 제약에 벗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3 기록된 모든 일과 수치는 몇 번의 감수와 확인을 거쳐 엄격한 사실에 기초해 기술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시점의 사실과 서술 당시 해석의 적절성을 살리기 위해 이야기 형식을 도입한 부분도 있습니다.
4 직위, 직책은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는 각주나 부록에 따로 밝혀 두었습니다.
5 여러 통계 자료나 수치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했습니다. 금액의 경우에는 만 단위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RICHNESS

수산인에게 풍요로움을

수협중앙회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60 YEARS OF SUHYUP

고객에게 신뢰감을

수협중앙회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60 YEARS OF SUHYUP

VISION

일류 수산업 · 잘사는 어업인 · 신뢰받는 수협

수협중앙회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60 YEARS OF SUHYUP

대한민국 수협의 60년을 넘어 바다 너머 미래를 향한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1962년 4월 1일,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임무를 안고 대한민국 수협이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격동과 도전의 시간이었던 지난 60년간 우리 수협과 어업인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가 경제를 이끌며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6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기록하는 「대한민국 수협 60년사」를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협이 창립되던 때 우리 수산업은 국민의 삶과 국가 발전을 지탱해 주던 등불이었습니다. 어업인들이 거친 파도와 맞서가며 목숨 바쳐 건져 올린 수산물은 국민의 가난과 배고픔을 달래주었고, 해외수출로 국가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어업인들이 바다에서 건져 올린 건 바로 대한민국의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수산의 역사는 험난한 파고와 시린 바닷물을 수없이 견뎌온 어업인의 손끝에서 시작되었고,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바다의 주인인 어업인들은 시장개방과 기후변화라는 모진 풍파에도 살기 좋은 어촌을 꿈꾸며 묵묵히 우리 바다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수협의 60년은 국가와 국민에게 우리 바다와 어업인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이들의 번영을 함께 하고자 했던 동행의 역사였습니다. 수협의 역사와 함께 생명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바다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일상의 안식처가 되었고, 만선의 꿈을 가득 안고 출항하는 어업인에게는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협은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바다로 향한 쉼 없는 도전을 이어가며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수산업의 새 지평을 열어 갈 것입니다. 그 새로운 여정의 시작에 앞서 60년사를 발간함으로써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나침반으로 삼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수협은 지난 60년을 넘어 바다 너머 미래를 향한 100년의 새 역사를 어업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바다를 지키고, 어업인이 행복하며, 수산업이 이끄는 대한민국 수산의 푸른 미래도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수협의 힘찬 항해를 지켜봐 주시고 계속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임 준 택

글로벌 수산강국의 파트너,
수협 100년이 순항하는 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입니다.

수협 창립 60주년과 수협 6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협이 어업인들과 함께 걸어 온 지 60돌을 맞았습니다. 수협이 첫걸음마를 뗀 1960년대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가난으로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 어업인들은 하나로 힘을 모았습니다. 어업인들이 십시일반 출자하여 창립한 수협은 현재 세계협동조합연맹 수산위원회 의장국의 지위까지 오르며 글로벌 수산강국의 주역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협의 역사는 바로 어업인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어업인은 수협의 실질적 주인으로서 오랜 세월 우리 수산을 이끌어 온 주인공이자 우리나라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며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수협 역시 어업인들이 겪는 위기의 순간마다 맨 앞에 서서 이들의 성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험난한 파도와 싸워가며 우리 바다를 지켜 온 어업인과 그 곁을 함께 지켜주신 수협 임직원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수산분야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라는 비전 아래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업인의 주거·소득·복지를 개선하여 청년들이 돌아오는 젊은 어촌을 만들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식량 주권을 지키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수산업의 혁신과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과제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협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어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누구보다 가까이, 어디서든 빠르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수산업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진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역경을 딛고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도 수협의 노력과 헌신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발전하기 위한 교과서는 '과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협의 지난 60년간의 기록은 앞으로의 수협 미래를 위한 나침반이자 항해일지가 되어 줄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산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수협의 순항을 응원합니다. 해양수산부도 수산업과 어촌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조 승 환

어업인과 수산업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태흠입니다.

대한민국 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이끌어 온 수협의 성장사를 담은 '대한민국 수협 60년사'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업인들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수협을 이끌고 계신 임준택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협은 「수산업법」과 「수협법」 제정 이후 60여 년간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에 옮겨 어업인의 권익 증진과 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잘 사는 어촌'을 만들고자 하는 어업인의 소망은 수협의 역할과 노력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대외 개방으로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수협은 유통체계 개선과 어업인의 생산지원으로 빠르게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어업인 교육지원과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수협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실천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과 수산업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수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어촌개발과 수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어민의 이익 보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국회는 정부가 이와 같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수산업·어촌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왔습니다.

아울러 어업인들이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영토 수호 등의 공익적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산분야 '공익형직불금'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근해 자원 관리와 귀어·귀촌 지원 강화를 위해 「수산업발전 기본법」과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법」을 개정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회가 어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번에 발간된 대한민국 수협 60년사가 수협의 과거 발자취를 되새겨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지향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러한 성과가 나오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임준택 회장님과 수협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 태 흠

숫자로 보는 수협

(2021년 기준)

조합원

15만 3,678명

수협은 어업인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과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입니다.
조합원은 15만 3,678명으로 조합당 평균 1,689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수협중앙회 및 자회사

중앙회 **1개**

자회사 **6개**

수협중앙회는 산하에 노량진수산시장,
수협은행 등 6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 조합

수협 **91개**

수협은 전국적으로 총 91개가 있는데, 이 중에는
지구별수협이 70개, 업종별 수협이 19개,
수산물 가공수협이 2개가 있습니다.

수협은행 점포 및 자회사

지점 **123개**

출장소 **5개**

해외법인 **1개**

수협은행의 점포 총 128개소 중 서울지역에 58개소, 경기지역에 23개소,
부산지역에 12개소, 기타 시도에 35개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미얀마마이크로파이낸스 해외법인 1개가 있습니다.

사업비

중앙회 사업비

총 8조 8,104억 원

수협은 판매사업, 이용가공사업, 구매사업,
가격지지사업 등의 경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회 사업비는 총 8조 8,104억 원으로
지도사업비 972억 원, 경제사업비 1조 4,513억 원,
공제사업비 8,711억 원, 상호금융사업비 6조 3,908억 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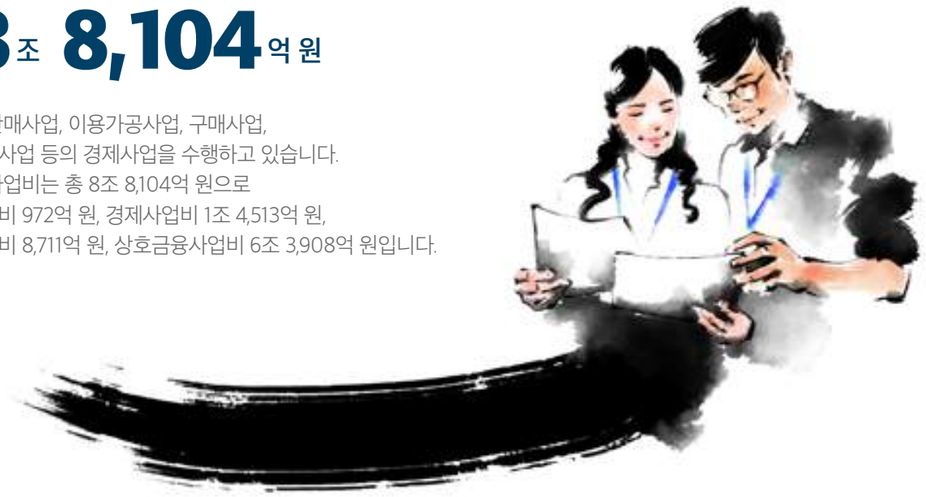

상호금융

예수금 **32조 8,972억 원**

대출금 **26조 8,842억 원**

수협은행

예수금 **38조 7,377억 원**

대출금 **38조 6,783억 원**

1962.04.
수협중앙회 창립현판식

1963.03.
제1회 정기총회

1965.08.
미국주한경제협조처 수협발전 감사장 수여식

1962 1963 1965 1966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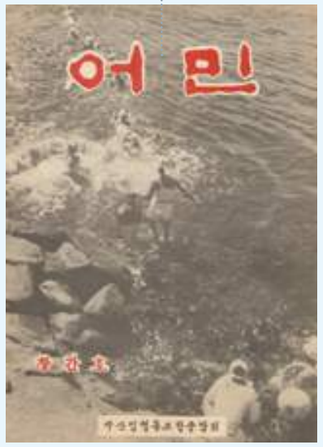

1963.12.
어민지 창간호

1966.12.
제1회 전국수협 증산 경진대회

1967.09.
제1수협호 진수식

1962

1969.02.
수산물 군납협정 체결식

1969.02.
박정희 대통령 본회초도 순시

1969

1969.05.
영동지구 재해복구어선 진수식

1969.06
100억 자체자금조성 어민궐기대회

1969

1974.07.
공제병원선 척양호 첫 취항

1977.05.
수정회 바자회

1976.04.
수협중앙회 수산물 수출업무 개시

1976

1974

1976.06.
회원조합 상호금융업무 개시

1977

1977.11.
새수협호 병원선 취항식

1977.11.
부평연수원 준공

1977

1978

1978.12.
78년도 상호금융 복금부추첨

1979.03.
ICA 가입

1984.05.
온라인 업무 개시식

1988.11.
노량진수산시장 인수궐기 대회

1979 1983 1984 1988 1989

1978

1979.01.
을류외국환업무 개시

1983.05.
청량리 시범 직매장 개장

1988.12.
수협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 실시

1989.12.
수협전자계산소 신축공사 기공식

1989

1993.10.
수협중앙회 잠실청사 준공식

1995

1997

1993

1995.05.
카드발급 발송 자동화 시스템 가동

1993

1997.07.
천안 수협연수원 개원

1999

1998.04.
(주)수협사료 설립

1999

1998

1999.03.
감천항물류센터 준공

2002.02.
노량진수산시장 인수

2005.11.
여수저유소 준공식

2008.12.
상호금융 예탁금 10조 원 달성

2010.04.
어황방송 개국식

2009.04.
어업IN수산 창간호

2002

2003

2005

2008

2009

2010

2003.03.
수협 위성TV 방송 개국

2008.01.
유류오염사고 봉사활동

2009.09.
수협재단(舊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설립

2010.05.
98금양호 수협장

2011.04.
인천가공물류센터 준공식

2012

2011

2012.04.
수협 창립 50주년 기념식

2012.11.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서울광장)

2011

2015

2014.02.
수협장학관 개관

2013.05.
어촌마을 벽화그리기 행사

2013

2014

2015

2013.12.
청와대 출입기자단 수산물 시식회(청와대)

2015.07.
중국 청도 대표처 개소식

2016

2016.02.
新 노량진수산시장 개장

2017.09.
제1회 한국여성어업인 전국대회(올림픽공원)

2018.07.
남해EEZ 바다모래 채취 반대 어업인 결의대회(통영 평림항)

2019

2016

2016.12.
수협은행 출범식

2017

2018

2019.03.
제24대 제25대 수협중앙회 회장 이취임식

2019

2020

2021.03.
APEC기후센터-수협중앙회 상호협력 협약식(부산)

2021

2020.10.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 어업인 결의문 및 서명부 전달(세종 산업통상자원부)

2021.04.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기자회견(주한일본대사관)

2022

2021.09.
수협 아라맘 어린이집 개원식

2022.06.
공적자금 상환합의서 개정 서명식

2021.12.
해상풍력 반대 해상시위(통영 욕지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창립60주년 기념식

수협 창립 60주년 기념사업

60주년 기념 소비촉진 행사

공영홈쇼핑 「魚LOVE쇼 수협 창립 60주년 특집방송」

• **기간** : 2022년 3월 30일 ~ 4월 27일(매주 수요일)

수협쇼핑 「온라인 대한민국 팔도수산물 대축제」

• **기간** : 2022년 4월 1일 ~ 4월 17일

60주년 기념 홈페이지 개설

• **개설** : 2022년 3월 28일

「수협 60년사」 발간

• **발간** : 지난 60년간 수협이 걸어왔던 발자취와 현황을 담아낸 「수협 60년사」 발간

60주년 기념 어업인 특판 예금 출시

• **기간** : 2022년 4월 1일 ~ 5월 31일

• 수협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상호금융 사업을 이용하는 어업인(조합원)에게 감사의 의미 전달 및 조합원의 권익증진 도모

60주년 기념 특별 공제상품 판매

• **상품명**

- sh 다시만난 수협 저축공제 (2022년 3월 14일 ~ 12월 31일)
- sh 식중독통원보장공제 (2022년 4월 1일 ~ 4월 17일)
- sh 행복드림어린이공제 (2022년 3월 28일 ~ 5천 건 한도)

60주년 기념 공익 캠페인 방송광고

- **송출기간** : '22. 3. 21(월) ~ 4. 20(수)
- **송출매체** :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유튜브 등 SNS채널, 옥외매체 등

60주년 기념 홍보 영상물 제작

수협 역사 콘텐츠 제작

어업in수산 창립기념호 발간

창립 60주년 기념 SNS 이벤트

- **1차 이벤트 기간** :
  2022년 3월 14일 ~ 3월 23일
- **2차 이벤트 기간** :
  2022년 3월 21일 ~ 4월 3일

60주년 기념 '우리 바다 사진 공모전' 개최

- **기간** : 2022년 1월 17일 ~ 2월 20일
- **공모주제** : 소중한 우리 바다, 아름다운 우리 어촌
- 대상1, 금상3, 은상4, 동상6, 입선 36작품

60주년 기념
우리 바다 사진 공모전 수상작

• 수협 인스타그램 : @suhyup_official
• 공식 홈페이지 : https://60th.suhyup.co.kr

더 많은 수상작들을 감상하고 싶다면?
검색창에 **'수협 60주년 사진공모전'**을 검색하세요.
인스타그램 프로필 하단 링크를 통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바다의 아름다움과 어촌의 가치를 느껴보세요.

제1편
시대별 수협의 발전상

제1장 지난 50년의 발자취
제1절 정착기(1960년대)
제2절 고도성장기(1970년대)
제3절 사업구조 개편기(1980년대)
제4절 격변기(1990년대)
제5절 경영혁신 착수기(2000년대)
제6절 지난 50년간 수협의 재무상태와 손익

제2장 최근 10년의 발전상
제1절 총괄
제2절 주요 성과(10대 대표사업)
제3절 어업인 권익보호 활동
제4절 사업규모
제5절 자산규모 및 경영성과

제1장
지난 50년의 발자취

올해로 수협은 발족 60년을 맞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발전과정을 10년 단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발족 초기인 1960년대는 정착기로 볼 수 있다. 이 기간에는 모든 수협 업무의 기초가 되는 「수협법」을 제정하고 중앙회와 회원조합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수협이 정착하는 기간이었다.

둘째, 1970년대는 고도성장기였다.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이든지 발족 초기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나 수협의 경우 발족 후 20년 차에 들어선 1970년대에 오히려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1962~1971년간 수협의 사업비 규모가 14배 증가했으나 1972~1981년간은 무려 15배가 증가했다.

셋째, 1980년대는 사업구조 개편기였다. 특히 이 기간에는 공제 및 상호금융사업의 실적이 경제사업을 추월하여 수협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등장하는 등 수협의 사업구조가 오늘날과 비슷하게 개편된 기간이었다.

넷째, 1990년대는 시련기였다. 1980~199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금융자유화와 개방화 등으로 우리나라는 1997년 11월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수협도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급기야 2001년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수밖에 없었다.

다섯째, 2000년대는 경영혁신 착수기였다. 즉 2000년대 초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만큼 악화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2007년 수협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경영혁신을 위해 새로운 노력을 시작한 기간이었다.

여섯째, 2010년대는 재도약기로서 수협의 사업구조개편을 완료하고 수협은행이 독립법인으로 독립함으로써 공적자금을 적극적으로 상환하는 동시에 수협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노력을 시작하였다.

1962
2022

제1절 정착기(1960년대)

1. 사업주체별 사업비

1962~1971년의 정착기는 수협이 그 면모를 갖추고 출발하는, 발전 초기로서 사업 규모가 크지는 않았으나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즉 1962년에 수협의 총 사업비가 67억 4,800만 원에 불과했으나 1965년에 172억 1,300만 원, 그리고 1968년에는 456억 7,800만 원, 1971년에는 936억 5,100만 원으로 급증하였다.

그리하여 1962~1971년의 10년간을 기준으로 하면 수협의 총사업비는 무려 13.9배가 증가하였는데, 동 기간 중앙회 사업비는 30.4배, 회원조합 사업비는 8.0배 증가하였다.

〈표 1-1-1〉 연도별 수협사업비(1962~1971)

(단위 : 백만 원, 배)

연도	합계	중앙회[1]	회원조합
1962	6,748	2,281	4,467
1965	17,213	6,366	10,847
1968	45,678	26,658	19,020
1971	93,651	54,097	39,554
1971/1962	13.9	30.4	8.0

1) 중앙회+수협은행 임. 이하 같음.

사업주체별 수협사업비 증가 추이(1962~1971)

(단위 : 백만 원,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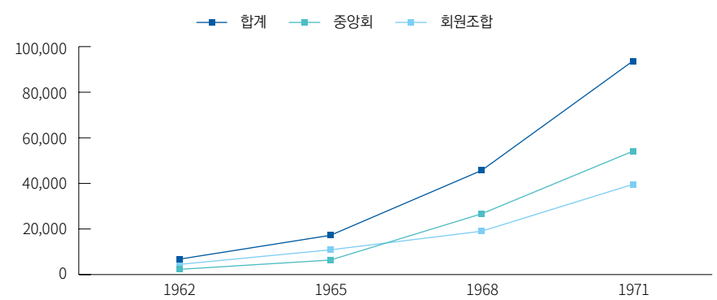

이렇게 수협의 사업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었고, 1965년 한일협정 타결을 계기로 많은 대일 청구권자금이 수산분야로 투입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수협이 많은 사업의 수혜자가 되거나 자금 지원창구가 되었다.

특히 대일 청구권자금의 경우 전체 유·무상자금 합계 5억 달러의 5.4%인 2,717만 6,000달러를 수산분야에 투입할 만큼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고, 수산분야의 많은 사업이 수협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표 1-1-2〉 대일 청구권자금의 수산사업별 사용실적(무상자금)

(단위 : 천 달러, %)

사업명	사용금액	구성비
합계	27,176	100.0
어업기반시설	1,856	6.8
어업전진기지 시설	325	1.2
수산물 처리가공시설	1,392	5.1
수산시험 및 검사기기 도입	565	2.1
수산연구기술훈련사업	115	0.4
시험·실습선 도입	4,040	14.9
어업지도선 도입 및 운영	2,066	7.6
증식사업	1,322	4.9
어선도입 및 건조	11,915	43.8
동력개량사업	1,820	6.7
장비개량사업	1,760	6.5

우선 어업전진기지 시설사업 32만 5,000달러는 경남과 충남의 2개 어협, 전남의 4개 어협, 제주의 1개 어협 등 9개 어협에 할당되었는데, 시설의 내용은 냉동공장 1개소와 종합어시장 8개소 건설이었다. 이렇게 대일 청구권자금은 정착기 수협의 위판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일어업협력 차관으로 도입된 어선과 냉동차

〈표 1-1-3〉 대일 청구권자금 중 수협(어업전진기지) 시설자금 사용 내역

(단위 : 천 달러)

종합어시장 시설	냉동공장
욕지도(24), 흑산도(37), 나로도(37),거문도(56), 청산도(25), 장항(30), 보령(30), 성산포(56)	남해군(30)

( ) 내는 시설비

아울러 수산물 처리가공시설사업비 역시 수산물의 저장 및 유통원활화를 위해 주로 수협에 투자되었는데, 수협중앙회 경기도지부를 비롯한 12개소에 59만 1,000달러를 냉동기, 발전기, 수액기(受液器), 응축기(凝縮器) 등 기자재 도입을 지원하였다.

이런 점에서 대일 청구권자금 도입은 수협의 초기(정착기)에, 특히 유통사업이 빠르게 발전하는데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기간 수협사업비에 있어 1960년대 중반 이후 사업비가 급증했고, 사업주체별로는 1968년부터 중앙회의 사업비가 회원조합의 사업비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 증가율도 훨씬 높아졌다.

즉, 1960년대 전반기에는 중앙회나 회원조합 모두 내부 조직체계 정비 등으로 각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이후 중앙회 사업비가 더 크게 증가한 것은 중앙회가 회원조합에 비해 조직이나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하므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사업종류별 사업비

1962~1971년간 사업종류별 수협사업비를 보면, <표 1-1-4>와 같다. 이 기간 수협의 사업 중에는 경제사업비가 가장 많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회원조합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1962년 인천공판장

1963년 부산 자갈치 시장

즉 1971년 회원조합 총사업비 395억 5,400만 원 중 경제사업비가 전체의 79.4%인 314억 1,600만 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제사업비 중에는 판매사업비가 297억 8,900만 원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62년 15개소에 불과하던 산지위판장이 1971년에 47개로 증가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반면 중앙회 경우 1968년 이후 공제사업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경제사업, 지도사업의 순이었고, 수협은행사업 규모는 1971년까지만 해도 중앙회의 공제사업 정도의 규모였다. 공제사업 경우 1970년대 중반까지 회원조합에서는 취급하지 않았는데, 수협 발족 초기(정착기)에 중앙회에서는 대한수산중앙회로부터 어선공제와 선원공제를 승계받았고, 이후 어선만기공제, 시설공제, 어구공제를 실시하는 등 공제사업 기반을 확충해 나갔다.

한편 1962~1971년간 사업별 증가폭을 보면, 수협은행사업이 가장 컸고(1,115.3배), 그 다음이 공제사업 29.1배, 상호금융 16.4배 등의 순이었으며, 교육지원사업은 사업비가 가장 적었을 뿐만 아니라 증가폭도 가장 낮았다. 이러한 사실은 수협 발족 초기 수협은행의 사업 규모가 너무 작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동안 교육지원사업에 큰 관심을 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표 1-1-4〉 사업종류별 수협사업비(1962~1971)

(단위 : 백만 원, 배)

구분		합계	교육지원	경제	공제	조합신용	수협은행	차관
1962	합계	6,748	73	5,407	766	481	21	-
	중앙회	2,281	5	1,008	766	481	21	-
	회원조합	4,467	68	4,399	-	-	-	-
1965	합계	17,213	204	12,996	1,225	1,203	1,585	-
	중앙회	6,366	9	3,547	1,225	-	1,585	-
	회원조합	10,847	195	9,449	-	1,203		-
1968	합계	45,678	452	24,854	10,967	3,127	5,468	810
	중앙회	26,658	91	9,322	10,967	-	5,468	810
	회원조합	19,020	361	15,532	-	3,127	-	-
1971	합계	93,651	489	40,151	22,264	7,866	20,608	2,813
	중앙회	54,097	217	8,735	22,264	-	20,608	2,813
	회원조합	39,554	272	31,416	-	7,866	-	-
1971/1962	합계	13.9	6.7	7.4	29.1	16.4	1,115.3	-
	중앙회	23.7	43.4	8.7	-	-	-	-
	회원조합	8.9	4.0	7.1	-	-	-	-

사업종류별 수협사업비 증가 추이(1962~1971)

(단위 : 백만 원,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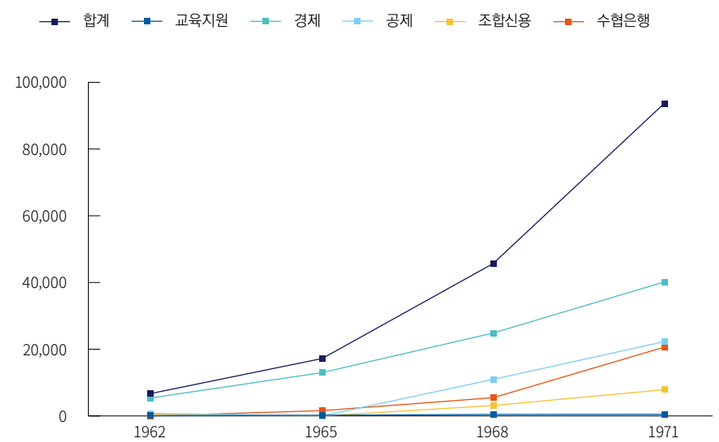

주) 차관사업은 수협은행에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이하 같음.

1960년대 정착기 회원조합 경제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판매(위판)사업

제2절 고도성장기(1970년대)

1. 사업주체별 사업비

1972~1981년의 고도성장기에서는 수협사업이 특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 왔는데, 이 기간 사업비 증가 속도는 1962~1971년의 정착기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제1기의 경우 10년간 사업비가 14배가 증가했으나 제2기에서는 15배가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회, 회원조합 모두 마찬가지였고, 양자 간 비슷한 폭으로 증가하여 정착기의 상황과는 다소 달랐다. 즉 정착기에서는 중앙회의 사업비 증가 속도가 회원조합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고도성장기에 들어서는 회원조합의 사업비가 빠르게 증가했으나 중앙회의 증가 속도가 약간 높았다.

〈표 1-1-5〉 연도별 수협사업비(1972~1981)

(단위 : 백만 원, 배)

연도	합계	중앙회	회원조합
1972	113,038	61,384	51,654
1975	276,393	140,212	136,181
1978	774,547	394,545	380,002
1981	1,693,217	964,085	729,132
1981/1972	15.0	15.7	14.1

사업주체별 수협사업비 증가 추이(1972~1981)

(단위 : 10억 원,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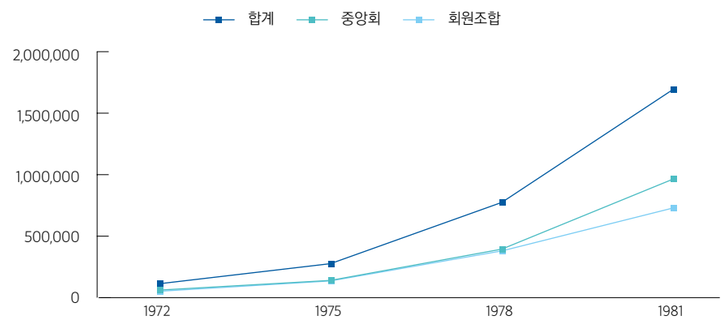

이러한 수협의 사업 규모 증가는 이 기간 전 산업분야가 빠른 속도로 발전해 온 것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수산분야의 경우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데 주력해 왔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수협의 역할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다.

이 기간 중 특히 1978~1981년간 수협의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는데, 어업협력자금(해외차관) 중 연근해어업 부문에 투입된 금액의 2/3가 1972년 이후에 투자되었고, '연근해어업진흥계획'자금 2,398억 원이 1977~1981년간 투자되었는데, 이들 자금의 많은 부분이 수협을 통해 지원되었기 때문이다.

〈표 1-1-6〉 어업협력자금 중 연근해어업 부문 사용실적

(단위 : 천 달러)

연 도	차관액	사업내용
합계	30,000	
1차년도 (1967~1969)	6,284	어선 26척, 가공시설 23개소, 양식시설 1개소
2차년도 (1970~1971)	4,234	어선 609척, 가공시설 13개소, 냉장고와 쇼케이스 등 681대
3차년도 (1972~1973)	1,531	어선 72척, 가공시설 2개소
4차년도 (1974~1975)	3,046	가공공장 9개소
5차년도 (1976)	1,145	어로장비 12대, 가공공장 1개소
6차년도 (1977)	8,959	어선 164척, 어로장비 124대
7차년도 (1978)	1,799	어선 6척
8차년도 (1979)	22,369	어선 24척
9차년도 (1980)	633	가공공장 1개소

〈표 1-1-7〉 연근해어업 진흥계획의 연도별,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합계	1977	1978	1979	1980	1981
합계	239,756	23,293	35,235	65,197	59,243	56,788
증식 및 자원조성	19,597	1,091	2,341	4,434	5,337	6,394
어선건조	81,372	10,909	15,253	14,020	16,800	24,390
장비개량	13,409	533	1,851	3,131	3,861	4,033
어항건설	69,792	6,180	9,384	21,280	19,363	13,765
유통구조개선	35,835	4,256	4,732	10,578	8,491	7,788
선원공제	773	-	60	238	238	237
생산기술 지도보급	1,155	-	-	1,155	-	-
어업무선국	3,716	45	99	3,176	205	191
지도선 건조 및 대체	11,016	-	1,206	6,024	3,786	
어촌부업	2,911	279	309	1,161	1,162	

특히 연근해어업 진흥계획에서 장비개량, 유통구조개선, 선원공제, 어업무선국, 어촌부업 등 사업은 수협의 사업과 매우 관련이 깊은데 이들 분야에 투입되는 많은 자금이 수협이 사업대상이 되거나 수협을 통해 자금이 지원되었다.

이렇듯 수협의 고도성장기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고도성장기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수산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도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기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부가 수산부문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수협의 사업 규모는 커지게 되었다.

2. 사업종류별 사업비

고도성장기(1972~1981)의 사업종류별 사업비를 보면 <표 1-1-8>과 같다. 정착기와 마찬가지로 경제사업의 규모가 가장 컸고, 후반기에 가서는 공제사업과 수협은행의 규모가 비슷하였으며, 그다음 상호금융과 교육지원사업의 순이었다. 경제사업은 회원조합이, 공제사업은 중앙회가 사업비가 훨씬 많았고, 상호금융사업은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비슷하였다.

〈표 1-1-8〉 사업종류별 수협사업비(1972~1981)

(단위 : 백만 원, 배)

구분		합계	교육지원	경제	공제	상호금융	조합[1] 신용	수협은행	차관
1972	합계	113,038	455	49,555	25,583	-	11,149	22,643	3,653
	중앙회	61,384	201	9,304	25,583	-	-	22,643	3,653
	회원조합	51,654	254	40,251	-	-	11,149	-	-
1975	합계	276,393	883	148,585	54,390	5,009	19,479	39,572	8,475
	중앙회	140,212	565	34,931	54,390	2,279	-	39,572	8,475
	회원조합	136,181	318	113,654	-	2,730	19,479	-	-
1978	합계	731,469	4,199	358,509	167,824	25,319	57,587	104,597	13,434
	중앙회	351,467	1,971	93,740	124,746	12,979	-	104,597	13,434
	회원조합	380,002	2,228	264,769	43,078	12,340	57,587	-	-
1981	합계	1,667,674	9,922	761,461	339,986	61,239	143,274	336,440 (104,280)	15,352
	중앙회	938,542	4,264	233,545	314,443	34,498	-	336,440 (104,280)	15,352
	회원조합	729,132	5,658	527,916	25,543	26,741	143,274	-	-
1981/1972	합계	14.8	21.8	15.4	13.3		12.9	14.9	4.2
	중앙회	15.3	21.2	25.1	12.3		-	14.9	4.2
	회원조합	14.1	22.3	13.1	-		12.9	-	-

1) 2000년부터 정책자금을 의미함.
( ) 내는 외환업무 실적임.

사업종류별 수협사업비 증가 추이(1972~1981)

(단위 : 백만 원,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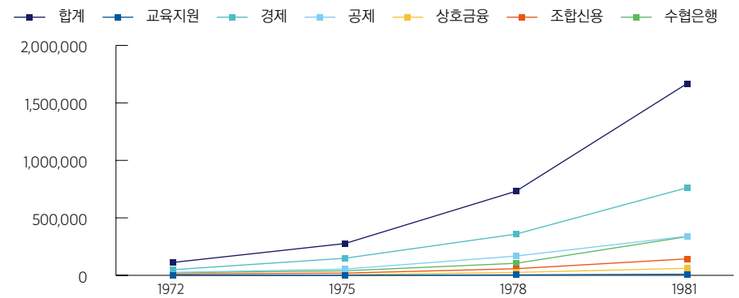

이 기간 수협의 경제사업은 여전히 판매(위판)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1972~1981년간 위판장 수가 54개에서 182개로 증가했고, 1981년 위판금액은 역대 최대인 19억 7,600만 원을 기록했다. 또한 이 기간에는 산지판매뿐만 아니라 소비지 판매도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되었는데, 1978년 서울공판장 개장을 필두로 1980년에는 광주, 진주, 춘천, 대전, 청주공판장까지 개장하였다. 이 밖에 1972년부터는 모든 유종에 대해 면세 유류를 공급하게 됨으로써 구매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한편 이 기간 사업종류별 사업비 증가 속도는 정착기와는 달리 교육지원사업비가 가장 컸고(21.8배)[1], 그 다음 경제사업비(15.4배)였으며, 공제사업과 수협은행은 그 증가 속도가 비슷하였다. 특히 1971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제창한 새마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 수협에서도 1972년부터 이를 도입하였고, 1973년부터 어촌새마을사업은 수협 교육·지원사업의 핵심사업이 되었다.

당시 어촌새마을사업은 소득증대, 환경개선, 생산기반, 정신계발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었는데 사업비 집행 면에서 보면 소득증대가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그다음 정신계발, 환경개선, 생산기반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으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1970년대 고도성장기 교육·지원부문 핵심사업이었던 어촌새마을사업

해조류 건조 : 소득증대사업

마을회관 건설 : 환경개선사업

1 1960년대의 정착기에서는 지도사업의 증가 속도가 가장 낮았다.

제3절 사업구조 개편기(1980년대)

1. 사업주체별 사업비

사업구조 개편기(1982~1991) 간 사업비는 3.5배 증가하여 이전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비의 절대금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사업주체별로는 중앙회가 전 기간에 걸쳐 중앙회가 회원조합보다 많았고, 동 기간 증가율은 회원조합이 다소 높았다.

〈표 1-1-9〉 연도별 수협사업비(1982~1991)

(단위 : 10억 원, 배)

연도	합계	중앙회	회원조합
1982	2,001	1,149	852
1985	2,867	1,744	1,123
1988	4,188	2,279	1,909
1991	7,057	3,869	3,188
1991/1982	3.5	3.4	3.7

사업주체별 수협사업비 증가 추이(1982~1991)

(단위 : 10억 원,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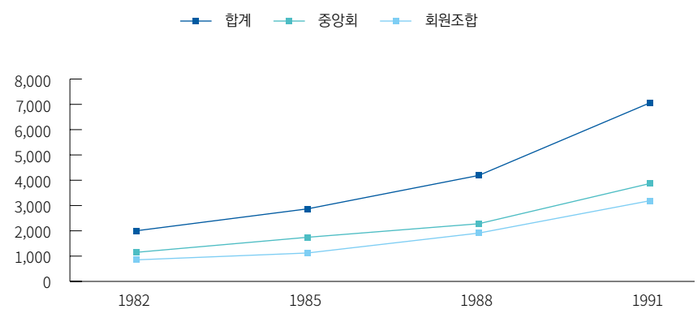

이 기간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수산분야도 큰 이슈가 없이 1970년대의 호경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국내 생산을 통해 내수를 충당하고 수출을 통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대외여건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 결과 1982~1991년간 수산물 생산이 260만 톤에서 291만 톤으로 증가했고[1], 수출액도 동 기간 9억 4,700만 달러에서 15억 9,1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다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증산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의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고,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수협의 사업도 정부의 정책보다는 어업경영의 전반적인 호전에 따라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2. 사업종류별 사업비

이 기간의 사업종류별 사업비를 보면 <표 1-1-10>과 같다. 즉 1991년 이후 공제사업비가 경제사업비를 초과하기 시작했고, 경제사업 다음으로 상호금융, 수협은행의 순서를 보임으로써 제2기에 비해 구조적으로 큰 변화를 보였다.

〈표 1-1-10〉 사업종류별 수협사업비(1982~1991)

(단위 : 10억 원, 배)

구분		합계	교육지원	경제	공제	상호금융	조합신용	수협은행	차관
1982	합계	2,001	11	851	461	80	187	397(103)	14
	중앙회	1,149	5	266	422	45	-	397(103)	14
	회원조합	852	6	585	39	35	187	-	-
1985	합계	2,867	12	1,039	726	141	292	649(134)	8
	중앙회	1,744	5	350	656	76	-	649(134)	8
	회원조합	1,123	7	689	70	65	292	-	-
1988	합계	4,188	14	1,280	1,230	248	481	933(134)	2
	중앙회	2,279	7	317	976	44	-	933(134)	2
	회원조합	1,909	7	963	254	204	481	-	-
1991	합계	7,057	21	1,827	2,073	967	733	1,436(167)	-
	중앙회	3,869	11	409	1,899	114	-	1,436(167)	-
	회원조합	3,188	10	1,418	174	853	733	-	-
1991/1982	합계	3.5	1.9	2.1	4.5	12.1	3.9	3.6	-
	중앙회	3.4	2.2	1.5	4.5	2.5	-	3.6	-
	회원조합	3.7	1.7	2.4	4.5	24.3	3.9	-	-

1 1989년에 332만 톤까지 증가했다가 1990~1991 두 해 동안 다소 감소하였다.

사업주체별 수협사업비 증가 추이(1982~1991)

(단위 : 10억 원,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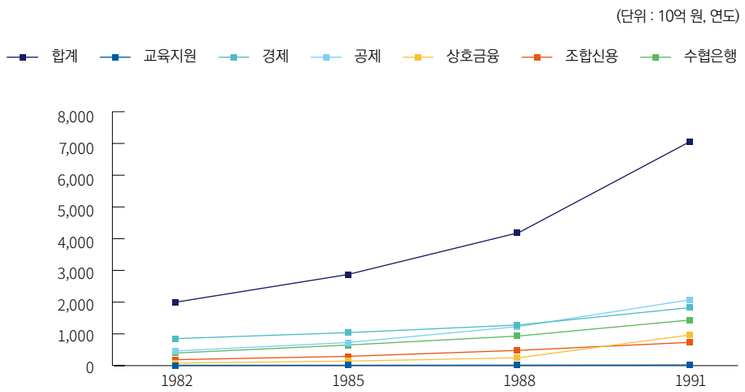

한편 사업비 증가율을 보면, 1982~1991년간 상호금융사업비가 6.4배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컸고, 그다음이 공제사업비로서 4.5배 증가했다. 반면 수협은행은 3.6배 증가하여 전체사업비 증가율과 같았고, 경제사업비는 동 기간 2.1배, 지도사업비는 1.9배 증가하여 평균증가율에 미달하였다.

특히 공제사업은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수협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1991년에는 수협 전체사업비의 29.4%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공제사업의 약진은 공제담당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생명공제상품 9종을 개발, 출시하고 1983년부터 공제모집원제도를 운영한 데 힘입은 바 크다.

또한 1991년에는 상호금융사업비도 1조 7,000억 원으로서 경제사업비에는 다소 못 미치나 수협은행의 사업비를 넘어섰다.

이렇듯 이 기간에는 공제와 상호금융사업이 수협의 새로운 주력사업으로 등장하는 동시에 중요한 소득원으로 입지를 구축하는 등 수협사업의 구조가 크게 개편된 기간이었다.

(좌측) 1980년대 상호금융 엽업점 창구
(우측) 1983년 6월 9일 공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공제심사위원회

제4절 격변기(1990년대)

1. 사업주체별 사업비

시련기(1992~2001) 동안 수협의 총 사업비는 2.9배가 증가하여 1~3기에 비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기간 중앙회가 3.0배, 회원조합이 2.9배 증가하여 중앙회의 증가율이 회원조합의 증가율보다 높았으나 이것은 1992년 중앙회의 총 사업비가 전년 대비 1,556억 원이 감소한 반면, 회원조합은 842억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92년부터는 회원조합의 사업비가 중앙회를 초과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현상은 이후로도 계속되었는데 2001년 경우 회원조합의 사업비가 중앙회의 1.5배에 달하게 되었다.

〈표 1-1-11〉 연도별 수협사업비(1992~2001)

(단위 : 10억 원, 배)

연도	합계	중앙회	회원조합
1992	6,319	2,467	3,852
1995	10,179	4,172	6,007
1998	15,176	6,256	8,920
2001	18,561	7,427	11,134
2001/1992	2.9	3	1.4

사업주체별 수협사업비 증가 추이(1992~2001)

(단위 : 10억 원,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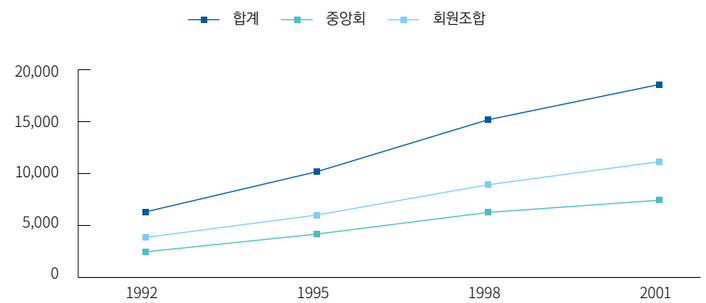

1990년대 수협의 사업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수협도 많은 부실채권이 발생하였고,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신 한일어업협정 및 한중어업협정의 타결로 인해 생산어장이 대폭 위축되어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2. 사업종류별 사업비

이 기간 수협의 사업종류별 총 사업비는 <표 1-1-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1990년대(시련기)에 들어서면서 경제사업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다시 상호금융비가 가장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교육지원사업비는 해가 갈수록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2001년에는 중앙회가 회원조합의 16배 정도 많았다. 반면 공제사업비는 회원조합이 중앙회를 1990년대 중반기부터 초과하기 시작하였고, 경제사업비는 회원조합이 중앙회보다 3~4배 정도 많았으며, 상호금융사업도 회원조합이 5~7배 정도 많았다.

〈표 1-1-12〉 사업종류별 수협사업비(1992~2001)

(단위 : 10억 원, 배)

구분		합계	교육지원	경제	공제	상호금융	조합신용	수협은행
1992	합계	6,319	55	2,076	48	1,707	769	1,664(211)
	중앙회	2,467	43	477	28	255	-	1,664(211)
	회원조합	3,852	12	1,599	20	1,452	769	-
1995	합계	10,179	91	2,705	112	3,116	1,038	3,117(915)
	중앙회	4,172	73	595	28	359	-	3,117(915)
	회원조합	6,007	18	2,110	84	2,757	1,038	-
1998	합계	15,176	176	3,126	227	5,600	1,444	4,603(997)
	중앙회	6,256	158	716	48	731	-	4,603(997)
	회원조합	8,920	18	2,410	179	4,869	1,444	-
2001	합계	18,561	288	3,912	454	7,968	1,591	4,348
	중앙회	7,427	271	1,014	70	1,724	-	4,348
	회원조합	11,134	17	2,898	384	6,244	1,591	-
2001/1992	합계	2.9	5.2	1.9	9.5	4.7	2.1	2.6
	중앙회	3	6.3	2.1	2.5	6.8	-	2.6
	회원조합	2.9	1.4	1.8	19.2	4.3	2.1	-

( ) 내는 외환사업 취급고임.
공제 : '92년부터 기준 변경(계약고→공제료)

사업종류별 수협사업비 증가 추이(1992~2001)

(단위 : 10억 원,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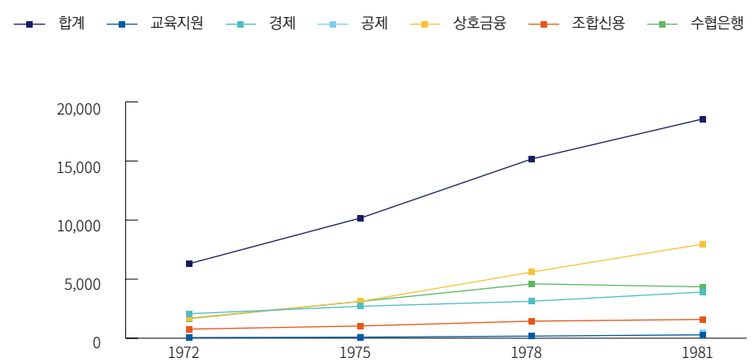

이 기간 사업비 증가폭은 공제사업비가 9.5배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교육지원사업비, 상호금융, 수협은행, 경제사업순이었다.

이렇게 경제사업의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이유는 산지시장에서 1997년 9월부터 전면 시행한 자유판매제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즉 자유판매제 시행 이전에는 어업인들이 생산한 수산물을 의무적으로 산지 위판장에 상장, 판매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의무상장제가 폐지됨에 따라 수협의 판매사업은 대폭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가 경제사업의 낮은 증가율로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1990년대 시련기의 교육지원사업 중에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조합경영 정상화 지원과 신 한일, 한중어업협정 타결로 인한 피해대책 마련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금융위기로 인해 부실해진 조합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컨설팅을 시행하였다.

어업협정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수협이 직접 관여할 여지는 크지 않았으나 중앙회에서는 회원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제5절 경영혁신 착수기(2000년대)

1. 사업주체별 사업비

이 기간의 연도별 사업비를 보면, 2.2배가 증가하여 과거에 비해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업비의 절대 금액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업비 증가율은 중앙회가 회원조합보다 좀 컸고, 절대 금액 면에서 중앙회가 처음으로 더 많아졌다. 즉 2001년까지만 해도 회원조합의 사업비가 많았으나 2002년에 들어서면서 중앙회의 사업비가 많아졌고, 이러한 현상은 이후 계속되었다.

〈표 1-1-13〉 연도별 수협사업비(2002~2011)

(단위 : 10억 원, 배)

연도	합계	중앙회	회원조합
2002	16,969	9,173	7,796
2005	22,232	12,336	9,896
2008	29,050	16,114	12,936
2011	36,735	20,475	16,260
2011/2002	2.2	2.2	2.1

사업주체별 수협사업비 증가 추이(2002~2011)

(단위 : 10억 원,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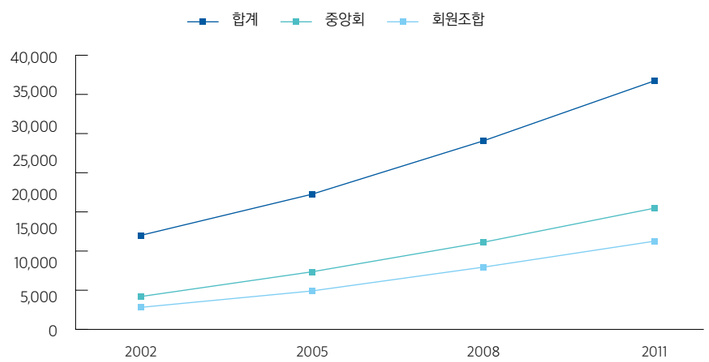

2. 사업종류별 사업비

이 기간의 사업종류별 총 사업비를 보면, 2007년까지는 상호금융, 수협은행, 경제사업의 순으로 많았으나 2008년 이후 상호금융사업과 수협은행의 사업규모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 두 사업이 수협의 2대 주축사업이 되고 있다.

〈표 1-1-14〉 사업종류별 수협사업비(2002~2011)

(단위 : 10억 원, 배)

구분		합계	교육지원	경제	공제	상호금융	수협은행
2002	합계	16,969	341	3,780	302	6,885	5,661
	중앙회	9,173	321	964	222	2,005	5,661
	회원조합	7,796	20	2,816	80	4,880	-
2005	합계	22,232	176	5,042	235	9,052	7,727
	중앙회	12,336	158	1,699	110	2,642	7,727
	회원조합	9,896	18	3,343	125	6,410	-
2008	합계	29,050	99	5,162	382	11,849	11,558
	중앙회	16,114	77	1,332	203	2,944	11,558
	회원조합	12,936	22	3,830	179	8,905	-
2011	합계	36,735	181	6,502	857	14,464	14,731
	중앙회	20,475	154	1,435	333	3,822	14,731
	회원조합	16,260	27	5,067	524	10,642	-
2011/2002	합계	2.2	0.5	1.7	2.8	2.1	2.6
	중앙회	2.2	0.5	1.5	1.5	1.9	2.6
	회원조합	2.1	1.4	1.8	6.6	2.2	-

공제 : '04년부터 정책보험사업 시행 및 해당실적 제외

사업종류별 수협사업비 증가 추이(2002~2011)

(단위 : 10억 원,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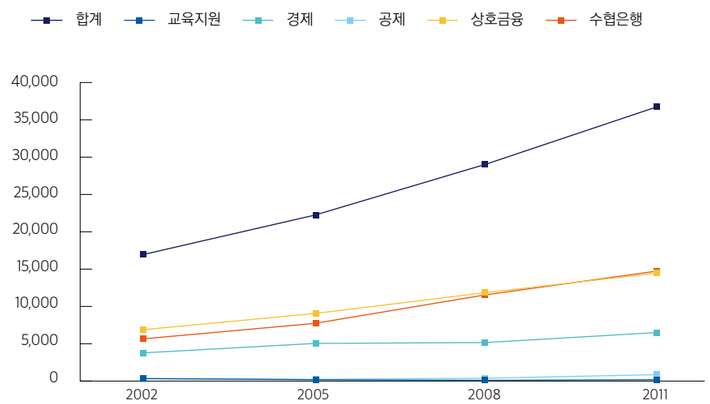

2000년대 수협은행과 함께 2대 주축사업이었던 상호금융사업 창구

이렇게 2000년대 경영혁신 착수기에 수협은행이 크게 약진한 것은 2001~2006년에 걸쳐 5차례의 특별운동[1]을 추진한 결과이다. 즉, 2001~2002년의 두 차례에 걸친 운동으로 인해 당기순이익 550억, BIS비율 10.6% 달성 등 큰 성과를 거두었고, 이후에 펼쳐진 몇 차례의 운동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이어 갔다.

한편, 동 기간의 사업비 증가폭은 공제사업이 가장 컸으나 이는 2002년의 사업실적이 3,020억 원으로서 2001년의 4,540억 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공제사업 다음으로 수협은행, 상호금융, 경제사업의 순으로 높은 증가폭을 보였는데, 교육지원사업비는 오히려 감소함으로써 다른 사업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즉, 2000년대 교육자원사업은 대망의 2000년대를 맞이하여 'New Start' 운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어촌지도 중심에서 회원조합 지도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나 사업 확대를 위한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타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양상을 보였다.

2003년 1월 수협은행 DASH3M선포식

2007~2008년 BLUE I 0708 운동

1 2001년의 New Start 180운동, 2002년의 Jump 2&2운동, 2003년의 DASH-3M운동 선포식, 2004년의 NICE 2004운동, 2005~2006년의 OK-ACE운동이 그것이다.

제6절 지난 50년간 수협의 재무상태와 손익

1. 자산

수협 발족 이후 50년간 자산의 연별 변동은 <표 1-1-1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수협의 자산은 발족 당시 18.35억 원에 불과했으나 50년이 지난 2011년에는 47조 708억 원으로서 무려 2만 5,652배로 증가했다. 이를 10년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각각 29.2배, 11.2배, 5.5배, 3.8배, 2.0배가 증가하여 해가 갈수록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산의 절대 금액이 크게 증가한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편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 자산의 증가율은 중앙회가 다소 높은 현상을 보인다. 반면 절대 금액 경우 196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 말까지는 계속 중앙회가 회원조합보다 많았으나 1990~1997년간은 회원조합이 많았고, 그 이후는 다시 중앙회가 많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표 1-1-15〉 수협의 연도별 자산액(1962~2011)

(단위 : 억 원, 배)

구분	연도	합계	중앙회	회원조합
1960년대	1962	18.35	7.05	11.3
	1971	536	337	199
	1971/1962	29.2	47.8	17.6
1970년대	1972	627	400	227
	1981	7,000	3,811	3,189
	1981/1972	11.2	9.5	14.0
1980년대	1982	8,757	4,756	4,001
	1991	47,803	22,911	24,892
	1991/1982	5.5	4.8	6.2
1990년대	1992	59,715	28,451	31,264
	2001	229,281	128,560	100,721
	2001/1992	3.8	4.5	3.2
2000년대	2002	235,539	136,914	98,445
	2011	470,708	293,315	177,393
	2011/2001	2.0	2.1	1.8

2. 부채

지난 50년간 수협의 연도별 부채액은 <표 1-1-16>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연도별로 자산액보다 약간 적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부채의 증가율도 자산과 비슷하게 매년 그 증가율이 감소하였는데, 이 역시 부채금액의 증가에 다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 부채액은 전체적으로 중앙회가 약간 많은 수준인데, 1980년대에 들어서는 회원조합의 부채가 중앙회보다 많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앙회의 부채가 더 많아졌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그 격차가 다소 커지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지난 50년간 수협의 부채는 자산을 크게 초과하지 않은 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본금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표 1-1-16〉 수협의 연도별 부채액(1962~2011)

(단위 : 억 원, 배)

구분	연도	합계	중앙회	회원조합
1960년대	1962	15.76	6.96	8.8
	1971	498	321	177
	1971/1962	31.6	46.1	20.1
1970년대	1972	587	382	205
	1981	6,642	3,730	2,912
	1981/1972	11.3	9.8	14.2
1980년대	1982	8,292	4,641	3,651
	1991	46,057	22,620	23,437
	1991/1982	5.6	4.9	6.4
1990년대	1992	57,851	28,141	29,710
	2001	229,747	126,207	103,540
	2001/1992	4.0	4.5	3.5
2000년대	2002	234,886	133,688	101,198
	2011	454,532	281,541	172,991
	2011/2001	1.9	2.1	1.7

수협의 부채증가 추이(1962~2011)

(단위 : 억 원,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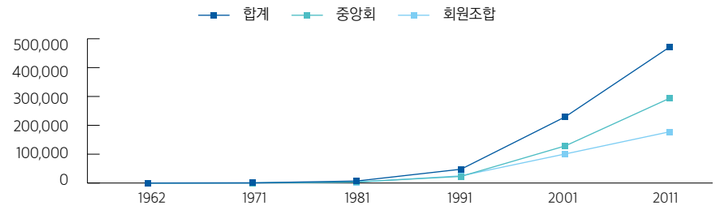

3. 손익

지난 50년간 수협의 손익상황을 연도별로 보면, <표 1-1-17>과 같다. 즉, 발족 초기 이후 1980년대 초까지는 손익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다. 그러나 1991년에 3,5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가 1992~1994년간은 86~167억 원의 수익을 보이는, 평범한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1995~2001년까지 큰 적자를 보였고, 급기야 2001년에는 적자 규모가 2,289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1]. 수협의 이러한 대규모 적자 상황은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후 2002년부터 매년 600~2,000억 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하였다.

〈표 1-1-17〉 수협의 연도별 손익(1962~2011)

(단위 : 억 원)

연도	합계	중앙회	회원조합
1962	0.45	0.02	0.43
1971	-1.6	-2.6	1
1981	37.2	8.2	29
1991	3,506	11	3,495
2001	-2,289	141	-2,430
2011	1,979	955	1,024

수협의 손익증감 추이(1962~2011)

(단위 : 억 원,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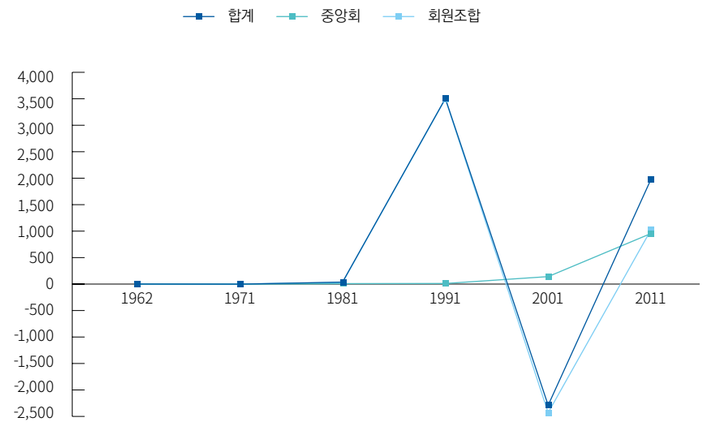

1 표에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최대 적자는 2000년의 8,126억 원이었고, 그다음이 1998년의 3,772억 원, 1999년의 2,894억 원이었다.

제2장
최근 10년의 발전상

1962
2022

제1절 총괄

최근 10년간 수협의 발전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산물 수입 개방, 국제금융위기, 어업협정 체결이라는 악재를 극복하여 수익기반을 공고히 하였고, 어업인들의 복지향상과 권익 증진에 더욱 매진하면서 수협의 대외위상을 한층 높여 나간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수익기반 측면에서 보면, 상호금융이나 공제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발굴, 확대 발전시켜 나갔고,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수협은행을 독립법인화 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하여 수협은행과 상호금융사업은 수협의 양대 핵심사업이 되었다.

수협발전의 이면에는 판매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그동안 수산물판매는 산지유통에 주력해 왔으나,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를 통해 명실공히 수도권 수산물 유통의 중심지로서 그 위치를 공고히 하는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다각화하였다. 또한, 수협쇼핑 등을 통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본격 구축하기 시작한 것도 큰 성과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0년 지도경제사업 부문에서도 당기순이익 300억 원을 돌파하였고, 2021년에는 실질적으로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다. 외형적인 당기순이익 319억 원에 특별유보금전입액이 552억 원, 공제기금 전입액이 194억 원 등으로서 발생이익은 1,200억 원을 넘었다.

2022년 3월 17일 2021년도 결산보고서를 의결한 중앙회 제60기 정기총회

아울러 중앙회 자회사로 재탄생한 수협은행은 발족 당해 연도에 당기순이익이 598억 원에 불과했으나 다음 해는 1,952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2018년에는 당기순이익이 2,000억 원을 넘어서는 쾌거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경영혁신을 통하여 신용등급까지 최상위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편 이 기간 수협이 수익사업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다. 국제금융위기를 맞이하여 부실화된 회원조합을 회생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21년 말 현재 부실(우려)조합은 2개소에 불과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MOU 체결 조합은 하나도 없다.

이 기간 임직원들은 어촌현장을 찾아가 어업인과의 소통을 이어갔으며, 강력한 어정활동을 펼쳤다.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어업인들을 위로하고 이들의 건의사항을 청취·건의함으로써 정책에 반영하였으며, 올 초에는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수산 공약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어업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어가(어업경영체)의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어업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했고, 바다모래 채취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협재단의 활동을 통하여 소외되고 형편이 어려운 어업인 및 어업인 자녀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였다. 즉, 어촌을 선진화할 인재 양성, 건강한 어촌 조성, 돌아오는 어촌 구현, 함께하는 어업인 역량 강화, 참여하는 기부활동 등 여러 분야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수협재단의 이러한 활동은 자칫 소외되기 쉬운 어업인과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2년 4월 제5차 이사회

제2절 주요 성과(10대 대표사업)

최근 10년간 수협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였고, 그중에서는 큰 성과를 거둔 것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최근 10년간 큰 성과를 이룬 대표적인 사업 10개를 선정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기반 마련

수협중앙회가 2001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공적자금 전액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정부가 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을 국채로 상환하는 방식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수협은행 수익을 어업인 직접 지원에 사용하는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도 21년 만에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2022년 창립 60주년을 맞은 수협의 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해로 남게 될 것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불어 닥친 경영위기로 중앙회는 2001년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조 1,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이래 2016년까지 신용사업부문 미처리결손금 9,887억 원을 모두 정리하고 공적자금 상환 개시를 앞두고 있었다.

2016년 말 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수협은행이 독립법인으로 새로 출범함에 따라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중앙회에서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2017년부터 매년 공적자금을 꾸준히 상환하면서 2022년 4월까지 공적자금 총 4,007억 원을 상환하였다.

그 간 중앙회는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수협은행 출범 이후 2,000억 원의 추가출자는 물론 출자 부담완화를 위하여 공적자금 상환 합의서 개정 및 세제 개선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상환액을 보면 수협은행 출범 초기 1,000억 원대 상환액이 2020년 이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최근의 공적자금 상환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었다.

국회나 언론에서도 공적자금 상환율 저조라는 지적과 함께 공적자금 조기상환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었으며, 중앙회 내부적으로 공적자금 상환 기한인 2028년까지 상환 완료 여부를 검토했을 때 현행 수협은행 수익구조와 은행 배당금을 통한 공적자금 상환 방식 하에서는 공적자금 상환 계획 이행이 불투명하고, 공적자금 상환 장기화로 인해 수협의 어업인 지원 기능 위축이 장기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중앙회와 수협은행 간 자본 선순환 구조 마련으로 수협 전체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어업인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2021년 7월 중앙회 제3차 임시총회에서 2022년 내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회는 2021년 4월 공적자금 상환 추진단을 구성하여 상환 재원 조달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2021년 9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수협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상환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기상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세제 상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2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완료하였다.

특히 조기상환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채 매입을 통한 상환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고, 마침내 2022년 5월 제203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정부가 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을 국채로 상환하는 방식을 승인하게 되었다.

2022년 6월에 열린 제1차 임시총회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신용사업특별회계 내의 우선출자증권을 감소시키는 안건이 의결되면서 공적자금 해소 닻을 올리게 되었다. 해당 안건이 총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앙회는 잔여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7,574억 원에 상당하는 국채를 예금보험공사에 현물로 납입하게 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선출자증권을 반환 받아 이를 소각하면 공적자금 상환이 완료된다.

2022년 6월 8일 수협중앙회-예금보험공사 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 개정 서명식

임시총회에 이어 같은 날 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도 개정되었다. 이는 현재까지 중앙회에서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을 국채로 지급하여 상환하기 위한 기존 합의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과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서명함으로써 합의서가 개정되었다.

기존의 합의서에서는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2028년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해 나갈 계획이었으나, 합의서 개정을 통해 잔여 공적자금을 2022년 중 국채를 매입해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2027년까지 중앙회가 지급한 국채의 만기 도래시 현금을 수령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중앙회는 그간 수협은행의 배당 가능 재원을 모두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여 왔으나, 개정된 합의서에 따라 국채를 지급하여 공적자금 상환을 사실상 완료하면, 경영자율성을 높이고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히 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출자에 나섰지만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모두 공적자금 상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 재출자가 어려운 구조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협은행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면 어업인과 수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수협은행에 대한 재출자도 가능해져 중앙회와 수협은행 간 동반성장 기반도 마련 할 수 있게 된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수협이 2022년 공적자금 해소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면서 21년간 씌워진 공적자금의 굴레에서 벗어나 협동조합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100년 수협을 위한 지속 성장 기반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6월 8일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해 '신용사업특별회계 내 우선출자금 감소(안)'을 의결하고 있는 2022년도 제1차 임시총회

2. 수협은행 발족과 경영개선

2016년 12월 수협 창립 54년 만에 수협은행(신용사업부문)이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되어 독립법인(수협중앙회의 자회사)으로 출범하였다. 사업구조 개편을 통하여 수협은행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10년 12월에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08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은행의 자본규제를 보통주 중심의 더욱 강화된 바젤Ⅲ 도입 방침을 발표하였고, 2013년 12월부터 국내 은행에 바젤Ⅲ가 적용됨에 따라 수협은행(신용사업부문)에도 새로운 자본규제 적용이 긴급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즉, 2001년 수협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1조 1,581억 원은 상환의무가 있는 출자금으로서 바젤Ⅲ에서는 부채로 분류되어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자기자본 부족으로 자본비율이 미달되어 글로벌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고, 타행과의 BIS비율 격차도 확대됨으로써 정상경영이 곤란하게 되었다.

2016년 12월 수협은행 출범식

2019년 5월 경영협의회

이에 정부는 수협은행의 자본구조 특수성을 감안하여 바젤Ⅲ 적용을 3년간 유예하였고, 2014년부터 관계기관(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수협)은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추진'에 대하여 수차례 논의를 거쳤다. 2015년 8월 26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수협은행을 수협중앙회에서 분리하고, 수협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금을 보통주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수협 전임직원들의 일치단결된 노력으로 2016년 5월 19일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되었고, 마침내 2016년 12월 1일 자회사 수협은행이 정식 출범함으로써 수협은행을 수협중앙회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을 완성되게 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협중앙회 내에 공적자금 잔류를 위한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공적자금(1조 1,581억 원)이 바젤Ⅲ 보통주 요건에 부합되게 하고, 공적자금 상환의 주체가 신용사업부문에서 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로 하되 상환 재원은 수협은행의 배당금으로 하기로 하였다.

둘째, 수협은 자구노력으로 임직원 출자와 회원조합 출자 등을 통해 3,500억 원 자금을 마련하여 추가자본 9,000억 원을 조달하도록 하였다.

셋째, 수협은행은 명칭사용료를 어업인 교육지원사업,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협동조합 고유목적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수협은행이 협동조합의 수익 센터 역할을 하게 하였다.

2020년 11월 11일 sh 수협은행 김진균 은행장 취임식

이러한 수협은행의 발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자본조달 경로가 다양화되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보통주를 통해 자본조달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내부유보 외에도 중앙회, 회원조합 및 임직원 출자가 가능해졌다.

둘째, 기존의 상환의무가 있는 자본(부채성 자본) 중심의 자본구조에서 보통주 중심의 자본구조로 개편됨으로써 자본조달 비용이 감축되고, 손실 대응능력이 높아지게 되었다.

셋째, 안정적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협동조합 은행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즉 수협은행의 경쟁력 향상으로 공적자금의 상환이 완료되면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수협의 고유목적 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수협은행은 사업구조 개편 이후에도 공제상품 판매, 회원조합에 대한 IT지원, 신용카드·외환 위탁업무 등을 지원함으로써 회원조합과 상생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수협은행은 독립법인화 이후 괄목할 만한 경영실적을 실현하고 있다.

첫째, 총자산은 2016년에 33조 2,462억 원에서 2021년에는 57조 1,667억 원으로 성장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11%의 견고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독립법인 출범 전 500억 원대에서 안정적으로 2,000억 원대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016년 1.22%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21년에는 0.40%까지 개선되어 건전성 또한 초우량 수준이다.

둘째, BIS 자기자본 비율은 2016년 보통주 자본비율 10.93% 총자본비율 15.60%에서 2021년에는 각각 10.92%와 13.84%를 보이고 있으며, 중앙회는 수협은행의 안정적인 자산성장을 위하여 독립법인화 이후 2회에 걸쳐 2,000억 원의 특별증자도 실시하였다.

셋째, 글로벌 신용등급은 2016년 12월 이후 Moody's와 S&P로부터 각각 A2(S), A(S) 등급을 획득하여 5년 연속 우수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신용등급은 더욱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협은행은 2019년 9월에 수협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법인을 설립하여 해외금융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해양수산분야에 차별화된 ESG 경영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1-2-1〉 독립법인화 이후 수협은행 주요 경영지표

(단위 : 억 원, %)

년도	총자산	당기순이익	고정이하여신비율	BIS비율
2016	332,462	598	1.22	15.60
2017	364,471	1,952	0.90	14.56
2018	426,091	2,303	0.56	13.63
2019	476,270	2,192	0.46	13.59
2020	525,664	1,820	0.44	13.98
2021	571,667	2,216	0.40	13.84

독립법인화 이후 수협은행 주요 경영지표 추이(2016~2021)

(단위 :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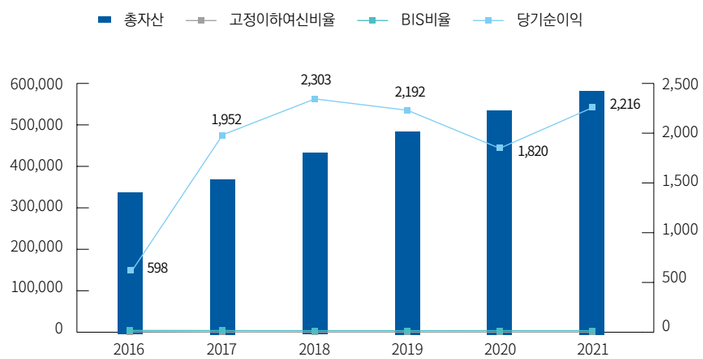

3.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이하 노량진수산시장)은 1971년에 개설된 국내 최초의 수산물 전문 중앙도매시장이다.

그러나, 노량진수산시장은 건설된 지 40여 년이 경과됨에 따라 시설 노후화로 인해 물류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대형 할인점의 등장과 비대면 유통환경 변화 등 다양한 경쟁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를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또한, 건물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안전등급 C등급)이 있어 이용고객의 불편이 초래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시장 현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2004년 12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수산물 유통 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추진을 의결하면서부터이다.

이후 2005년 6월 정부의 '수도권발전종합대책' 중 서울시 세계도시화 프로젝트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지원계획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시작한 국내 수도권의 대표적인 수산물 도매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은 2004년 사업의결 후 16년, 2012년 착공 8년 만인 2020년 12월 31일에 사용승인을 완료함으로써 재탄생하였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에 투입된 총 사업비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1,545억 원, 수협 711억 원 등 총 2,256억 원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34번지에 건설하였다.

주요 사업추진 경과를 보면,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2008년 5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2009년 7월 현대건설컨소시엄을 설계시공 일괄 업체로 선정해 설계에 착수했다.

설계착수 전 2009년 4월 시장종사자와 현대화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장종사자를 대상으로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설명회를 9회 개최하고 사업부지 확대와 판매자리 1층 배치를 명시한 양해각서를 7월에 체결했다. 그런데 이에 앞서 2006년 2월 시장상인, 소비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는데, 여기서도 약 70%의 응답자가 현 시장시설이 대단히 불편해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12년 12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착공식(비축기지)

실용성, 위생, 환경 및 이용객 편이성까지 갖춘 신 노량진수산시장

이후 서울시와 3년여에 걸친 도시관리계획 협의 후 2012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고 착공 전 11월에 시장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5회 개최하여 사업추진 과정과 사업내용을 설명하였고, 12월 공사에 착공했다. 당초 설계는 1층에 경매장 2·3층에 판매자리 배치 예정이었으나 시장종사자의 경매장·판매자리 1층 배치 요구에 따른 재설계 등으로 착공 시기가 다소 늦어졌다.

공사 중에도 일부 도매시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순차 공사방식을 도입했으며, 2015년 10월에 시장건물을 완공하고 동작구청으로부터 임시 사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신시장으로의 이전을 추진하던 중에 일부 상인들의 민원으로 공사 지연이 있었으나, 2019년 10월에 공사를 재개하였다.

공사재개 후 구 시장 구조물을 전부 철거한 후 교통상황 개선을 위해 순환도로의 공사를 완성하고, 2020년 동작구청의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장장 16년에 걸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완수하였다.

이상과 같이 우여곡절 끝에 수협에서 완수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노후화되어 있던 이전의 시장에서는 수산물 유통비용이 높고, 유통효율이 낮았으며,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현대시설을 갖추고 첨단 물류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둘째, 이전의 시장에서는 도·소매구역이 혼재되어 있고, 비좁고 혼잡하여 거래환경이 극히 열악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에서는 도·소매구역을 완전히 분리하고, 에스컬레이터 등 시장 내 편리한 이동 수단을 갖춤으로써 쾌적한 거래환경이 조성되었다.

셋째, 지상층에 식재공간과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고, 5층에는 옥상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친화적 공간이 되도록 하였으며, 태양광 및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빗물재활용시스템을 채택하여 녹색건축인증 최우수(그린 1) 등급의 친환경적인 도매시장으로 건립하였다.

이상과 같은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의 변모는 시설과 장비, 건축물 등 모든 면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지향해 나가야 할 모델로서 최근 수협이 이룩한 대표적인 사업의 하나가 될 것이다.

4.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의 확충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는 산지와 소비지를 중간 단계 없이 직접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산물 유통허브이다. 산지에서 갓 잡은 수산물을 대량으로 가공·판매함으로써 최상의 신선도를 확보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생산된 제품을 소비지로 바로 보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마진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생산자인 어업인들은 제대로 값을 받아 소득이 향상되고, 소비자들은 고품질의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서플라이 체인이 구현되는 것이다.

또한,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 Fisheries Products & Distribution Center)가 있는데, 이는 FPC와 더불어 소비지에서의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설로서 전문적으로 수산물을 최종 소비지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하여 산지의 FPC와 소비지의 FDC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新 공급망이 완성되고 최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되어 유통단계가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되는 실질적 유통혁신이 이루어지고, 정부에서도 수협이 주도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FPC와 FDC의 연계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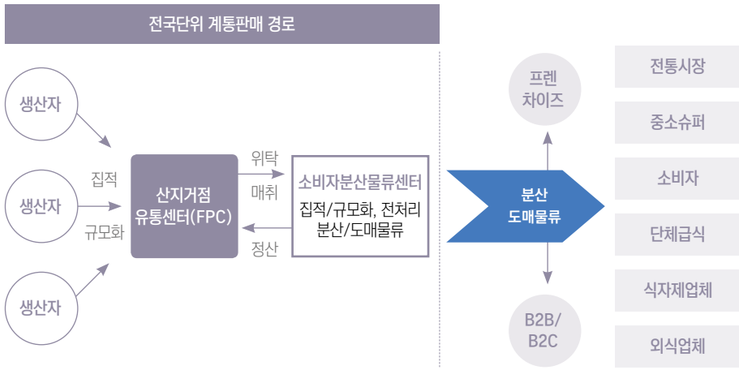

이러한 일련의 구상은 2011년 11월 수협에서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으로부터 시작하여 2012년 2월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사업추진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2013년 정부의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에 반영되었고, 그 당시 수산물 유통구조의 낮은 효율성, 비위생적인 환경, 불안정한 가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방안으로 마련되어 추진되었다.

2015년 한림수협 FPC가 최초로 만들어진 이래 현재까지 수협이 운영하는 FPC는 모두 6개소가 있고, FDC는 2020년에 인천, 2021년에 호남권 FDC가 준공되었다. 이들 외에도 수협에는 기존부터 운영해오던 물류센터들이 여러 곳 있어서 FPC와 FDC를 연계한 공급망 구성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까지는 FPC와 FDC가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기 시작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에 유통구조의 혁신을 위한 시설이 완전하게 갖춰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

까지도 산지 위판장에서는 가공용 원료어보다는 선어로 소비하기 위한 구매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가공용 원료어도 FPC에서 구매·가공하고 FDC를 통하여 판매하는 양보다는 가공업체가 직접 구매하여 가공·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2015년 4월 14일 제주 한림수협 FPC 준공식

인천FDC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유통·분산 거점시설이 더욱 확충되어 산지거점유통센터(FPC)에서 수산물을 대량으로 처리, 가공하고 이를 바로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통해 판매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유통비용 절감은 물론, 부가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수협은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조합경영 정상화 정착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강화된 자산 건전성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어가부채 증가 등으로 금융취급 규모가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수협신용사업부문도 부실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협신용사업부문은 협동조합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재기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수협중앙회를 비롯하여 전 조합에 대한 강력한 구조개혁 의무가 주어졌는데 특히 신용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중앙회와 조합 간의 업무영역 조정을 비롯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자기자본 확충 등 재무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만 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회에서는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회원조합(2002년 11월 기준 97개 조합)을 대상으로 경영상황을 진단(2002.11 ~ 2003.4)하였고, 동시에 정부에서는 체계적인 구조조정과 추가 부실을 막기 위해 2003년 9월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수협구조개선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경영진단 결과와 「수협구조개선법」을 근거로 '회원조합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합 경영개선자금 지원 및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구조개선 추진 결과 부실조합은 2003년 10개소에서 2017년 완전히 일소됐다.

〈표 1-2-2〉 회원조합 경영정상화 방안 주요 내용

▶ 경영개선자금 지원 규모 확대 - 2001년말 기준 자본잠식액에 상당하는 자금지원 ▶ 전 조합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 실제 부실 규모, 자금지원 소요, 중장기 발전방안 등 제시 ▶ 수협 경영정상화 제도화 - 부실조합의 효율적 구조개선 및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수협구조개선법」 제정 및 「수협법」 개정 추진

2000년대 들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국내 금융시장은 대형화·겸업화·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경쟁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는 조합의 경영과 건전성 등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됐다.

이에 따라 2011년 11월 「수협구조개선법」 개정 및 2013년 1월 「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고시를 제정해 부실예방제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회원조합 부실예방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조합의 부실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적기 시정조치 조합으로 편입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회원조합의 부실 확대 차단 및 건전경영을 통한 기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적기 시정조치제도를 보완하여 회원조합의 경영위험 요소를 상시 관리하고 부실 징후를 사전에 발견해 조합을 지도하는, 예방적 감독체계가 도입되었다.

부실예방제도 도입으로 부실예측모형 및 이상징후 지표를 활용해 적기 시정조치 기준이 자기자본비율에 치중되는 문제점이 보완됐고, 매월 회원조합의 경영위험을 부실예측모형과 이상 징후지표로 상시 관리해 경영관리대상조합을 지정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 사전 예방에 기여했다. 2015년부터는 적기 시정조치 기준이 되는 순자본비율의 기준을 상향하여(0% → 2%) 각 조합별 출자금 증대, 이익잉여금 내부유보 강화를 통해 경영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2020년 8월 「수협구조개선법」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조합의 부실 예방을 위한 경영위험평가, 경영관리대상조합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 및 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한 사후적인 관리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실(우려)조합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사전적인 대응 및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이처럼 강도 높은 회원조합 경영정상화 노력의 결과, 전체 조합의 경영기반이 크게 향상되어 2002년 9월 8,419억 원이던 미처리결손금은 모두 정리하고 2011년부터는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었으며, 2021년 말 현재 7,452억 원에 이르렀다. 재무건

전성 또한 크게 높아져 2002년 9월 △6.30%이던 전체 회원조합 순자본비율은 2009년 말 양(+)의 값으로 전환된 후 2021년 말 현재 5.29%로 개선되는 등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어냈다.

2021년 말 결산기준으로 부실(우려)조합 수는 2개소,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조합은 하나도 없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특히 최근 10년간 '회원조합 경영정상화 방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한 결과로서 그동안의 노력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표 1-2-3〉 회원조합 주요 현황

(단위 : 억 원)

연도	2002.9월	2003년	2009년	2011년	2012년(A)	2021년(B)	증감(B-A)
이익잉여금	△8,419	△7,033	△1,726	804	1,152	7,452	6,300
순자본비율	△6.30	△4.43	1.29	2.57	2.83	5.29	2.46
부실(우려)조합	-	59	42	28	23	2	△21

※ 회원조합 결산 및 평가 기준('02년 ~ '13년 실사 기준, '14년 ~ 결산 기준)

6. 회원조합의 중앙회에 대한 출자금 대폭 증가

어떤 조직이나 단체이든 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한데, 이러한 자본금은 수익을 내기 전까지 해당 조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알려져 있고, 조직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수협중앙회는 협동조합의 특성상 주식발행 등 외부로부터의 자본조달이 불가능해 회원조합 출자금 증대를 통한 자본확충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수협법」 제120조 회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계좌수 이상의 출자를 해야 하고(제1항),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제2항)고 하여 회원조합의 중앙회 출자 근거를 정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자본금은 출자금과 잉여금으로 구성되는데, 전자는 다시 납입출자금과 회전출자금으로, 후자는 자본잉여금(자본적립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 이익잉여금은 다시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 및 전기이월금과 당기순이익을 포함한 미처분잉여금으로 나누어진다.

이때 회원조합의 출자금 중 회전출자금은 사업 이용 규모에 따라 분배하는 이용고배당을 출자금으로 대체한 것으로서 2021년도 말 현재 약 2억 원의 출자금이 적립되어 있다.

다음 표에서 보면 수협 출범 50년간 회원조합의 중앙회 출자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 특히 2011년도 이후 회원조합의 중앙회 출자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본회가 2011년도부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코자

자체적으로 '중앙회 출자금 자율증대운동'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10년도까지의 출자금 총액은 300억 미만이었으나, 2011년도 이후부터는 연 출자증자액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2018년도 이후부터는 연간 순증자액이 최소 120억을 돌파하며 2017년도 3월 출자총액은 1,000억 원을 돌파하게 되는 등 회원조합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출자 활동이 돋보인다.

특히 2019년도 한 해 동안 출자한 조합은 총 28개 조합이며, 2020년도 출자조합은 총 35개 조합, 2021년도에는 총 31개 조합이 중앙회 출자금 자율증대운동에 동참하는 등 출자에 대한 회원조합의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절대적인 금액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4〉 회원조합의 중앙회 출자액

(단위 : 억 원)

구분	연 출자액	누적 출자액
1962	0.03	0.03
1971	0.1	0.3
1981	10	31
1991	8	135
2001	2	299
2011	119	410
2012	137	547
2015	118	812
2018	136	1,186
2020	190	1,501
2021	184	1,685

이러한 성과는 2011년 이후 4회에 걸쳐 회원조합에서 중앙회 출자금의 자율증대운동을 펼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중앙회 출자금 자율증대운동'을 추진할 당시의 상황을 보면, 남유럽 재정위기 및 일본 대지진 등으로 대내외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된 시기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했었다. 따라서 자기자본 확대를 통한 중앙회 재무건전성 확보와 사업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어 출자금 확충이 불가피했다.

자기자본 확대는 재무건전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지도경제사업부문의 단순 자기자본비율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본회의 수산금융채권발행 및 공제사업 RBC비율 산출을 위해 자기자본액 산정 시 필요한 조건이다. 특히 공제사업부문의 지급여력비율 상승을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와 안정적인 공제사업 운영을 가능케 하는 시대적 요청이 있었다는 평이다.

중앙회 출자금 자율증대 제1차 운동에는 2011년 3월~2013년 6월간 53개 조합이 동참했고, 2차 운동에는 2013년 7월~2015년 6월간 33개 조합이 동참했다. 그리고

제3차 운동에는 2015년 7월~2017년 12월간 44개 조합이 동참했고, 4차 운동에는 2018년 1월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2021년에는 31개 조합이 동참했다.

회원조합의 자율출자활동은 2022년에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2022년 3월 3일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조합장 송재일)이 2억 원을 출자한 데 이어 4일에는 인천수협(조합장 조창남)이 10억 원, 고창군수협이 1억 원을 중앙회에 출자하며 중앙회 총 출자금은 1,731억 원(`22.3.04 기준)을 달성했다.

중앙회에 대한 회원조합의 이러한 출자증액은 중앙회 자본금 확충 및 자산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즉, 중앙회는 이러한 출자금의 증자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대외 재무건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등 경영수익 확대를 위한 기초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인 지원 확대사업의 재원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7. 온라인 및 공영홈쇼핑 진출 등 유통다변화

수협의 수산물 직판사업은 2000년대 초부터 본격화하여, 온라인을 통한 판매는 2007년부터, 공영홈쇼핑을 통한 판매는 2015년부터 시작하는 등 그 역사는 짧지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언택트 소비'를 소비 트렌드의 한 축으로 정착하게 했으며, 수산물도 간편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이나 홈쇼핑 판매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이를 통한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그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협에서도 이러한 수요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의 기치에 발맞추어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창조적인 수산물 마케팅 활동을 통해 경제사업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수협쇼핑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온라인 몰을 통해 가공된 수산물을 판매하는 소극적인 중개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산지 위판장에서 신선수산물을 직접 수매하고 예약 판매하는 방식으로 신선한 수산물을 값싼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바로 온라인 몰과 수협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는 수산물의 유통구조를 2, 3단계로 획기적으로 줄여 산지의 싱싱함을 값싼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때문이다.

제철 수산물인 주꾸미를 인천수협 연안부두 위판장에서 수매하여 온라인으로 3월 한 달간 판매한 결과 5,000만 원의 높은 매출을 기록하였다. 주꾸미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신선함과 저렴한 가격에 놀라워하며 수협쇼핑 상품평 게시판에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2021년 11월 밥도둑 수산물 삼총사 라이브커머스

수협쇼핑은 앞으로도 문어, 대게, 꽃게 등의 싱싱한 제철 수산물을 직접 수매하여 소비자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온라인 판매해 제철이 되면 다시 찾고 싶은 수산물이 될 수 있도록 판매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러한 판매방식의 혁신을 통해 수협쇼핑의 거래 규모는 2003년 1억 3,400만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 128억 5,000만 원의 거래 규모를 달성하였다.

수협의 또 다른 온라인 판매채널인 홈쇼핑 판매사업의 성장도 눈부시다. 대중어종 판매 활성화를 위해 굴비판매에 주력한 결과 최근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하며 공영홈쇼핑 굴비판매 점유율을 37%까지 끌어올려 수협 자체 가공수산물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공영홈쇼핑과 수협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홈쇼핑 수산물 전문 프로그램, '어랍쇼(漁LOVE쇼)'등을 통해 7년간 방송 횟수 400회 이상을 기록하며 어업인의 판로확보 및 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홈쇼핑 판매사업은 2016년부터 2021년 누적 2,400억의 거래 규모를 달성하였으며, 공영홈쇼핑뿐만 아니라 GS Shop, 홈앤쇼핑 등 메인 홈쇼핑 채널 진입을 통해 그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과 홈쇼핑을 통한 판매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 판매에서 주된 형태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고려할 때 당분간 지속될 뿐 아니라 코로나 종식 이후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즉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판매라는 새로운 경험을 했던 소비자들로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온라인 판매가 현재보다 더욱 선호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7일 공영홈쇼핑 상품 판매 화면

특히 수협은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기관으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는 소매 외에 수산물 도매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정부에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PC와 FDC 연계과정에 B2B나 B2C 형태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FPC에서 위판물량을 직접 매입할 경우 선도 높은 원료어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원료로 가공할 경우 고품질의 수산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반가공 내지 단순처리된 제품을 B2B 형태로 수산물 가공공장에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이고, 고차 가공품은 B2C 형태로 백화점 등 대형 소매상에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유통환경하에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전문기관으로서 수협의 특징을 적극 활용할 경우 수협은 수산물 도매시장은 물론 소매시장에서도 절대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어업인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수협에서도 수산물을 대상으로 온라인이나 홈쇼핑을 통한 판매에 주목하고 이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 무역지원센터 개소 등 무역 증대 지원 강화

수협에서 무역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제정 「수협법」에서도 나타나 있다. 즉 동법 제65조, 제105조에서 수협에서는 수산물의 보관·판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수협의 수산물 무역사업은 1971년부터 실적을 거두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갯지렁이 수출로 시작해 이후 품목 다변화를 통해 수출을 확대해 나갔다.

이후 수협이 본격적으로 무역사업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해외에 무역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무렵부터이다. 2014년 중국 상하이 무역지원센터 개설을 필두로 매년 개설 국가를 늘려가 현재는 7개국 10개소에 무역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운영과 지사화 사업 등 수출 초보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수산식품 무역상담회, 국제 수산박람회 한국관 운영, 한국수산식품 홍보 및 판촉프로모션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신규 시장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수협중앙회 무역지원센터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1년 국내 수출업체 대상으로 전년보다 63% 증가한 2,560건의 수출지원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산물 해외수출 실적은 사상 최고치인 28억 2,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또한 무역지원센터는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으로 박람회 등 개최와 해외 출입국이 제약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 구축, 무역지원센터 연계 온라인 박람회(6월, 10월) 개최, 상시 화상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국내 수출업체와 해외 바이어사 간 수출거래 주선으로 1,788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협은 올해에도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지사화사업, 수출 유망상품화 사업 등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개선에 따라 현지 오프라인 무역상담회, 국제 수산박람회 운영을 통해 신시장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오픈한 수산물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https://expo.k-seafoodtrade.kr) 고도화를 통해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업체 간 수출 상담을 용이하게 하는 등 무역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확대해 비대면 수출지원도 강화하고, 각국 현지 특징과 수요에 맞춘 수산물과 수산식품을 발굴하고 수출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2014년 6월 26일 상하이 무역지원센터 개소식

9. 공제보험 및 상호금융사업 약진

공제보험 및 상호금융사업은 수협 발족 후 대부분 기간에서 전체사업비 증가 속도 이상으로 증가해 왔다. 그리하여 1982~1991년간 이들 사업규모가 경제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구조 개편기를 가져왔고, 이후로도 수협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특히 공제보험사업의 경우 2012년에 사업규모가 1조 원을 초과했고, 상호금융의 경우 2012년 이후 중앙회는 4조 원, 회원조합은 11조 원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2014년에는 공제보험부를 개편하며 어선원, 어선재해 및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등 정책성 보험을 담당하는 정책보험부를 신설하여 사업부문별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2020년에는 온라인 사이버창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공제상품 판매 개시와 함께 각종 공제계약관리를 온라인상에서 가능하게 하였고, 찾아가는 영업환경을 위한 '영업지원 전자청약시스템'을 구축하여 태블릿PC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환경 구현으로 영업채널을 확대하며 변화하는 보험시장 환경에 대응하였다.

현재 공제보험은 기존 저축성공제 위주의 영업환경을 벗어나 수익성 확보를 위한 보장성공제 판매를 강화하는 추세로, 특히 보장성공제 위주로 구성된 손해공제의 경우 최근 10년간(2012~2021)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이며 가파르게 성장하였고, 그 결과 2021년 6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다. 이처럼 공제보험사업은 중앙회의 안정적인 수익사업에 기여하며 수협의 주요 사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상호금융사업은 1990년대 초 이후부터 계속 수협은행과 비슷한 규모의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고, 최근 10년간(2012~2021)은 예수금 평균잔액이 16.1조 원에서 34.6조 원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상호금융사업의 이러한 가파른 성장세는 교육·지원, 경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회원조합의 자립기반 확충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또한 경제적 약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어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상호금융사업은 2021년에 당기순이익 2,227억 원을 달성하고 연체율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두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과 저금리의 장기화 등 열악한 금융환경에도 불구하고 수협 임직원의 전사적인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2,227억 원이라는 성적을 거뒀다. 전년과 비교해 66% 이상 크게 신장한 기록이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예탁금은 32조 8,972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9% 증가했다. 상호금융대출금은 26조 8,842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6.6%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 성장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년 대비 예대마진율을 0.06%p 확대하는 등 저원가성 예탁금을 바탕으로 한 예대마진 구조의 개선이 주효한 전략으로 손꼽힌다.

특히 상호금융 건전성 향상에 주력한 결과 2021년 말 기준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0.80%p 하락한 1.64%로 수협 창립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대손충당금 비율 또한 2021년 말 기준 111%로 전년 말 대비 5%p 증가시키는 등 향후 경기변동에 대비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단행했다.

아울러 시장환경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 금융상품을 출시해 비대면 예탁금 또한 2021년 말 기준 1,871억 원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43% 성장했으며 스마트폰 뱅킹 고객 수는 33만 명을 달성해 전년 말 대비 27% 증가했다.

한편 회원조합별 성과를 살펴보면 당기순이익 부문에서는 여수수협이 121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경기남부수협(119억 원)과 거제수협(117억 원)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예탁금과 상호금융대출금 부문에서는 경기남부수협이 예탁금 1조 6,323억 원, 상호금융대출금 1조 4,334억 원으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수협 임직원의 공제가입 캠페인

〈표 1-2-5〉 2021년 상호금융사업의 조합별 실적

(단위 : 억 원)

순위	순이익		예탁금		대출금	
	조합명	금액	조합명	금액	조합명	금액
1	여수	121	경기남부	16,323	경기남부	14,334
2	경기남부	119	인천	16,033	인천	13,440
3	거제	117	여수	11,172	여수	10,077
4	냉동냉장	89	경인북부	10,625	냉동냉장	9,409
5	경인북부	75	근해안강망	10,530	경인북부	9,183
6	근해안강망	71	옹진	10,333	부안	8,334
7	옹진	68	강구	10,146	포항	8,328
8	인천	66	냉동냉장	10,084	근해안강망	8,199
9	민물장어양식	66	부안	10,075	강구	8,098
10	완도금일	60	포항	9,165	옹진	7,870

10. 수협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

수협중앙회는 1962년 창립 이후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함께 협동운동을 통하여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 이 기간에 국제 교류를 통한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을 위해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에 1979년 정회원으로 가입(분과 : ICA 수산위원회)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가입 이후에는 1981년 ICA 동남아지역 수협세미나 개최, 1984년과 1985년 말레이시아 수산관계자 연수실시, 1998년과 2001년 ICA 수산위원회 서울 개최 등 ICA 수산위원회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2009년 11월 16일 개최된 ICA 수산위원회 정기총회에서 한국 수협중앙회 이종구 회장은 조합원 10억 명이 가입된 ICA의 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전 세계 수산단체가 세계 수산업 및 수협운동의 발전을 위해 수협중앙회를 위원장국으로 선택한 것이다. 1979년 ICA 가입 시는 국제 교류를 통한 한국 수산업 발전이 목적이었으나, 이제는 각국 수협에 한국 수협의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세계 수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위원장국으로서 국제 협동운동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산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2010년), 개도국 수협 수산기자재·정보화기기 지원(2010년~), 한국 수협의 지식공유 교육(2011년~), 세계 수협의 날 행사(2011년~) 사업 등이 그것이다.

특히 개도국의 차세대 수산인력 양성을 위하여 ICA 수산위원회 장학생 제도를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개도국 대학 수산관련학과 졸업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수산분야 석사과정 이수를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14년 1월 24일 부경대학교와 관련 협약서를 체결하여 ICA 수산위원회는 학생을 선발해 왕복 항공료, 생활비(매달), 기숙사비 및 보험료를 지원하며, 부경대는 위탁 교육 및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현재 네팔, 터키 등 6개국 학생 20명이 해양수산경영학, 수산생물학 및 생물공학 등을 전공하였다.

2011년 제1회 세계 수협의 날

ICA 수산위원회 장학생, 대학원 학위수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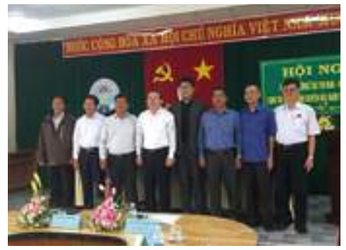
2017년 11월 베트남 태풍피해 성금 전달

개발도상국의 수산발전을 위해서도 ICA 수산위원회는 발 벗고 나섰다. 2017년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네팔을 방문해 네팔수협연합회와 함께 '네팔 내수면어업 발전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세미나에는 최혜승 내수면양식연구센터장과 김치홍 중앙내수면연구소 연구관이 참여하였다.

한편, 2017년 11월 4일 태풍 담레이로 인해 베트남에서는 100여 명 사상자 발생, 가옥 14만 채 및 양식장 2만 4천 개소 파손, 어선 1,300척 침몰 등 피해가 발생하여, 수협중앙회는 ICA 수산위원회를 통해 1만 달러를 베트남 협동조합연합회에 2017년 11월 30일 전달하였다.

아리엘 과르코 ICA 회장이 2019년 7월 29일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을 방문하였다. ICA 회장은 한국 수협이 2009년 ICA 수산위원회 위원장국이 된 이후 추진한 한국 수협의 지식공유(KSP) 교육, ICA 수산위원회 수산장학생 프로그램, 세계 수협의 날 제정 등 다양한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전 세계 수협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협중앙회는 국제 현안에 대하여 각국 수협들과 공동 대응하였다. ICA 수산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오염수 일방적인 해양방출 결정을 인류에 대한 핵공격과 다를 바 없는 파멸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2021년 4월 15일 신속히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해양방출 실시계획안이 2021년 8월 25일 발표되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인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9월 14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규탄 성명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

2019년 10월 국제협동조합연맹 수산위원회 회의(르완다)

2017년 6월 네팔 내수면어업 발전 세미나

ICA 수산위원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출 실시계획 발표 규탄 성명

2021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 동안,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ICA 주최로 협동조합 정체성의 현대적 의미와 세계협동운동 방향을 논의하는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가 국내외에서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수협중앙회는 국내에서 대회가 개최되는 점을 고려해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ICA와 긴밀히 협력하였다. 대회 기간에는 전시관을 설치해 한국 수협 및 ICA 수산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출 위험성을 알렸으며, 전시관을 방문한 코트디브아르 면화협동조합 대표단에게는 한국 수협의 주요 사업 및 발전 경험을 전달하였다.

세계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협중앙회의 2009년 이후 ICA 수산위원회 위원장국 활동 결과, ICA 수산위원회 회원 숫자는 터키, 호주, 네팔, 요르단 협동조합연합회 등 회원 가입으로 2009년 14개 회원단체(12개국)에서 2021년에는 24개 회원단체(22개국)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ICA 수산위원회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제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 수협중앙회의 지도력을 세계 수협이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국제민간기구 활동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널리 홍보하고 민간 외교를 수행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우리나라 및 전 세계 수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각국 수협과 연대해 ICA 수산위원회 위원장국 활동을 더욱 역동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표 1-2-6〉 ICA 수산위원회(ICFO) 회원단체 현황

국명	가입단체명	비고
Nigeria	1.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2014년 가입
Nepal	2. Nepal Central Fishery Cooperative Union	2014년 가입
Mauritius	3. Mauritius Co-operative Alliance Limited	2014년 가입
Maldives	4. Maldives Fisherman Association	2015년 가입
Myanmar	5. Central Cooperative Society Limited	2012년 가입
Bangladesh	6. Bangladesh Jatiya Samabaya Union	
Vietnam	7. Vietnam Co-operatives Alliance	
Somalia	8. Somali Union Cooperatives Movement	2018년 가입
Jordan	9. Jordan Co-Operative Corporation	2021년 가입
Italy	10.National Associ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11. Federazione Nazionale Cooperative delle Pesca	
India	12.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men's Co-operatives Ltd	
Indonesia	13. National Federation of Indonesian Fishermen's Cooperative Societies	
Japan	14.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 Associations	
Canada	15. Newfoundland-Labrador Federation of Co-operatives	
Tanzania	16. Tanzania Federation of Co-operatives Ltd.	
Thailand	17. The Co-operative League of Thailand	
Turkey	18. Central Un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2014년 가입
Palestine	19. Economic&Social Development Center of Palestine	2015년 가입
France	20. Confederation de la Cooperation de la Mutualite et du Credit Maritimes	
	21. Caisse Centrale de Credit Cooperatif	
Korea	22. Korea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Hungary	23. Hungarian Fish Farmers Association	
Australia	24. Geraldton Fishermen's Co-operative	2021년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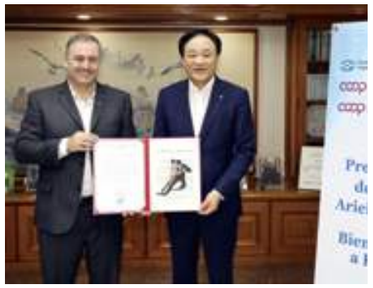

(좌측) 2019년 7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아리엘 과르코 회장 본회 방문
(우측) 2021년 12월 코트디브아르 대표단, 세계협동조합대회 수협 전시관 방문

제3절 어업인 권익보호 활동

1. 수산제도 개선

수협은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수행해 왔다. 특히 최근 10여 년간은 더욱 어업인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를 이룩하였는데, 대표적인 것들로는 어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를 통한 어가소득 증진, 어가의 소기업 판정기준 완화를 통한 세액감면, 어업소득 비과세 및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통한 조세부담 경감, 수협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어업인 지원 확대 기반 마련 등이다.

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어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2012년 2월 이전의 소득세법에서는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 농업은 축산을 비롯한 대부분 분야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어업은 양식어업만 포함되어 있었다(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이에 수협은 농업과의 차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2012년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대상에 어로어업(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을 포함하였고, 비과세 범위도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2021년 11월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세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표 1-2-7〉 2012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가구당 연간 절세액 추정

(단위 : 만 원)

과세표준(A)	세율(B)	소득금액 감소분(C)	절감세액(국세분) (D=B×C)	총절감액 (E=D×1.1)
1,200만 원 이하	6%	2,000	72	79.2
4,600만 원 이하	15%		300	330
8,800만 원 이하	24%		480	528
3억 원 이하	35%		700	770
3억 원 초과	38%		760	836

이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2016년에는 비과세 한도의 범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2020년에는 어로어업소득을 주업으로 인정받았으며 비과세 범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수협은 이러한 어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어업인 경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수협중앙회는 귀어·귀촌 및 젊은 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하여 수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어업 역시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주업인정 및 비과세 한도를 현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농·축·어업 간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과세 한도를 10억 원 이하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표 1-2-8〉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주요 변경사항

연도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주요 변경사항
1977	신설 : 비과세 범위 108만 원
1978	범위 확대 108만 원 ⇒ 120만 원
1979	범위 확대 120만 원 ⇒ 156만 원
1980	범위 확대 156만 원 ⇒ 186만 원
1986	범위 확대 186만 원 ⇒ 240만 원
1989	범위 확대 240만 원 ⇒ 386만 원
1991	범위 확대 386만 원 ⇒ 500만 원
1994	범위 확대 500만 원 ⇒ 600만 원
1995	범위 확대 600만 원 ⇒ 1,200만 원
2009	범위 확대 1,200만 원 ⇒ 1,800만 원
2012	범위 확대 1,800만 원 ⇒ 2,000만 원 부업범위 확대 양어 ⇒ 어로·양어
2016	범위확대 2,000만 원 ⇒ 3,000만 원
2020	어로어업 : 소득 주업인정 및 비과세 범위 5,000만 원 신설 양식어업 : 현행과 동일(부업소득 3,000만 원 비과세)

나. 어가(어업경영체)의 소기업 판정기준 완화

2014년 1월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어업의 경우 상시 종업원 수 10명 미만의 소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었다. 이 경우,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등 근해어업은 10명 이상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어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었다.

이에 수협은 열악한 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4년 2월 동법에서 소기업 판정대상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확대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이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 어업경영 유지를 위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2016년 한중 FTA 타결에 따른 '한중 FTA 추가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어업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과 더불어 수협중앙회는 농업단체와 공동으로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활동 유지와 대를 잇는 어업경영 존속을 위해 영어상속 공제한도 상향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영농·영어 및 임업 후계자에 대한 영어(영농)상속 공제한도가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크게 상향되었다. 이후 가업을 이어 어업 활동을 수행하려는 어업인들의 조세부담이 완화되었고, 2022년에 15억 원이었던 영어상속공제한도를 5억 원 증액하여 20억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젊은 어업인 유치를 위한 유인책으로 크게 기여하였다.

2. 조세감면과 사후환급 확대

가. 「농림어업특례규정」[1]에 의한 조세감면

「농림어업특례규정」은 농림, 어업 및 축산업인들의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으로서 농림어업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면세유 및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면세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에 대한 규정이다.

하지만 어업용 기자재의 경우 분류가 다양하고, 어업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는 있으나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의 품목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에 수협은 어업인의 원활한 어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해,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어업용 기자재를 발굴하여 어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에는 다목적 해상작업대와 양식장 관리선 및 폴리에스테르 로프, 2016년 2월에는 김발지지대가 영세율 대상 품목에 추가되었고, 2016년 3월에는 면세유류 사용대상에 어망세척기가 추가되었으며, 2017년에는 기존 선외내연기관에 전기추진기가 추가되었다. 또한, 2019년 2월에는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에 양수기, 발전기 등의 어로하역설비가 추가되었다.

4차 산업혁명 등 수산업도 스마트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각종 스마트 기기 및 장비 등의 전환이 예상되는데 수협중앙회는 향후 어업에 필요한 이러한 기자재를 발굴하고 어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나. 사후환급 등 확대

어업용 기자재는 어업인 경영활동에 있어 비용부담이 있는 지출항목이다. 이에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정부는 사후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어업용 기자재는 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품목이 지속 증가·변화하는데 수협중앙회는 이러한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사후환급 품목 확대를 지속 정부에 건의·반영하고 있다.

최근 10년간의 어업용 기자재 사후환급 확대 품목을 살펴보면, 2012년 2월에 젓갈용 숙성 용기와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이, 2014년 2월에는 수산종묘 생산용 파판, 전복집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는 채롱망, 통발 착탈기, 홍합부착기, 김종자 생산용 굴 껍데기,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가 추가되었다.

또한, 2022년에는 어업인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구명부기 및 구명동의에 더하여 구명뗏목과 구명정 그리고 구명부환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렇듯 수협중앙회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어업인 부담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수행하였다. 2016년 3월에는 개정 「종합부동산법」에 의거한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반환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9~2014년간의 종합부동산세 및 환급가산금 14.7억 원을 환급받았다.

그리고 2017년 2월에는 잠실세무서를 대상으로 면세유류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심판청구가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됨에 따라 약 74억 원(중앙회 36억 원, 회원조합 38억 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

1 정식 명칭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다.

2018년 1월에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몇 년간 부과한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2013~2017년 부담금 일부로서 서산수협 3,600만 원, 후포수협 3,600만 원, 보령통신국 2,900만 원 등 부과금 환급추진을 진행하였다.

2020년 12월에는 그동안 중앙회에 부과해 온 전력기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13년 3월에서 2020년 9월까지의 환급액(이자 포함) 9억 4,900만 원을 환급받았다. 아울러 85개 회원조합(부산공동어시장 포함)에서도 20억 원 이상 환급받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이익을 증가시켰으며 결국 이러한 이익이 어업인 지원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3. 바닷모래 채취 반대운동

건설, 건축에서 골재는 기초 재료가 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골재를 주로 하천, 농지, 산지, 재개발 및 공사장 터, 건설폐기물 등에서 공급받아 사용했다. 하지만 골재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하면서 바다에서도 골재를 채취하기 시작했다.

바다에서의 골재채취 즉, 바닷모래 채취는 1984년 옹진군 해역에서 시작되어 충남 당진군, 전남 신안·진도군 등의 연안해역으로 확대되었다. 2004년부터는 남해 EEZ, 서해 EEZ로 바닷모래 채취해역이 더 넓어지면서 어업인들과 골재채취업자 간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졌다.

남해 및 서해 EEZ 바닷모래 채취해역 현황

구분	남해 EEZ	서해 EEZ
위치	통영 동남방 70㎞(105해구)	군산 어청도 서방 26㎞(173해구)
지정기간	2008. 9 ~ 2020. 8	2020. 9 ~ 2025. 9
채취면적	4개 광구(10.9㎢)	2개 광구(19.18㎢)
지도		

연안의 바닷모래 채취해역 현황

구분	옹진군		태안군	
위치	굴업, 덕적지적	선갑지적	가덕도지적	이곡지적
지정기간	2012. 12. 24 ~ 2017. 12. 23	2019. 9. ~ 2022. 9.	2012. 9. 3 ~ 2017. 9. 2	2020. 10. ~ 2021. 10.
채취면적	7개 광구(18.9㎢)	7개 광구(9.5㎢)	4개 광구(9.45㎢)	4개 광구(7.3㎢)
진행 경과(21.3월)	채취종료	채취 중	채취종료	채취 중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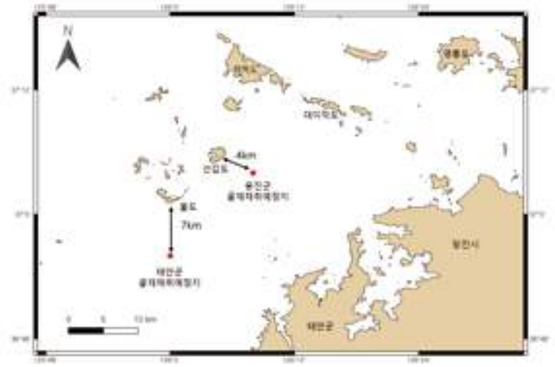			

바닷모래 채취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해저지형에 변형을 가함으로써 수산동식물의 산란지 및 서식지의 파괴를 불러옴은 물론 채취작업 중 발생하는 부유물로 인해 2차적인 환경 피해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자칫 해안 침식의 원인이 되어 어촌민의 생활공간을 파괴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90년대 세계 최대 바닷모래 채취국이었던 일본은 채취량을 대폭 감소시켰으며, 영국과 네덜란드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에 어업인들은 바닷모래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본회는 총 51개 회원조합 및 5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바닷모래 채취 반대 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 대책위에는 연안, 서해, 남해, 제주, 동해 등 5개 구역으로 구분된 지역별 대책위를 두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본회는 바닷모래 채취 반대 대책위원회를 통해 138만 수산산업인 총궐기대회, 지방의회의 바닷모래 채취 반대 결의안 채택,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골재채취법 개정 등 제도개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본회와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반대운동 결과 채취물량을 기존의 5% 수준으로 축소,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폐쇄,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제도화 등의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또한 표준적 협의이행조건 마련,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남·서해EEZ에 대한 단지관리자를 기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19년부터 해양환경공단의 변경등의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본회의 전사적인 업무추진과 함께 회원조합의 능동적 참여, 어

업인 및 시민단체의 협조, 해양수산부의 적극적 대응이 시너지를 극대화하였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2016년 10월 17일 138만 수산산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

바닷모래 채취 반대 대책위원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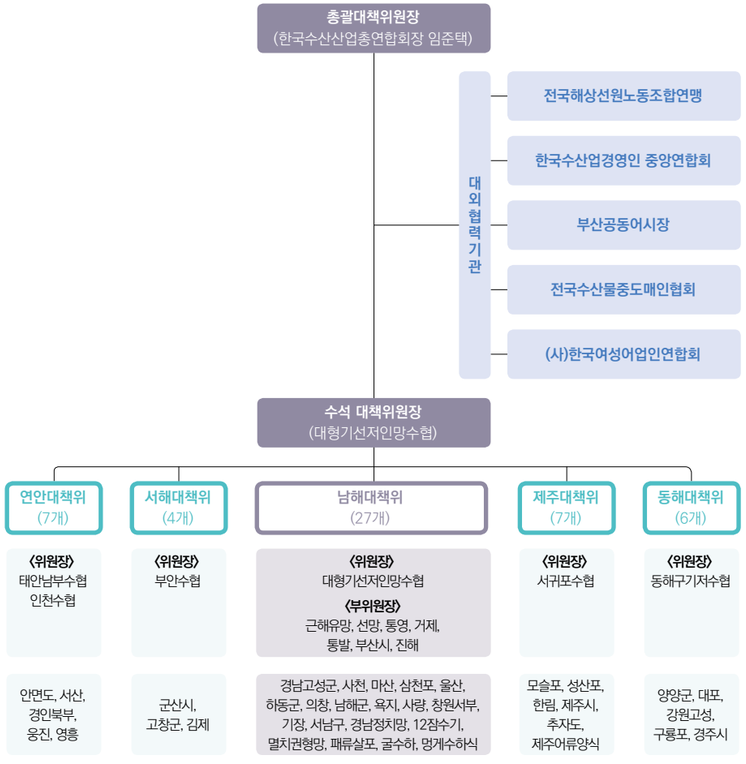

4. 해상풍력발전 반대운동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점점 더 강조되면서 세계는 탈 탄소,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탄소의 발생을 줄이고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그린 에너지(Green Energy)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풍력발전이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육상 및 해상으로 풍력발전소의 건설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해상풍력발전소의 건설은 수산업 및 해양환경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오게 될 해역은 예로부터 어장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활발한 어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게다가 해상풍력단지 내 통항과 조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해상풍력 단지 건설 시 대규모 조업구역 축소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신규 어장 발굴 및 조업강도 증가 등으로 수산물 어획감소, 어업비용 증가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풍력발전단지의 조성으로 해양생물의 서식지 파괴는 한반도 주변수역의 자원량 감소를 야기할 수 있어 그 피해는 우리나라 어업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그리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촌주민 간 갈등 조장, 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일방적 행정권한 행사로 해양공간계획 등 기존 법 절차조차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본회는 해상풍력발전의 일방적 추진 저지 및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해상풍력발전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먼저 2018~2019년 두 해에 걸쳐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해상풍력발전 반대의 논리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

본회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은 '발전사업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18)', '해상풍력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등 두 건이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의 문제점을 한겨레신문 등 중앙일간지 및 전문지에 대해 다수 보도가 되었다. 국회의 어정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국정감사에서 해상풍력의 문제점을 환기시켰다. 2018~2019년 국정감사에서 강석호, 경대수, 김종회, 오영훈, 정운천 위원 등이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본회의 노력은 언론보도와 어정활동에서 그치지 않았다. 해상풍력에 대한 어업인 의견을 국회·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전 국민 서명운동 추진했다. 이 운동에 어업인 총 53만 8,337명이 참여하였고, 해상풍력 정책건의서와 서명부를 국회 농해수위·산자위 소속 의원실과 산업부·해수부·국조실 등 중앙부처에 전달함으로써 해상풍력 발전 반대에 대한 의지가 굳건함을 밝혔다.

2020년 8월 25일 전국 해상풍력 대책 회의(천안연수원)

이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의 해상풍력 TF에 참여하고, 38개 회원조합과 함께 해상풍력 발전 대응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전북 서남권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지원, 해상풍력발전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전남권 해상풍력·해양공간계획 대응 활동 등을 추진했다.

또한 법·제도 개선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해양환경성 검토를 강화를 위해 정운천 의원 등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힘썼으며(20.3.6), 안병길 의원 등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통과(21.12.9)를 위해 노력하여 공유수면 관리청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전 어선어업인 의견수렴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우리 어업인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본회는 과거와 달리 해양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바다 환경을 수호함은 물론 어업인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5. 수협재단 활동

어업인들의 삶의 질이 도시근로자는 물론 농업인들에 비해서도 낮고, 어촌의 사회 기반시설, 주거, 교육, 의료여건 등이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어업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소외감이 커져만 감에 따라 본회는 2009년 9월, 초기 설립자금 17억 원을 출연하여 어업인의 교육과 문화, 복지 문제를 전담하는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을 설립하였다.

2016년에는 재단의 명칭을 사업의 내용보다는 사업 주체를 파악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꿔 수협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수협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종합적 어촌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재단의 설립과 함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본회의 출연 및 공익금융상품 판매 등으로 기금을 확충하는 한편 2010년 1월부터는 행정안전부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고 수협 임직원, 수산단체, 기업체 등 일반 국민 대상 기부금을 모금한 결과 2021년 말 현재 재단의 재산은 176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어업인에 대한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을 바탕으로 어업인을 위한 유일한 복지전담기구인 수협재단은 '어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라는 사업목표 아래 미래 수산인재를 양성하고 건강한 어촌을 조성하며 돌아오는 어촌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첫째, 미래 수산인재 양성을 위해 수협장학금 지원, 수협장학관 운영, 어촌 희망두드림 프로그램 운영, 해외 수산현장 견학 등을 실시하였다.

수협장학금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대학생 자녀를 둔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유능한 어촌 인재를 양성하려면 어업과 어촌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양질의 교육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어촌지역 인재 풀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2014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개관한 수협장학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에 남녀 각 1개 동 씩 모두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도권 대학에 유학 중인 어업인 대학생 자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어업인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4년 2월 21일 수협장학관 개관식

또한 어촌지역 어린이에게 음악과 미술 등 문화 예술 체험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촌 희망 두드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어촌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과목에 대한 맞춤형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수협 드림클래스도 운영함으로써 인프라 부족으로 좋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어촌지역 어린이가 자신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재단은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전국 수산계 고등학생 30명에게 일본 후쿠오카 나가사키를 방문해 선진 수산현장을 둘러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수산 인재에게 수산업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수산 리더로서 자긍심을 배양했다.

둘째, 건강한 어촌 조성을 위한 어업인 의료지원사업으로 의료봉사활동, 건강검진비 지원, 수술·치료비 지원을 하였다.

어업인 의료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지원받아 어업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료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한국마사회의 지원이 중단된 2015년부터는 자체자금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노령화, 혹은 각종 해난 사고 등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인들의 건강을 돌봄으로써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왔다.

의료봉사활동은 지역 병원과의 의료지원 협약을 맺고 지리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업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인 강남세브란스병원, 경북대병원, 동아대병원, 조선대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한층 더 수준 높은 의료진과 시스템을 갖춘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검진비 지원은 위험하고 고된 조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가 식량산업이자 안보산업인 수산업을 묵묵히 지켜내기 위해 건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어업인들이 종합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5월 30일 강남세브란스병원-수협재단 의료지원 업무협약식

2021년 6월 11일 찾아가는 어촌 의료봉사활동(영덕체육문화센터)

어업인이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암 등 중대질병이 발견되어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치료비도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지원사업은 어업인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통해 어촌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돌아오는 어촌 구현을 위하여 어업인 주거환경 개선,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어촌지역 다문화 가정 방문 지원, 어촌지역 정보화기기 지원사업을 전개하였다.

어업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2017년 어촌 희망나눔단 운영으로 시작하여 2019년 사업 명칭을 바꿨으며 제반 시설이 열악한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수중 정화활동, 바닷가 쓰레기 수거 등으로 어촌환경을 개선하고 어업인 공동시설의 개보수, 도배, 벽화그리기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한편, 폭염에 취약한 고령 어업인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에어컨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폭염에 열악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어업인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또한 경제적 여건 등으로 모국방문이 힘든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왕복 교통비와 체재비 등을 지원하여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촌사회 정착에 기여하였고, 정보기술로부터 소외된 저소득층 어업인들에게 컴퓨터를 지원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어업인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어업인들이 생산한 수산물의 유통, 판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9월 14일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넷째, 함께 하는 어업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수협(어업인) 복지대상 시상, 수산관련 도서보급 지원, 어업인 리더 경영마인드 교육, 여성 어업인 문화강좌, 어촌지역을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등을 실시하였다.

어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따뜻한 사랑의 나눔 실천을 통해 재단의 재원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어촌지역사회의 유지발전에 크게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해 어업인 복지대상을 포상함으로써 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이끌어가는 복지 리더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자발적 기부 참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수산관련 도서보급 사업은 2011년 어촌지역 도서보급 사업으로 출발하여 도서관, 대형서점 등의 부재로 다양한 도서 구입이나 열람이 어려운 어촌지역 소재 초·중·고교나 수산관련 대학교,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도서를 보급하여 수산업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고 수산업 인재 육성에 기여하였다.

어업인 리더 경영마인드 교육은 어업에도 경영적 감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경영 주체로서의 소양을 배양하고 조업활동에 필요한 기초 지식, 수산 관련 법령의 적용 등 경영마인드 함양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실시하였고, 여성 어업인의 문화수준 향상과 전문능력 개발,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강좌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낙도, 벽지 지역 등 문화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과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추진하였다.

재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은 도시민과 어업인의 복지 혜택 수준 차이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재단에서 진행 중인 어업인 지원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전국 어촌에 골고루 혜택을 주는 한편, 어업인들이 절실히 원하는 부문을 집중 발굴하여 교육, 문화, 복지에 대한 어업인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어업인과 수산업의 역할 및 지원 필요성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민과 정부,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더욱 많은 관심과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국내 유일의 어업인 복지 전담기구로서 재단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자 역할이다.

6. 그 외 권익보호 활동

가. 수산분야 공약 전달

전국 수산인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당시)에게 일방적인 해상풍력 개발, 군납수산물 경쟁조달 전환에 따른 군장병과 수산인 피해, 현실성 없는 어선감척사업 등 시급한 현안 해소를 요청하며 수산분야 공약을 제안했다. 임준택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수협중앙회장)은 2022년 1월 15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행사에서 윤석열 후보를 만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산분야 공약 제안서를 전달했다.

임준택 회장은 공약제안서를 통해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암담하다”며 “일방적인 해상풍력발전소 설치와 국방부의 군 급식 조달체계 개편, 현실성 없는 어선 감척사업과 외국인 선원 도입 문제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며 공약 반영을 요청했다.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어업인들이 생계수단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정한 어업인 의견수렴절차 준수와 신중한 사업추진 필요성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급식용 수산물 조달방식의 경쟁입찰 전면 도입과 관련해서는 “질이 떨어지는 수입 수산물을 군 장병에게 먹이고 어업인들은 내다 팔 곳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수협을 중심으로 국산 수산물을 공급하는 현행 납품 체계 유지를 요청했다. 어선감척사업에 대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현실성 없는 보상으로 인해 어업인들이 폐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한 채 적자 조업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준택 회장이 전달한 대선 공약 건의서에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가 최근 채택한 10대 중점 공약 과제인 ① 미래세대를 위한 수산자원 관리 및 보전 ② 양식어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지원 ③ 수산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과 확대 ④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⑤ 안전망 구축을 위한 수산재해보험 확대 ⑥수산금융 지원 대상 확대 및 금리 인하 ⑦ 수산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⑧ 어업인 수급 안정 및 전문인력 육성 ⑨ 수산업 어촌의 ESG 및 스마트화 추진 확대 ⑩고효율 저탄소 연근해어선 구조개혁 등이 담겼다.

2022년 1월 15일 대선후보 초청행사에서 윤석열 후보(당시)에게 수산공약 건의서 전달

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함에 따라 2년 뒤인 2023년부터 130만 톤(2022년 1월 기준)이 넘는 오염수가 바다로 쏟아져 들어간다. 오염수를 모두 방류하는 데 약 30년이 소요될 만큼 막대한 양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고, 처리가 안 되는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제 연구기관과 전문가들도 삼중수소는 인체에 영향이 거의 없는 비교적 덜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고,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바닷물에 희석되어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수산산업인들은 수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 원전 오염수의 국내 유입 여부에 관계없이 언론 보도만으로도 수산물 소비 급감, 어촌관광 기피 등의 문제가 야기되어 수산업계의 피해는 향후 20~30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온 국민이 반대하는 가운데 수산업계에서는 수협을 중심으로 2021년 4월 14일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주한 일본대사관에 항의 방문하여 해양방출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어업인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이어 2021년 4월 20일 전국 조합장협의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끝에 전국 규탄대회를 개최하여 수산어업인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로 결의하였다.

2021년 4월 3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해상시위

2021년 4월 3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부산대회

그리하여 지난 2021년 4월 30일, 부산, 속초 등 전국 9개 권역에서 동시에 개최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규탄대회'에는 어업인 1,000여 명과 500여 척의 어선이 참여했다. 규탄대회에 참석한 전국 수산산업인들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주변국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함은 물론 우리나라 수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즉각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철회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과학적 검증이 수반된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요구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수협을 중심으로 수산업인들은 원산지 표시 강화, 방사능 검사 철저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들의 방사능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① 방사능 모니터링 철저 ②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며 수산업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2021년 5월 21일 수협은 「일본 원전 오염수 대응단」을 구성하여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활동 전개, 수산물 소비촉진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응단은 어업인대응팀, 수산물대응팀으로 나누어 수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촉구 등 대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수협에서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수산위원회와 연대하여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해양방류 추진에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2021년 9월 14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이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수협중앙회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ICA 수산위원회에서는 2021년 8월 25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까지 발표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해양방출은 반드시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와 투명한 정보공개와 과학적 검증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 어촌피해현장 대응

수협에서는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어업인들을 위로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대책을 건의하고,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등을 통해 어촌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9년 9월 17일,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태풍 '링링'으로 밀려온 해양쓰레기 정화활동과 어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 궁평리와 백미리 어촌계를 방문했다. 이날 수협 임직원,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임원진과 자문단, 평택 해양경찰 등 40여 명은 화성시 해안가에 밀려온 쓰레기를 수거했다.

임준택 회장은 "정기적인 어장정화와 불가사리 제거활동 등 바다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궁평리 어촌계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수협은 어업인을 적극 지원하며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월 10일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적조가 확산돼 큰 피해를 당한 경남 남해군을 찾아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어업인을 격려했다. 이날 홍 대표이사는 미조항 인근 가두리양식장을 찾아 양식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을 독려하고 위로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전남 해남군 어란진항 인근 양식장을 찾아 태풍피해로 인한 상황을 확인하고 어업인을 위로했다. 또한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당한 전남 해남군 어란진항 인근 양식장을 연이어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위로금 전달과 함께 어업인들을 위로했다.

2019년 9월 10일 적조피해 현장 방문

2019년 9월 10일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현장 방문

한편 수협은 적조·태풍으로 인한 피해 대응에 나서 신속한 보상을 위해 사고 접수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조사를 즉시 진행하고, 양식보험 가입 어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2021년 1월 22일에는 수협중앙회가 괭생이모자반 대량 유입으로 피해입은 전남 신안군 자은면 지역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어업인을 격려했다. 양산해변 등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어업인에게 해안정화 지원금을 전달했다.

신안군에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은 1,900여 톤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렇게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은 김·다시마 양식시설에 부착해 엽체를 탈락시켜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 등 어업인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2021년 1월 22일 괭생이모자반 피해복구현장

2021년 5월 6일 거제해안 누리길 바다대청소

이날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수협중앙회도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지원 등 방안을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양식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겠다"고 어업인을 위로했다.

2021년 8월 10일에는 충남지역에서 고수온으로 인해 발생한 적조피해 대책마련을 위해 어촌현장을 방문하였고, 2021년 12월 10일에는 굴양식 집단폐사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어업인을 위로하고 피해대책을 논의하였다.

2022년 1월부터 해남지역 일대의 김 양식시설에서 김 엽체가 탈색되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해 어업인들의 피해가 확산되었다. 2월 7일, 전남 해남군 일대 김 양식장 피해현장을 방문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들을 만나 위로하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속한 원인 규명과 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해 정부 등에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준택 회장은 윤재갑 국회의원, 해남군 관계자들과 만나 이번 김 양식장 피해가 가장 큰 해남군 송지면의 내장, 우근, 학가어촌계의 김 양식장을 둘러보고 피해 어업인들이 정부와 지자체를 통해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수협은 피해지역 어업인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피해복구자금인 재난지원기금을 포함한 자체적으로 지원했다.

2021년 8월 10일 충청지역 적조 대응관련 현장 방문

2021년 12월 10일 굴양식 집단폐사 피해현장 방문

2022년 2월 7일 해남지역 김 양식 피해지역 현장 방문

제4절 사업규모

1. 사업주체별

최근 10년(2012~2021)간의 수협은 새롭게 변화를 도모한 기간이었다. 특히 2016년 5월 29일 수협법이 개정되면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2016년 12월 1일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하였으며, 수협은행으로 신설되었다.

이에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2016년에 결손금을 정리하며 127억 원 공적자금을 상환하였으며, 이후 2017년 1,100억 원, 2018년 1,320억 원, 2019년 501억 원, 2020년 350억 원, 2021년 609억 원으로 지난해까지 총 4,007억 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하였다.

수협의 공적자금 상환은 초반기에 비해 상환규모가 축소되었으나 2021년도에는 2020년도 대비 상환규모가 약 1.7배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협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최근 10년간 수협의 사업추진 규모 추이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10년간 수협의 사업규모는 2012년 39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82조 원으로 약 2.1배 증가하였고, 연평균 8.3% 증가하였다.

동기간 수협중앙회는 2012년 22조 2,000억 원에서 2021년 47조 3,000억 원으로 약 2.1배 증가하였고, 연평균 8.6% 증가하였고, 회원조합은 2012년 17조 3,000억 원에서 2021년 34조 7,000억 원으로 약 2.0배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8.0% 증가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수협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약 8% 수준의 사업규모 확대를 추진하였고, 10년 전보다 약 2배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8년 이후 직전년도 대비 약 5조 원 이상의 사업규모 증액을(총액 기준) 함으로써 사업증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표 1-2-9〉 연도별 수협사업비(2012~2021)

(단위 : 10억 원, 배)

연도	합계	중앙회	회원조합
2012	39,473	22,160	17,313
2013	40,625	22,749	17,876
2014	41,798	22,979	18,819
2015	43,571	23,866	19,705
2016	47,847	26,067	21,780
2017	51,534	30,110	21,424
2018	62,640	35,340	27,300
2019	69,775	40,727	29,048
2020	75,066	43,915	31,151
2021	81,971	47,256	34,715
2021/2012	2.1	2.1	2

사업주체별 수협사업비 증가 추이(2012~2021)

(단위 : 10억 원,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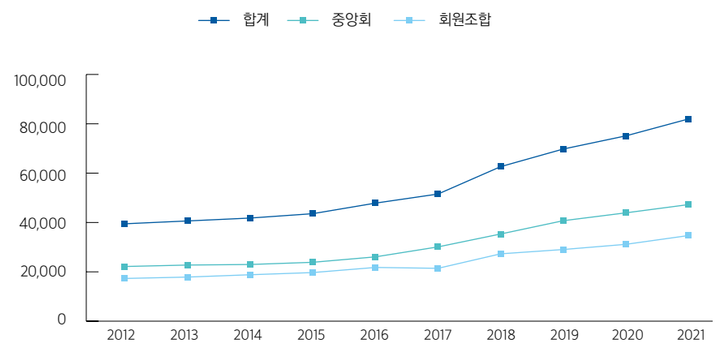

2. 사업종류별

최근 10년간 세부사업별 사업비를 살펴보면, 중앙회의 경우, 가장 큰 사업규모인 수협은행은 15조 6,000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약 2.5배 증가하였으며, 상호금융은 4조 4,000억 원에서 6조 4,000억 원으로 1.4배 증가하였으나 공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은 감소하였다.

또한 회원조합의 경우 가장 큰 사업규모인 상호금융이 11조 7,000억 원에서 28조 2,000억 원으로 2.4배 증가하였으며, 교육지원사업은 270억 원에서 460억 원으로 1.7배, 경제사업 4조 9,000억 원에서 5조 9,000억 원으로 1.2배 증가하였으나, 공제사업은 소폭 감소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최근 10년간 중앙회의 교육지원사업은 사업규모가 감소하였으나 회원조합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공제사업은 중앙회와 회원조합 모두 사업규모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2-10〉 사업종류별 수협사업비(2012~2021)

(단위 : 10억 원, 배)

연도	구분	합계	교육지원	경제	공제	상호금융	수협은행
2012	합계	39,473	208	6,417	1,177	16,107	15,564
	중앙회	22,160	181	1,476	497	4,442	15,564
	회원조합	17,313	27	4,941	680	11,665	-
2013	합계	40,625	77	6,419	919	17,016	16,194
	중앙회	22,749	49	1,518	358	4,630	16,194
	회원조합	17,876	28	4,901	561	12,386	-
2014	합계	41,798	72	6,281	820	17,977	16,648
	중앙회	22,979	44	1,444	289	4,554	16,648
	회원조합	18,819	28	4,837	531	13,423	-
2015	합계	43,571	74	5,990	852	19,234	17,421
	중앙회	23,866	46	1,269	281	4,849	17,421
	회원조합	19,705	28	4,721	571	14,385	-
2016	합계	47,847	80	6,047	804	20,971	19,945
	중앙회	26,067	50	1,233	240	4,599	19,945
	회원조합	21,780	30	4,814	564	16,372	-
2017	합계	51,534	91	3,854	768	23,422	23,399
	중앙회	30,110	57	1,341	217	5,096	23,399
	회원조합	21,424	34	2,513	551	18,326	-
2018	합계	62,640	96	7,090	816	26,831	27,807
	중앙회	35,340	56	1,457	249	5,771	27,807
	회원조합	27,300	40	5,633	567	21,060	-
2019	합계	69,775	99	7,081	823	29,573	32,199
	중앙회	40,727	59	1,503	259	6,707	32,199
	회원조합	29,048	40	5,578	564	22,866	-
2020	합계	75,066	89	7,217	842	31,148	35,770
	중앙회	43,915	51	1,308	269	6,517	35,770
	회원조합	31,151	38	5,909	573	24,631	-
2021	합계	81,971	143	7,377	871	34,577	39,003
	중앙회	47,256	97	1,451	314	6,391	39,003
	회원조합	34,715	46	5,926	557	28,186	-
2021/2012	합계	2.1	0.7	1.1	0.7	2.1	2.5
	중앙회	2.1	0.5	1.0	0.6	1.4	2.5
	회원조합	2.0	1.7	1.2	0.8	2.4	-

주) · 상호금융, 수협은행 : 예수금 평잔
· 교육지원 : 예산액 → 지도사업비(저리자금지원액 포함)

사업종류별 수협사업비 증가 추이(2012~2021)

(단위 : 10억 원,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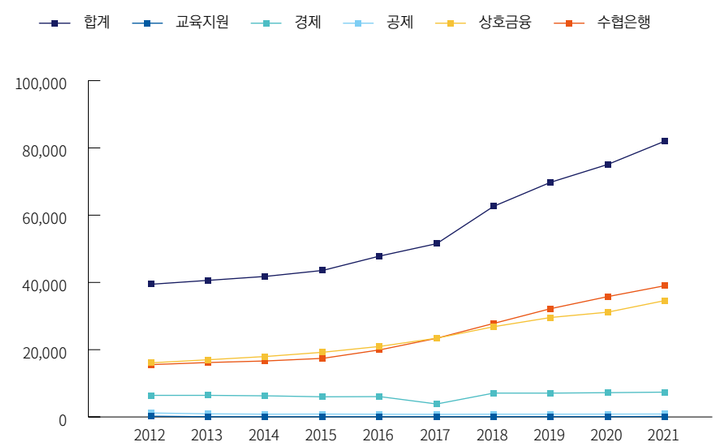

최근 10년간 수협의 세부사업별 사업비 규모를 살펴보면, 중앙회는 수협은행 74.8%, 상호금융 17.3%, 경제사업 4.7%, 공제사업 3.0%, 교육지원사업 0.2%로 수협은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회원조합은 상호금융 75.2%, 경제사업 21.4%, 공제사업 3.3%, 교육지원 0.1%로 상호금융이 가장 큰 규모인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10년 평균 기준)

최근 10년간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세부사업 비중(2012~2021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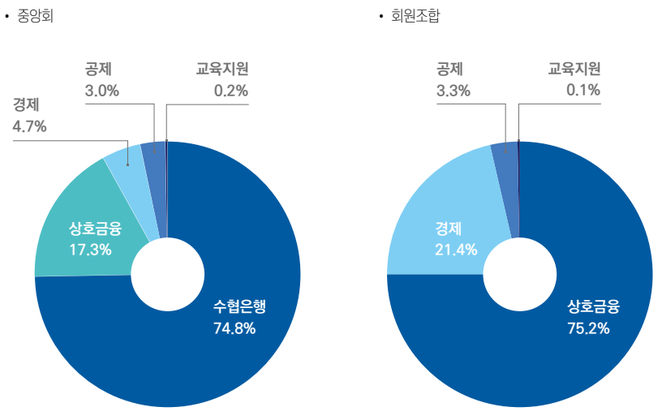

제5절 자산규모 및 경영성과

1. 자산규모

수협의 2021년 자산규모는 지난 2012년에 비해 2배 증가한 100조 4,000억 원으로 중앙회 61조 4,000억 원, 회원조합은 39조 원 규모다. 수협은 어업인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경영기반 안정을 위해 경제사업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표 1-2-11〉 수협의 연도별 자산액(2012~2021)

(단위 : 천억 원, 배)

연도	합계	중앙회	회원조합
2012	504	312	192
2015	565	344	221
2018	804	501[1)] 128(중), 373(은)	303
2021	1,004	614 142(중), 472(은)	390
2021/2012	2.0	2.0	2.0

1) 2016년 12월부터 중앙회와 은행이 분리되어 별도 법인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앞 연도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이를 합친 것임. (중)은 지도경제사업부문, (은)은 은행을 말함.

수협의 자산증가 추이(2012~2021)

(단위 : 천억 원,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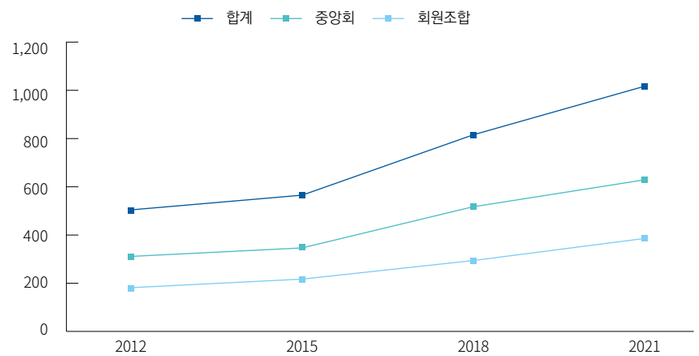

2. 경영성과

가. 사업주체별 손익

지난 10년간 수협의 경영 이익은 연평균 14.9%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경영 이익은 4,150억 원으로 수협은행을 포함한 중앙회 2,535억 원, 회원조합 1,615억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불과 10년 전의 1,181억 원에 비해 3.5배나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산물 소비감소, 100만 톤 미만의 연근해 어획량, 해양풍력발전으로 인한 조업구역 축소 등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치는 상황에서 이룬 결과라 의미가 크다.

〈표 1-2-12〉 수협의 연도별 손익[1)](2012~2021)

(단위 : 억 원)

연도	합계	중앙회	회원조합
2012	1,181	648	533
2015	1,601	684	917
2018	3,844	2,511 208(중), 2,303(은)	1,333
2021	4,150	2,535 319(중), 2,216(은)	1,615
2021/2012	3.5	3.9	3.0

1)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잉여액이다

수협의 손익증감 추이(2012~2021)

(단위 : 억 원,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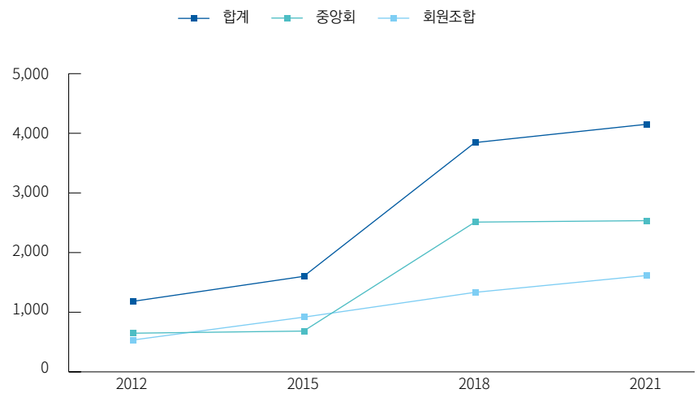

나. 중앙회 사업부문별 당기순이익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 수협의 경영성과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 2012년 648억 원에 불과했던 중앙회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이보다 3.9배 증가한 2,535억 원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해 지도경제부문 319억 원, 수협은행 2,21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지난 10년간 수협의 당기순이익은 연평균 14.6%의 지속적인 경영성장을 일궈냈다.

〈표 1-2-13〉 중앙회의 사업부문별 당기순이익

(단위 : 억 원)

연도	합계	지도경제	수협은행[1]
2012	648	137	511
2013	489	55	434
2014	512	69	443
2015	688	103	585
2016	1,010	412	598
2017	2,177	225	1,952
2018	2,511	208	2,303
2019	2,340	148	2,192
2020	2,121	301	1,820
2021	2,535	319	2,216

1) 수협은행 경우 2017년부터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이전 자료와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회에 포함.

중앙회의 사업부문별 당기순이익 추이(2012~2021)

(단위 : 억 원,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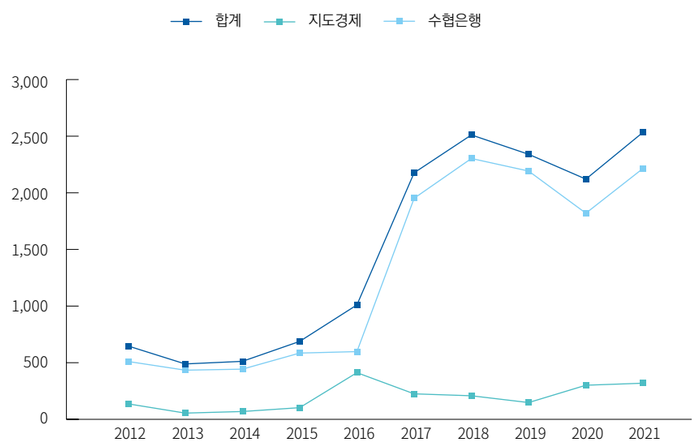

부문별로 지난해 지도경제사업부문 당기순이익은 총 319억 원으로 상호 181억 원, 공제·양식·안전 84억 원, 경제 등 54억 원이다. 이는 2020년 301억 원보다 18억 원 증가하는 등 지난 10년간 연평균 8.8%의 성장을 이끌어오며 경영기반이 크게 향상됐다.

상호금융은 조합 예수금 감소에 따른 운용 규모 축소와 금융시장 변동성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의 지속적인 확대로 운용수익이 상승한 결과 마진율이 개선돼 성과를 견인했다.

공제사업도 공제료 수익과 자금 운용수익 등 증가에 힘입어 호조세를 보였는데, 저축성·보장성 보험료 수익이 전기 대비 모두 증가했고 전체 보험료 수익 중 보장성 보험 비중을 증가시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경제사업은 2019년 흑자로 전환된 이후 영업이익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통해 매년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도 급식사업(단체급식, 군급식)과 직판사업, 구매사업 등에서 영업이익을 늘리고 판매관리비를 절감하는 등 수익성 개선에 주력하며 기록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수협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216억 원으로 전년대비 21.8% 증가하는 등 지난 10년간 연평균 15.8%의 놀랄만한 경영성과증가를 이끌어 냈다. 이는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높은 대출자산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신규고객 기반 확대와 핵심 예금 증대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함께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러한 수협의 지속적인 경영성과 향상에는 임준택 회장이 강조해 온 원가절감 및 불요불급한 비용 제거에 의한 효율성 확보, 수익사업과 현안 중심의 핵심인력 중용 등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취임 이후부터 경영체질 개선을 강조하며 위기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역량을 극대화한 홍진근 대표이사의 경영 리더십이 뒷받침되며 수협은 역대 최고 기록을 매년 새로 쓰는 성과를 내고 있다.

2020년 7월 상반기 결산보고 회의

제2편 수협운동사

제1장 수협운동의 태동
제1절 재래의 수산관계 계(契)
제2절 한말(韓末)의 자생적 수산 3단체
제3절 일제강점기의 수산단체
제4절 광복 이후의 수산단체

제2장 수산단체의 정비와 수협의 탄생
제1절 수산단체의 정비
제2절 협동조합운동의 전환
제3절 수협의 탄생과 수협운동의 전개
제4절 수협운동의 주체와 역할

제3장 수협운동의 시련
제1절 UR협상타결과 대응
제2절 IMF 금융위기의 극복
제3절 신 한일·한중어업협정의 영향

제4장 한국 수협의 국제적인 활동
제1절 ICA와 한국의 수산업협동조합
제2절 수협중앙회의 ICA 활동

제1장
수협운동의 태동

1962
2022

제1절 재래의 수산관계 계(契)

1. 계(契)의 역사와 종류

조선시대의 수산단체는 어촌의 계(契 또는 稧)로부터 출발하여 오늘날 한국의 수협운동을 일으킨 선구적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계라는 명칭은 같은 한자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명칭이다.

계는 지연적 유대나 혈연적 관계 또는 산업적 기반에 입각하여 조직된 상호협동조직의 성격을 지닌 일종의 상호부조적 단체로서 역사가 깊을 뿐만 아니라 종류도 다양하였다. 계의 종류에 대하여 연구한 대표적인 4명의 연구를 토대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수산단체사의 분류

①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
② 부조(扶助)를 목적으로 하는 계
③ 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
④ 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계
⑤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계
⑥ 기타

나. 가와이 히로타미(河合弘民)의 분류

① 납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계
② 보험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계
③ 식리(殖利)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계
④ 공동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계
⑤ 공동구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계
⑥ 사행(射倖)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계
⑦ 학교경영을 위한 계
⑧ 사교, 친목 및 풍습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계

다. 시가타 히로시(四方博)의 분류

① 지역적 단체로서의 계
② 특권단체로서의 계
③ 산업단체로서의 계
④ 호조, 교유단체로서의 계

라. 최재석(崔在錫)의 분류

① 공공 목적의 계
② 부조 목적의 계
③ 산업 목적의 계
④ 금융 목적의 계
⑤ 오락 목적의 계

최재석은 계를 상호부조정신에 기초한 촌락사회의 공생적 자생집단으로 규정하고, 관혼상제뿐만 아니라 산업과 금융문제 해결에도 상호협동적 집단기능을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표 2-1-1〉 일제 중기 우리나라 계(契)의 실태

구분	1926			1938		
	계의 수(개)		계원 수(명)	계의 수(개)		계원 수(명)
공공 목적의 계	1,623	(9.1)	82,312	4,891	(17.5)	231,775
부조 목적의 계	11,696	(65.5)	351,172	16,577	(59.2)	429,322
산업 목적의 계	2,187	(12.3)	101,443	2,541	(9.1)	81,390
금융 목적의 계	2,073	(11.6)	134,139	2,358	(8.4)	96,728
오락 목적의 계	264	(1.5)	5,414	1,633	(5.8)	28,937
계	17,843	(100.0)	674,480	28,000	(100.0)	868,152

자료 : 최재석, 한국농촌사회연구, 일지사, 1975.

상기 분류에 속하는 계는 대부분이 조선시대부터 존재해 왔으나, 그 가운데는 뿌리가 조선시대 이전의 시대까지 소급되는 것도 있었다. 1926년에 밝혀진 계의 수는 1만 7,843개이며, 여기에 가입된 계원 수는 67만 4,480명이었다. 12년 후인 1938년에는 2만 8,000개로 약 57%가 증가하였으며, 계원 수는 86만 8,152명으로 약 28%가 증가하였다. 부조 목적의 계가 전체의 6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산업 목적의 계였다. 여기에는 농무계(農務契), 어업계(漁業契)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계의 뜻은 계약한다는 의미 외에 합(合)이나 회(會) 또는 회합(會合)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그러므로 '서로 힘을 합하다, 서로 만나다, 같이 어울리다'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 계의 진정한 의미로 이것은 오늘날의 협동조합과 그 뜻이 상통한다.

우리나라에 계의 기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추정이 존재한다. 신라의 가배계(嘉俳契)까지 소급하는 설이 있는가 하면, 그 기원을 고려시대의 불교의식에서 시작된 소향결계(燒香結契)부터 군포계(軍布契), 문무계(文武契), 충효계(忠孝契) 등으로 발전하였다고 하는 설도 있다. 고려시대에 어업분야에 있었던 망소(網所), 곽소(藿所) 등과 같은 생산단위 역시 조선시대의 생산계 조직의 변형된 형태로 보는 견해도 있다.

조선시대는 계의 전성기였다. 충효와 효행을 강조하는 유교문화의 확산과 함께 발달한 상품생산의 영향으로 관혼상제의 계가 크게 성행하였으며, 산업 목적 또는 생산 목적의 경제적 기능을 중시하는 각종 산업계 조직이 왕성하였다.

예를 들어, 위친계(爲親契), 화친계(和親契), 종친계(宗親契), 상조계(喪助契), 혼인계(婚姻契) 등은 유교적 전통에 뿌리를 둔 상호부조 목적의 계였으며, 농무계(農務契), 진흥계(振興契), 근업계(勤業契), 상무계(商務契), 어업계(漁業契) 등과 같은 것은 산업발달과 그 진흥에 목적을 둔 계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타난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학의 선구자 이수광은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 「我國之俗凡中外鄕坊里 皆作契」라 하여 "나라 전체 방방곡곡에는 모두 계가 조직되어 있다"라 하였으며, 정약용은 그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民皆設契殖錢 合錢取者 名之曰契」라 하여 "국민 다수가 계를 조직하여 금전을 늘리며 그 이익을 크게 보는데, 그것이 이름하여 계이다"라 하였다. 또,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相會殖利者謂之契也」라 하여 "서로 모여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일러 곧 계"라 하였다.

2. 수산관계의 계(契)

조선시대에 성행한 수산관계 계는 어업계(漁業契)로 대표되고 있으나 이밖에도 선박계(船泊契), 선계(船契), 선창계(船倉契), 어망계(漁網契), 어부계(漁夫契), 어계(漁契), 해업계(海業契), 선촌계(船村契), 포패계(捕貝契), 대구계(大口契) 등으로 다양한 계가 존재하였다.

가. 어업계(漁業契)

수산관계 계를 대표하는 것은 어업계였다. 어업계는 계의 여러 종류 가운데서 수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 또는 수산업단체로서의 계인 동시에 공동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계에 속하는 것으로, 지역과 특정 어업에 기반을 둔 어업계의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 계였다.

전자의 대표적인 것이 조선시대 말에서 일제강점기까지 동·서해안 어촌에서 자생적으로 성립한 지역 어업계이며, 후자의 대표적인 것으로 제주도의 방진망어업계(方陣網漁業契)와 경남 사천만의 중앙리포패계(中項里捕貝契)를 들 수 있다.

1942년에 전국 어업조합에 대한 역사와 현황을 조사한 조선어업조합요람 등 자료에 의하면, 1914년부터 1930년까지 동·서해안 어촌에 조직된 어업계는 모두 20개였다(<표 2-1-2>). 이후 경북 영덕군과 황해도 해주군의 2개 어업계가 각각 1개 조합이 되고, 제주도 방진망어업계를 제외한 17개 어업계가 일제강점기에 어업조합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1962년 수협법 시행 이후에 지구별 수협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당시의 어업계 가운데는 거의 완벽한 법체계를 갖춘 어업계의 규약도 확인할 수 있는데, <표 2-1-3>으로서 볼 수 있는 황해도 해주군 용매리어업계(龍媒里漁業契)의 규약이 그 예이다.

〈표 2-1-2〉 어업계의 설립과 발전

지역	어업계의 명칭	설립연도	목적	발전형태
강원도 울진군	죽변어업계(竹邊漁業契)	1923.1	상호부조	1931.3 죽변어업조합 1961.4 죽변어협
〃 〃	후포리어업계(厚浦里漁業契)	1914, 봄	공존공영	1918.6 평해면어업조합 1962.4 후포어협
〃 〃	기성면어업계(箕城面漁業契)	1920.9	공동번영	1924.12 기성면어업조합 1962.4 후포어협
〃 〃	오산어업계(烏山漁業契)	1911.6	공동번영	1923.3 오산어업조합
강원도 통천군	통천면어업계(通川面漁業契)	미상	채조공동작업	1933.12 통천어업조합
강원도 강릉군	강릉군어업계(江陵郡漁業契)	1921.4	계원복리증진	1929.7 강릉어업조합 1962.4 주문진어협
강원도 고성군	고성어업계(高城漁業契)	1924	상호부조	1929.1 고성어업조합 1962.4 거진어협
강원도 고성군	장전면어업계(長箭面漁業契)	미상	어업개량	1929.10 장전어업조합
강원도 강릉군	묵호어업계(墨湖漁業契)	1920.9	공동번영	1923.11 망상면어업조합 1962.4 묵호어협
강원도 통천군	흠곡면어업계(歙谷面漁業契)	1918	공동시설	1933.6 흡곡어업조합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어업계(寧海面漁業契)	1917	상호부조	1923.3 영해면어업조합 1962.4 축산어협
〃 〃	대진어업계(大津漁業契)	미상	상호부조	1923.3 영해면어업조합
황해도 옹진군	용호도어업계(龍虎島漁業契)	미상	상호부조	1923.3 용호도어업조합 1962.4 용유어협
〃 〃	어화도어업계(漁化島漁業契)	1922.4	상호부조	1927.6 어화도어업조합 1962.4 용유어협
황해도 해주군	용매리어업계(龍媒里漁業契)	1925.4	어업발전	1942년 용매리어업조합
〃 〃	영양리어업계(迎陽里漁業契)	1925.1	어업자금융통	청룡면, 계원수 600명

자료 : 조선어업조합중앙회, 조선어업조합 요람, 1942, pp.77~398.
수협중앙회, 어촌계실태조사, 上권, 1967, p.223.
조선총독부 농상공부, 한국수산지, 3권, 1910, pp.410-416.

〈표 2-1-3〉 용매리어업계규약(龍媒里漁業契規約)

제1장 총칙

제1조 본 계는 본 계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어업자를 계원으로 하며 어업권을 얻은 계원의 사업을 보호하고 이익을 증진하여 공동시설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본 계는 황해도 해주군 청룡면 용매리어업계(龍媒里漁業契)라 칭한다.
제3조 본 계의 구역은 황해도 해주군 청룡면 용매리 일원으로 한다.
제4조 본 계의 사무소는 황해도 해주군 청룡면 용매리에 둔다.
제5조 본 계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계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며, 계장은 그의 주소 씨명 및 생년월일을 파악하여 계원명부에 기재한다.
제6조 계원이 어업 폐지 또는 기타 사유로 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 내용을 계장에게 신고한다.
제7조 계원의 주소 등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장에 곧 신고한다.
제8조 앞의 2조의 신고사항은 계원 명부에 기록하며 또 정정한다.

제2장 역원

제9조 본 계에는 다음의 역원을 둔다.
계장 1인, 이사 1인, 감사 2인, 서기 1인, 역원은 계원 중에서 공과금 5원 이상을 납입한 자에 한하여 선거로 선임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 계장은 계의 사무를 집행하며, 계를 대표한다. 이사는 계장을 보좌하며, 계의 사무를 처리한다. 감사는 계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감사하며, 서기는 계장의 명을 받아 계의 사무에 종사한다.
제11조 계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감사와 서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역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이사 및 서기는 총대회(총회)의 결의로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 계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역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그 직을 그만둘 수 없게 한다.

제3장 회의

제14조 계원 총회는 통상 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단, 총회를 대신하는 총대회를 둘 수 있으며, 총대회의 수는 한 마을에 3인씩 지정하여 구성한다. 총대회는 1년에 1회이며, 매년 2월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계장이 소집한다.
제15조 계원총회 또는 총대회의 소집은 적어도 개최일 3일 전에 계장이 회의 목적과 회의사항 및 회의장소 등을 계원 전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16조 계원총회 또는 총대회의 의장은 계장이 되며, 계장의 유고시에는 이사가 이를 대신한다.
제17조 계원총회 또는 총대회를 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하며, 출석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 계원총회 또는 총대회의 의결사항은 의장 및 출석계원 2명 이상이 날인하여 이를 준수해 계출한다.
제19조 계원총회 또는 총대회의 의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대회에서 정한다.

제4장 회계 및 재산관리

제20조 계의 사업연도는 1년으로 하며, 매년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로 종료한다.
제21조 매년도의 잉여금은 계원 총회 또는 총대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한다.
제22조 기금, 조난구휼자금 및 기타 현금은 우편저축 또는 금융조합예금으로 관리한다.
제23조 계장은 매년도 수지결산서, 잉여금처분서 및 재산목록과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감사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계원총회 또는 총대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이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본 규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계원총회 또는 총대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제25조 계원의 어업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천해바지락(淺蜊) 채취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1개월간의 금어기를 제외하고 수시로 계원 공동으로 이를 채취할 수 있다.

2. 기타 어업은 어기 중에 적의 어업에 종사할 수 있다.
제26조 계비 부과와 징수는 총대회 결의로 별도로 정한다.
제27조 계비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계원별로 부과하며, 5월말까지 징수한다.
제28조 납입한 계비는 어떠한 이유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제5장 공동시설사업

제29조 본 계는 어촌의 공동복리증진과 어업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선 연안에 제6종 면허[1]를 출원하며, 그 어획물의 공동판매 및 일용품의 공동구매 등 필요한 시설을 둔다
제30조 공동시설사업의 규정은 계원총회 또는 총대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1조 조난규율금 자금은 계원총회 또는 총대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지출한다.
1. 계원 또는 그 가족의 조난으로 어구 또는 어선이 상실, 훼손되었을 때 신조 또는 수선비의 보조
2. 계원 또는 그 가족의 조난으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당하는 경우 의료비 또는 장례비의 보조
3. 계원 또는 그 가족이 표류하였을 때에 귀향 여비의 보조

제6장 위약자 처분

제34조 계원이 다음 각 호를 위반하는 경우 5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1개년 간 패류채취를 금한다.
1.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어업행위
2. 계비 또는 기타경비의 부과를 2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그 의무를 이행치 않는 경우
3. 계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4. 범죄 또는 기타 부정행위로 계의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5조 위약처분은 감사의 의견을 들어 계장이 내린다.
제36조 위약처분을 받은 자는 지정기간 내에 과태금을 완납해야 한다.

제7장 해산 및 청산

제37조 계를 해산할 때에는 계장이 청산인이 된다. 단, 계원총회 또는 총대회의 의결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청산인은 청산 및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925년 10월

1 제6종면허(第六種免許)란 당시 시행 중인 어업령 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한 포개전용어업(捕介專用漁業)과 채조전용어업(採藻專用漁業) 및 포어전용어업(捕漁專用漁業)의 면허를 말한다.

자료 :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제17집, 1925.

나. 방진망어업계(防陣網漁業契)

방진망어업은 조선시대 말에서 일제강점기 초까지 제주도 연안에서 이루어져 온 독특한 멸치잡이 어업으로, 어법은 선망류(旋網類)의 일종이다. 어업의 규모는 망선 2척에 선원 수 척당 10인, 총 20인, 지휘선(手船) 2척에 선원 수 척당 2인 총 4인, 큰 뗏목(大筏) 4척에 선원 수 척당 2인 총 8인, 작은 뗏목(小筏) 4척에 선원 수 척당 2인 총 8인으로, 총 어선 수 12척에 총 선원 수 40인으로 구성된 대규모 어업이었다. 조업도는 일본인 수산학자 와다 쵸조(和田長三)에 의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방진망(防陣網)의 조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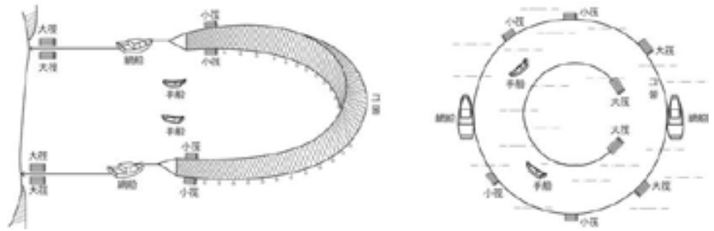

방진방어업은 개인이 단독으로 경영하는 것은 극히 드물며, 보통 수십 명으로 구성된 계 또는 조합조직에 의해 자본과 노동을 공동 부담하여 어업을 행해나가는 공동경영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어업경영조직은 매우 완비되어 있어서 최고 책임자로 조장(組長)이 있고 그 아래에 부조장을 두었으며, 부조장 아래에는 공원(公員)이 있었다. 모두 방진망어업 경영에 참여한 계의 구성원들이다.

한편, 조장은 도가(都家)라고도 불렀으며 부조장은 소임(所任)이라 하였다. 도가는 방진망 어업경영에 관한 일체의 일을 처리하는 한편, 소임은 도가를 보좌하면서 어망을 구입하거나 때로는 여러 계원들과 함께 어망공동제작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어획물의 처분은 생선을 조합원인 계원에게 균등 분배하였으며, 도가와 소임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분배분 외에 1인 반분(一人半分)을 더 가지게 하였다.

이상은 1910년에 간행된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 제3집 제주편의 어업조사 내용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다. 또한 인용문에서는 조합과 계, 조장과 계장이라는 용어가 번갈아 나오며, 도가와 소임 및 유사(有司)라고 하는 조선시대 계조직의 직위명칭이 조합조직의 직위명칭과 혼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첫째, 조합은 계에 대한 일본식 표현에 불과하므로 한말 제주도 연안의 방진망어업조합 조직은 방진망어업계를 지칭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도가는 조선시대에 상업조직의 집행적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므로 이는 곧 상업계 또는 산업계의 계장과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제주도 연안에서만 볼 수 있는 멸치잡이 특수어법인 방진망의 어법 특성과 어업경영 규모에 비추어 이 어업의 경영은 어장 공유를 매개로 하여 다수의 어업자들이 계조직을 구성해 협업의 형태로 이루어 나간 어업공동경영의 한 형태였다. 따라서 그와 같은 어업공동경영의 주체가 곧 방진망어업계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다. 중항리포패계(中項里捕貝契)

포패계(捕貝契)는 동·서해안 어촌에서는 없었으며 남해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주목을 끈다. 경남 사천 내만에 위치한 중항리라는 어촌에서 패류양식개발을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 중항리포패계였다. 이 계는 당시 어촌지도자 최영호 씨(작고)의 노력으로 1929년에 설립해 1959년까지 30년간 존속하였다.

당시 중항리 주민 50여 호 가운데서 약 70%를 차지하는 35인을 계의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하였다. 계원의 균등 출자(1인당 8원)로 자본금을 조성하고, 관(官)으로부터 2건의 양식장을 면허받아 한 곳은 꼬막양식장으로 하였으며, 또 한 곳은 송지식(松枝式) 굴 양식장으로 각각 개발하였다. 양식장 시설과 생산물 채취작업은 모두 공동으로 하였으며 수확물은 균등하게 공동 분배하였다. 계원들은 직접 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참여도가 왕성하였으며, 계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포패계는 단순한 전통적인 계 조직에서 벗어나 근대적 조직 성격을 띤 새로운 임의 조직으로 개편을 단행하여 명칭을 「중항리포패조합」이라 하였으며, 다시 「중항리모려조합(中項里牡蠣組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1959년까지 존속하였다.

중항리포패계로 출발한 중항리모려조합은 그 후 계속해서 기능을 유지해 오다가 1959년 5월에 35명의 구성원 전원이 모여 해산총회를 열고 포패계 30년의 역사를 마감하였다. 대신에 이 계는 3년 후 1962년 10월에 수협법의 시행과 함께 중항어촌계(中項漁村契)로 재탄생하였다. 다음 그림은 중항리포패계 30년간의 활동을 기록한 금전출납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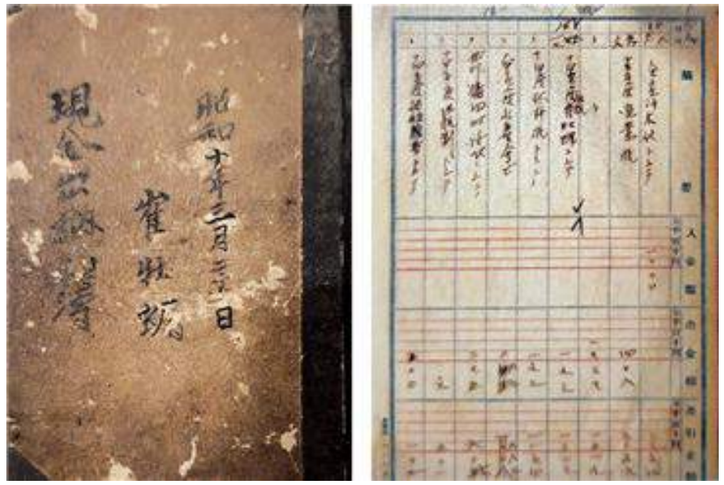

1935년 중항리포패계의 금전출납부

라. 제주도 해업계(海業契)

제주도 해업계는 1909년 12월 10일자 대한매일신보 기사에 의해 알려진 계(契)로서 “부산항에 거주하는 주시용이란 자가 한말에 울산, 동래, 거제 등 세 곳에 출가한 제주도 해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업계를 설립하였다”라는 기사가 실려 있다. 어업계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며, 제주도 내의 해녀와 육지로 출가한 해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산관계의 계였음이 확실하다. 1920년 4월 제주도 제주면 삼도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설립한 제주도해녀어업조합(濟州島海女漁業組合)의 연혁에서도 해업계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조합 연혁에 의하면, 구한말부터 제주도에서는 해녀들이 중심이 되어 제주도 내 해녀는 물론 육지로 나간 출가 해녀들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계 형태의 자생적 어업공동체를 조직한 적이 있다는 기술이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자생적 어업공동체는 바로 해업계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 기타 수산관계의 계(契)

가) 어계(漁契)

조선시대는 상업적 어업에서뿐만 아니라 유어(遊漁) 분야에서도 계가 조직된 사례가 있었다. 이것이 어계라고 하는 수산관계 계였다. 당시에 작성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어계서첩(漁契書帖)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계도 일종의 어업계라고 할 수 있겠으나 사교, 친목, 교유 또는 오락을 목적으로 조직된 계였다는 점에서 위의 어업계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나) 어부계(漁夫契)

조선시대의 여러 문헌에는 어부계(漁夫契) 또는 어부계공인(漁夫契貢人)이라는 용어가 발견된다. 이 계는 조선시대에 조정이나 관공서에 수산물을 공납하는 공물계(貢物契)였으며, 어업생산과는 무관한 계였다.

조선시대 선조기에 실시된 대동법(大同法) 이전에는 각 지방에 할당한 공납물을 현물로 직접 상납하게 하였으나 대동법 실시 이후부터는 현물 대신에 포(布), 목(木), 전(錢)으로 공납물을 대체하였다. 이를 대동미(大同米)라 하였으며, 이것을 당시에 관청이 선정한 공물 주인으로 하여금 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달하여 납입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공물 주인 가운데서는 계를 조직하여 물자를 공납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것이 공계(貢契) 또는 공물계(貢物契)였다. 그 가운데는 생선을 비롯한 각종의 수산물을 공급하는 공인도 있는데, 이 계가 육전조례에 등장하는 어부계이다.

이러한 공인(貢人)은 조선시대에 독자적인 지위와 직업을 가진 계층으로 성장하였으며, 조선시대 후기에 와서는 중요한 경제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부계는 수산업과 직접적인 관계를 지니는 것은 아니었으나 수산물 유통과정에 개입하는 특권단체로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였다.

다) 대구계(大口契)

대구계는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왕에게 음식을 올리는 수라간(水剌間)에 고급 수산물의 하나인 대구를 공납하는 공인(貢人)의 계를 대구계라 하였다. 대구계가 있었다면 그 밖의 다른 어류명, 예를 들어 전복계(全鰒契)나 미역계(藿契) 같은 것도 있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유사한 계로 압조계(鴨鳥契)가 있었는데, 역시 관청에 오리를 잡아 바치는 공인계의 일종이다.

라) 어망계(漁網契)

일본인 이타니 젠이치(猪谷善一)가 「조선경제사(1928)」에 소개한 계(契)로, 어업자들이 어망의 공동조달과 공동제작을 목적으로 어망계(漁網契)를 조직하였으며 조선시대 말부터 한국의 어촌에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고 한다.

마) 선계(船契)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제17집(1926) 「조선의 계」에 소개된 계(契)로, 도강(渡江)의 목적이라는 공공의 편리를 위하여 선박의 공동 건조와 도선의 운영을 담당하였으며, 일명 선박계(船舶契)라고도 하였다.

바) 선창계(船艙契)

조선총독부 위의 자료에 소개된 계(契)의 하나로, 선박의 계루와 접안 및 도강목적의 선창(船艙)을 공동으로 축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 계였으며, 어선의 운용도 선창계(船艙契)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사) 선촌계(船村契)

선촌계는 조선 순조 20년(1820)의 선촌계방절목(船村契防節目)에 들어있는 계의 명칭이다. 어업계와 같은 생산 목적의 계였으며, 선촌(船村)이란 어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오늘날의 어촌계와 유사한 성격의 어촌공동체 조직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3. 어업계(漁業契)의 조합화 현상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초까지 우리나라 각 지방과 여러 분야에서 성행하고 있었던 수산관계 계 가운데서 대표적인 형태는 어업계였다. 이 어업계는 일제식민지 초 근대적 수산단체의 보급과정에서 대부분이 어업조합으로 발전하거나 또는 현대의 수협제도 시행과정에서 지구별 어협이나 어촌계로 발전하는 현상이 여러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

1911년에 조직된 강원도 울진군 오산어업계는 1923년에 오산어업조합으로 발전하였으며, 1914년에 조직된 후포리어업계는 평해면어업조합의 모체였는데, 다시 1962년 4월 「수협법」 시행과정에서 후포어협으로 발전하였다. 1917년에 조직된 경상북도 영해면어업계는 1923년에 영해면어업조합으로 개편되었다가 역시 수협법 시행 초기에 축산어협으로 발전하였다.

1918년에 조직된 강원도 통천군의 흠곡면어업계는 1933년에 흠곡어업조합으로, 강원도 울진군 죽변어업계는 1931년에 죽변어업조합에서 1962년 4월 죽변어협 설립의 모체가 되었다. 이렇게 강원도와 경북 일대에 조직되어 있었던 재래어업계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의 어업조합을 거쳐 해방 후에 지역별 수협설립의 기초가 되었다.

서해안에서도 5개의 어업계가 일제강점기에 어업조합설립의 기반이 되었다. 설립연도 미상의 황해도 옹진군 용호도어업계와 평남 용천군 소호포어업계는 용유어협과 용천면어업조합의 모체가 되었으며, 1920년대에 조직된 황해도 옹진군 어화도어업계와 해주군 용매리어업계는 그 후 어화도어업조합과 용매리어업조합으로 각각 발전하였다. 남해안에서는 한말 제주도의 방진망어업계와 경남 사천군에 중항리포패계가 있었는데, 전자는 일제 초기에 방진망조합으로, 후자는 1962년 10월에 삼천포어협 중항어촌계로 발전하였다.

제2절 한말(韓末)의 자생적 수산 3단체

1. 거제한산가조어기조합(巨濟閑山加助漁基組合)

한일합방 이전인 한말(韓末)에 경남 통영과 거제지역에서는 단체의 일본식 표현인 조합이라고 하는 명칭을 쓴 3개의 수산단체가 있었다. 거제한산가조어기조합, 거제한산모곽전조합, 거제한산가조어기모곽전조합 등 3개 조합은 우리 어업자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설립된 것이었다.

거제한산가조어기조합(巨濟閑山加助漁基組合)은 1908년 7월 10일 당시 대한제국 농상공부 대신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주소는 거제도 서북쪽에 위치한 사등면 창호리(倉湖里)에 두었다는 것이 후에 밝혀졌다. 창호리는 거제도 부속도의 하나인 가조도(加助道)에 위치하는 법정마을 이름이다. 1917년 4월 7일 조합원 320명으로 설립된 가조어업조합도 창호리에 사무소를 두었다.

그러므로 거제한산가조어기조합이 1908년 7월 10일에 당시 농상부 대신의 인가로 설립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면, 그것은 당시 수산조합 및 수산단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었던 농상공부 수산국 수산과를 거쳐 농상공부 대신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거제도 연안 해역에는 예부터 대구, 청어 등을 주 어획 대상으로 하는 정치어업이 성행하였다. 한말에는 이곳 연안 곳곳에 재래식 대형 정치어법인 어장(漁帳)과 죽방염의 전신인 방렴(防簾)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가조도 창호리(倉湖里) 일대가 어업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거제도와 가까운 통영군 한산도와 그 주변 해역에도 방렴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거제한산가조어기조합은 거제도, 한산도 및 가조도 일대의 정치망어업자들이 자신들의 어업권 보호와 어획물 판로 개척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한 수산단체였던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 단체는 조합의 업무구역이 거제도에서 한산도까지 포함한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보아 어업계와 같은 계조직과는 성격이 달랐고 동업자 조합의 성격을 가진, 정치망수협과 같은 업종별 수산단체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 뒤 후속 연구의 진행과 새로운 자료의 발굴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즉, 1908년 7월 10일 농상공부 대신의 인가로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수산단체인 거제한산가조어기조합은 당시 거제, 한산, 가조 일대의 정치망어업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밖에도 이 조합 관내의 많은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공동 참여한 지구별 어업조합과 같은 성격의 조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뒤에서 설명하는 거제한산모곽전조합의 조직 성격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며, 어기(漁基)의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치어구의 설치 장소'에 한정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기(漁基)라는 용어는 조선후기 균역법(均役法)의 실시로 인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균역법은 1751년(영조 26년)에 제정되었으며 다음해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영조는 이에 근거하여 1752년(영조 28년)에 어업자들에게도 조세를 부과하는 균역청 해세절목(海稅節目)을 반포하였다. 어기(漁基)는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용어로서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沿海捉魚 有漁箭 有漁條 有漁場 有漁基 … 地勢便好而於捉魚者謂之基」, 즉 '연해에서 어획을 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어전(漁箭)과 어조(漁條)가 있고, 그 장소로 어장(漁場)과 어기(漁基)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지세와 자연적 조건이 좋아 착어(捉魚)에 적합한 곳을 말해 어기(漁基)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때의 어기 개념에는 정치어구의 설치 장소라는, 좁은 의미의 어기(漁基)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어업이 이루어지는 적합한 장소로서의 어장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해세절목에서는 어조(漁條)와 어장(漁場)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세액을 정하였으나 어기에 대해서는 조업어선을 기준으로 징세하거나 경상도에서는 아예 수세대상에서 제외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근거할 때 조선시대의 어기는 수익성이 높은 특정어업(정치어업)의 설치 장소에 한정된 개념을 넘어서서 연안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 어장과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어기조합이 지구별 어업조합과 같은 의미의 수산단체로 통용되고 있었던 사실이 식민지 어업조합시대 초기에 설립되어 35년간 존속해 온 어업조합의 사례에서 밝혀지고 있다. 즉 1917년 5월에 경남 사천만에 설립된 '읍남 읍서면 공동어업조합'이 그 실체이다.

조합의 업무구역은 지금의 사천시인 사천군 읍남면과 읍서면, 곤양면 3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조합원 수는 465명이며, 사천군 용현면 선진리(船津里)에 사무소를 두고 있었다. 조합원 465명 가운데서 죽방렴어업 경영자는 100여 명이며 나머지 약 77%에 달하는 360여 명은 조합이 관리하는 바지락 채취어장에 참여하는 지역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 조합을 어기조합(漁基組合)으로 불렀으며, 이 조합이 1961년에 삼천포어업조합에 통합하여 해산될 때까지도 어기조합 또는 선

진어기조합으로 불렀다. 이때의 어기개념에는 죽방렴을 포함한 조합의 관리하에 있는 전용어업 구역 전체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2. 거제한산모곽전조합(巨濟閑山毛藿田組合)

거제한산모곽전조합(巨濟閑山毛藿田組合)은 1908년 7월 10일 거제한산가조어기조합이 설립된 동일 날짜에 농상공부 대신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수산단체였다. 구성원은 미역과 우뭇가사리 등 해조류가 많이 나는 거제도와 한산도 일원에서 해조류를 채취하는 지역 어업자들과 제주 해녀였다. 그러나 설립 당시 조합사무소를 어디에 두었는지, 조합원 수가 얼마였는지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

곽전(藿田)은 일반적으로 미역 채취장소를 가리키고 있지만, 모곽전(毛藿田)이라 하였을 때에는 미역을 포함하여 우뭇가사리, 가사리 등의 해조류 채취장을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다. 한말 거제도와 한산도 연안 일대에는 이와 같은 해조류가 풍부하였으며, 이 가운데서 우뭇가사리와 가사리는 한말에 이미 대일 수출의 인기품목이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산지의 관계자들에 의해 해조채취권과 판로 확대를 위한 조합운동이 전개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했다. 이에 호응한 지역 해조 채취어업자들과 해조상업자들의 움직임이 1908년 7월 10일 거제한산모곽전조합(巨濟閑山毛藿田組合)의 탄생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조합탄생 당시의 조합원 구성을 앞에서 지역어업자들과 제주 해녀들로 규정한 것은 조합탄생 20년이 지난 후에 취재한 1928년 5월 5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잘 나타나 있다. 당시 동아일보는 「제주 해녀 입어료 문제의 진정(陳情)」이라는 기사에 '1907년(융희 원년) 거제도에 모곽전조합(毛藿田組合)을 설립하고 지원주민(地元住民)과 해녀(海女)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역을 정해 각자 해조를 채취케 하였으며, 그 대가로 일정금액의 입어료를 조합에 납부하였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3. 거제한산가조어기모곽전조합(巨濟閑山加助漁基毛藿田組合)

1908년에 설립된 거제한산가조어기조합과 거제한산모곽전조합은 조합설립 2년 후인 1910년에 두 조합이 합병하여 「거제한산가조어기모곽전조합(巨濟閑山加助漁基毛藿田組合)이라고 하는 긴 이름의 조합으로 재탄생하였다.

대상어업 종목과 구성원을 서로 달리하는 두 조합이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합병하였는지, 그리고 그의 합병과 개편 설립의 시점이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 이전이었는지, 또는 그 이후였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다. 만약 한일합방 이전이었다면 우리 어업자들이 필요에 의해 설립한 자율적 수산단체로 규정될 것이나, 그 이후였다면 식민지 수산단체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수산단체사가 규정하는 현재까지의 통설은 전자일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 근거는 한일합방 후 식민지 어업령이 제정된 것이 1911년 6월이며, 이의 시행은 1912년 2월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거제한산가조어기모곽전조합을 우리 어업자들에 의해 조직된 자율적 수산단체로 보는 것이다. 또한 이 조합은 거제, 한산, 가조라는 3대 지역과 여기에 어기(漁基)와 모곽전(毛藿田)을 통합한 광역통합조직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제3절 일제강점기의 수산단체

1. 일제강점기의 수산단체 제도

일제는 1910년 8월 한일합방을 계기로 식민지 수탈을 위한 합법적이고 조직적인 작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고 개혁을 단행하였다. 수산업부문에서는 식민지어업법인 어업령을 1911년 6월에 공포하였으며, 부속 법령으로 수산단체제도도 창설하여 식민지어업 수탈에 나섰다.

첫째, 어업령에 어업조합과 수산조합의 설립을 규정한 법령을 설치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11년 6월 수산제도의 기본법인 어업령을 공포하고 1912년 2월 이의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 령 제16조에서 제19조에 걸친 4개 조항이 어업조합과 수산조합 설립에 관한 규정이었다.

둘째, 어업령의 시행과 동일부로 공포된 어업조합규칙(漁業組合規則)과 수산조합규칙(水産組合規則)이 있다. 어업령 시행과 동시에 이 두 규칙도 시행되어 1912년부터 일제 수산단체의 대표적 존재인 어업조합과 수산조합이 전국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각종 기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26년 부산수산주식회사

셋째, 1923년 1월 조선수산회령(朝鮮水産會令)의 공포로 수산회라고 하는 또 다른 수산단체가 설립된 점이다. 이 령에 의해 일제강점기의 수산단체제도는 어업조합계통과 수산회계통의 이원적 계통으로 정착되었다. 후자에 의한 것이 식민지 수산행정의 강력한 보조기관으로 설립된 '수산회'였다. 수산회는 도수산회와 조선수산회의 두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조선수산회는 1944년에 조선수산업회로 개편해 전국의 수산단체를 총괄하는, 보다 강력한 수산단체의 중앙조직으로 활약하게 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제는 합방 초기부터 식민지어업령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이 령(令)에 근거하여 어업조합규칙(1912년)과 수산조합규칙(1912년)을 제정하고, 이어 조선수산회령(1923년)을 공포하였으며, 이러한 3대 수산단체 제도를 완비하여 식민지 어업수탈을 조직적, 합법적으로 감행해 나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어업조합에 대해서는 자국식량보급을 위한 수산물 수집기관 및 어촌유지경영을 위한 중추기관으로 보호 육성하였으며, 수산조합에 대해서는 자국 수산제조업의 원료공급기관 내지는 일본인 수산업자들을 위한 어업보호기관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것은 일제강점기시대 대부분의 수산조합에서 일본인 어업자들이 조합장과 이사 등 조합집행부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말해준다.

한편, 수산회는 수산행정의 보조기관으로서 도별로 1개씩 도수산회를 설치하였으며 상급 조직으로는 조선수산회를 두어 수산정책을 뒷받침하게 하였다. 수산회의 회원은 지구 내의 어업자, 수산물 유통업자, 수산물 제조업자, 수산물 보관업자 및 어업권 향유자로 하였으며, 회원가입은 강제 가입제도였다. 그리고 회의 경영은 이들 회원이 납부하는 강제 부담금과 정부 및 각 도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말에 파악된 이상의 수산단체 조직현황을 보면, <표 2-1-4>와 같다.

〈표 2-1-4〉 1942년 말 전국의 수산단체 현황 (단위 : 개소)

지역	어업	어업조합	수산조합	도수산회	비고
					대표적인 수산조합
함경북도	19	1	4	1	함북기선건착망어업수산조합(청진) 외 3개
함경남도	12	1	3	1	제2구기선저인망어업수산조합(원산) 외 2개
강원도	18	1	2	1	강원도약유비제조업수산조합(주문진)
경상북도	9	1	1	1	제1구기선저인망어업수산조합(포항)
경상남도	25	1	6	1	청건착망어업수산조합(부산) 외 5개
전라남도	32	1	1	1	제2구잠수기어업수산조합(여수)
전라북도	7	1	-	1	
충청남도	12	1	-	1	
경기도	8	1	5	1	제3구잠수기어업수산조합 외 4개
황해도	6	1	-	1	
평안남도	6	1	-	1	
평안북도	10	1	1	1	압록강백어수산조합(신의주)
조선어업조합중앙회		1			
조선수산회				1	
계	164	13	23	13	

2. 어업조합의 설립과 보급

한일합방 후 일제는 1911년 6월 수산제도의 기본법인 어업령을 공포하고, 이듬해인 1912년 2월에 본문 14개 조와 부칙으로 된 어업조합규칙을 제정하여 어업령 시행일인 1912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이 규칙에 의하여 비로소 일제강점기에 어업조합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는데, 최초로 설립된 것이 1912년 11월 30일에 설립된 거제어업조합이었다. 업무구역은 거제면을 비롯한 거제도 9개 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조합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전신인 거제한산가조어기조합과 거제한산모곽전조합이 1910년에 통합하여 설립된 거제한산가조어기모곽전조합이 모체였으며 어업조합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발족하였던 것이다.

어업조합규칙에 의하면, 어업조합의 구역은 면(面)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당시의 거제어업조합은 거제도와 통영군 한산면을 일원으로 하는 광역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어업조합규칙에 의한 구역원칙을 벗어난 예외에 속하는 조합이었다.

이후 어업조합은 일제의 육성정책에 의해 그의 설립이 계속 확대되어 어업령 시대 초기에는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어업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조선어업령 시대인 일제 중기에 이르러서는 211개 조합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어업조합시행규칙의 시행연도인 1912년에 설립된 조합으로는 거제어업조합이 유일하였다.

한편, 일제는 어업조합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어업조합의 공동시설사업을 강화하고, 전용어업권제도(專用漁業權制度)를 창설하여 지선어장의 면허와 관리를 어업조합에 집중시킴으로써 어업자들의 조합 가입을 강제화하였다. 아울러 조합경영에 대해서는 어업조합 임원의 선임과 임면권을 도지사가 행사하도록 하는 한편 심지어 조합총회의 의결사항까지 관(官)의 인가를 받게 하는 철저한 관료통제적 단체화하였다.

1933년 거제어업조합 조합장과 임원들

1929년 4월부터 어업조합에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조합경영이 식민지 수산정책에 부합하는지를 감독하게 하는 지정조합제도(指定組合制度)를 시행한 것은 조합에 대한 관료통제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 제도의 실시로 당시 전체 어업조합의 절반 이상이 지정어업조합으로 지정되어 행정적·재정적으로 보호를 받았으나, 관의 감독은 더욱 철저히 이행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어업조합 수의 증가와 함께 조합원 수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어업자들의 조합원 가입률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일제강점기의 어업조합 수와 조합원 수 및 어업자 수(어가 호수)를 1921년, 1923년, 1925년, 1926년, 1931년, 1941년의 통계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2-1-5>와 같다.

〈표 2-1-5〉 어업조합의 조합원 수 및 조합원 가입률 추이

년도	어업조합 수	조합원 수	어가 호수	조합원 가입률
1921년	89개	27,028명	71,333호	38.0%
1923년	134개	50,324명	76,726호	66.0%
1925년	147개	56,936명	79,402호	72.0%
1926년	145개	58,426명	100,006호	57.3%
1931년	211개	115,507명	112,982호	87.0%
1941년	206개	167,894명	133,885호	125.4%

즉, 1921년의 경우 89개 조합에 조합원 수는 2만 7,028명이었으며, 이는 그해 어가 호수 7만 1,333호로서 38.0%의 가입률을 나타내었다. 기간이 지나면서 조합 수와 조합원 수 및 어업자들의 조합원 가입률이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1941년의 경우 조합원 수가 총어업자 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합 수는 1931년에 211개에 달해 최고치에 이르렀는데, 이후부터 조합보급률이 정체 상태에 놓인 것을 보면, 1930년대부터 어업조합의 보급은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고 있었다고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전 기간을 통한 어업조합의 설립과 이의 지방별 설립실태를 보면, <표 2-1-6>과 같다.

〈표 2-1-6〉 일제강점기 어업조합의 설립과 지방별 설립실태 (단위 : 개)

연도 \ 도별	경기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황해도	평남도	평북도	강원도	함남도	함북도	계
1911	-	-	-	-	-	-	-	-	-	-	-	-	0
1912	-	-	-	-	-	1	-	-	-	-	-	-	1
1913	-	-	-	-	-	7	-	-	6	-	-	1	14
1914	1	-	-	1	2	12	-	-	8	10	-	2	36
1915	1	-	-	1	2	13	-	-	8	10	-	7	42
1916	1	1	-	2	2	13	-	-	10	10	-	9	48
1917	1	-	1	2	2	16	-	-	11	10	-	10	53
1918	1	1	1	5	2	16	-	1	11	11	1	12	62
1919	1	3	2	8	2	17	-	2	11	11	1	14	72

연도 \ 도별	경기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황해도	평남도	평북도	강원도	함남도	함북도	계
1920	1	4	2	12	2	17	-	3	11	11	1	15	79
1921	1	4	3	14	2	18	-	3	11	11	2	20	89
1922	-	4	3	20	4	23	-	3	11	11	2	20	101
1923	-	4	4	24	7	23	3	7	17	17	9	19	134
1924	-	4	4	26	8	24	3	7	17	18	9	20	140
1925	-	4	4	28	11	25	3	6	19	18	9	20	147
1926	-	4	6	28	12	27	3	6	19	10	10	20	145
1927	-	4	6	28	13	27	4	6	19	10	10	21	148
1928	-	4	6	28	13	27	5	6	20	10	8	23	150
1929	-	5	6	28	13	29	8	9	20	13	9	22	162
1930	-	5	6	61	13	34	8	9	12	25	8	23	204
1931	3	5	6	61	13	35	9	9	11	25	8	26	211
1932	3	5	6	61	13	35	9	9	10	23	9	24	207
1933	3	5	6	53	13	35	9	9	11	24	9	24	201
1934	3	5	6	51	13	34	10	10	11	18	10	21	192
1935	5	6	6	51	13	34	10	10	11	18	11	19	194
1936	7	7	6	45	13	36	10	10	11	18	12	19	194
1937	7	8	7	44	13	36	12	10	11	18	12	19	197
1938	8	10	7	44	13	38	12	10	11	18	12	19	202
1939	8	11	7	44	13	35	14	11	11	18	12	19	203
1940	8	12	7	44	13	36	15	11	11	18	12	19	206
1941	8	12	7	44	13	36	15	11	11	18	12	19	206
1942	8	12	7	44	13	36	15	11	11	18	10	19	204

3. 수산조합의 설립

1930년 5월 1일 조선어업령이 시행되기 이전을 어업령시대라고 하면, 그 이후는 조선어업령 시대로 규정할 수 있다. 어업령시대에는 수산조합의 설립이 미진하였으나 조선어업령 시대에 와서는 수산조합의 설립이 활발하였다.

어업령시대에 설립된 최초의 수산조합은 조선수산조합(朝鮮水産組合)이었다. 이 조합은 각 도에 지부를 두었으며, 조합원 수는 1919년도 자료에 의하면 무려 4만여 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 조합은 1923년 수산회 조직의 발족과 함께 해산되었다.

어업령시대의 업종별 수산조합으로는 1914년 7월에 설립된 전라남도 목포해조수산조합(木浦海藻水産組合)과 같은 시기에 설립된 경남해조수산조합(慶南海藻水産組合)을 비롯하여 1917년 11월에 설립된 광양군해태수산조합(光陽郡海苔水産組合), 완도군해태수산조합(莞島郡海苔水産組合) 및 장흥군해태수산조합(長興郡海苔水産組合) 등 5개 조합이 있었다. 그러나 위의 3개 해태수산조합은 1922년 말에 모두 어업조합으로 개편됨에 따라 어업령시대에 있어서 업종별 수산조합은 경남해조수산조합 1개에 불과하였다.

조선어업령 시대를 맞이하여 일제는 수산조합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수산조합의 설립을 장려하여 여러 어업분야에서 수산조합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어업령 시행 후 가장 먼저 설립인가를 받은 것은 조선해관힐어업수산조합(朝鮮蟹罐詰漁業水産組合)이었다. 이 조합은 게와 정어리 통조림제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으로 1930년 6월 21일에 설립인가를 받았다.

대부분의 수산조합은 1930년대에 설립되었으며, 정어리어업과 기선저인망어업 및 잠수기어업 등 3대 어업부문의 수산조합 설립이 가장 활발하였다. 1940년대에는 수산조합 설립이 2개 조합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수산조합의 설립과 보급은 1930년대에 이미 완료단계에 이르렀으며, 각 수산조합은 설립 후에 곧 해산하거나 명칭과 조직에 변화를 가져온 것도 많았다.

어업령시대에 설립되어 1940년대까지 존속되어 온 것은 경남해조수산조합 하나밖에 없었으며, 모두 조선어업령 시대에 설립된 것들이었다. 조선 어업령시대의 수산조합 가운데서 정어리제조업분야의 약유비제조업수산조합(鰯油肥製造業水産組合)이 6개 조합에 달한 것을 보면 당시 정어리어업이 얼마나 성황을 이루고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제강점기 수산조합이 어떠한 성격의 단체였는가 하는 점으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업조합이 관료통제적 단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산조합 역시 관료통제하에 놓여 있었다. 예를 들어, 수산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지방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하였고, 조합총회의 중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수산조합에 대한 관료통제는 지정조합제도(指定組合制度) 실시 이후 더 강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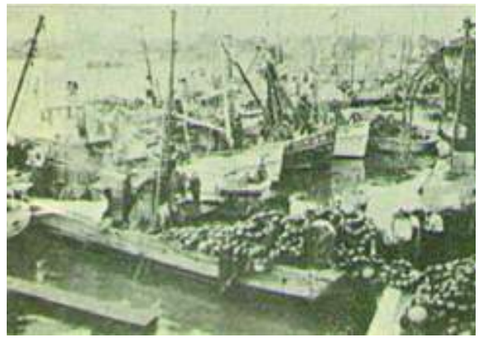

(좌측) 1930년대 조선관힐업수산조합(朝鮮罐詰業水産組合)규약 및 제 규정
(우측) 1930년대 정어리기선건착망어선

둘째, 어업조합과 마찬가지로 해당 어업자의 수산조합 가입을 강제화하였다. 수산조합 설립을 제도화한 조선어업령 제53조에는 "수산조합이 설립되면 그 지구 내에 거주하는 어업자는 그 조합의 조합원으로 한다"고 하여 가입을 강제화하였으며, 당연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셋째, 어업조합이 어촌 유지경영을 목적으로 한 단체인 데 반해, 수산조합은 특정 어업의 개량과 발달을 목적으로 한 단체였다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제는 수산단체 제도를 정비해 수산조합 설립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지원 분야는 ① 해조류생산어업, ② 정치어업, ③ 기선저인망어업, ④ 잠수기어업, ⑤ 기선건착망어업, ⑥ 수산물제조업, ⑦ 수산물수출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있었다. 이러한 지원정책의 이면에는 식민지 어업수탈을 더욱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넷째, 수산조합은 대부분 대규모 어업과 수산물제조업체에 종사한 일본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주로 일본인 수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산단체로 존재하였다. 조선 제1구, 제2구, 제3구, 제4구, 제5구 및 제6구 기선저예망어업수산조합의 조합장과 그 밖의 역원 대부분은 일본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조선잠수기어업수산조합과 조선 제1구, 제2구, 제3구 및 제4구 잠수기어업수산조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건착망어업 분야에서는 조선청건착망조합의 창립자가 당시 임겸상회(林兼商會) 총수 나카베(中機次郞)였으며, 조선청건착망어업수산조합 초대조합장은 일본인 아키야마(秋山實)이었고, 조선동해온건착망어업수산조합 초대조합장 역시 일본인 사사키(佐佐木準三郞)였다. 함경남도기선건착망어업수산조합 초대조합장도 일본인 아다치(安達誠三)이었으며, 잠수기어업분야에서도 조선잠수기어업조합(谷禹三郞)을 비롯하여 조선제1구잠수기어업수산조합(朝山和三), 조선제2구잠수기어업수산조합(山中房太郞) 등 모두 일본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수산제조업 분야의 조선통조림업수산조합장(稻井秀衛門)을 비롯하여 경남약유비제조업수산조합(佐佐木高治)과 조선약유비제조업수산조합연합회(大島良寺)도 일본인들이 조합경영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수산단체의 일제강점기 설립 상황과 업종별 보급실태를 보면, <표 2-1-7>과 같다.

〈표 2-1-7〉 일제강점기 수산조합의 설립과 보급

조합명	조합원	사무소 위치	설립 연도	비고	1942년 현재
조선해수산조합	일본인 포함 수 만 명	부산부 본정	1912.7	1923년 수산회 설립으로 해산	-
경남해조수산조합	해조판매업자	부산부 본정	1917.7	1944.2 해산	○
목포해조수산조합	〃	전남 목포부	1914.7	1942.4 해산	-
광양군해태수산조합	김양식 어민	전남 광양군 골약면	1917.11	1922.11 광양군해대어업조합으로 함	-
완도군해태수산조합	〃	전남 완도군 군내면	1917.11	1922.11 완도군해태어업조합으로 함	-
장흥군해태수산조합	〃	전남 장흥군 대덕면	1917.11	1922.11 장흥군해태어업조합으로 함	-
조선통조림업수산조합	게, 정어리통조림업자	경성부 장곡천정	1930.6	1949.11 한국통조림업수산조합	○
경상북도약유비제조업수산조합	약유비 제조업자	-	1930.10	1933.3 해산	-
함경북도약유비제조업수산조합	〃	함북 청진부	1930.11	1944.12 해산	○
함경남도약유비제조업수산조합	〃	함남 함흥	1930.10	1944.12 해산	○
강원도약유비제조업수산조합	〃	강원도 강릉군 주문진	1930.12	1944.12 해산	○
경상남도약유비제조업수산조합	〃	-	1931.3	1933년 해산	-
함경북도수출염어수산조합	정어리염장물 수출업자	함북 청진부 항정	1934.9	1944.3 해산	○
함경남도수출염어수산조합	염장청어 제조업자	함남 원산부 춘일정	1934.9	1944.3 해산	○
함경북도약정치어업수산조합	정어리정치망어업자	-	1939	1943.12 해산	○
함경북도정치어업수산조합	정치망어업자	-	1943.12	1945년 북한 편입	○
조선제1구기선저예망어업수산조합	기선저인망어민	함북 청진부 항정	1934.8	1945년 북한 편입	○
조선제2구기선저예망어업수산조합	〃	함남 원산부	1930.10	1945년 북한 편입	○
조선제3구기선저예망어업수산조합	〃	경북 포항읍	1935.2	1941년 조선제3구기선저인망어업수산조합으로 개편	○
조선제4구기선저예망어업수산조합	〃	부산부 소화동	1939.7	1941년 조선제4구기선저인망어업수산조합으로 개편	○
조선제5구기선저예망어업수산조합	〃	경성부 명치정	1936.3	1941년 조선제5구기선저인망어업수산조합으로 개편	○
조선제6구기선저예망어업수산조합	〃	경기도 인천부	1936.3	1940.10 해산	-
조선잠수기어업수산조합	잠수기 어업자	경성부 명치정	1936.3	1938.4 해산	-
조선제1구잠수기어업수산조합	〃	함남 원산부 춘일정	1938.4	1945년 북한 편입	○
조선제2구잠수기어업수산조합	〃	부산부 대청정	1938.4	1949.11 한국제1구잠수기어업수산조합	○
조선제3구잠수기어업수산조합	〃	전남 여수읍	1938.4	1949.11 한국제2구잠수기어업수산조합	○
조선제4구잠수기어업수산조합	〃	경성부 장곡천정	1938.4	1949.11 한국제4구잠수기어업수산조합	○
함경북도기선건착망어업수산조합	기선건창망어업자	함북 청진부	1930,9	1944.4 해산	○
조선청건착망어업수산조합	〃	부산부 대교통	1936.4	1949.11 한국청건착망어업수산조합	○
조선동해온건착망어업수산조합	정어리건착망어업자	조선총독부 수산과	1936.5	1943.12 해산	○
진해만정치어업수산조합	정치망어업자	경남 통영군 통영읍	1932.11	1940.7 해산	○
경상남도정치어업수산조합	〃	부산부	1940.7	진해만정치어업수산조합 개편	○
압록강백어수산조합	백어생산, 건조업자	평남 신의주 압천정	1933.2	1945년 북한 편입	○
조선한천제조업수산조합연합회	한천 제조업자	경성부 장곡천정	1936.3	1949.11 한국한천제조업수산조합	○
계 : 35					25

주 : 1) 총 35개 조합 가운데서 어업령시대의 수산조합 수는 6개 조합, 조선어업령시대 수산조합 수는 29개 조합이다.
2) ○표는 1942년까지 존속한 조합을 표시하며, 모두 25개 조합이다.

4. 수산회의 조직과 기능

일제는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1923년 1월 조선수산회령(朝鮮水産會令)을 공포하여 조선수산조합을 해산하고 도수산와 조선수산회로 구성된 수산회(水産會)를 발족시켰다.

이것은 어업령에 의하여 이미 어업조합과 수산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이들 수산단체가 미치지 못하는 수산행정기능을 새로운 수산단체인 수산회에 부여함으로써 수산행정의 보조기관 역할을 담당하게 한 또 하나의 수산단체였다.

본문 9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당시의 조선수산회령에는 수산회의 기능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두지 않았으나 일본의 수산회법(水産會法, 1921) 관계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수산회의 기능을 보면, 행정관청의 수산자문, 수산업 조사, 연구, 수산강연, 계몽, 훈련, 수산전문지 출판, 수산박람회 개최 등이었다.

1923년 4월 1일 조선수산회령의 시행과 동시에 조선수산조합의 도지부를 개편하여 전국 12개 도에 일제히 도수산회를 설립하였고, 1923년 5월 31일에는 조선수산조합을 조선수산회로 개편하고 사무소를 부산에 두었으며, 동년(1923) 12월 사무소를 경성부 대화정 1정목으로 이전하였다. 초대회장에 일본인 니시무라(西村保吉)가 선임되었고, 도수산회의 회장도 모두 일본인들로 채워졌다.

조선수산회 초대회장 니시무라(西村保吉)는 조선수산회 발족 1년 후인 1924년 4월 조선수산회 기관지 월간 '조선의 수산(朝鮮之水産)' 창간호에 조선수산회의 창립 소감을 피력하면서 수산회를 단순한 사단(社團)이 아닌 공공단체(公共團體) 또는 준수산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수산회의 회원자격에 대하여는 조선수산회령 제4조에 나타나 있는데, 도수산회는 도내의 어업자, 도내의 수산물 제조업자, 도내의 수산물 거래업자, 도내의 수산물 보관업자, 도내의 어업권 향유자로 하며 이들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원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그리고 경비까지 의무적으로 부과시켜 납입하게 하였으며, 부과금은 시·군이 이를 징수하여 도수산회에 교부하였다.

상급단체인 조선수산회는 동령 제4조에 '도수산회로써 조직한다'고 하여 당연 가입제였으며, 탈퇴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수산회는 회원가입의 강제성은 물론, 경비의 강제 징수와 정부 및 관의 보조금 지급을 법문화(法文化)하여 조직의 유지와 강화를 공권력을 통해 보호하였던 것이다. 1923년 1월 13일 조선총독부 제령 제1호로 공포된 조선수산회령 전문은 다음과 같다.

〈표 2-1-8〉 조선수산회령(朝鮮水産會令)

제1조 수산회에 관하여는 본령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수산회법(日本)에 의한다. 다만 동법 제7조 내지 제10조,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제2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27조, 제30조 내지 제32조와 제37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 수산회는 도수산회 및 조선수산회로 한다. 수산회의 지구는 도수산회에 있어서는 도(道), 조선수산회에 있어서는 조선(朝鮮)의 구역에 의한다.

제3조 수산회의 명칭에는 도수산회(道水産會) 또는 조선수산회(朝鮮水産會)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령에 의하여 설립한 수산회가 아니면 그 명칭 중에 전항에 명시한 문자(文字)를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수산회는 별도로 조선총독이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지구 내에서 어업 또는 수산물의 제조, 거래 혹은 보관의 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지구 내에서 어업권을 보유하는 자로 도수산회를 설립하며, 조선수산회에 있어서는 도수산회로써 이를 조직한다.

제5조 수산회는 경비 또는 과태료의 징수를 부 면(府 面)에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산회는 부면이 징수한 금액의 백분의 5를 그 부면에 교부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재해로 인하여 부면이 이미 징수한 경비 또는 과태금을 분실한 때에는 수산회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부면에 대하여 그 납입의 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6조 경비 및 과태금의 독촉, 체납처분 추징, 환부 및 시효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전항에 규정한 징수금의 선취특권의 순위는 부면의 징수금에 다음 가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수산회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9조 수산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사유를 상세히 밝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항에 규정한 회원의 수 계산에 관하여는 수산회법(日本)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본령시행시에 현존하는 조선수산조합 각 도지부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이를 본령에 의하는 도수산회로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제령 제1호, 조선수산회령, 1923년 1월 13일 공포, 1923년 4월 1일 시행

주 : 제1조 수산회법(水産會法), 제9조 수산회법(水産會法)은 1921년 4월 9일에 공포한 일본(日本)의 수산회법(水産會法)을 지칭한다.

제4절 광복 이후의 수산단체

1. 광복 직후의 수산단체

1945년의 8.15 광복은 일제의 긴 압정에 종지부를 찍은 대신에 국토를 남북으로 갈라놓은 비극도 함께 불러왔다. 이로 말미암아 수산세력은 양단되었으며, 수산단체도 남북으로 분할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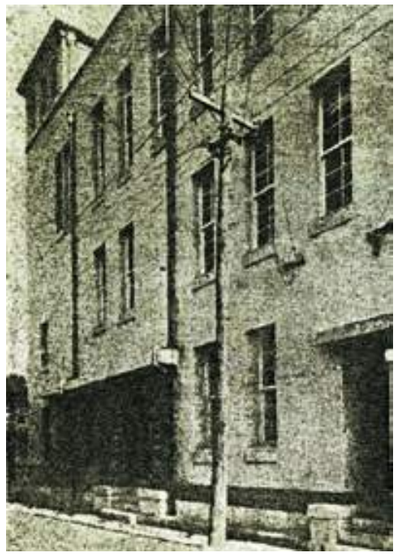
조선수산업회

태평양전쟁 말기에 조선수산회(1923년)로부터 개편된 조선수산업회(1944년)는 미군정시대에 수산행정기관을 대신하여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1947년에 실시한 전국의 수산단체 현황 조사였다.

이 조사에서 밝혀진 남한 9개 소의 어업조합 수는 총 144개였다. 도별로 보면 전라남도 44개, 경상남도 3개, 경상북도 13개, 경기도 13개 충청남도 13개, 황해도 10개, 강원도 10개, 전라북도 5개, 제주도 3개로 되어 있었다.

이때 북한의 어업조합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1942년도의 통계를 통해 해방 직전까지 존립해 있었던 북한의 어업조합 수를 보면 황해도 6개, 평안남도 10개, 평안북도 11개, 함경남도 11개, 함경북도 19개 등 총 57개로 밝혀졌다.

따라서 해방 직후 남북한을 합친 어업조합의 총 수는 201개에 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가운데서 약 30% 가까운 57개 어업조합은 북한 지역에 편입되었으며, 나머지 70%의 144개 조합은 남한에 남아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해 나갔다.

광복 직후 남북한에 편입된 어업조합 현황을 보면 <표 2-1-9> 및 <표 2-1-10>과 같다.

〈표 2-1-9〉 광복 직후 남한의 어업조합명(1947)

전라남도(44)	송지, 심장리, 군외, 금산, 목포, 풍화, 손죽, 경호, 해창만, 남면, 거문도, 영암, 광양, 돌산, 영광, 산이, 북평, 여수, 여자만, 함평, 고금, 화정, 안도, 노화, 황산, 신지, 흑산도, 녹동, 영산강, 소안, 청산, 초도, 연도, 진도, 조도, 옥정, 우수영, 완도, 강진, 낙월, 금일, 장흥, 나로도, 화양어업조합
경상남도(33)	거제, 장생포, 김해, 남해, 고성, 미조, 정자, 서생, 한산, 동해, 부산, 용광, 온산, 성포, 진해, 웅동, 낙동강, 대동, 사량도, 욕지, 진동, 삼천포, 관포, 기장, 웅천, 마산, 서남, 하동, 산양, 통영, 방어진, 가덕, 장승포어업조합
경상북도(13)	양남, 감포, 양포, 구룡포, 영일, 곡강, 청아, 송라, 강구, 풍덕, 축산, 영해, 울릉도어업조합
경기도(13)	북도, 강화, 수원, 파주, 인천, 송도, 개풍, 한강, 덕적, 용유, 부천, 평택, 김포어업조합
충청남도(13)	서면, 당진, 소원, 서산, 안흥, 보령, 홍성, 안면도, 강경, 무창포, 장항, 외연도, 녹도어업조합
강원도(10)	삼척, 인구, 묵호, 기성, 후포, 원덕, 오산, 죽변, 주문진, 강릉어업조합
황해도(10)	연백, 용호도, 백령도, 갈항, 부포, 흥미, 대청도, 기창, 용천, 내수어업조합
전라북도(5)	고창, 김제, 군산, 줄포, 안서어업조합
제주도(3)	제주, 추자도, 서귀포어업조합
합계(144)	

〈표 2-1-10〉 광복 직후 북한에 편입된 어업조합명

황해도(6)	어화도, 용금포, 진도, 용매도, 북도, 연백어업조합
평안남도(10)	한천면, 용호도, 해소면, 서해면, 청천, 귀림, 이압, 적송, 대동강, 진남포어업조합
평안북도(11)	압강, 신도, 부섬, 선천, 철산, 심미도, 관흥, 예도, 장도, 용천, 박천어업조합
함경남도(11)	퇴조, 삼호, 전진, 육대, 신포, 신창, 원산, 서호, 서천, 차조, 군선어업조합
함경북도(19)	청진, 어대진, 낙산, 서수라, 성진만, 부거면, 양화, 동면, 학남, 독진, 학성, 서포항동, 삼해면, 연천면, 온대진, 웅기면, 하고면, 상고면, 조산만어업조합
합계(57)	

2. 미군정시대의 수산단체

해방과 동시에 시작된 미군정시대의 수산제도는 일시적인 변동을 겪었으나 수산단체 제도의 기본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위에서 본 수산단체 조직은 광복 직후에 있었던 어업조합과 어업조합연합회, 그리고 각종 수산조합 및 조선수산업회는 미군정시대에도 그대로 존속해 있었다. 단지, 광복 직후와 다른 점은 국토 분단으로 인해 함경남북도와 황해도 및 강원도 이북의 수산단체 57개가 북한으로 분할된 것뿐이었다.

3. 정부수립 이후의 수산단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함에 따라 해방 직후에서 시작하여 3년간 존속하였던 남한의 미군정시대는 끝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수립 이후에도

수산단체 제도의 정비를 위한 입법조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의 조선어업령과 그 부속법령은 미군정청이 발표한 1945년 10월 4일 군정법령 제11호에 의해 그 효력이 계속되었으며,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1953년 9월 9일 법률 제295호로 수산제도의 기본법인 「수산업법」이 공포된 이후에도 동법 제79조의 단서 규정을 통해 "조선어업령 하의 수산단체에 관한 규정은 수산업에 관한 새로운 조합법이 실시될 때까지 존속키로 한다"라고 함으로써 일제강점기의 수산단체 제도는 1962년 4월 수협법 시행 직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정부수립 이후에도 과거 조선어업령시대의 수산단체인 어업조합과 수산조합 및 9개의 도어업조합연합회는 계속 존속하였다. 그리고 일부 수산조합에 대해서는 정부수립에 맞추어 명칭을 과거의 '조선'이라는 이름 대신에 '한국'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쓰도록 하였다.

기선저인망어업수산조합에서는 한국 제2구, 한국 제3구, 한국 제4구기선저예망어업수산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잠수기어업수산조합에서도 한국 제1구, 한국 제2구, 한국 제3구잠수기어업수산조합으로 변경하였다. 조선청건착망어업수산조합은 한국청건착망어업수산조합으로, 조선한천제조업수산조합이 한국한천제조업수산조합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한 것도 이때이다.

한편, 수산단체의 중앙기구에 대해서는 조선어업조합중앙회(1937년 5월)를 해체하고 1944년 2월 이를 조선수산업회로 개편하였다가 정부수립을 계기로 1949년 1월에 명칭을 한국수산업회로 바꾸었다.

다시 이 중앙단체는 1952년 11월에 대한수산중앙회로 개편해 여러 수산단체의 단일 중앙기관으로 존속하다가 수협법 시행과 함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재탄생하였다.

4. 1950년대의 수산단체

1950년대는 6.25 한국전쟁의 발발과 수산단체 통폐합운동의 전개, 그리고 한국 최초의 수산업 기본제도인 수산업법의 제정과 공포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 수산단체 제도에 미친 영향이 큰 시기였다.

6.25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종식되기 직전에 실시한 한국은행 조사 자료에 의하면, 당시의 수산단체는 어업조합 151개, 어업조합연합회 9개, 수산조합 14개를 합쳐 총 174개로 되어 있었다.

어업조합 수는 해방 직후에 비하여 약간 증가하였으며, 수산조합 수에도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어업조합의 조합원 수는 13만 4,000여 명으로, 일제강점기 말 남북한을 합친 어업조합원 총수 약 16만 8,000명에 육박하는 인원수였다. 이는 해방 이후 수산인구의 급증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수산조합은 14개 조합 중 기선저예망어업수산조합과 잠수기어업수산조합은 해방 이후 조업구역의 변동과 명칭상의 변경은 있었으나 모두 일제강점기부터 있었던 것들이었다. 해방 후에 신설된 것으로는 설립연도 미상의 경남범선저예망어업수산조합(慶南帆船底曳網漁業水産組合), 1947년 5월에 설립된 경남온망수산조합(慶南鰮網水産組合) 및 1956년에 설립된 전남정치어업수산조합(全南定置漁業水産組合)이 있었다.

1955년 9월 한국은행은 수산단체 조사를 다시 시행하여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당시의 수산단체 수는 어업조합 162개, 어업조합연합회 8개, 수산조합 16개를 합쳐 총 186개로 밝혀졌다. 1950년대 초에 비하여 어업조합 수는 11개, 수산조합 수는 2개가 더 증가하였다.

어업조합의 시도별 분포는 서울 1개, 경기도 14개, 충청남도 15개, 전라북도 10개, 전라남도 50개, 제주도 5개, 경상남도 38개, 경상북도 14개, 강원도 14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서울의 1개는 1947년에 설립해 서울시 용산구 문계동 2가 4에 조합사무소를 둔 한강어업조합(漢江漁業組合)을 말한다. 그러나 이 조합은 5.16 이후 수산단체 정비조치에 의해 해산되었다.

6.25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는 휴전선이 국토 분단의 경계선으로 정해짐에 따라 이북에 편입된 황해도의 수산단체가 완전히 이탈되어 나갔다. 대신에 강원도에서는 4개의 어업조합이 남한에 추가되었다.

수산조합에 있어서는 종전에 볼 수 없었던 한국서원양어업수산조합(韓國西遠洋漁業水産組合)과 한국남원양어업수산조합이 1950년대에 설립해 있었는데, 이는 각각 종전의 제3구 북 및 제3구 남기선저예망어업수산조합이 그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당시의 수산단체는 대체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6.25 한국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주된 요인이었다. 1945년부터 1956년까지의 수산정책을 다룬 해무청의 수산시정 업적 개황에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해방 전 통제경제하의 수산단체는 어민의 모든 경제행위를 독점하여 왔으므로 당시의 수산단체는 재정면에서 지극히 윤택하였으나 해방 후 자유경제를 지향하고 제도를 점차적으로 민주화함으로서 대부분의 수산단체가 금융사업과 공동구매사업에서 파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단, 수산물위탁판매사업만이 수산업법의 보호하에 정상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어가(魚價)와 판로 및 자금관계로 인하여 이 사업 역시 부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며, 특히 6.25 이후에는 그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제2장
수산단체의 정비와 수협의 탄생

1962
2022

제1절 수산단체의 정비

5.16 군사정부는 각 분야에 걸쳐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수산단체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혁과 정비에 착수하였으며, 1962년 1월에는 대망의 수협법을 제정 공포하는 성과를 보였다.

정부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제정에 앞서 수산단체 정비계획에 먼저 착수하였다. 많은 수산단체가 경영부실로 인하여 사업 활동이 부진하며 대외적 신뢰마저 상실하여 어민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따라서 이를 과감히 정비하여 어촌 경제의 향상과 어민권익 증진을 도모한다는 것이 수산단체정비계획의 근본 목적이었다.

이 계획은 급진전되어 5.16 직후인 1961년 6월 8일 당시 수산행정 총괄기관인 해무청에 의해 수산단체정비폐합요강(水産團體整備廢合要綱)이 발표되고, 동년 8월에 이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수산단체 임직원에 대한 인사쇄신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다.

당시의 수산단체 정비 결과를 요약하면, 어업조합은 정비계획 전에 총 159개 조합에서 71개 조합을 해산시키고 88개 조합으로 정비하였으며, 수산조합은 총 20개 조합에서 7개 조합을 해산시키고 13개 조합만 존속시켰다.

대한수산중앙회(서울시 중구 명동)

이 과정에서 일제강점기부터 전국 8도에 걸쳐 설립되어 있었던 어업조합연합회는 모두 해산되었다. 수산단체정비계획이 완료된 1961년 8월 이후의 수산단체 계통조직은 「대한수산중앙회-어업조합, 수산조합」의 2단계로 정비되었으며, 이것이 수협발족 직전의 수산단체 조직의 최종 형태였다. 당시에 단행된 수산단체 정비 후의 어업조합과 수산조합 현황을 보면, <표 2-2-1>과 같다.

〈표 2-2-1〉 수산단체 정비 후의 어업조합과 수산조합 현황(1961)

경기도	인천, 강화, 덕적, 부천, 용유, 대청도, 연평도, 화성, 평택(9)
충남도	장항, 보령, 홍성, 서산, 당진, 강경(6)
전북도	군산, 안서, 곰소, 고창(4)
전남도	완도, 군외, 고금, 금일, 금당, 노화, 강진, 북평, 송지, 우수영, 진도, 목포, 흑산도, 영광, 여수, 돌산, 안도, 벌교, 거문도, 옥정, 나로도, 광양, 장흥, 풍화, 금산, 녹동, 조도, 해창만(28)
경남도	삼천포, 방어진, 고성, 마산, 거제, 온산, 진해, 장승포, 통영, 욕지, 기장, 한산, 정자, 관포, 남해, 웅동, 장생포, 하동, 부산(19)
경북도	감포, 양포, 구룡포, 포항, 강구, 축산, 울릉도(7)
강원도	거진, 아야진, 속초, 주문진, 강릉, 묵호, 삼척, 원덕, 죽변, 후포(10)
제주도	제주, 한림, 서귀포, 성산포, 추자(5)
계	88개 조합
수산조합	한국제2구기선저인망어업, 한국제3구기선저인망어업, 한국제4구기선저인망어업, 한국제2구잠수기어업, 한국제3구잠수기어업, 한국제4구잠수기어업, 경남정치어업, 한국청건착망어업, 한국원양어업, 한국포경어업, 경남온망어업, 한국통조림업, 한국한천제조업(13)
합계	101개 조합

제2절 협동조합운동의 전환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운동의 전개 방법에는 민간주도형 협동조합운동과 정부주도형 협동조합운동의 두 형태가 고려되어 왔다. 전자를 자본주의 선진국 모형이라 한다면, 후자는 자본주의 후발국 모형에 해당한다.

전자는 협동조합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협동조합조직을 필요로 하는 농민이나 어민들, 나아가서는 소비자들과 이들의 지도자들이 자율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주도하면서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형태이다. 여기에는 근대협동조합운동의 선구로 알려진 영국의 로치데일공정개척자조합(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 1844), 일명 로치데일소비자조합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1850년 독일의 슐체(H. Shulze)가 조직한 신용조합, 1862년에 라이파이젠(F. W. Raiffeisen)이 조직한 농촌신용조합, 1831년에 프랑스의 필립부셰(Philipe J.B. Buche)가 세운 생산조합 등은 세계의 협동조합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들 대부분은 민간 주도에 의한 선 협동조합설립, 후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생성 발전한 협동조합들이다. 이후 이들 협동조합들은 각국의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호응하면서 노동자, 농민, 중소생산자 및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 계층을 대변하는 새로운 경제제도로서 뿌리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끊임없는 협동조합 지도자의 양성과 구성원들의 자각의식을 필요로 하므로 협동조합운동의 확산 속도가 더디며, 국가의 보호와 지원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후자는 정부가 제도나 정책을 통하여 협동조합을 먼저 설립하고, 후에 대상이 되는 농·어민 또는 중소상공인들을 협동조합의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정부지원으로 각종의 사업을 펴나가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농·수협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사는 이러한 협동조합운동 방식의 전형적인 형태에 속한다. 일본은 우리에 앞서 이 모형을 채택해 그들의 자본주의 경제발전과 협동조합 발전을 동시에 성공시킨 대표적인 나라이다.

실제로 관계법령에 의해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구 조직(舊 組織)을 협동조합으로 개편하는 조합설립의 경우가 이 방식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초기 농·수협의 설립은 식민지 농·수산단체를 이용한 '간판 바꿔 달기식 설립'이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법령을 통해 기존 단체의 조직과 사업기반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 때문이다. 대신에 협동조합운동을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보급시켜 자본주의 취약산업을 급속하

게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협동조합운동의 일대전환이며,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수립 5년만인 1953년 9월 9일에 일제강점기의 조선어업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수산업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1954년 1월에 당시 상공부 수산국에서는 새로운 수산업법에 의거하여 「수산업협동단체법」안을 작성하여 법제처에 심의를 제안하였다. 총 14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었으며, 내용은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때 농업부문에서는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의 분리를 기본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안과 「농업은행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진통을 거듭하던 시기였다. 「농협법」은 그 후 1957년 2월 법률 제436호로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시점에 「농업은행법」도 공포되었다. 이와 같이 이원체제로 되어 있던 농협조직이 농업은행과 통합하여 오늘날의 종합농협 단일체제로 통일된 것은 1961년 7월 20일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제처에 회부된 「수산업협동단체법안」은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5.16 이후까지 밀려나 1962년 4월 1일 현행 「수협법」의 탄생으로 전국에 걸쳐 일시에 수협이 설립되고 수협중앙회까지 발족해 수협계통조직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제3절 수협의 탄생과 수협운동의 전개

1. 수협의 탄생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은행법」이 1957년 초에 국회를 통과해 동년 2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농업부문에서는 종전의 농업단체가 협동조합 제도로 개혁 정비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수산업부문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법안 작성과 그 검토가 지체되어 이로부터 약 2년이 경과된 1959년 초에 이르러 비로소 법안 검토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1959년 1월 11일 당시에 정치적 외곽 단체였던 대한어민회가 제시한 전문 145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수산업협동조합법안을 당시 해무청이 심의한 바 있었고, 동년 2월에는 해무청이 직접 작성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정부안이 나왔다. 해무청은 이 두 법안을 놓고 전국의 수산관계관 회의를 열어 수산업협동조합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 작성에 신중을 기하였다. 그리하여 1959년 2월 해무청은 전문 170여 개 조로 된 수협법안을 기초하여 이를 1961년 1월에 법제처에 회부하였으나 얼마 후 5.16이 일어나 수협 법안은 성안을 보지 못한 채 또 한 번의 산고를 겪어야만 하였다.

5.16 군사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자립경제를 목표로 하는 경제개발계획에 착수하였다. 이 계획에 의해 중점 개발 대상 산업에 포함된 수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되었으므로 이전과는 달리 수산업협동조합 설립의 외적 조건이 급속히 성숙되어 나갔다.

1930년대 광복 이전 어촌의 위판장(나로도)

1963년 제주도 갈치잡이 조업

드디어 전년 초부터 심의 요청 중에 있었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관한 정부안이 1962년 1월 19일 당시 군사정부의 입법부 권한을 대신한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 1월 20일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제정과 동시에 이를 법률 제1013호로 공포하였다.

총 179조로 된 「수산업협동조합법」은 부칙 제2조에 "종전의 조선어업령 제5장은 이 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폐기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를 통해서는 종전 단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업조합과 수산제조업조합 및 대한수산중앙회는 이 법 시행에 의해 어업협동조합, 수산제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본다"라고 하였다.

동년 3월 30일에는 본문 53조 부칙 11조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 동년 4월 10일에는 「수산업협동조합 시행규칙」과 함께 각급 협동조합의 정관도 동시에 공포되었다. 이렇게 하여 종전의 수산단체 제도는 새로운 수협제도로 완전히 흡수되어 현재의 수협이 전국적으로 보급됨과 아울러 수협계통조직에 의한 수협운동의 제도화가 시작되었다.

2. 계통조직의 완성과 수협운동의 전개

수산업협동조합은 법 시행과 동시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단일의 중앙기관으로 하고, 여기에 어업협동조합(지구별 어업협동조합, 업종별 어업협동조합)과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2단계 구조의 계통조직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지구별 어업협동조합 아래에는 어촌계라고 하는 어촌단위의 소규모 협동단체를 설립하여 어촌 전역으로 수협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될 수 있게 하였다.

수산업협동조합은 설립과 동시에 여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였다. 먼저 어업협동조합의 경우는 사업의 종류를 ① 지도보호사업 ② 구매사업 ③ 보관 판매사업 ④ 신용사업 ⑤ 이용사업 ⑥ 공제사업 ⑦ 후생복리사업 ⑧ 정부 업무의 대행 및 보조에 의한 사업 ⑨ 단체협약의 체결 ⑩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모두 10개 항목으로 규정하였다.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의 경우는 ① 구매사업 ② 보관 판매사업 ③ 이용사업 ④ 검사사업 ⑤ 공제사업 ⑥ 신용사업 ⑦ 지도사업 ⑧ 문화 후생사업 ⑨ 전 각호에 부대(附帶)하는 사업 등 9종의 사업을 규정하였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①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 및 조정 ②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와 보급 선전 ③ 회원의 지도자와 직원의 양성 훈련 및 강습 ④ 회원을 위한 구매 보관 판매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대리업무 ⑤ 신용사업 ⑥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⑦ 회원의 사업조성에 관한 공동이용, 가공시설 ⑧ 수산물 검사업무를 포함한 정부의 위촉사업 ⑨ 정부보조사업 ⑩ 전 각호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⑪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⑫ 제1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9호의 부대사업 ⑬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 등으로 더 다양하게 규정하였다.

한편, 어촌계에 대해서도 ① 어업권의 취득과 개발 ② 소속지구별 조합소유의 공동어장 및 양식어장의 전용(專用) ③ 어민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어구의 공동구매 ④ 어촌공동시설 ⑤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 ⑥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협법시행령(제15조)에 규정하였다.

모두 수협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사업들이다. 한편,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수협운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회원 조합 간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수직적 또는 수평적 결합 관계를 갖도록 하는 조합 간 연합을 강조하였다. 그것이 중앙회를 정점으로 한 수직관계의 수협계통조직이다.

협동조합이 단위조합만으로 모든 활동을 완결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협동조합의 계통조직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개별조합 단독으로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기구 안에서 경제사업체로서의 경쟁력을 발휘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협동조합 간 사업의 공유와 연합은 불가피하며, 때로는 공동대응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립되는 것이 협동조합의 결합 형태인 계통조직이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4가지 행태가 존재한다. 이 가운데서 한국의 수협은 2단계 수직적 계통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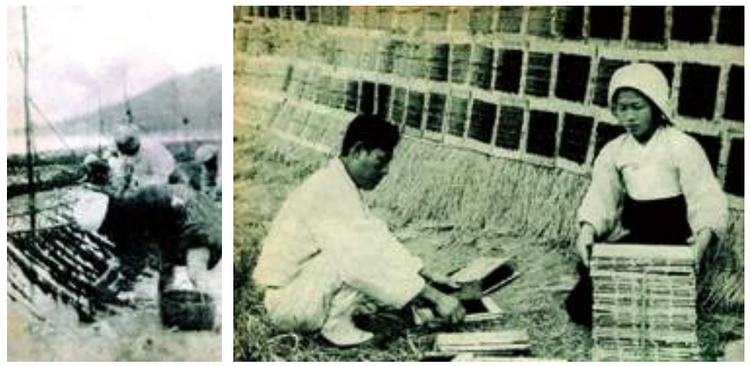

수출용 해태(김) 건조와 채취

1996년에 수협은 법률을 개정하여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 규정을 두어 동 연합회를 법인으로 하고 사업권까지 부여하였다(수협법 100조의 2, 제16차). 그러나 이 업종별수협연합회제도는 법 시행 5년 만에 실행에 옮겨 보지도 못한 채 폐지되고 말았다. 입법 취지와는 달리 막상 법인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을 발굴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던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의 계통조직 결정 방식은 ① 단위조합의 사업조건, ② 조합과 조합원의 경영규모, ③ 조합의 사업전략, ④ 정부행정체제 등 4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단위조합의 사업조건과 사업방식이 국지적 시장 범위에서 완결되는 경우에는 단위조합의 지역연합회나 전국연합회 조직과 같은 계통조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조합의 사업전략이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 또는 속도의 경제(Economy of speed)라고 하는 3S 전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단위 조합들은 지역연합회나 전국연합회와의 조직적 제휴가 불가피하며, 이때 2단계, 또는 3단계의 협동조합 계통조직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협의 경우 수산물공동판매와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과 같은 기능은 단위조합 범위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다단계구조로 대응하게 되는 것이다.

수협은 1962년 4월 1일 법시행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84개의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을 일제히 설립하고 10개의 업종별 어협도 동시에 설립하였다. 여기에 수협중앙회의 설립까지 마침에 따라 단기간에 중앙회를 정점으로 하는 2단계의 계통조직을 완성하여 본격적으로 수협운동에 착수하였다.

법 시행과 동시에 설립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을 보면, 경기도 8개, 강원도 7개, 충청남도 5개, 전라북도 4개, 전라남도 27개, 경상북도 9개, 경상남도 19개, 제주도 5개로 총 84개 조합이며, 업종별 어업협동조합은 수산통조림제조업협동조합(서울), 제2구잠수기어업협동조합(부산), 제3구잠수기어업협동조합(여수), 제2구기선저인망어업협동조합(포항), 제4구기선저인망어업협동조합(부산), 기선권현망어업협동조합(통영), 기선건착망어업협동조합(부산), 한국원양어업협동조합(서울), 경남정치망어업협동조합(부산), 포경어업협동조합(울산) 등 10개 조합이다.

이 가운데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에 한해 그의 설립 상황을 도별로 보면, <표 2-2-2>와 같다.

〈표 2-2-2〉 제정 수협법 시행 당시의 지구별 어협 설립상황

지역	지구별 어협	설립연도	초기 조합원 수	지역	지구별 어협	설립연도	초기 조합원 수
경기도 (8)	강화군어업협동조합	1962.4.1		강원도 (7)	거진어업협동조합	1962.4.1	681명
	용유어업협동조합	〃			묵호어업협동조합	〃	546명
	덕적어업협동조합	〃	2,867명		삼척어업협동조합	〃	257명
	부천어업협동조합	〃			속초어업협동조합	〃	272명
	인천어업협동조합	〃	580명		주문진어업협동조합	〃	251명
	화성어업협동조합	〃	675명		원덕어업협동조합	〃	
	연평도어업협동조합	〃			아야진어업협동조합	〃	
	평택어업협동조합	〃		충청남도 (5)	당진어업협동조합	1962.4.1	314명
전라북도 (4)	군산어업협동조합	1962.4.1			보령어업협동조합	〃	650명
	곰소어업협동조합	〃	81명		서산어업협동조합	〃	1,325명
	안서어업협동조합	〃			장항어업협동조합	〃	
	고창어업협동조합	〃			홍성어업협동조합	〃	
전라남도 (27)	강진어업협동조합	1962.4.1	976명	경상북도 (9)	감포어업협동조합	1962.4.1	1,016명
	목포어업협동조합	〃	254명		강구어업협동조합	〃	1,480명
	영광어업협동조합	〃	135명		구룡포어업협동조합	〃	827명
	완도어업협동조합	〃	10,358명		울릉어업협동조합	〃	877명
	진도어업협동조합	〃	168명		죽변어업협동조합	〃	1,228명
	북평어업협동조합	〃	925명		축산어업협동조합	〃	955명
	조도어업협동조합	〃	27명		포항어업협동조합	〃	1,273명
	흑산도어업협동조합	〃	2,747명		후포어업협동조합	〃	1,266명
	거문도어업협동조합	〃			양포어업협동조합	〃	
	금산어업협동조합	〃		경상남도 (19)	거제어업협동조합	1962.4.1	2,840명
	녹동어업협동조합	〃	7,712명		장승포어업협동조합	〃	595명
	해창만어업협동조합	〃			고성어업협동조합	〃	
	풍화어업협동조합	〃			온산어업협동조합	〃	420명
	군외어업협동조합	〃			기장어업협동조합	〃	371명
	고금어업협동조합	〃			정자어업협동조합	〃	
	송지어업협동조합	〃			마산어업협동조합	〃	743명
	노화어업협동조합	〃			관포어업협동조합	〃	
	금당어업협동조합	〃			삼천포시어업협동조합	〃	2,588명
	금일어업협동조합	〃			방어진어업협동조합	〃	318명
	광양어업협동조합	〃	770명		욕지어업협동조합	〃	
	우수영어업협동조합	〃	969명		웅동어업협동조합	〃	446명
	벌교어업협동조합	〃			한산어업협동조합	〃	
	안도어업협동조합	〃			진해어업협동조합	〃	1,665명
	여수어업협동조합	〃			통영어업협동조합	〃	1,282명
	옥정어업협동조합	〃			하동어업협동조합	〃	782명
	장흥어업협동조합	〃	1,720명		남해군어업협동조합	〃	
	나로도어업협동조합	〃			장생포어업협동조합	〃	
제주도 (5)	서귀포어업협동조합	1962.4.1	1,424명		부산어업협동조합	〃	1,198명
	성산포어업협동조합	〃	1,822명				
	제주어업협동조합	〃	4,282명				
	한림어업협동조합	〃	1,487명				
	추자도어업협동조합	〃					
합계				84			

제4절 수협운동의 주체와 역할

1. 수협운동의 주체

「수협법」 시행을 계기로 수협운동의 주체는 정부에서 수협계통조직으로 자리가 바뀌었다. 이전까지의 수협운동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 수협법 제정을 주도하고, 구 수산단체를 수협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조직으로 일제히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단기간에 수협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설립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주효했던 것이다.

그러나 수협발족 이후부터는 수협 자신이 수협운동을 직접 이끌고 평가해 나가는 수협운동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그 운동은 지구별 어협과 업종별 어협 및 수협중앙회가 각각 주체가 되어 역할 분담을 통하여 수협운동을 담당하는 것이다.

수협운동은 어민들을 위한 경제적 운동이며, 어민들의 사회적 권익신장과 어촌사회의 근대화를 촉진하는 사회적 운동도 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협법 제1조에 명시된 수협의 목적달성운동이 수협운동의 본질이며,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4대 운동으로 요약된다.

첫째, 수산업과 어촌사회에 수산업협동조합을 널리 보급하는 운동(수협촉진운동)

둘째, 어민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권익을 함께 실현시키는 운동(어민의 경제, 사회적 이익 보호운동)

셋째, 과학적 수산기술을 널리 전파하여 수산업의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운동(수산업생산력 증대운동)

넷째, 이상의 3대 운동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까지 기여하는 운동(국민경제발전 운동)

이상과 같은 내용의 수협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운동 그 자체가 갖는 추상성에 비추어 수협운동 자체를 보다 구체화시켜 중앙회는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조합과 어촌계는 실질적 운동주체가 되어 조직적, 체계적으로 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수협운동의 방향과 목표가 선명해야 하며, 둘째, 운동주체 간에 역할과 기능이 명확히 분담되어야 하고, 셋째, 운동대상과 운동내용을 분명히 정하는 일이다.

한편, 각급 수협은 하나의 경영체임과 동시에 운동체로서도 역할을 해야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잘 조화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도 수협운동의 성패를 결정짓는 관건이다.

수협법 제1조의 목적과 수협중앙회 및 계통조직의 각급 정관을 참고하여 수협운동의 목표와 운동주체별 역할을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이 체계화할 수 있다.

수협운동의 목표 체계와 운동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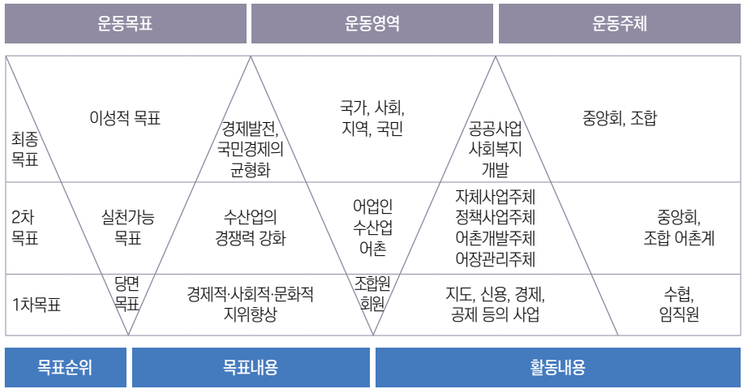

2. 수협의 역할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협은 조합원과 전체 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협운동의 핵심주체이다. '조합원의 협동조직을 통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활동이 곧, 수협이 펴나가는 수협운동 고유의 목표에 해당한다. 그것이 제1차 목표이며, 이것은 또한 수협운동의 직접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수협조직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 제1차 운동 목표 달성에 있으며, 수협이 실시하는 각종 기능은 이 목표의 일환으로 존재하는 활동인 것이다.

지난 1960년대 초에 어협이 발족되어 지금까지 꾸준하게 여러 가지 자체사업과 수산정책사업을 추진해 온 것은 이러한 수협운동 실현을 위한 접근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평등사회의 실현은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최종적 목표이다. 수협운동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명실공히 수협이 국가와 사회 전반에 대한 기여라 할 것이다. 이러한 운동 목표의 설정과 실현을 통해서 수협은 그의 객관적 정당성과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협운동 목표체계 가운데서 수협의 존재 의의와 수협 조직의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협의 각종 사업 실시를 통해서 실현되는 조합원의 생활 개선과 그들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라고 하는 직접적 목표이다. 또한 이것은 수협운동의 당면 목표이기도 하다.

어협은 설립과 동시에 곧 기구를 갖추어 수협운동에 착수하였다. 초창기의 어협은 다음과 같이 조합장 아래에 상무를 두고 상무 아래에 서무계, 교도계(敎導係), 경리계, 징수계, 판매계, 노무계의 6개 부서를 두었다. 다시 상무 직속으로 지소, 사업소, 출장소 등의 단위 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무조직을 편성하였다.

1960년대 초의 부산어협조직도(19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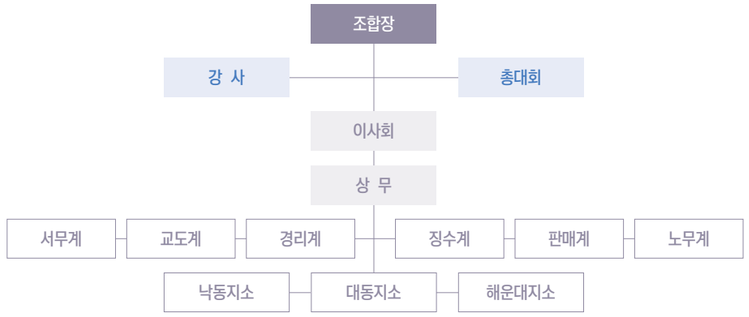

이것은 수협법 시행과 동시에 발족한 부산어업협동조합의 1962년도 조직 사례이지만, 다른 어협들에서도 아마 거의 유사한 조직도를 편성해 출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협운동의 핵심부서인 지도업무 담당 부서를 교도계(敎導係)라 칭한 것이 주목된다. 지도사업이라는 용어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공동판매사업 외에 다른 경제사업이나 신용사업 등은 개발 이전의 단계에 놓여 있었던 것이 초창기의 어업협동조합 실상이었다.

1982년 2월 냉동물 수협 청사

어협의 수협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한 것은 수협발족 초창기를 지난 1960년대 후반부터이다. 때마침 1965년 6월 한일국교정상화에 이어 1966년 6월에는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고, 1966년 2월에는 수산청이 설치되어 1967~1971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1차 수산진흥계획을 수립해 실시 중에 있었다. 수산업부문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발전이 기대되고 있었으며, 동시에 수협에 대한 어민들의 관심과 열망도 대단히 높은 시기였다.

어협은 1960년대 후반부터 부산, 속초, 삼천포, 여수 등 어업협동조합 활동이 활발한 4개 지역 어협을 시작으로 하여 일반은행과 동등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일반금융취급기관이 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부터는 전 조합이 일반금융 취급점포로 지정되었다. 어협의 신용사업 실시는 어촌의 유휴자금을 흡수하고 조합원들의 재산증식에 기여하는 한편, 수산자금의 공급확대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수협사업의 일대혁신이었다.

어협의 판매사업은 발족 당시 지구별어협 92개소, 업종별어협 3개소의 위판장으로부터 시작하였으나 발족 10년이 경과하는 1972년까지 연근해 어획물의 위판비율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어류의 위판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해조류와 패류 등 기타수산물은 생산량의 70% 이상이 장외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것이 거의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었다.

초창기 어협의 위판사업 부진은 수협 판매사업에 가장 큰 문제였다. 그 요인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위판장 수의 부족과 시설의 미비 둘째, 조합의 자금력 부족 셋째, 객주 세력의 잔존 넷째, 조합원들의 공판의식 결여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협중앙회와 조합의 적극적인 수산물 공판운동은 대단히 절실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었다.

〈표 2-2-3〉 1970년대의 어종별 생산량과 위판량의 비교

(단위 : M/T, %)

연도	합계			어류			해조류			패류 및 기타		
	생산량	위판량	위판비율	생산량	위판량	위판비율	생산량	위판량	위판비율	생산량	위판량	위판비율
1964	597,219	283,648	47.5	320,684	218,301	68.1	61,714	19,040	30.8	214,821	46,307	21.6
1965	627,949	322,436	51.3	384,941	250,899	65.2	60,978	5,743	9.4	182,030	65,705	36.1
1967	709,865	358,300	50.5	440,944	304,051	69.0	82,827	11,583	13.1	186,094	42,666	22.9
1970	845,841	529,742	62.6	506,357	414,230	81.8	116,654	32,202	27.6	222,830	83,310	37.4
1972	1,119,734	631,777	56.1	723,526	549,407	75.9	128,830	24,968	19.3	267,378	57,400	21.5
1973	1,325,848	748,615	56.5	784,025	609,031	77.7	224,168	62,534	27.8	317,655	77,050	24.3
1974	1,607,841	948,572	59.0	988,192	759,316	76.8	335,827	112,838	33.6	283,822	75,418	26.6

수협운동의 핵심사업인 조합지도사업의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수협발족 7년이 지난 1969년부터이다. 정확하게는 1969년 4월 22일 수협중앙회가 발표한 조합 직제규정에 의해 비로소 조합의 지도업무 내용이 명시되었다.

총 10개 조로 된 이 규정에서 조합 지도계의 사무분장은 <표 2-2-4>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어촌계의 조직강화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⑭ 기타 조합원의 지도에 관한 사항까지 총 14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로부터 지금까지 명칭뿐인 어협지도사업은 그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정해졌으며, 직원 구분에 있어서도 일반직과 기능직 외에 지도직을 별도의 직군으로 두어 "지도 직원은 어촌지도에 종사한다"라고 명시하였다.

〈표 2-2-4〉 초창기 조합 직제규약상의 지도계 업무 분장

1. 어촌계의 조직강화에 관한 사항
2. 어촌계 및 조합원의 생산과 사업지도에 관한 사항
3. 공동어업권의 행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어촌계의 경제사업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7. 직원과 어촌계 임직원의 교육훈련 및 강습에 관한 사항
8. 보급선전 및 계몽에 관한 사항
9. 자체자금 조성지도에 관한 사항
10. 재해에 관한 사항
11. 어업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12.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13. 지도보호사업에 관한 사항
14. 기타 조합원의 지도에 관한 사항

197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을 거듭하였으며, 여기에 새마을운동이 시대적 사명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어협지도사업은 한층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1972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제창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농·어촌의 근대화 운동이 중심이었다.

여기에 어촌을 조직 기반으로 하는 지구별 수협과 어촌계는 어촌 새마을운동의 실질적 추진 주체임과 동시에 사업주체로 지정되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전국의 어협은 종전의 계 단위 업무조직에서 과 단위를 뛰어넘어 부 단위 업무조직으로까지 기구를 확대 개편하여 수협환경 변화와 시대적 요청에 대응해 나갔다.

1990년대 이후 정치민주화와 함께 수협에도 조직 자율화의 영향으로 조합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2년 현재는 지구별 수협 70개, 업종별 수협 21개, 총 91개로 정비되어 수산업 현장에서 수협운동을 이끌어 가고 있다.

1982년 10월 안강망 수협 청사 준공식

3. 중앙회와 어촌계의 역할

수협중앙회는 수협운동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전체 지구별 수협과 업종별 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 유일의 수협연합체로서 수협계통조직의 최상위에 위치한다.

현행 「수협법」에 의하면, 중앙회는 '전체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수협법 제116조). 수협중앙회는 이러한 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체사업은 물론, 회원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도 함께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그밖에 소속 회원에 대한 지도, 감독, 조직과 사업조정 등의 권한도 갖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수협계통조직 가운데서 수협운동의 가장 중추적인 운동주체로 규정되는 것은 ① 소속회원을 위한 교육지원, 훈련과 정보제공, ② 회원과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③ 회원과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 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④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공공보조금의 교부, ⑤ 수산업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사업 등을 필수사업으로 채택하여 이를 지속적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데 있다.

어촌계는 수협운동의 대상임과 동시에 주체로서도 역할을 하는 수협계통의 말단 조직이다. 어촌계는 지구별 수협에 소속된 어촌을 조직 단위로 하여 설립된 공식적 수협 조직의 하나이며, 2021년 현재 전국적으로 2,044개가 설립되어 있다. 「수협법」에 의하면, 어촌계의 계원은 지구별 어협의 조합원으로 제한되며,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준계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어촌계의 조직 범위는 창립 초기에는 자연 촌락 단위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그 이후 법률을 개정하여 리·동, 또는 읍면 단위, 또는 경제권 단위로까지 점차 확대되어 초기와는 그 범위가 크게 넓어져 있다. 계원들이 공동 이용하는 마을어장의 분할이 어렵거나 어촌계의 사업관점에서 계의 업무구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법률(수협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어촌계의 설립목적은 '계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촌계는 어업권 취득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법률이 정하고 있는 어촌계의 사업 범위는 무려 14종에 달한다(수협법 시행령 제7조, 2005.6.30. 개정).

제3장
수협운동의 시련

수협계통조직은 발족 이후 약 30년간 고도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각 사업 활동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다. 그 첫째가 1992년 12월에 타결된 UR협상이며, 두번째는 1997년에 닥친 IMF 금융위기였었고, 세번째로 맞이한 것은 신 한일, 한중어업협정체결이다. 모두 수협계통조직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준 위협적인 환경 요인이었다.

1962
2022

제1절 UR협상타결과 대응

UR협상은 남미 우루과이(Uruguay)에서 개최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자유무역 질서의 강화라는 명분 아래 국가 간 무역장벽을 허물고 관세를 철폐하며,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각종의 국가보조금제도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문제를 중요 이슈로 등장시킨 협상이었다. 이 협상의 결과로 탄생된 것이 세계무역기구(WTO)이다.

WTO는 1994년 출범 7년째인 2001년 11월에 카타르의 수도 도하(Doha)에서 WTO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 WTO 뉴라운드가 타결되었다. 수산부문에서는 UR협상 내용이 더 강화되어 수산보조금 규범과 수산물 시장 개방 등의 과제를 2005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선언이 있었다.

정부는 총 348개 수산상품 중 40.5%에 해당하는 141개 품목에 대하여 실행 세율을 10~20% 범위로 하는 관세 양허계획서(IRP)를 작성하여 GATT사무국에 제출하는 등으로 대응해 나갔다. 한편, 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수산보조금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의 존속과 점진적 축소를 주장하였다.

수협은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 협상력에 힘을 실어 주는 한편, 농림수산단체 등 NGO와 공조체계를 구축하면서 압력단체 역할을 수행하였다. 내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WTO 뉴라운드 대책기구를 편성하여 중앙회장(차석홍)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아래에 유통대책반, 종합대책반, 영어자금대책반, 유류대책반 등 4개 대책반을 두어 WTO 뉴라운드 협상에 적극 대처해 나갔다.

중앙회의 WTO 뉴라운드 대책조직(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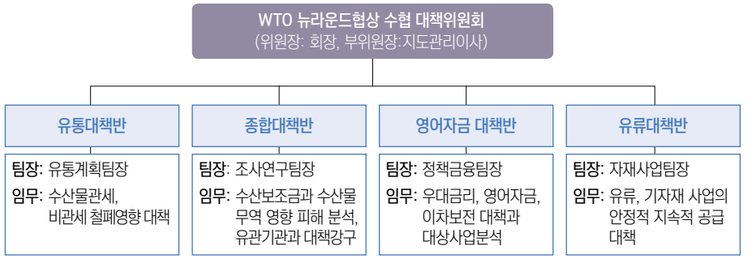

제2절 IMF 금융위기의 극복

1. IMF로 인한 수협의 금융위기

우리나라는 1997년 말에 닥친 사상 초유의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국민경제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즉 1980년대의 호황경기 속에서 무리하게 감행된 기업들의 무분별한 외자도입과 투자과잉, 금융기관의 난립과 과잉경쟁 등으로 많은 기업과 은행들이 파산과 폐업하는 사태가 초래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협중앙회는 물론 회원조합의 신용사업도 전체가 존폐의 길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금융취급규모가 영세하고 경쟁력이 미약한 수협신용사업부문이 이 위기에 예외일 수 없었다. 즉, 1997년 말의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수협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된 데다 어가부채 증가 등으로 중앙회는 물론 많은 조합에서 자기자본을 잠식하는 결과가 발생했고 그 규모도 매년 크게 증가했다. 즉 1998년에 1,085억 원이던 자본잠식액이 1999년에는 2,791억 원, 2000년에 3,860억 원, 2001년 무려 5,380억 원으로 급증했다.

2000년 11월 수협정상화 노무현장관 간담회

2.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조합경영 정상화[1]

가. 추진배경과 범위

이렇게 IMF 금융위기 등으로 회원조합의 부실 규모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회원조합의 자구노력만으로는 경영정상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회에서는 어촌경제의 붕괴 및 예금지급 불능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회원조합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회원조합 경영정상화 방안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경영개선자금 지원규모 확대로서 2001년 말 기준 자본잠식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전 조합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실제 부실규모와 자금지원 소요액을 파악하고 중장기발전방안 등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수협 경영정상화 제도화로서 부실조합의 효율적 구조개선 및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수협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나. 정상화 추진내용

'회원조합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2002년 11월부터 2003년 4월까지 97개 회원조합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하였고, 2002년 9월 말 현재 61개 부실(우려)조합[2] 중 회생 의지를 보인 10개 조합과 상호금융사업을 하지 않는 1개 조합을 제외한 50개 조합에 대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3,483억 원[3]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 9월에「수협구조개선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이와 병행하여 몇 가지 조치를 추진했는데, 첫째, 5개 조합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약산·광양 합병(2004), 해수어류 계약이전(2004), 완도군 계약이전(2009), 흑산도 합병(2010) 등이 그 대상이었다.

둘째, 회원조합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잠재적 부실 우려 조합의 경영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률 평가 등을 통해 '회원조합 부실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상 조합에 대해서도 경영위험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수협구조개선법」에 따라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된 조합에 대해서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적기시정조치를 시달하고 있다. 아울러 상시적인 경영개선실적 점검 및 대책회의 등을 개최하여 실적개선 독려, 경영부진·악화 조합에는 관리인 및 경영지도역을 파견하

1 중앙회의 금융위기 극복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4편 제5장 제2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회원조합에 대한 내용만 다루기로 한다.

2 2002년 9월 말 현재 순자본 비율이 0% 미만인 조합이다.

3 3,483억 원 중 정부자금이 2,899억 원, 수협 자체기금이 584억 원이다.

여 현장에서 조합의 경영개선을 지원하였다.

셋째, 경영지도전담반을 구성, 운영하였다. 즉 2009년 하반기 회원경영지원부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17명의 경영지도전담반을 구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합동으로 총 50회에 걸쳐 26개 조합에 대한 현장 밀착 경영지도를 실시하였다. 특히 적기 시정조치 조합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통해 목표달성 이행을 독려하고, 경영이 악화되는 조합에 대하여 경영부진 요인을 적기에 파악하여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현장에서 직접 경영지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넷째, 회원조합에 경영컨설팅 방식을 개선하여 확대 실시하였다. 즉 종전에는 조합별 맞춤형 컨설팅에 주력했으나 맞춤형 컨설팅+수시컨설팅 방식으로 개선하여 경영전략 재수립, 부실요인 개선 및 사업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는데 매년 5~10개소의 조합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표 2-3-1〉 회원조합에 대한 경영컨설팅 방식의 개선방안

구분	맞춤형 경영컨설팅(종전)	수시컨설팅(개선)
대상	컨설팅 신청조합(6개소)	신규 부실 우려 조합
주요내용	상호, 경제 등 사업별 심층진단 및 경영전략 수립	부실 원인 진단, 개선방안 신속 제시
수행방법	외부용역 / 10개월(장기)	자체수행 / 1~2개월(단기)

다. 추진성과

그동안 추진해 온 회원조합 경영정상화 방안의 성과를 보면, 첫째, 순자본비율(경영정상화 지표)이 2006년 말 플러스 전환(0.2%)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고, 미처리 결손금도 2011년 말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후 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그 결과 2021년 말 기준으로 볼 때 부실(우려)조합 수는 2개 조합으로 감소했고, 경영개선과 관련한 MOU 약정을 체결한 41개 조합은 2021년 말 현재 하나도 없는 등 조합경영이 대폭 개선되었다.

〈표 2-3-2〉 회원조합 경영정상화 추진성과 (단위 : 억 원, 개소)

구분	2002. 9	2003 말(A)	2011 말	2021 말(B)	증감(B-A)
이익잉여금(결손금)	△8,419	△5,273	669	7,427	12,700
순자본비율	△6.30	△2.20	2.52	5.29	7.49
전체조합	97	97	92	91	△6
정상조합수	39	38	64	89	51
부실조합	10	11	2	-	△11
부실우려조합	48	48	26	2	△46
권고	28	27	21	2	△25
요구	20	21	5	-	△21
MOU체결조합	-	41	4	-	△41

제3절 신 한일·한중어업협정의 영향

1. 신 한일어업협정의 특징

유엔 해양법협약이 1994년 11월 16일부터 발효(우리나라는 1996. 1. 29 가입, 1996. 2. 28 국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EEZ체제의 수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8년과 2000년에 인접국인 일본 및 중국과의 어업협정이 체결되고, 신 한일어업협정이 1998년 11월 28일 양국 간 서명되어 1999년 1월 22일부터 발효되었다.

한일 간에는 이미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1965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이 있었으나 이것은 유엔해양법 하의 EEZ체제에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신하는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이 요청되었다.

신 한일어업협정의 중요한 특징은 첫째, 어업전관수역을 종전의 12해리에서 35해리로 늘린 점, 둘째, 일정한 구역을 한일중간수역으로 하여 이를 한일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수역으로 남긴 점, 셋째, 한일 양국의 전통적 어업질서를 존중하여 쌍방이 EEZ 내에 일정 범위의 상호입어를 허용한 점, 넷째, 준법어업이행을 준수하며 위반 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난사고와 긴급 피난문제는 상호주의 원칙하에 해결한다는 점 등이다.

1998년 1월 한일어업협정파기에 따른 궐기대회

2. 한중어업협정의 특징

한중 간에는 서해를 사이에 두고 동중국해어장까지 공동 이용해 온 것이 양국 간의 어업관계였지만, 역사적으로는 공식적인 어업관계를 맺은 적은 없었다. 따라서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에 대응하여 2000년 8월 3일 한중 양국은 정식으로 어업협정에 서명하고, 2001년 6월 30일부터 발효되었다.

한중어업협정의 중요한 특징은 첫째, 서해 중간 북위 37도에서 32도 11분 사이의 약 83,000㎢의 수역을 한중잠정조치수역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 한중 양국어선의 공동조업을 허용한 점 둘째, 잠정조치수역 좌우 20해리 범위를 과도수역으로 설정하여 양국 EEZ 완충수역 역할을 하게 한 점, 셋째, 오랫동안 우리의 황금어장으로 개척하여 이용해 온 동중국해 수역은 일부만 조업자유를 인정한 점 등이다.

3. 어업협정의 영향과 수협의 대응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으로 인해 많은 조업어장을 잃게 되고 그 결과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곧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대책 수립에 나섰으며, 수협중앙회는 신 한일, 한중어업협정 피해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수협중앙회에서는 2001년 2월 두 협정에 의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수협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는데, 관련 조합별 피해상황과 건의사항 청취 결과는 <표 2-3-3>과 같다.

〈표 2-3-3〉 중앙회의 관련 조합별 피해 상황 청취 내용(2001.2)

조합	피해예상 내용	요구 및 건의사항
동해구기저수협	협정피해 미약	강원도 어로한계선까지 조업구역 확대요망
서남구기저수협	조업수역 축소로 업계피해 심각	1) 현 휴어기를 단축하여 조업기간을 연장할 것 2) 망구전개판 설치 요구 3) 현 어선세력(77척)의 20% 감척 요망
대형선망수협	협정에 의한 연간손실액 약 382억 원 예상	1) 피해보상 및 감척사업 즉시 시행 2) 감척사업 국가보조금 확대 요망 3) 생산물 선상수출제도 수립 요망
근해통발수협	1) 서일본수역 및 동남해역 어장 상실 2) 근해통발 30% 이상 어장 상실 우려 3) 서해, 동중국해의 주조업구역 상실로 기타 통발 존폐기로에 놓임	1) 서해 특정해역 개방 요구 2) 피해보상 시 선원 실업보상비 책정 요망
근해안강망수협	1) 두 협정으로 인해 업계세력 절반 이상으로 감축 우려 2) 조합원 대거 이탈 우려	1) 어선감척 확대 실시와 감척보상 현실화 2) 영어자금지원 및 연체이율 감면 요망
대형기저수협	중국측 과도수역어장 대부분 상실 우려	1) 동경 128도 이동조업 허용 요망 2) 감척 비율 상향 조정 요망

또한, 수협중앙회는 한일,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해 7개 관련 업종별수협 조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관련 수협의 조합원 변동 상태를 추적한 결과 <표 2-3-4>와 같이 우려한 사실이 현실로 나타났다.

근해통발수협, 근해안강망수협, 대형선망수협, 근해자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등 7개 수협에 대하여 협정 전 1996년도 조합원 수 1,433명을 기준으로 할 때 1999년에는 1,123명, 2000년에는 975명, 2010년에는 606명으로, 그 사이에 절반에 가까운 조합원 수가 두 어업협정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이다.

조합원 수 감소가 가장 심한 곳은 근해안강망수협이며, 다음은 대형기선저인망수협과 근해통발수협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조합 자체의 존립과 경쟁력 유지에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표 2-3-4〉 어업협정 관련 조합의 조합원 수 변동 상황

(단위 : 명, %)

구분	1996	1999	2000	2010	2010/1996(%)	세력 축소순위
합계	1,433	1,123	975	606		
근해통발수협	189	184	126	134	29.9	⑤
근해안강망수협	572	434	371	95	83.4	①
대형선망수협	34	29	26	21	38.2	③
근해자망수협	197	169	147	136	30.1	④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56	60	58	43	23.2	⑥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85	83	83	76	10.6	⑦
대형기선저인망수협	300	164	164	101	66.3	②

제4장
한국 수협의 국제적인 활동

1962
2022

제1절 ICA와 한국의 수산업협동조합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은 근대 협동조합 운동 발상지인 영국 런던에서 1895년 8월 19일 전 세계의 협동조합이 모여 조직한 협동조합의 국제적인 대표기구이다. ICA가 정의하는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이다.

ICA는 2021년 현재 112개국의 318개 단체가 가입하여 10억 명 이상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다. 본부는 영국 런던에서 벨기에 브뤼셀로 이전하였으며, 본부, 4개 지역기구 및 8개 분과기구 등을 두고 있다. ICA 본부는 회장, 부회장(지역별), 이사회, 주제별 위원회(성평등, 연구, 법률, 발전) 및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4개 지역기구는 아프리카, 아태지역, 유럽, 아메리카 권역별로 설치되며, 지역총회와 지역이사회가 개최된다. 8개 분과는 수산업, 농업, 생산자, 소비자, 보건, 주택, 은행, 보험분과 등 산업별 분과기구로 분과별 총회 및 집행위원회가 개최되게 된다.

ICA의 목적은 ①협동조합 이상의 세계적 실현, ②협동조합의 세계적인 보급과 확대, ③협동조합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국제활동의 전개, ④세계협동조합 간의 상호 유익한 정보 교환, ⑤세계 각국의 협동조합들이 준수해야 할 협동조합의 보편타당한 원칙의 제정과 이의 준수를 권고하는 역할 등이다.

ICA는 창립 당시부터 협동운동 목표 달성을 위하여 협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필요 시 개정 및 권고하여 왔다. 한편, 창립 100주년인 1995년 9월에 개최된 영국 맨체스터 ICA 총회는 21세기에 향하여 협동조합이 지향할 목표 및 새로운 지도원칙을 천명하였다.

2019년 10월 국제협동조합연맹 총회(르완다)

총회에서 ICA가 설정한 목표는 첫째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게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를 수정하며, 둘째는 협동조합을 통한 지속적인 사회개발과 인력개발에 관심을 쏟는 것이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협동조합 지도원칙은 개정되었는데 ① 가입·탈퇴 자유의 원칙, ② 민주적 운영 원칙, ③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원칙, ④ 자율과 독립의 원칙, ⑤ 교육훈련과 정보제공 원칙, ⑥ 협동조합 간 협동 원칙, ⑦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원칙 등이다.

〈표 2-4-1〉 협동조합 지도원칙의 내용과 변천 과정

최초 9개 원칙 (1895~1937)	ICA 7개 원칙 (1937~1965)	ICA 6개 원칙 (1966~1994)	ICA 현행 원칙 (1995~)
① 재정의 자기부담과 이자 고정의 원칙 ② 조합시설의 조합원이용 우선의 원칙 ③ 신용판매 제한과 시가주의 판매원칙 ④ 이익금의 구매액 비례 배분의 원칙 ⑤ 1인1표제에 의한 조합 지배원칙 ⑥ 조합경영의 전문화 원칙 ⑦ 일정 이익금의 교육비 투자의 원칙 ⑧ 조합활동과 재정상태의 공개원칙 ⑨ 정치·종교 분리의 원칙	① 자본에 대한 이자 제한의 원칙 ② 현금거래의 원칙 ③ 이익금의 구매액 비례 배당 원칙 ④ 민주적 지배의 원칙 ⑤ 잉여금의 교육비 투자의 원칙 ⑥ 조합공개의 원칙 ⑦ 정치·종교 중립의 원칙	① 조합설립가입자유의원칙 ② 민주적 운영의 원칙 ③ 자본의 이자제한 및 출자금 배당제한 원칙 ④ 잉여금의 이용량 배분의 원칙 ⑤ 교육촉진의 원칙 ⑥ 협동조합 간 협동의 원칙	①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 제도 원칙 ②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원칙 ③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원칙 ④ 자율과 독립 원칙 ⑤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원칙 ⑥ 협동조합 간 협동 원칙 ⑦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원칙

ICA 수산위원회는 세계 수산업협동조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세계 어업인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회원국의 협동조합 발전에 기여하며, 각국 수협 간 상호이익과 경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CA 수산위원회(ICFO : International Cooperative Fisheries Organization)는 1951년 설치된 ICA 농업위원회의 수산업소위원회(Fisheries Sub-Committee)에서 출발했다. 1976년 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ICA 제26차 대회에서 농업위원회에서 분리되어 ICA 공식분과기구가 되었으며, ICA 수산위원회(ICA Fisheries Committee)라 하였다. 한편, 현재 명칭인 ICFO로 변경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ICA 제30차 대회였다.

ICA 수산위원회 설립 당시 위원장국은 일본이다. 당시 수산업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일본 전어련회장 사이또 씨가 초대 ICA 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1976년부터 1992년까지 활동하며, 이어서 전어련 회장 쇼지 우에무라 씨가 후임이 되어 2009년까지 일본 전어련은 위원장국으로 세계 수협운동 발전에 기여하였다.

제2절 수협중앙회의 ICA 활동

1. ICA 가입 및 초기 주요활동(1979~2008년)

수협중앙회는 수산업 발전 및 세계 수협 간 협력을 위하여 1960년대 중반부터 ICA 가입을 추진하였다. 1965년 2월 인도의 에르나쿨람에서 개최된 ICA 동남아지역 수협연구회에 수협중앙회 조운현 부회장이 참가한 것이 처음이었다. 조 부회장은 한국 수협의 ICA 가입 의사를 피력하였고, 각국 대표는 가입 지지 의견을 밝혔다.

이후 ICA에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1974년 6월 17일 제출하였지만, 승인을 얻지는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975년 2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ICA 집행위원회는 한국 수협의 가입문제를 토의하기로 하였으나 보류를 결정하였다. 1975년 3월에는 한국 수협의 ICA 가입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회장과 조합장 선출이 조합원 선거가 아니고 임명제 때문이라는 게 그 내용이었다.

수협중앙회의 ICA 가입운동이 활기를 띤 것은 1970년대 말이다. 1978년 9월 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ICA 회의에 남문희 수협중앙회장이 참석하여 '한국의 수산업 발전상과 수협운동' 등을 발표하며 수산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각국의 대표들에게 ICA 가입활동을 펴나갔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30일 회원가입 신청서를 ICA 본부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1979년 3월 1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ICA 집행위원회에서는 한국 수협중앙회의 ICA 정회원 가입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그리고 ICA 가입과 함께 수협중앙회는 분과기구 중 수산위원회에 소속된다. 세계 무대 진출의 문을 두드린 지 거의 15년 만에 ICA 가입운동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1979년 수협 가입을 승인한 ICA 집행위원회(영국 런던)

1981년 이동용 수협회장, ICA 세미나 참석(핀란드 헬싱키)

1979년 ICA 정회원 가입 후 홍종문 수협중앙회장은 1980년 4월 29일 캐나다에서 개최된 ICA 중앙위원회에 처음 참석하여 한국의 수협운동과 활동을 소개하였다.

1980년 10월 8일에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ICA 제27차 대회는 이동용 수협중앙회장이 참석하여 한국의 수협운동과 활약상을 소개했는데, 이 대회에는 52개국 549명의 협동조합 대표와 5개 국제기구 관계자 등 925명이 참석한 대회였다. 그리고 1981년에는 이동용 회장이 ICA 수산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1981년 3월 14일부터 17일 동안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동남아지역 수협세미나를 주관하였고, 동남아지역 수협세미나는 수산발전을 위해 ICA 가입 전인 1978년부터 참석하고 있었다. 아울러 1984년과 1985년에는 말레이시아 수산관계자 연수를 실시하는 등 ICA 수산위원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1998년에는 ICA 수산위원회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도록 협력을 하였으며, 2001년에는 농협과 함께 서울에서 ICA 총회 개최를 주관하고 수협전시관을 설치해 각국 참가자에게 한국 수협을 널리 알렸다.

이 외에도 ICA 총회 및 ICA 수산위원회 총회에도 정기적으로 참가해 협동조합 및 수산업 발전을 위한 각국 대표들과 교류 및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국제협동운동 발전과 수산분야 협력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1979년 동남아지역 수협세미나

2001년 ICA 총회(대한민국 서울)

2. ICA 수산위원회 위원장국 취임 이후 주요활동(2009년~)

가. 국제협동운동 활성화

스위스 제네바에서 2009년 11월 16일 개최된 ICA 수산위원회 총회에서 이종구 수협중앙회 회장이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된다. ICA에 가입 후 30년 만에 국제수산단체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ICA 수산위원회는 ICA 8개 분과 중 하나로 1976년 설립되어 전세계 수협에 대한 수산정보 제공과 각종 교육,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통해 전세계 수협 간 경험 및 전문성을 공유하고 정보교류를 활성화하여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게 목표이다.

그 일환으로 2010년 6월 16일 서울에서 '새로운 10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ICA 회원단체 대표 및 영국의 로저 스피어 교수 등 세계적인 협동조합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종구 회장, ICA 수산위원회 위원장 선출

ICA 다이제스트(국제심포지엄 소개)

국제협동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세계수협의 날도 제정되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된 6월 16일이 세계수협의 날이 된다. 2011년 6월 16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수협의 날 행사에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해걸 국회의원, 찰스 굴드 ICA 사무총장 등을 비롯해 각국 수협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세계 어업인을 위한 수협인의 행동강령'을 제정, 선포했다. 제1회 '세계수협인상'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수산업과 협동조합 발전 유공자를 포상하여 협동운동을 고양시키고자 제정된 상이다. 세계수협의 날 행사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터키에서도 현지 수협연합회와 매년 개최되다가 2015년 11월 9일 ICA 수산위원회 결정으로 3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2018년 6월 16일 세계수협의 날 기념식(터키)

〈표 2-4-2〉 '세계수협의 날' 행사 개최 현황

개최일	개최장소	공동 개최기관
2011.06.16	서울	한국 수협중앙회
2012.06.16	다낭	베트남 협동조합연합회
2013.06.16	수라바야	인도네시아 어업인협동조합연합회
2014.06.16	서울	한국 수협중앙회
2015.06.16	서울	한국 수협중앙회
2018.06.16	이스탄불	터키 수협중앙연합회

주) 2021년 행사는 코로나19로 미개최.

그리고 세계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후술하는 개도국 수협에 수산기자재·정보화기기 지원(2010년~), 한국 수협의 지식공유 교육(2011년~), ICA 수산위원회 장학지원사업(2014년~) 등을 추진하였다.

2014년 인도네시아 협동조합에 기자재 전달

2022년 3월 베트남 어업인에게 마스크 지원

수협중앙회의 세계 수협운동을 위한 노력은 2011년 11월 18일 이종구 회장이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ICA 총회에서 협동조합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ICA 로치데일 파이오니아상을 시상하면서 더욱 빛나게 된다. 로치데일상은 1844년 저임금과 실직에 처한 영국 랭커셔 지방 직조공 28명이 전 세계 협동조합의 기폭제가 된 로치데일공정개척자 조합설립을 기념한 것으로 2001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수상자가 18명에 불과한 매우 귀중한 상이다.

2011년 11월 이종구회장 로치데일상 수상

나. ICA 수산위원회 조직강화

수협중앙회는 각국 수협의 연대를 통한 국제 협동운동 발전을 위하여 ICA 수산위원회와 함께 조직강화를 추진하여 왔다. 개발도상국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수산기자재·정보화기기 등을 지원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0~2015년 동안 개도국의 주요 협동조합단체를 방문하여 수산분야도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14개국의 회원단체에 11만 4,114달러 상당의 컴퓨터 및 수산기자재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해당 국가 어업인을 국내로 초청하는 한국 수협의 지식공유(KSP) 교육 등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이 기간에 10개 해외 수산단체가 ICA 수산위원회에 가입하고, 7개소는 지금도 국제협동운동 대열에 함께하고 있다.

한편,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네팔 및 베트남 회원단체 2개소에 총 4,000달러(USD) 상당의 마스크 등 방역물자를 지원하였다

〈표 2-4-3〉 ICA 수산위원회 조직강화사업 물자지원 내역

연도	국 가	대상단체	지원내역	지원액(USD)
계(14개 단체)				114,114
2010	필리핀	협동조합연합회	컴퓨터, 프린터 각 5대	4,920
	베트남	협동조합연합회	컴퓨터 5대, 프린터 1대	4,943
	방글라데시	협동조합협회	컴퓨터 5대	5,000
	스리랑카	수협중앙회	컴퓨터 5대	5,000
2011	인도네시아	어업인협동조합연합회	수산기자재	14,000
	태국	협동조합연맹	컴퓨터, 프린터 각 5대	5,324
	인도	어업인협동조합연합회	컴퓨터, 프린터 각 5대	4,800
	베트남	협동조합연합회	수산기자재	19,953
2012	말레이시아	어업인연합회	컴퓨터 13대	10,500
	미얀마	협동조합연합회	컴퓨터 14대, 프린터 9대	10,674
2014	터키	수협중앙연합회	컴퓨터 3대, 프린터 등	5,000
	모리셔스	수협연합회	컴퓨터 4대, 모니터 1대	5,000
	네팔	협동조합연합회	컴퓨터 5대	5,000
2015	팔레스타인	경제사회개발위원회	컴퓨터 10대	7,000
	몰디브	어업인협회	컴퓨터 4대 프린터 등	7,000

다. 한국 수협의 지식공유(KSP) 교육

ICA 수산위원회 회원단체의 대부분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 소재 개발도상국이다. 개도국 발전에는 자본축적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교육 등 지식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개도국에서 출발해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2011년

부터 회원단체 어업인 등을 초청하여 한국수협의 주요사업(수산물 유통·가공, 신용사업, 안전조업 등)을 소개한 후 위판장, 양식장, 수산가공·유통시설, 어촌체험시설, 어선안전국, 조선소, 수산박람회 등 시찰을 진행하였다.

KSP 교육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7개국의 어업인 등 142명을 대상으로 10회 실시하여 개도국 수산업 발전과 국제협동운동 확산을 위해 기여하였다. 2020년부터 현재는 코로나19로 교육이 지연 중이지만, 코로나19 극복 시 향후 활발히 실시할 예정이다.

〈표 2-4-4〉한국 수협의 지식공유(KSP) 교육 실시 현황

연도	국가	단체	인원	현장 시찰 장소
2011	필리핀	협동조합연합회	13명	부산시수협, 부산 공동어시장
2012	베트남	협동조합연합회	14명	동원 F&B 사업장, 부산 공동어시장, 감천항물류센터
2013	인도네시아	어업인협동조합 연합회	13명	안전조업상황실, 감천항물류센터, 해양바이오센터, 질병관리센터
2014	인도	어업인협동조합연합회	13명	통영수협, 감천항물류센터, 양식장
2015	미얀마	미얀마 수산부, 민자니 수산회사	10명	인천가공물류센터, 내수면양식연구센터, 부경대학교, 국립수산과학원,
2016	스리랑카	스리랑카 수산부, 어업인협회	11명	부산공동어시장, 한림수협 FPC, 조선소, 선박엔진공장
2017	필리핀	코르도바시, 어업인협회	13명	인천어선안전조업국, 노량진수산시장, 내수면양식연구센터, 감천항물류센터
2018	네팔	협동조합연합회, 네팔 상업부	15명	속초시수협, 노량진수산시장, 양식장, 내수면양식연구센터, 조선소
	필리핀	코르도바시, 알레그리아시, 어업인협회	20명	부산국제수산무역EXPO, 노량진수산시장, 부산어선안전조업국, 속초해양경찰서
2019	인도네시아	어업인연합회	15명	인천가공물류센터, 인천어선안접조업국, 인천 백미리 어촌계

KSP 어선안전국 방문

KSP 부산공동어시장 방문

라. ICA 수산위원회 수산장학생 프로그램

수협중앙회는 ICA 수산위원회 위원장국으로서 차세대 수산인력 양성을 위하여 ICA 수산위원회 장학생 제도를 2014년부터 운영해 왔다. 개도국의 수산 관련학과 대학졸업자 중 매년 2명 내외에서 선발해 수산분야 석사과정 이수를 지원하는 게 요지이다. 이에 ICA 수산위원회는 2014년 1월 24일 부경대학교와 관련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ICA 수산위원회는 학생을 선발해 왕복항공료, 생활비(매달), 기숙사비 및 보험료를 지원하고, 부경대학교는 위탁교육 및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2014년 장학생 제도 도입 후 2021년까지 네팔, 인도네시아, 터키 등 6개국 학생 20명이 해양수산경영학, 수산생물학, 해양생물학, 수산물리학 및 생물공학 등을 부경대학교 대학원에서 전공하였다. 향후에도 수산위원회는 개발도상국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ICA 수산위원회 장학생

〈표 2-4-5〉 ICA 수산위원회 수산장학생 프로그램 실시 현황

2014년(1기)	2015년(2기)	2016년(3기)	2017년(4기)
2명	2명	2명	3명
네팔, 인도네시아	터키, 미얀마	터키, 미얀마	터키(2), 스리랑카
2018년(5기)	**2019년(6기)**	**2020년(7기)**	**2021년(8기)**
4명	4명	1명	2명
스리랑카(2), 터키, 인도네시아	인도, 미얀마, 터키(2)	스리랑카	터키, 인도네시아

제3편
수협경영 변천사

제1장 수협법 및 제도
제1절 수협법 제정
제2절 수협법 개정
제3절 현행 수협법의 주요 내용

제2장 수협조직
제1절 중앙회
제2절 회원조합
제3절 어촌계
제4절 자회사

제3장 시대별 수협 비전
제1절 중앙회
제2절 수협은행

제1장
수협법 및 제도

1962
2022

제1절 수협법 제정

1. 제정 경과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처음 시도한 것은 1948년 10월 30일 농림부 농촌지도국이 작성한 「협동조합조직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모든 업종의 경제적 약자를 포함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농어촌의 경우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다.

이후 정부에서는 산업별로 독자적인 협동조합의 창설을 시도하였는데, 농업의 경우 1957년도에 경제사업을 규정하는 「농업협동조합법」과 신용사업을 규정하는 「농업은행법」을 제정하고 1958년에 중앙회를 설립한 후 농업은행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5·16 군사정변 당시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통합되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고 한다)도 이에 발맞추어 1954년 당시 상공부 해무청에서 「수산업협동단체법」을 내놓았으나 본격적으로 심의도 하지 못한 채 지연이 되었고,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이 법안을 보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다시 상정하게 되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안)」은 1961년 5·16 군사정변 당시의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상정되어 1962년 1월 20일에 제정, 공포되었고, 7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준비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농림부의 「수산업협동조합설립에 관한 운영지침」이었다.

이에 의거하여 당시 산재해 있던 어업조합, 수산조합 및 대한수산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에 편입이 되었고, 1962년 3월 30일에 각령 제619호로 「수협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곧 시행에 들어가 수협의 설립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었다.

2. 제정 수협법의 주요 내용

제정 「수협법」은 총 8개 장에 본문 167개 조, 부칙 11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표 3-1-1>과 같다

〈표 3-1-1〉 제정 「수협법」의 주요 내용

장	절	조
1 (총칙)		1(목적), 2(종류), 3(명칭사용과 유사명칭 사용금지), 4(법인격), 5(주소), 6(봉사의 원칙), 7(정치관여의 금지), 8(공무원의 겸직 금지), 9(공과금의 면제), 10(농림부 장관의 감독), 11(정의), 12(정부의 협력의무와 중앙회장의 의견제출), 13(등기), 14(타 법률의 준용)
2 (어업협동조합)	1(설립)	15(종류), 16(지구별 어업협동조합), 17(업종별 어업협동조합), 18(조합의 창립총회와 설립인가), 19(정관 기재사항), 20(규약), 21(인가권의 제한), 22(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와 자연발효), 23(사무인계), 24(행정구역의 변경과 통지), 25(조합의 설립)
	2(조합원)	26(조합원의 자격), 27(출자와 책임), 28(지분의 양도), 29(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30(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31(가입의 절차), 32(조합원 수의 제한 금지), 33(상속에 의한 가입), 34(부정행위에 대한 제한), 35(전용계약), 36(임의탈퇴), 37(자연탈퇴), 38(제명의 사유), 39(지분환급의 청구권과 환급정지), 40(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41(의결취소의 청구), 42(조합원 명부)
	3(기관)	43(총회), 44(총회 의결사항), 45(총회의 소집청구), 46(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47(총회의 의사), 48(의결권의 제한), 49(의결권의 대리), 50(총회의 의사록), 51(결산보고서와 열람), 52(결산보고서의 승인), 53(총대회), 54(이사회), 55(임원 및 간부직원), 56(조합장의 직무), 57(조합대표의 예외), 58(임원의 임기), 59(임원의 경업 금지), 60(임원의 겸직 금지), 61(감사의 직무), 62(서류의 열람), 63(임원의 해임), 64(민법 준용)
	4(사업)	65(사업의 종류), 66(창고증권의 발행), 67(어업의 경영), 68(단체협약의 효력)
	5(분할, 합병, 해산)	69(합병과 분할), 70(설립위원), 71(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설립), 72(합병 또는 분할의 등기), 73(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 74(해산사유와 등기), 75(합병, 분할, 해산의 공고 및 최고), 76(파산선고), 77(해산잉여재산)
	6(청산)	78(청산인과 청산 감독), 79(청산인의 권리의무), 80(청산인의 직무), 81(재산분배의 금지), 82(결산보고), 83(민법 준용)
	7(등기)	84(설립등기), 85(지소의 신설등기), 86(사무소의 이전등기), 87(변경등기), 88(해산등기), 89(합병등기), 90(청산인 등기), 91(청산종결 등기), 92(관할 등기소와 등기부), 93(설립등기의 신청), 94(등기신청자), 95(사무소의 신설, 이전변경등기의 신청), 96(해산등기의 신청), 97(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98(청산인 등기의 신청), 99(청산종결등기의 신청), 100(등기사항의 공고)
3 (수산제조업 협동조합)	1(통칙)	101(설립), 102(구역), 103(조합원의 자격), 104(출자), 105(사업의 종류), 106(준용규정)
4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2(총회)	107(목적), 108(사무소와 구역), 109(회원), 110(출자), 111(회원의 책임), 112(정관 기재사항), 113(해산)
	3(대의원회)	114(총회), 115(총회의 의결)
	4(운영위원회)	116(대의원회), 117(대의원의 선출과 임기)
	5(임원과 직원)	118(운영위원회), 119(구성), 120(위원의 선출), 121(위원자격의 제한), 122(의장), 123(회의), 124(외부인사의 초청), 125(회의참여의 제한), 126(긴급조치)
	6(사업)	127(임원의 정수와 직무), 128(임원의 임명과 임기), 129(직원의 임면 등), 130(대리인의 선임), 131(타 직업종사의 제한)
	7(수산금융채권)	135(채권의 발행), 136(상환에 대한 정부보증), 137(소멸시효), 138(필요사항)
	8(준용규정)	139(준용규정)
5(회계)		140(회계연도), 141(법정적립금과 사업준비금), 142(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143(잉여금의 출자납입 충당), 144(법정적립금의 사용금지), 145(출자의 감소와 공고 최고), 146(감자에 대한 채권자 보호), 147(수산업협동조합의 지분 등 취득금지), 148(예산), 149(결산), 150(잉여금의 운용)
6(감독)		151(업무 또는 재산상황의 보고, 인가), 152(업무 또는 회계상황 검사), 153(심계원의 검사), 154(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155(해산명령의 사유), 156(의결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 157(전용계약의 취소), 158(중앙회의 감독), 159(회원의 지도), 160(위법 또는 부당결의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161(회원 또는 조합원의 검사청구), 162(회원에 대한 조치의 신청), 163(결산보고서, 연차보고서)
7(벌칙)		164(벌칙), 165(동전), 166(과료), 167(동전)
8(보칙)		168(시행령)
부칙		시행일, 폐지법령, 종전단체에 대한 조치 등 11개 조

제정 「수협법」에서는 주요 기구의 역할과 기능, 운영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협의 종류를 어업협동조합, 수산제조업협동조합, 수협중앙회로 나누고 있고, 어업협동조합은 다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과 업종별 어업협동조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현재와 비슷하다.

둘째,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1년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행 규정과 동일하다.

셋째, 사업의 종류를 지도보호사업, 구매사업, 보관·판매사업, 신용사업, 이용사업, 공제사업, 후생복리사업 등 10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역시 크게 볼 때 현재의 규정과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수협법」 체계는 1962년의 제정 「수협법」에서 이미 상당 부분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시대변화에 따라 명칭이 변하거나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는 등의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988년 6월 수협법 개정 공청회

제2절 수협법 개정

1. 개정 경과

1962년 「수협법」이 제정된 이래 2021년까지 총 63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이 중 62차례는 부분 개정이고, 1차례의 전부 개정이 있었는데 전부 개정은 2004년 12월 31일 법률 제7311호로 개정한 것이다.

부분 개정은 다시 자체 필요에 의해 개정한 일부 개정과 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개정해야 할 타법 개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연대별 일부 개정과 타법 개정 실적을 보면 <표 3-1-2>와 같다.

즉 「수협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일부 개정이 33차례, 타법 개정이 29차례 있었는데 일부 개정 경우 2010년대에 14차례로 월등히 많았고(전체의 42.4%), 1990~2010년대에 걸쳐 대부분 이루어졌다(74.2%). 이런 점에서 수협은 1990~2010년대에 걸쳐 기능이나 조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표 3-1-2〉 연대별 「수협법」 부분 개정 건수

(단위 : 차례)

연대	합계	일부 개정	타법 개정
합계	62	33	29
1960년대	5	5	-
1970년대	4	4	-
1980년대	4	4	-
1990년대	10	2	8
2000년대	13	3	10
2010년대	23	14	9
2020년대	3	1	2

2. 전부 개정 내용

2004년 12월 31일에 이루어진 「수협법」 전부 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동 법은 총 8장으로 본문 180조, 부칙 16조로 되어 있다.

〈표 3-1-3〉 2004년 수협법 전부 개정 내용

장	절	조
1(총칙)		1(목적), 2(정의), 3(명칭), 4(법인격 등), 5(최대봉사의 원칙 등), 6(중앙회의 책무), 7(공직선거에의 관여 금지), 8(부과금의 면제), 9(국가 공공단체의 협력), 10(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11(다른 법률의 적용 등), 1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2(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1(목적과 구역)	13(목적), 14(구역 및 지사무소), 15(어촌계)
	2(설립)	16(설립인가 등), 17(정관 기재사항), 18(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19(지구별수협의 성립)
	3(조합원)	20(조합원의 자격), 21(준조합원), 22(출자), 23(회전출자), 24(지분의 양도 양수와 공유금지), 25(조합원의 책임), 26(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27(의결권 및 선거권), 28(의결권의 대리), 29(가입), 30(상속에 따른 가입), 31(탈퇴), 32(제명), 33(지분환급의 청구권과 환급정지), 34(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35(의결취소의 청구 등)
	4(기관)	36(총회), 37(총회 의결사항 등), 38(총회의 소집청구), 39(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40(총회의 개의와 의결), 41(의결권의 제한 등), 42(총회의 의사록), 43(총회 의결의 특례), 44(대의원회), 45(이사회), 46(임원의 정수 및 선출), 47(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48(감사의 직무), 49(감사의 대표권), 50(임원의 임기), 51(임원의 결격사유), 52(임시이사 임명), 53(선거운동의 제한), 54(선거관리위원회), 55(임원의 겸직금지 등), 57(임원의 해임), 58(민법 상법의 준용), 59(직원의 임면)
	5(사업)	60(사업), 61(비조합원의 사업이용), 62(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63(창고증권의 발행), 64(어업의 경영)
	6(회계)	65(회계연도), 66(회계의 구분 등), 67(사업계획과 수지예산), 68(자기자본), 69(여유금의 운용), 70(법정적립금 등), 71(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72(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금지), 73(결산 등), 74(출자금액의 감소의결), 75(출자금액의 감소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76(지분취득 등의 금지)
	7(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77(합병), 78(설립위원), 79(합병지원), 80(분할), 81(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82(합병 분할의 공고 최고 등), 83(합병의 효력), 84(해산사유), 85(파산선고), 86(청산인), 87(청산인의 직무), 88(청산 잔여재산), 89(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 90(결산보고서), 91(민법 등의 준용)
	8(등기)	92(설립등기), 93(지사무소의 설치등기), 94(사무소의 이전등기), 95(변경등기), 96(행정구역의 지명변경과 등기), 97(합병등기), 98(해산등기), 99(청산인등기), 100(청산종결 등기), 101(등기일의 기산일), 102(등기부), 103(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3(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104(목적), 105(구역 및 지사무소), 106(조합원의 자격), 107(사업), 108(준용규정)
4(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109(목적), 110(구역 및 지사무소), 111(조합원의 자격), 112(사업), 113(준용규정)
5(수산업협동조합 협의회)		114(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115(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장	절	조
6(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	1(통칙)	116(목적), 117(사무소 및 구역), 118(회원), 119(준회원), 120(출자), 121(당연탈퇴), 122(회원의 책임), 123(정관 기재사항), 124(해산)
	2(기관)	125(총회), 126(총회의 의결사항), 127(이사회), 128(소이사회)
	3(임원과 직원)	129(임원), 130(회장의 직무), 131(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132(이사의 직무), 133(감사위원회), 134(임원의 선출 및 임기), 135(임원의 해임), 136(직원의 임면 등), 137(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4(사업)	138(사업), 139(비회원의 사업이용), 140(장기대출), 141(여신자금의 관리 등)
	5(중앙회의 지도 감사)	142(중앙회의 지도), 143(조합감사위원회), 144(위원회의 구성), 145(의결사항), 146(회원에 대한 감사 등)
	6(우선출자)	147(우선출자), 148(우선출자증권의 발행), 149(우선출자자의 책임), 150(우선출자의 양도), 151(우선출자자 총회), 152(우선출자에 대한 그 밖의 사항)
	7 (국가 등의 출자)	153(국가 등의 출자 지원 등), 154(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출자), 155(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출자자 총회)
	8(수산금융채권)	156(수산금융채권의 발행), 157(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158(채권의 질권 설정), 159(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160(소멸시효), 161(수산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9(회계)	162(사업계획과 수지예산), 163(결산 등), 164(자기자본), 165(그 밖의 적립금 등), 166(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167(여유금의 운용)
	10(준용규정)	168(준용규정)
7(감독)		169(감독), 170(법령위반에 대한 조치), 171(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172(경영지도), 173(설립인가의 취소 등), 174(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청구), 175(청문)
8(벌칙)		176(벌칙), 177(벌칙), 178(벌칙), 179(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180(과태료)
부칙		시행일,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정관변경에 관한 경과 조치, 상임이사 전무 중앙회 이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16개 조

이 개정 「수협법」은 제정 「수협법」에 비해 체제는 거의 바뀌었고, 새로운 내용도 많이 추가되었다.[1] 개정 「수협법」을 통해 바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공공단체는 수협의 사업에 적극 지원해야 하고(제9조), 수협은 국내외 협동조합과 상호협력 및 사업의 공동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정부 등의 수협에 대한 재정지원과 수협의 대외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수협의 분류와 명칭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즉 종전에는 수협을 어업협동조합(제정 「수협법」 제2장), 수산제조업협동조합(제정 「수협법」 제3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정 「수협법」 제4장)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부 개정 「수협법」에서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2장)[2],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제3장)[3],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제4장)[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6장)[5]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수협 분류는 2004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수협법」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제정 「수협법」과 전부 개정 「수협법」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달라진 내용 모두가 전부 개정 시 개정된 것은 아니다.

2 이하 지구별수협이라고 한다.

3 이하 업종별수협이라고 한다.

수협의 분류와 명칭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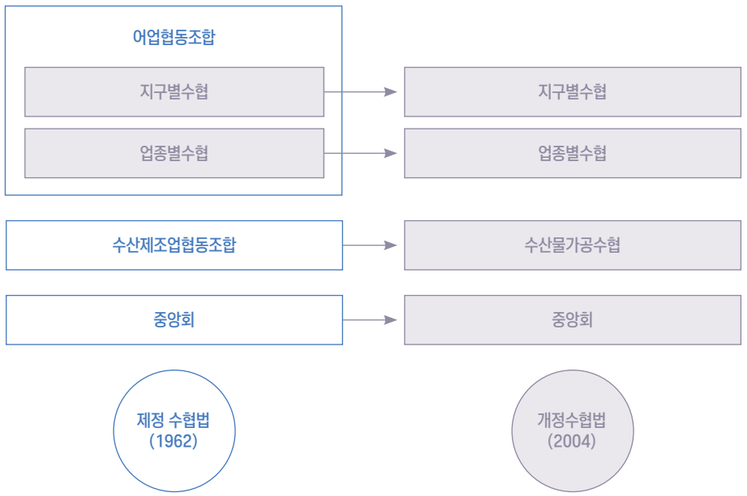

셋째, 사업명칭과 그 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지도사업이라는 용어가 없어졌다. 즉 제정 「수협법」 제105조(사업의 종류)[6] 에 의하면, 어업협동조합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를 구매사업, 보관·판매사업, 이용사업, 검사사업, 공제사업, 신용사업, 지도사업, 문화·후생사업, 각 사업의 부대사업 등 9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수협법」 제60조(사업)에서는 지구별수협이 수행하는 사업을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후생복지사업, 운송사업, 어업통신사업 등 15가지로 규정하고 각 사업 아래에 다시 세부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협동조합 주요 사업의 하나로 들고 있는 지도사업을 교육·지원사업으로 변경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넷째,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를 신설하였다. 이것은 동종 조합 간의 공동사업 개발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조합 간의 협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4 이하 수산물가공수협이라 한다.

5 이하 수협중앙회라고 한다.

6 회원조합과 중앙회 간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는 회원조합의 예를 들어 살펴본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도사업이라는 용어의 소멸은 양자 모두 마찬가지이다.

다섯째, 종래 지구별수협과 중앙회는 조합원과 회원만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수협법」에서 지구별수협에 준조합원제도(제21조)를, 중앙회에 준회원제도(제119조)를 신설하여 해양수산관련단체 또는 수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지구별수협에 대한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규정이 신설되었다(제62조). 즉 제62조 1항에 의하면,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국가, 공공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구별수협에 있어 수산물유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근거가 되었다.

일곱째, 중앙회에 소이사회제도를 신설하고(제128조), 조합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항을 두었다(제143조). 즉 제128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소관 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둔다'고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다른 협동조합에는 거의 없는, 특별한 제도이다. 한편 제143조 제1항에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하에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둔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회원(조합)의 지도·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여덟째, 중앙회에 대해 우선출자(제147조)와 국가 등의 출자(제153조)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제147조 제1항에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 또는 신용사업부문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잉여금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53조 제1항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중략...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출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모두 중앙회에 대한 출자를 증대시켜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중앙회는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56조). 즉 제156조 제1~3항에 의하면 중앙회는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 소관 사업부문별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을 자기자본의 5배 범위 내에서 발행하되 수산금융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그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중앙회 사업자금의 원활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중앙회로서는 매우 유용한 조치가 되고 있다.

제3절 현행 수협법의 주요 내용

현행 「수협법」은 법률 제17007호로 2020년 2월 18일에 타법 개정으로 인해 개정되었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제정 「수협법」 이후 63번째의 개정이고 2004년의 전부 개정을 제외하면 62번째의 부분 개정이다.

현행 「수협법」은 본문이 총 8개 장에 183조, 부칙이 35개, 그리고 법 제53조의 2 제3항 관련 별표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이 8장, 183조라고 하나 파생된 장과 절 및 조가 많아 본문의 실제 분량은 이보다 훨씬 많다. 현행 「수협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4〉 2020년 개정 현행 「수협법」의 주요 내용

장	절	조
1 (총칙)		1(목적), 2(정의), 3(명칭), 4(법인격 등), 5(최대봉사의 원칙 등), 6(중앙회 등의 책무), 7(공직선거 관여 금지), 8(부과금의 면제), 9(국가 공공단체의 협력 등), 10(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11(삭제), 1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12-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12-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2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1 (목적과 구역)	13(목적), 14(구역 및 지사무소), 15(어촌계)
	2 (설립)	16(설립인가 등), 17(정관 기재사항), 18(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19(지구별수협의 성립)
	3 (조합원)	20(조합원의 자격), 21(준조합원), 22(출자), 22-2(우선출자), 22-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23(회전출자), 24(지분의 양도 양수와 공유금지), 25(조합원의 책임), 26(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27(의결권 및 선거권), 28(의결권의 대리), 29(가입), 30(상속에 따른 가입), 31(탈퇴), 32(제명), 33(지분환급의 청구권과 환급정지), 34(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35(의결취소의 청구 등)
	4 (기관)	36(총회), 37(총회 의결사항 등), 38(총회의 소집청구), 39(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40(총회의 개의와 의결), 41(의결권의 제한 등), 42(총회의 의사록), 43(총회 의결의 특례), 44(대의원회), 45(이사회), 46(임원의 정수 및 선출), 47(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48(감사의 직무), 49(감사의 대표권), 50(임원의 임기), 51(임원의 결격사유), 51-2(형의 분리선고), 52(임시이사 임명), 53(선거운동의 제한), 53-2(기부행위의 제한), 53-3(조합장의 축의 부의금품 제공 제한), 54(선거관리위원회), 55(임원의 겸직금지 등), 56(임원의 의무와 책임), 57(임원의 해임), 58(민법 상법의 준용), 59(직원의 임면)
	5 (사업)	60(사업), 60-2(공제규정), 60-3(조합원에 대한 교육), 60-4(수산물판매 활성화), 61(비조합원의 사업이용), 62(유통지원자금의 조성 운용), 63(창고증권의 발행), 64(어업의 경영)
	6 (회계)	65(회계연도), 66(회계의 구분 등), 67(사업계획과 수지예산), 68(자기자본), 69(여유자금의 운용), 70(법정적립금 등), 71(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72(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금지), 73(결산 등), 74(출자금액의 감소의결), 75(출자금액의 감소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76(지분취득 등의 금지)

장	절	조
	7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77(합병), 78(설립위원), 79(합병지원), 80(분할), 81(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82(합병 분할의 공고 및 최고 등), 83(합병의 효력), 84(해산사유), 85(파산선고), 86(청산인), 87(청산인의 직무), 88(청산 잔여재산), 89(청산인의 재산분배 재한), 90(결산보고서), 91(민법 등의 준용)
	8 (등기)	92(설립등기), 93(지사무소의 설치등기), 94(사무소의 이전등기), 95(변경등기), 96(행정구역의 지명변경과 등기), 97(합병등기), 98(해산등기), 99(청산인등기), 100(청산종결 등기), 101(등기일의 기산일), 102(등기부), 103(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3(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104(목적), 105(구역 및 지사무소), 106(조합원의 자격), 107(사업), 108(준용규정)
4(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109(목적), 110(구역 및 지사무소), 111(조합원의 자격), 112(사업), 113(준용규정)
4-2 (조합공동 사업법인)		113-2(목적), 113-3(법인격 및 명칭), 113-4(회원의 자격 등), 113-5(설립인가 등), 113-6(정관 기재사항), 113-7(임원), 113-8(사업), 113-9(회계처리기준), 113-10(준용규정)
5(수산업협동조합 협의회)		114(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115(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6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	1 (통칙)	116(목적), 117(사무소 및 구역), 118(회원), 119(준회원), 120(출자), 121(당연탈퇴), 122(회원의 책임), 123(정관 기재사항), 124(해산)
	2 (기관)	125(총회), 126(총회의 의결사항), 127(이사회), 127-2(인사추천위원회), 127-3(교육위원회), 127-4(내부통제기준 등), 128(삭제)
	3 (임원과 직원)	129(임원), 130(회장의 직무), 131(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132(삭제), 133(감사위원회), 134(임원의 선출 및 임기), 135(임원의 해임), 136(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137(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4 (사업)	138(사업), 139(비회원의 사업이용), 139-2(수산물 등 판매활성화), 139-3(수산물 등 판매활성화사업 평가), 139-4(유통지원자금의 조성 운용), 140(삭제), 141(여신자금의 관리 등), 141-2(국가보조 또는 융자사업에 대한 공시정보 대상 등), 141-3(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4-2 (수협은행)	141-4(설립), 141-5(정관), 141-6(등기), 141-7(임원), 141-8(이사회), 141-9(업무 등)
	5(중앙회의 지도 감사)	142(중앙회의 지도), 142-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143(조합감사위원회), 144(위원회의 구성), 145(의결사항), 146(회원에 대한 감사 등)
	6 (우선출자)	147(우선출자), 148(우선출자증권의 발행), 149(우선출자자의 책임), 150(우선출자의 양도), 151(우선출자자 총회), 152(우선출자에 대한 그 밖의 사항)
	7(국가 등의 출자)	153(국가 등의 출자 지원), 154(삭제), 155(삭제)
	8 (수산 금융채권)	156(수산금융채권의 발행), 157(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158(채권의 질권 설정), 159(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160(소멸시효), 161(수산금융채권에 대한 그 밖의 사항)
	9 (회계)	162(사업계획과 수지예산), 162-2(명칭사용료), 163(결산 등), 164(자기자본), 165(그 밖의 적립금 등), 166(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167(신용사업특별회계)
	10(준용규정)	168(준용규정)
7(감독)		169(감독), 170(법령위반에 대한 조치), 171(삭제), 172(경영지도), 173(설립인가의 취소 등), 174(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청구), 175(청문)
8(벌칙)		176(벌칙), 177(벌칙), 178(벌칙), 179(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180(과태료), 181(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182(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183(자수자에 대한 특례)
부칙		2004년 12월 31일 전부 개정 이후의 개정「수협법」에 대한 35개 부칙
별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제53조의2 제3항 관련)

첫째, 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제12조의 2),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제12조의 3)가 추가되었다. 이때 전자는 중앙회와 수협은

행을 같은 사업자로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조합 등이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국가와 수의계약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둘째, 선거운동의 제한(현행「수협법」제53조)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즉 제53-2조를 신설하여 지구별수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셋째, 공제규정(제60-2조), 조합원에 대한 교육(제60-3조), 수산물판매 활성화(제60-4조) 조항을 신설하였다. 제60-2조는 지구별수협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제60-3조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에 대한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 것이며, 제60-4조는 지구별수협이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넷째, 중앙회 인사의 공정성 유지와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위해 중앙회에 감사위원,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조합감사위원 외 위원 2명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두고(제127-2조)있다.

다섯째, 중앙회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제139-2조), 이를 위해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39-4조).

여섯째, 국가의 보조·융자사업에 대해서는 4월 30일까지 자금사용 등을 공시해야 하며(제141-2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41-3조).

일곱째, 2016년 5월 29일「수협법」개정을 통하여 수협은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제6장 제4절의 2), 수협은행의 신설, 정관, 등기, 임원, 이사회,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제141-4~141-9조). 그리고 이에 의거하여 중앙회 자회사로 수협은행이 2016년 12월에 발족하였다.

여덟째, 중앙회는 수산물판매·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명칭사용료로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제162-2조).

마지막으로, 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제181조),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182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제183조)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제2장
수협조직

1962
2022

제1절 중앙회

1. 수협 발족 당시의 중앙회 조직

1962년 수협 설립 직후 중앙회 조직체계도를 보면 <그림 3-2-1>과 같다. 당시 조직은 회장-부회장-이사하에 3개 부, 9개 과(부당 3개 과), 감사, 2개 국 및 9개 도지부로 구성되는, 비교적 단순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림 3-2-1〉 수협 발족 당시의 중앙회 조직도

이후 조직이 커지고 부서 수가 늘어났으나 1972년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본부의 조직은 큰 변화가 없었고, 대신 조직의 기능변화에 따라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지사무소 경우 2016년 수협은행이 발족하기 이전까지 지점 및 출장소 수가 크게 증가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표 3-2-1>).

〈표 3-2-1〉 중앙회 조직의 변화

(단위 : 개소)

연도	본부													영업본부		
	부	국	실	원	소	단	지사무소							영업본부	지점(출장소)	공판장
							원	지역본부	소	지점	물류센터	사업소	공판장			
1962	3	2	-	-	-	9[1]	-	-	-	-	-	-	-	9	-	-
1972	14	1	3	-	-							2	2	9	-	1
1982	15	-	3	1	-	-	-	-	-	8	-	13	1	8	9	9
1992	17	-	4	-	1	-	1	-	-	26(16)	-	11	8	9	21(2)	1
2002	14	1	4	-	-	-	1	-	-	93(7)	-	9	6	9	-	-
2012	20	1	7	1	-	-	1	2	-	105(4)	3	5	-	7	11	-
2022	15	1	8	1	-	1	1	9	-	-	5	13	6	-	-	-

1) 과(課) 단위 조직임.

2. 2000년의 중앙회 조직

2000년 1월 「수협법」 개정으로 협동조합 본연의 업무인 경제사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독립사업부제를 확대 실시하여, 사업전담 대표이사제를 도입하였다. 당시의 조직도를 보면 <그림 3-2-2>와 같이 14개 부, 2실, 1원, 9개 도지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2-2〉 2000년 중앙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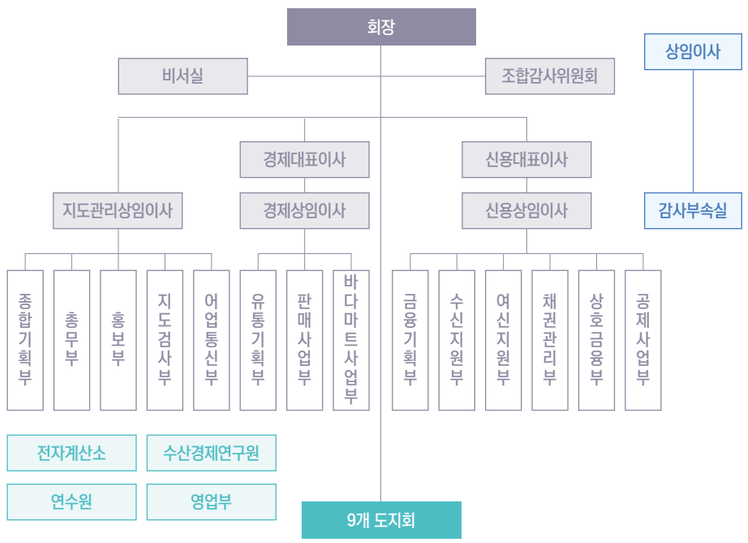

3. 현재의 중앙회 조직

2022년 현재 중앙회 조직과 기관은 각종 사업이 다양화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상당히 달라져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그림 3-2-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3-2-3〉 2022년 중앙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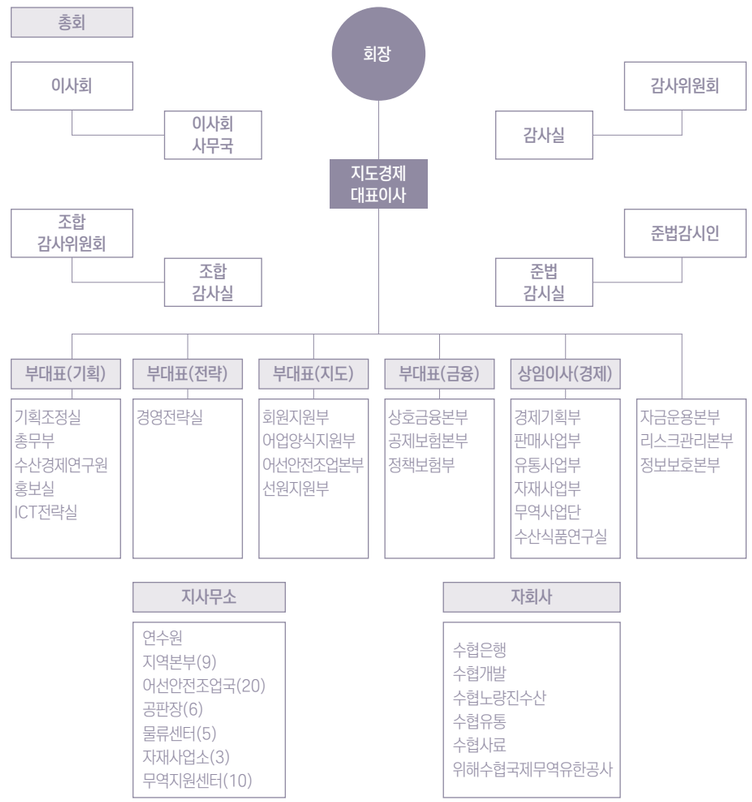

제2절 회원조합

1. 수협 발족 당시의 회원조합

수협 발족 당시의 회원조합은 지구별어협이 88개소, 업종별어협이 11개소,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이 2개소 등 총 99개소였다. 그러나 조합 간 사정이 모두 달라 설립 절차를 끝낸 것은 거의 1962년 말경이었다. 그리하여 1962년 말을 기준으로 보면 지구별어협이 2개소, 업종별어협이 1개소 증가하여 총 102개소가 되었다.

〈표 3-2-2〉 수협 발족 당시의 회원조합 현황(1962. 4. 1 기준)

구분		개소	조합명
합계		99	
지구별 어협	소계	86	
	경기도	8	인천, 강화, 덕적, 부천, 용유, 연평, 화성, 평택
	강원도	7	아야진, 속초, 주문진, 강릉, 묵호, 삼척, 원덕
	충청남도	6	장항, 보령, 홍성, 서산, 당진, 강경
	전라북도	4	군산, 안서, 곰소, 고창
	전라남도	28	완도, 군외, 안도, 거문도, 고금, 금일, 노화, 강진, 북평, 송지, 우수영, 조도, 목포, 흑산도, 영광, 여수, 돌산, 벌교, 옥정, 나로도, 광양, 장흥, 금산, 풍화, 녹동, 해창만, 관산, 금당
	경상북도	9	감포, 양포, 구룡포, 포항, 강구, 축산, 후포, 죽변, 울릉도
	경상남도	19	삼천포, 방어진, 고성, 마산, 거제, 온산, 진해, 장승포, 욕지, 기장, 한산, 통영, 정자, 관포, 남해, 웅동, 장생포, 하동, 부산
	제주도	5	제주, 한림, 서귀포, 성산, 추자도
업종별 어협	소계	11	
	기선저인망	4	제2구 중형, 제3구, 제4구, 원양
	잠수기	3	제2구, 제3구, 제4구
	정치망	1	경남정치
	건착망	1	기선건착망
	포경	1	포경어업
	온망	1	경남온망
수산 제조	소계	2	
	통조림	1	통조림
	한천	1	한천

이렇게 발족 당시 지구별 어업별 어협 경우 현재(70개소)보다 월등히 많았는데,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28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경상남도 19개소였으며, 기타 지역 경우 4~9개소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업종별어협 경우 현재(19개소)보다 훨씬 적었는데, 어선어업조합도 현재보다 적었으나 특히 양식 관련 조합은 하나도 없었다. 반면 수산제조협동조합은 현재와 수는 같으나 명칭과 그 구성도 달랐다[1].

2. 회원조합 수의 변동

전국의 회원조합 수는 수협 발족 당시 102개소이던 것이 1970년대 초 1차로 대폭 감소했고, 1980년대 들어 다시 그 수가 크게 줄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다시 소폭 증가하여 현재는 90개소를 약간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2-3〉 연도별 회원조합 수 변동(연도 말 기준)

(단위 : 개소)

연도		1962	1971	1981	1991	2001	2011	2021
합계		102	122	71	81	91	92	91
지구별 수협	소계	88	103	56	65	69	70	70
	경기[1]	9	10	4	4	4	5	5
	강원	8	10	6	7	9	9	9
	충남	6	4	4	4	5	8	8
	전북	4	5	3	4	4	4	4
	전남	28	37	14	18	19	14	14
	경북	9	10	8	8	8	8	8
	경남[2]	19	22	12	14	14	16	16
	제주	5	5	5	6	6	6	6
업종별수협		12	18	13	14	14	20	19
가공수협		2	1	2	2	2	2	2

1) 인천수협 포함.
2) 부산시 및 울산 수협 포함.

회원조합 수 변동 추이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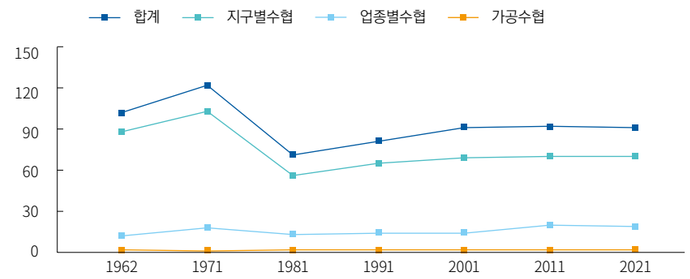

1 현재는 수산물가공수협으로 냉동냉장수협, 통조림가공수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1970년대 초에 회원조합 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1968년부터 수협의 부실 문제가 심각한 실정에 처했기 때문으로, 1968년 5월 대통령 지시로 수협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수협에 대한 감독권을 정부(수산청)에서 중앙회로 이관함과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1968년 6월 11일에 '수협경영개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동 위원회에서는 경영진단 결과와 1시군 1조합 원칙을 설정하여 부실조합을 통합정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회원조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2개 지구별수협 중 1시군 1조합 수는 34개에 불과했고, 1970년에 실시한 경영진단 결과 신용사업에 있어 전국 평균치에 미달하는 조합 수가 80개소(전체 조합 126개소의 63.5%)에 달했다.

그리하여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1972년 4월 경기지역의 연평도, 대청도, 백령도 3개 조합을 통합하여 옹진군수협을 발족시킴으로써 정비작업에 착수했고, 동년 9월 동해북구 기선저인망어협과 동해남구 기선저인망어협을 통합하여 동해구 기선중형수협으로 발족시킴으로써 수협조직 1차 정비는 일단락되었다. 그 결과 지구별어협 35개소, 업종별어협 3개소, 수산제조협동조합 1개소 등 총 39개소의 조합이 정비(통폐합)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9개소로 가장 많이 정비되었고, 그다음 경남이 7개소 정비되었으나 충남과 제주도는 정비된 조합이 없었다.

〈표 3-2-4〉 1972년 수협 정비 결과

(단위 : 개소)

연도		1970	1972	통폐합 조합 수
합계		126	87	39
지구별 어협	소계	105	70	35
	경기	10	6	4
	강원	10	8	2
	충남	6	6	-
	전북	5	4	1
	전남	37	18	19
	경북	10	8	2
	경남	22	15	7
	제주	5	5	-
업종별어협		18	15	3
수산제조		3	2	1

이상과 같은 수협의 정비는 단순한 조합 수의 조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협경영에 있어 누적되어 온 부실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자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첫째, 조합운영경비 절감, 둘째, 대외경쟁력 및 신용력의 강화, 셋째, 경영기반의 확충, 넷째, 사업의 확대와 다양화 및 충실화를 통한 기능의 강화, 다섯째, 조합 경영위기의 극복, 마지막으로, 전문화의 추진 가능성이 그것이다.

한편 1972년만큼 대대적인 정비는 아니나 1980년에 지구별수협 69개소, 업종별수협 15개소, 수산물제조수협 2개소이던 것이 1981년에 지구별수협이 56개소, 업종별수협이 13개로 총 15개소의 조합이 감소하는, 제2차 정비사업이 있었다.

3. 회원조합의 조직

회원조합은 그 규모나 사업 종류가 모두 달라 그 조직도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는데, 1967년 8월 21일 현재의 두 가지 유형을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즉 첫 번째 유형은 규모가 작은 조합의 조직도로서 조합장-전무 아래 3개의 계와 지소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유형은 조합장-전무 아래 3개 과와 지소로 되어 있으며 지소장 아래 다시 3개의 계를 두고 있다.

회원조합 조직도(1967.8.21)

(유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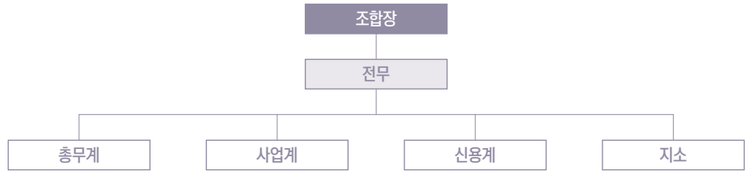

(유형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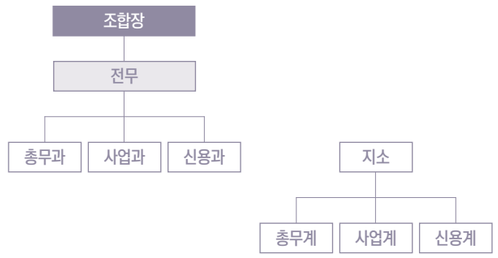

1980년대 초에는 사업 규모와 수익 규모에 따라 조합의 조직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유형별 사업 규모와 수익 규모는 <표 3-2-5>와 같다. 그리고 유형별 조직 형태는 이어지는 그림과 같다.

〈표 3-2-5〉 회원조합의 사업 규모와 수익 규모에 따른 유형(1981.5.8)

(단위 : 억 원)

구분	분류기준	
	사업 규모	수익 규모
유형 1	150 이상	15 이상
유형 2	80 이상	8 이상
유형 3	50 이상	5 이상
유형 4	20 이상	2 이상
유형 5	20 미만	2 미만

유형1의 회원조합 조직도(198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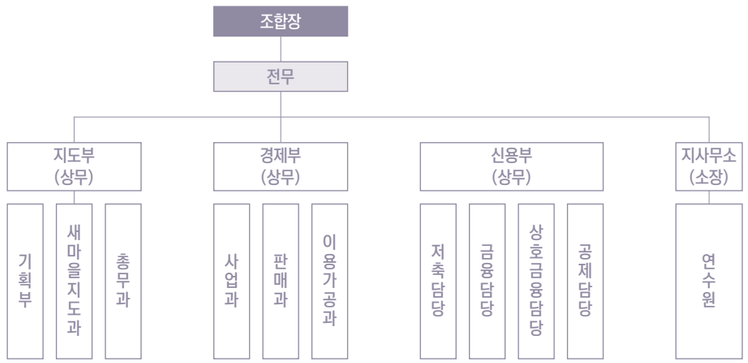

유형2의 회원조합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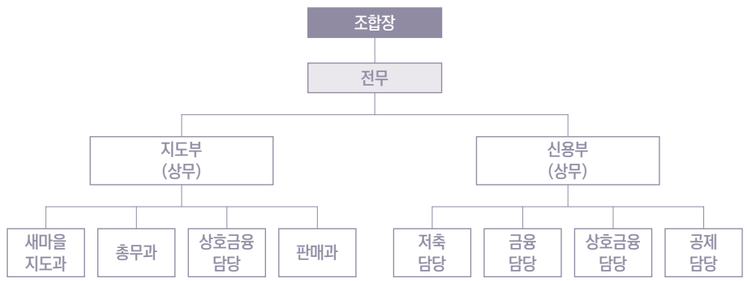

유형3의 회원조합 조직도(198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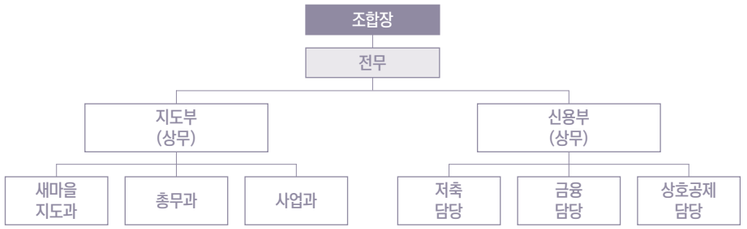

유형4의 회원조합 조직도(1981.5.8)

유형5의 회원조합 조직도(1981.5.8)

이후 회원조합의 조직은 조합의 발전에 따라 점차 커지고 세분화되어 갔는데, 1990년대 초, 2000년대 초의 가장 세분화된 유형1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런데 이들 그림에서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나 1995년 6월 23일에 개정된 「수협법」에 의거, 각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때부터 회원조합 중에는 전무 또는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유형1의 회원조합 조직도(199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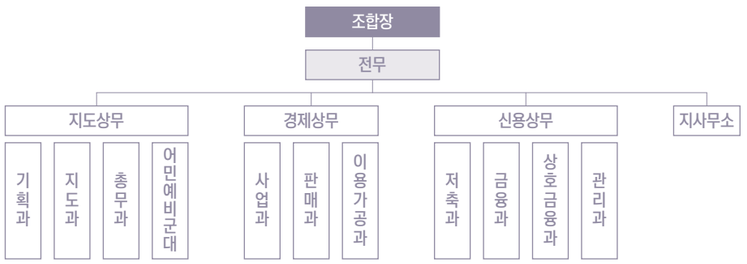

유형1의 회원조합 조직도(200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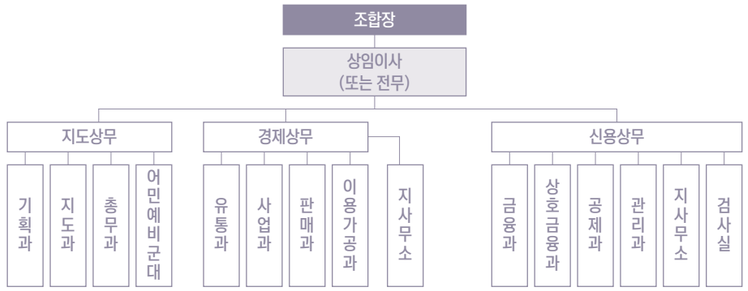

한편 2000년대 이후 회원조합의 조직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전체 구조는 위와 큰 차이가 없고, 신용부문에 점포(지점)가 늘어나고 리스크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다. 참고로 여수수협의 2021년 말 현재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여수수협의 조직도(2021.12.31)

4. 조합원 수

수협조합원 가입 동향을 보면, 발족 초기인 1962년에는 조합원 수가 전체 어가 수의 32.7%밖에 되지 않았다. 당시에 총 19만 4,565호의 어가 가운데서 67.3%가 미가입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6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다.

여기에는 새로 발족한 수협조직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 부족과 초창기 수협의 기능 미약이 주된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 보인 조합원 가입 동향은 조합원 수의 대폭적인 증가와 함께 가입률에 있어서도 어가호수 대비 70%를 넘기 시작하였으며, 1987년에는 처음으로 조합원 수가 어가호수를 추월하였다.

어가호수를 능가할 정도로 수협조합원 가입률이 증가하는 현상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2000년에는 어가호수 8만 1,779호에 조합원 수가 16만 8,123명으로 가입률이 2배를 초과하였다. 최근 2021년에는 어가호수는 4만 3,149호인데 반해, 조합원 수는 15만 3,678명으로 가입률이 무려 3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일으킨 주된 요인은 첫째, 어가호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조합원 수는 일정비율로 증가해 오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둘째, 수협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로 어촌사회에 수협인지도가 크게 높아진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1호 1조합원 가입 원칙이 무너지고 1996년부터는 동일가구 안에서 2인까지 조합원 가입을 허용한 복수가입제의 채택을 들 수 있다.

수협에서는 1996년 6월 23일 조합정관(예) 제24차 개정에서 동 정관 제12조 제②항을 신설하고 동일가구 안에 어업후계자를 두는 경우, 동일 가구 내에서 서로 다른 어장 또는 다른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경영자나 어업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1호(戶) 2인(人)까지 수협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였다(조합정관 제12조 ②항, 1996.6.23. 개정).

〈표 3-2-6〉 수협 조합원 수와 어가호수 대비

(단위 : 개, 명, 호, %)

연도	조합 수	조합원 수	어가호수	가입률	조합당 조합원 수	비고
1962	102	63,550	194,565	32.7	630.0	1호 1조합원 원칙
1965	117	75,638	215,114	35.2	646.5	
1970	128	191,051	194,601	51.9	789.5	
1972	87	123,668	182,414	67.8	1,421.5	
1975	88	114,236	153,545	74.4	1,298.1	
1980	86	124,461	156,934	79.3	1,414.3	
1985	72	138,759	145,247	95.5	1,927.2	
1987	72	142,148	141,204	100.7	1,974.3	어가호수 추월
1990	78	153,865	121,525	79.0	1,972.6	1호 복수조합원제(1996년)
1992	81	158,809	116,185	136.7	1,960.6	
1995	83	163,569	105,480	155.1	1,970.7	
1997	86	165,938	99,912	166.1	1,929.5	
2000	87	168,123	81,779	205.6	2,025.6	
2005	94	171,949	79,942	215.1	1,829.2	
2010	92	158,705	65,775	241.3	1,725.1	
2015	92	158,510	54,793	289.3	1,729.3	
2020	91	154,870	43,149	358.9	1,701.9	
2021	91	153,678	43,149	356.2	1,688.8	

주 : 1) 조합원 수는 지구별수협과 업종별 및 제조가공수협의 조합원 수를 모두 합친 수임.
2) 가입률은 어가호수 대비 조합원 수의 비율임.

제3절 어촌계

1. 어촌계 분포 현황

가. 어촌계 수 변화 추이

어촌계는 해안마을을 중심으로 전국에 분포해 있다. 1962년 어촌계 수는 1,786개였으며 어촌계원은 9만 2,366명이었다. 이후 그 수가 점점 늘어나 1972년에는 2,227개로 역대 가장 많은 어촌계 수를 기록했다. 이후 어촌계에 대한 정비를 하게 되는데 1973년에만 617개를 정리했다. 1978년에는 법인어촌계를 설립함으로써 어촌계의 수는 1,436개로 감소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후 어촌계의 수는 다시 늘어났다. 2002년 법인어촌계 10개를 해산하고 지구별수협으로 전환했다. 이때 설립된 조합의 수는 9개이다. 2010년에는 완도군수협을 완도금일, 완도소안수협으로 계약 이전하는 과정에서 어촌계 수가 다소 감소하기도 했다. 2020년 말 기준 어촌계 수는 2,045개, 어촌계원 수는 12만 1,989명이다.

〈표3-2-7〉 연도별 어촌계 수 및 어촌계원 수 변동

(단위 : 만 명)

연도	어촌계 수	어촌계원 수	연도	어촌계 수	어촌계원 수
1962	1,786	92,366	1992	1,637	148,454
1963	1,905	100,315	1993	1,652	151,681
1964	1,995	109,119	1994	1,679	152,519
1965	2,047	117,546	1995	1,685	149,545
1966	2,103	126,779	1996	1,719	153,323
1967	2,169	129,558	1997	1,742	152,300
1968	2,223	133,708	1998	1,775	155,354
1969	2,216	136,901	1999	1,788	164,315
1970	2,236	148,716	2000	1,809	153,186
1971	2,227	135,820	2001	1,831	157,931
1972	2,258	129,457	2002	1,879	149,605
1973	1,641	135,086	2003	1,913	148,972
1974	1,651	128,095	2004	1,951	152,121
1975	1,646	126,747	2005	1,952	153,535
1976	1,650	130,695	2006	1,969	157,117
1977	1,591	114,190	2007	1,972	152,723
1978	1,436	115,893	2008	1,978	148,993
1979	1,439	117,427	2009	1,993	151,185
1980	1,440	121,015	2010	1,874	137,670
1981	1,436	128,600	2011	1,982	141,714
1982	1,449	132,635	2012	1,993	141,571
1983	1,463	130,674	2013	1,992	139,471
1984	1,498	134,240	2014	2,005	141,039
1985	1,513	134,925	2015	2,018	138,055
1986	1,518	135,205	2016	2,029	132,990
1987	1,528	136,686	2017	2,029	131,117
1988	1,539	139,985	2018	2,039	126,461
1989	1,573	143,173	2019	2,039	124,462
1990	1,598	146,847	2020	2,045	121,989
1991	1,602	148,229			

연도별 어촌계 및 어촌계원 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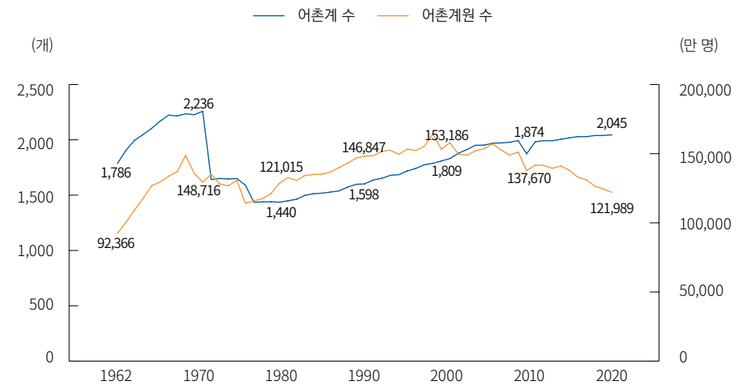

자료 : 수협중앙회, 「2021년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나. 지역별 분포 현황

지역적으로는 전남과 경남에 전체의 65.0%가 집중되어 있다. 전남의 어촌계는 856개로 전체 대비 41.9%, 경남이 473개로 23.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충청지역으로 171개(8.4%), 경북 151개(7.4%), 경인 112개(5.5%), 제주 102개(5.0%) 등의 순이며, 강원, 전북, 부산은 100개 미만이다.

어촌계 지역별 분포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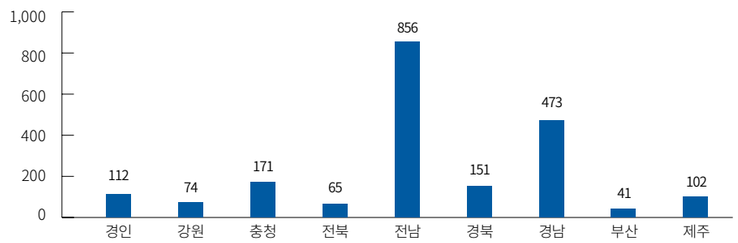

자료 : 수협중앙회, 「2020년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다. 유형별 분포 현황

어촌계는 어떠한 입지에 위치했는가와 어촌계원이 어떤 어업에 주로 종사하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입지의 경우 도시근교, 연안촌락 그리고 취약지구 등으로 나눈다. 도시근교는 도시에 인접했거나 시·군·읍 소재지를 말한다. 생활여건도 도시형인 곳이다. 취약지구는 낙도[1], 벽지[2], 접경지역이다. 그리고 도시근교와 취약지구에 속하지 않은 곳은 모두 연안촌락에 해당한다.

연안촌락에 위치한 어촌계는 총 1,348개로 전체의 65.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에 574개로 전체 어촌계의 28.1%, 경남에 294개로 전체 대비 비중은 14.4%이다. 취약지구형 어촌계는 428개로 전체의 20.9%를 차지했다. 지역적으로는 전남이 232개로 가장 많았고, 전체 어촌계 대비 비중은 11.3%이다. 마지막으로 도시근교에 위치한 어촌계는 269개로 전체의 13.2%를 점했다. 경남이 92개로 도시근교형 어촌계가 가장 많다.

〈표 3-2-8〉 어촌계 입지유형별 분포현황

(단위 : 개, %)

구분	합계	비중	도시근교	비중	취약지구	비중	연안촌락	비중
합계	2,045	100.0	269	13.2	428	20.9	1,348	65.9
경인	112	5.5	36	1.8	33	1.6	43	2.1
강원	74	3.6	23	1.1	1	0.0	50	2.4
충청	171	8.4	9	0.4	28	1.4	134	6.6
전북	65	3.2	7	0.3	22	1.1	36	1.8
전남	856	41.9	50	2.4	232	11.3	574	28.1
경북	151	7.4	12	0.6	10	0.5	129	6.3
경남	473	23.1	92	4.5	87	4.3	294	14.4
부산	41	2.0	26	1.3	2	0.1	13	0.6
제주	102	5.0	14	0.7	13	0.6	75	3.7

자료 : 수협중앙회, 「2020년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1 면 단위 이하 도서 중 교량이나 제방에 의해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곳을 의미한다.

2 정기적인 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편도 3회 이하 운행하고 있고, 군·면사무소로부터 8㎞ 이상 떨어진 곳을 말한다.

어촌계원의 종사유형은 어선어업과 양식어업 중 어떤 어업 세력이 강한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의 세력이 비슷한 경우는 복합형으로 별도로 나뉜다.

복합형에 속하는 어촌계가 824개로 가장 많았다. 전국 대비 비중은 40.3%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81개, 경남이 234개로 전체 대비 각각 13.7%, 11.4%의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은 전체의 32.9%를 차지하는 양식어업형으로 673개 어촌계가 여기에 속했다. 전남의 양식어업형어촌계가 454개로 전국 대비 22.2%를 차지하며 가장 많다. 마지막으로 어선어업형에는 548개 어촌계가 포함된다. 지역적으로는 경남이 170개로 전체 어촌계의 8.3%를 차지했다.

〈표 3-2-9〉 어촌계 종사유형별 분포현황

(단위 : 개, %)

구분	합계	비중	어선어업	비중	양식어업	비중	복합형	비중
합계	2,045	100.0	548	26.8	673	32.9	824	40.3
경인	112	5.5	43	2.1	22	1.1	47	2.3
강원	74	3.6	64	3.1	1	0.0	9	0.4
충청	171	8.4	19	0.9	71	3.5	81	4.0
전북	65	3.2	11	0.5	12	0.6	42	2.1
전남	856	41.9	121	5.9	454	22.2	281	13.7
경북	151	7.4	104	5.1	14	0.7	33	1.6
경남	473	23.1	170	8.3	69	3.4	234	11.4
부산	41	2.0	13	0.6	7	0.3	21	1.0
제주	102	5.0	3	0.1	23	1.1	76	3.7

자료 : 수협중앙회, 「2020년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라. 어촌계 구성원 분포

어촌계의 구성원에는 어촌계원과 준계원이 모두 포함된다. 2020년 말 기준 어촌계 구성원은 13만 4,837명이며, 이중 어촌계원이 전체의 90.5%인 12만 1,989명, 준계원은 전체의 9.5%인 1만 2,848명이다.

지역별로 어촌계 구성원의 분포를 보면 어촌계의 수가 가장 많았던 전남이 어촌계 구성원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어촌계 구성원은 5만 4,067명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했다. 다음은 경남과 충청지역으로 어촌계 구성원은 각각 2만 3,962명, 1만 7,066명이다. 나머지 지역은 전체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미치지 않았다.

〈표 3-2-10〉 어촌계 구성원 분포

(단위 : 개, %)

구분	합계	비중	어촌계원	비중	준계원	비중
합계	134,837	100.0	121,989	100.0	12,848	100.0
경인	9,931	7.4	9,277	7.6	654	5.1
강원	3,811	2.8	3,605	3.0	206	1.6
충청	17,066	12.7	14,837	12.2	2,229	17.3
전북	6,887	5.1	6,169	5.1	718	5.6
전남	54,067	40.1	49,664	40.7	4,403	34.3
경북	6,237	4.6	5,461	4.5	776	6.0
경남	23,962	17.8	21,553	17.7	2,409	18.8
부산	3,761	2.8	2,607	2.1	1,154	9.0
제주	9,115	6.8	8,816	7.2	299	2.3

자료 : 수협중앙회, 「2020년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2. 어촌계의 특성

가. 복수 목적 지향성

어촌계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조직 자체의 유지·존속은 물론 지속적인 성장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촌계의 각종 활동 목적이 단순히 경제적 편익을 도모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공동체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존속함을 의미한다.

어업공동체로서 어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이 주된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어촌계의 지속적 활동을 위해 어장환경 관리, 수산자원 관리 등도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어촌계라는 조직의 존속을 위해 어촌계원 관리, 수익금의 효과적 분배, 조직 내 유보금의 설정 등도 어촌계의 세부적 목적이 될 수 있다.

어촌계는 어촌공동체로서 과거부터 이어져 온 어촌사회의 전통을 수호함은 물론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어촌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사회와

의 긴밀한 관계를 조성하고 상호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즉 문화·전통의 계승·발전, 지역사회 기여 등도 어촌계가 지향하는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나. 마을어업의 주체

일반적으로 어업은 허가어업과 면허어업, 신고어업 등으로 구분되고, 더 세부적으로는 생산방식(포획, 양식)을 기준으로 나뉠 수 있다. 생산 장소에 따라서는 일반해면, 천해양식, 내수면어업, 원양어업으로 구분되며, 어법별로는 각 업종으로 세분화된다.

일반해면어업 중 정치망어업과 마을어업이 바로 어촌계가 주로 행하는 어업들이다. 이와 함께 천해양식 역시 어촌계가 영위하는 어업활동이다. 다시 말해 어촌계는 마을어업의 주체로 지선어장을 마을어장으로 하여 다양한 어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협동양식어업, 해조류·패류·어류 등의 양식업을 행한다.

이 중 마을어업은 어촌계의 가장 본질적 어업활동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이다. 협동양식어업은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즉, 어촌계는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을 기본적인 어업활동으로 삼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정치망어업이나 양식어업을 영위한다.

다. 공익성

어촌계가 행하는 공익적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촌락을 유지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다. 해안가 또는 수변에 위치한 어촌은 도시에 비해 정주여건이 매우 열악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계를 중심으로 어촌이 사람이 살고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유지된다. 이것은 곧 국토의 균형적 이용과 같은 공익적 기능과도 연결된다.

다음으로는 자연환경 보호이다. 어촌계가 해안가에 위치하면서 지속적인 청소 등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유류오염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고 처리를 위해 애쓰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어촌계의 의무 중 하나는 연안 및 어장관리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어촌계는 마을어장은 물론 어촌계가 보유한 어업권 어장에 대해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구제사업 등을 실시한다. 종패 등을 뿌림으로써 자원량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시키는 데도 힘쓴다. 그리고 인공어초, 바다숲 사업 등에도 참여하여 어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결국 연안과 어장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어촌계는 해양의 변화를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관할하기도 한다. 적조, 냉수대 등 해양은 시시각각 변화한다. 이러한 해양의 변화는 단지 어업성과를 판가름하는 데서 벗어나 육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쓰나미와 같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전조현상을 조기에 발견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어촌계의 공익적인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국토방위의 기능을 담당한다. 해안은 적의 잠수함 등을 이용한 침투가 매우 용이하다. 어촌계는 이러한 적의 해안 침투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라. 폐쇄성

어촌계의 특성 중 하나는 폐쇄성이다. 마을어업은 개인보다 공동의 협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이 대부분으로 어촌계원들은 하나의 동질적 의식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한다. 이에 조직으로서의 내적 연대감이 강한 반면 외부에는 폐쇄적인 특징을 보인다.

마. 확장성

어촌계의 법적 성질은 법인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비법인사단이다. 이에 특정 시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별개의 사업조직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업관련 사업의 경우 어촌계원이 별도 사업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즉, 어촌계는 어촌의 중심조직으로 어촌에서의 각종 조직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제4절 자회사

1. 수협은행

가. 발전과정

수협은행은 수협의 신용사업으로 출범했다. 즉 제정 「수협법」 제65조와 제132조에 수협에서 신용사업을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었고, 수협 출범 다음해인 1965년 5월에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개정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은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특수은행의 법적 체계를 완성하였다.

이후 수협중앙회 내의 신용사업 전담부서로서 그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1990년대 말, IMF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계기로 신용사업부문의 분리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수협에서도 2000년 1월 29일 「수협법」을 계기로 신용대표이사제도를 도입했고, 2월부터 수협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0년 2월 제1차 차관회의에서 경영혁신방안 추진을 전제로 우선출자 지원을 결정했다. 3월에는 해수부에서도 신용과 지도경제사업의 분리와 경영혁신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001년 4월에는 예금보험공사 이사회에서 공적자금 지원규모와 조건 및 지원방안을 확정하였다. 내부 준비절차를 거쳐 공적자금 1차분을 인수했으며, 12월에 공적자금 2차분을 인수함으로써 공적자금 인수가 완료되었다.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신용 사업 대표이사 체제하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2010년 12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바젤Ⅲ 도입을 발표함에 따라 수협은행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내 시중은행은 2013년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수협의 경우 도입을 3년 유예하기로 했다. 수협은 이의 도입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합동 TF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2016년 5월에는 「수협법」 개정안이 공표와 함께 '수협구조개편지원단'을 발족하여 동년 12월 수협사업구조개편안을 완료하였다. 이의 결과 수협은행은 중앙회가 전액 출자하는 자회사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수협은행의 자회사화, 즉 수협사업구조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당초 중앙회는 지도경제사업부문과 신용사업부문의 이원화 체제하에서 신용사업부문에서 예금보험공사에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업구조개편으로 신용사업부문 대신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신설, 여기서 수협은행에 100% 출자하고 배당금의 일부를 공적자금 상환액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수협사업구조개편의 주요 내용

나. 주요사업과 시설현황

1) 주요 업무

수협은행의 주요 사업은 크게 다음과 같이 8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수산자금 등 어업인 및 조합에서 필요한 자금의 대출
②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③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 대리
④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업무
⑤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무
⑦ 상기 업무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⑧ 금융위원회의 등록 및 인가를 얻은 타 겸영업무

2) 시설현황

수협은행의 영업점은 2021년 말 현재 123개 지점, 5개 출장소로 총 128개소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58개소, 경기지역 23개소, 부산지역 12개소, 그 외 지역에 35개소가 소재하고 있다. 또한, 2019년도에 해외법인인 수협마이크로파이낸스(수협MFI)를 미얀마에 설립하였다.

다. 인력

수협은행의 인력은 2021년 말 현재 총 1,940명이다. 이 가운데 은행장과 감사 및 이사 등의 임원이 8명, 집행부행장이 5명이며, 정규직원이 1,834명, 계약직원이 93명이다.

〈표 3-2-12〉 수협은행의 인력현황(2021년 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인원수
합계		1,940
임원	소계	8
	은행장	1
	상임감사	1
	사외이사	4
	비상임이사	2
집행부행장		5
정규직원		1,834
계약직원		93

라. 조직체계

수협은행의 본부 부서는 크게 5개 그룹, 5개 특정업무전담본부 그리고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룹 및 업무전담본부는 17개 부서를 하위에 두고 있다.

수협은행의 조직도(2021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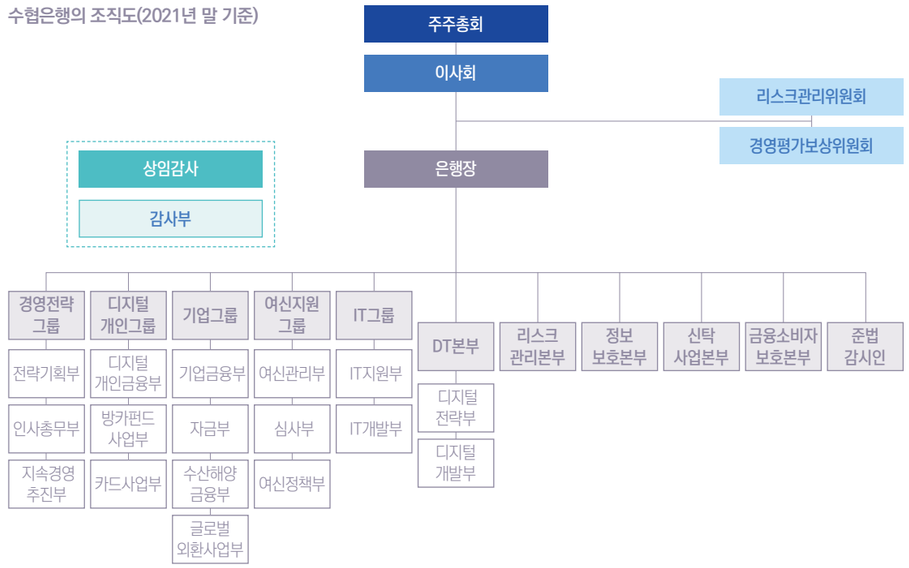

마. 사업실적

수협은행의 사업실적을 보면, 2020~2021년의 1년간 대출금이 2조 4,906억 원 증가했고, 유가증권 5,452억 원 증가, 총여신 2조 6,257억 원 증가, 총수신 3조 8,221억 원 증가, 총자산 4조 6,004억 원 증가 등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다.

〈표 3-2-13〉 수협은행의 영업실적

(단위 : 억 원)

구분		2020년 말	2021년 말	증감
대출금	소계	356,580	381,486	24,906
	은행계정	356,580	381,486	24,906
	신탁계정	-	-	-
유가증권	소계	51,117	56,569	5,452
	은행계정	50,365	56,127	5,762
	신탁계정	752	442	△310
총여신	소계	360,526	386,783	26,257
	은행계정	360,476	386,783	26,307
	신탁계정	50	-	△50
총수신	소계	363,170	401,391	38,221
	은행계정	344,531	387,377	42,846
	신탁계정	18,639	14,014	△4,625
총자산	소계	525,664	571,668	46,004
	은행계정	433,985	471,805	37,820
	신탁계정	92,562	100,276	7,714
	상호거래	883	413	△470

바. 재무현황

수협은행의 재무현황을 보면, 자산, 부채, 자본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즉 2015~2021까지 자산은 1.94배, 부채는 1.88배, 자본은 3.10배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재무상태가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14〉 수협은행의 재무현황

(단위 : 억 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자산	243,112	276,213	319,739	372,472	407,220	433,985	471,805
부채	231,893	253,384	295,228	345,992	378,047	401,723	436,976
자본	11,219	22,829	24,511	26,480	29,173	32,263	34,829

사. 손익현황

수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자회사로 독립한 후 초기에는 부침을 겪었으나, 2017년 이후 안정화되었다. 당기순이익의 규모는 2,000억 원대로 2021년에는 2,216억 원을 기록했다.

〈표 3-2-15〉 수협은행의 손익현황[1)]

(단위 : 억 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영업이익	1,034	1,025	2,814	3,301	3,199	2,681	3,163
영업외손익	△262	△239	△277	△291	△345	△345	△317
법인세	192	188	585	707	661	516	630
당기순이익	580	598	1,952	2,304	2,192	1,820	2,216

1) 반올림 관계로 끝자리 숫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수협노량진수산

가. 발전과정

수협노량진수산[1]은 1927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역 근처 의주로에 경성수산주식회사로 개장했고, 1971년 6월 한국냉장에서 현 위치에 도매시장을 건설하였다. 1971년 7월부터 1975년 3월까지 한국냉장(주)에서 직영을 했으며, 이후 1988년 10월까지 민간법인과 한국냉장(주)에서 운영을 하다가 1988년 11월에 한국냉장(주)가 인수하여 2002년 1월까지 운영하였다.

200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민영화 방침으로 생산자단체인 수협이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3년 2월에 노량진수산(주)에서 수협노량진수산(주)로 법인의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후, 노후화된 노량진수산시장을 현대화하여 수도권에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및 식품안전성 확보하기 위해 2016년 3월 16일 현대화된 시장을 개장하였다.

1 기관의 정식 명칭은 수협노량진수산이나 이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이라고 한다.

나. 주요 사업과 시설현황

1) 주요 사업

노량진수산시장의 주요 사업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제1항에 의거,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으로서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수탁받은 수산물의 상장경매, 입찰 등에 의한 수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셋째, 제빙·냉장 및 냉동사업과 수산물가공 및 판매사업 등 부대사업을 하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은 약 3,000여 명으로, 이 중에는 중도매인 180명, 매참인 5명, 소매상인 622명, 하역원 100명, 기타 종업원 2,100여 명 등이다. 그리고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약 3만 명이며 이용 차량 수는 약 5,000여 대다.

2) 시설현황

노량진수산시장의 부지는 4만 450㎡(약 1만 2,236평)이고, 건물의 연면적은 11만 8,346㎡(3만 5,800평)로서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 규모이다. 시설은 수협중앙회가 직접 투자하여 건설하였으며, 중앙회는 노량진수산시장과 시설사용 계약을 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전경과 층별 시설물 현황은 다음 그림과 같다. 지하 2층은 냉동창고와 폐수처리장 등이, 지하 1층은 가공처리장과 활어보관장 등이 입지하고 있다. 그리고 1층은 경매장과 잔품소매장, 2층은 건어물, 활낙지 및 젓갈판매장, 3~4층은 주차장과 사무실, 5~6층은 중도매인 사무실과 법인사무실 등이 입지하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층별 시설물 입지현황

전경	구분	시설
	1층	경매장, 잔품소매점
	2층	건어물, 활낙지, 젓갈판매장
	3층	승용주차장, 항운노조대기실
	4층	승용주차장, 유통인사무실
	5층	중도매인사무실, 고급회식당
	6층	중도매인사무실, 법인사무실
	지하 1층	가공처리장, 활어보관장 등
	지하 2층	냉동창고, 폐수처리장 등

다. 인력현황

수협노량진수산(주)의 인력현황은 정원이 104명으로 현재 110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중에는 정원외 인원으로 비정규직 직원 20명이 포함되어 있다.

〈표 3-2-19〉 노량진수산시장의 인력 현황

구분	총계	임원	정 규 직 원						계약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정원(A)	104	4	100	5	9	43	42	1	-
현원(B)	110	4	86	4	9	39	34	-	20
과부족(B-A)	6	-	△14	△1	-	△4	△8	△1	20

라. 조직체계

노량진수산시장의 조직체계는 크게 대표이사 아래 2명의 상임이사(경영본부장, 영업본부장)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상임이사 아래 3개씩의 부를 두고 있으며, 부 아래 1~2개의 팀이 있다. 한편 상임감사와 감사실을 두고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하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조직도(2021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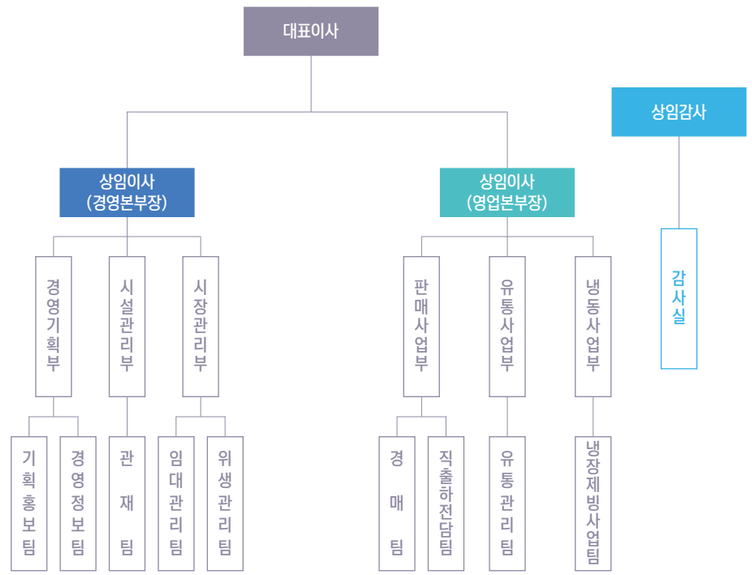

마. 사업실적

노량진수산시장의 주 사업은 수산물 수탁사업이다. 그 밖에 임대사업, 주차사업, 냉장·제빙사업을 하고 있다.

우선 수산물 수탁사업을 보면, 수도권에 있는 6개의 수산물도매시장(또는 공판장) 중 노량진수산시장을 포함한 수협 소속 수산물도매시장의 2021년 수도권 점유율은 금액 기준 69.4%, 물량 기준 67.0%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수산물도매시장 중 가장 큰 노량진수산시장의 2021년 수산물 취급금액은 전체의 45.1%, 취급물량은 전체의 38.8%를 차지하고 있다(<표 3-2-20>). 이를 부류별로 보면 금액 기준으로는 활어, 선어, 냉동 등의 순서를, 물량 기준으로는 선어, 활어, 냉동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표 3-2-21>).

〈표 3-2-20〉 2021년 수도권 수산물도매시장의 취급금액과 물량

(단위 : 백만 원, 톤, %)

구분	합계	수협					강동	강북
		소계	노량진	가락동	구리	강서		
금액 (점유율)	720,576 (100.0)	500,243 (69.4)	325,232 (45.1)	68,087 (9.4)	56,918 (7.9)	50,006 (6.9)	166,265 (23.1)	54,068 (7.5)
물량 (점유율)	138,875 (100)	92,991 (67.0)	53,842 (38.8)	16,428 (11.8)	11,285 (8.1)	11,436 (8.2)	32,983 (23.8)	12,901 (9.3)

〈표 3-2-21〉 2021년 노량진수산시장의 부류별 취급금액과 물량

(단위 : 백만 원, 톤)

구분	계	활어	선어	냉동	가공품
금액	325,232	160,001	124,010	35,864	5,357
(점유율)	100%	49.2%	38.1%	11.0%	1.7%
물량	53,842	16,307	27,331	9,477	727
(점유율)	100%	30.3%	50.8%	17.6%	1.3%

〈표 3-2-22〉 노량진수산시장의 연도별 취급금액과 물량

(단위 : 백만 원, 톤)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상장금액	340,670	303,656	316,328	314,790	322,018	323,276	325,232
상장물량	84,108	69,631	63,891	58,738	58,533	54,226	53,842
수수료 수익	14,499	12,957	13,462	13,349	13,604	13,773	13,690

한편 노량진수산시장에는 판매자리, 사무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임대시설이 1,124개소, 주차장 1,149면(승용 782, 화물차 367)이다. 그리고 냉장시설 1,694평(냉동보관 1,629, 동결 65), 1일 최대 80톤 생산 가능한 제빙시설 등이 있고, 이들 시설을 통해 매년 200억 원 정도의 사업실적을 실현하고 있다.

〈표 3-2-23〉 노량진수산시장의 부대사업 사업실적

(단위 : 백만 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1,671	12,920	16,844	18,413	20,559	20,174	19,835
임대사업	6,265	8,187	10,780	12,014	13,372	13,219	13,354
주차장	1,745	1,006	2,021	2,312	2,814	2,758	2,144
냉장시설	2,224	2,371	2,436	2,438	2,473	2,452	2,610
제빙시설	1,437	1,356	1,607	1,649	1,900	1,745	1,727

바. 재무현황

노량진수산시장의 재무현황을 보면, 2021년도 말 현재 자산 465억 원, 부채 345억 원, 자본 120억 원이다. 중앙회 출자금은 2019년 12월 2일 30억 원 추가 출자하여 총 130억 원이다.

〈표 3-2-24〉 노량진수산시장의 재무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자산	42,284	40,557	45,417	39,758	45,637	47,021	46,476
부채	26,348	29,244	35,523	31,688	33,471	34,373	34,490
자본	15,937	11,313	9,894	8,070	12,166	12,648	11,986
자본금[1]	10,000	10,000	10,000	10,000	13,0001)	13,000	13,000
자본조정	△31	-	-	-	△17	△17	△17
이익잉여금	5,968	1,313	△106	△1,930	△817	△335	△997
(당기순손익)	△335	△4,624	△1,419	△1,824	1,114	482	△662

1) 2019. 12. 02. 자본금 30억 원 추가 출자

사. 손익현황

노량진수산시장의 손익현황을 보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따른 시장 안정화 기간 소요에 따라 2015년~2018년간은 적자가 발생하였지만, 시장 안정화 이후 2019년에는 11억 1,4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 그러나 2020년도부터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소비침체 등으로 수익이 다시 감소하였다.

〈표 3-2-25〉 노량진수산시장의 손익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액	27,991	27,280	32,417	35,196	38,600	35,155	38,722
매출원가	23,246	24,598	25,437	29,491	30,973	29,793	34,684
매출총이익	4,745	2,682	6,980	5,705	7,627	5,362	4,038
(매출총이익률)	17.0%	9.8%	21.5%	16.2%	19.8%	15.3%	10.4%
판매관리비	4,954	5,293	5,564	5,975	6,103	4,920	5,086
영업이익	△209	△2,611	1,416	△270	1,524	442	△1,048
(영업이익률)	△0.8%	△9.6%	4.4%	△0.8%	3.9%	1.3%	△2.7%
영업외수익	471	563	359	374	744	497	510
영업외비용	587	2,576	3,188	1,928	1,055	457	124
세전순이익	△325	△4,624	△1,413	△1,824	1,213	482	△662
법인세	9	-	7	-	99	-	-
당기순이익	△335	△4,624	△1,419	△1,824	1,114	482	△662
(당기순이익률)	△1.2%	△17.0%	△4.4%	△5.2%	2.9%	1.3%	△1.7%

3. 수협유통

가. 발전과정

수협유통은 수산물 유통 전문회사로 1992년 8월 21일 유통단계 최소화를 통한 수산물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되었다.

2011년 1월 1일부터 바다마트(회상) 사업을 개시하여 수산물 소비 촉진과 식생활 개선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에는 수산물 가공도급 사업을 종료하고 동 사업을 수협개발로 이관하였다.

나. 주요사업과 시설현황

수협유통의 주요 사업은 수산물 유통 전문회사로 바다마트, 바다회상 및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가공공장을 운영하여 수산물을 산지에서 대량 수매하여 직접 가공 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수협유통의 영업점포는 <표 3-2-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다마트 12개소, 바다회상 1개소, 직매장 3개소이다.

바다마트는 서울·경기가 8개소로 가장 많고, 그다음 강원도 3개소, 제주 1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바다회상은 수협중앙회 내 잠실점 1개소가 있고, 직매장은 서울에 2개소, 하남에 1개소가 있는데, 관악점은 본점 외에 2개소의 점포를 두고 있다.

〈표 3-2-26〉 수협유통 영업점포 현황

구분	점포명	개점일	규모(평)		임대인	임차현황 (VAT별도, 백만 원)	주소(지상/지하)
			공용	전용			
바다마트 (12)	동대문점	1994.01.20	141	141	수협은행	보1,057	서울 중구(하1)
	노량진점	1999.01.28	836	552	수협중앙회	월4	서울 동작구(하1)
	신내점	1999.02.05	758	462	수협중앙회	월9	서울 중랑구(상1)
	상계점	1999.09.03	819	378	수협중앙회	월3	서울 노원구(하1)
	원효점	2001.04.03	770	420	수협중앙회	월3	서울 용산구(하1)
	강릉점	1995.08.31	254	221	개인, 수협중앙회	보1,045/월0.4	강원 강릉시(상1)
	제주점	1990.05.01	61	61	수협중앙회	보58/월3	제주 삼무로(상1)
	수원점	2003.10.10	124	30	농협	수수료 11.5%	경기 수원시(상1)
	강서점	2006.01.01	974	850	강서공판장	월20	서울 강서구(상2)
	온수역점	2014.02.27	199	199	개인	보800/월10	서울 구로구(상1)
	원주무실점	2014.12.19	200	199	개인	보1,000/월14	강원 원주시(상1)
	춘천점	2016.06.24	1,794	1,794	수협중앙회	월13	강원 춘천시(상1)
바다회상 (1)	잠실점	1993.10.23	399	399	수협중앙회	보762	서울 송파구(하1)
직매장 (3)	관악점 본점	2014.10.07	115	35	관악농협	수수료 11.5%	서울 관악구(하1)
	관악점 우성점	2020.01.14	8	8	관악농협	수수료 7%	서울 동작구(상1)
	관악점 신본점	2020.03.03	5	5	관악농협	수수료 7%	서울 관악구(상1)
	신촌직매장	2016.03.24	17	8	신촌농협	수수료 15%	서울 마포구(상2)
	하남직매장	2020.07.31	33	33	하남농협	수수료 10%	경기 하남시(상1)

다. 인력

수협유통의 정원은 231명이지만 현재 183명이 근무하고 있다. 48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표 3-2-27〉 수협유통의 인력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계약직
정원(A)	231	1	2	5	24	33	11	155
현원(B)	183	1	1	4	18	29	4	126
과부족(B-A)	△48	-	△1	△1	△6	△4	△7	△29

※ 중앙회 파견 2급 1명 포함

라. 조직체계

수협유통의 조직도는 대표이사 아래 경영지원부와 준법지원실을 두고 있다. 경영지원부 아래에는 기획총무, 재무회계, 영업지원의 3개 팀이 포함된다.

수협유통의 조직도(2021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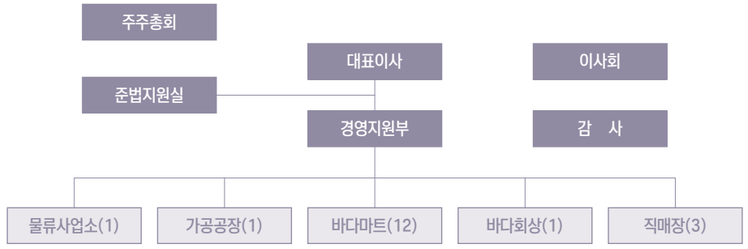

마. 재무현황

수협유통의 자산과 부채는 2016년부터, 자본은 2015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완전 자본잠식 됨에 따라 중앙회에서는 2020년 5월 29일 수협유통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50억 원을 추가로 출자했다. 출자금은 159억 원으로 바다마트(회상)사업 이관에 따른 현물출자 89억 원 포함하여 전액 중앙회가 출자한 것이다.

〈표 3-2-28〉 수협유통의 재무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자산	23,584	26,894	22,882	21,008	13,640	16,723	15,769
부채	15,623	21,784	21,233	19,172	14,945	12,911	12,489
자본	7,960	5,109	1,649	1,836	△1,306	3,779	3,280
중앙회 출자금	10,874	10,874	10,874	10,874	10,874	15,874	15,874

바. 손익현황

수협유통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은 2016년 이후 바다마트 점포 수 감소로 인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2018년 말 도급사업이 수협개발로 이관됨에 따라 감소 폭이 더 커졌다.

또한 영업이익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거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2018년의 경우 도급사업 이관에 따른 양도차익 발생으로 크게 증가했고, 2020년에는 조직개편 등 고강도 경영정상화 추진으로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표 3-2-29〉 수협유통의 손익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매출액	96,231	102,943	92,589	92,125	70,114	67,439	63,431
매출원가	76,609	83,150	73,760	73,229	53,674	51,780	48,884
매출총이익	19,622	19,793	18,829	18,896	16,440	15,659	14,547
(매출총이익률)	20.4%	19.2%	20.3%	20.5%	23.4%	23.2%	22.9%
판매관리비	21,303	22,981	22,875	20,955	19,266	15,859	15,208
영업이익	△1,681	△3,188	△4,046	△2,059	△2,826	△200	△661
(영업이익률)	△1.75%	△3.10%	△4.37%	△2.24%	△4.0%	△0.3%	△1.0%
영업외수익	542	911	1,253	3,703	1,121	599	427
영업외비용	281	318	667	1,138	1,437	288	265
세전순이익	△1,420	△2,595	△3,460	506	△3,142	111	△499
법인세	△96	255	-	319	-	-	-
당기순이익	△1,323	△2,851	△3,460	187	△3,142	111	△499
(당기순이익률)	△1.4%	△2.8%	△3.7%	0.2%	△4.5%	0.2%	△0.8%

4. 수협개발

가. 발전과정

1995년 4월 주식회사 수협용역으로 설립된 수협개발은 수협중앙회 본부 및 둔촌백화점 청사관리업무를 시작으로 대전(1996년 6월), 광주(1996년 9월), 천안(1997년 9월), 강서(1999년 1월), 창원(2000년 2월) 등에 지사무소를 개설하고 2002년 4월 노량진수산시장지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청사 및 연수원 관리 업무를 점차 확대해 나갔다.

2003년 8월 수협용역에서 주식회사 수협개발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2007년 9월 근로자 파견사업을 개시하고 2013년 4월에는 금융경비사업을 시작하며 점차 사업영역을 다양화했다.

이후 현재 위치(서울 송파구)로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2019년 1월 수산물가공 도급 개시하였다. 2020년 2월 건설사업을 시작하며 경영철학인 '끊임없는 혁신과 창조적 시선'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주요 사업

수협개발은 수협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용역 및 파견사업, 주차사업, 수산물가공 도급사업, 경비업무, 건설공사 및 수주와 시공관리, 설계도면 검토, 하자보수 등을 주사업으로 삼고 있다.

다. 인력

수협개발의 인력은 정원이 635명으로 현재 645명이 근무하고 있다.

〈표 3-2-30〉 수협개발의 인력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임원	본부						사업소					무기계약직	계약직
			본부장	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소장	부소장	과장	대리	사원		
정원(A)	635	1	1	6	3	4	6	5	3	1	3	5	1	271	325
현원(B)	645	1	2[1]	6	3	4	6	5	3	1	3	5	1	271	334
과부족(B-A)	10	-	1	-	-	-	-	-	-		-	-	-	-	9

1) 건설사업본부장(계약직) 1명

라. 조직체계

수협개발은 기획총무팀과 2개 본부(HR사업, 건설사업)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본부에는 각각 2개의 팀이 있다. HR사업본부의 BS사업팀에는 7개 지소, 도급사업팀에는 5개의 사업소가 있다

수협개발의 조직체계도(2021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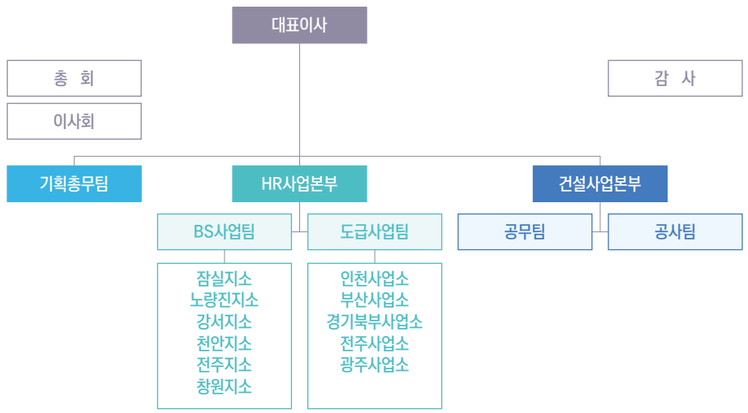

마. 재무현황

수협개발의 재무현황을 보면, 자산과 자본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말 현재 자산 102억 원, 부채 40억 원, 자본 62억 원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앙회 출자금은 총 7억 원이며, 자본금은 중앙회 출자금과 2020년부터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이익준비금을 8억 원 전입하여 2021년 말 현재 15억 원이다.

〈표 3-2-31〉 수협개발의 재무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자산	3,775	4,033	4,083	5,773	7,456	10,988	10,168
부채	1,101	1,106	1,092	2,758	3,353	5,706	3,985
자본	2,674	2,928	2,991	3,014	4,104	5,282	6,183
중앙회 출자금	100	200	200	200	700	700	700

바. 손익현황

수협개발의 매출액은 사업영역 확대로 인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2019년부터 도급 및 건설사업의 신규 추진으로 그 폭이 커졌다. 당기순이익 또한 증가추세에 있다.

〈표 3-2-32〉 수협개발의 손익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매출액	9,159	9,818	9,758	11,143	24,159	29,366	35,293
매출원가	8,293	8,946	8,971	10,211	22,177	26,276	31,899
매출총이익	866	872	787	932	1,982	3,090	3,393
판매관리비	665	723	747	862	1,281	1,744	2,324
영업이익	201	149	40	70	701	1,346	1,070
영업외수익	59	42	51	46	115	136	128
영업외비용	-	1	8	92	9	10	56
세전순이익	260	190	83	24	807	1,472	1,142
법인세	53	26	10	-	218	293	241
당기순이익	207	164	73	24	589	1,179	901

5. 수협사료

가. 발전과정

양식어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1997년 1월 25일 경남 의령군에 양어사료 전문 제조업체인 수협사료를 설립했다. 1998년 4월 10일 양어용 사료 생산공장을 준공하였으며 이후 2005년 3월 4일 EP사료 생산시설을 준공하며 친환경 배합사료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2016년 3월에는 미얀마 민자니社와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 및 시장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8년 6월 원료 배출라인 설비 개선 및 선별기 교체공사를 진행하고 2019년 2월 컨베이어 및 산업용 안전로봇 설비를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ISO 9001)를 획득하며 '양어사료 최고의브랜드'라는 비전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

2019년 2월 컨베이어 및 산업용 안전로봇 설비를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국제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ISO 9001)를 획득하며 '양어사료 최고의 브랜드'라는 비전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

나. 주요 사업과 시설현황

1) 주요 사업

수협사료는 해면 및 내수면어류의 양식사료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양어사료 전문 제조업체로 주요 생산품목은 분말사료 2종 9품목, EP(친환경 배합사료) 12종 24품목이다. 연도별 판매량은 2만 2,312톤(2019년), 1만 8,020톤(2020년), 1만 4,391톤(2021년)이다.

종류별 판매량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우럭 EP사료·숭어 EP사료가 각각 3,988톤(27.7%), 3,694톤(25.7%)으로 전체 생산량의 5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는 넙치 EP사료(18.1%), 뱀장어 분말사료(14%)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33〉 수협사료의 판매량

(단위 : 톤)

구분	2019		2020		2021	
	판매량	점유율	판매량	점유율	판매량	점유율
합계	22,312	100.0	18,020	100.0	14,391	100.0
넙치 E.P사료	2,523	11.4	1,984	11.0	2,606	18.1
우럭 E.P사료	5,142	23.0	4,848	26.9	3,988	27.7
숭어 E.P사료	9,245	41.5	6,627	36.8	3,694	25.7
메기 E.P사료	758	3.4	80	0.4	109	0.8
해산어 분말사료	1,832	8.1	1,316	7.3	1,041	7.2
뱀장어 분말사료	1,733	7.7	2,081	11.6	2,011	14.0
기타	1,079	4.9	1,084	6.0	942	6.5

수협사료의 생산제품

해산어 EP

넙치사료 해산어사료 숭어사료 새우사료 전복사료

담수어 EP 분말

송어사료 메기사료 해산어 분말사료 뱀장어 분말사료

수협사료의 시장점유율은 전국 생산량(수입물량 제외) 기준 2019년 최대치인 14%를 기록한 이후 사료 시장의 경쟁 심화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해면어류 시장점유율 또한 2019년 17.4%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다.

〈표 3-2-34〉 수협사료의 시장점유율

(단위: 톤, %)

연도	전체			해면어류			내수면어류		
	전국	수협사료	점유율	전국	수협사료	점유율	전국	수협사료	점유율
2017	148,201	16,356	11.0	98,207	12,757	13.0	49,994	3,599	7.2
2018	155,897	19,118	12.3	104,789	15,836	15.1	51,108	3,282	6.4
2019	163,356	22,844	14.0	113,721	19,811	17.4	49,635	3,033	6.1
2020	167,961	17,871	10.6	108,058	15,055	13.9	59,903	2,816	4.7
2021	183,956	14,273	7.8	121,286	11,780	9.7	62,670	2,493	4.0

2) 시설현황

수협사료의 공장 규모는 부지 3,945평(1만 3,041㎡), 건물 1,723평(5,697㎡)으로 건물은 공장·사무실·제품 및 원료창고(9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산능력은 연간 1만 2,000톤이다. (50톤/일, 8시간 가동기준)

수협사료 시설

다. 조직체계

수협사료의 조직체계를 보면 대표이사 아래 2명의 상무(경영전략, 생산기술)를 두고 있다. 각 상무 아래 다시 2~3개의 부단위 조직을 두고 있다.

수협사료의 조직체계도(2021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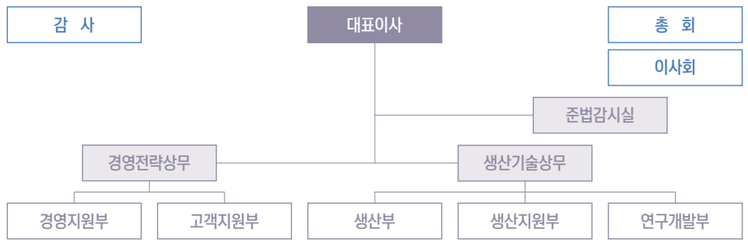

한편 수협사료의 판매조직은 총 41개소이다. 판매대리점이 15개소, 회원조합이 8개소, 직거래 판매처가 18개소 등이다.

수협사료의 판매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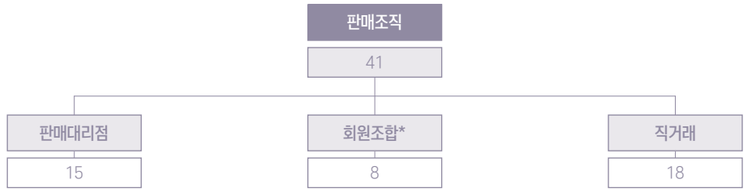

* 회원조합 : 하동군·전남서부·욕지·남해군·서남해수(한려지소 포함 2개소)·민물장어·거문도

라. 재무현황

수협사료는 2021년 말 현재 자산 166억 원, 부채 69억 원, 자본 98억 원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출자금은 총 20억 원이며, 중앙회 14억 원(70%),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3억 원(15%), 제주어류양식수협 1.5억 원(7.5%), 민물장어양식수협 1.5억 원(7.5%) 출자하였다.

〈표 3-2-35〉 수협사료의 재무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자산	14,626	17,042	15,990	17,424	19,444	18,763	16,617
부채	9,173	10,721	9,279	9,595	10,635	9,877	6,861
자본	5,453	6,321	6,711	7,829	8,809	8,886	9,756
중앙회 출자금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마. 손익현황

수협사료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사료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한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식어업인을 대표하는 생산자단체로서 사료가격 안정과 가격교섭력 제고를 위한 공익적 역할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표 3-2-36〉 수협사료의 손익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매출액	31,130	33,014	28,410	33,668	38,249	32,288	26,570
매출원가	27,071	28,483	25,183	29,375	32,769	28,353	23,253
매출총이익	4,059	4,531	3,227	4,293	5,480	3,935	3,317
(매출총이익률)	13.0%	13.7%	11.4%	12.8%	14.3%	12.2%	12.5%
판매관리비	3,138	3,246	2,991	3,129	3,980	3,968	2,316
영업이익	921	1,285	236	1,164	1,500	△33	1,001
(영업이익률)	3.0%	3.9%	0.8%	3.5%	3.9%	△0.1%	3.8%
영업외수익	980	413	685	637	394	676	385
영업외비용	428	465	264	478	501	453	320
세전순이익	1,473	1,233	657	1,323	1,393	190	1,066
법인세	134	295	217	155	363	64	196
당기순이익	1,339	938	440	1,168	1,030	126	870
(당기순이익률)	4.3%	2.8%	1.6%	3.5%	2.7%	0.4%	3.3%

6. 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

가. 발전과정

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는 한·중 FTA 체결에 따라 중국에 선도적으로 진출하여 세계의 생산공장이기도 하나 세계의 소비시장이기도 한 중국시장에 한국수산식품의 대중국 수출 확대 및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수산물 소비촉진 확대를 목적으로 2016년 2월 4일 중국 현지법인으로 설립하였다.

이후 동년 3월에 법인 식품경영허가를 취득하고 4월에 개소식을 하였다. 9월에는 청도매장, 위해매장을 개설하였으나 매출 부진으로 인해 2017년 7월에 청도매장, 2019년 12월에 위해매장을 폐쇄하였고, 2018년 6월 회원조합의 양식용 생사료 까나리, 2018년 11월 회원조합의 낙지 통발용 미끼로 활참게 수입 중개사업 추진을 통한 회원조합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주요 사업

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의 주요 사업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수산물 수입사업[2]으로서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수산물을 직수입하고, 일반 수출기업의 한국산 수산식품을 수입하거나 수입 대행업무를 하고 있다.

둘째, 중국 내 수산물 유통사업으로서 전략적인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한국수산식품의 판매채널을 확보하고, 한국수산식품의 홍보, 판로확대 및 소비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수산물 수출사업으로서 중국산 양식사료 등 수출을 대행하고 있다.

다. 인력 및 조직체계

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의 인력은 정원 5명(임원 1, 직원 4)에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다. 조직체계는 동사장 아래 업무를 총괄하는 총경리를 두고 있으며, 총무·행정, 재무·회계, 통관·물류, 영업의 4개 팀을 두고 있다.

2 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는 중국 현지법인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수출이다.

라. 재무현황

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의 재무현황을 보면, 2021년 말 현재 자산과 자본금은 각각 3억 원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앙회 출자금 15억 원은 2016년에 6억 원, 2017년에 5억 원, 2019년에 4억 원 분할출자한 것이다.

〈표 3-2-37〉 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의 재무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자산	634	687	403	601	365	273
부채	137	47	27	106	△2	4
자본	497	640	376	495	367	269
중앙회출자금	600	1,100	1,100	1,500	1,500	1,500

마. 손익현황

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의 손익현황으로서 매출액 경우 2019년까지 정체 상태에 있다가 2020년 중국수산물 직수출 확대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적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표 3-2-38〉 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의 손익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매출액	248	440	307	359	776	1,503
매출원가	196	297	183	241	665	1,351
매출총이익	52	143	124	118	111	152
판매관리비	135	483	381	409	229	283
영업이익	△83	△340	△257	△291	△117	△131
영업외수익	31	8	1	1	2	-
영업외비용	-	3	10	1	19	3
세전순이익	△52	△335	△266	△291	△135	△134
법인세	-	-	-	-	-	-
당기순이익	△52	△335	△266	△291	△135	△134

제3장
시대별 수협 비전

1962
2022

제1절 중앙회

1. '수산의 푸른 미래 창조'(2007년)

수협중앙회는 2007년 비전 '수산의 푸른 미래 창조'를 바탕으로 수산인 삶의 질 향상과 수산업 경쟁력 제고, 수협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협동조합의 본질적 가치실현, 수산물 최고 브랜드파워 확보, 일류 해양수산의 3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 부문별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추진했다.

수협발전 5개년 계획(2007년)

2. '하나의 가치, 하나의 힘, 최고의 협동조합'(2012년)

2012년에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미래 비전과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10년간의 중장기 실행계획인 '수협 2021 발전계획'을 통해 '하나의 가치, 하나의 힘, 최고의 협동조합'이라는 비전을 수립했다.

3대 전략은 수산인을 위한 최고의 협동조합,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최고의 협동조합, 임직원의 자랑인 최고의 협동조합으로 설정했다. 비전 달성을 위해 조직문화, 지도사업, 상호금융사업, 공제보험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6개 부문에서 19개의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했다.

수협 비전 2021 발전계획(2012년)

3.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 (2015년)

2015년에는 새로운 비전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촌 활력 증진, 수협 체질 개선, 수산업 가치 제고의 3대 전략 달성을 위한 10대 과제를 설정했다.

세부적으로 어촌활력 증진을 위한 전략과제로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어업경영 여건 조성, 어업인 실익 증진 등을 추진했다. 수협 체질 개선을 위해 사업구조개편 조기완료, 유통인프라 확충, 회원조합 경영정상화, 자립경영기반 등을 전략과제로 도출하고 수행했다. 수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수산식품 세계화, FTA 관련 통상 대응 강화, 수산단체육성 및 국격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7년에는 사업 구조개편에 따른 새로운 체제의 수협중앙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5개년 발전계획인 '新수협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어촌활력 증진, 수협역량 고도화, 수산업 가치 제고의 3대 전략 및 35개 전략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였다.

수협 미래 발전계획(2015년)

4. '더 강한 수협, 더 돈 되는 수산' (2019년)

2019년 제25대 임준택 회장 취임과 함께 '더 강한 수협, 더 돈 되는 수산'으로 비전을 수립해 앞서 추진된 비전의 의미를 강화했다.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에 대한 더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

새로운 3대 전략으로 일류 수산산업, 신뢰받는 수협, 잘 사는 어업인을 수립하였고, 5대 전략목표는 △바다·수산자원 육성 △복합형수산물 유통시스템 조성 △살기 좋은 복지어촌 건설 △수익중심의 금융혁신 선도 △수산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으로 설정했다. 비전 및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32개의 전략과제를 추진 중이다.

현재의 수협 미션 및 비전(2019년)

제2절 수협은행

1. 수협의 미래 비전 및 발전전략(신용사업, 2012년)

2012년 수협은행은 수협의 미래 비전 및 발전전략(신용사업)을 수립한 바 있는데 본 전략의 비전은 '차별화된 가치, 신뢰받는 수협은행'으로 설정하고 핵심 전략방향을 미래를 위한 경쟁력 마련, 해양수산금융분야 특화 및 사업다각화를 통한 성장, 협동조합 은행으로서의 본연의 역할 수행 안정화의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본 발전전략에서는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로서 수협은행의 독립, 정부지원, 임직원 및 타 부문의 출자, 우선출자금의 보통주 전환, 관련 법령의 제·개정, 추가출자 등을 제시하였다.

신용사업 발전전략 상의 수협은행 비전(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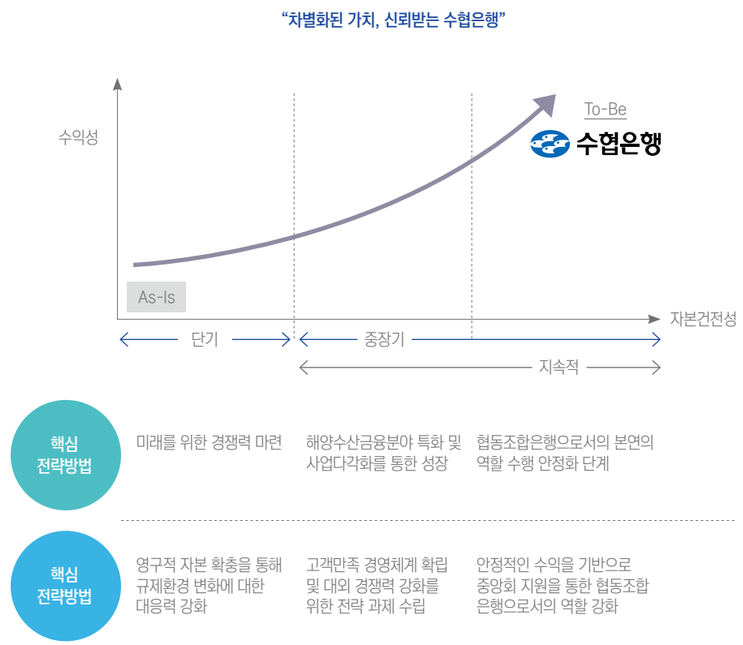

2. 2017 새로운 시작, 2021 미래에 대한 확신(2016년)

2016년 12월 사업구조 개편 후, 수협은행의 미션과 비전을 수립하였다. 미션은 수협은행이 존재하는 이유와 사회적 사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과 함께, 해양수산인과 더불어, 미래를 열어가는 Sh 수협은행'으로 설정하였다. 앞으로 5년간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인 비전은 '진심을 담은 서비스, 견실한 균형성장, 신뢰받는 100년 수협은행'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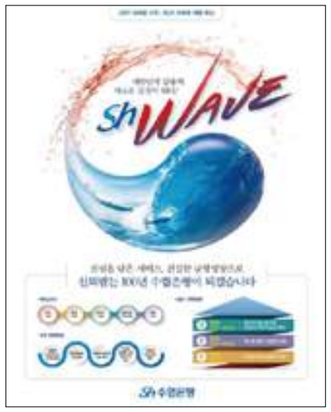

2006년 수협은행 비전수립 워크숍

3. 2022년 현재의 미션과 비전

2021년, 수협은행의 새 비전은 '변화하는 미래, 혁신하는 수협은행'으로 금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혁신을 통한 지속성장으로 미래금융의 주역이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슬로건 'New Challenge'는 수협은행의 혁신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새롭게 도전하자는 각오를 담았다.

또한, 단기 경영목표를 '지속성장 기반확충'으로 수립하여 3,000억 원대 안정적 수익 실현과 디지털금융 시장 선도은행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비전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2022년 핵심 추진과제를 조직 경쟁력 강화, 전사적 디지털 혁신과 도전적 사업문화 확산, 미래성장동력 확보, 자율경영 기반확충으로 선정하였다.

2021년 1월 29일 수협은행 비전선포식

제4편
수협사업 발전사

제1장 교육·지원사업
제1절 교육·지원 사업의 의의
제2절 지난 50년의 사업성과
제3절 최근 10년간의 사업실적

제2장 경제사업
제1절 판매사업
제2절 구매사업
제3절 이용가공사업
제4절 가격안정화사업

제3장 공제사업
제1절 개요
제2절 발전 과정
제3절 부문별 사업실적
제4절 경영실적

제4장 상호금융사업
제1절 개요
제2절 발전 과정
제3절 부문별 사업실적
제4절 경영실적

제5장 수협은행(신용사업)
제1절 개요
제2절 발전과정
제3절 부문별 사업실적
제4절 경영실적

제1장
교육·지원사업

1962
2022

제1절 교육·지원 사업의 의의

1. 협동조합 교육·지원 사업의 역사

조직에 있어서 기능은 조직 그 자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 역할이다. 그러므로 이 기능은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달성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적 성격의 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직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그와 같은 조직은 정체성을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사회의 비판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은 그의 기본 목적을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의 향상과 사회적 권익신장에 두고 있는 조직이므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 활동으로서 경제적 사업과 비경제적 사업을 필요로 한다. 전자를 경제적 기능이라 하며, 후자를 비경제적 기능이라 한다. 두 기능을 합친 것이 협동조합의 기본 기능이다. 비경제적 기능의 대표적 활동이 경제적 약자를 위한 교육과 문화의 지원, 신지식의 보급과 확산 및 낙후산업·지역의 개발활동 등을 포함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이 다른 경제조직 또는 사회조직과 구별되는 기본적인 특징의 하나는 경제적 기능과 비경제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종합사업체라는 점에 있다. ICA는 이 비경제적 기능을 부수적 기능이 아닌 고유기능으로 인식하여 모든 협동조합이 실시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비경제적 기능의 대표적 활동이 교육·지원 사업[1]이며, 이는 이미 근대 협동조합의 효시인 로치데일조합에서부터 필수사업으로 채택하여 실시해 오고 있는 협동조합의 역사적 기능이기도 하다.

1 통상 지도사업이라고도 불리며, 현행 「수협법」에서는 교육·지원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는 교육·지원사업이라고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사업실적을 나타낼 경우 아직 지도사업이라고 사용하고 있어 사업실적의 경우 필요 시 지도사업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2. 수협 교육·지원사업의 의의

수협의 교육·지원사업은 수협 발족 초기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실시해 오고 있는 수협의 고유사업이다. 교육·지원사업에는 어민과 조합원, 그리고 수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사업, 조합과 어촌계의 지도육성사업, 어업과 양식업을 포함한 영어기술지도, 어업권 관리활동, 어촌개발사업, 어로조업지도, 조사연구와 어정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모두가 비경제적 기능이며 비수익적 활동이다.

오랫동안 이러한 비수익적 활동을 '지도보호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나 2000년 1월 28일 제24차 수협법 개정을 통해 '교육·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고, 농협도 마찬가지이나 수협에서도 '지도사업'이라는 명칭과 혼용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지원사업이라고 표기할 경우 과거의 수협연대사[2]와의 통일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협법」에서 교육·지원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는 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한다[3].

그렇다면, 왜 수협이 이러한 비경제적, 비수익적 활동인 교육·지원사업을 고유기능으로 채택하여 중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몇 가지로 그 당위성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수협운동의 확산을 위해서는 어민과 조합원을 통한 부단한 교육과 계몽활동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둘째, 고도의 지식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필요로 하는 수산기술의 특성상 수협과 같은 공공조직이 그와 같은 영어기술(營漁技術)의 확산과 혁신주체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셋째, 어촌의 유일한 생업기반인 어업권의 보존과 관리기능이야말로 수협의 역사적 기능이며, 고유기능이라는 점이다.

넷째, 수협의 조직 기반은 어촌이므로 낙후된 어촌을 개발하여 그의 고유성과 보편성을 조화시키는 일은 수협이 담당해야 할 당연한 임무이다. 어촌의 고유성(identity)은 수산물의 생산과 공급, 어업시설의 보존과 확충, 해양생태계와 어로문화의 보존과 유지 등을 말하며, 어촌의 보편성(university)은 현대 문화생활이 가능한 지역사회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념이다.

다섯째, 어민들의 조업안전과 해상사고 방지를 위한 어업 통신시설의 운영과 관리 또한 교육·지원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공공적 기능이라는 점이다.

2 수협 20년사, 수협 30년사, 수협 40년사 및 수협 50년사 등이 그것이다.

3 그러나 주24)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업실적을 나타낼 때는 지도사업이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이 밖에도 교육·지원사업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활동으로는 수산업과 어민경제를 위한 조사연구 활동,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권익 신장을 위한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 ICA와 FA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다양한 비경제적 활동이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수협은 그의 사명과 시너지를 더욱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이 현대 수협이 안고 있는 당면 과제이다.

「수협법」은 이상과 같은 광범위한 공익적 기능인 수협의 교육·지원사업 실시를 위하여 제138조를 통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종류에 교육·지원사업을 제1위의 사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0조와 제165조에 교육·지원사업 등의 지도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는 "매년 잉여금의 20/10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까지 두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취지와 내용은 조합과 중앙회의 각급 정관에도 동일하게 규정하여 수협의 교육·지원사업 실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조치는 수협의 교육·지원사업이 수협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본적 기능의 하나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1976년 5월 이가리어촌 새마을사업현장

2010년 5월 조합협동운동교육(연수원)

제2절 지난 50년의 사업성과

1. 총괄 분석

수협은 발족 첫해인 1962년, 중앙회는 500만 원, 조합은 총 6,800만 원으로 교육·지원사업에 착수하였다. 초창기 교육·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중앙회는 계통조직 육성을 위한 조직강화 활동과 교육훈련 및 생산지도 사업이 중심이었으며, 조합은 조합원 교육훈련과 어업권 관리 등이 중심이었다.

교육·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이다. 이전까지는 교육·지원사업의 내용이 좁은 범위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담당기구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1972년부터 어촌 새마을운동의 시작과 함께 중앙회에서는 지도과를 두었으며, 여기에 조사연구와 어촌개발사업이 추가되었다.

다시 최근에 와서는 ICA 활동 등 해외 협력사업과 외국인 선원도입사업이 더해져서 현재의 교육·지원사업은 다양한 활동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업비의 지출 규모도 초창기와 비교하여 중앙회는 무려 1만 224배, 조합은 557.3배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전반에 중앙회의 교육·지원사업비가 급증한 것은 IMF 금융위기와 신 한일·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회원조합에 대하여 해당 조합의 경영개선을 통한 어촌지역 발전, 어업인 보호를 위한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기인한다.

발족 이후 2021년까지 60년간의 교육·지원사업비의 지출 규모를 조직별 및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표 4-1-1>과 같다.

〈표 4-1-1〉 수협 교육·지원사업비 연도별 지출 추이

(단위 : 백만 원, %)

연도	조직별		총사업비에 대한 구성비		총사업 규모	
	중앙회	조합	중앙회	조합	중앙회	조합
1962	5	68	0.2	0.3	1,790	4,948
1965	9	195	0.2	1.8	6,366	10,846
1970	208	356	0.5	1.0	47,528	35,280
1971	217	272	0.4	0.7	54,637	39,554
1975	565	318	0.5	0.2	140,676	136,181
1978	1,971	2,228	0.4	0.6	394,575	380,002
1980	2,990	4,397	0.4	0.8	764,947	531,248
1981	4,624	5,658	0.5	0.8	964,085	759,132
1985	5,329	6,529	0.3	0.6	1,814,720	1,122,834
1988	7,042	7,350	0.3	0.6	2,532,165	1,317,895
1990	9,313	8,283	0.3	0.3	3,286,660	2,856,413
1992	43,020	11,899	0.2	0.3	2,487,336	3,990,512
1995	73,368	17,742	0.3	0.3	4,256,083	6,005,770
1997	112,106	22,750	2.0	0.3	5,558,012	7,817,162
1998	157,820	18,130	0.2	0.2	6,434,677	8,920,945
2000	245,006	18,466	3.4	0.2	7,188,745	10,302,536
2001	271,059	16,965	3.5	0.2	7,822,472	11,133,745
2002	320,745	19,747	3.5	0.2	9,259,486	7,968,181
2005	157,896	18,094	1.3	0.2	11,860,829	9,942,555
2006	116,712	20,106	0.9	0.2	12,497,527	10,596,378
2010	88,147	23,347	0.5	0.2	19,535,401	14,985,275
2015	46,373	27,683	0.2	0.1	24,437,502	19,904,171
2020	51,119	37,895	0.1	0.1	44,542,500	31,404,451
2021	51,000	46,453	0.1	0.1	47,813,000	34,978,394

2. 시대별 분석

가. 1960년대

1960년대는 수협 교육·지원사업이 제도의 측면에서 기반을 구축하는 시대였다. 이 기간에 교육·지원사업은 수협법과 각급 정관을 통해 사업비 충당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중앙회는 발족과 동시에 총무부에 어촌기획과(漁村企劃課)를 두었고, 조합에서는 교도계(敎道係)를 둔 곳도 있었다. 중앙회의 어촌기획과는 1965년 어촌지도과를 거쳐 1966년에는 지도부(指導部)로 확대해 여기에 지도과, 홍보과 및 어업통신과의 3개 과(課)를 두었다.

이 기간에 중요한 성과를 이룬 것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속성과 사업활동의 합리화를 위해 수협의 계정 과목과 장부조직표에 지도사업비로 표기된 교육·지원사업 지출 항목을 설치하여 사업시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을 들 수 있다.

수협은 초창기에 동 사업시행을 위해 계정과목을 체계화하였는데, 이는 관(款)-항(項)-목(目)-절(節)」의 4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관(款)에는 신용사업을 비롯하여

4개 부문을 두었다. 교육·지원사업은 이 가운데서 마지막 4관(款)으로 분류해 그 아래에 <표 4-1-2>로써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직강화비를 비롯하여 11개 지출항목을 목(目)으로 두어 교육·지원사업의 여러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하였다.

제3기 수협 연차보고서(1964)에 의하면, 수협발족과 동시에 실시한 3대 교육·지원사업은 조직 강화사업, 교육훈련사업 및 생산지도사업 이었으며, 발족 2년째인 1963년에는 선전보급사업과 장학사업(奬學事業)이 추가되고, 1965년에는 어업무선국운영이 더해져서 어민들의 조업안전을 도모해 나갔다.

1967년에는 생산지도사업의 실질적 전개를 위하여 수협 발족 이래 최초로 지도전문요원 56명을 공개 채용하여 어촌 현장에서 어민들의 생산지도와 함께 수협운동의 보급에도 동참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케 하였다. 1968년부터는 조직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수협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조합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조합발전을 촉진시킨 업적을 남겼다.

〈표 4-1-2〉 발족 초기 교육·지원사업비 계정(計定) 설치 내용

구분	관(款)	항(項)	목(目)
중앙회	지도사업	지도사업 지출	① 조직강화비, ② 조사연구비, ③ 강습회비, ④ 생산지도사업비, ⑤ 공동판매장려비, ⑥ 자원보호육성비, ⑦ 시장개척비, ⑧ 어장관리비, ⑨ 어장개척비, ⑩ 어선계류장 관리비, ⑪ 업무 검사비
조합	지도사업	지도사업 지출	① 조직강화비, ② 지도사업비, ③ 어업개선사업비, ④ 수산제조사업비, ⑤ 자원보호육성비, ⑥ 공판장려비, ⑦ 시장개척비, ⑧ 어장개발비, ⑨ 어장관리비, ⑩ 어선계류장관리비, ⑪ 생활문화사업비, ⑫ 수산물검사비

자료 : 농림부고시 제455호(1962.4.1.), 수협계정과목 및 장부 조직표, 1962.4.1.

나. 1970년대

1970년대는 수협 교육·지원사업이 어촌 새마을사업에 집중된 시대였다. 다시 말해, 새마을운동을 어촌계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어촌개발과 어촌계 육성을 동시에 꾀해 나간 것이 1970년대에 보인 수협 교육·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1971년부터 농촌지역을 시발점으로 하여 일어난 새마을운동은 "잘살아 보세", "하면 된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 곳곳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전 국민에게 근면(勤勉)과 자조(自助), 성취(成就)를 강조한 이 운동은 특히 농어촌 지역을 근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수협 교육·지원사업에 어촌새마을운동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72년이며, 이를 동 사업의 중점사업으로 채택한 것은 1973년부터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제창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채택되면서 수산청은 어촌새마을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촌새마을운동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수협중앙회로 하여금 이의 추진 주체로서 역할 하도록 하였다.

이 계획에 의해 1972~1980년까지 지원된 수협의 어촌새마을사업 총 지원 실적을 4대 사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4-1-3>과 같다. 총 누계액이 203억 2,000만 원이며, 이 가운데서 핵심사업인 소득증대 사업에 절반 이상을 점하는 105억 1,700만 원, 환경개선에 16.4%인 33억 2,300만 원, 정신 계몽활동에 19%에 해당하는 38억 8,400만 원이 각각 지원되었다. 이것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정부 보조금이 40.8%로 가장 높고, 융자금이 28.2%이며, 어촌계 자기부담이 31%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

〈표 4-1-3〉 수협의 어촌새마을사업 지원 실적(1972~1980)

(단위 : 건, 백만 원, %)

사업별	사업 건수	사업비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7,357 (100.0)	20,320 (100.0)	8,285 (40.8)	5,729 (28.2)	6,306 (31.0)
소득증대	3,854 (52.4)	10,517 (51.8)	3,224	3,938	3,375
환경개선	2,327 (31.6)	3,323 (16.4)	1,302	445	1,576
생산기반	1,160 (15.7)	2,596 (12.8)	1,151	233	1,212
정신계발	16 (0.3)	3,884 (19.0)	2,608	1,133	143

수협중앙회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상과 같은 어촌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973년에 '지도부'를 '새마을부'로, 다시 1974년 5월에는 '새마을지도부'로 조직을 개편하고, 여기에 중앙회를 정점으로 하여 최종 사업자인 어촌계에 이르는 어촌새마을사업 추진체계를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축하여 추진해 나갔다.

수협의 어촌새마을사업 추진체계(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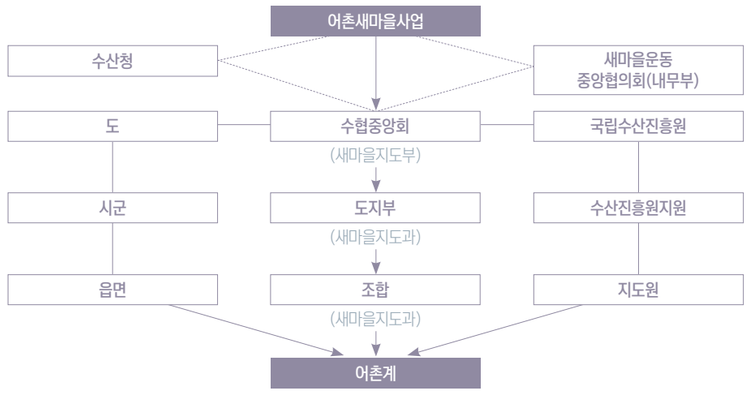

수협의 어촌새마을사업 활동영역이 어촌소득증대사업, 생산기반조성사업, 어촌환경개선사업 및 새마을정신 계몽운동으로 확대되면서 발족 이후 전통적으로 실시해 온 조직강화 활동, 생산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등은 모두 어촌새마을사업에 흡수 통합되는 결과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67년에 시행된 중앙회의 어촌전문지도원 제도는 어촌새마을운동에 편입되어 1972년에 폐지되었다.

다. 1980년대

어촌새마을사업은 1980년대에도 수협 교육·지원사업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주목되는 것은 1970년대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어촌새마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새마을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체인 어촌계 육성에 중점을 둔 조직 강화 활동이었다.

중앙회는 어촌계의 자립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계원 수 20인 이하의 취약 어촌계를 정비해 어촌계의 평균계원 수를 50인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 아래 1972년에 제1차 어촌계 정비계획을 단행하였다.

1980년대에는 전국의 어촌계를 이전의 준비단계-기초단계-자조단계-자립단계라고 하는 4단계로 구분하여 육성계획을 추진하던 것을 자립-자영-복지의 3단계로 분류하여 발전단계에 따라 육성방향과 지원내용을 차등화하였다.

그리하여 적어도 1980년대 말까지는 전 어촌계를 최고 발전단계인 복지수준의 단계로까지 끌어올린다는 것과 이 가운데서 모범어촌계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부여하여 사업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법인어촌계로까지 발전시킨다는 것이 정부와 수협의 1980년대 어촌계 육성 정책이었다.

따라서, 어촌계 육성계획 가운데서 법인어촌계 문제는 1980년대 수협지도사업의 중점 과제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기간이 경과하면서 법인어촌계 가운데는 부실 법인어촌계가 속출하고, 지구별 수협과 업무 마찰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따라서 법인어촌계의 정비 문제가 새로운 지도사업의 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 2차 정비를 통하여 시행 24년 만에 역사적인 막을 내렸다.

라. 1990년대

1990년대는 수협으로서는 유례없는 대외 환경의 악화로 인해 교육·지원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수협의 모든 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 위기의 10년간이었다.

1992년에는 UR협상 타결로 수산물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 말에는 IMF 금융위기로 인하여 수협신용사업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 1990년대 중반에는 전통적으로 수협위판사업의 근거법령으로 기능해 온 「수산자원보호령」의 개정으로 연근해 어획물의 의무상장제가 자유판매제로 전환되어 조합의 경영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즉 연근해 수산물의 자유판매제로 인해 수협의 위판수수료 수입이 대폭 감소함으로써 많은 조합들이 경영압박을 받았는데, 특히 위판수수료가 해당 조합의 큰 수입원이었던 양식수산물 판매 중심 조합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여기에다 1998년과 2000년 6월에 각각 체결된 신 한일어업협정과 한중어업협정의 영향으로 근해어업과 관련 산업이 붕괴 직전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외부 환경요인으로 인하여 수협의 모든 사업은 큰 제약을 받게 되었는데, 이 가운데서 특히 신용사업의 타격이 컸으며, 판매사업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교육·지원사업은 큰 차질 없이 예년 수준을 계속 유지했으며, 오히려 9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중앙회 교육·지원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요인으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IMF 금융위기와 신 한일, 한중어업협정 등으로 인하여 경영난에 처한 회원조합에 대해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금지원과 어업인 및 회원조합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해져 조합의 경영상태는 양호한 상태가 되었고 어촌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1977년 11월 부평연수원 준공

〈표 4-1-4〉 1990년대 수협 교육·지원사업비 추이

(단위 : 백만 원, %)

연도	중앙회	조합	계	총사업비 비중		비고
				중앙회	조합	
1990	9,312	8,383	17,965	0.28	0.29	
1991	10,631	9,930	20,561	0.26	0.31	
1992	43,020	11,899	54,919	1.72	0.30	중앙회 323억 증
1993	51,817	13,850	65,667	1.70	0.29	
1994	60,672	15,276	75,948	1.66	0.28	
1995	73,368	17,742	91,110	1.72	0.25	
1996	85,398	20,105	105,503	1.78	0.28	
1997	112,186	22,750	134,936	2.01	0.29	중앙회 276억 증, 회원조합 자금 지원
1998	157,820	18,130	175,950	2.45	0.20	중앙회 456억 증, 회원조합 자금 지원
1999	178,880	17,932	196,812	2.28	0.19	중앙회 260억 증, 회원조합 자금 지원
2000	245,006	18,466	263,472	3.41	0.18	중앙회 661억 증, 회원조합 자금 지원
2001	271,059	16,965	288,024	3.44	0.15	중앙회 260억 증, 회원조합 자금 지원

마. 2000년대

수협중앙회는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수협의 슬로건을 '새로운 시작(New Start)'으로 내걸고 독립사업부제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2001년에 지도부를 회원지원부로, 다시 2007년에 회원경영지원부로 개편하여 사업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사업방향을 종전의 어촌지도사업 중심에서 회원조합 육성지도사업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제50기 수협 업무백서(2012)에 의하면, 중앙회는 교육·지원사업을 어촌지도사업, 회원조합육성지도, 임직원교육, 조업안전지도, 홍보활동, 조사연구, 해외협력사업의 7대 사업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회원육성지도에 대해서는 조합업무지도, 조합경영평가, 회원육성사업, 조합경영개선자금지원 등 4대 사업으로 확대하여 이들 사업이 2000년대의 교육·지원의 중심사업이 되었다.

한편,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사업의 첫 번째 사업은 기존 소득증대사업과 어장보전 지도 등 전통적인 사업 대신 도시-어촌교류사업과 어촌관광 등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였다.

홍보활동은 대외홍보활동과 대내홍보활동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해외 협력사업은 ICA 활동, 한일어업협력, 한중어업협력, 한러어업협력 및 남북수산협력사업으로까지 확대한 점도 2000년대 교육·지원사업의 큰 변화로 지적할 수 있다.

<표 4-1-5>는 지금까지 설명한 197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수협 교육·지원사업의 사업체제와 사업내용의 변동을 요약, 정리한 자료이다. 그리고 <표 4-1-6>은 이상과 같은 교육·지원사업의 변화에 따라 실제 지출한 수협지도사업비 집행실적을 2001년부터 2021년까지 나타낸 자료이다.

〈표 4-1-5〉 수협 교육·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변동 사항(중앙회)

1960년대	197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 어촌지도 1) 지도원 활동 2) 어촌계지도 3) 신용조합지도 4) 4F 클럽지도 5) 시범어장조성 **2. 부업장려** 1) 단지부업 2) 일반부업 **3. 어업지도** 1) 어로지도 2) 수산피해 대책 **4. 교육훈련** 1) 직원교육 2) 파견교육 3) 장학금 지급 **5. 어업무선국 운영** **6. 선전계몽** **7. 조사연구** 1) 어가 경제조사 2) 연차보고서 3) 수협조사월보 4) 수협통계월보	**1. 소득증대사업** 1) 어촌새마을사업 2) 어촌계 육성 3) 어업생산지도 4) 수산장학생 선발 **2. 회원조합 육성지도** **3. 교육훈련** 1) 임직원 교육 2) 파견교육 **4. 안전조업지도** 1) 어로지도 2) 어업무선국 운영 **5. 홍보활동** 1) "새어민"지 2) "수협소식"지 **6. 국제협력** 1) 한일협력 2) ICA활동 **7. 조사연구** 1) 어가경제조사 2) 어업경영조사 3) 연차보고서 4) 수협통계월보	**1. 어촌지도사업** 1) 소득증대사업 2) 어장보전지도 **2. 회원조합지도 육성** 1) 업무지도 2) 회원 육성사업 **3. 임직원 교육** 1) 임직원교육 2) 파견교육 **4. 어업인안전조업지도** 1) 어로지도 2) 어업무선국 운영 **5. 홍보선전** 1) "우리바다"발간 2) "수협가족"발간 **6. 조사연구** 1) 각종 조사통계 2) 조합경영진단 3) 어가경제조사 4) 어업경영조사 5) 연차보고서 6) 수협통계월보 **7. 해외협력** 1) 한일협력 2) ICA 활동	**1. 어촌지도사업** 1) 어촌지도자 발굴 2) 도(都)촌(村)간 교류사업 3) 수산자원 조성사업 4) 수산장학생 선발 5) 귀어, 귀촌 사업지원 **2. 회원조합 지도 육성** 1) 조합업무지도 2) 조합경영평가 3) 조합육성사업 4) 경영개선 지원 **3. 임직원 교육** 1) 임직원교육 2) 파견교육 **4. 조업안전지도** 1) 어로지도 2) 재해예방지도 3) 어업무선국 운영 **5. 홍보활동** 1) 대외홍보활동 2) 대내홍보활동 3)"어업in수산"발간 **6. 조사연구** 1) 조사통계업무 2) 연구사업 **7. 해외협력사업** 1) ICA 활동 2) 한일협력 3) 한중협력 4) 한러협력 5) 남북수산협력
비고		"생산지도"활동폐지 "수협소식지"폐간	"우리바다"폐간

〈표 4-1-6〉 2000년대 수협 교육·지원사업비 변동

(단위 : 백만 원, %)

연도	중앙회	조합	계	총사업비 비중	
				중앙회	조합
2001	271,059	16,965	288,024	3.44	0.15
2002	320,745	19,747	340,492	3.46	0.24
2003	270,661	21,849	292,510	2.63	0.26
2004	244,251	16,753	261,004	2.18	0.18
2005	157,896	18,094	175,990	1.33	0.18
2006	116,712	18,100	134,812	0.93	0.17
2007	72,830	19,619	92,449	0.51	0.17
2010	88,147	23,347	111,494	0.45	0.15
2011	154,238	27,176	181,414	0.73	0.17
2012	181,394	27,237	208,631	0.79	0.16
2013	49,184	27,539	76,723	0.21	0.15
2015	46,373	27,683	74,056	0.19	0.14
2020	51,119	37,895	89,014	0.11	0.12
2021	97,172	46,453	97,453	0.11	0.13

※ 2021년도 회원지원자금 (무이자 및 유이자) 신규지원액 포함

2000년대의 교육·지원사업비 변동 추이

(단위 : 백만 원,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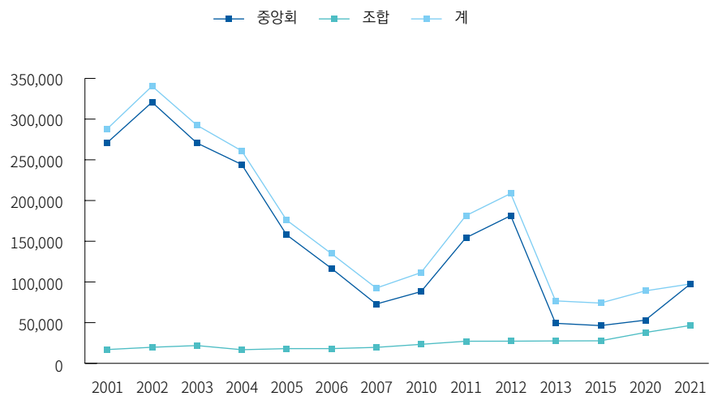

2001년 4월 New start 180 운동 선포식

제3절 최근 10년간의 사업실적

1. 총괄 분석

최근 10년간의 부문별로 교육·지원사업의 지출액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수협 업무통계와 결산보고서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비교하면 <표 4-1-7>과 같고,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한 세부사업별 지도비 배분을 연대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표 4-1-7〉 최근 10년간의 수협 교육·지원사업비

(단위 : 백만 원)

연도	조직강화비	생산지도비	교육훈련비	조사연구비	선전계몽비	어로통신비	계
2010	1,468	5,280	2,404	671	1,948	3,789	15,560
2011	4,907	5,164	2,913	1,053	2,120	4,110	20,267
2012	5,639	6,178	3,151	1,391	3,747	4,671	24,777
2013	6,256	6,913	3,367	1,241	3,190	3,785	24,752
2014	4,573	6,445	3,395	1,294	3,148	4,765	23,620
2015	5,879	5,680	3,242	1,387	3,474	5,248	24,910
2016	6,611	6,423	3,579	1,251	3,741	6,123	27,728
2017	6,758	6,256	3,640	1,365	4,519	7,886	30,424
2018	7,498	6,635	4,045	1,462	5,482	8,233	33,355
2019	7,837	6,798	4,173	1,417	5,278	10,242	35,807
2020	4,587	4,753	2,314	1,612	4,567	9,654	27,487
2021	2,646	5,220	2,367	1,315	4,994	10,676	27,218

※ 국고보조사업이 상계된 공시 결산자료 기준

2000년대의 중앙회 교육·지원사업비 배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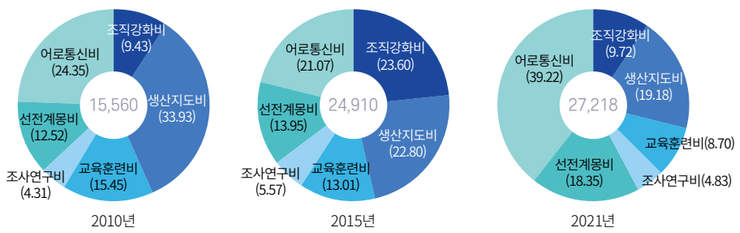

결산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① 생산지도, ② 조직강화, ③ 교육훈련, ④ 조사연구, ⑤ 선전계몽 및 ⑥ 어로통신의 6대 사업 가운데서 2021년도의 경우 어로통신비 비중이 66%로 가장 높으며(국가보조금 포함), 다음이 생산지도비로 11% 점하고, 3위가 선전계몽비로 10%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세 사업비를 합치면 총 86%로 지도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머지 14%가 교육훈련과 선전계몽비 및 조사연구비로 배분되어 있다.

이러한 지도사업비 배분추세는 최근 2년간 코로나의 영향으로 대내외 교육 및 워크숍·행사의 지연 및 취소로 일시적 감소현상으로 분석되며, 전통적으로 조직강화비와 생산지도비의 비중이 높은 비율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2. 사업별 실적

가. 어촌지도사업

어촌지도사업은 수협 초창기부터 실시해 온 가장 오래된 수협 교육·지원사업의 하나이며, 또한 핵심사업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그런 만큼 사업의 내용도 매우 다양하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중앙회의 연차보고서 제50기(2012)에서 제59기(2021)까지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실시해오고 있는 어촌지도사업의 중요내용은 총 15개 세부사업으로 파악된다. 즉 ① 어촌지도자 발굴, ② 도(都) 촌(村)간 교류사업(2011년 실시), ③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2006년 실시), ④ 어업질서유지운동, ⑤ 어장환경개선운동, ⑥ 자원조성운동, ⑦ 해녀초청행사(2015년 폐지), ⑧ 수산장학생 선발, ⑨ 어업인 교육지원(2013년 실시), ⑩ 유류유출사고 복구, ⑪ 어업피해 보상자문, ⑫ Fish Care사업(2015년 실시), ⑬ 귀어귀촌사업지원(2017년 실시), ⑭ 바다모래채취금지운동(2018년 실시), ⑮ 해상풍력발전소 건설대책운동(2019년 실시) 등이 그것이다.

이상의 사업 가운데서는 전통적으로 실시해 온 사업도 많지만 시대와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 개발한 사업들도 적지 않다. 전자는 ①, ④~⑦, ⑩~⑪ 등이 그것이고 나머지는 주로 후자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어촌지도사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지도사업비 지출항목은 생산지도비로서 중앙회 사업결산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비의 연간 지출액은 최근 평균 60억 원 범위이며, 지도비 전체의 약 20%를 점한다. 최근 10년간의 생산지도비 확보현황을 보면, <표 4-1-8>과 같다.

〈표 4-1-8〉 최근 10년간 중앙회의 생산지도비 확보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8	2019	2020	2021
지도사업비총액	24,777	24,752	23,620	24,910	33,357	35,646	27,487	51,000
생산지도비	6,178	6,913	6,445	5,680	6,635	6,797	4,753	5,500
(비율)	(24.9)	(27.9)	(27.3)	(22.8)	(19.9)	(19.1)	(17.3)	(10.8)

나. 자원조성과 환경개선운동

수협은 교육·지원사업을 통하여 수산자원조성과 해양환경개선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두 사업은 1991년부터 생산지도사업을 통하여 처음 실시되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에 펼친 자원조성사업은 치어 및 치패 2억 7천만 미를 방류하였으며, 어장환경개선운동은 바닥갈이 폐기물 101톤, 폐어구 3,610톤 및 불가사리 874톤을 제거하였다. 수협이 자원조성과 해양환경개선운동을 선도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들 사업의 연도별 실적은 <표 4-1-9>와 같다.

〈표 4-1-9〉 자원조성과 해상환경개선운동 실적

연도	종자방류	바닥갈이 폐기물 수거	폐어구 수거	유해생물제거
합계	274,845천미	101톤	3,610톤	874톤
2011	9,106천미	-	-	122톤
2012	3,741천미	-	-	193톤
2013	9,631천미	-	-	159톤
2014	4,111천미	-	-	150톤
2015	46,393천미	-	-	106톤
2016	34,112천미	-	-	10톤
2017	10,003천미	-	-	25톤
2018	10,045천미	71톤	543톤	39톤
2019	24,638천미	22톤	1,182톤	24톤
2020	62,849천미	1톤	988톤	36톤
2021	60,215천미	7톤	897톤	9톤

다. 회원조합육성 지도사업

이 사업은 이전까지는 계통조직 육성이라는 이름하에서 포괄적으로 수행해오던 것을 1970년대에 어촌지도사업으로부터 분리해 '회원조합지도육성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독립시켰으며, 현재 수협 교육·지원사업의 2대 사업 중 하나이다.

주된 사업내용은 ① 조합업무지도, ② 조합실태조사, ③ 조합경영평가(2001년 실시), ④ 조합경영컨설팅(2013년 실시), ⑤ 경영개선자금지원(2003년 실시)의 5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①, ②는 이전부터 실시해 온 활동이지만, ③~⑤의 업무는 IMF 금융위기 이후에 등장한 업무이다.

중앙회는 2006년에 중앙회와 조합 간에 조합경영 정상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각 조합에 대하여 자본 적정성, 사업 수익성, 재무 유동성 및 경영 관리능력의 4개 항목을 중점 대상으로 하는 조합경영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실조합 또는 부실 우려조합에 대하여는 경영개선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특히 상호금융의 예금자 보호가 우려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2편 제3장 제2절 참조).

라. 교육훈련사업

교육훈련사업은 수협 초창기부터 실시해 온 주요 교육지원사업의 하나이다. 초창기에는 교육훈련 대상이 수협계통 조직의 임원과 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점차 대상을 어촌계장, 어촌계원 및 어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최근에는 여기에 여성어업인과 이주어업인들까지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표 4-1-10>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해 온 수협 연수원 중심의 사내교육은 이미 한계를 넘어 외부 위탁교육 인원수가 2020년도의 경우 86.1%에 달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최근 들어 외부 위탁교육 인원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과거 수협 직원의 전문성인 은행업무와 보험업무를 뛰어넘어 증권업무, 감사업무, 평가업무, 전략업무 등으로 전문성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여기에 컴퓨터와 OA기법 및 IT 지식으로 직무의 전문성과 고도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업무의 전문화와 과학화 추세에 대응키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표 4-1-10〉 교육훈련사업 실적 추이

(단위 : 명, 백만 원, %)

연도	연수원 교육	위탁교육	계	위탁교육기관
2001	3,217	1,897	5,114	한국금융연수원, 한국능률협회, 한국보험연수원, 한국수퍼체인협회, 감사교육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매니지먼트, 금융투자교육원, 농협연수원, 배움닷컴, 삼성e캠퍼스, ㈜에프피에듀, ㈜유비온, ㈜유엠투엠, 비아이메트릭스, 법제처, 휴넷, 헤커스금융교육, KG에듀원, 유니버설리얼타임, 오라클, 엑스퍼트아카데미, 멀티캠퍼스, 에듀루프, 한국표준협회, 금융보안연구원, 알파코, 한국금융투자협회, ㈜이패스코리아, KG패스원, 고려아카데미컨설팅, 라이지움, 교보문고, 메가넥스트, 크레듀, 더나은
2006	2,102	7,712	9,814	
2011	406 (3.9)	10,101 (96.1)	10,507 (100.0)	
2012	857	10,286	11,143	
2013	593	9,770	10,363	
2014	767	10,797	11,564	
2015	1,379	11,492	12,871	
2016	767	10,797	11,564	
2017	665	13,306	13,971	
2018	840	15,227	16,067	
2019	2,739	14,426	17,145	
2020	2,416 (13.9)	15,012 (86.1)	17,428 (100.0)	
2021	427 (3.5)	11,895 (96.5)	12,322 (100.0)	

마. 홍보활동

홍보활동은 수협의 존재와 역할을 대내외에 널리, 그리고 정확히 알림으로써 수협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회적으로는 수협운동의 가치와 수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지원사업 분야이다. 수협 초창기에는 이 업무를 선전계몽 활동이라 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홍보활동이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협 홍보활동은 그동안 홍보수단과 홍보대상 양면을 통하여 발전을 거듭해 왔다. 홍보수단은 미디어 발전에 맞춰 신문, 잡지, TV 등을 거쳐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로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어업인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어촌과 수산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함은 물론 수협 임직원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커뮤니케이션에도 힘써왔다.

한편, 자체 운영 주요 매체로 수협방송 FBS와 신문형 소식지인 어업IN수산을 활용하고 있다. 1993년 개국한 FBS는 중앙회와 회원조합 본소 및 영업점 등에 연결된 TV방송 송출망을 통해 수협과 수산업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문화 향상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FBS는 2014년부터 해양수산방송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전국 주요 위판장과 여객선 터미널 등에 송출망을 갖추고 수산업의 다양한 소식과 어업 현장에 유용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창간한 어업IN수산은 신문 형태로 매주 1회 발간하는 종합 소식지로 어촌과 어업현장 및 수산계 주요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하며 수산 여론의 구심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과 정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우호적 여론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언론매체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으며 전담 부서인 홍보실이 최근 10년간 생산하여 배포한 보도자료는 연평균 481건으로 총 4,812건에 달하고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를 통해 기사화되고 있다.

특히 홍보실은 급속하게 발달하는 ICT 환경에 발맞춰 주요 매체로 떠오른 SNS를 새로운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온라인홍보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거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셜네트워크 미디어로 소통 영역을 확대해왔다. 이를 통해 수협과 수산업에 대한 홍보 효과 제고는 물론 수산물 소비촉진 등 다방면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외 홍보활동은 한일, 한중어업관계를 통하여 수협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이전까지 활동의 전부였으나 중앙회의 ICA 가입과 ICA 수산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된 이후부터는 활동 범위가 넓어져 수협의 인지도를 국제적으로 크게 높이고 있으며, 동시에 국위선양에도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협중앙회장의 2009년 ICA 수산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ICA 수산위원회 의장국 지위를 현재까지 지키고 있는 점과, 2011년 6월 16일 제1회 '세계 수협의 날' 기념식을 서울에서 개최한 후 2014년 6월 16일, 2015년 6월 15일 세 차례나 이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2011년 11월 18일에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ICA 36차 연차총회에서 드디어 한국의 수협중앙회가 제11회 'ICA 로치데일 파이오니어상'을 수상한 것도 해외 홍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2017년에는 수협창립 이후 현재까지 보존해온 수협의 중요기록과 사진, 영상물, 책자 등 총 2,228점을 디지털 아카이브즈 시스템(Digital Archives System)으로 구축하여 수협 50년의 역사 자료를 영구 보존하는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바. 조사연구사업

조사연구 사업은 수협 초창기부터 실시해왔으며, 당시에는 연차보고서 작성과 회원조합 및 어촌계 실태조사가 주 업무였다. 1969년 6월부터는 「수협통계조사」 월보를 창간하고 1970년 중반부터는 「수협업무통계」를 연보로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70년대 후반에는 수산청으로부터 「어업경영조사보고」를 이관받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영어자금소요액 조사」와 「어가경제조사」도 수협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수행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상의 조사연구사업 가운데서 정기간행물로 발간되고 있는 조사보고서 모두를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8종에 달한다. 즉 연차보고서(연보), 조합현황(연보), 어촌

계현황(격년보), 수협통계조사월보(월보), 어업경영조사보고(연보), 어가경제조사(연보), 영어자금소요액조사(연보), 수협업무통계(연보)가 그것이다.

이 밖에 2011년부터 실시한 수산지식나눔시리즈 발간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사업은 2011년 12월에 제1호로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장수호 저 「한말 일본의 어업침탈사」발간을 시작으로, 2012년 제2호로 부경대학교 김병호 교수 저 「수산의 이해」, 2013년 제3호로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최정윤 저 「양식어업의 어장이용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 2014년 제4호로 유원근·김정봉 공저 「한국어업유산의 가치」, 2015년 제5호로 이두순 저 「평역 난호어목지」, 2016년 제6호로 동명대학교 김진백 교수 저 「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등의 저서를 출판하여 열악한 수산지식 시장 타개에 큰 역할을 하였다.

2011년 5월 수산미래포럼

2012년에 편찬한 수협 50년사는 기존의 사업부문별 설명 위주의 사사(社史) 편찬의 범주에서 벗어나 「바다-수산-수협」이라는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어민의 삶과 수협의 역사를 하나로 묶어 「바다에서 일궈낸 희망, 수협 50년사」라는 제목으로 편찬하였다. 수협 조사연구사업이 이룬 최근의 보기 드문 업적이다. 이를 계기로 수협 천안연수원에 국가기록원과 신문기사로부터 수집한 각종 자료와 각계의 기증자료 총 271점을 전시한 「수협역사자료 전시관」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한편, 2011년 5월에는 수산업의 미래와 어촌사회의 장기적 변화를 전망하는 「수산미래포럼」을 조직하여 동 5월 18일 제1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매년 2회씩 총 16회까지 이 포럼을 진행하였다.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촌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산업으로서 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수준 높은 토론의 장이다. 제1회 수산미래포럼에서부터 제16회 수산미래포럼까지의 개최일과 포럼주제 및 개최장소를 정리하면 <표 4-1-11>과 같다.

〈표 4-1-11〉 수산미래포럼 개최 실적

구분	개최일시	포럼주제	개최장소
제1회 수산미래포럼	2011.5.18	지속가능 수산업의 새로운 발견	중앙회 강당
제2회 수산미래포럼	2011.11.24	한국수산업의 미래	서울 롯데호텔
제3회 수산미래포럼	2012.6.27	친환경 수산업의 미래	전남 발전연구원
제4회 수산미래포럼	2012.11.22	21세기 수산업의 새로운 가치	부경대학교
제5회 수산미래포럼	2013.4.1	수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과제	부산벡스코
제6회 수산미래포럼	2013.12.26	윤리경영, 무엇을 고려할 것인가	중앙회 강당
제7회 수산미래포럼	2014.9.30	융복합을 통한 제주어촌의 미래	제주 그랜드호텔
제8회 수산미래포럼	2014.11.20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방향	올림픽파크 호텔
제9회 수산미래포럼	2015.8.31	영세어업인 보호대책과 제도	국회의원 회관
제10회 수산미래포럼	2015.10.30	국제화시대의 동북아수산협력 방향	부산벡스코
제11회 수산미래포럼	2016.2.23	대중국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상품화 방향	중앙회 독도홀
제12회 수산미래포럼	2017.4.21	새로운 수산거버넌스, 수산단체의 역할	부산벡스코
제13회 수산미래포럼	2018.1.24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와 헌법개정의 과제	국회의원회관
제14회 수산미래포럼	2018.12.12	낚시어업 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간의 역할 정립	보령 한화리조트
제15회 수산미래포럼	2019.2.11	연근해어업의 현실과 당면 과제	국회의원회관
제16회 수산미래포럼	2019.12.20	어선사고 분석과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부산공동어시장
제17회 수산미래포럼	2020	코로나19로 인해 개최 중단	
제18회 수산미래포럼	2021	코로나19로 인해 개최 중단	

끝으로, 최근 10년간에 이룬 조사연구사업의 성과 가운데서 빠뜨릴 수 없는 업적의 하나가 활발한 연구사업이다. 조사통계업무와 연구사업이 전례 없이 활발하게 수행된 것은 1995년 4월 중앙회에 수산경제연구원이 설치되면서부터이다. 이로부터 종전의 조사부 기능이 수산경제연구원으로 흡수되고 동시에, 연구사업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수산경제연구원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과 회원조합의 경영전략 수립에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를 도출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수협계통조직에 제공하는 연구서비스업무를 수행키로 하고, 2011년부터 이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1년에 8건, 2012년에 9건, 2013년에 11건, 2014년에 11건, 2015년에 10건, 2016년에 10건, 2017년에 9건, 2018년에 13건, 2019년에 13건, 2020년에 11건, 2021년에 17건 등 총 12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중앙회 각 업무부서와 회원조합에 각각 제공하였다.

여기에는 중앙회와 조합의 경영개선과 사업발굴에 관한 연구결과 외에도 수산자원 관리와 수산물유통문제 등 수산업 전반에 관한 다양한 과제를 다루고 있다. 앞으로 수협 경영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산업의 현안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참고할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어 이상의 연구과제 실적물 전체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1~2021년까지 연구실적 : 총 121건

2011년 : 8건

- 어업인 복지 활성화 방안
- 필리핀협동조합 사례연구
- 수산물 브랜드 육성방안
- 어가부채 실태와 그 요인 연구
- 수협은행의 자산운용 효율화 방안
- 산지 위판장 시설 개선과 규모 추정
- 수산물 산지 중도매인 기능 활성화 방안
- 수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방법

2012년 : 9건

- 회원조합 금융사업 활성화 방안
- 패류독소에 대한 수산물 안전성 방안
- 수협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전략
- 양식넙치의 대량 폐사와 기생충 구제 방안
- 수산상품 표준화 및 규격화 촉진 연구
- 베트남협동조합 사례 연구
- 수산물 군납사업 확대 방안
- 부서 간 내부고객 만족도 평가체제 연구
- 수산인 개념 정립과 용어개발

2013년 : 11건

- 중앙회의 고객만족 경영평가체제 구축 방안
- 수산종묘 생산시설 확대방안
- 수산직불제 확대방안
- 사내 소통을 위한 수협방송(FBS)의 역할
- 회원조합 구매사업 활성화 방안
- 인도네시아의 수산업과 협동조합
- 주요어종의 한중교역 경쟁력 분석
- 내수면어업 육성방안
- 북한 수산업에 관한 연구
- 수산물 인증제도 정착과 운영방안
- 중국의 수산물 소비 패턴 연구

2014년 : 11건

- 수협유통 및 조업정보시스템 활용 방향
- 대중국 수산물 수출 확대방안
- 회원조합의 수산물 가공산업 실태조사
- 내수면 양식 어류의 유통 실태조사
- 한중 FTA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한중 FTA에 의한 수산물 수입증가 요인 분석
- 상하이 수산물 시장분석 및 수출마케팅 전략
- 한중 FTA 대응 수출기반 강화 방안
-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어·귀촌사업 추진 방안
- 저금리시대의 수협상호금융 마케팅 전략
- 외국인 선원 도입제도 합리화 방안

2015년 : 10건

- 연안복합어업의 경영개선방안
- 수산물 위생검역과 무역분쟁 대응방안
- 시장도매인제도가 수협판매사업에 미치는 영향
- 강서공판장 운영 효율화 방안
- 중앙회의 무역사업 중장기 발전 방향
- 연근해어업의 자율적 수산자원 관리 방안
- 통일대비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남북협력 추진 방안
- 주요양식 품목별 수급전망 분석
- 산지위판장 위판과정 개선 방안
- 수협의 수산물산지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2016년 : 10건

- 수산업의 빅데이터 기반구축 방안
- 수협단체급식사업 확대 방안
- 수협은행의 경영계획 수립 고도화 방안
- 중앙회의 중국현지법인 DLS사업 운영 방향
- 바다낚시어업 관리 개선 방안
- 수산물 표준규격화 사업활성화 방안
- 상호금융사업의 지역여신 특화 방안
- 수산창업자 지원정책자금 신규도입 방안
- 수산발전기금 신규지원사업 발굴 방안
- 회원조합 임직원 역량강화 방향

2017년 : 9건

- 중앙회의 온라인 쇼핑사업 발전 방향
- 수협사업구조변화와 종합홍보체제 운영방안
- 수협은행의 조직문화 진단체계 구축
- 영어자금의 어업별 효율적 지원 방안
- 어촌계 조사통계의 발전 방안
- 동남아 할랄시장의 수산물 진출 방안
- 수협카드의 신규고객 창출 방안
- 수협은행 브랜드이미지 포지셔닝 방안
- 해조다이어트 식품 개발 컨셉 연구

2018년 : 13건

- 품질위생관리형 산지위판장 우선순위 선정 방안
- 새로운 어촌계 분류평정체계 개발 연구
- 수산자원과 바다 환경감시단 설치 제도 개선 방안
- 중앙회의 베트남 수산물 수출지원 센터운영 활성화 방안
- 유럽 3국의 수산물수출 유망품목 발굴 연구
- 수협은행의 점포 입지 평가체제 구축 방안
- 수산양식의 미래식량산업화 방안
- 조합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회의 역할
- 어업허가권의 재산권적 특성에 관한 연구
- 부과세 영세율 정책과 어업용 기자재 시장에 관한 연구
- 수협은행의 효율성 분석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수산정책 대응 방향
- 미국의 수산식품 소비분석과 수협의 현지 판매전략

2019년 : 13건

- 바다마트사업 운영 체계화 방안
- 수산물 직거래사업 확대방안
- 대 캐나다 김 수출 확대방안
- 수협유통의 반찬전문점 시장수요도 조사
- 상호금융의 여신 금리산정체계 개선방안
- 수협은행의 조직문화 개발계획
- 조합경제사업의 다각화 방안
- 새만금사업의 수산업영향과 대응방안
- 도서지역과 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수협사업 지원방안
- 조업사고와 인명피해 제로프로젝트 실행방안

-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방안
- 어촌계의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 여성어업인의 어촌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2020년 : 11건

- 강원저유소 건립 타당성 분석
- 김 생산의 단계적 품질 향상 방안
- 수산물 수매 비축제도 개선방안
- TAC 제도하의 어업인 소득 보전방안
- 수산발전기금사업 평가지표 개선방안
- 디지털금융시대의 수협은행 소매금융 전략
- 해양쓰레기 수거 방안
- 수산물 계통판매 확대방안
- 어업인 복지 실태조사
- 수협은행의 경영성과 관리체계 개선방안
- 수산분야 농사용 전력사용 확대방안

2021년 : 17건

- 강원저유소 건립 타당성 분석
- 어업용 면세유류 한도량 영향요인 분석
- 수협 조합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 수협중앙회 해수공급사업 타당성 분석
- 근해어업 외국인선원 수급 실태조사 및 수요전망
- 수협은행 수익성 평가지표 및 목표설정방법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현황과 개선 필요성
- 상호금융 영업점 활용다각화 방안
- 친환경 냉매 사용에 따른 냉동냉장업의 대응방안
- 마을어장을 활용한 경기남부권 어촌계 소득증대 방향
- 상호금융 종합수익관리시스템 도입방안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수산업계 대응방향
-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인제 확대가 수산물 유통에 미치는 영향
- 패류종자생산시설 건립 필요성 및 방향
- 탄소중립시대의 수산어촌분야 정책지원 방안
- 수산물 온라인 거재지원 솔루션 구축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수산업·어촌 공약 제안

사. 안전조업지도

이 사업은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의 조업안전과 어선의 조난 사고를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1960년대에는 이 사업을 어업무선국 운영이라 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안전조업지도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1980년대에 다시 초창기 사업명인 어업무선국 운영으로 환원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는 「어업인 안전조업지도」라는 이름으로 바꿔 현재까지 그대로 부르고 있다(이하에서는 안전조업지도라고 한다).

안전조업지도사업의 내용은 ① 수산재해 및 어선사고 예방지도, ②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③ EEZ출어선 관리, ④ 어선안전조업국 운영, ⑤ 어선안전조업국 시설, ⑥ 어선 안전장비 지원, ⑦ VHF-DSC 통신망 운용 등 어선안전 모니터링의 7개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업무와 사업은 국고보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가운데서도 어선안전조업국 시설사업과 운영은 국고의존 비율이 2020년 기준 각각 80%, 65%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 업무 자체가 그만큼 공익적 성격이 높은 사업이라는 의미이다. 최근 10년간의 어선안전조업국 시설과 운영비 현황을 보면, <표 4-1-12> 및 <표 4-1-13>과 같다.

〈표 4-1-12〉 어선안전조업국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계	본부상황실	해안국	중계소	간이국	방탐소	송신소	통신소
1963	3	1	2	-	-	-	-	-
1965	20	1	11	8	-	-	-	-
1970	31	1	15	13	-	-	-	-
1980	61	1	21	-	20	6	13	-
1990	57	1	18	-	16	8	14	-
2000	49	1	17	17	-	5	9	-
2010	47	1	17	20	-	-	9	1
2020	84	1	17	52	-	-	11	3
2021	86	1	17	53	-	-	11	3

〈표 4-1-13〉 어선안전조업국 운영비 현황

(단위 : 백만 원, %)

연도	금액			비율		
	계	자담	국고보조	계	자담	국고보조
1966	6	-	6	100.0	-	100.0
1970	102	27	75	100.0	27.0	73.0
1980	1,400	411	989	100.0	29.4	70.6
1990	5,699	2,948	2,751	100.0	51.8	48.2
2000	9,763	3,994	5,769	100.0	40.9	59.1
2010	14,882	3,493	11,389	100.0	23.5	76.5
2020	23,841	8,470	15,371	100.0	35.5	64.5
2021	25,536	8,941	16,595	100.0	35.0	65.0

중앙회가 EEZ 관리업무를 시작한 것은 1999년부터이다. 신 한일, 한중어업협정에 의해 관련국은 전통적 어업실적을 존중하여 EEZ 내에 일정 수의 어선이 상호 조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EEZ 내의 출어선 관리가 안전조업지도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각국 어선이 상대국 EEZ에 불법 침입하는 것을 막고, 우리 어선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나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EEZ 내 어선의 입출역 허가사항과 정오 자정위치(正午子正位置) 및 어획실적 파악 등을 업무로 하는 것이 EEZ 관리업무이다. 중앙회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처음 이 업무를 위탁받은 것은 1999년이다.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은 이 업무의 실시 초년도인 1999년 한·일 EEZ 및 2001년 한·중 EEZ에 조업허가를 받은 조업선박을 대상으로 각종 보고사항을 처리하였으며, 우리 어선의 타국 EZZ 입어 절차와 규칙에 대해서도 이를 준수토록 지도하고 있다.

EEZ 출어선 관리 활동 가운데서 특히 중국어선의 우리 측 EEZ 입어 상황에 대하여는 더욱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에 행한 중앙회의 EEZ 출어선 관리실적과 어선안전조업국 운영체계를 보면, <표 4-1-14> 및 다음 그림과 같다.

〈표 4-1-14〉 어선안전조업국의 EEZ 출어선 관리실적

(단위 : 척)

연도	한국어선 (일·중EEZ)	중국어선 (한국EEZ)	일본어선 (한국EEZ)	계	비고
2011	57,246	171,499	5,866	234,611	1. 각국 어선이 상대국 EEZ에 불법 침입하거나 우리 어선이 불법행위로 나포되지 않도록 조업지도에 주력함. 2. 각국 어선의 입출역, 허가변경, 정오위치 및 어획량 보고 등의 업무를 처리함. 3. 한일, 한중어업협정에서는 전통적 어업실적을 존중하여 각국의 EEZ 내에 일정 수의 어선이 상호 입어할 수 있게 함.
2012	43,650	121,231	6,647	171,528	
2013	17,217	114,985	3,011	135,213	
2014	41,915	119,169	1,975	163,059	
2015	58,384	111,971	2,724	173,079	
2016	44,481	110,352	284	155,117	
2017	7,523	80,990	-	88,513	
2018	8,949	99,272	-	108,221	
2019	8,960	99,161	-	108,121	
2020	10,265	104,127	-	114,392	
2021	9,434	76,750	-	86,184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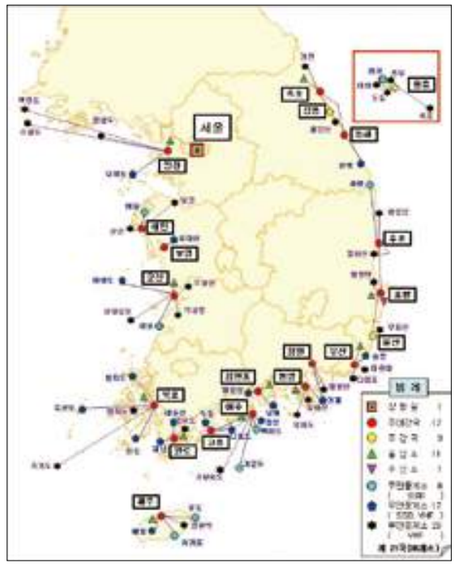

2015년 3월 어선안전의 날 합동캠페인(통영)

아. 해외협력사업

1) ICA 활동

해외협력사업은 주로 ICA 활동, 한일어업협력, 한중어업협력 및 한러어업협력의 4대 대외협력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ICA 활동은 1979년 ICA 가입 이후 중앙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협력사업이다. 1979년에 ICA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2009년 이종구 회장이 ICA 수산위원회(ICFO)의 위원장이 되고 나서 김임권 회장에 현재의 임준택 회장에 이르기까지 ICFO 의장국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2편 제4장 제2절 '수협중앙회의 ICA 활동' 참조)

2) 한일어업협력

한일 간 민간어업협력 시작은 1966년부터이다. 1965년 6월 22 한일 국교정상화와 동시에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협정 제8조는 양국 어선 간 조업안전과 원활한 어선사고 처리 등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긴밀히 연락, 협력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1965년 12월 17일 「대한민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일본국 대일본수산회와의 양국 어선간의 조업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민간협정」(한일민간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

한일민간어업협정 제9조에는 한일 양국의 민간수산단체가 협정 실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1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수협중앙회와 대일본수산회는 매년 1회, 개최장소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일민간어업협의회를 개최하게 된다.

1989년 11월 한일민간어업협합동위원회

제1회 협의회는 1966년 5월 20일, 21일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측 대표단은 김재식 수협중앙회장 등 5명이고, 일본 측 대표는 나카베 켄기치 대일본수산회 회장이었다. 회의의 주요 합의사항은 어선사고 발생 시 교환할 손해사고 확인서 양식 결정 및 양국 어선의 도색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제2회 협의회는 1966년 10월 18일, 19일 서울에서 개최되어 1966년에 협의회가 2회 개최되나, 1967년부터는 한국과 일본 양측이 번갈아 연 1회 개최하게 되었다. 협의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한일 간 구체적인 합의는 없으나 관례적으로 각각 양측 회장을 단장으로 6명으로 구성하였다.

협의회의 주요 성과로 첫째는 손해사고확인서 양식의 제정 및 개정, 둘째는 어선사고처리를 위한 한일민간어업합동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셋째는 한일 양국 어선의 도색에 관한 사항 합의, 넷째는 어구손해액 사정기준 제정·개정 및 그 밖의 민간어업협력 추진근거 마련 등이다. 그 결과 한일민간어업합동위원회 회의, 한일합동어로장회의, 한일민간어업위원회 사무국장회의, 한일민간어업자단체 협의회 및 당사자 간 협의회 등 다양한 민간어업협력이 추진되었다.

배타적 경제수역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UN해양법협약이 1982년 채택 후 1994년 발효됨에 따라 국제 해양 질서는 개편되기 시작한다. 이에 한일 양국은 1996년 4월부터 관련 협상을 진행하여 1998년 11월 28일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고 1999년 1월 22일 발효됐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의 방침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한국수산회에 한일민간어업협력업무를 이관하였다. 이관 이후에도 수협중앙회는 어업인 권익 대변을 위하여 한일 민간어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3) 한중어업협력

1980년대 중반부터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우리 어선과 중국어선 간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한중간 민간어업협력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는 중국과 교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대일본수산회를 통하여 중국과 교섭을 하였다.

1988년 12월 15일~16일간 일본 동경에서 「제1차 한중민간어업회담(일명 동황해어업검토회)」를 개최하여 한중 민간어업협력을 시작하였다. 이 회의에 우리나라는 수협중앙회 이종휘 부회장을 단장으로 총 12명이, 중국은 송즈원(宋之問) 동황해어업협회장 등 6명이 참석하여 서해 및 동중국해의 어선 긴급피난, 해상사고 처리, 안전조업 및 긴급통신 문제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하였다.

1989년 12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양측 단장(단장은 1차 회담과 동일)은 「한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중국 동황해어업협회 간의 어선 해상사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는 한중 간 국교수립 이전에 최초로 체결된 민간 어업협력 문서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후 수협중앙회와 중국 어업협회[1]는 자국 정부의 협조하에 2001년 3월 21일까지 양국의 민간어업협력과 38건의 어선사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12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서해 및 동중국해에 입어하는 자국 어업인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2001년 6월 30일에는 한중어업협력이 발효된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 방침에 따라 한중어업협정 관련 민간어업협력업무를 한일 간 민간어업협력업무와 함께 2001년 12월 31일 한국수산회에 이관하였다. 이관 이후에도 수협중앙회는 어업인 권익 대변을 위하여 한중 민간어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한중일 3국 간 민간어업협의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4) 한러어업협력

우리나라와 구소련 간에 정식으로 수교가 이루어진 것은 1990년 9월이다. 이후 양국은 어업협력에 관한 교섭을 진행한 결과 1991년 9월 16일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정부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일명, 한소어업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동년 10월 22일부터 발효에 들어갔다. 특히 이 협정은 우리나라와 러

1 동황해어업협회에서 그 명칭을 바꾸었다.

시아 간에 공식적으로 어업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북방수역의 새로운 원양어장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의 당사국인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이 1991년 12월 31일로 붕괴됨에 따라 구소련의 대외관계는 러시아연방공화국으로 승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소어업협정은 한국-러시아어업협정, 곧 「한러어업협정」으로 그 지위가 바뀌었다. 그러나 15개 조문으로 된 당초의 동 협정 기본 내용에는 변함이 없었다.

한러어업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 양국은 수산업 분야에서 호혜·평등의 협력관계를 수립한다. 제2조 양국은 북서태평양지역의 해양생물자원 보존과 최적 이용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 양국은 법령준수를 위하여 검사공무원의 상호승선에 협력한다. 제6조 양국은 소하성어족의 보호를 위하여 모천국(母川國)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제7조 한국정부는 오호츠크공해 및 러시아공화국 EEZ에 인접한 어업자원 보존 조치에 대한 이행에 협력한다. 제9조 양국은 어로양식 및 가공분야에 대한 합작기업의 지원에 협력한다. 제12조 양국은 양국 어선의 기항, 보급 등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다. 제13조 양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마지막 15조 양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을 지키며 매 1년씩 자동 연장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부칙에 1991년 9월 16일 모스크바에서 정본을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각 2부씩 작성하여 협정에 서명함 등으로 되어 있다.

한러 양국은 협정체결과 동시에 동 협정 제13조에 따라 양국 정부 주도로 「한러어업위원회」를 설치하고 1991년 10월부터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원양업계는 매년 한러어업위원회의 합의 내용에 따라 매년 러시아수역에 입어하고 있다. 연근해업계도 초기에는 러시아 수역에서의 조업을 시도하였으나 입어조건이 맞지 않아 출어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자 근해어선들의 조업어장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근해업계에서는 지자체의 지원 등을 활용하여 민간입어방식으로 러시아수역 입어를 추진하였다. 즉 구룡포수협에서는 채낚기어선 44척의 러시아 연해수역 입어를 추진하여 1999년 7월 23일~9월 22일간 1,775톤을 어획하여 어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힘입어 2000년부터 수협중앙회에서 주관하여 정부 간 입어방식으로 동해안 전체 채낚기어선의 러시아 수역 입어를 추진했는데, 2000년에는 지자체의 지원 없이 어업인 자담으로 입어를 추진한 데다 러시아 측에서 1999년 수준의 높은 입어료 등을 요구함으로써 입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러시아 측과 입어료 등을 합의하여 매년 50척에서 100척의 어선이 연해주 수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채낚기어선의 효율적인 러시아 입어를 위하여 수협중앙회는 러시아 입어 어업인 단체인 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와 2000년부터 매년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입어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협중앙회는 대러 접촉, 협상, 통번역, 서류작성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연합회는 러시아 입어관련 주요 의사결정 및 물자관리, 대내외 계약 등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2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근해채낚기어선의 러시아 수역 입어는 국내 어장에서의 과당 경쟁을 예방하고 인접국 어장에서의 조업을 통해 국내 수산물 생산에 기여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근해오징어채낚기어업을 통한 한러어업협력의 연도별 실적 현황을 보면, <표 4-1-18>과 같다.

〈표 4-1-18〉 근해오징어채낚기어업 러시아수역 생산 실적

(단위 : 톤)

연도	조업기간	조업척수	조업쿼터	총어획량	척당어획
2001	7.1~9.15	72	5,000	1,542	21.42
2002	7.15~9.15	59	4,000	2,259	38.29
2003	7.18~9.19	75	3,923	2,586	34.48
2004	7.14~9.22	93	4,000	2,294	24.67
2005	7.18~9.23	101	6,000	2,515	24.90
2006	7.11~9.26	113	6,300	4,840	42.83
2007	8.6~9.25	104	7,000	4,632	44.54
2008	7.26~9.17	38	7,000	2,780	73.16
2009	7.16~9.12	50	4,500	3,946	78.92
2010	7.25~9.28	66	6,500(115)	5,126	77.67
2011	8.3~10.11	90	10,000(115)	5,408	60.09
2012	7.22~9.29	93	8,000(115)	5,681	61.09
2013	7.22~10.2	108	8,000(115)	5,467(13.8)	50.62
2014	8.7~10.3	87	7,000(115)	2,819(7.2)	32.40
2015	7.18~9.28	66	5,500(60)	2,870(14)	43.48
2016	7.20~10.8	46	3,500(50)	2,180(21)	47.39
2017	8.15~10.21	48	3,500(50)	1,835(20)	38.23
2018	7.26~10.21	51	3,500(50)	2,581(23)	50.61
2019	7.26~10.18	70	5,000(50)	486(3)	6.94
2020	8.31~10.13	65(57)	4,700(70)	516(1)	9.05
2021	7.15~9.28	55	4,000(60)	2,302(0.07)	41.85

1) ( ) 내는 북어 관련 사항임.
2) 2017년 입어지연 : 러시아 감독관들의 선도선박 7성복호 승선 거부 후 수리 출항에 기인
3) 2019년 부진사유 : 어획 부진, 태풍 발생 등
4) 2020년 부진사유 : 코로나19로 허가지연, 태풍 다수 발생, 조업수역 악천후 등
5) 2020년 허가어선 65척 중 8척은 러 미 입어(태풍·악천후, 해상격리 14일 의무 등)

5) 외국인 선원 도입사업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경제발전과 산업의 고도화로 중소제조업과 위험직종 및 3D업종에 속하는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종사를 기피함에 따라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3년부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부터 이 제도에 의해 인력부족 문제를 타개해 나가도록 하였다.

수산업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근해 어선 어업이 대표적인 3D업종으로 인식되면서 국내 선원만으로는 선원 수급문제를 해소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하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분야에도 외국인선원연수생제도를 도입키로 방침을 정하고 1996년 5월 수협중앙회를 해외선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그리하여 1996년 12월 16일 정부는 연근해어선어업 시범사업으로 중앙회에 외국인선원 연수생 1,000명의 도입을 허용하였으며, 이 중 중국인 연수생 18명을 처음으로 대형선망수협에 배치한 것이 중앙회의 외국인선원도입사업의 첫 출발이다.

중앙회는 1996년 6월 7일 회원지원부 내에 선원송입관리단을 신설하고 계획적으로 외국인선원도입사업에 착수하였다. 당시 중앙회의 역할은 외국인 선원 비자발급, 전국 수협에 연수생 추천, 연수업체 감독, 임금보장공제 가입,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발생 방지, 국제전화카드 지급, 외국인 선원 애로상담센터 운영 등 외국인 선원 도입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었다.

2007년에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면서 어업분야의 경우 20톤 미만 어선 및 양식업의 고용허가제도와 20톤 이상 어선의 외국인선원제도로 이원화되었다. 고용허가제도에서는 2007년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2021년 말까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스리랑카, 베트남에서 총 25,482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였으며, 외국인선원제도를 통해서는 2021년 말까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미얀마, 스리랑카에서 총 38,637명의 외국인선원을 도입하였다.

오랫동안 수협중앙회에 의해 외국인선원 도입사업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정착되어온 상황에서 외국인선원 도입사업 주체가 바뀌면 그간 쌓아온 업무의 노하우와 사업의 연속성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 따라서 수협중앙회가 이 업무를 계속한다는 것은 외국인 선원 수급문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여겨진다. 중앙회의 외국인선원도입사업 실시 체계와 선원도입 실적을 보면 아래와 같다.

중앙회의 외국인선원 도입사업 실시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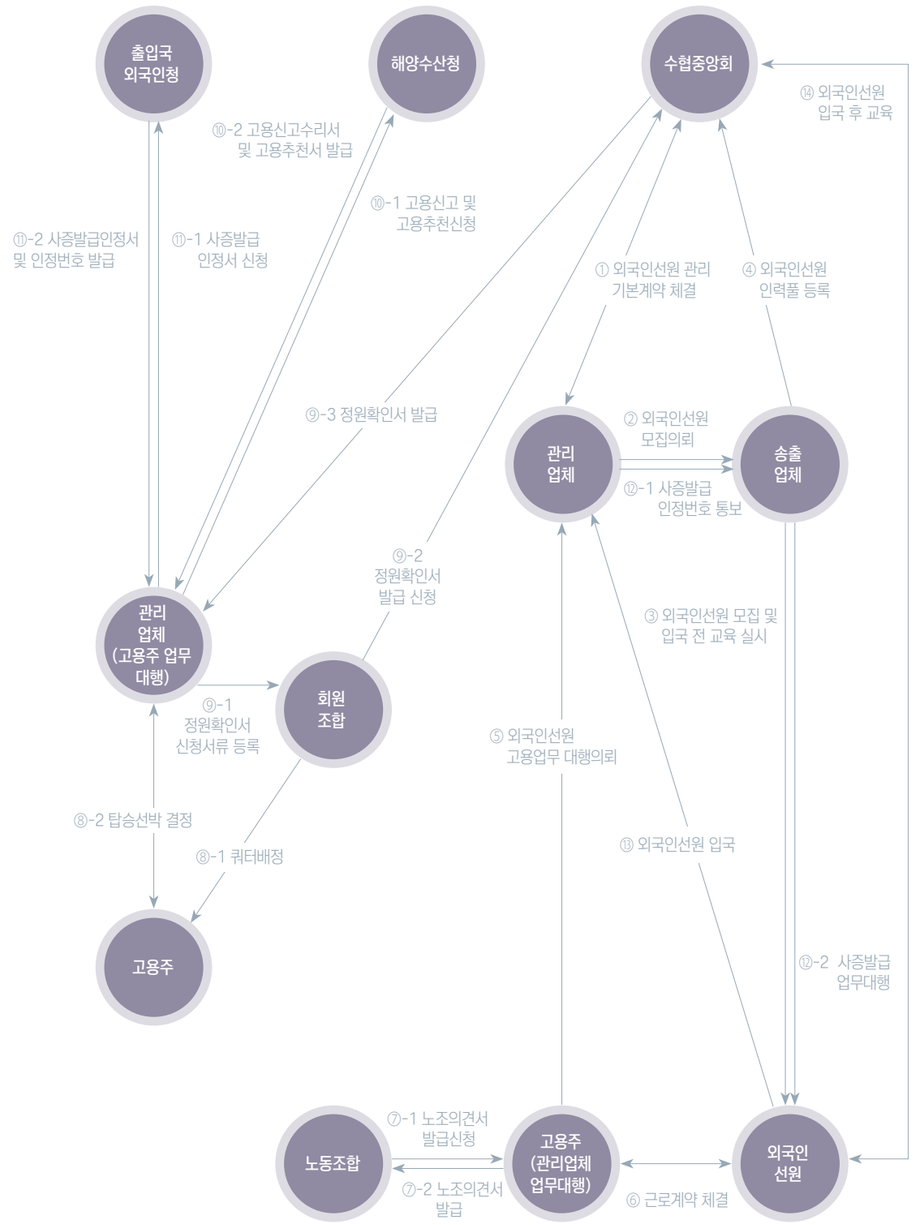

〈표 4-1-19〉 외국인 선원 도입사업 실적

(단위 : 명)

연도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미얀마	기타	계	비고
1996	-	-	-	-	-	-	1,000	
1997	79	270	-	-	-	-	1,029	
1998	845	367	-	-	-	-	1,212	
2000	1,390	590	-	-	-	-	1,986	
2001	1,768	625	-	-	-	-	2,393	
2002	1,814	625	-	-	-	-	2,439	
2004	840	179	-	-	-	37	1,056	
2005	-	-	-	-	-	-	1,602	1996.12.16. 선원연수생 도입 첫 실시, 1996년 대형선망에 중국인연수생 18명이 최초로 승선함.
2006	1,040	565	135	-	-	1,279	3,079	
2008	1,349	655	229	-	-	-	2,233	
2009	1,107	571	509	-	-	-	2,187	정부로부터 2천 명 추가 결정
2010	1,783	474	559	-	-	-	2,766	
2011	1,927	585	641	-	-	-	3,153	10톤 이상 어선에서 5톤 이상 18개 업종으로 확대, 양식어업분야에도 외국인 인력도입 허용
2012	725	786	697	-	-	-	2,208	
2013	1,127	865	1,349	-	-	-	3,341	
2014	799	1,292	1,671	-	43	-	3,805	
2015	644	907	1,038	-	11	-	2,600	
2016	437	778	817	-	-	-	2,032	
2017	490	978	1,048	-	-	-	2,516	
2018	381	1,561	1,471	-	-	-	3,413	
2019	197	1,207	1,131	-	20	-	2,555	
2020	79	1,074	733	-	36	-	1,922	
2021	80	1,079	1,007	-	-	-	2,166	

주 : 기타에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키르기스, 몽골, 네팔, 동티모르 등의 국가가 포함됨.

차. 수협재단

수협재단(水協財團)은 기존의 수협지도사업으로서는 미칠 수 없는 전체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과 문화 및 복지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한 재단법인이다.

이 재단은 2009년 9월에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중앙회가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으로 설립해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하였으며, 2016년 4월 재단 명칭을 「수협재단」으로 바꾸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재단본부는 수협중앙회에 두고 있으며, 재단 출연기금은 대부분 수협중앙회가 부담하고 있고, 회원조합과 일반 국민으로부터도 기금출연을 받고 있다.

수협재단의 조직을 보면, 이사장이 재단업무를 총괄하고 이사장 아래 전무이사와 사무국을 두고 있는데, 사무국은 수산경제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다. 이사는 수협중앙회장과 수산경제연구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수산관련단체 및 학계에서 위촉한 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고, 감사는 2인 이내로 되어 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수협재단 조직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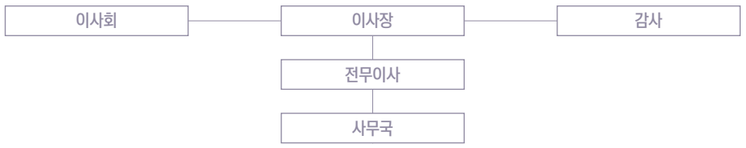

수협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이 8가지로 되어 있다.

① 어촌문화사업
② 어업인 교육·지원 사업
③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④ 장학사업(장학시설 운영사업을 포함한다)
⑤ 조사·연구 지원사업
⑥ 표창 및 시상사업
⑦ 수협의 대내·외 홍보를 위한 사업
⑧ 그 밖에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협재단은 초창기에는 기금 조성에 주력하였으며,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매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장학사업, 의료지원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이 있다.

1) 장학사업

가) 수협장학금 지원

도시 대비 교육여건이 열악한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 교육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수협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법정사회보장대상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국내 소재 대학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업인 자녀로, 자기소개 및 수학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조합의 추천을 통해 재단이 선정한다. 2021년까지 총 1,179명의 어업인 대학생·고등학생 자녀들이 장학금 총 29억 7,200만 원을 지원받았다.

2021년 2월 25일 수협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

나) 수협장학관 운영

수협재단은 서울 및 수도권 대학에 유학 중인 어업인·수산인 대학생 자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장래 어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어업인 자녀 전용 기숙사인 수협장학관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2월 개관한 수협장학관은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남녀 2개 동 총 53실(1인 1실)로 운영되고 있다. 사감 관리인 3명의 24시간 상주 관리로 시설관리 및 생활 안전에 힘쓰고 있어 어업인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다.

2021년까지 총 426명의 어업인 대학생 자녀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총 11억 7,400만 원이 사용되었다.

2) 의료지원 사업

수협재단은 의료시설, 의료 접근성에 취약한 어촌지역 어업인의 건강증진 및 적정한 치료 기회 제공을 위해 의료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건강한 어촌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가) 의료봉사활동비 지원

의료지원 협약이 체결된 의료기관을 통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현지 의료봉사활동비를 지원하여 도·어간 의료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상급 의료기관 4개소를 포함한 총 22개의 병원과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2021년까지 의료봉사활동 128회, 총 1만 3,308명의 어업인에게 6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나) 건강검진비 지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고령 어업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건강권 증대·중증질환 조기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까지 총 2,810명의 어업인에게 7억 8,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다) 수술치료비 지원

고액의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입원비·수술비·약제비 등 수술치료비를 지원하여 어업인 의료복지 향상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2021년까지 총 1,120명의 어업인에게 14억 7,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3) 주거환경개선 사업

가) 어업인 주거환경 개선

어촌지역의 정주여건(주택, 기초생활, 복지 등)은 거의 모든 부분이 도시에 비해 열악해 종합적인 복지지원이 절실하고, 국가·지자체의 정비 지원은 대규모 사업 위주로 진행되어 어촌지역의 소규모 환경개선 및 부분적 정비에는 한계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수협재단은 지난 2017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업인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공동시설 정비 등을 지원하는 '어촌 희망나눔단'사업을 시작하며 도시와의 복지 격차를 극복하고 정주의욕 고취를 도모하였다.

2017년 7월 1일 어업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각 분야별 봉사단체와 함께 어촌을 방문해 도배 및 집수리, 수중 정화활동, 바닷가 쓰레기 수거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벽화 등으로 어촌 경관을 정비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며 2019년 해당 사업은 '어업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어 공동시설 개보수 등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에 보다 집중해오고 있다.

2021년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정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4,500만 원의 지원을 해당 사업으로 이끌어 어촌계의 공동시설 개선에 보탬이 되었으며, 2021년까지 45개 어촌계에 총 4억 1,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나)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어업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촌 공동시설에 에어컨 설치·교체를 지원하는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전국 회원조합으로부터 어촌계·어업인 공동시설 지원대상을 추천받아 고령인구비율, 폭염일수 등의 평가기준으로 선정하여 2021년까지 324개 어촌계에 총 3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4) 기타 사업

가) 어업인 다문화가정 지원

수협재단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모국방문이 힘든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어촌사회 정착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다문화가정의 실질적인 파수꾼 역할을 하고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모국방문을 위한 왕복항공권, 체재비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343가구, 1,211명의 다문화 어업인 가족 구성원들이 이주여성의 나라에 방문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이주여성의 모국 가족이 한국으로 와서 교류함으로써 서로 간의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6년 9월 10일 어업인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국방문의 길이 막히자 어업인 다문화가정 715가구에 간편식품, 위생·건강용품 등으로 구성된 생활지원키트를 대체 지원하였다.

2021년에는 동아대학교 다문화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다문화가정 부부와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이중 언어 교육, 자녀교육 멘토링, 심리상담 등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바다사랑 다문화학교'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어업인 다문화가정 5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다변화를 도모하였다.

2021년까지 어업인 다문화가정 총 1,110가구, 1,978명에게 11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나) 수산관련 도서보급

수협재단은 우리 바다와 어촌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수산업의 산업적 가치 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수산관련 도서보급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수협재단 제작·보급 어린이도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어촌지역 도서보급' 사업으로 어촌지역 소재 교육기관, 수산 관련 대학교, 어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산전문·교양·어린이도서 등을 보급하였고, 2014년과 2015년에는 전국 초등학생의 건강한 식문화 정착과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어식백세(魚食百歲) 캠페인'을 주제로 홍보용 만화도서 <출동! 바다탐험대>를 애니메이션 DVD와 함께 제작·보급했다.

2016년에는 전국 초등학생뿐 아니라 수산·해양계열 고등학생 및 대학생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수산전문도서 및 어린이도서를 배포하였고, 2018년에는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해양생태계 피해, 유류유출에 따른 해양오염 사례, 갯벌의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만화도서 <바다의 전설>을 제작하여 전국 초등학교 등지에 보급하였다.

2021년까지 보급도서 9만 7,848권 및 애니메이션 DVD 1만 6,000개, 사업비는 총 5억 3,300만 원이 사용되었다.

제2장
경제사업

1962
2022

수협의 경제사업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4절 사업 제138조(사업) 제1항 2호,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제60조(사업) 제1항 2호, 제3장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제107조(사업) 제1항 2호, 제4장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제112조(사업) 제1항 2호에서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표 4-2-1〉 수산업협동조합법 수협 경제사업 내용

구분	주요내용
수협중앙회, 제138조 제1항 2호	•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판매·제조 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업무대행 •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수산물의 처리·가공 및 제조 사업 • 회원 및 출자회사(중앙회가 출자한 회사)의 경제사업의 조성·지도 및 조정
지구별수협, 제60조 제1항 2호	• 구매사업, 보관·판매 및 검사 사업 • 이용·제조 및 가공(수산물의 처리 포함)사업 • 수산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업종별수협, 제107조 제1항 2호	• 구매사업, 보관·판매 및 검사 사업 • 이용·제조 및 가공(수산물의 처리 포함)사업 • 수산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수산물가공 수협, 제112조 제1항 2호	• 구매사업 • 보관·판매 및 검사 사업 • 이용·제조 및 가공 사업 •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수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제사업은 판매사업, 구매사업, 이용가공사업, 가격안정화사업이 있으며, 판매사업은 산지유통사업(위판장, 산지거점유통센터, 산지공판장), 소비지유통사업(소비지공판장, 소비지물류센터, 소비지도매시장), 급식사업(군급식, 학교급식, 기업급식), 전자상거래(B2C, B2B), 홈쇼핑사업, 직판사업, 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구매사업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어업용 선수물자 공급, 어업용 기자재 공급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용가공사업의 경우는 제빙·냉동·냉장·가공사업이 포함되며, 가격안정화사업은 정부비축사업과 수매지원사업이 포함된다.

〈표 4-2-2〉 수협 경제사업 부문별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종류	비고
판매사업	산지유통사업	위판사업(산지위판장), 산지공판장,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산지 판매·유통
	소비지유통사업	공판사업(소비지·산지), 소비지물류센터, 소비지도매시장	소비지 판매·유통
	급식사업	군 급식, 학교급식,기업급식	군·학교·관공서 등 급식납품
	전자상거래	B2C, B2B	소비자 직거래
	홈쇼핑사업	홈쇼핑 방송	소비자 직거래
	직판사업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	소비자 직거래
	무역사업	바다애찬 상품수출, 수출 현지화 지원 등	해외소비시장 확대
구매사업	어업용 면세유류사업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면세유류 공급 및 관리, 선수물자·기자재 계통공급
	어업용선수물자사업	어업용 선수물자 공급	
	어업용기자재사업	어업용 기자재 공급	
이용가공사업		제빙·냉동·냉장·가공	부가가치 향상 등
가격안정화사업		정부비축 및 수매지원	수산물 가격 안정

제1절 판매사업

1. 개요

가. 의의

수협의 판매사업은 조합원이 생산·가공한 수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수협이 이러한 판매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수취가격을 제고시킴으로써 조합원인 어민들에게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이다. 둘째,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축소 또는 제거하여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국산 수산물의 소비 진작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어촌지역사회의 유지와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협이 수행하는 판매사업은 산지유통, 소비지유통의 계통판매와 군·학교·관공서 등 단체에 급식납품과 전자상거래, 직판사업으로 직판채널을 통해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사업과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무역사업이 있다.

수협 수산물 유통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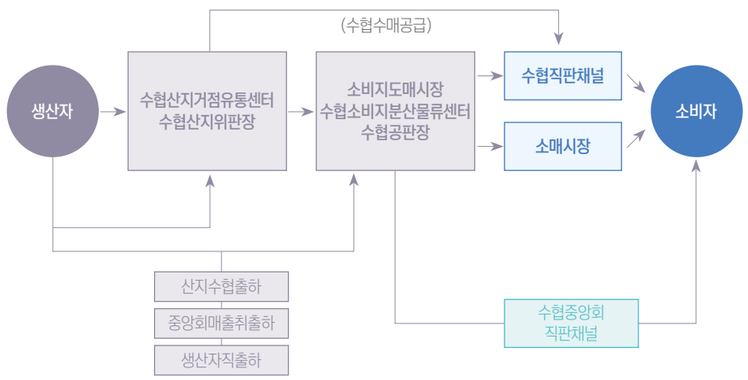

나. 산지유통

1) 산지 위판사업

가) 정의

위판사업이란 산지에서 어업인들이 생산한 수산물을 위판장을 통해 판매하는 것으로 이러한 위판장은 대부분 회원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다. 위판장에서는 수산물의 판매 외에 간단한 선별·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고, 제빙시설과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유류보급시설도 있어 어업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법적 근거

1976년 이전까지 기존 법률에 산지 판매장소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칭함)」이 1977년 7월 1일에 제정되었다. 위판장에 대해서는 농안법 제49조(산지판매제도의 확립) 제5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 동법 시행령 제20조(농수산물 집하장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7호와 수산업법 시행령 제43조(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와 제44조(양륙장소 또는 지정의 취소)와 2009년 4월 22일 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에서도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표 4-2-3〉 수산물 산지 판매장소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구분	주요내용
농안법	제49조(산지판매제도의 확립) ① 농림수협 등 또는 공익법인은 생산지에서 출하되는 주요 품목의 농수산물에 대하여 산지경매를 실시하거나 계통출하를 확대하는 등 생산자 보호를 위한 판매대책 및 선별·포장·저장 시설의 확충 등 산지 유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협 등 또는 공익법인은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창고경매, 포전경매 또는 선상경매 등을 할 수 있다.
농안법 시행령	제2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 ①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나 생산자관련 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수산물집하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수산물의 출하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은 수산물집하장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수산업법	제61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제1항7호 ①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 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7. 포획 또는 채취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수산업법 시행령	제43조(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 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개설된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일부를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명칭 및 관리자 2.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소재지, 규모 및 시설 명세 제44조(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②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분	주요내용
수산자원 관리법	제40조(판매장소의 지정) ① 수산자원 회복계획에 관한 사항 및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를 지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② 어업인은 판매장소가 지정되는 경우 대상 어종에 대한 어획물 은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법률은 위판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지 못하는 등 수산물 유통의 특성 및 현실을 명확히 반영할 수가 없었다. 이에 수산물의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2015년 3월 27일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이라 칭함」이 제정되어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성립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표 4-2-4〉 수산물유통법 위판장 관련 주요 조항

구분	주요내용
수산물산지위판장	정의(2조)
수산물유통발전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시행(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6조) 실태조사(8조)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및 폐쇄	개설자(10조), 개설구역(11조), 허가기준(12조) 허가 등의 취소(26조)
위판장 개설자의 의무	개설자 의무(13조), 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13조의2) 위생관리 기준(13조의3)
위판관리	산지중도매인의 지정(14조), 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15조) 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16조), 산지경매사 자격시험(17조) 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18조), 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19조)
위판장 관리	위판장의 공시(20조), 위판장의 평가(21조), 위판장의 개수·보수 등 지원(22조), 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22조의2), 보고·검사·명령(23조, 24조, 25조)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관리	제35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제36조(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수산물 유통 기반 조성	제48조(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제49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다) 시설현황 등

전국의 수협 위판장은 총 214개이며, 산지(연안)에 211개소, 내륙 소비지에 3개소가 있으며, 위판장을 가지고 있는 회원 조합 수는 91개로 19개 조합 경남이 56개소(26%), 20개 조합 전남이 50개소(23%), 9개 조합 강원이 28개소(13%), 8개 조합 충남이 25개소(12%), 9개 조합 경북이 21개소(10%) 등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 중 수협중앙회가 관리하는 위판장은 인천공판장 1개소이다. 인천공판장은 1973년 5월 1일에 개설되었으며, 대지 13,030㎡, 건물 2,586㎡로 경매장, 중도매인 사무실,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표 4-2-5〉 인천공판장 시설현황

개설일자	면적(㎡)		주요 시설
	대지	건물	
1973. 5. 1	13,030	2,586	경매장, 중도매인 사무실, 식당 등

인천공판장 외부 및 내부 경매장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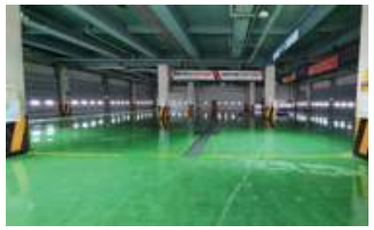

〈표 4-2-6〉 지역별 조합 및 위판장 시설 분포(2021년)

(단위 :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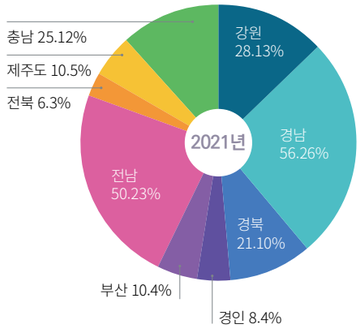

구분	조합	위판장	비중
합계	74	214	100
강원	9	28	13
경남	18	56	26
경북	8	21	10
경인	2	8	4
부산	4	10	5
전남	15	50	23
전북	3	6	3
제주도	6	10	5
충남	9	25	12

※ 위판실적 기준 79개 조합이 해당되나, 전남동부수협 등 5개 조합은 현장매매 등을 통한 위판실적만 존재

그런데 최근 정부(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 산지 위판장의 위생 관리를 혁신하기 위하여 노후화되고 위생여건이 열악한 위판장 환경을 개선하여 깨끗한 환경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정위판장 모델 구축사업'을 2019년부터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2022년 2월에 고흥군수협이 청정위판장 시설을 갖추게 되었으며, 2023년 5월에는 여수수협의 청정위판장 시설이 준공될 예정이다.

〈표 4-2-7〉 수협 청정위판장 시설현황

사업연도	선정사업자	지원내용	비고
2019	고흥군수협	• 건설규모 : 지상3층, 연면적 2,822㎡ • 주요시설 : 위판장, 판매, 사무실 등	·2021. 3월 착공 ·2022. 2월 준공
2021	여수수협	• 건설규모 : 지상3층, 연면적 3,978㎡ • 주요시설 : 위판장, 유통판매시설 수산물처리 시설 등	·2021. 3월 사업자 선정 ·2021. 4월 세부계획 제출 ·2023. 5월 준공신청

고흥군수협 청정위판장

거점형 청정위판장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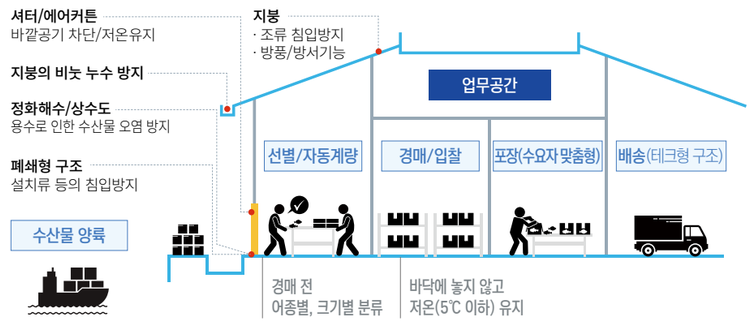

또한,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물이 생산되는 단계별로 저온 유통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이 2020년부터 진행되어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저온위판장 사업자로 선정된 목포수협의 경매장은 선도 유지를 위해 기존 개방형 구조에서 문이 있는 폐쇄형 구조로 전환되고, 온도조절시스템과 정화해수시스템, 조류(鳥類) 방지 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또한, 많은 양의 물고기를 빠른 시간 안에 크기별로 나눌 수 있는 자동선별기, 경매된 수산물이 신선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저온차량 등도 도입할 계획인데, 현재 저온위판장 리모델링 사업을 2개소에서 추진하고 있다.

수협 저온위판장 리모델링 사업 사진

단계	사업 전	사업 후
선별		
	바닥선별	자동선별
경매		
	개방형 상온경매장	폐쇄형 저온경매장

단계	사업 전	사업 후
수송		
	일반트럭	저온차량

〈표 4-2-8〉 저온위판장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황

사업 연도	선정사업자	지원내용	비고
2020	영광군수협	· 저온위판장 리모델링 1개소 · 자동선별기 9대 · 저온차량 2대	• '21. 6월 착공 • '22. 6월 준공 예정
	서천군수협	· 저온위판장 리모델링 1개소 · 자동선별기 1대 · 저온차량 1대	• '21. 6월 착공 • '21.10월 준공
2021	목포수협	· 저온위판장 리모델링 1개소 · 자동선별기 4대	• '21. 4월 사업자 선정 • '22. 8월 준공 예정
	강릉시수협	· 저온차량 1대	• '21. 7월 사업자 선정
	동해시수협	· 저온차량 1대	
	부경신항수협	· 저온차량 1대	
	포항수협	· 저온차량 1대	

2) 산지 공판사업

가) 정의

산지 공판사업은 산지공판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메커니즘은 위판사업과 동일하다. 공판장에 상장되는 수산물의 가격은 경매에 의해 결정되므로 비교적 공정하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대량의 수산물을 단시간에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법적 근거

공판장 관련 법률로는 1977년 7월 1일에 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칭함)」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오늘날까지 수협의 산지공판장은 물론 소비지공판장까지 관리되고 있다.

〈표 4-2-9〉 농안법 공판사업(공판장) 관련 주요 조항

구분	주요내용
수산물 공판장	제2조(정의) "농수산물공판장"이란,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구분	주요내용
수산물 공판자의 개설	제43조(개설) ① 수협 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판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등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판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공판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2. 공판장의 시설이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수산물 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제44조(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①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②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③ 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수산물 공판장의 운영	제45조(공판장의 운영 등) 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1항 및 제42조를 준용 한다.

다) 시설현황

2021년 현재 산지공판장은 3개소로 경기남부수협의 수원공판장, 울산수협의 울산공판장, 부산시수협의 감천공판장이 있다. 이들 공판장은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수산물을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울산 및 부산의 경우 산지위판장과의 거리가 가까운 것이 특징이다.

3) 산지거점유통센터

가) 정의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1]는 산지에서 수산물을 대량으로 처리, 가공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생산자 수취가격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다. 그리하여 여기서 처리·가공된 수산물은 대형 소비처에게 판매하거나 수협물류센터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기존의 6단계 유통구조를 4단계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1 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and marketing Center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모델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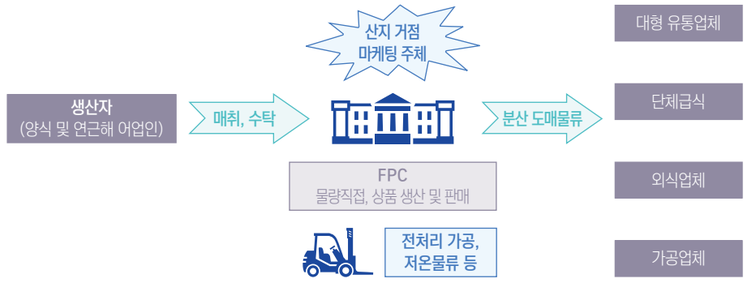

나) 법적 근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제1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처리물량을 규모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수산물을 수집·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운영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에 규정하고 있다.

다) 시설현황 등

2012년 2월 정부에서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면서, FPC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실로 제주 한림수협, 속초시수협, 완도금일수협, 경주시수협, 인천 경인북부수협에 FPC가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하였고, 2019년 보령수협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2022년 완공 목표로 건립 중이다.

〈표 4-2-10〉 제주 한림수협 FPC 개요

구분	내역
면적	대지 16,466㎡, 건물 7,230㎡
사업비	140억 원
주요시설	위판시설, 저온작업장, 수산물 가공공장, 냉동냉장시설, 제빙시설
사업기간	2012. 8 ~ 2015. 4

한림수협 FPC 외부 및 내부 가공·위판 시설

〈표 4-2-11〉 속초시수협 FPC 개요

구분	내역
면적	대지 25,450㎡, 건물 7,908.8㎡
사업비	178억 원
주요시설	위판시설, 가공공장, 활어직판장 등
사업기간	2012. 7. ~ 2015. 3

속초시수협 FPC 외부 및 내부 가공시설

〈표 4-2-12〉 완도금일수협 FPC 개요

구분	내역
면적	대지 3,431.4㎡, 건물 1,803.1㎡
사업비	60.9억 원
주요시설	위판시설, 냉동냉장시설, 판매시설, 가공공장
사업기간	2013. 12. ~ 2016. 3

완도금일수협 FPC 외부 및 내부 가공·보관 시설

〈표 4-2-13〉 경주시수협 FPC 개요

구분	내역
면적	대지 2,479㎡, 건물 2,270.4㎡
사업비	60억 원
주요시설	가공시설, 냉동냉장시설, 위판시설, 업무시설
사업기간	2013 ~ 2017

경주시수협 FPC 외부 및 내부 가공·건조 시설

〈표 4-2-14〉 인천 경인북부수협 FPC 개요

구분	내역
면적	대지 2,479㎡, 건물 2,270.4㎡
사업비	60억 원
주요시설	HACCP 시설(가공시설), 냉동창고 등
사업기간	2018.12 ~ 2021. 1.

경인북부수협 FPC 외부 및 내부 가공·보관 시설

〈표 4-2-15〉 충북 보령수협 FPC 개요(건립 중)

구분	내역
면적	대지 2,196, 6㎡, 건물 768.5㎡
사업비	60억 원
주요시설	HACCP시설, 냉동창고, 부자재 창고
사업기간	2019. 5. ~ 2022. 12월 준공 예정

보령수협 FPC 조감도

다. 소비지 유통

1) 소비지 공판사업

가) 정의

소비지 공판사업은 많은 경우 산지에서 1차 경락된 수산물을 다시 소비지공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판매하는 것으로, 소비지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으며, 판매장소가 수협공판장인가 도매시장인가에 차이가 있다.

공판사업은 다수 영세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소비지로 집결시켜 대량 유통시킴으로써 어업인 판로확보와 아울러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공판사업을 통해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형성 및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전국 연안에서 다양하게 생산되는 수산물을 집하, 신속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

나) 법적 근거

공판장 관련 법률로는 소비지공판에서 본 바와 같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칭함)」로서 이에 따라 수산물의 소비지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시설현황 등

2021년 현재 소비지공판장은 가락, 구리, 강서, 전주, 광주 5개소에 공판장을 수협중앙회에서 운영 중에 있다.

가락공판장은 1985년 6월 10일에 개설되었으며, 구리공판장은 1997년 6월 2일, 강서공판장은 1999년 3월 12일, 전주공판장은 1993년 10월 29일, 광주공판장은 2004년 4월 20일에 개설되었다.

〈표 4-2-16〉 수협중앙회 소비지공판장 시설현황

공판장	개설일자	면적(㎡)		주요 시설
		대지	건물	
가락	1985. 6.10.	5,482	6,656	경매장, 법인사무실
구리	1997. 6. 2.	5,256	6,390	경매장, 법인사무실
강서	1999. 3.12.	30,340	44,863	경매장, 판매장, 냉동창고, 얼음판매소
전주	1993. 10.29.	4,245	3,431	경매장, 냉동창고, 가공작업장, 건어·활어 판매장
광주	2004. 4.20.	8,283	16,158	경매장, 냉동창고

수협중앙회 소비지공판장

가락공판장

강서공판장

구리공판장

전주공판장

광주공판장

2) 소비지물류센터

가) 정의

소비지물류센터는 산지 또는 소비지시장에서 판매된 수산물을 일시 보관했다가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협에서는 기존에 5개소의 물류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었다. 2013년 7월 정부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앞에서 살펴본, 산지의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의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2])를 연계하여 현재 6단계로 되어 있는 유통단계를 4단계로 축소하는, 전국 단위의 신(新)수산물 유통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나) 법적 근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제1항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수집하여 소비지로 직접 출하를 목적으로 보관·포장·가공·배송·판매 등 수산물의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개설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동 조 제2항에서는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개설,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 법 시행령 제42조(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에서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설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FDC : Fisheries Products Distribution Center

다) 시설현황 등

수협중앙회에서는 현재 천안, 감천, 인천, 경기북부, 강원 5개소에 수산물가공, 냉장·냉동 보관시설 등을 갖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의 수산물 유통개선 종합대책에 의거하여 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 및 호남권에 각각 1개의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수협중앙회에서는 총 7개소의 소비지 물류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표 4-2-17〉 수협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물류센터

구분	준공	총사업비 (억 원)	면적(㎡)		주요 시설
			대지	건물	
천안	1994. 3	106	10,581	14,928	냉장 18실, 냉동창고 등
감천	1999. 3	479	14,697	23,864	냉장 15실, 동결 3, 가공 10톤/일
인천가공	2010. 4	265	14,069	11,980	냉동 27톤, 냉장 2,400톤, 가공 40톤/일
경기북부	2015. 3	52	5,133	1,672	냉장 2실, 가공 등
강원	2016. 12	39	4,000	1,256	냉장, 냉동창고 등
인천 소비지[1]	2020. 11	318	16,783	4,409	냉동창고, 냉장, 물류분산장 등
호남권 소비지[1]	2021. 6	166	13,322	2,323	냉동창고, 가공공장, 물류분산장 등

1) 이들 두 시설만 소비지분산물류센터, 나머지는 물류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수협중앙회 물류센터

인천가공물류센터

감천항물류센터

천안물류센터

경기북부물류센터

강원물류센터

수협중앙회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인천소비지분산물류센터

호남권소비지분산물류센터

3) 소비지도매시장

수협중앙회에서는 소비지 유통의 하나로서 소비지도매시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노량진 수산시장이 그것이다. 동 시장은 수협중앙회의 자회사로 운영 중이다(발전 과정, 시설, 사업실적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제3편 제2장 제4절의 2 참조).

라. 급식사업

1) 정의

급식사업은 군, 학교, 기업 등 대량 소비처에 식재료로서 수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대량의 수산물 직거래 유통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협의 급식사업은 군 급식사업, 학교 급식사업, 기업 급식사업이 있다. 군 급식사업 경우 군은 수협을 통하여 부식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군 장병들의 급양 향상 및 급식조달의 원활을 도모할 수 있다.

즉 수협은 군납품을 전 계통조직을 통하여 조달함과 아울러 수산물의 판로를 확대함으로써 가격지지 효과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으며, 더불어 판매사업의 다원화로 사업의 구조적 내실화와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학교급식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영양소를 다량 함유한 수산물을 학교급식을 통하여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장래에 수산물의 지속적인 수요 창출을 통한 어업인 생산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업급식사업은 관공서, 병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식자재 납품업무를 하고 있으며, 양질의 수산물 소비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급식업체 급식 수산물 납품을 통하여 기업급식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산물 이용 촉진과 직거래 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2) 법적 근거

국산 수산물 소비촉진과 직거래 판로확보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급식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에 관한 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수산물 수요개발과 소비촉진) 및 제47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에서 다루고 있다.

제50조(수산물 수요개발과 소비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산물의 수요 개발과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의 수산물 기호 변화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수산물 수요개발
2.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박람회, 시식회, 요리대회 등의 행사 개최
3.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4.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중도매업·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수산물직매장, 소매시설을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단체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전문유통업체 또는 단체가 직거래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직거래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수산물직거래 촉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시설현황 등

급식사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협중앙회는 5개소(천안, 감천항, 인천가공, 경기북부, 강원)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과 감천항물류센터는 가공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수산물 식자재의 안전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HACCP(위해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기준에 의한 HACCP 인증획득과 적용업소로 지정되어, HACCP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표 4-2-18〉 급식사업 생산시설(가공·처리 등)

구분	준공	총사업비 (억 원)	면적(㎡)		주요 시설
			대지	건물	
감천	1999.3.19.	479	14,697	23,864	냉장(15실), 동결실(3실), 가공 10톤/일, 가공장 : 생산라인(3), 생산품목(12), 터널프리즈, 자동염지기, 금속 검출릭 등
인천 가공	2010.4.30.	265	14,069	11,980	냉동(5실), 냉장(4실), 가공40톤/일 가공장 : 생산라인(11), 생산품목(약360여), 필렛기, 세절기, 할복기, 색채이물선별기, 진동크기선별기, 건조기 등

감천물류센터 실험·가공 시설

인천가공물류센터 가공·처리 시설

마. 전자상거래, 홈쇼핑사업 및 직판사업

1) 정의

수협의 전자상거래, 홈쇼핑 및 직판사업은 중간유통인의 개입없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판매 채널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직거래)함으로써 판로확보로 인한 회원조합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위생적이고 양질의 저렴한 가격의 국산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수산물 소비촉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수협중앙회의 온라인으로는 수협쇼핑(B2C) 및 B2B(온라인 도매시장)를 통한 전자 상거래 및 홈쇼핑, 오프라인으로는 백화점이나 할인점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에 수산물 원품 및 가공수산물을 납품하는 직판사업을 하고 있다.

한편, 회원조합은 오프라인 직매장(바다마트 등), 온라인은 수협쇼핑·B2B(온라인 도매시장)에 입점하여 직거래하고 있다.

2) 법적 근거

수산물 직거래·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으며, 수산물 직거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가지는 조항은 두 개로 제47조와 제52조이다.

〈표 4-2-19〉 수산물 직거래의 근거 법령 조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제52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중도매업·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수산물직매장, 소매시설을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단체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전문유통업체 또는 단체가 직거래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직거래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 2.수산물전자거래에 참여하는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심사 및 관리 3.대금결재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관리 4.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의 제공 5.그 밖에 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 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수산물 직거래와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고민·추진하

고 있으나, 아직까진 농산물에 비해 수산물 직거래 개념과 법·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즉,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수산물과 달리 농산물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산물직거래법)」을 2015년 6월 23일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이 법에는 농산물 직거래에 관련한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5년마다 수립)과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 구매와 구매실적 등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평가에 반영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2016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농산물 직거래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3) 시설현황 등

가) 전자상거래

수협쇼핑사업은 수협중앙회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수산물 전문 종합 쇼핑몰(shshopping.co.kr) B2C 사업으로, 소비자에게 양질의 수산물을 온라인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온라인 비즈니스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2007년 1월부터 B2B (www.shb2b.co.kr) 기업간거래 e-마켓플레이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B2B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된 「수산물 B2B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사업으로서 수협중앙회가 주관하고 B2B 전문업체인 이상네트웍스, 노량진수산 및 부산공동어시장이 공동수행기관으로 참여한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되었다. B2B시스템을 통해 거래 주체들에게 다양한 거래 프로세스(B2B전자결제, 자유거래 장터, 입찰, 견적거래)를 제공하고 보증기관과 시중은행을 연계하여 대금 결제를 위한 자금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다.

B2C(수협쇼핑), B2B(온라인 도매시장) 홈페이지

수협중앙회는 2015년 2월 중소기업유통센터·농협경제지주와 연대하여 공영홈쇼핑 출자에 참여(중앙회 지분 5%, 40억 원)했으며, 홈쇼핑사업을 통해 국내 수산업 자생력 확보와 수산물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홈쇼핑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 상품들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해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를 도입해 소비자와의 양방향 소통 및 실시간 상품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나) 직판사업

대형유통업체(신세계백화점, 지에스리테일 등)에 원품 수산물(갈치, 고등어 등) 및 가공수산물(굴비, 오징어 등)을 판매함으로써 수산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바. 무역사업

1) 정의

수협의 무역사업은 수협에서 수산물을 직접 수출하는 것과 관련 업체의 수산물수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수협중앙회에서는 여러 국가에 바다애찬 상품 및 다양한 수산식품 등을 수출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부터는 정부와 함께 해외 7개국 10개소 수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수출 현지화 지원 및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수출 거래선 발굴, 수출 수산물 자금융자 지원 등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4-2-20〉 수산물 수출 지원정책

구분		지원내용	담당기관
수출 현지화 지원	수출지원센터 운영	인큐베이터 입주지원 및 지사화사업 운영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진출 시 초기 위험부담을 줄이고 조기정착 지원	수협중앙회
	수출유망상품화 지원	상품고도화비, 해외마케팅비 등 고부가가치 수출 수산가공식품 개발 위한 단계별 지원	수협중앙회
	해외 앵커숍 운영	현지여건에 맞는 해외 단기 홍보 매장 운영 지원을 통한 마켓테스트 및 시장조사 실시	수협중앙회
해외수출 거래선발굴	국제수산박람회 참가지원	주요 해외수산박람회별로 국내 수출업체를 모집하여 국가관 형태로 참가 지원	수협중앙회
	무역상담회 운영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와 현지 바이어 간 1:1 수출상담 주선	수협중앙회

2) 법적 근거

수협의 무역사업에 대해서는 「수협법」에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수산물가공수협, 수협중앙회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시설현황 등

수협에서는 무역지원센터를 통해 수출업체의 수출업무를 지원하는 등 수산물 수출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데, 현재 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역지원센터를 보면, 중국과 미국 등 7개국 10개소로서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표 4-2-21〉 무역지원센터 현황(2022. 3월 말 현재)

국가	도시	개소일자	직원 수(26)
중국	상하이	2014. 6.26	3명(파견1,현지2)
	칭다오	2015. 7.10	3명(파견1,현지2)
	홍콩	2019. 7. 1	2명(파견1,현지1)
베트남	호치민	2017. 7.10	2명(파견1,현지1)
대만	타이베이	2017. 7.12	3명(파견1,현지2)
일본	도쿄	2017. 9. 4	2명(파견1,현지1)
미국	LA	2017. 9. 6	3명(파견1,현지2)
	뉴저지	2018. 6.19	3명(파견1,현지2)
태국	방콕	2018. 6.25	3명(파견1,현지2)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018. 6.27	2명(파견1,현지1)

무역지원센터

상하이

칭다오

홍콩

호치민

타이베이

도쿄

LA

뉴저지

방콕

쿠알라룸푸르

그리고 이러한 무역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를 보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역할, 지사화사업 지원, 수산식품 무역애로 현지지원, 비즈니스센터 운영 등 다양한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2-22〉 무역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사업명	대상	주요 지원 내용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국내 수산식품 수출초보기업(정원 30개 사)	통역, 시장조사, 통관절차, 법률회계 자문 지원, 개별 사무공간 제공
지사화 사업	BI 완료 및 입주업체 대상으로 해외시장 판로 확대 희망 기업(정원 10개 사)	마케팅 지원, 수출성약지원, 기존 거래선 확대 및 전시 상담
수산식품 무역 애로 현지지원	현지 수산식품 수출애로 해소 희망 기업	해외 현지 컨설팅 기관 협업을 통한 수출 컨설팅 멘토링 통관거부 등 무역이슈 발생 시 현지 지원을 통한 비관세 장벽 대응
비즈니스센터	해외출장 중 오피스 공간 사용 희망하는 수산식품 수출업체	통역지원, 사무용 집기, 회의실 제공
공통사항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	현지 시장 조사 및 해외 홍보 판촉 활동 지원, 국제수산박람회 참가, 무역상담회 개최 등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의 거래선 확보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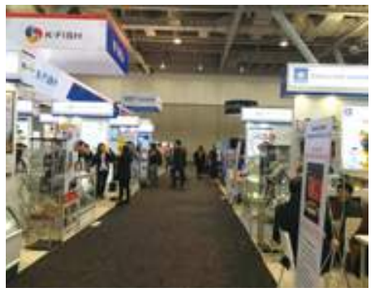

수협은 수산식품 무역거래 활성화 및 무역애로 신속 대응을 위해 'K-씨푸드 수출지원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국내 수출업체는 플랫폼 내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기업 및 제품을 홍보할 수 있으며, 해외 바이어와 영상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무역지원센터와 연계된 온라인 365 상담창구를 활용하여 무역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K-씨푸드 수출지원 플랫폼

K-씨푸드 수출지원 플랫폼 온라인 전시관 및 상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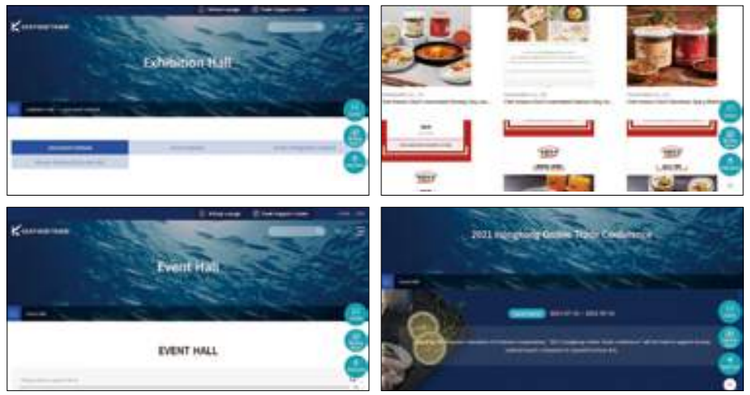

2. 사업추진체계

가. 산지 및 소비지 유통사업

일반적인 선어의 유통경로는 어업인→위판장(경매사, 중도매인)→소비지공판장(도매시장 : 경매사, 중도매인)→도매상→소매상→소비자의 6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위판장은 회원조합, 공판장은 중앙회, 도매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관리공사에서 주관하여 수산물판매의 전 과정을 관리한다.

그러나 산지에서 강제상장의무가 폐지된 이래 산지에서 소비지공판장이나 도매시장으로 바로 상장하는 경우도 많은데 부패성이 강한 수산물을 단시간에 대량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여전히 위판장을 거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때 위판장이나, 공판장, 도매시장 모두 상장된 수산물은 경매를 통하여 가격을 결정하는데 경매는 경매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구매자로부터 구매의뢰를 받은 다수의 중도매인이 경쟁적으로 경매에 참여하며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중도매인에게 낙찰된다. 낙찰되고 나면 하주(또는 출하자)는 수수료 등을 제외한 대금을 즉시 수령하고 1차 구매자로서의 중도매인은 일정 기간 후에 관리기관에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모든 과정이 일단락된다.

공판장 거래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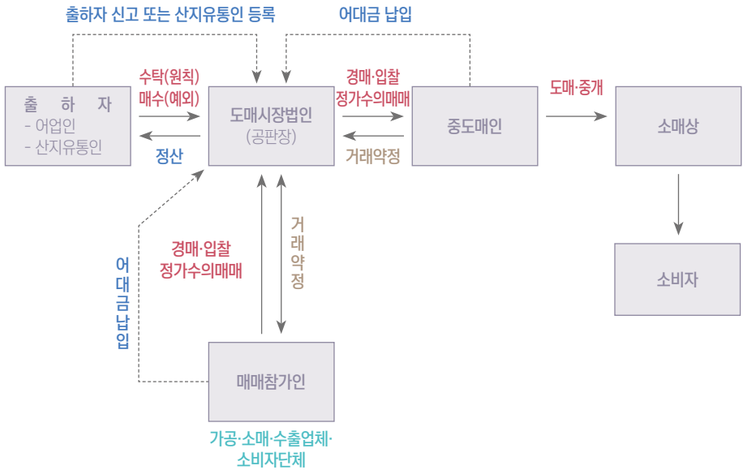

연근해산 수산물의 수매는 수매전담부서장이 수협중앙회 사업장별로 소요량을 신청받아 연간 종합수매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부서는 필요한 물량을 경제사업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매전담부서로 수매신청을 한다. 수매는 위판장·공판장의 경매에 직접 참가하여 수매하거나, 수협중앙회와 '수산물 수매대행 거래약정'을 체결한 수산물 수매업무를 대행하는 회원조합 및 회원조합 소속 중도매인 등이 수매한다.

연근해산 수산물 수매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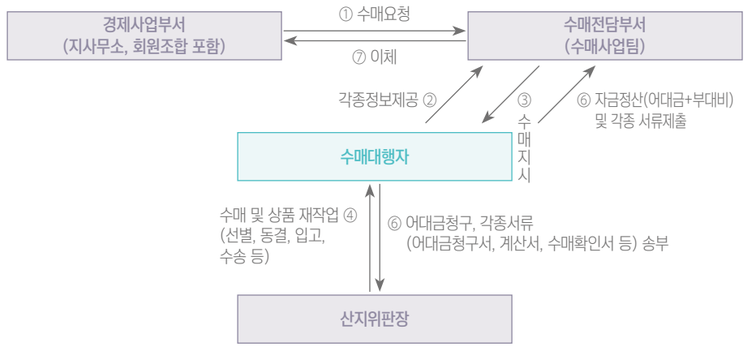

원양산(합작어획물 포함)의 수매는 원양선사의 입찰 또는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에 참가하여 수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판수매 또는 선사입찰 참가가 불가하거나, 유통업자, 가공업체 등을 통해 입찰수매(전자입찰 포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협B2B(온라인 도매시장) 사이트에 직접 등록하여 전자 입찰수매를 할 수 있다.

한편 아직 일반화되지는 않았으나 FPC나 FDC를 경유하는 경우 위판장→FPC→FDC→소비자의 유통경로를 거치므로 기존의 6단계에서 4단계로 유통경로가 감소하는데, 이 경우 수협이 사업주체가 되므로 최종 판매가격은 구입가격+가공비용+마진이 되며, 소비자(대형 소매상)는 이 가격에 가공처리 된 수산물을 구입한다.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청정 위판모델 구축사업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관리주체로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수협 등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신청한다.

지자체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자체 수산물 유통 종합계획에의 부합여부, 투자효율성, 중복투자의 최소화, 운영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검토의견과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는 공모를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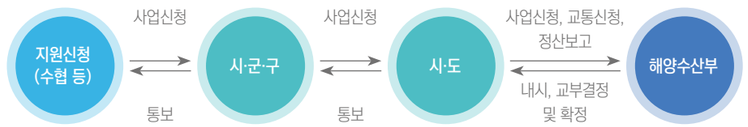

소비지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지원사업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수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수협중앙회는 자담 확보방안, 민원발생 여부 및 대책, 지자체 의지 등 사업계획서를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협중앙회에 예산안을 통보하고, 수협중앙회는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소비지유통시설 지원사업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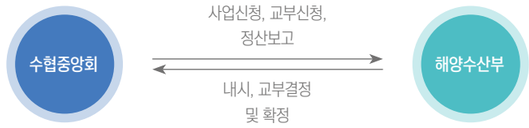

나. 급식사업

단체급식사업단은 학교·공공기관 등 단체에 급식품 납품을 하며, 급식품 수산물 수매는 회원조합 위판장·공판장 및 도매시장으로부터 계통수매 하거나 회원조합 소속 중도매인 등으로부터 수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납품처에서 요구하는 상품 중 수협중앙회에서 취급하지 않거나 긴급발주 혹은 사양 상이로 인한 교환 등으로 시중 유통업체를 통해 시장구매를 할 수 있다.

특정상품을 요구·취급하는 지정거래처 및 급식품을 납품받는 거래처(납품처)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급식사업소가 급식품을 납품처에 직접 배송·영업을 수행하는 직영영업점과 급식사업소에서 급식품을 인수하여 납품처에 배송·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급식사업소와 급식품 납품대행 계약을 체결한 위탁영업점이 있다.

영업점의 급식품 발주는 Badaro시스템(급식)을 통한 발주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급식사업소의 승인을 얻어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발주할 수 있으며, 영업점은 Badaro시스템(급식)을 통해 공지하는 판매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학교 등에 제출한다.

단체급식 사업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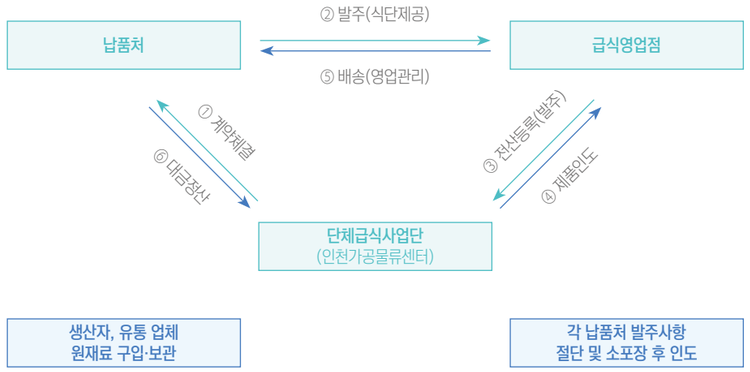

납품처 : 학교, 공공기관, 기업 등

수협중앙회 군급식사업은 매취판매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수협중앙회 군급식사업단은 국방부장관과 체결한 「군 급식품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을 근거로 군급식용 수산물을 계획생산 및 납품하며, 군납 계약은 「군 급식품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체결한다.

수협중앙회 군급식사업단은 국방부 급식방침에 따라 연간 계획생산계획을 품목별, 생산처별로 수립하고, 품목별로 생산처 및 생산물량을 배정한다. 다만, 수협중앙회에 생산설비가 없는 등 계획생산이 필요한 경우 계획생산조합, 자회사 등과 연간 계획생산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하며, 각 생산처에서는 필요 시 위탁생산처 선정 및 원품 제공을 통한 위탁생산을 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을 군급식사업단에 통보한다.

군 급식품목의 원품수매는 수매전담부서를 통하여 수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수매전담부서와 협의 후 수매할 수 있다.

군급식 사업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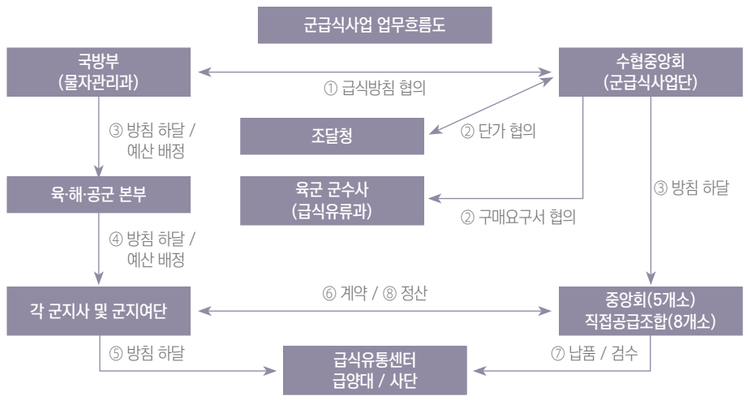

다. 전자상거래, 홈쇼핑사업 및 직판사업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B2C전자상거래는 수협중앙회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과 제휴된 타 인터넷 쇼핑몰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B2C 쇼핑몰 입점은 수협중앙회 홈페이지 입점 공고기간 중 입점 의뢰 업체 승인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입점하는 '정기입점'과 입점을 원하는 업체가 입점 의뢰서를 제출하여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입점하는 '수시입점'이 있다.

상품별 담당 MD는 입점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입점 신청 업체와 '상품공급계약서'에 따라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

2018년 12월 20일 홈쇼핑사업 우수 협력사 간담회

B2C전자상거래 흐름도

또한, 수협중앙회는 기업 간 거래인 B2B전자상거래 수협B2B, Sh인스토어, Sh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가입과 이용은 수협B2B, Sh인스토어, Sh스토어에 접속한 후 기업회원으로 가입하고 이용하며, 운영자는 회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받아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 정보와 등록된 회원가입 정보를 확인 후 회원을 승인한다. 다만, 수협 계통조직 등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없이 회원으로 승인할 수 있다.

B2B전자결제 이용절차

전자거래 이용절차

입찰 이용절차

수협중앙회 Sh인스토어, Sh스토어 전자상거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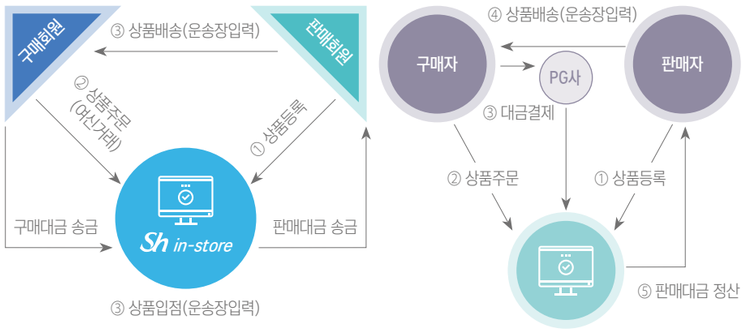

홈쇼핑 판매상품은 생산업체의 제조시설, 생산능력 및 납품가격 등을 검토한 후 상품개발 업무에 착수한다. 생산업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방송 예정 상품의 샘플을 수령하여 홈쇼핑사 담당 MD와 방송판매 여부를 협의하고, 상품구성이 확정되면 방송 예정 상품을 홈쇼핑사 상품선정위원회(또는 품평회라고도 한다)에 출품한다.

홈쇼핑사와의 입점계약은 해당 홈쇼핑사에서 정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수협중앙회가 회원조합 등 생산업체의 상품에 대한 홈쇼핑 방송 판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상품거래 기본 계약서'에 따라 회원조합 등 생산업체와 홈쇼핑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대형유통업체 등에 대한 직판사업의 수매는 수매전담부서를 통해 수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량 다품목, 납품처와 수매가격 협의가 수시로 필요한 경우 또는 납품처에 납품하기 위하여 시급하게 구매가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는 재고수준을 고려하여 직접 수매한다.

수산물 원품(선어·냉동어류, 건어류 등 수산물)은 생산자, 회원조합 위판장·공판장 및 도매시장으로부터 계통수매 하거나 수매대행 지정 중도매인을 통하여 수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가공업체 또는 유통업체를 통하여 수매할 수 있다. 수산물 가공품은 생산자, 가공업체 또는 유통업체로부터 수매할 수 있다.

상품 생산은 수협중앙회 가공 담당부서(인천가공물류센터, 감천항물류센터 등 포함)에서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매한 원품을 제품 또는 반제품으로 1차 가공하기 위하여 가공업체에 가공을 위탁하여 생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물 위탁가공·생산 계약서'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다. 또한, 상품은 수협중앙회 가공장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산직원 및 생산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요구에 적합한 상품 가공이 곤란할 경우에는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으로 생산할 수 있다.

판매는 대형유통업체 등에 직접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고 과다 및 시장여건 변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홈쇼핑·영업점 및 협력업체를 통해 대행 판매, 도매시장 상장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직판사업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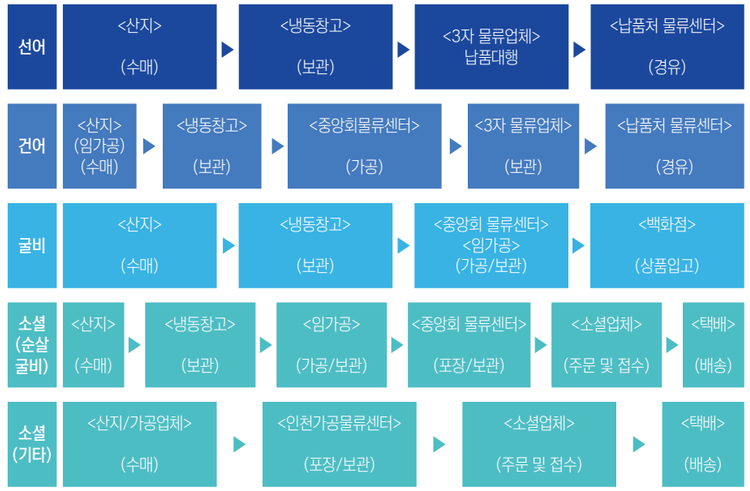

라. 무역사업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산물 홍보·판촉 지원 및 시장조사, 신규 거래선 및 품목 발굴, 본부 수출입업무 현지 지원, 회원조합 및 수산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력, 한국 수산식품 수출 인큐베이터 입주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무역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수협중앙회는 정부의 수출 진흥을 위한 수출정책 추진 시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지원한다.

수협중앙회 물품의 수출사업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또한, 그 밖에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수출한다.

〈표 4-2-23〉 수협중앙회 수출방법

수출방법	내용
매취수출	물품 및 그 원료 또는 반제품을 매취하여 수협중앙회의 계산과 책임으로 하는 수출
수탁수출	위탁자의 신청에 따라 물품의 생산 및 수집이 완료 되었거나 기간 내에 수집이 확실한 물품을 위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하는 수출
예약수출	재무 및 신용상태가 건실한 회원 및 대량 수요자로부터 예약(주문)을 받아 수협중앙회가 수산물을 매수한 후 일정기간 내에 예약(주문)자가 인수토록 하는 수출
내국신용장에 따른 수출	신용장의 수혜자로부터 발급받는 내국신용장 또는 외환증서 발급확약서에 의한 수출
대행수출	수협중앙회 이외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수출계약에 따른 수출업무를 수협중앙회의 책임 없이 수협중앙회의 명의로 수출절차만을 대행하는 수출
중계무역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직접 제3국으로 수출

수협중앙회 물품의 수입은 자회사인 ㈜수협사료의 어민의 사료용 어분 및 어유, 전분 등의 수입을 위한 대행수입을 한다. 또한, 수출용 원자재 및 시설재와 정부의 수산물가격안정화사업(정부비축·수매지원)에 의해 정부가 위촉하는 수매물품을 수입한다. 수협중앙회 물품의 수입사업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또한, 그 밖에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수입한다.

〈표 4-2-24〉 수협중앙회 수입방법

수입방법	내용
매취수입	수협중앙회가 필요로 하는 품목을 직접 수입
수탁수입	위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자가 제반 수입비용을 부담하고 수협중앙회가 수입 거래선 선정부터 물품 도착 시까지 수입업무를 담당하여 수입
대행수입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수입계약에 따른 수입업무를 수협중앙회의 책임 없이 수협중앙회의 명의로 수입절차만 대행하는 수입

수협의 무역사업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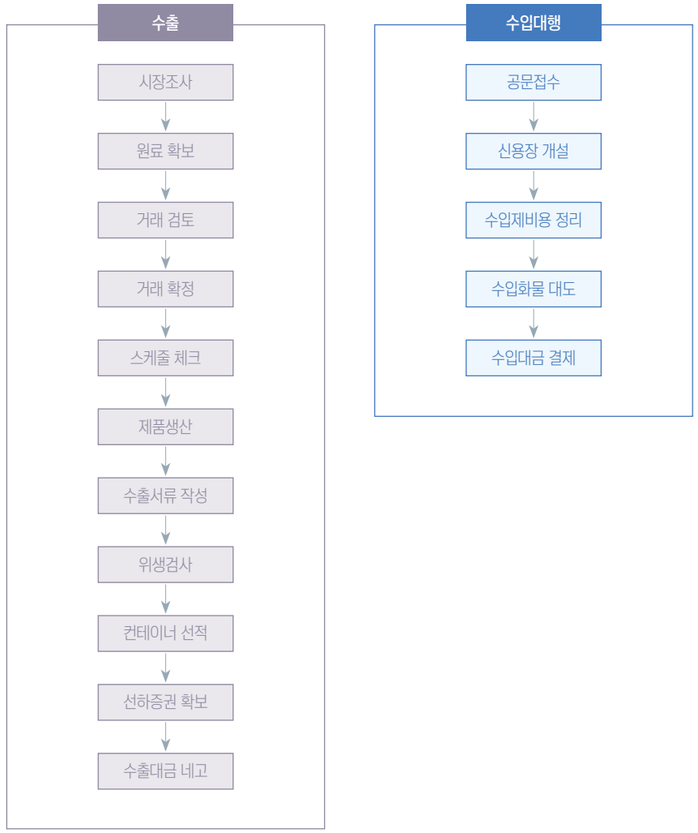

3. 발전과정

가. 산지유통

1) 위판사업

과거 우리 어업인과 어촌의 경제적 빈곤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이른바 '수산물 객주'로 불리던 전근대적 상업자본가에 의한 경제적 수탈이었다. 이들 객주는 수산물의 유통과 수산금융을 장악하여 고리대금업으로 어업인을 착취하였고, 행정력이 부족했던 1950년대에는 이들 세력이 전국적으로 창궐하여 부당한 횡포를

자행했다.

이러한 암울한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일선 조합의 산지 위판 사업을 강화하여 전통적으로 수산업 부문에 기생해 온 객주세력의 존재 기반을 근절시켜야만 했다. 이를 위해 수협의 설립과 동시에 수협중앙회는 객주세력이 가장 왕성하고, 회원조합 단독으로 위판장 운영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던 인천, 마산, 강경, 울산 4개 지역에 산지공판장을 개설·운영하기 시작했고, 1963년에는 부산, 목포, 여수, 영광 4개 지역으로 이를 확대했다.

수산물 위탁판매(위판장)에 관한 법·제도가 성립한 것은 일제강점기 1911년 6월 제정한 「어업령」이었다. 이 령에 의해 어업조합·수산조합이 설립되었고, 이를 통해 위탁판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령 제109호인 「조선어업보호취체규칙」 제9조는 '시·도지사가 그 지역 내에 지정하는 구역이 아니면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양육·매매·교환 또는 매매 위탁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1929년 1월에는 「조선어업령」과 어업규칙이 제정되면서 공동시설·위탁판매의 주체가 기존 어업조합과 수산조합에서 어업조합연합회와 수산조합연합회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수산물 판매제도는 해방 후 1953년 9월 제정된 「수산업법」에도 반영되었다. 동법 제52조(어업조정에 관한 명령)에 어획물 판매장소 지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63년 12월 제정된 「수산자원보호령(현, 수산자원보호법)」에서는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획물의 원활한 집합 및 분산을 통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판매장소에서만 수산물을 거래하도록 규정했다.

이것은 연근해 어획물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에서만 위탁판매(계통판매)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로 1911년부터 실시되어 오던 강제상장(의무상장)제도가 제도적 틀을 잡은 것이다. 이후 이 제도는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그간 만연했던 국가적인 규제 완화를 시작하였고, 경제발전과 사회변화 등으로 인해 수산물 산지유통제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수산물 판매제도의 규제 완화에 대한 찬반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94년 12월부터 3개월간 시범적으로 규제를 완화했으며, 1995년 3월부터 2단계에 걸쳐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면적인 규제완화는 1997년 9월 이후에 산지시장(지정 장소)을 반드시 거치지 않고도 유통할 수 있는 상장제 전환이 이루어졌다. 즉, 소위 임의상장제 또는 자유판매제가 전면 시행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1962년 수협 설립 당시 회원조합 위판장은 산지에 15개소에 불과했으며 전체조합 중 위판장 보유조합 비율도 15.8%에 지나지 않았다. 수협 위판장에 대한 시설확충은 1970년도부터 촉진되어 1971년 산지에 47개소로 확대되었고,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78년도에 처음으로 내륙지에 2개소가 신설되었으며 산지는 74개소로 증가하였다.

이후 점진적으로 시설이 확충되어 1980년 산지 위판장 170개소, 1991년 산지 위판장 212개소로 증가하였고,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증감한 후 2021년 현재는 92개 조합의 212(산지 209, 내륙지 3)개소 위판장이 운영 중에 있다.

〈표 4-2-25〉 연도별 수협(회원조합) 위판장 수(1962~2021)

(단위 : 개소)

연도	산지(연안)	내륙지(소비지)
1962	15	-
1971	47	-
1974	59	-
1978	74	2
1980	170	2
1984	171	2
1988	168	1
1991	212	2
1994	202	2
1998	207	3
2001	182	2
2004	173	2
2008	196	2
2011	205	2
2012	212	2
2013	212	2
2014	205	2
2015	212	2
2016	212	2
2017	217	3
2018	218	3
2019	206	3
2020	209	3
2021	211	3

한편, 정부(해양수산부)에서는 노후화되고 위생여건이 열악한 위판장 환경을 개선하고자 청정위판장 모델 구축사업을 2019년부터 진행하여 왔으며 또한,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저온 유통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2020년부터 시작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흥군수협, 여수수협에서 청정위판장을 건립중에 있으며, 영광군수협, 서천군수협, 서귀포수협, 목포수협, 강릉시수협, 동해시수협, 부경신항수협, 포항수협에서는 저온위판장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다.

2) 산지 공판사업

수협 설립과 동시에 개설·운영한 수협중앙회의 산지 직영공판장은 인천과 마산, 강경 및 울산 등 4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1963년에 부산, 목포, 여수, 영광 4개 지역에 추가 개설함으로써 초기의 직영공판장은 모두 8개가 되었다.

위의 8개 지역은 객주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조합이 단독으로는 정상적인 위판장 운영이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협중앙회가 초창기 공판사업 기능 발휘에 노력하였다.

공판사업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위판사업 취약지역으로 일컬어졌던 8개 공판장의 위판질서는 점진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객주의 수탈에서 어업인을 보호하고자 했던 당초의 목적도 달성하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8개 지역의 공판장 직영사업은 부산건어물공판장은 1968년 6월 30일 부산조합에 이관, 마산건어물공판장은 1965년 7월 4일 권현망조합에 이관, 울산건어물공판장 1965년 11월 26일 장승포조합에 이관 등 공판장 이관계획에 따라 회원조합에게 이관하고 산지공판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수협중앙회는 1973년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여수종합어시장에 직접 관여하게 되었는데, 여수종합어시장은 1959년 AID자금 1,568만 원과 내자 3,390만 원의 재원조달을 통해 총 4,958만 원으로 착공된 것으로 원양조합과 여수수협이 공동운영하는 관리체제하에 있었다. 그러나 두 조합의 대립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함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이를 인수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등 전남지역 산지유통체제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상화된 여수공판장은 여수수협의 이관요청에 따라 1987년 12월 31일 자로 여수조합에 이관하게 되었다. 현재 수협중앙회에서 직영하는 연안(산지) 공판장은 인천공판장이 있으며 산지위판장의 선도적 기능을 수행코자 1983년 4월 1일 목욕탕, 이발관 등이 구비된 어민복지회관을 개설하여 복지증진에도 노력하였다.

인천공판장은 산지위판장의 선도적 역할 담당하여 왔으나 지역 위판장의 추가개장, EEZ 선포와 인근 연안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등 신해양질서로의 재편에 따른 어선어업 구조조정 등에 따라 급격히 위판기능이 축소되었다.

3) 산지거점유통센터(FPC)

2012년 2월 정부에서 FPC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면서, 정부와 수협은 낙후된 위판장 시설을 개선하여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함께 수산식품의 위생 등 안정성(HACCP 인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012년에는 제주 한림수협과 속초시 수협이 각각 2012년 8월과 2012년 7월에 사업자로 선정되어, 제주 한림수협의 FPC는 대지 16,466㎡(5,000평), 건물 7,230㎡(2,187평) 규모로 위판시설, 저온작업장, 수산물 가공공장 냉동냉장시설, 제빙시설을 갖추고 2015년 4월에 준공되었으며, 속초시수협 FPC는 대지 25,450㎡(7,712평), 건물 7,908.8㎡(2,396평) 규모로 위판시설, 가공공장, 활어직판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15년 3월에 준공되었다.

2013년에는 완도 금일수협과 경주시 수협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각각 2016년과 2017년에 준공되었으며, 2018년에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인북부수협이 2018년 12월에 사업자로 선정되어 HACCP 시설(가공시설), 냉동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21년 1월에 준공되었다.

또한 2019년에는 충남 보령시 보령수협이 2019년 5월에 사업자로 선정되어 HACCP 시설(가공시설), 상온·냉동 창고, 전시실 등의 시설을 갖추는 FPC 건립을 2022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나. 소비지 유통

1) 소비지 공판사업

수산물의 소비지 시장에 관한 규제로서 1931년에 일본 국내의 「중앙도매시장법」(1923년 제정)의 정신을 내포하는 시장규칙(총독령 제109호)을 개정 발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도시 소비지 어시장은 강력한 통제와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법적·행정적으로 통제가 시작됨에 따라서 어업조합에서는 자체 능력을 강화하여 수산물을 공동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광복과 더불어 미군정 하에 감시조치법과 대한민국 성립 이후 정부의 감시조치법에 의해 수산업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해 왔으나, 시장에 있어서 전시체제의 가격형성기능은 근본적으로 붕괴되었으며 새로운 자유경쟁 원칙에 입각하여 가격형성구조가 생겨났다. 특히 도시 소비시장에 있어서는 전시체제하에서 중매인제도가 마비됨으로써 그 혼란은 가중되었다.

산지에 있어서 시장은 광복 이전에 어업조합의 공동판매시장으로 질서를 확립했으며, 광복 이후에도 어업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다수의 한국인 어업자가 있어 비교적 질서를 빨리 회복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도시 소비시장에 있어서 도매업 대행회사가 주로 일본인에 의해 영위되었으므로 이들의 철퇴에 의해 시장운영은 무정부상태가 되었고, 질서를 찾아 안정된 운영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정부 수립에 따라 1951년 6월 22일 「중앙도매시장법」이 제정됨으로써 내륙 소비지 공동판매시장에 관한 법·제도가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 대구, 부산, 대전, 청주, 전주, 광주, 군산, 목포, 포항, 인천, 김천 등 이상 13개 도시에 중앙도매시장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중앙도매시장이 법정도매인과 농협, 수협의 도시 내 공판장과 오랫동안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반해 감독관청인 상공부는 효율적인 조정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후 감독기관을 농수산부로 옮기면서 새로이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체계로 탈바꿈했다. 여기에서 일도시 복수시장주의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제도하에서도 자연발생적인 유사도매업으로 인해 법정도매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따라서 농수산물 기초식료품을 포함한 제조가공품과 그 소재들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종합적 유통단지 개설을 서둘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977년 7월 1일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칭함)」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일선 수협에서는 일찍부터 산지에서 항구 및 포구에 조합 위판장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산지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갔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산지와 달리 소비지에는 유통시설이 부족해 산지와 내륙 소비지를 연계하는 수산물 출하체계를 확립하지 못한 상태였다.

한편 수협중앙회에서는 산지 조합과 연계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1978년 2월 1일 서울공판장을 개설함으로써 소비지 유통구조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어 1979년부터 1980년까지 정부의 수산물가격안정정책에 부응하여 광주, 진주, 춘천, 대전, 청주, 전주에 전국 주요 6개 도시에 공판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렇게 수협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수산물의 산지 유통과정에만 관여하던 초창기의 유통지원 기능에서 벗어나 이를 내륙 소비지로까지 확대 추진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지원 기능을 한 차원 더 높이게 되었다. 즉, 산지에서 내륙 소비지까지 이어지는 수산물 유통의 전반에 걸친 일관된 유통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1985년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수협중앙회도 수산부류 지정도매법인으로 참여하였고, 이렇게 개설된 가락동공판장까지 합쳐 내륙지 공판장은 총 9개로 늘어났다.

진주공판장의 경우는 산지조합 위판장과 근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유사시장의 성행 등으로 공판장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여 1989년 6월 30일 공판장을 폐쇄하였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농수산물 종합시장 개설 등으로 일부 공판기능 발휘가 지난하여 청주공판장은 1994년 6월 30일, 대전, 춘천 공판장은 1995년 3월 31일, 광주공판장은 1995년 9월 30일 각각 폐쇄하였고, 전주공판장은 1993년 10월 31일 폐쇄하고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하였으며, 서울공판장은 1997년 5월 31일 폐쇄하고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하였다.

2002년 공판장은 내륙지 5개소(강서, 가락동, 구리, 대구, 전주), 산지 1개소(인천)로 총 6개소를 운영하였고, 2002년 2월부터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인수·운영함으로써 기존 공판장(강서, 가락동, 구리)과 연계하여 수도권 수산물 유통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4년 4월 광주공판장을 개장하여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권 수산물 유통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2017년 3월 31일 대구공판장의 폐장으로 2021년 현재 내륙지 5개소(가락, 구리, 강서, 전주, 광주)와 연안 1개소(인천) 총 6개의 공판장을 운영 중에 있다.

2)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정부의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2013년 7월)' 중 소비지 물류분산기능 및 산지 거점유통기능 강화를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기존 6단계⇒4단계)하여 생산자단체 중심의 신 유통경로를 창설하기 위하여 인천과 호남권에 각각 1개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인천 소비지 분산물류센터는 2016년 3월 건립 기본방침이 수립되었고, 인천공판장 재건축으로 318억 원의 사업비(국비 50%, 자담 50%)가 투입되어 지상 5층 연면적 16,782㎡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2020년 12월부터 운영을 개시하였다.

호남권 2017년 12월에 호남권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고, 166억 원의 사업비(국비 47.8%, 자담 52.2%)가 투입되어 지상 4층, 연면적 7,581㎡ 규모로 건립되어 2021년 6월 준공되었으며, 가공시설 및 오폐수처리장 추가공사를 거쳐 2022년 상반기에 운영을 개시하였다.

3) 소비지도매시장

수협이 관리하는 소비지도매시장으로서 노량진수산시장은 1927년에 경성수산(주)로 개장했고, 1971. 6~2002. 1까지 한국냉장(주)에서 운영했는데 1983. 6에 노량진수산(주)가 설립되었다. 2002. 2 이후 수협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2020. 12에 현대화를 완료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제3편 제2장 제4절의 2 참조)

다. 급식사업

1) 군 급식사업

1960년대 군납시장 상황은 수산물 부식공급을 차지한 군납사업자는 군납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군납은 업자와 정계, 관계, 군부 등이 모두 연루된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어민들이 영어자금 등 늘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점을 악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어민들에게 돈을 고리로 빌려주고 어획물을 싼값에 가져가서 군에는 비싼 값으로 납품하는 식이었다. 이로 인해 어민은 큰 손해를 입고 있었고 국민의 세금이 엉뚱하게 지출됨으로써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했고, 질 낮은 군 부식으로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수많은 폐해를 양산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협에서는 어민들이 힘들여 생산한 수산물에 대해 제값을 받도록 하고 군에는 값싸고 질 좋은 수산물을 부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수협이 군납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청원을 하는 등 관계자들을 설득하였다.

군납업자들의 전횡과 군납비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던 국방부와 정부 당국에서는 공감을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된다. 마침내 1969년 1월 8일에 수협중앙회와 수산물군납협정을 체결하게 되었고, 수협은 기존의 군납 관행을 과감히 깨뜨리고 일체의 중간상인, 객주, 민간 군납업자를 배제한 가운데 선도가 뛰어나고 상품가치가 높은 수산물을 구입하여 전국 각 지역 군부대에 군납을 실시하게 되었다.

1969년 10월 20일 '군납부'를 신설하고 군납품수산물(어종) 수매를 위한 자금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등 업무수행 태세를 정비하고 동년 연말까지 소수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 군납으로서의 납품업무에 착수하였으며 1970년부터는 본격적인 납품업무를 수행하였다.

군납사업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는 협정으로서 1970년 1월 30일 국방부장관과 수협중앙회 회장이 체결했고, 2001년 12월 28일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조달에 관한 협정」이 개정되었다.

2009년 8월 군납관리업무에 대해 수산물의 납품실적 및 물품수급 기초자료 집계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군납관리시스템'을 자체 구축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군납 수산물의 연간소요량 관리, 메뉴회의 내역관리 및 납품품목의 수매, 납품, 이체, 재고관리 등 내부업무가 전산화되어 등록·관리됨으로써 업무 표준화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실시간 재고정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군납업무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2011년에는 '회원조합 군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회원조합 경제사업 지원강화의 일환으로 중앙회 군납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회원조합 군납업무 전산화 지원을 위해 추진되었다. 회원조합 군납업무의 처리 방법 개선, 필요서식의 전산화, 신속하고 정확한 군납 실적 및 재고내역의 실시간 조회가 가능토록 추진되었으며, 동 시스템을 통해 회원조합 군납 관리체계 확립 및 업무 효율화에 기여하였다.

2011년 말 수협중앙회 군납사업소 2개소와 공판장(물류센터 포함) 5개소, 회원조합 7개소에서 군납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 년에 군납 수산물 선호도 향상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본회 개발 레시피 책자 '수산물 요리 30선' 소개 및 조리법 교육을 실시하여 군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2015년에는 군 급식사업의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노후화된 창고 등 시설을 개선하여 경기지역에 경기북부물류센터를 건립하고 강원지역에는 강원물류센터를 건립하여 군부대 냉동창고 설치 등 군부대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오징어실채, 갈치 순살, 광어반가공 등 신규품목을 개발하여 군 장병들에게 다양한 수산물을 공급하였다. 또한 군 급식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 향상 및 대군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군 영양사 워크숍 실시, 군 조리교육 및 시식행사를 실시하였다.

2017년에는 수산물 천연조미료, 조기(반가공) 등 신규품목을 개발하여 군 장병들에게 다양한 수산물을 공급하였고, 군 급식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 향상 및 대군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국방부와 MOU를 체결(2017년 5월)하는 등 군 조리교육, 시식행사 등을 강화하여 군 급식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18년에는 튀김용 오징어 등 신규품목을 개발하여 군 장병들에게 다양한 수산물을 공급하였으며, 2019년에는 자숙 뿔소라, 문어 등 신규품목을 개발하여 공급하였고, 군부대에 오븐기 설치 등 군부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바다장어, 참돔 등 신규품목을 개발하여 군 장병들에게 다양한 수산물을 공급하였고, 군 급식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 향상을 위해 육군종합군수학교 및 야전순회 조리교육, 시식행사 등 군 급식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군 급식사업은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부식용 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군 장병의 급식 질 향상은 물론 회원조합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12월 말 현재 수협중앙회 물류센터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산지거점유통센터, 회원조합 8개소에서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학교 급식사업

1980년대 복지국가 건설에 맞춰 학교급식의 기본방향을 종래의 구호적 급식에서 심신발달을 위한 영양급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었다. 학교급식법 제1조에는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3년 '학교급식후원회'제도 도입으로 원활한 재원조달 및 급식확대 사업 추진 기반이 조성되었고, 1996년 위탁급식제도 도입으로 급식형태 다양화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2002년 초·중·고, 특수학교 급식확대사업의 종료와 2003년부터 전면급식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6년 직영급식 원칙과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 영양·위생·안전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전부개정과 2007년 1월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수협에서는 학교를 비롯한 단체급식 사업장에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직거래 판로를 확보하고, 어가 소득증대 및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999년 3월 수도권 초등학교 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사업을 개시하였다.

이후 수도권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납품을 위하여 1999년 6월 외발산동(강서공판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수산물 식자재의 안전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2001년 5월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기준에 의한 가공공장을 준공하여, 2002년 4월 HACCP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하였으며, 2002년 12월 16일 HACCP 인증획득과 적용업소로 지정되었다.

2003년부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급식이 시작되면서 이에 따른 물량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도 급식 수산물 가공물류센터 설치 검토를 시작하게 되었고 인천공판장 유휴부지와 기존 냉동창고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7년부터 착공을 시작으로 2011년 4월 15일에 인천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협 수산물 가공물류센터의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이로써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학교와 군부대 등 대형 급식시설의 수산물 공급이 한층 원활해졌다.

2010년 현대화시설을 갖춘 인천가공물류센터를 통한 급식품 생산역량 강화로 품질과 안전성을 제고하였고, 2008년 1월 15일, 첨단 위생설비와 자동화 라인을 갖춘 '수협감천항물류센터 가공공장'이 준공되어, 2013년에 부산 감천항물류센터 급식사업 진출을 통해 부산, 경남지역으로 영업거점을 확대하였다.

급식품목에 대한 생산 및 가공관련 업무가 가공물류종합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기존 단체급식시스템을 단체급식사업의 실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0년에는 '단체급식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영업점 목표관리를 통한 영업의욕 고취 및 실적향상 추구, 가공물류종합시스템과 연계한 수/발주 관리, 수기업무를 배제한 영업점 및 판매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였다.

한편, 학교급식사업은 계약관련 법령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이 축소되고, 지자체 주도의 학교급식지원사업이 확대가 시작되었다.

이에 경기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2013년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성북, 도봉, 은평, 당진, 성남, 2014년에는 광명, 화성, 부천, 안양·의왕·과천·군포, 2015년에는 수원, 시흥, 2021년에는 세종, 2022년에는 원주에 급식지원센터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마련해 오고 있다.

3) 기업 급식사업

기업 급식사업의 일환으로 수협에서는 (주)푸드머스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전국 7,000여 개의 유치원 어린이집에 수산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용수검사, 품질 검사 등 총 48회, 390건의 자체 위생검사를 실시하였다. 2014년에는 감마핵종 분석기(정밀방사능측정기) 도입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생산에 노력하였다.

2015년에는 종합 식자재 사업을 실시하여 사업실적 증대에 노력하였고, 2022년 3월부터 CJ프레시웨이에 국내산 급식 수산물 납품을 통한 기업급식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라. 전자상거래 및 직판사업

1) 전자상거래

가) 수협쇼핑(B2C)

수협쇼핑의 경우 2007년에 초기 총회원수는 1만 7,344명이었으나, 2012년에 7만 6,615명, 2015년 10만 2,18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총회원수가 23만 5,708명에 이르고 있다. 유효고객수 또한, 2011년에 4,335명이었으나, 2013년에 7,269명, 2015년에 1만 3,105명으로 증가하였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유효고객수가 3만 9,178명에 이르고 있다.

총회원 및 유효고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주문건수 또한, 2011년 3만 4,860건에서 2013년에 10만 1,55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주문건수가 24만 6,315건에 이르게 되었다.

〈표 4-2-26〉 수협쇼핑 현황(2007~2021)

(단위 : 명, 건)

연도	총회원수	유효고객수	방문자수	주문건수
2007	17,344		-	-
2011	30,711	4,335	793,875	34,860
2012	76,615	6,011	1,041,345	42,071
2013	79,104	7,269	382,885	101,551
2014	83,237	8,524	734,380	159,131
2015	102,181	13,105	814,315	167,611
2016	109,214	14,317	902,280	151,360
2017	118,774	13,930	765,405	151,763
2018	136,651	20,836	1,004,480	116,525
2019	155,716	21,961	908,120	143,649
2020	202,504	39,592	1,742,875	251,490
2021	235,708	39,178	1,757,475	246,315

2011년에 입점업체는 총 148개소로 수협중앙회 12개소, 회원조합 31개소, 일반업체 105개소가 입점하였으며, 2014년에는 총 360개소로 수협중앙회 12개소, 회원조합 42개소, 일반업체 306개소로 입점업체가 증가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수협중앙회 16개소, 회원조합 52개소, 일반업체 574개소로 증가하

여 입점업체가 총 642개소에 이르고 있다. 2021년 입점업체별 비중은 수협중앙회가 2.5%, 회원조합이 8.1%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업체가 574개소로 전체의 89.4%를 차지하고 있다.

〈표 4-2-27〉 수협쇼핑 입점업체 현황(2007~2021)

(단위 : 개소)

연도	합계	중앙회		회원조합	일반업체
		본부	수협유통		
2007	-	-	-	-	-
2011	148	5	7	31	105
2012	176	5	7	32	132
2013	260	5	7	40	208
2014	360	5	7	42	306
2015	439	6	7	44	382
2016	495	6	7	46	436
2017	516	6	7	46	457
2018	545	6	7	48	484
2019	558	7	7	48	496
2020	587	8	7	50	522
2021	642	9	7	52	574

나) B2B(온라인 도매시장)

2006년 초기 회원사는 176개소로 1만 9,990명이 방문하여 151건이 거래되었으며, 2011년에는 회원사가 1,189개소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거래건수도 2,750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방문자 2만 9,393명, 거래건수 5만 8,963건, 회원사 7,386개소에 이르고 있다.

〈표 4-2-28〉 B2B(온라인 도매시장) 회원사 현황(2006~2021)

(단위 : 명, 건, 개소)

연도	방문자수	거래건수	회원사	
			회원조합	일반업체
2006	19,990	151	1	175
2007	42,400	394	7	314
2011	10,228	2,750	8	1,181
2012	13,701	3,080	11	1,791
2013	19,690	8,612	12	3,025
2014	24,253	14,003	12	3,619
2015	27,274	19,944	12	4,370
2016	28,301	25,873	12	4,957
2017	33,001	32,343	12	5,573
2018	31,783	38,899	12	6,045
2019	31,321	45,623	12	6,517
2020	31,681	52,533	12	6,956
2021	29,393	58,963	12	7,374

2) 홈쇼핑사업

2002년 3월 홈쇼핑 판매를 개시하였으나, 2010년 8월 높은 홈쇼핑사 수수료 등의 이유로 홈쇼핑사업을 중단하였다. 2013년 5월, NS쇼핑 판매를 계기로 홈쇼핑사업을 재개하였고, 2015년 2월 공영홈쇼핑에 출자(중앙회 지분 5%, 40억)하면서 본격적인 홈쇼핑 사업을 추진하였다. 현재는 공영홈쇼핑을 포함한 다양한 홈쇼핑사(T커머스 포함)를 통해 국내 수산업 자생력 확보와 수산물 유통 효율성 제고 및 판로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표 4-2-29〉 홈쇼핑사업 연혁

연도	내용
2002.03	홈쇼핑 판매사업 실시
2010.08	홈쇼핑 사업 중단
2013.05	홈쇼핑 사업 재추진
2015.02	공영홈쇼핑 출자 (공영홈쇼핑 개국 15.7.14)
2017.03	현대홈쇼핑, K쇼핑 신규입점 판매
2018.01	NS샵플러스 신규입점 판매
2019.08	롯데홈쇼핑, W쇼핑 신규입점 판매
2022.01	SK스토아 신규입점 판매
2022.04	GS샵 신규입점 판매
2022.05	수협-홈앤쇼핑 MOU 체결(5.3) 및 신규입점 판매

3) 직판사업

2003년 12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입점으로 직판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직판을 확대하고 있다.

〈표 4-2-30〉 직판 연혁

연도	내용
2003. 12.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입점
2007. 03.	신세계백화점 본점 입점
2007. 05.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입점
2007. 11.	현대백화점 입점 - 무역센터점, 목동점, 신촌점, 부산점, 울산동구점, 울산점
2008. 11.	현대백화점 입점 점포 조정- 철 수 : 무역센터점, 신촌점, 부산점, 울산동구점, 울산점 - 입 점 : 천호점 - 운영점 : 목동점, 천호점

연도	내용
2009. 05	롯데마트 MOU 체결(5. 27.)
2010. 05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퇴점 (※식품매장 이마트 전환)
2010. 07	신세계백화점 입점 점포 조정 (강남, 도곡, 경기 입점)
2011. 03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입점(운영4 - 강남, 도곡, 경기, 광주)
2011. 03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퇴점 (운영3 - 강남, 도곡, 광주)
2011. 05	롯데슈퍼 MOU 체결 (5.25.)
2011. 06	롯데슈퍼 납품 시작 (6.14.)
2011. 11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퇴점 (운영2 - 도곡, 광주)
2012. 04	신세계백화점 도곡점 퇴점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입점 (운영2 - 의정부, 광주)
2012. 06	롯데마트 창고형 대형매장 VIC마켓 납품 시작 (동해안건오징어 10미)
2012. 07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입점
2013. 04	신세계백화점 본점, 영등포점 입점
2013. 05	AK플라자 수원점 입점
2013. 06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추가 입점
2014. 03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추가 입점
2014. 03	신세계백화점 센텀점, 마린점 추가 입점
2014. 04	현대백화점 목동점, 천호점 퇴점
2014. 05	AK프라자 수원점 퇴점
2015. 03	반건오징어 생산 및 납품 (롯데슈퍼, GS슈퍼 등)
2015. 07	신세계백화점 마린점 퇴점
2015. 08	신세계백화점 목동점 추가 입점
2016. 03	신세계백화점 도곡점 추가입점
2016. 12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입점
2017. 03	수협중앙회, 롯데슈퍼, 해양수산부 상생협력 MOU 체결
2017. 05	신세계백화점 청담, 도곡, 목동점 퇴점
2017. 11	홈플러스 생물고등어 납품 개시
2017. 12	홈플러스 원양오징어 납품 개시
2018. 08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퇴점
2018. 09	홈플러스 생물참조기 납품 개시
2018. 12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퇴점
2019. 12	공영홈쇼핑 '굴비' 신상품 런칭
2020. 04	공영홈쇼핑 '촉촉오징어'신상품 런칭
2021. 08	GS편의점 신규 런칭(두마리 오징어)

마. 무역사업

해방 직후에는 모든 대외무역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며, 수산무역도 마찬가지였다. 최초의 수산무역은 1946년부터 시작된 대일 김 수출로 개시되었는데, 당시 조선수산업회가 이를 대행하였다. 조선수산업회는 일제 패망 직전인 1944년 2월에 설립된 조선어업조합중앙회(1937.5)로부터 개편된 수산단체의 통합조직으로, 해방 직후 미군정법령 제4호(1945.11.24)에 의해 수산행정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조선수산업회는 수산물의 생산, 면허, 가격 및 유통업무는 물론, 심지어 그의 수출입업무까지 관장하는 정부대행기관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일 김 수출은 전적으로 조선수산업회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동 회의 이러한 대행기관 역할은 1953년 말 상공부 고시 제107호에 의해 전남어업조합연합회를 해태 수출대행기관으로 한다는 고시가 있기까지 7년 동안 계속되었다.

1950년대의 정부 무역정책은 한마디로 국내 경제안정을 위한 수입정책이 골격을 이루고 있었으며, 수출정책은 엄격한 통제무역 하에서 원자재 수입권을 부여하는 수출실적링크제 운용에 지나지 않았다. 1950년대 중반에는 수출입 허가 제도를 둘러싸고 주무부처가 상공부인지, 재무부인지 또는 농림부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무역행정에 혼선을 빚기도 하였다. 그러나 1957년 12월 법률 제460호로 「무역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부터 비로소 무역행정의 일원화를 보게 되었다.

정부는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단계적 추진에 맞추어 대외무역을 증진하고 수출의 획기적 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1962년 3월에 법률 제1033호로 「무역진흥법」을 제정, 시행하는 것을 시발로 1962년 5월에는 수출진흥을 위한 국책기관으로 '대한무역진흥공사'를 설립하였으며, 이어 1962년 12월에는 수출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이에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각수반소속으로 수출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수출목표 달성에 국가의 총역량을 집중해 나갔다.

수출목표는 산업별, 단체별, 수출업체별 및 지역별로 할당되었으며, 이와 같은 수출책임제에 대하여 각 기관은 수출실적에 따라 일정한 책임추궁과 응분의 포상이 함께 주어지도록 하였다. 1967년에는 이와 같은 수출 진흥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종래의 「무역법」을 「무역거래법」으로 대체해 법률 제1878호(1967.1.16)로 제정 시행하였다.

또한, 1966년 8월 3일 법률 제1815호로 제정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은 정부로 하여금 농수산물 가격 안정기금(農安基金)을 설치 운영하게 하고, 동법 제5조에서는 농수산물 수출에 대해서도 농안기금의 사용을 허가하였는데, 이는 농수산물 수출업 자체를 농수산물 가격안정화 사업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2021년 11월 수산물 수출활성화 해외시장 조사(미국 LA)

수산물의 판매를 확대하고 어업인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무역사업의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협은 「수협법」 제정 시 조합원이나 회원의 사업발전을 위하여 대외무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무역거래법 등의 규제로 인하여 실질적인 무역사업을 할 수 없었고, 수협 무역사업에 대한 제도적 실시의 길을 연 것은 1970년 8월 10일의 제6차 「수협법」 개정이다.

정부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수출증대를 최대목표로 삼게 되었고, 이러한 노력이 계속됨으로써 수산물 수출도 수출 대열에서 큰 몫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수산물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비상대책회의에서 수출전략 16종을 발표하고 생산 어민들도 이들 어종의 생산증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꾸준히 수출증대를 이룩하였다.

어업인들과 수협은 수산물 수출에서 큰 몫을 담당하였으나, 수출상사들의 이익추구 등으로 어업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결국은 생산의욕을 상실케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함에 따라 수협의 역할을 강화하고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6년 4월 수협이 수산물 수출을 직접 취급하게 되었다.

수협중앙회가 수산물을 수출하기 시작한 것은 활갯지렁이 수출부터이다. 활갯지렁이 수출업자의 횡포를 막고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갯지렁이 수출을 전담하게 된 수협중앙회는 1976년 1월 19일 무역사업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인천,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에 사업소를 설치함으로써 1976년 4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전선에 뛰어들게 되었다.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수협중앙회의 역할도 커졌으며, 이에 따라 1977년부터 주요 수출 도시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수출증대에 힘썼다. 그러나 수협의 갯지렁이 전담

체제(1976~1979년)가 종료되면서 수협의 취급규모는 점차 감소하였고 중국산과의 가격경쟁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어 결국 수협의 갯지렁이 수출은 중단되었다.

그 후, 수협의 수산물 직수출은 사실상 중단되어 왔으나, 1995년도에 무역사업단을 독립 설치하여 꾸준히 수출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1997년도에 활고막을 중국으로 수출하게 되면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바다愛찬'이 국산 수산물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면서 2007년 수협은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게 되었다.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을 최우선 공략지역으로 선전하고, 미국 슈퍼마켓 체인 H-MART에 '바다愛찬' 건어류를 공급하기로 했다.

2007년 1월 24일 울릉도 건오징어와 멸치 등 12개 품목 12만 4,000달러 상당의 수출물량을 선적했다. H-MART는 30여개(22년 기준 100여 개) 대형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 슈퍼마켓 체인으로, 이때 처음으로 공급된 '바다愛찬' 제품은 통관 및 배송, 물류과정을 거쳐 3월 초부터 미국 소비자에게 본격 판매되기 시작했다. 이후 '바다愛찬' 상품이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호주, 중국, 유럽 서남부 스페인까지 수출영역을 확대하여 2011년 들어 수출액 100만 달러를 돌파하였다.

그동안 수산업·어촌 정책의 기본방향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농업·농촌 분야와 공동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또한, 수산업 분야의 모법인 「수산업법」은 어업 허가면허 등 어업생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어촌 지원 등 수산업의 전 분야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산업과 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새롭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2015년 6월 22일에 제정되었고,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조항은 동법 제45조(수산물의 수출진흥)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을 분리해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0년 2월 18일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산업육성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및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와 제15조 제1항(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에 명시되어 있다.

FTA 수산물 시장개방 상황 속에서 무역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규모 또한, 확대되어 가는 데 반해 이를 지원할 전산시스템이 필요했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무역사업 시스템을 2015년 6월 착수하여 2015년 12월 구축 완료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역사업 상품의 수불관리를 시스템화하여 재고수량 및 재고금액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발했다. 또한, 환율정보 연계 및 회계 자동전표의 생성으로 업무의 편리성을 도모했다.

무역시스템은 사용자 중심의 업무 유형별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차원 실적조회 및 경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무역사업의 확장과 추가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11월 부산국제수산무역 EXPO(BEXCO)

수협중앙회는 우리 수산물의 해외판로 개척 및 소비촉진을 위해 수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6월 중국 '상하이 수출지원센터'를 시작으로 2015년 7월 '칭다오 수출지원센터', 2016년 4월 '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를 신설하여 한·중 FTA에 대응한 국산 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7년 7월에는 베트남 호치민, 대만 가오슝(2020년 7월 타이베이 이전), 동년 9월에는 일본 도쿄, 미국 LA에 무역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설하였고, 2018년 6월에는 미국 뉴저지,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019년 7월에는 홍콩 무역지원센터를 개설하는 등 전 세계로 우리 수산물 수출 거점을 확대하였다. 무역지원센터에서는 현지 유통업체(백화점, 할인매장 등)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산 수산물 판촉·홍보 행사 지원 등 우리 수산물의 해외시장 판로 다각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지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판매촉진 마케팅 강화와 비대면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를 통해 미주(미국, 캐나다, 멕시코), 동남아(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일본, 중국, 대만 등에 수협 브랜드를 비롯한 국내 우수 수산물을 2,157만 달러 수출하였다. 또한, 2021년도에 '수산물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으로 K-FISH 수산식품 인지도 향상 및 수출기업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통합 마케팅 등을 강화하고 있다.

4. 사업실적

가. 산지유통

1) 위판사업

1990년 전체 수산물 생산의 52%가 계통출하 되었으며, 일반해면어업의 계통출하는 76%, 천해양식어업의 계통출하 비중은 24%였고, 2011년 전체 수산물 생산의 46%가 계통출하 되었는데, 일반해면어업의 계통출하 비중은 70%, 천해양식어업의 계통출하 비중은 30%였다. 2015년 전체 수산물 생산의 45%가 계통출하 되었는데, 일반해면어업의 계통출하 비중은 61%, 천해양식어업의 계통출하 비중은 39%였다. 2020년 전체 수산물 생산의 40%가 계통출하가 되었으며, 일반해면어업의 계통출하 비중은 52%, 천해양식어업의 계통출하 비중은 48%였다.

〈표 4-2-31〉 수산물 생산량 및 어업별 계통출하 실적(1990~2020)

(단위 : 톤, %)

연도	총생산량	계통출하 계		일반해면 어업		천해양식 어업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1990	3,198,234	1,668,122	52	1,262,729	76	405,393	24
1992	3,200,852	1,473,613	46	1,022,857	69	450,756	31
1995	3,348,216	1,564,340	47	1,213,475	78	350,865	22
1998	2,835,015	1,372,644	48	1,144,635	83	228,009	17
2001	2,665,124	1,446,237	54	1,124,474	78	321,763	22
2004	2,519,101	1,204,486	48	912,551	76	291,935	24
2008	3,361,255	1,380,374	39	1,061,224	73	319,150	27
2011	3,255,929	1,488,833	46	1,035,933	70	452,900	30
2012	3,183,424	1,470,174	46	935,002	64	535,172	36
2013	3,135,250	1,448,692	46	918,788	63	529,904	37
2014	3,304,228	1,514,512	46	911,204	60	603,308	40
2015	3,337,383	1,515,597	45	920,740	61	594,856	39
2016	3,269,432	1,423,255	44	792,382	56	630,873	44
2017	3,724,711	1,475,372	40	809,215	55	666,157	45
2018	3,770,057	1,608,414	43	828,691	52	779,723	48
2019	3,860,969	1,535,559	40	731,245	48	804,314	52
2020	3,711,412	1,487,955	40	768,495	52	719,461	48

전체 수산물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계통출하의 비중이 40% 수준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등의 원인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총생산량의 62%에 달하는 양식어업의 계통출하가 낮은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것은 어업별 생산량 대비 계통출하 비중에도 나타나고 있다.

수산물 생산량 대비 어업별 계통출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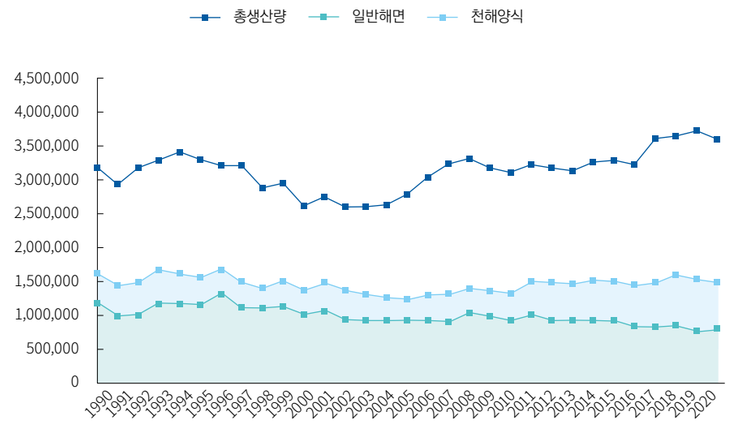

우선 일반해면어업의 계통출하 비율을 보면, 2001년 일반해면어업 생산량 125만 톤 중 계통출하량은 112만 톤으로 90%를 계통 출하했고, 2011년에는 일반해면어업 생산량 123만 톤 중 84%인 103만 톤을 계통 출하했다. 2020년 일반해면어업 생산량 93만 톤 중 82%인 76만 톤을 계통 출하하여 일반해면어업은 생산량의 80% 정도를 계통출하하고 있다.

일반해면어업 생산량 대비 계통출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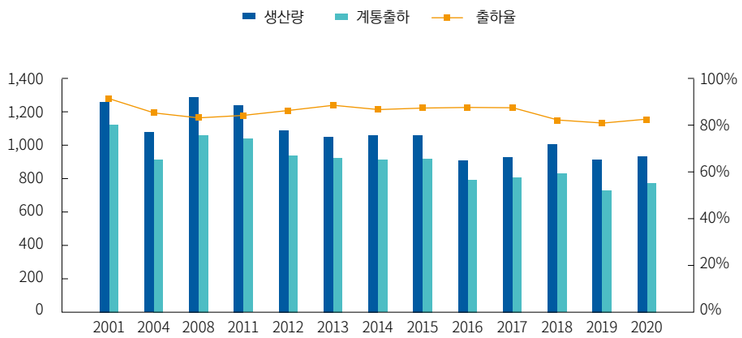

반면, 1990년대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양식수산물 생산량은 2001년 66만 톤에서 2008년 138만 톤, 2015년 167만 톤, 2020년에는 230만 톤까지 증가하였으나, 계통출하율은 30%~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대부분 비계통출하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양식어업 생산량 대비 계통출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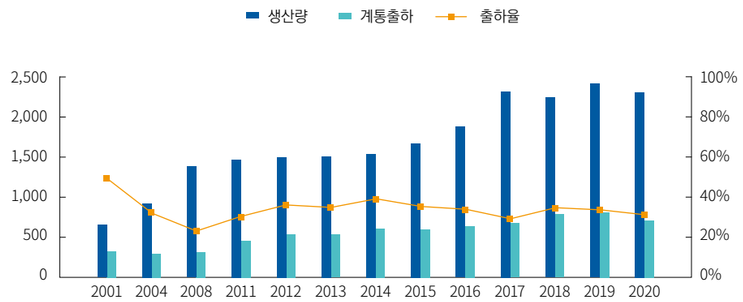

한편, 위판 절대물량의 변동추세를 보면, 1962년 25만 3,999톤이던 것이 1971년 60만 1,903톤, 1975년 111만 379톤, 1981년 197만 6,336톤으로 증가한 후 이후 매년 감소하여 1991년에 142만 305톤, 1998년 137만 2,644톤으로 감소하였고 2011년에는 94만 9,168톤으로 감소했다. 이후 2013년에 100만 21톤으로 백만 톤을 회복하였으나 2014년에 다시 95만 5,579톤으로 감소한 후 2017년에 104만 5,220톤을 기록하는 등 이후 90~100만 톤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판금액은 수산물 가격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1991년 1조 4,986억 7,900만 원에서 2001년 2조 2,866억 7,800만 원, 2011년 3조 5,674억 3,5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4조 4,624억 9,2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위판물량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표 4-2-32〉 위판사업 실적(1962~2021)

(단위 : M/T, 백만 원)

연도	회원조합	
	물량	금액
1962	253,999	3,352
1968	398,238	20,614
1971	601,903	40,580
1975	1,110,379	120,693
1981	1,976,336	667,342
1985	1,722,993	778,804
1991	1,420,305	1,498,679
1995	1,564,340	2,187,365
1998	1,372,644	2,029,591
2001	1,446,237	2,286,678
2005	1,181,533	2,251,119
2008	1,380,374	2,658,551
2011	949,168	3,567,435
2012	973,424	3,384,294
2013	1,000,021	3,387,845
2014	955,579	3,377,105
2015	977,887	3,512,029

연도	회원조합	
	물량	금액
2016	951,307	3,703,944
2017	1,045,220	4,245,985
2018	1,124,139	4,181,355
2019	1,110,035	4,101,607
2020	1,093,405	4,592,101
2021	1,155,576	4,462,492

위판물량 및 위판금액의 추이(196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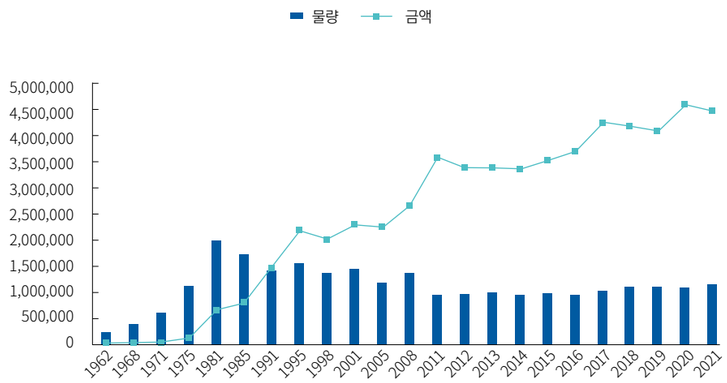

2) 산지 공판사업

수협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산지공판장은 1962년에 개설된 인천공판장 1개소이며, 연도별 실적은 <표 4-2-35> 공판장별 공판물량 및 <표 4-2-36> 공판장별 공판금액에 명기되어 있다.

인천공판장 공판금액 추이(196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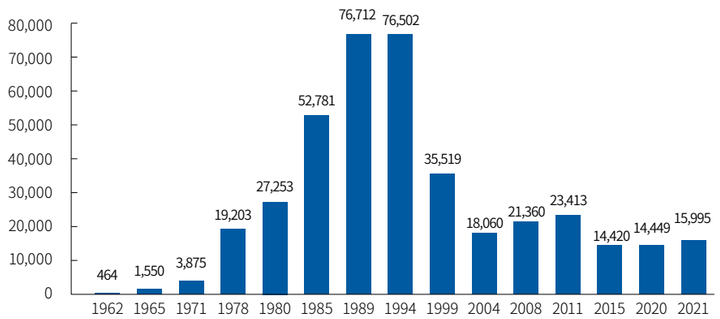

3)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산지거점유통센터의 실적은 아래의 <표 4-2-33>, <표 4-2-34>와 같다.

〈표 4-2-33〉 산지거점유통센터(FPC) 물량실적

(단위 : 톤)

연도	한림수협	속초시수협	완도금일수협	경주시수협	강릉시수협	경인북부수협
2016	29,211	38,736	2,406	-	-	-
2017	18,941	39,650	2,640	12,844	-	-
2018	21,385	34,480	3,251	10,896	-	-
2019	18,684	28,860	3,245	11,067	-	-
2020	24,623	25,150	2,169	14,250	-	-
2021	26,945	22,135	2,112	11,665	609	371

〈표 4-2-34〉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실적금액

(단위 : 백만 원)

연도	한림수협	속초시수협	완도금일수협	경주시수협	강릉시수협	경인북부수협
2016	22,945	43,362	18,055	-	-	-
2017	22,891	42,072	21,275	42,231	-	-
2018	29,376	43,284	23,901	36,460	-	-
2019	32,498	38,040	20,297	31,647	-	-
2020	29,896	32,732	17,029	34,946	-	-
2021	25,111	32,531	16,063	32,726	6,977	686

나. 소비지유통

1) 소비지 공판사업

1965년에 대구공판장이 개설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구리, 춘천, 대전, 청주 등 지역에 공판장이 개설되어 1979년 23만 5,156톤의 실적을 보였고, 1980년대에 추가로 서울(가락), 전주, 광주 지역에 공판장이 개설되어 1987년에 32만 912톤의 실적을 나타내었다.

이후 1990년대에는 춘천, 대전, 청주공판장의 폐쇄와 여수공판장의 이관으로 1995년에 15만 3,507톤의 실적을 보였고, 1998년 강서공판장의 개설로 2004년 10만 671톤의 실적을 보였다. 2017년 대구공판장이 폐쇄되었고 2021년에는 4만 7,442톤의 실적을 나타내었다.

〈표 4-2-35〉 공판장별 공판물량(1962~2021)

(단위 : M/T)

연도	합계	가락	구리	강서	전주	대구	광주	인천	기타
1962	26,458							26,458	
1965	45,497					28		45,469	
1971	69,668					19,658		50,010	
1973	134,023					27,259		52,162	54,602
1978	195,696		20,510			26,747		51,842	96,597
1979	235,156		31,782			28,596		65,146	109,632
1980	215,360		33,461		518	23,617	297	56,574	100,893
1985	303,309	5,347	44,183		4,456	11,615	5,208	68,948	163,552
1987	320,912	15,492	52,221		4,180	12,187	4,198	62,424	170,210
1989	155,878	20,942	47,657		3,601	16,822	4,395	52,672	9,789
1994	192,416	37,422	55,743		7,813	28,488	15,367	34,483	13,100
1995	153,507	40,706	50,752		2,704	26,937	1,640	27,983	2,785
1999	133,107	31,834	38,549	10,811	3,452	32,335		16,126	
2004	100,671	25,860	35,530	20,773	1,502	5,156	5,898	5,952	
2008	95,663	27,142	26,802	23,724	1,496	4,223	5,419	6,857	
2011	79,727	28,853	18,019	18,018	952	3,241	4,452	6,192	
2012	79,139	28,356	18,116	18,394	784	3,024	4,566	5,899	
2013	71,531	25,402	17,630	15,720	640	3,175	4,380	4,584	
2014	73,053	25,789	18,422	16,013	830	3,031	4,130	4,838	
2015	70,095	26,188	17,380	15,383	536	2,465	4,207	3,936	
2016	61,250	22,710	15,559	13,766	433	1,483	3,955	3,344	
2017	58,837	22,934	13,967	13,215	523	213	4,397	3,588	
2018	54,946	22,049	13,250	11,478	442		3,786	3,941	
2019	57,132	23,002	13,887	11,947	513		3,641	4,142	
2020	50,041	19,289	12,276	10,610	487		3,558	3,821	
2021	47,442	16,428	11,285	11,436	541		3,400	4,352	

주) 기타 : 개설 후 폐쇄된 내륙지 공판장(춘천, 대전, 청주)의 실적과 지역조합에 이관한 산지공판장(여수)의 실적임.

이렇게 공판물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공판금액은 수산물 가격상승 등의 요인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4-2-36〉 공판장별 공판금액(1962~2021)

(단위 : 백만 원)

연도	합계	가락	구리	강서	전주	대구	광주	인천	기타
1962	464							464	
1965	1,551					1		1,550	
1971	5,829					1,954		3,875	
1973	10,714					2,739		5,499	2,476
1978	43,567		4,616			4,485		19,203	15,263
1979	55,600		7,159			5,600		24,173	18,668
1980	65,685		10,219		225	5,954	194	27,253	21,840
1985	134,181	3,451	17,126		3,450	4,924	3,886	52,781	48,563
1987	175,860	13,628	23,114		3,219	5,446	3,958	65,310	61,185
1989	138,212	19,951	19,404		2,682	7,296	4,828	76,712	7,339
1994	255,009	59,391	42,550		15,178	16,930	23,415	76,502	21,043
1995	194,944	60,496	41,088		6,048	13,774	3,697	66,273	3,568
1999	203,837	63,536	58,539	27,614	1,487	17,142		35,519	
2004	254,497	73,903	74,665	48,089	6,016	14,161	19,603	18,060	
2008	258,606	73,366	64,976	53,394	6,788	14,095	24,627	21,360	
2011	276,478	88,796	56,615	59,158	5,036	15,602	27,858	23,413	
2012	267,699	86,135	53,352	59,584	4,720	15,898	26,995	21,015	
2013	246,729	77,426	54,480	51,142	4,353	16,414	26,329	16,585	
2014	258,028	84,301	56,597	52,803	4,463	16,218	27,116	16,530	
2015	247,440	81,627	56,377	50,731	3,089	12,416	28,780	14,420	
2016	231,234	76,499	55,430	47,647	2,359	6,850	30,449	12,000	
2017	233,322	80,068	54,652	48,590	2,846	991	32,146	14,029	
2018	223,387	78,741	52,892	44,329	2,482		29,923	15,020	
2019	231,762	80,722	57,550	45,788	2,870		30,087	14,745	
2020	239,827	78,430	61,154	48,477	3,314		34,003	14,449	
2021	229,451	68,087	56,918	50,006	3,619		34,826	15,995	

주) 기타 : 개설 후 폐쇄된 내륙지 공판장(춘천, 대전, 청주)의 실적과 지역조합에 이관한 산지공판장(여수)의 실적임.

2) 소비지물류센터

인천 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 2020년 12월부터 운영을 개시하였고, 호남권 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 2021년 6월에 준공되었으나, 가공시설 등의 추가공사를 거쳐 2022년 상반기에 운영을 개시하였다.

인천 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 2021년에 136,020천C/S 물량을 처리하였으며, 호남권 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 2,877천C/S의 물량을 처리하였다.

〈표 4-2-37〉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물량실적

(단위 : 천C/S)

연도	인천	호남권
2020	44,366	-
2021	136,020	2,877

2021년에 인천 소비지분산물류센터에서는 22억 8,900만 원의 실적을 나타내었으며, 호남권 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 2억 3,400만 원의 실적을 나타내었다.

〈표 4-2-38〉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실적

(단위 : 백만 원)

연도	인천	호남권
2020	39	-
2021	2,289(수수료매출 387 포함)	234

수협중앙회가 운영 중인 물류센터는 5개소로 2021년에 천안 물류센터는 211,074천C/S의 물량을 처리하였으며, 감천 283,577천C/S, 인천가공 167,855천C/S, 경기북부 5,980천C/S , 강원 물류센터는 6,096천C/S의 물량을 처리하였다.

〈표 4-2-39〉 수협중앙회 물류센터 이용 물량

(단위 : 천C/S)

연도	천안	감천	인천가공	경기북부	강원
2017	227,282	267,982	31,917	10,419	8,592
2018	219,545	210,029	37,824	9,681	7,560
2019	182,090	229,100	41,260	10,121	8,283
2020	171,339	214,311	47,617	8,944	7,299
2021	211,074	283,577	167,855	5,980	6,096

2021년 천안 물류센터는 25억 5,600만 원의 실적을 나타내었으며, 감천 28억 7,000만 원, 인천가공 27억 5,800만 원, 경기북부 1억 8,700만 원, 강원 물류센터는 1억 8,900만 원의 실적을 나타내었다.

〈표 4-2-40〉 수협중앙회 물류센터 이용 실적

(단위 : 백만 원)

연도	천안	감천	인천가공	경기북부	강원
2021	2,556	2,870	2,758	187	189

다. 급식사업

1) 군 급식사업

군 급식사업 물량은 1970년에 1만 3,182톤의 실적을 보였고, 198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5년에 3만 1,073톤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1990년 3만 487톤, 1995년에 2만 5,104톤의 실적을 이룬 후 2000년대부터 감소하여 2004년 1만 5,902톤, 2009년 1만 900톤의 실적을 보였다.

이후 2011년대에는 2011년 8,756톤, 2014년 9,391톤, 2016년 8,882톤으로 등락을 계속했으나, 2017년(9,257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는 5,590톤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표 4-2-41〉 군 급식사업 실적(1970~2021)

(단위 : 톤, 백만 원)

연도	물량	금액
1970	13,182	1,097
1975	17,504	2,612
1980	28,112	10,635
1985	31,073	18,109
1990	30,487	21,781
1995	25,104	46,056
2001	22,382	85,854
2004	15,902	62,509
2007	12,154	66,200
2009	10,900	69,160
2011	8,756	88,738
2012	8,314	91,872
2013	8,331	85,527
2014	9,391	92,082
2015	9,441	99,214
2016	8,882	103,884
2017	9,257	140,605
2018	7,204	129,571
2019	6,667	158,656
2020	6,055	139,955
2021	5,590	132,245

군 급식 공급물량이 1985년 최고점인 3만 1,073톤을 이룬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판매금액은 1985년 181억 900만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공급물량 5,590톤에 판매금액은 1,322억 4,500만 원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수산물 가격 상승에 주원인이 있다.

군 급식사업 물량 및 판매금액 추이(197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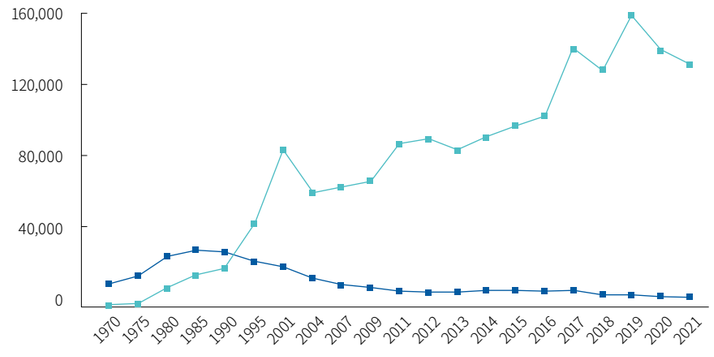

상품별 공급물량의 비중은 냉동류가 전체의 8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건어류 및 젓갈류가 8%~9%의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조류가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4-2-42〉 군 급식사업 상품별 실적(물량) 및 비중(2004~2021)

(단위 : 톤, %)

연도	합계	냉동류		건어류		젓갈류		해조류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2004	15,902	13,576	85	1,173	7	755	5	398	3
2007	12,154	10,125	83	1,241	10	585	5	203	2
2009	10,900	8,945	82	1,145	11	628	6	182	2
2011	8,756	7,077	81	934	11	552	6	193	2
2012	8,314	6,715	81	888	11	539	6	172	2
2013	8,331	6,801	82	806	10	549	7	175	2
2014	9,391	7,846	84	843	9	552	6	150	2
2015	9,441	7,879	83	859	9	564	6	139	2
2016	8,882	7,434	84	796	9	533	6	119	1
2017	9,257	7,755	84	795	9	590	6	117	1
2018	7,204	5,890	82	598	8	608	8	108	2
2019	6,667	5,552	83	520	8	496	7	99	2
2020	6,055	4,987	82	499	8	481	8	88	2
2021	5,590	4,488	80	472	8	547	10	83	2

상품별 판매금액 비중 또한, 냉동류가 전체의 80%대의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건어류, 젓갈류, 해조류 순서를 보이고 있다.

〈표 4-2-43〉 군 급식사업 상품별 실적(금액)(2004~2021)

(단위 : 백만 원)

연도	합계	냉동류	건어류	젓갈류	해조류
2004	62,509	47,259	9,623	3,115	2,512
2007	66,200	44,702	17,357	2,546	1,595
2009	69,160	49,683	14,913	2,955	1,609
2011	88,738	66,612	16,583	3,690	1,853
2012	91,872	69,491	16,690	4,210	1,481
2013	85,527	64,856	15,276	3,670	1,725
2014	92,082	70,874	16,651	3,062	1,495
2015	99,214	77,916	16,562	3,208	1,528
2016	103,884	82,430	15,381	4,647	1,426
2017	140,605	117,150	16,741	5,117	1,597
2018	129,571	106,693	14,700	6,591	1,587
2019	158,656	134,181	14,409	8,652	1,414
2020	139,955	115,851	14,029	8,871	1,204
2021	132,245	108,522	12,680	9,905	1,138

군 급식 상품별 곱급물량 및 판매금액 추이(2004~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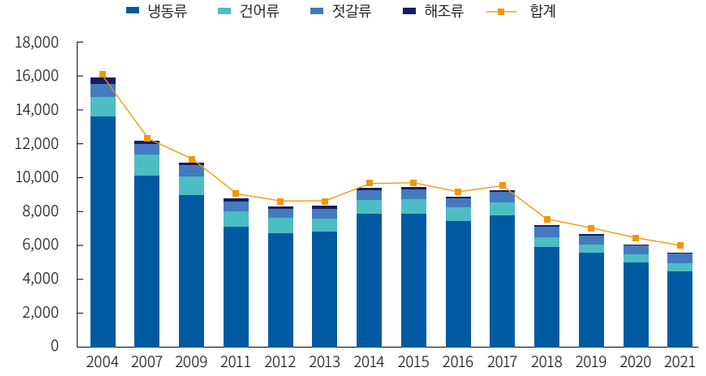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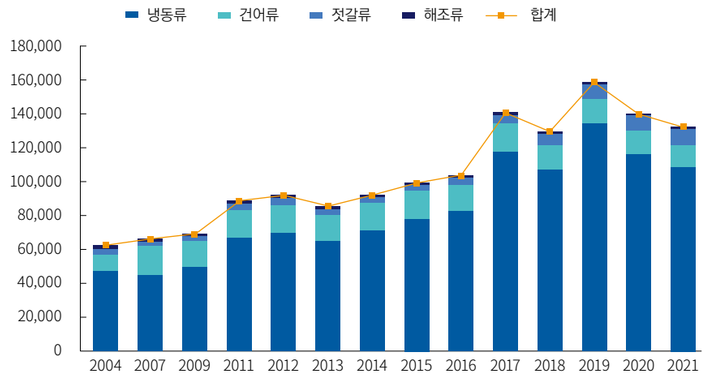

2) 학교 급식사업

학교급식 대상 학교수는 2004년 690개교에서 매년 다소 증가하여 2021년에는 999개교로 증가하였다. 반면, 공급물량은 2004년 3,776톤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1년에는 1,325톤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판매금액은 수산물 가격상승 등의 요인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에 공급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COVID-19(코로나)로 인한 정부 대책으로 학교에서의 등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표 4-2-44〉 학교급식 사업실적(2004~2021)

(단위 : 개소, 톤, 백만 원)

연도	학교급식		
	학교수	물량	매출액
2004	690	3,776	19,275
2007	689	2,773	21,621
2009	698	2,993	27,719
2011	597	1,866	20,337
2012	633	1,999	21,713
2013	684	1,773	24,852
2014	722	1,740	24,079
2015	757	1,731	22,496
2016	807	1,594	21,661
2017	816	1,543	23,028
2018	815	1,083	28,034
2019	839	1,766	30,805
2020	744	683	12,692
2021	999	1,325	25,124

학교급식 공급 및 판매금액 추이(2004~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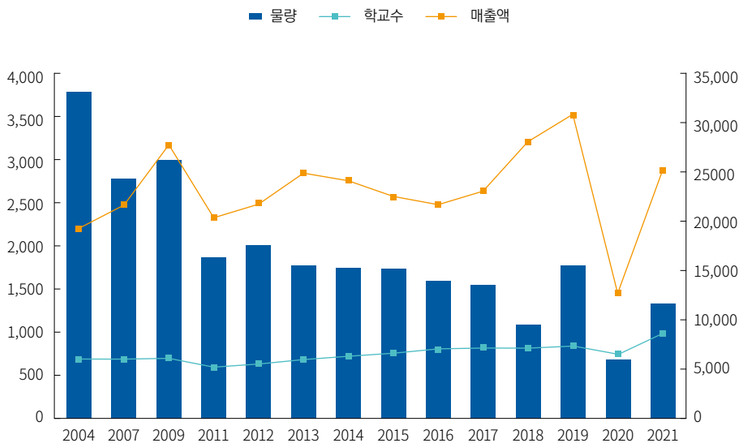

3) 기업 급식사업

2012년 8월부터 실시한 기업 급식사업은 사업 초기에 17개소에 92톤의 물량을 공급하였고, 2014년에 25개소에 514톤의 물량을 공급한 이후, 공급 기업은 20개소 내외로 다소의 증감이 있었다. 반면, 매년 공급물량은 감소하여 2021년에는 110톤의 공급실적을 보였다. 이에 따라 판매금액 또한 감소하였다.

〈표 4-2-45〉 기업급식 사업실적(2012~2021)

(단위 : 개소, 톤, 백만 원)

연도	기업급식		
	업체수	물량	매출액
2012	17	92	968
2013	20	237	2,504
2014	25	514	3,030
2015	19	390	3,446
2016	21	396	3,592
2017	20	333	3,958
2018	22	206	2,943
2019	20	147	2,424
2020	31	142	2,361
2021	19	110	1,890

기업급식 공급 및 판매금액 추이(201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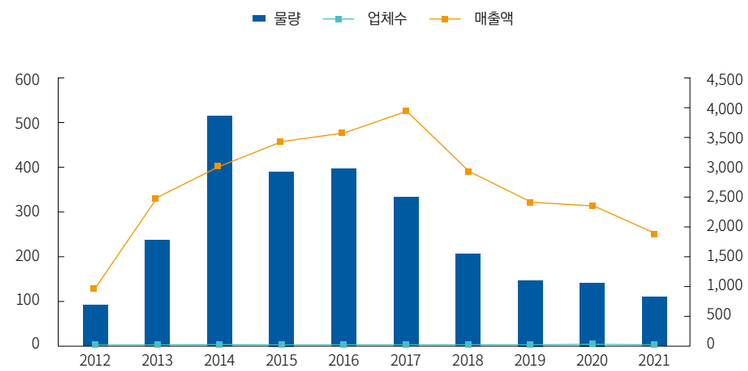

라. 전자상거래 및 직판사업

1) 전자상거래

수협의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는 2006년 B2B(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를 시작하면서 거래규모가 150억 3,80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매년 급신장을 하였으며, 수협쇼핑의 거래규모도 2003년 1억 3,400만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 128억 5,000만 원의 거래규모를 달성하였다.

전체 거래규모의 96% 수준을 보이고 있는 B2B(온라인 도매시장) 또한 2006년에 사업을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거래규모가 증가하여 2021년에 2,830억 8,300만 원의 거래규모를 달성하였다.

〈표 4-2-46〉 전자상거래 사업실적(2003~2021)

(단위 : 백만 원)

연도	합계	수협쇼핑	B2B사업
2003	134	134	
2006	15,038	760	14,278
2007	19,322	788	18,534
2011	68,202	2,504	65,698
2012	86,662	2,488	84,174
2013	133,562	4,106	129,456
2014	182,503	6,124	176,379
2015	196,761	6,411	190,350
2016	226,442	6,016	220,426
2017	284,315	6,096	278,219
2018	299,652	8,247	291,405
2019	319,453	8,408	311,045
2020	294,335	13,034	281,301
2021	295,933	12,850	283,083

전자상거래 판매 추이(200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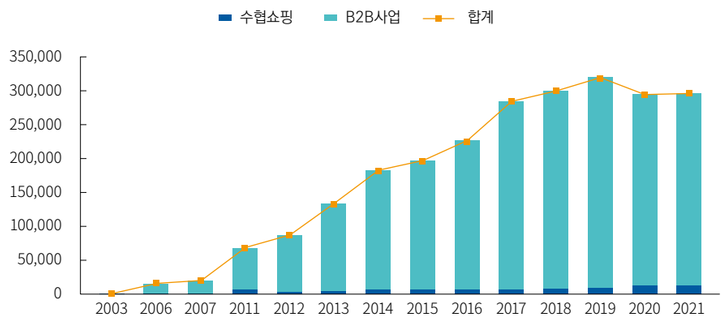

2) 직판사업(홈쇼핑, 기업)

홈쇼핑 거래는 2011년과 2012년에 일시 중단 후, 2013년에 거래를 재개하여 2016년에 279억 7,400만 원의 거래규모를 달성하였으며, 매년 증가하여 2020년에는 553억 4,900만 원의 실적을 거두었다. 2021년에는 388억 3,500만 원의 실적을 보여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하였다.

〈표 4-2-47〉 홈쇼핑 사업실적(2003~2021)

(단위 : 백만 원)

연도	홈쇼핑 거래규모
2003	1,269
2004	1,795
2006	2,594
2007	3,530
2009	3,136
2011	-
2012	-
2013	39
2014	36
2015	314
2016	27,974
2017	29,937
2018	41,937
2019	47,468
2020	55,349
2021	38,835

홈쇼핑 거래규모 추이(200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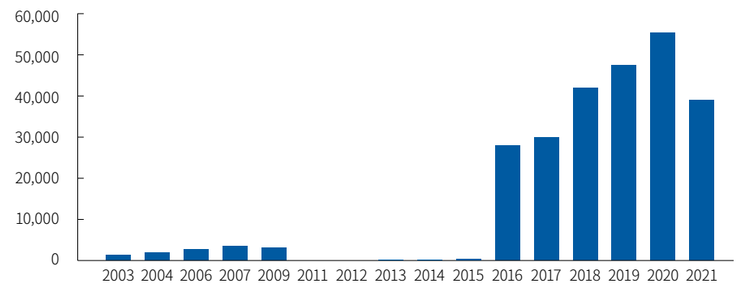

기업에 대한 직판은 2004년에 58억 5,900만 원의 판매실적을 보인 후, 매년 증가하여 2011년에는 232억 1,600만 원으로 급성장하였으며, 이후 2013년 202억 4,700

만 원, 2015년 323억 3,300만 원, 2017년 341억 9,600만 원, 2019년 252억 600만 원으로 증감을 하였고, 2021년에는 369억 1,500만 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하였다.

〈표 4-2-48〉 직판실적(2003~2021)

(단위 : 백만 원)

연도	직판 매출액
2003	-
2004	5,859
2006	8,531
2007	4,609
2009	9,524
2011	23,216
2012	22,871
2013	20,247
2014	25,735
2015	32,333
2016	33,045
2017	34,196
2018	26,684
2019	25,206
2020	33,456
2021	36,915

직판 매출액 추이(200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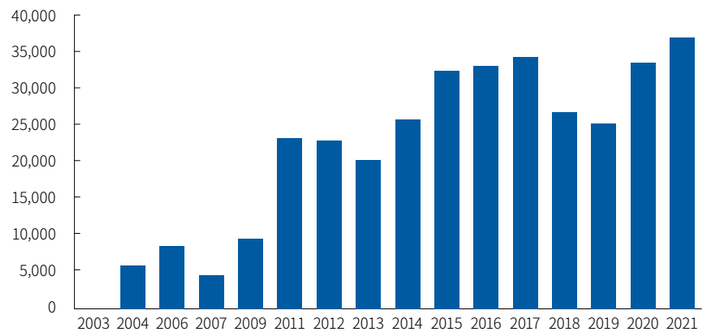

마. 무역사업

수산물 수출을 처음 시작한 활갯지렁이는 1987년 831만 달러 수출 후 1987년 이후에는 수출을 중단하였으며, 1976년 시작한 활선어의 수출 또한, 1996년 이후에는 수출을 중단하였다. 1997년부터 수출을 시작한 냉동품은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해조류 또한, 수출을 계속하여 2020년 1,127만 5,000달러, 2021년 1,501만 9,000달러를 수출을 하였다.

〈표 4-2-49〉 무역사업 수출실적(금액)(1971~2021)

(단위 : 천 US$)

연도	계	기타품목	일반품목				
		갯지렁이	활선어	냉동품	활패류	해조류	기타
1971	586	586					
1974	4,866	4,866					
1976	7,083	5,928	70		774	63	248
1977	10,942	8,740	625	754	132		691
1981	25,757	7,900	2,757	936	10,632		3,532
1984	36,950	6,890	2,951	8,978	16,081	1,705	345
1987	44,494	8,310	4,852	3,621	17,356	1,056	9,299
1991	20,292		2,077	936	11,858	3,412	2,009
1994	7,612		1,963	692	4,071	747	139
1996	8,113		442	846	3,148	237	3,440
1997	11,766			4,742	5,513	322	1,189
2001	7,861			996	6,250	615	
2004	3,238			626	2,134	478	
2007	1,603			161	1,117	325	
2008	1,560			403	1,157		
2011	1,148			1,148			
2012	2,216			1,801		415	
2013	4,220			3,683		534	
2014	3,827			1,624		2,062	141
2015	6,357			4,533		1,646	178
2016	6,125			4,126		1,818	181
2017	7,702			5,783		1,659	260
2018	9,686			3,918		5,312	456
2019	13,303			5,124		7,122	1,057
2020	21,443			7,016		11,275	3,152
2021	26,531			7,786	238	15,019	3,488

활선어 : 장어
냉동품 : 고등어, 오징어, 냉동굴, 장어필렛, 청어, 꽁치, 건멸치 외
활패류 : 피조개, 소라, 생굴, 꼬막
해조류 : 미역, 김, 다시마, 매생이 외
기 타 : 홍합, 멍게, 성게, 새조개 외

제2절 구매사업

1. 개요

가. 의의

수협의 공동구매사업은 유류 및 생필품을 포함한 선수품(船需品)과 제반 선박용 생산기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즉 시장가격 교섭력이 약한 어민을 대변하여 생산기업으로부터 가격과 배송 등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구매·공급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적기에 구매물품을 공급함으로써 어업인 생활안정과 경제적인 혜택이 생산어업인에게 돌아가게 하는 사업으로 그 중요성은 막중하다.

현재 수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매사업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과 선수물자 공급, 그리고 어업용 기자재 공급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사업은 대부분 조세상의 면세(선수물자 및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 등 지원을 받고 있다.

나.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1) 정의

수협의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사업은 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면제하여 어업인 및 양식업인의 어업경비 절감을 꾀하고, 어업인에게는 소득증대를 국민에게는 저렴한 수산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수협중앙회가 사업주체가 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를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생산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수협중앙회가 직접 사업으로 하는 것은 어업용 유류의 수요가 전국에 걸쳐 있고, 공급량이 대량인 데다가 대상품목이 석유단일 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2) 법적 근거

어업용 면세유류 관련 법규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대통령령으로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다.

수협의 면세유류 공급사업에 대해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제1항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항은 배제 적용되고 있다.

〈표 4-2-50〉 어업용 면세유류 관련법규

법규명	주요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 류에 대한 부가가세 등의 감면 등)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장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또한, 어업용 면세유류 구매와 관련한 요령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으로서 본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사후관리)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시설현황 등

수협중앙회는 원활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한 급유선 12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조합은 급유선 2척, 급유부선 6척, 유조차 99대, 급유소 140개소와 직영주유소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표 4-2-51〉 중앙회 유류공급시설(급유선, 2021년 말 기준)

구분	척수	톤수	적재량(D/M)
계	12	3,278	38,140
동해	5	1,559	19,140
서해	3	751	7,800
남해	4	968	11,200

〈표 4-2-52〉 회원조합 공급시설(2021년 말 기준)

구분	수량	용량(D/M)
계	262	320,747
급유소	140	268,172
급유부선	6	33,225
급유선	2	5,195
유조차	99	4,765
직영주유소	15	9,390

수협중앙회 여수저유소

회원조합 급유시설

다. 어업용 선수물자 공급

1) 정의

본 사업은 어업생산에 필요한 선수물자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어업인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수협의 구성원인 어업인들은 어업활동을 영위하는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재를 구입하는 소비자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수협에서는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소비자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선수물자 구매·공급사업은 일종의 소비조합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어업인구의 유출로 인한 어로장비의 기계화, 생력화, 어업형태의 규모의 경제화, 어촌의 도시화로 인한 급격한 환경변화 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어촌사회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어업인들의 생활 변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소비생활의 구조변화와 다양화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러한 어업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및 의식변화에 대응함과 아울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에서는 선수물자 공급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수협은 1975년부터 군산시수협과 제주시수협 등 각 지역 단위조합에서 자체적인 구매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 선구점의 방해로 인해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았으며, 그런 횡포가 이어지면서 선수물자의 가격은 갈수록 비싼 선수물자를 살 수 밖에 없었는데 특히,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민들과 영세한 어민들의 경우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런 어업인들의 고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수협중앙회는 본격적인 선수물자 공급사업을 계획하고 1976년부터 착수하였다. 사업 초창기에는 계약업체수가 3개, 연쇄점이 10개에 불과해 민간 선구점과 경쟁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민간 업체와의 경쟁뿐 아니라 어업인들의 오랜 거래관행과 계통구매 인식 부족도 어려움을 더했다.

오랜 관행 타파와 인식의 전환을 위해 로치데일조합의 경우 상인들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비조합을 구축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홍보하면서 그 같은 정신이 협동조합 활동의 기본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어민들이 계통구매사업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점차 오래된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계를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인 구매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처럼 선수물자 공급사업은 어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시 한번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선수물자 공급사업은 어업인들의 생산활동에 직접 필요한 로프류, 어망류, 선구류 등 선수품과 가계경제에 필요한 일상생활 필수품을 취급하는 생필품 및 양어용 사

료 등을 어업인들의 구매신청을 접수한 후 수협중앙회에서 단일화된 창구로 제조사와 구매협상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품목 단가 계약업체 등의 거래조건을 회원조합에게 통보하면 어업인들은 수협중앙회의 계약조건을 시중가격과 비교하여 유리한 경우에 조합을 통하여 계통구매하는 사업이다.

2) 법적 근거

본 사업의 시행근거는 「수협법」이나 수협에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사업을 대행하기 위한 관련 법률은 「어장관리법」 제13조(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어장부표의 규격),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보조대상 사업) 제12호·제16호와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환경친화적인 어구사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환경친화적인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등이다.

라. 어업용 기자재 공급

1) 정의

1960년대 우리나라 수산업은 삼면이 바다로 어족자원은 풍부하였으나 생산수단인 어선과 어로시설이 열악하여 영세성을 면치 못하였다. 당시 어선실태는 무동력선과 소형 동력선으로 목선이었으며 동력선의 기관은 저효율 기관인 소구기관이 대부분이었고, 어로시설 장비는 원시적인 수동식으로 조업하였다.

본 사업은 전근대적인 영세한 어업구조 개선을 통한 어업생산력의 증강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국가차원의 어선근대화 작업의 일환인 정부의 위촉사업의 성질상 경제개발계획과 출발을 같이 하고 있다.

어업용 기자재 공급사업은 어선 및 어구(장비)의 개량사업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어족자원이 풍부했던 과거에는 어선어업에 의존하였고 정부의 수산진흥사업 또한 어선어업에 많은 비중을 두어 정부지침에 의거 어선기관대체(동력개량), 장비 및 설비개량, 어선용 기계공급사업, 노후어선대체(어선건조)에 필요한 선박용 기자재를 수협을 통하여 공동구매하도록 정부가 수협에 위촉한데서 비롯되었다.

또한, 어선현대화계획의 일환으로 어선의 안전조업을 도모하고 종래의 경험과 육감을 통하여 행하던 비과학적인 어업방식에서 탈피하고,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어업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부는 어선의 장비개량사업을 추진하였는데, 1982년 이후에는 정부지원에서 수협중앙회로 지원 주체가 전환되어 계속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어선기관대체사업은 무동력 어선을 동력화하고 저효율 노후기관인 소구기관을

효율이 좋은 디젤기관으로 사업으로 당초 동력개량이란 명칭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안전조업 및 해난사고 예방은 물론 에너지절감과 기동력 확보, 조업능률향상에 의한 생산성을 제고하여 어가경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2) 법적 근거

본 사업은 「수협법」의 사업종류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반면 수협이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령으로는 「수산업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어선안전조업법」, 「어선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행정규칙으로 「어선설비기준」 제349조(무선설비 적용대상)이 있다.

〈표 4-2-53〉 어업용 기자재 공급 관련법규

법규명	주요 조항
수산업법 및 시행령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시행령 제72조(보조대상 사업)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어선안전조업법	제26조(재정지원)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한편 이들 관련 법령에 의한 2021년 현재 정부 보조사업으로는 소형어선에 대한 항해 안전장비, 소방 및 구명 기자재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 인명피해 최소화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장비 보급으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사업', 내수면 어선의 노후기관을 전기추진기로 대체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전기추진기 보급사업'이 있다.

〈표 4-2-54〉 정부 보조사업 및 지원대상

사업명	지원 대상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초단파 무선전화(VHF-DSC),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자동소화시스템(CCTV, 조타실모니터, 탐지기, 자동소화기 포함), 팽창식 구명조끼(저체온 등 기능성 향상제품)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사업	저효율(육상기관 포함) 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설치,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LED 등의 대체 또는 무동력 어선에 신규 기관 설치, 어선의 안전·복지 등을 위한 장비 또는 설비
전기추진기 보급사업	전기추진기(전동모터 및 축전지 등)

2. 사업추진체계

구매사업정보시스템은 면세유류, 기자재 및 선수물자 업무를 관리하는 핵심 시스템이며, 구매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면세유류 관리, 기자재 관리, 선수물자 관리와 실시간으로 상시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구매사업정보시스템 구성체계

면세유류 구매사업정보시스템

면세유류 관리	상시검사	통계	기자재 관리	선수물자 관리	공통 관리
카드/선박 관리	기준정보 관리(상시감시)	출고집계 관리	기준정보 관리	기준정보 관리	시스템 환경
한도 관리	실시간 감시	원가집계 관리	보조사업 관리	계통구매 관리	정보자료실
계약 관리	당일 감시		수발주 관리	보조사업 관리	
발주 및 접수	월간 감시		채권채무 관리	수발주 관리	
출고 관리	중점 감시		세금계산서 관리	채권채무 관리	
미수/미지급금 관리	시뮬레이션		월마감 관리	세금계산서 관리	
세무 관리	상시감시 통계		사후 관리	월마감 관리	
출력 관리					
감사지원 관리					
사후 관리(면세유)					
기준정보 관리(면세유)					
대형주유소(화연)					

효율적인 통계자료 활용, 면세 유류 부정유통 상시감시, 정부의 어선원장 및 주민등록 변동내역 등 정보연계 강화로 회원조합 업무편의를 증대시키고 면세유류 부정유통 방지를 강화하고자 2009년 12월에 기존 구매사업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였다.

또한, 2010. 1월부터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0년도 상반기 시스템 운영결과를 토대로 감시항목 신규개발 및 운영방법의 고도화를 추진하였고, 2020년에는 현행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시스템의 불안전성, 안정적인 면세유류 공급을 통한 어업인의 생산활동 지원 강화, 원활한 면세유류 공급 및 기자재 공급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네트워킹을 통한 강화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면세유류 구매사업정보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다.

정부(해양수산부)는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하는 수협중앙회 및 단위수협으로 수협중앙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는 사업자 최종 선정 결과를 수협중앙회에 통보한다.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 사업 추진 절차

사업시행지침 수립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
↓	
사업시행계획 수립·보고	수협중앙회 → 해양수산부
↓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
↓	
사업 직접수행 및 사업자 선정	수협중앙회
↓	
사업 추진 및 국비 집행	수협중앙회
↓	
사업 지도·감독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
↓	
사업 결과 및 집행 정산 보고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

정부(해양수산부)는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사업 일환으로 사고예방 및 대응을 위한 어선안전장비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는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협중앙회는 사업자 및 희망 수요자를 모집,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한다.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때에는 대상자 명단, 지원금액 등 어선설비 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수협중앙회 및 해당 지구별·업종별 수협조합장에게 요청한다. 수협중앙회는 필요한 어선설비가 어업용기자재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바로 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에 통보한다.

2020년 10월 유류사업 책임자 교육

어선안전장비 지원사업 추진 절차

또한, '전기추진기 보급사업'으로 내수면 어선에 탑재되어 있는 노후기관을 전기추진기로 대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시행주체는 해양수산부이며, 수협중앙회는 사업자 및 희망 수요자를 모집을 위해 어업인 홍보·지도를 강화하고 사업에 필요한 기종(장비)별 공동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에 통보한다.

전기추진기 보급사업 추진 절차

정부(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어구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연안어장의 발포 폴리스티렌(EPS)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도모하고자 인증부표 보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체계는 아래와 같다.

인증부표 보급사업 추진 절차

또한, 정부(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 예방과 어업경비 절감에 따른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장비·설비를 대체 보급하는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보조 수행기관으로 사업자 모집 공고 및 희망 수요자 모집을 위해 어업인에게 홍보·지도를 하고, 사업에 필요한 기종(장비)별 공동구매단가 계약을 납품업체들과 체결한다.

3. 발전과정

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수협중앙회는 설립 후 1964년까지 3년간 계속해서 대정부 건의와 국회 청원을 통해 어선에 대한 유류공급업무 실시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964년 1월 4일에 결성된 '전국어민비상대책위원회'의 국회 청원서와 이의 조속한 심사 및 그 대책을 촉구한 1964년 2월 26일 전국 조합장의 '어민권익보장에 대한 결의문'의 채택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어 1964년 2월 25일 개최된 수협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전국 수협조합장 일동은 유류직배문제를 포함한 12개 항에 달하는 대정부·대국회 건의안과 이 건의안의 실천을 위한 총궐기운동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마침내 1965년 5월 1일부터 수산용 유류직배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5년 5월에 석유산업기지인 울산에 '울산유류사업소'를 개설하고 전국 22개 주요 어항에 급유소를 설치하여 시중보다 15% 싼 가격으로 공급을 개시했다.

그 이전의 어업용 유류의 유통실태는 복잡한 유통경로와 유통단계에 따른 중간이윤의 과다로 어업인들은 가격면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공급면에서도 유류수급 장소가 어항 또는 해상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적기에 수요물량이 공급되지 않아 어업인은 2중의 고통에 직면해 있었다.

또한,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 조치가 절실하다는 판단하에 면세유 공급을 위한 활동을 계속한 끝에 1965년 제정한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을 이루는 데 성공을 거두어 1972년 1월 1일부터는 중유, B·A유 및 경유 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석유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쾌거를 이루어, 1972년 1월 1일부터는 연근해어선에 한해 면세유류를 공급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1975년 4월부터는 윤활유에도 면세 적용을 받게 되었다.

어민이 어업활동을 계속하는데 필수적인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에 있어 1965년

직배를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완전 면세와 공급 확대를 추진하였다. 1978년 1월 1일 「조세감면규제법(현, 조세특례제한법 1998. 12. 30. 제정)」의 개정으로 특별소비세 외에 부가가치세까지 면제됨으로서 완전 면세유 공급이 실현되었다. 이어 1983년에는 기존의 허가어업어선에 국한된 면세유 공급대상이 면허 및 신고 어업어선 등 전체 연근해 어선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낙도벽지 유류공급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수수료의 일부를 재원으로 유류사업지원자금을 1985년 8월 1일부터 조성·지원하여 소외된 낙도벽지 어업인들에게 면세유류 공급의 혜택을 주는 등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1989년 6월 11일부터는 면세휘발유도 공급하게 됨으로써 취급 유종을 6가지로 확대하여 양식장 관리선의 세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경인, 충남, 전북지역 어민을 위해서는 면세유류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89년 9월 1일 충남 서산군 대산면에 유류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공급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에 힘썼다.

1990년 1월 1일부터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에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서도 면세유를 공급하게 되었다. 이는 종래의 면세유류 공급대상이 어업용 선박에서 어업인의 편의시설까지 확대된 데 그 의의가 있다.

더욱이 1991년 3월 1일에는 수협(어업인, 어촌계)이 직접 운영하는 김, 오징어의 자숙·건조시설, 멸치, 미역 자숙용 건조시설이 면세유류의 공급범위에 포함되어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범위가 수산물 생산 기초시설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어업인의 어업인 세제지원 확대를 위하여 어업용 면세유 적용대상 추가 및 발굴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1997년 육상어업용시설 및 육상 종묘생산어업용시설, 1998년 내수면 육상양식시설, 2000년 내수면 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 육상양식어업용 선박, 2002년 새우자숙·건조시설, 패류 자숙시설, 양식시설용 양수기 및 세척기, 2004년 다시마, 톳 자숙·건조시설, 2005년 축제식 양식어업용 시설, 자가어획물운반선 및 낚시어선업용 선박, 2009년 나잠어업종사자 수송용 선박, 가시파래 건조시설, 2013년 어업기계(경운기, 트랙터,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 2014년 해삼 자숙·건조시설 그리고 2015년에는 어업용크레인, 패류선별기, 2016년에는 어망세척기, 2019년도에는 어선의 부속설비 6종(발전기, 크레인, 양망기, 양승기, 양수기, 냉각설비)이 추가되었다.

수협중앙회의 유류사업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유가 자유화로 중대한 국면을 맞게 되었다. 즉,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으로 정유사에서 면세유를 구입·공급하던 수동적 가격 결정 체계에서 본회가 판매자와의 가격협상에 의하여 구입가격을 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구매력을 집중하여 1997년 4월부터 국내 5개 정유사를 상대로 경쟁입찰을 진행하여 구입 가격면에서 종전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어업용 유류를 구입·공급함으로써 어업인에게 면세로 인한 수혜액뿐만 아니라 입찰실시로 인한 부대 이익을 실현하여 어업경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유류가격 상승 시 신축적인 대응으로 어업용 유류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어업인에게 적기에 안정적인 공급을 수행하기 위해 2006년 1월 12일부터 총 22만 드럼 규모의 여수저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가 등락에 따른 탄력적인 비축 및 공급업무를 수행하여 어업용 유류가격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노후 급유시설에 대해서는 「유류공급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정부예산 50%, 자담 50%로 개보수 및 신규·이전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표 4-2-55〉 유류공급 시설 개보수 현황

연도	개보수 시설
2011년	2개 조합 탱크 7기
2013년	8개 조합 탱크 15기
2015년	7개 조합 탱크 15기, 급유선 1척
2017년	4개 조합 탱크 11기
2019년	2개 조합 탱크 3기
2020년	1개 조합 탱크 3기
2021년	2개 조합 탱크 6기

나. 어업용 선수물자 공급

1960년대에 들어와서 수협이 설립됨과 아울러 우리 경제는 5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동안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여 어업인들의 생활 수준 역시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1970년대에는 근면, 자조, 협동을 슬로건으로 하는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져 어촌사회 역시 많은 환경과 의식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때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높아진 소비생활의 욕구에 부응함과 아울러 특히 도시주민들보다 생필품 등의 구매 시 거리상, 시간상, 가격에서 불리한 여건인 농어촌 주민들을 위하여 1975년 2월 27일 제7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수협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어업인들에게 최대의 유리한 조건에서 양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사와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는 선수물자 계통구매사업을 1976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선수물자 공급사업은 1975년 3월 19일 군산시수협 연쇄점 개점을 그 효시로 들고 있으며, 뒤이어 같은 해 7월 25일에는 제주수협이 연쇄점을 개점하였다. 그러나 연쇄점이 본래 기능을 발휘하고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계기가 된 것은 수협중앙회에서 선수물자 계통구매사업을 실시한 1976년부터이다.

2000년 1월 28일에 제정된 「어장관리법」이 2006년 12월 28일에 개정되면서 연안어장의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부표 사용 등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였고 또한, 「수산자원관리법」이 2009년 4월 22일 제정되면서 환경친화적인 어구의 개발과 사용 확대 등을 위한 조치가 마련되었다.

2005년 세계 최초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생분해 어구를 개발하였고, 2007년부터 정부의 '친환경(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을 통해 어업현장에 보급·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지원사업 협력기관인 수협중앙회에서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4년 성능이 개선된 인증부표(舊친환경부표)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인증부표를 보급·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사업 협력기관인 수협중앙회에서는 자체 물가조사 등을 통하여 생산업체와 공동구매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어업현장에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선수물자 사업 중 친환경어구(생분해성어구, 인증부표 등) 사업은 나일론 폐어망, 저밀도 부표 등이 무분별하게 바다에 버려지면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바다 생태계 보전에도 큰 역할을 하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조합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어구 사용불편 해소 등에 만전을 기하여 바다 어족자원 보호 및 회원조합 선수물자 사업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다. 어업용 기자재 공급

1953년 9월 9일 제정된 「수산업법」에는 정부 보조에 관한 조항이 없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963년 4월 11일 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 보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동법 시행령(시행 1963. 12. 16.)에 보조대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어선과 어구의 개량과 어선의 건조·도입 및 보수를 명시하였다.

1962년 12월 28일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고 1966년 3월 3일 수산청이 발족함과 아울러 1967년도부터는 대일청구권자금에 의하여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일본과의 기술제휴에 의한 성능이 향상된 기관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동력개량사업은 활발하게 전개되어 본격적인 궤도에 돌입하였다.

사업 초창기에는 어업인들의 인식 부족, 정밀한 디젤기관의 조작기술 부족, 국내 제조업체의 조악품, 불량기관의 제작 공급 등으로 수요가 담보 내지 격감하는 현상까지 초래하였으나, 1967년부터 대일청구권자금에 의하여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일본과의 기술제휴에 따라 성능이 우수한 기관을 공급함으로써 어선기관대체사업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동력개량사업은 더욱 활기차게 추진되었으며 특히, 노후기관 대체사업까지 포함시켜 에너지절감과 기동력 확보, 조업능률 향상 등으로 생산성을 제고시켜 어가 경제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정부의 기계 국산화 정책에 발맞추어 고속엔진을 제외하고는 수입을 억제하고 전량 국산품을 공급함으로써 어선기관의 국산화와 국산 엔진의 성능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특히, 기관구입비의 절감과 제작사의 사후 서비스체제를 강구하고 기종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수협중앙회가 공동구매하여 실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하였고, 1984년도에 이르러서는 정부의 지원하에 수협중앙회가 동력개량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어 어선의 동력개량은 더욱 활성화하게 되었다.

어선의 장비개량 대상기종은 어선안전을 위한 항해장비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어로장비, 기타 보조장비로 분류되고, 어선안전을 위한 항해장비로서는 무전기, 레이다, GPS 등이며 어로장비는 어군탐지기, 양망기, 양승기, 자동조상기 등이다.

어군탐지기는 1962년에 106대를 정부에서 지원한 후 청구권자금으로 보급을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국내 어군탐지기 제조업체의 조악한 성능 기기 보급으로 실수요 어업인들의 반발 등 수요가 줄어들어 한때 중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컬러어군탐지기의 개발 공급으로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기타 방향탐지기나 로란은 방향 및 어선의 위치를 측정하는 항해장비로 각각 60년대 중반과 70년대 초 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사업실적이 크게 떨어지고 위성항법장치(GPS)의 등장으로 퇴보하게 되었다.

무전기 장비개량사업은 해난사고 미연방지와 어황정보에 의한 어획 증대에 기여하도록 계획된 것으로 특히, 어선의 피랍방지 등 안보적인 차원에서 전 동력선과 5톤 이상의 무동력선에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연차적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였다.

무전기 설치사업은 장비개량사업 중 가장 정책적인 사업의 일종으로 1970년까지는 30%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가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보조금을 50%로 확대하여 소형연안선에 이르기까지 전 어선에 설치를 유도하였다.

1977년 12월 31일에 「어선법」이 제정되어 어선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관, 통신설비, 구명·소방·거주·위생설비 및 항해용구 등)이 명시되었고 또한, 어선의 안전조업과 성능향상을 위한 필요한 설계시험 및 연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2009년 5월 27일 동법 개정을 통하여 어선에 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2011년 7월 14일에 어선의 위치 발신 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하는 규제조항 및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조항,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인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를 신설하는 「어선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1년 7월 25일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2012. 7. 26.)되어, 동법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및 제17조(선진화사업에 대한 지원)에 의해 에너지절감 또는 안정성·성능 향상을 위한 어선 장비·설비의 개량과 이에 대한 경비 지원에 대해 명시하였다.

4. 사업실적

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어업용 면세유류는 초기에 경유와 중유를 공급하였으며, 1969년부터는 추가로 BA유를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휘발유는 1989년부터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공급물량은 1999년 8,390천D/M을 공급 후 감소하여 2011년대는 5,000천D/M~5,600천D/M 수준에서 공급물량이 증감을 하고 있다.

〈표 4-2-56〉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실적(1965~2021)

(단위 : 천D/M, 백만 원)

연도	합계		경유	BA유	중유	BC유	MF30	휘발유	윤활유 등
	수량	금액							
1965	208	282	29		179				
1968	310	443	71		238				1
1969	214	327	64	27	123				
1971	191	431	82	16	93				
1975	1,626	12,967	786	467	366				7
1977	1,983	18,625	1,122	590	259				12
1981	2,377	88,686	1,890	401	75				11
1984	2,866	118,068	2,228	569	49				20
1989	4,264	107,678	3,670	537	20			5	32
1991	4,690	119,505	4,143	474	19			20	34
1994	5,947	168,324	5,220	622	13			57	35
1999	8,390	341,220	7,095	556	35	185		474	45
2001	8,056	469,196	6,615	447	26	199		715	54
2004	7,007	528,788	5,754	357	31	148		679	38
2006	6,283	624,667	5,144	252	33	136	49	634	35
2011	4,864	889,587	4,066	134	26	91	2	504	41
2012	4,747	919,826	4,018	123	23	59		481	43
2013	5,055	906,961	4,313	129	25	45		494	49
2014	4,726	765,991	4,038	87	25	44		478	54
2015	5,266	535,702	4,557	71	27	46		503	62
2016	5,641	466,562	4,969	34	24	51		492	71
2017	5,417	556,276	4,759	17	25	48		494	74
2018	5,040	659,593	4,402	10	26	39		488	75
2019	5,559	689,099	4,915	4	24	29		520	67
2020	5,733	500,099	5,064	24	11	34		529	71
2021	5,053	611,335	4,430	26	-	20		503	74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제품별 비중은 경유가 전체 공급물량의 87%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휘발유가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추이 및 제품별 비중

(수량 : 천 D/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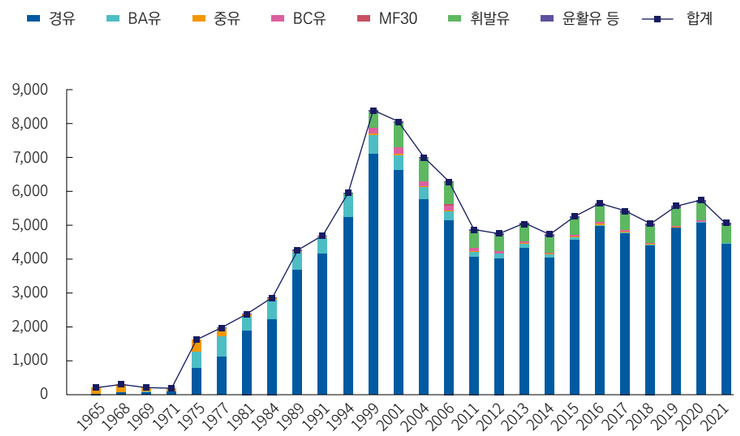

나. 어업용 선수물자 공급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로프류를 공급하였으며 2005년부터 추가로 생필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생분해성 어구와 인증부표(舊친환경부표) 등 친환경 어구가 개발되어 2011년도부터는 생분해성어구, 2015년부터는 인증부표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2011년에는 145억 5,600만 원의 선수물자를 공급하였으며, 2015년에는 206억 8,900만 원의 실적을 나타냈다. 2021년에는 인증부표를 462억 8,900만 원 공급하여 536억 200만 원의 실적을 보였으나,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발달로 인하여 생필품 공급은 2020년에 중단하였다.

생분해성 어구 공급 사업은 정부보조사업으로 수협 계통구매를 통하여 공급하였으나, 2020년부터 공급단계 축소를 통한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사유로 지자체 직접 계약으로 변경되었다.(2020년 실적은 2019년도 이월 예산 공급분임.)

〈표 4-2-57〉 선수물자 공급실적(1980~2021)

(단위 : 백만 원)

연도	합계	생필품	로프류	생분해성 어구	인증부표 (舊.친환경부표)	기타
1980	1,366	-	1,366	-	-	-
1990	9,251	-	9,251	-	-	-
2000	6,379	-	6,379	-	-	-
2005	5,650	3,163	2,487	-	-	-
2007	5,092	3,025	1,728	-	-	339
2008	5,109	2,904	1,950	-	-	255
2009	5,409	2,997	2,176	-	-	236
2010	9,019	2,672	2,895	-	-	3,452
2011	14,556	2,824	3,640	7,531	-	561
2012	13,813	2,580	4,127	6,550	-	556
2013	13,820	2,729	3,850	6,743	-	498
2014	12,876	2,648	4,372	5,212	-	644
2015	20,689	2,846	4,230	6,168	7,382	423
2016	26,134	2,256	4,535	6,920	11,706	717
2017	23,819	1,108	4,400	6,350	10,421	1,540
2018	25,442	83	4,193	6,770	12,532	1,864
2019	21,134	60	3,725	4,409	11,116	1,824
2020	26,620	0	4,040	1,382	18,142	3,056
2021	53,602	0	3,760	0	46,289	3,553

기타 : 어상자, 어망, 도료, 연료첨가재 등

다. 어업용 기자재 공급

어업용 기자재 공급은 2004년 286억 100만 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6년에는 903억 4,000만 원의 실적을 나타내었다.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21년에는 771억 3,600만 원의 실적을 나타내었다. 이 중 선외기 공급이 560억 2,800만 원으로 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비·설비개량이 14%, 기관대체가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2-58〉 어업용 기자재 공급실적(2004~2021)

(단위 : 백만 원)

연도	합계	기관대체	장비·설비 개량	선외기
2004	28,601	-	-	-
2007	29,880	-	-	-
2011	50,640	-	-	-
2012	53,620	-	-	-
2013	56,539	-	-	-
2014	60,413	-	-	-
2015	74,381	-	-	-
2016	90,340	-	-	-
2017	88,290	-	-	-
2018	86,676	12,958	13,229	60,489
2019	82,991	9,549	12,469	60,973
2020	78,021	10,922	10,930	56,169
2021	77,136	10,009	11,099	56,028

주) 2018년 이전의 어업용 기자재 상품별 통계는 파악할 수가 없음.

제3절 이용가공사업

1. 개요

가. 의의

수협중앙회의 이용가공사업은 수산물이 생산되어 유통되고 최종 판매에 이르는 과정 중 필수적인 핵심사업으로서 수산물의 선도관리·보관·가공처리 등을 통한 상품성 유지·향상을 기하고 수산물의 수요조절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형태로는 제빙·냉동·냉장 등의 이용·보관 사업과 상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가공사업으로 구분되며,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 및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과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지원으로 수출 및 내수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수협의 초기 이용가공사업은 제빙, 냉동, 냉장 등 수산물의 선도관리 부문이 주력이었으며 유조선과 냉장차 운영 등의 수송사업부문, 선박용기기 정비공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업은 모두 수협의 판매사업, 공판사업, 급식사업 및 유류공급사업 등의 확충과 더불어 확대 발전되어 왔다.

나. 법적 근거

수협이 이용가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근거는 「수협법」상의 사업의 종류이다. 즉, 수협은 '회원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판매·제조 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업무대행,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수산물의 처리·가공 및 제조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사업의 지원 관련 법률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을 분리해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0년 2월 18일에 제정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및 「수산업법」 등이 있다.

〈표 4-2-59〉 이용가공사업 지원 관련법규

법규명	주요 조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지역 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다. 시설현황 등

2012년도 수협중앙회 제빙·냉동시설은 산지지역 2개소(인천·감천 물류센터), 소비지지역에 6개소(경기북부·강원·천안 물류센터, 강서·광주·전주 공판장)에서 운영되었다. 2021년에는 인천 소비지분산물류센터와 호남권 소비지분산물류센터가 추가되어 수협중앙회는 산지에 3개소, 소비지에 7개소를 운영 중이며, 회원조합은 산지에 97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표 4-2-60〉 수협 제빙·냉동시설(2012~2021)

(단위 : 개소)

연도	중앙회		회원조합	
	산지	소비지	산지	소비지
2012	2	6	82	
2013	2	6	82	
2014	2	6	86	
2015	2	6	89	
2016	2	7	87	
2017	2	7	91	
2018	2	7	93	
2019	2	6	95	
2020	2	7	97	
2021	3	7	97	

2021년도 수협중앙회는 산지 가공시설을 인천물류센터와 감천물류센터, 소비지 가공시설을 광주공판장과 전주공판장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회원조합은 산지 가공시설을 42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다.

〈표 4-2-61〉 가공시설(2012~2021)

(단위 : 개소)

연도	중앙회		회원조합	
	산지	소비지	산지	소비지
2012	2	2	23	
2013	2	2	23	
2014	3	1	30	
2015	4	1	34	
2016	4	1	37	
2017	2	3	38	
2018	2	3	38	
2019	2	3	36	
2020	2	3	39	
2021	2	2	42	

2. 사업추진체계

수협중앙회의 이용·보관시설(동결 포함)을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이용·보관(입고·출고)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용·보관 신청을 접수한 후, 관리책임자는 신청자와 '냉동·냉장 시설물 이용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 경합 시 입고순위는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어촌계, 회원조합의 조합원, 중도매인 및 매매 참가인, 비조합인 순으로 한다.

가공생산 관리책임자는 각 사업부서의 판매계획, 현 재고, 안전재고 보유기준 및 소요물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공생산에 소요되는 원·부자재의 수매계획을 수립한다.

가공생산 원재료의 수매는 일시 다획성 연안산 어종, 원양산 및 수입산 어종의 원품 수매는 수매전담부서에 의뢰하여 수매한다. 다만, 소량 다품목이거나 공급을 위하여 시급하게 수매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협중앙회 자회사, 회원조합, 수협중앙회 수매대행 지정 중도매인, 유통업체 등을 통해 자체수매할 수 있다.

부재료 및 포장재의 수매는 수협중앙회 가공장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동종 다량의 부재료 및 포장재는 가공 담당 주무부서를 통해 통합하여 수매한다. 다만, 소량 다품종의 부재료 등은 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직접 수매할 수 있다.

가공생산 제품의 생산은 자체생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가공 및 위탁가공을 병행할 수 있다.

이용·가공 사업 업무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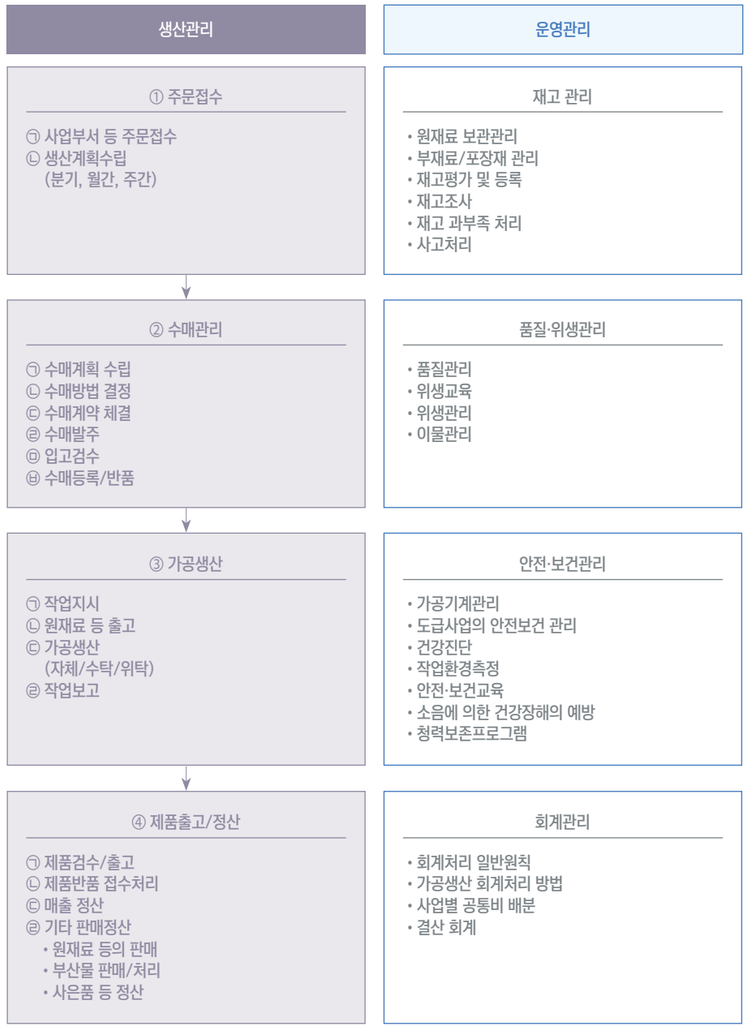

3. 발전과정

수협 초기의 제빙시설은 인천, 군산, 주문진, 포항에 국한되었으나 1968년 수산청이 해상조업선박의 원활한 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경남의 욕지도, 제주도 성산포, 전남 거문도의 어업전진기지의 각종 시설을 본회가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어 제빙공장수는 기존 4개소에서 8개소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후 수협중앙회는 조합의 발전과 그 육성을 위하여 1969년 포항 제빙공장을 조합에 이관한 데 이어 1970년 군산, 구룡포, 주문진의 3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박용기기 정비소와 군산, 주문진의 직영 제빙공장을 1972년에 각각 해당지역 조합에 이관함으로써 조합의 육성과 어민의 이용편익을 도모하였다.

제빙·냉동·냉장의 단순 이용가공사업은 1965년 유류공급 업무의 개시로 유조선 이용이라는 수송사업이 추가되고, 1970년 군납업무의 시작으로 수산물 저온 이동시설인 냉장차 운송사업이 추가되었다. 아울러 이 시기에 어민의 생산활동 촉진과 선박 수리문제에 대한 기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어항에 박용기기 정비소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1970년~1976년까지 7년간 운영해온 냉장차 운영사업은 서울공판장 개점시점에 1977년 중단되었고 유조선 운영사업은 자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어, 수협중앙회의 이용가공사업은 제빙, 냉동, 냉장 사업과 1997년 10월 13일 인천공판장 수산물 가공공장 신축과 1999년 3월 19일 감천항물류센터 개장으로 본격 시작한 처리가공사업을 주요 이용가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4. 사업실적

1971년에는 제빙 물량이 1만 2,728톤으로 69%의 비중을 차지하고 냉장 물량이 5,598천C/S로 3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981년에는 제빙 물량이 3만 4,422톤으로 28%를 차지하였고 냉장 물량이 87,329천C/S로 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4년에는 제빙 물량이 3만 2,657톤으로 19%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냉장 물량은 138,164천C/S로 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후 제빙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에는 8,191톤으로 1.4%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냉장 물량은 증가하여 586,734천C/S로 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빙은 회원조합에게 이관하여 2017에 중단되었으며, 2021년 냉장 물량이 806,934천C/S로 전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2-62〉 중앙회 이용가공사업 공급실적(물량)(1965~2021)

(단위 : M/T, 천C/S)

연도	합계	제빙	냉동(천C/S)	냉장(천C/S)	가공
1965	5,516	5,516			
1968	9,394	9,133	11	250	
1971	18,416	12,728	90	5,598	
1974	31,276	22,259	184	8,833	
1978	57,721	28,585	299	28,837	
1981	122,106	34,422	355	87,329	

연도	합계	제빙	냉동(천C/S)	냉장(천C/S)	가공
1982	144,259	49,226	352	94,575	106
1984	151,875	47,097	377	104,305	96
1987	158,288	45,662	320	112,220	86
1991	122,294	29,266	114	92,914	
1994	176,267	32,657	526	138,164	4,920
1997	383,535	8,684	685	367,170	6,996
2001	605,881	8,191	1,551	586,734	9,405
2004	703,854	8,668	1,571	686,682	6,933
2007	675,218	8,415	801	658,506	7,496
2011	688,112	6,683	366	671,347	9,716
2012	237,546	6,853	73	221,138	9,482
2013	618,251	6,935	390	601,272	9,654
2014	699,192	7,347	412	680,768	10,665
2015	720,763	6,405	401	702,718	11,239
2016	695,348	7,303	388	679,921	7,736
2017	534,956		274	526,799	7,883
2018	605,939		299	597,660	7,980
2019	572,835		193	566,322	6,320
2020	581,650		147	576,287	5,216
2021	812,310		134	806,934	5,242

2001년에 냉장물량이 586,734천C/S로, 가공물량 9,405톤으로 전체 물량 대비 냉장물량 97%이나 공급실적은 냉장 70억 2,000만 원, 가공 142억 9,000만 원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실적이 전체 실적 대비 64%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에는 냉장물량 671,347천C/S, 가공물량 9,716톤으로 냉장물량이 전체 물량 대비 98%이나 공급실적은 냉장 68억 3,000만 원, 가공 349억 900만 원이다. 2021년에는 냉장물량 806,934천C/S, 가공물량 5,242톤으로 공급실적은 냉장 112억 1,200만 원, 가공 859억 2,300만 원으로 가공실적이 전체 공급실적 대비 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2-63〉 중앙회 이용가공사업 공급실적(금액)(1965~2021)

(단위 : 백만 원)

연도	합계	제빙	냉동(천C/S)	냉장(천C/S)	가공
1965	7	6	1		
1968	20	18	1	1	
1971	41	33	2	6	
1974	116	76	7	33	
1978	394	202	19	173	
1981	1,122	470	54	598	
1982	1,509	752	54	682	21
1984	1,687	814	61	793	19

연도	합계	제빙	냉동(천C/S)	냉장(천C/S)	가공
1987	1,798	852	56	865	25
1991	1,795	852	41	902	
1994	4,455	953	216	1,314	1,972
1997	7,900	403	351	2,516	4,630
2001	22,202	341	551	7,020	14,290
2004	14,709	370	615	6,041	7,683
2007	17,580	354	357	6,692	10,177
2011	42,231	290	202	6,830	34,909
2012	45,874	294	204	7,209	38,167
2013	80,934	316	219	6,866	73,533
2014	81,853	324	234	7,921	73,374
2015	90,708	290	246	8,392	81,780
2016	87,757	353	234	8,422	78,748
2017	77,500		154	6,010	71,336
2018	114,247		183	8,372	105,692
2019	100,855		111	8,625	92,119
2020	93,543		161	8,434	84,948
2021	97,215		80	11,212	85,923

제4절 가격안정화사업

1. 개요

가. 의의

수산물 가격안정화사업은 어획물의 수급조절을 통한 어업인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자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수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정부비축 사업과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수매지원 사업을 총칭하고 있다. 두 사업 간 목표는 유사하나 지원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정부비축 사업은 경상사업으로 정부보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매지원 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다.

정부비축사업이란 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저장성이 있는 수산물을 주생산시기에 수매·비축하여, 비생산·성수기에 이를 판매·처분 또는 수출하거나 부족한 수산물을 수입비축(수입 후 가공비축 포함)하여 이를 판매·처분하는 정부사업을 수협중앙회가 위탁받아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정부비축사업을 통하여 수협은 국민 식생활에 기여도가 높고 가격변동이 심한 고등어, 명태, 오징어 등을 성어기에 직접 수매를 통한 비축으로 산지의 어가를 지지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설과 추석 등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시기에 소비지도매시장 및 B2B 입찰 등을 통하여 수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 보호로 국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는 사업이다.

반면 수매지원사업은 수산물의 저장·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생산자단체 포함)에게 수산물 수매지원자금을 지원(융자)하여 주 생산 시기에 수산물을 적극 수매 함으로써 산지 출하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필요한 시기에 방출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수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나. 법적 근거

이 사업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지구별수협의 제60조(사업) 제1항2호 수산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업종별수협의 제107조(사업) 제1항2호 수산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수산물가공수협의 제112조(사업) 제1항2호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수협중앙회의 제138조(사업) 제1항8호 국가와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본 사업의 지원과 관련한 법률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9조(기금의 용도)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비축사업 등) 및 제42조(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등이다.

2. 사업추진체계

정부비축 사업추진은 집행주체는 해양수산부이며, 주관기관은 수협중앙회로 해양수산부가 당해년도 사업계획수립 후 기금운영 계획 및 협의를 통해 확정시키고, 이후 해양수산부가 지침시달 및 자금배정을 실시하게 된다. 다음 단계로 수협이 수매를 실시하고 수매한 물품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한 수매품은 수협이 보관하며, 이후 해양수산부의 판매지침이 시달되면 수협이 전통시장 등에 판매하게 된다.

정부비축 사업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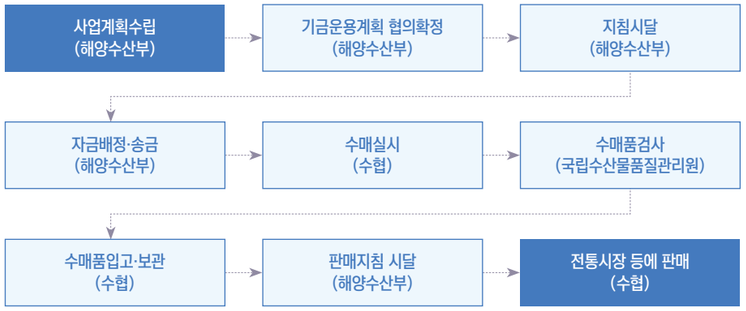

수매지원 사업추진은 품목별 수매계획 물량 및 수매·판매 시기는 해양수산부가 당해연도 생산 및 수급동향 등을 감안하여 별도 시달한다. 지원대상은 수협중앙회(자회사 포함), 지구별·업종별 조합, 어촌계 등 생산자 조직, 수산물가공·유통업체이며, 선정기관은 수협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이다.

수매지원 사업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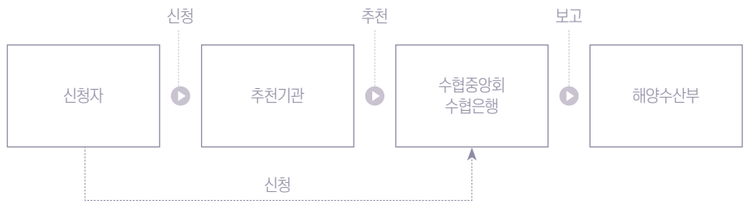

수매지원 사업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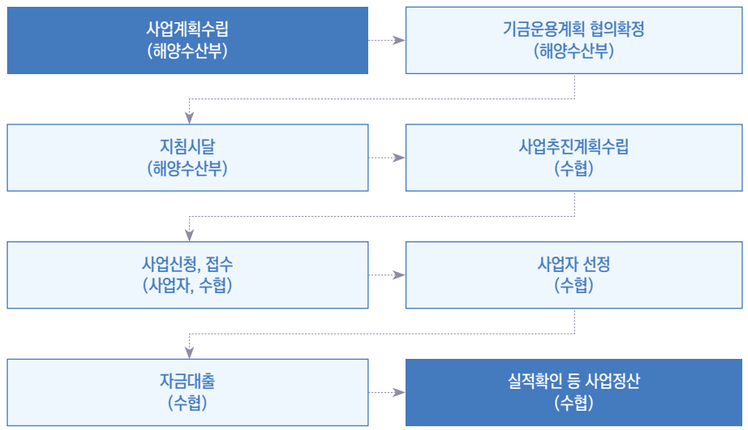

3. 발전과정

1970년 초반 이후 국내에 반입되기 시작한 북양어획물로 인하여 연근해 수산물의 가격은 다른 물가에 비하여 가격상승 추세가 낮게 형성되었으며, 더욱이 유류파동으로 인한 어업경비의 상승으로 연근해 어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시기였다.

1970년 당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에 의거 1970년부터 정부비축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에 의거 수산물가격평준화사업으로 수협에서 대행하게 되었다. 취급품목이 김, 건오징어, 건멸치 등 건어물 위주로 실시하고 있어서 선어를 생산하는 어민에게는 직접적인 수혜가 적을 뿐 아니라 정부비축사업 자체도 소비자물가안정 시책 위주였다.

따라서 수협에서는 정부비축사업과는 별도로 생산어업인의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중간상인의 이윤을 배제하기 위하여 1975년 8월 13일 '수산물가격지지사업규정'을 제정하여 '수산물 가격지지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 사업 시행 초기에는 수협의 한

정된 자금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 1976년 12월 31일 공포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1977년 7월 1일 제정되어 본 법규에 의거 정부의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사업활성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제정되면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농안기금을 지원하여 수매·비축하게 함으로써 가격안정을 기하고자 냉동보관, 통조림가공, 연제품을 가공하는 저장·가공업체와 수출용 업체를 대상으로 민간비축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농안기금의 지원은 수협을 창구로 하여 수매실적 및 사후관리도 수협이 수행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취급품목이 건어물 위주에서 1993년에는 냉동고등어, 1994년부터는 냉동조기, 냉동갈치 등 수매품목이 확대되어 품목을 수매함으로써 정부비축사업이 수산물 가격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는 수산물 가격안정화를 위한 정부비축사업이 냉동수입고등어, 냉동수입명태, 냉동원양오징어, 활어(송어, 향어, 자라), 삼치 등 다양하게 수매품목이 확대되어 품목을 수매하였으며, 2010년대부터는 품목이 다소 감소하여 냉동오징어, 냉동고등어, 냉동조기, 냉동명태, 냉동갈치를 중심으로 품목을 수매하고 있다.

〈표 4-2-64〉 연도별 수매비축품목

연도	수매품목
1970~1980	김, 건오징어, 건멸치
1981	김, 건멸치
1982	김, 간미역, 건오징어
1983	간미역
1984	김, 간미역, 건오징어
1985	김, 건멸치, 간미역, 건오징어
1986	김, 건멸치, 간미역
1987	건멸치, 간미역, 건오징어, 냉동오징어
1988	간미역, 냉동오징어
1989	김, 간미역, 건오징어, 냉동오징어, 수입조기
1990	김, 건멸치, 냉동오징어, 수입조기
1991	김, 건오징어, 냉동오징어
1992	김, 간미역, 건오징어, 냉동오징어, 건오징어
1993	김, 간미역, 건미역, 건오징어,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1994	김, 건멸치, 간미역, 건미역, 건오징어,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냉동조기, 냉동(수입)갈치
1995	김, 간미역, 건미역, 건오징어,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냉동조기, 냉동갈치, 수입건멸치
1996	김, 간미역, 건미역, 건오징어,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냉동조기, 냉동갈치, 수입건멸치
1997	김, 간미역, 건미역, 건오징어,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냉동조기, 수입건멸치
1998	김, 간미역, 건미역, 건오징어, 냉동고등어, 냉동꽁치,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냉동조기, 냉동갈치
1999	김, 간미역, 건오징어,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냉동조기, 냉동갈치, 원양오징어
2000	김, 간미역, 건오징어,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냉동조기, 냉동갈치
2001	김, 간미역, 건미역, 건오징어, 냉동고등어, 냉동원양오징어, 냉동명태, 냉동조기, 냉동갈치, 수입고등어

연도	수매품목
2002	김, 간미역, 냉동수입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수입명태, 냉동조기, 냉동갈치, 냉동조피볼락
2003	김, 간미역,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수입명태, 냉동조기, 냉동갈치
2004	김,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냉동갈치
2005	김,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갈치, 활어(송어, 향어, 자라)
2006	김,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삼치, 조피볼락, 넙치
2007	냉동오징어, 냉동고등어, 마른오징어
2008~2009	냉동오징어, 냉동고등어, 마른오징어, 냉동명태
2010	냉동명태, 냉동갈치
2011	냉동오징어, 냉동고등어, 냉동조기, 냉동명태, 냉동갈치
2012	냉동오징어, 냉동고등어, 냉동조기, 냉동명태, 냉동갈치, 마른오징어
2013	냉동오징어, 냉동고등어, 냉동조기, 냉동명태, 냉동갈치, 마른오징어, 천일염
2014	냉동오징어, 냉동고등어, 냉동조기, 냉동명태, 냉동갈치, 마른오징어, 냉동삼치, 천일염
2015	냉동오징어, 냉동고등어, 냉동조기, 냉동명태, 냉동갈치, 마른오징어, 냉동삼치, 천일염, 마른멸치
2016	냉동고등어, 냉동조기, 냉동명태, 냉동갈치, 마른오징어, 냉동삼치, 천일염, 마른멸치
2017	냉동오징어, 냉동조기, 냉동명태, 냉동갈치, 냉동삼치, 천일염, 마른멸치
2018	냉동오징어, 냉동조기, 냉동명태, 냉동갈치
2019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냉동갈치, 마른멸치
2020	냉동오징어, 냉동고등어, 냉동조기, 냉동명태, 냉동갈치, 마른멸치
2021	냉동오징어, 냉동고등어, 냉동조기, 냉동명태, 냉동갈치, 마른멸치, 마른오징어

2015년 3월 27일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수산부분을 분리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또한,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수산업기본법)」이 2015년 6월 22일에 제정되었다.

4. 사업실적

1994년 정부비축 물량은 2만 212톤으로 수매지원은 506억 8,600만 원이며, 1997년 정부비축 물량 2만 591톤, 수매지원 396억 2,700만 원, 2004년 정부비축 물량 2만 541톤, 수매지원 385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이후 정부비축 물량이 감소하였으며, 2013년부터 정부비축 물량이 증가하여 2013년 정부비축 물량 1만 9,377톤에 436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정부비축 물량이 다소 증감하면서 2021년에는 정부비축 물량 2만 3,674톤에 862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다.

〈표 4-2-65〉 정부비축(수매지원) 실적(1970~2021)

(단위 : 톤, 백만 원)

연도	정부비축	
	물량	금액
1970	121	33
1971	187	130
1974	102	283
1981	142	1,717
1984	2,242	4,052
1987	3,753	13,741
1991	3,600	17,507
1994	20,212	50,686
1997	20,591	39,627
2001	6,762	18,634
2004	20,541	38,590
2007	4,508	8,567
2011	6,773	15,929
2012	7,457	21,739
2013	19,377	43,677
2014	24,167	67,989
2015	24,142	66,540
2016	18,835	54,724
2017	29,951	63,783
2018	23,158	62,662
2019	16,136	69,026
2020	13,324	61,318
2021	23,674	86,225

제3장
공제사업

1962
2022

제1절 개요

1. 의의

공제란 동종의 위험에 처한 다수의 사람들이 결합하여 일정한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거액을 보장받는 경제적 제도를 말한다. 즉, 다수의 경제주체가 결합하여 확률적으로 산정된 소액을 부담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자금을 보상받아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제는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라는 협동조합 정신에도 부합하는 경제적 장치로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용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공제의 가장 중요한 효용으로서 위험을 보장하고 있다. 즉 공제는 예기치 못한 재해로 인하여 경제적 파탄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연적 사고로 인하여 필요하게 될 자금의 준비 기능을 갖는다.

둘째, 저축의 효용을 가지고 있다. 저축은 많은 고생을 통하여 조금씩 불려 나가는 것이나, 공제는 먼저 목표재산을 만들어 놓고 불입하는 방법이므로 단기간의 저축기능은 물론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저축기능까지 겸비하고 있다.

셋째, 공제는 신용증대의 효용을 가지고 있다.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자는 소액의 공제료를 납입하나 다수의 경제주체가 결합되므로 거액의 투자재산이 형성되고, 이 자금은 집중투자 운용됨으로써 새로운 대단위 경제단위를 형성하며, 그 운용의 결과는 가입자의 신용을 높이는 효용을 가져온다.

2. 특징

수협공제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첫째,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어업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상품에 따라서는 비조합원인 일반인도 수협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수협공제는 경제적 약자인 어업인에게 발생하는 우연적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으므로 「수협법」 제12조에 따라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협은 생명공제, 손해공제 및 제3공제를 실시할 수 있다.[1]

셋째, 수협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실시, 공제계약 및 공제료와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 그밖에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협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2]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해양수산부장관 훈령 제2010-93호, 2010.10.4. 제정)에 따라 수협 공제사업을 감독한다.

넷째, 수협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어업인을 위한 정책보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3. 사업추진체계

수협공제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에 공제보험본부와 정책보험부를 두고 있으며, 관내 조합의 공제보험업무를 총괄하는 9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90개 조합은 대부분 공제과를 두고 관할 상호금융 영업점을 통하여 공제업무를 하고 있고, 수협은행은 영업점을 통하여 방카슈랑스 방식으로 공제보험을 대리 취급하고 있으며, 모집책으로 수협공제모집인 8,391명이 활동하고 있다.

4. 공제사업의 종류

가. 생명공제

생명공제는 공제가입 목적에 따라 보장성, 저축성, 연금성 공제로 구분된다. 보장성 공제는 각종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사망 등으로 사람의 생명과 관련한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하는 공제로서 입원, 수술급여와 각종 진단금 지급을 보장한다. 저축성 공제는 결혼자금, 주택마련 등의 단기, 중기, 장기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목돈 마련에 유용하며, 연금성 공제는 일정기간 공제료 납입 후 일정 연령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조

2 「수협법」 제169조 제8항

나. 손해공제

손해공제는 공제가입 목적에 따라 화재공제와 기타공제로 나눌 수 있다. 화재공제는 불의의 화재로 소실될 수 있는 건물과 가재도구, 집기비품 등을 주된 공제대상으로 하며, 각종 재해로 인한 사고로부터 주택 및 건물(공장) 등의 손해를 보상한다. 기타공제는 신원보증, 임원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 선주배상책임, 선박공제, 건설공사공제 등 보증과 더불어 책임에 대한 배상을 보장한다.

〈표 4-3-1〉 수협 생명·손해공제 상품(2021년 말 기준)

구분		상품
생명공제	종신/정기보험	무배당 Sh플러스정기 더블보장공제, 무배당 Sh행복플러스종신공제, 무배당 Sh스마트정기공제(갱신형), 무배당 Sh The알찬종신공제
	건강/암보험	무배당 Sh부담없는 치매간병공제, 무배당 Sh다이렉트치아공제(갱신형), 무배당 Sh심뇌혈관질환 알찬건강공제, 무배당 Sh다이렉트암공제(갱신형), 무배당 Sh계속받는암공제(갱신형), 무배당 Sh멀티암공제(갱신형), 무배당 Sh안심海실버공제, 무배당 Sh The건강한치아공제(갱신형), 무배당 Sh돌려주는 건강공제, 무배당 Sh이팔청춘 척추보장공제, 무배당 Sh입원수술100세보장공제(갱신형)
	상해보험	무배당 Sh신가입간편공제(갱신형), 무배당 Sh어업인상해공제
	저축/연금보험	무배당 Sh든든한저축공제, 무배당 Sh다이렉트저축공제, 무배당 Sh VIP저축공제, 무배당 Sh행복海연금저축공제, 무배당 Sh바로주는연금공제, 무배당 Sh사랑海저축공제, 무배당 Sh행복海순수연금공제
손해공제	장기종합보험(대인)	무배당 Sh환영海공제, 무배당 Sh다이렉트여성암공제, 무배당 Sh잘보이는눈건강공제(갱신형), 무배당 Sh다이렉트운전자공제, 무배당 Sh호흡기질환보장공제, 무배당 Sh온가족종합상해공제, 무배당 Sh자녀사랑공제, 무배당 Sh운전자공제
	장기종합보험(재물)	무배당 Sh사업장유비무환종합공제, 무배당 Sh우리집유비무환종합공제
	일반손해보험	주택화재공제, 보통화재공제, 신원보증공제, 선주배상책임공제, 선박공제, 임원배상책임공제, 생산물배상책임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공제, 패키지공제,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전자금융배상책임공제, 건설공사공제, 재난배상책임공제, 태양광종합공제,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 조립공제, 완성토목물공사공제, Sh단체상해공제, 금융기관종합공제

다. 정책보험

정책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과 어업인 안전보험으로 구분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2004년 1월 1일부터 수협이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어업과 관련된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고 있다.

어업인 안전보험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016.1.7 시행)에 의거 운용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서, 수협이 보험사업자로 선정되어 출시되었다.

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업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어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에 제정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3]에 의거하여 수협중앙회가 보험사업자로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강풍), 해일, 풍랑, 적조,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이상조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이 유실, 멸실 또는 폐사, 파손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보장한다.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과 「농작물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통합 제정하여 2010년 1월부터 시행

제2절 발전 과정

1. 1930~1950년대

최초의 공제사업은 1937년 조선어업조합중앙회의 발족과 동시에 시행한 어선공제사업으로서 1944년 3월 수산단체 종합계획에 따라 조선수산업회가 어선공제사업을 승계하였으나 해방과 동시에 중단되었다.

이후 정부는 어선보전책으로 어선공제사업기금 1,625만 환을 국고보조하여 대한수산중앙회로 하여금 어선공제를 실시케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수산중앙회는 1954년 12월부터 어선공제사업에 착수하였고, 공제사업회계도 특별회계로 분리하였으며, 1958년 5월부터는 선원이 해난사고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또는 신체가 불구가 되었을 때 유가족이나 불구선원에 대한 생계를 보장하고 선주의 안정적 어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원공제사업도 추가로 실시하였다.

2. 1960년대

1962년 4월 1일 수협은 발족과 동시에 수협 공제사무국에서 대한수산중앙회의 어선공제와 선원공제를 승계받아 수행하였고, 1963년에는 어선만기공제를 실시하였으며, 1966년에는 조직을 공제부로 확대 개편하여 공제사업기반을 확충하였다.

1977년 3월 공제 병원선 출항식

1967년 6월에는 시설공제(1978년 10월 21일 풍수해공제를 폐지하고, 시설공제를 화재공제로 명칭 변경)를 실시하였고, 1969년 4월에는 어구공제(1978년 10월 21일 어구공제를 폐지하고 1985년 5월 8일 어선보통공제 어구특약으로 흡수)를 실시하였다.

3. 1970년대

1960년대까지는 어선, 선원 및 시설물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손해공제사업 위주로 실시하였으나 1970년도부터는 생명공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종합공제사업기관으로 성장 발전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1970년 3월부터 후생공제와 자녀공제사업을 실시하였고, 1978년 11월 신종생명공제사업으로 저축공제와 복지공제, 교육공제사업을 개발하여 실시하였으며, 1979년 7월부터는 어선건조공제사업을 실시하였다. 한편, 1973년 8월에는 어선보통공제를 통해 인수해 오던 원양어선은 어선 노후화(대부분 15년 초과)와 사고율 과다(75%)로 공제인수를 중단하였다.

4. 1980년대

1982년부터 1984년에 걸쳐 불안정한 금리체계가 유지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고 공제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생명공제사업은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시행하여 단기저축공제를 비롯한 9개 생명공제를 신규로 출시하였다.

〈표 4-3-2〉 수협 생명공제사업의 개시(1980년대)

종류	개시연도	종류	개시연도
단기저축공제	1982	무지개 공제	1985
복지양로공제	1982	치료공제	1986
장학공제	1983	재해보장공제	1987
생활복지공제	1984	복지저축공제	1989
새희망공제	1985		

한편, 손해공제사업은 1983년 9월 종전 화재공제사업의 인수를 중지하고 보통화재 및 주택화재공제로 대체 실시하였으며, 신원보증공제와 선원특수공제(1996년에 선원종합공제로 명칭 변경)를 개발하여 출시하였다.

5. 1990년대

회원조합의 공제추진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1992년 3월 31일에 전 조합에 공제과를 설치하였고, 동년 10월 2일에는 회원조합 상호금융 영업점에서 생명공제 원수취급을 허용하여 공제판매 영업망을 확대하였다.

1993년 3월 1일에는 중앙회의 서울 소재 신용영업점에 공제업무 전담 직원 25명을 배치하고 공제영업점에 전업모집인(수협 가정설계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7년 3월에는 중앙회 공제판매 직할 기구인 공제 영업단을 서울, 대전, 광주에 신설하여 운영하였고, 이후 IMF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로 2001년 2월 폐쇄되었다.

1992년 10월 27일 복지저축공제의 종합온라인 전면 실시를 시작으로 1993년 10월 2일 손해공제인 어선보통공제 및 선원종합공제 종합온라인 개발과 1994년 무지개공제, 복지양로공제 등 생명공제사업과 선원보통공제, 화재공제 등 손해공제사업에 대한 종합온라인 실시로 공제업무 전산화를 완성하였다.

공제료 납입 편의를 위하여 1999년 7월 1일에는 전 금융기관의 요구불 계좌에서 공제료 자동이체가 가능한 지로계좌 자동이체 제도를 실시하였고, 1999년 8월 1일부터는 어음에 의한 공제료 수납제도를 도입하였다.

21C 수협의 주도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 편익 위주의 사업전개로 협동조합보험으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공제사업 대약진운동'을 추진하였다.

이 운동을 통하여 공제료는 목표 4,300억 원의 106%인 4,544억 원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점포 판매와 더불어 점포생활설계사 1,623명을 위촉하였다. 아울러 어선공제가입 캠페인과 생명공제가입 캠페인을 전개하여 공제가입 분위기를 확산함으로써 공제사업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고, 공제상품의 재보험가입으로 사업의 안정성 도모와 담보능력도 제고시켰다.

6. 2000년대

가. 2차 공제사업 대약진운동 전개

1997년 말 IMF 관리체제 시대에 회계제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충당금 등의 일시적립과 채권시가평가제 등으로 2000년도에 거액의 손실을 시현하였으며, 2002년 1월 이후에는 회원조합에 가입하는 저축성 생명공제의 공제차익(공제이자)에 대한 과세 등으로 시련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04년에 공제사업 대약진운동인 '수협보험 TWO by TWO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보장성 생명공제 확대에 초점을 두고 이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공제상품의 대외경쟁력이 한층 높아졌고, 2004년에 계약고는 목표 9조 3,000억 원의 110%인 10조 2,079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공제료는 목표 2,858억 원의 83%인 2,368억 원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2004년 2월 27일 TWO by TWO 운동 평가 보고대회

나. 방카슈랑스 대비

방카슈랑스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5일에는 민영보험사인 삼성화재와 업무 제휴로 저당물손실보상보증공제를 공동개발 판매하는 등 신규보험시장에 적극 진출하였고, 2003년에는 특화 상품인 어업인 상해공제, 의료건강공제, 즉시연금공제, 슈퍼저축공제Ⅳ, 생산물배상책임공제를 개발 판매하였다.

2005년에는 창구판매 위주의 개인고객 대상 영업방식에서 탈피하여 공무원 및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시장에도 진출하여 육군본부, 노동부,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태평양, 경남은행 등 민간 기업을 유치하였다.

다. 정책보험사업 실시

2004년 1월부터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어선원 보험과 어선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실시하였고, 영세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대하여 2021년 현재 국고로 어선의 규모(톤수)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15~71%를 보조하고 있고, 지방비로 어선의 규모(톤수)에 따라 3.9~86.2%를 보조하고 있다. 어선재해보상보험에 대하여도 2021년 현재 국고로 어선의 규모(톤수)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15~71%를 보조하고 있고, 지방비로 어선의 규모(톤수)에 따라 1.5%~ 65.5%를 보조하고 있다. 2004년에는 정책보험의 조기 정착 및 어업인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륙지에 소재한 공제보험지부(6개소)를 어업현장인 어촌으로 전진 배치하였다.

라. 양식보험사업 실시

2008년 7월 1일에 넙치양식보험을 시범사업으로 하여 양식어업인의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양식보험사업을 실시하였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수협이 보험사업자로 선정되어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2008년에는 태풍, 폭풍, 해일, 적조로 인한 자연재해를 보상하였다.

이 보험은 태풍, 강풍,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자연재해보험이고, 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보전하는 국가재보험의 특징이 있다.

2021년 8월 적조 피해현장(안면도)

마. 조직체계 정비와 전문인력 확충

2002년에는 조합자금부를 신설하여 공제자금을 전담하여 운용하고 있고, 2004년에 공제보험지부(6개소)를 어업현장으로 전진 배치하였다. 2008년부터 지역별 6개 회원조합을 '공제보험거점조합'으로 선정하여 회원조합의 공제사업 활성화 전진기지 역할을 거점조합들이 담당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8개 조합이 '공제보험선도조합'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02년에는 점포생활설계사 1,824명을 위촉하고, 공제보험사업소는 공제모집인을 직접 운용하였고, 2005년에는 공제고객 상담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6년에는 공제생활설계사를 운영함으로써 판매전문 인력을 확충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공제리더스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2007년부터는 '공사모'를 운영함으로써 수협직원들의 공제보험 판매스킬을 강화시키고 있다.

2006년 5월 11일 공제리더스클럽 워크숍

7. 2010년대

가. 차세대 전산시스템 오픈

2010년에 차세대 공제전산시스템을 오픈하고, 동년 11월에는 공제기초시스템과 공제 ALM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012년에는 LAT(부채적정성평가) 및 EV(내재가치산물)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공제보험사업 기틀을 마련하였다.

나. 어선원의 산재보험 의료재활제도 시행

1) 어선원보험 재활급여 시범사업

요양이 종결된 장해어선원이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후유증이 악화되거나 그 후유증상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정기적인 관찰, 의학적 처지 등을 통하여 증상의 악화 또는 합병증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여 노동능력을 유지·회복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재활급여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다.

2) 합병증 등 예방관리사업

이 사업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의거하여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요양이 종결된) 어선원재해자 중에서 합병증 등의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으로서 수협중앙회가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과 수협중앙회가 자문의사의 자문을 거쳐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에게 상병치유 후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찰과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의 처방, 수술을 제외한 처치, 물리치료(한방물리요법 포함), 시술,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및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을 한다.

다. 양식보험사업 확대 실시

2010년에 전복, 2011년에는 조피볼락과 굴·김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으로 추가되었고, 2012년에는 해상가두리어류 6종(참돔, 감성돔, 돌돔, 농어, 쥐치, 기타 볼락)을 출시하여 대상품목이 11개로 확대되었다.

2013년에는 숭어, 멍게(우렁쉥이), 뱀장어, 미역이 추가되었으며, 2014년에는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2015년에는 송어, 가리비, 톳, 2016년에는 능성어, 미더덕, 오만둥이, 2017년에는 터봇, 2018년에는 전복 종자가 추가되어 2021년 말 현재 총 28개 양식어류에 대하여 재해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상가두리어류 양식시설물과 육상수조식 양식시설물에 대해서도 재해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보상하는 재해도 2010년에 초기 4개 재해에 풍랑이 포함되었고, 2011년에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이상조류, 2012년에 낙뢰, 2016년에 조수(潮水)가 포함되었으며, 2019년에는 호우, 홍수, 대설이 보상재해에서 제외되는 등 2021년 말 현재는 13개

재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있다.

2014년 6월에는 보험료 사전납부제를 시행하여 인수승인 심사 중에도 보험료 수납이 가능하게 되었고, 2018년에는 손해방지비용 보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19년 5월에는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 판매를 중단하였다. 2020년에는 무사고 할인제도를 도입하였고, 2021년에는 저염분 보장을 추가하였으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 보급형 상품과 굴양식보험 양식불능보장도 도입하였다.

라. 준법지원활동

2014년에는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고객보호 및 대외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내부통제를 통하여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제사업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윤리경영을 통하여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고 있다.

마.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RBC) 공시

수협 공제사업도 2015년도부터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RBC)[1]을 공시하였다. 이 비율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 보험업법상 재무건전성 기준은 100% 이상 유지해야 하나, 금감원에서는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수협 공제사업은 2021년 말 현재 188.28%이다.

바. 어업인 안전보험 실시

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고 어선원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어업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업인 안전보험을 2016년 1월부터 실시하였다.

공제료의 국고보조율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차원에서 기존 50%에서 2019년 1월에는 70%로 확대하였다.

1 가용자본(출자금, 이익잉여금, 공제기금, 대손충당금, 지도사업이월금)
요구자본(보험회사에 내재된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용 위험액 규모)

사. 준비금평가 실시

기존의 공제료 적립금은 공제상품 판매 시 적용된 예정이율, 예정위험율 등을 이용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였으나, 공제상품 판매 후 이자율 하락 및 위험율 증가 등으로 향후 공제금 지급을 위해 기 적립된 책임준비금보다 추가적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됨에 따라 2017년 2월에 공제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이용하여 기존에 적립한 책임준비금이 미래의 부채를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8. 2020년대

가. 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 도입

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료를 중앙회에 납부하며[2], 기금의 적립수준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2020년 8월부터 시행하였다.

2019년 말 기준 기금적립률은 목표규모 상한선 0.96%를 초과하여 1.15%를 시현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표 <4-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목표규모 상한선을 초과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료가 면제되었다.[3]

〈표 4-3-3〉 수협 공제사업의 기금적립률 및 조치현황

(단위 : %)

목표규모		기금적립률		조치
하한	상한			
0.38	0.96	2019년	1.15	목표규모 상한 초과에 따른 차기년도 보험료 100% 감면
		2020년	1.12	
		2021년	1.11	

2 (매 사업연도 말 책임준비금의 잔액 + 매 사업연도 말 수입공제료의 총액) × 1/2 × 1천분의 5 이내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험료(0.18%)를 납부

3 공제사업 비용 절감 43억 원(2020년), 44억 원(2021년), 44억 원(2022년 추정)

나. 디지털 기반 확충

2020년에는 온라인 사이버창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공제상품 판매개시와 함께 사고청구, 가격공시, 증명서 발급 등을 온라인상에서 가능하게 하였고, 찾아가는 영업환경을 위한 '영업지원 전자청약시스템'을 구축하여 태블릿 PC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환경 구현으로 영업채널을 확대하고 디지털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였다.

2021년 5월 페이퍼리스시스템 오픈 시연

이 시스템을 통하여 공제가입을 위한 보장분석, 공제료 계산, 청약, 납부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고, 보장자산 리모델링을 통한 상품추천과 보장 분석서, 약관, 증권 등의 각종 증명서를 고객에게 실시간(카카오톡, E-mail)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책보험시스템은 모바일 웹 환경을 구축하여 정책보험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온라인 공제상품판매 및 사이버창구 개발 등 회원조합 디지털뱅킹 경쟁력 강화와 수익 증대를 위한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수협 공제사업의 주요 연혁은 다음 <표 4-3-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3-4〉 수협 공제사업 연혁

일자	연혁
1962. 4. 1	수협 발족과 대한수산중앙회 공제사업 승계
1962. 10. 1	어선만기공제 개시, 조직 확대 개편(공제부)
1967. 6. 10	시설공제 개시
1970. 4. 15	후생공제, 어민자녀공제사업 개시
1978. 10. 21	어선특수공제 폐지(어선보통공제 특약으로 흡수)
1978. 11. 1	저축공제, 복지공제, 교육공제사업 개시
1979. 7. 31	어선건조공제 개시

일자	연혁
1983. 6. 15	공제모집인제도 운영(공제요원, 공제장려원)
1986. 7. 1	대어민 진료비 대지급제도 실시
1992. 3. 31	전 조합 공제과 설치 운영
1994. 4. 1	국제보험단체연합인 ICMIF 및 AOA(아태지역연맹) 가입
1999. 1. 1	선박공제 개발 시행
1999~2001	'3개년 공제사업 대약진운동' 추진
2000. 12. 5	삼성화재와 업무 제휴
2001. 12. 31	신용사업부문과 공제업무 대리 취급 계약 체결
2002~2004	'수협보험 TWO by TWO 운동' 추진
2003. 4. 1	어업인 상해, 즉시연금, 생산물배상책임공제 판매
2004. 1. 1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실시
2005. 12. 14	제1회 수협경험위험률 제정
2008. 7. 1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실시
2008. 12. 29	수산인 안전공제 실시
2010. 3. 15	차세대 공제 전산시스템 오픈
2010. 10. 13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제60조의 2)에 따른 공제감독기준 도입 공제규정, 공제규정(예) 및 공제규정부속서 제정
2012. 11. 21	수입공제료 1조 원 달성
2013. 3. 18	수협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제계약(보험)대출 실행
2014. 1. 1	공제보험부, 정책보험부 분리
2014. 12. 23	고객지원센터 운영 개시
2015. 3. 31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RBC) 공시 시작 (2014 회계연도부터 적용)
2016. 1. 7	어업인 안전보험 실시
2016. 12. 12	전화약관대출 시행
2017. 2. 15	LAT(부채적정성평가) 도입에 따른 준비금평가 실시
2017. 5. 10	스마트폰뱅킹 공제계약(약관)대출 시행
2018. 10. 15	공제 직영 TM센터 개설
2019. 5. 2	Sh수협보험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2020. 5. 18	비대면(다이렉트) 공제상품 출시
2020. 8. 11	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 도입
2020. 10. 19	영업지원전자청약시스템 구축
2021. 7. 15	부서 명칭 변경(공제보험부 → 공제보험본부)

2022년 3월 수협보험 연도대상 시상식

제3절 부문별 사업실적

1. 사업실적 총괄

가. 지난 50년(1962~2011)

지난 50년간 공제사업은 비약적으로 성장 발전하였다. 1971년에 계약고 223억 원, 공제료 수입 4억 원에 지나지 않았으나 1980년에는 계약고 2,604억 원, 공제료 수입 50억 원으로 1971~1980년간 계약고가 12배 성장하였고, 1983년에는 공제료 수입 100억 원을 달성하였다. 이어 1989년에는 계약고 1조 4,593억 원으로 1980년 대비 6배 성장하였으며, 1995년에는 공제료 수입 1,000억 원을 달성하였다.

2001년에는 계약고 9조 4,149억 원, 공제료 수입 4,544억 원을 시현하였고, 2002년부터 시작한 2차 공제사업 대약진운동 등을 통하여 보장성 생명공제를 적극 추진하고 공제상품의 대외경쟁력을 높인 결과, 2011년에는 계약고 212조 9,916억 원, 공제료 수입 8,566억 원의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표 4-3-5〉 수협 공제계약 실적(1962~2011)

(단위 : 건, 억 원)

연도	건수	계약고	공제료
1962	4,503	8	0.2
1965	8,306	12	0.3
1968	12,817	110	2
1971	15,116	223	4
1974	30,943	428	6
1977	74,284	952	14
1980	84,628	2,604	50
1983	105,621	5,262	119
1986	120,843	8,749	204
1989	122,839	14,593	277
1992	132,047	24,309	482
1995	186,063	47,100	1,120
1998	207,978	66,574	2,272
2001	301,700	94,149	4,544
2004	226,039	102,079	2,368
2007	278,235	507,111	2,941
2011	411,327	2,129,916	8,566

주) 정책보험과 양식보험 미포함, 이하 같음

수협 공제계약 실적 추이(1962~2011)

(단위 : 건,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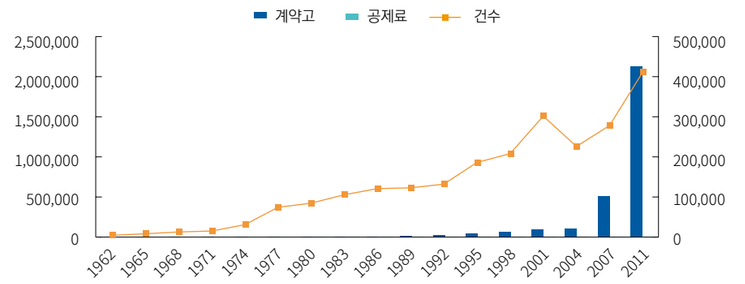

한편, 공제금 지급은 1971년에 2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에는 21억 원, 1989년 225억 원, 2001년에는 2,376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40년간 평균 지급률은 수입공제료 대비 56%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자연재해 빈발로 공제금 지급이 증가하여 2004년에는 120%까지 폭증하기도 하였으며, 2011년에는 2,070억 원 공제금 지급에 지급률 24.2%를 기록하였다.

〈표 4-3-6〉 수협 공제금 지급 실적(1962~2011)

(단위 : 건, 억 원)

연도	건수	공제금	지급률(%)
1962	66	0.1	50
1965	96	0.2	67
1968	315	1	50
1971	391	2	50
1974	301	4	67
1977	923	6	43
1980	2,182	21	42
1983	3,472	55	46
1986	9,007	139	68
1989	12,629	225	81
1992	12,225	330	68
1995	14,897	612	55
1998	17,393	1,163	51
2001	32,856	2,376	52
2004	37,383	2,837	120
2007	25,774	1,785	61
2011	29,825	2,070	24

나. 최근 10년(2012~2021)

2012년에 생명공제 사업부문의 약진으로 처음으로 공제료 수입 1조 원을 달성하였고, 이후는 수익성 확보를 위한 보장성공제 판매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에 최근 2년 동안 보장성 상품 16건을 출시하였고, 보장성공제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실적 평가 시 보장성공제 비중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 생명공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공제사업환경을 구축하였다.

〈표 4-3-7〉 수협 공제료 수입 실적(2012~2021)

(단위 : 억 원)

연도	합계	생명공제	손해공제	정책보험	양식보험
2012	13,106	11,332	443	1,275	56
2013	10,887	8,674	518	1,533	162
2014	10,135	7,574	623	1,695	243
2015	10,660	7,829	687	1,828	316
2016	10,406	7,305	737	2,027	337
2017	10,293	6,911	764	2,152	466
2018	11,033	7,357	801	2346	529
2019	11,038	7,395	838	2,406	399
2020	11,130	7,520	901	2,425	284
2021	11,518	7,689	1,022	2,565	242

주) 정책보험: 어선원 및 어선보험과 어선인안전보험 포함, 이하 같음

수협 공제료 수입 추이(2012~2021)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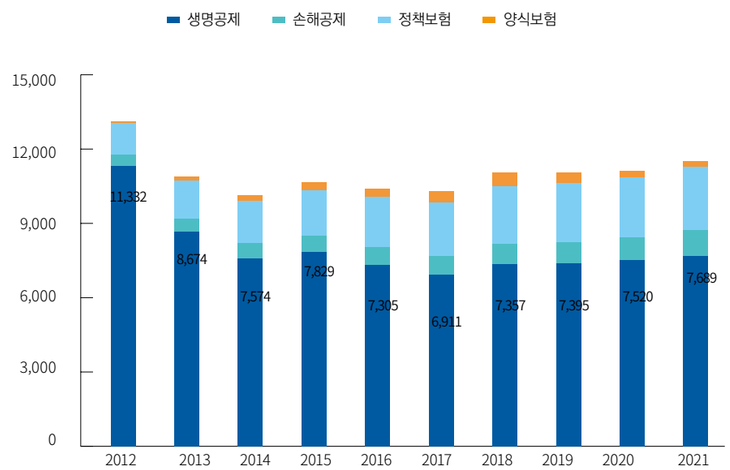

공제금 지급은 2011년 지급률 24%에 이어 2012년에 36%를 나타냈으나, 2016년 이후 양식보험의 손해율 증가로 지급률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68%까지 상승하였으며, 이후 양식보험의 손해율 조정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급률이 하락추세로 반전되어 2021년 말 기준 61%의 지급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 4-3-8〉 수협 공제금 지급실적(2012~2021)

(단위 : 억 원)

연도	합계	생명공제	손해공제	정책보험	양식보험	지급률(%)
2012	4,737	3,200	174	1,000	363	36
2013	5,099	3,678	109	1,103	209	47
2014	5,663	3,784	483	1,217	179	56
2015	5,919	4,262	165	1,337	155	56
2016	4,596	2,320	148	1,466	662	44
2017	4,775	2,296	163	1,644	672	46
2018	6,995	4,384	205	1648	758	63
2019	7,474	4,265	237	1,734	1,238	68
2020	6,584	4,059	228	1,965	332	59
2021	7,038	4,680	275	1,975	108	61

수협 공제금 지급 추이(2012~2021)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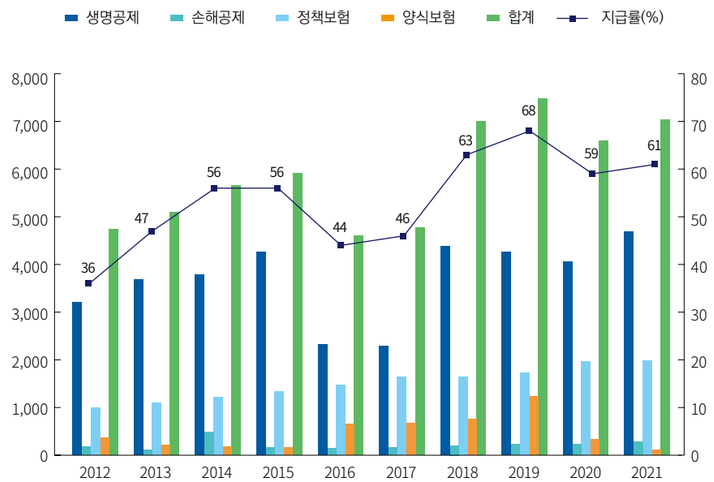

2. 생명공제

가. 지난 50년(1962~2011년)

생명공제의 공제료 수입은 1992년 238억 원에서 2011년에는 8,077억 원으로 연평균 20% 성장하였다. 공제금 지급은 1992년 143억 원에서 2011년에는 1,692억 원으로 연평균 14% 증가하였고, 2004년에는 공제금 지급이 공제료 수입을 초과하여 지급률이 111.3%가 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지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에는 20.9%였다.

〈표 4-3-9〉 수협 생명공제 실적(1992~2011)

(단위 : 건, 억 원)

연도	가입			지급		지급률(%)
	건수	계약고	공제료	건수	공제금	
1992	59,822	2,504	238	8,362	143	60.1
1995	84,356	6,343	754	10,202	294	39.0
1998	116,199	16,013	1,781	12,552	717	40.3
2001	178,548	23,678	3,977	27,439	2,009	50.5
2004	153,913	29,129	2,197	32,161	2,446	111.3
2007	196,330	37,712	2,823	25,364	1,730	61.3
2011	296,797	58,881	8,077	18,784	1,692	20.9

수협 생명공제 실적 추이(1992~2011)

(단위 : 건,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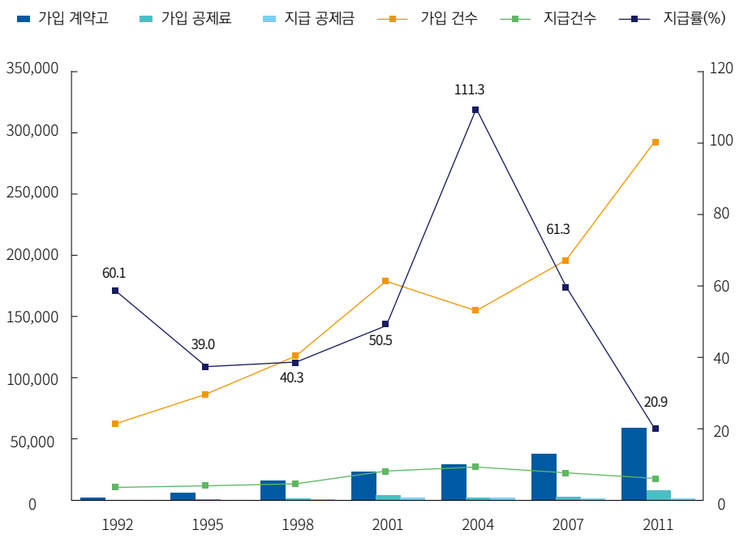

나. 최근 10년(2012~2021년)

최근 10년간 공제료 수입은 2012년에 역대 최고의 실적인 1조 1,332억 원을 거양하였으나, 이후 수익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공제 위주 판매 전략에 따라 2017년에는 6,911억 원까지 하락하였고,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1년 말에는 7,689억 원을 시현하였다. 공제금 지급은 2012년 28.2%, 2016년과 2017년 각각 31.8%, 33.2%의 양호한 지급률을 보였으나, 최근 다시 상승하여 2021년 말 현재 60.9%를 나타내고 있다.

〈표 4-3-10〉 수협 생명공제 실적(2012~2021)

(단위 : 건, 억 원)

연도	가입			지급		지급률(%)
	건수	계약고	공제료	건수	공제금	
2012	317,153	61,397	11,332	25,240	3,200	28.2
2013	328,827	63,783	8,674	28,739	3,678	42.4
2014	331,641	65,944	7,574	25,362	3,784	50.0
2015	335,164	66,773	7,829	26,850	4,262	54.4
2016	310,225	65,839	7,305	17,247	2,320	31.8
2017	306,990	66,626	6,911	18,281	2,296	33.2
2018	303,869	67,281	7,357	28,049	4,384	59.6
2019	298,549	66,850	7,395	23,086	4,265	57.7
2020	292,583	66,330	7,520	18,647	4,059	54.0
2021	278,849	65,016	7,689	22,023	4,680	60.9

수협 생명공제 실적 추이(2012~2021)

(단위 : 건,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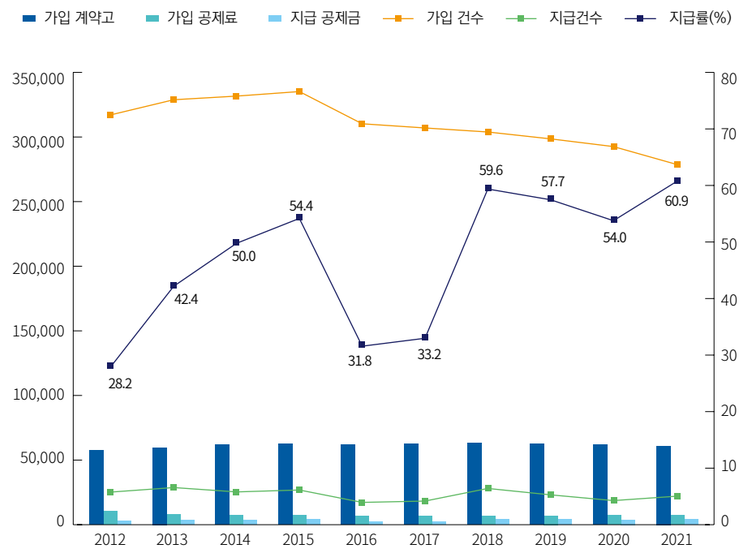

3. 손해공제

가. 지난 50년(1962~2011년)

손해공제 공제료 수입은 1992년 245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4년에는 172억 원, 2007년에는 118억 원까지 하락하였으며, 2011년에는 488억 원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공제금 지급은 1992년 187억 원에서 2011년 378억 원으로 연평균 4% 증가하였는데 2004년에는 공제료 수입 172억 원, 공제금 지급 391억 원으로 지급률이 무려 227.3%에 달하였다.

〈표 4-3-11〉 수협 손해공제 실적(1992~2011)

(단위 : 건, 억 원)

연도	가입			지급		지급률(%)
	건수	계약고	공제료	건수	공제금	
1992	72,225	21,806	245	3,863	187	76.3
1995	101,707	40,757	366	4,695	318	86.9
1998	91,779	50,562	491	4,841	446	90.8
2001	123,152	70,471	568	5,417	367	64.6
2004	72,126	72,950	172	5,222	391	227.3
2007	81,905	469,399	118	410	55	46.6
2011	114,530	2,071,035	488	11,041	378	77.5

수협 손해공제 실적 추이(1992~2011)

(단위 : 건,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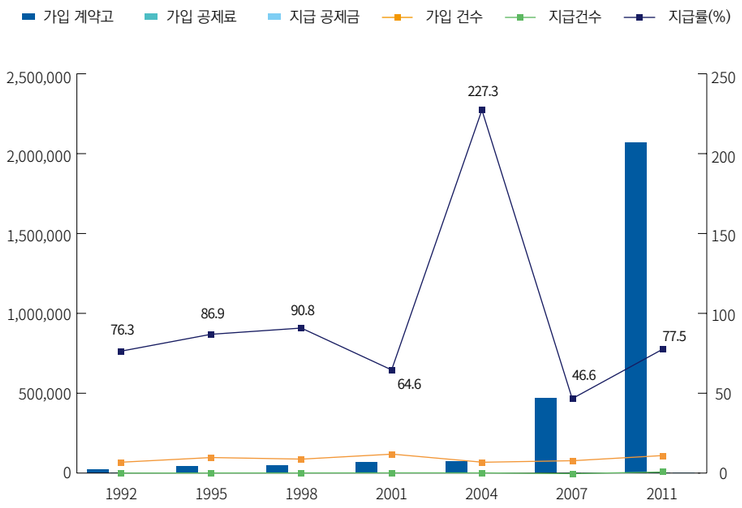

나. 최근 10년(2012~2021년)

최근 10년간 공제료 수입은 2012년 443억 원에서 연평균 10% 증가하여 2021년에는 1,000억 원을 넘어선 1,021억 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공제금 지급은 2012년 173억 원에서 2021년에는 275억 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91억 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으며, 2014년에는 예년의 지급률을 2배 이상 상회하는 77.5%의 지급률을 보이기도 하였다.

〈표 4-3-12〉 수협 손해공제 실적(2012~2021)

(단위 : 건, 억 원)

연도	가입			지급		지급률(%)
	건수	계약고	공제료	건수	공제금	
2012	105,823	461,326	443	12,676	173	39.2
2013	108,117	234,000	518	12,842	109	21.0
2014	110,393	196,198	623	16,049	483	77.5
2015	111,478	204,398	688	19,989	165	24.0
2016	132,162	261,709	737	23,352	148	20.1
2017	149,174	321,568	764	26,753	163	21.3
2018	159,346	349,930	801	31,255	205	25.6
2019	171,228	371,877	838	38,363	237	28.2
2020	186,343	419,173	901	40,086	228	25.3
2021	205,250	494,932	1,021	43,338	275	26.9

수협 손해공제 실적 추이(2012~2021)

(단위 : 건,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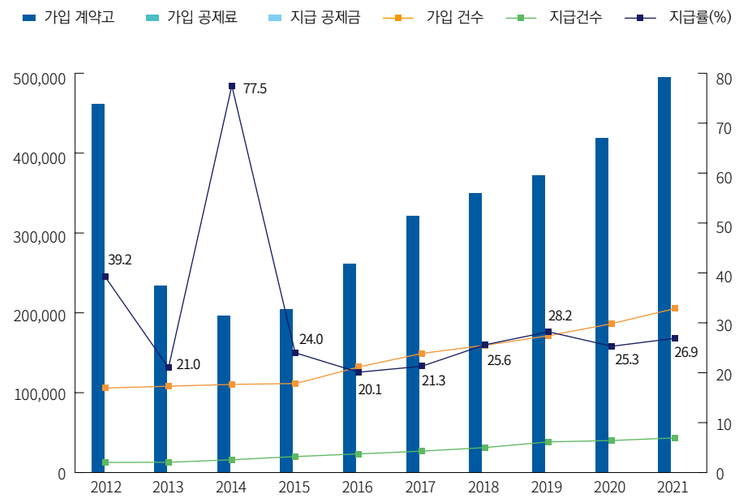

4. 정책보험

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이 어업 활동 중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의 재해를 입은 경우 요양급여, 상병급여, 유족급여 등 어선주가 부담해야 하는 피해보상책임(선원법)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영세 어선원과 어선주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를 보조하고 있는데, 국고보조의 경우에는 승선하는 어선의 규모(톤수)에 따라 15~71%의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정부 예산에 따라 매년 차이가 있다.

지방비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어선의 톤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2021년 현재 최소 3.9%(부산, 100톤 이상)에서 최대 86.2%(제주, 3톤 미만)까지 이다.

〈표 4-3-13〉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국고보조(2021)

(단위 : %)

10톤 미만	30톤 미만	50톤 미만	100톤 미만	100톤 이상
71	63	39	31	15

〈표 4-3-14〉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방비 보조(2021)

(단위 : %)

자치단체	3톤미만	5톤미만	10톤미만	20톤미만	30톤미만	50톤미만	100톤 미만	100톤 이상
경기	80	80	50	10	10	-	-	-
인천	80	80	50	10	10	10	10	10
강원	50	50	45	30	30	20	10↓	10↓
충청	43	43	43	43	43	43	43	43
전북	55	55	55	35	35	15	15	-
전남	40	40	30	20	20	15	10	-
경북	40	40	40	25	25	20	10	10
경남	40	40	30	20	20	15	10	10
울산	50	50	35	25	25	13	10	10
부산	70	70	25	15	15	9	4.2	3.9
제주	86.2	55.2	55.2	37.8	37.8	16.4	11.6	9.4

주1) 지방비 보조액=국고보조 제외한 선주부담 보험료×지방비 보조율
주2) 보조율은 각 자치단체의 예산 및 방침에 따라 변경 가능(2021년 기준)

나.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 좌초, 충돌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재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어선의 재해피해에 대비하여 국고와 지방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국고보조의 경우, 어선의 규모(톤수)에 따라 15~71%의 보조율을 차등적용하고 있고, 정부 예산에 따라 매년 차이가 있다. 한편, 종전의 어선보통공제와 소형어선공제에 대하여 2001년에는 10톤 미만에 한하여 50%, 2002년부터는 20톤 미만에 대하여 50%를 국고보조하였다. 지방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어선규모에 따라 최소 1.5%(부산, 100톤 이상)에서 최대 65.5%(제주, 5톤 미만)의 공제료를 보조하고 있다.

〈표 4-3-15〉 어선 재해보상보험 국고보조(2021)

(단위 : %)

10톤 미만	20톤 미만	20톤 이상
71	63	15

〈표 4-3-16〉 어선 재해보상보험 지방비보조(2021)

(단위 : %)

자치단체	5톤 미만	10톤 미만	20톤 미만	30톤 미만	50톤 미만	100톤 미만	100톤 이상
경기	40	30	10	10	-	-	-
인천	40	30	10	10	-	-	-
강원	35	30	20	15	15	15↓	15↓
충남	43	35	27	27	19	10	-
전북	25	25	4.7	4.7	4.7	4.7	-
전남	35	35	-	-	-	-	-
경북	25	25	20	10	10	10	10
경남	35	35	10	10	-	-	-
울산	35	35	25	25	13	10	10
부산	35	35	10	7	5	2	1.5
제주	65.5	31.0	16.2	4.7	4.7	4.7	4.7

주1) 지방비 보조액=국고보조 제외한 선주부담 보험료×지방비 보조율
주2) 보조율은 각 자치단체의 예산 및 방침에 따라 변경 가능(2021년 기준)

다. 사업실적

2004년부터 시작한 정책보험 사업 경우 첫해에는 공제료 수입 430억 원에 공제금 지급 191억 원으로 지급률이 44%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증가하여 2007년에는 96%, 2011년에는 85%까지 지급률이 상승하였다. 2021년 말 공제금 지급률은 77%로 최근 10년간은 연평균 74%의 공제금 지급률을 나타내고 있고, 어선원과 어선주의 신속한 재활과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표 4-3-17〉 수협 정책보험 실적(2004~2021)

(단위 : 억 원)

연도	수입 공제료	지급공제금	지급률(%)
2004	430	191	44
2007	748	715	96
2011	1,081	915	85
2012	1,275	1,000	78
2013	1,533	1,103	72
2014	1,695	1,217	72
2015	1,828	1,337	73
2016	2,027	1,466	72
2017	2,152	1,644	76
2018	2,346	1,648	70
2019	2,406	1,734	72
2020	2,425	1,965	81
2021	2,565	1,975	77

수협 정책보험 실적 추이(2004~2021)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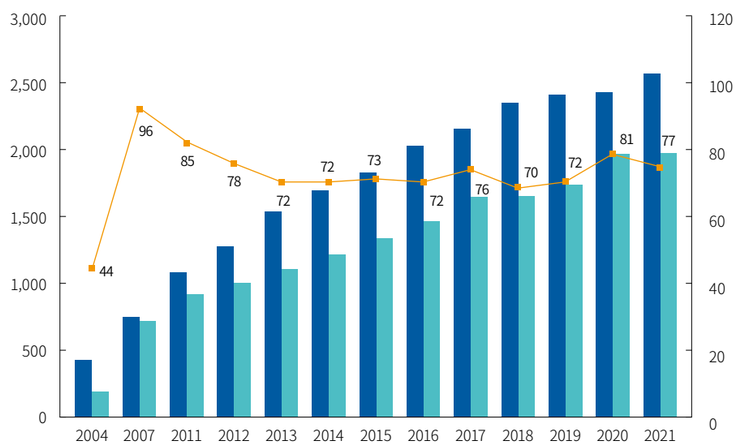

5.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재해보험사업을 시작한 2008년에 2억 원에 불과하였던 공제료 수입은 대상품목 확대로 2013년에 100억 원을 돌파하였고, 2018년에는 529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는 공제료 수입이 242억 원에 그쳤다. 자연재해 빈발로 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고, 2012년에는 공제금 지급률이 650%에 달하였으며, 2021년까지 연평균 175%의 지급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2년 태풍 덴빈·볼라벤과 2013년~2020년에 걸쳐 자주 발생한 태풍, 적조, 저수온, 고수온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 결과이다. 따라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거대한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점을 감안할 때 손해율 개선과 계약관리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표 4-3-18〉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실적(2008~2021)

(단위 : 억 원)

연도	수입공제료	지급공제금	지급률(%)
2008	2	-	-
2011	26	27	104
2012	56	364	650
2013	162	209	129
2014	243	179	74
2015	316	141	45
2016	337	664	197
2017	466	672	144
2018	529	758	143
2019	399	1,238	310
2020	284	332	117
2021	242	108	45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실적 추이(2008~2021)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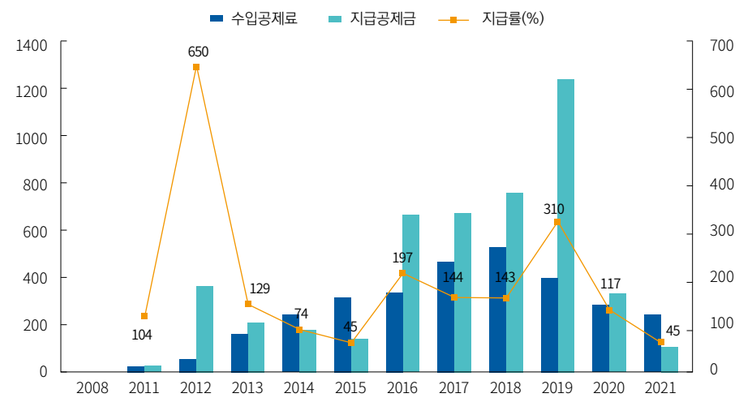

제4절 경영실적

1. 자산의 조달과 운용

가. 지난 50년(1962~2011)

공제계약은 장기계약이므로 수입 공제료를 재원으로 하여 공제금 지급에 대비하는 책임준비금[1]등을 적립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등으로 운용하게 된다.

조달부문에서 책임준비금은 1981년에 82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공제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1990년 469억 원, 2001년 7,697억 원, 그리고 2011년에는 1조 8,697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운용부문에서 유가증권은 1981년 48억 원, 1990년 362억 원, 그리고 2011년에는 1조 7,833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나, 대출채권 운용은 1999년 573억 원을 정점으로 이후는 감소하여 2011년에는 211억 원에 불과하였다.

〈표 4-3-19〉 수협공제 자산 조달과 운용(1974~2011)

(단위 : 억 원)

연도	유가증권	대출채권	책임준비금
1974	-	-	1
1978	-	-	23
1981	48	-	82
1984	153	52	255
1987	319	104	368
1990	362	113	469
1993	703	160	787
1996	1,157	524	1,943
1999	2,720	573	4,094
2002	5,906	314	7,697
2005	4,872	431	5,181
2008	6,626	91	7,347
2011	17,833	211	18,697

주) 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등 차감 후 금액임, 이하 같음

1 책임준비금은 장래에 발생할 공제금 및 환급금의 지급 재원으로서 매 사업연도 말에 적립한다.

수협공제 자산 조달과 운용 추이(1974~2011)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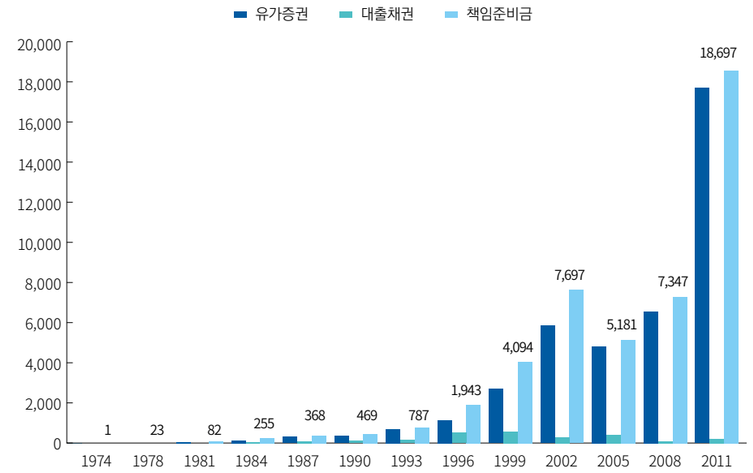

나. 최근 10년(2012~2021)

최근 10년간 유가증권 운용규모는 연평균 15%씩 증가하여 2021년 말 현재 3조 5,825억 원이다. 유가증권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한도는 공제자산 운용기준 상 공제자산 총액 범위 내이며, 최근의 운용수익률은 자금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나 3~4%대를 시현하고 있다.

2012년 이후 공제계약대출을 확대하여 대출채권은 연평균 25% 성장하여 2021년 말 현재 8,418억 원이다. 2016년에는 전화약관대출을 시행하였고, 2017년에는 스마트폰뱅킹 공제계약(약관)대출을 시행함으로써 자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하고 있다.

〈표 4-3-20〉 수협공제 자산 조달과 운용(2012~2021)

(단위 : 억 원)

연도	유가증권	대출채권	책임준비금
2012	23,392	1,138	24,539
2013	27,206	1,333	27,261
2014	27,884	2,971	29,097
2015	29,176	4,446	30,801
2016	32,021	5,263	33,920
2017	33,887	5,684	36,429
2018	34,235	6,194	37,208
2019	35,211	6,718	38,103
2020	34,439	8,463	39,410
2021	35,825	8,418	40,246

수협공제 자산 조달과 운용 추이(2012~2021)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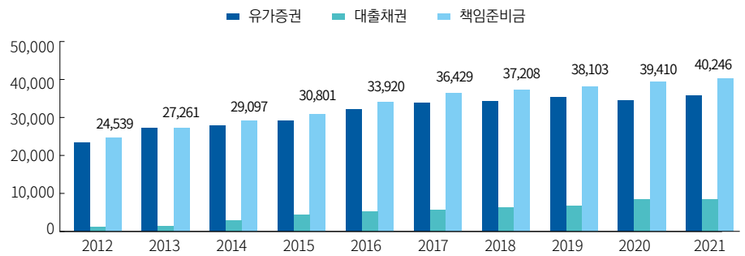

2. 수익성

최근 10년간 당기순이익은 연평균 53억 원이고, 2016년에는 낮은 사망공제금 지급률과 자산의 수익적 운용으로 12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면서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2021년에는 62억 원의 실적을 시현하였다.

위험공제료 대비 사망공제금 비율은 2012년 111.67%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73.35%로 최저점을 기록하였으며 이후에 다시 상승하여 최근에는 90%대를 나타내고 있다.

〈표 4-3-21〉 수협공제 수익성(2012~2021)

(단위 : 억 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당기순이익	6	25	24	50	126	50	71	52	62	62
위험공제료 대 사망공제금 비율	111.67	91.04	86.02	73.35	78.64	78.44	75.04	90.07	89.89	91.07

수협공제 수익성 추이(2012~2021)

(단위 :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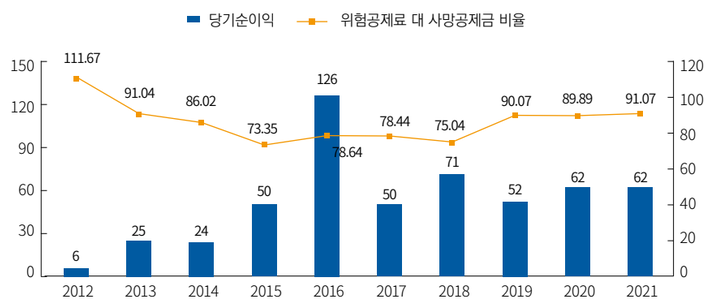

3. 건전성

건전성의 지표가 되는 가중부실자산 비율은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총액에서 건전성분류에 따른 고정이하로 분류되는 자산의 합산액 비율을 말한다. 최근 10년간 동 비율은 평균 0.3%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고, 2017년에는 0.01%의 최저비율을 나타냈으며, 2021년 말은 0.11%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4. 자본적정성

자본 적정성의 지표가 되는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기준금액에 대한 지급여력금액의 비율을 말하는데,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공제사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최근 10년의 기간 중 2013년에 220.6%로서 최고의 비율을 시현한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19년에는 162.0%의 최저 비율을 나타냈으며, 최근에는 다시 상승하여 2021년 말 현재 188.28%이다.[2]

5. 분쟁처리

수협공제(보험)는 공제계약의 내용 또는 공제금 지급 등에 관하여 계약자와 이견 또는 분쟁이 있을 경우 공제사업자와 계약자 상호 간에 자치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협중앙회에 다음과 같이 공제분쟁심의위원회와 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표 4-3-22〉 수협 공제분쟁심의위원회와 보험심사위원회

구분	공제분쟁심의위원회	보험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수협법 시행규칙」 제9조의 2(공제규정 기재사항)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및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규약 제140조(심사청구의 제기)
구성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 구성, 위원임기는 3년(연임 가능)	당연직 위원(2인)으로 중앙회 재해보험사업담당이사(위원장) 및 담당부서장, 위촉직 위원(16인)으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중앙회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16명 이내의 자로 구성, 위원임기는 3년(연임 가능)
임무 (심의내용)	공제와 관련한 분쟁의 심의·조정	보험급여 지급의 적부심사와 지급액 결정,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중앙회에 제출한 심사청구사항,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참고 : 2020년 말 기준 민간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생명보험회사 297.3%, 손해보험회사 234.2% 임

제4장
상호금융사업

1962
2022

제1절 개요

1. 의의

상호금융(Mutual Credit)이란 생활권이 같은 사람들이나 직장인 등 공동유대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조합을 만들고 각자의 여유자금을 조합에 맡기며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서로 간의 자금과부족을 해결하는 금융을 말한다.

수협 상호금융은 어업인의 저축의식 고취와 재산 형성을 도모하고, 수협의 자체 자금 조성에 기여하며, 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상호금융은 수협의 고유 목적사업인 교육·지원과 경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여 수협의 자립기반 구축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특징

일반적으로 상호금융은 예금을 수입하고 대출을 한다는, 업무의 성격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은행금융과 같으나 협동조합금융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상호금융은 조합원 상호 간에 호혜적인 금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금융과 구분되며, 주거래 대상은 조합원이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준조합원 및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상호금융은 조합원 간의 인적신뢰를 바탕으로 신용을 기초로 하는 다수 소액의 개인금융이 이루어지고, 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상통하며, 연합조직인 중앙회를 통하여 조정이 이루어진다.

셋째, 상호금융 자금의 조달 금리와 운용 금리가 은행금리보다 높다. 여유자금의 원활한 흡수를 위하여 예탁금의 금리를 은행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출 금리도 은행금리보다 높다.

넷째, 상호금융 예탁금 거래자는 은행금융 예금 거래자와는 다르게 연합조직인 중앙회의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서 일정한도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는다.

1981년 수협 저축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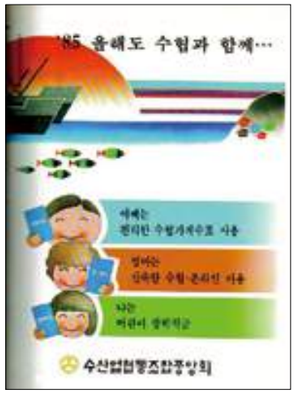

1985년 수협 저축광고.

3. 사업추진체계

수협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상호금융본부를 비롯한 4개 본부를 두고 있으며, 90여 회원조합에 본점 90개와 지점 405개, 출장소 1곳을 두고 있다. 2021년 말 현재 본점을 포함한 상호금융 영업점 496개소 중 153개소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하고 있다.

4. 사업의 종류

회원조합은 「수협법」 제60조(사업)에 의거하여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의 수납업무, 내국환업무,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 업무의 대리, 조합원의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수협중앙회는 「수협법」 제138조(사업)에 따라 회원수협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의 운용·관리, 상호금융에 대한 지도, 회원조합의 예금·적금의 수납·운용, 회원조합에 대한 자금 대출, 국가 등 기관의 금융업무 대리,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회원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수신

기본적으로는 조합원들에 대한 예금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나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인 일반고객을 대상으로도 수신업무를 하고 있다.

나. 여신

회원수협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과 어음할인의 여신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인 일반고객을 대상으로도 대출 등의 여신업무를 하고 있다.

〈표 4-4-1〉 수협 상호금융 여·수신 상품(2021년 말 기준)

구분		상품
수신	온라인 가입상품	플러스회전예탁금, 자유만기정기예탁금, 월복리정기예탁금, 정기적금, 정기예탁금, Sh모바일적금, 새물결우대예탁금
	목돈마련을 위한 상품	정기적금, Sh모바일적금, 내맘대로적금, 바다야!고맙다 Sh적금, 티끌모아월복리적금, 우리사장님 우대적금, 더드림월복리적금, 꿈나무미래적금, 자유적립적금, 매일적금, 장학적금, Sh오픈뱅킹우대적금, Sh얼쑤!(All秀!) 적금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상품	플러스회전예탁금, 자유만기정기예탁금, 월복리정기예탁금, 정기예탁금, Sh주거래우대정기예금, 더블만족정기예탁금, 상호고수익통장, Sh얼쑤!(All秀!) 정기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새물결우대예탁금, 수협하도금지킴이통장, 수협군인연금평생안심통장, 수협희망지킴이통장, 수협국민연금안심통장, Sh주거래기관예탁금, Sh평생함께海통장, 우리사장님우대통장, 하이팬프리예금, 사랑해주거래통장, 수협행복지킴이통장, Sh외국인주거래통장, 행복海우리수산예금Ⅰ, 힘내라!우리사장님우대예금, 샐러리맨리치예금, e-free예금, 기업자유예탁금, 자립예탁금, 보통예탁금, 상호종합통장, Sh얼쑤!(All秀!) 입출금통장
	세금혜택 상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기업전용상품	Sh주거래기관예탁금, 기업자유예탁금
여신	온라인전용대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예적금담보대출
	담보대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예적금담보대출, 토지분양자금대출, 프리미엄 토지관련자금대출, 임차(전세)보증금대출, 우리사장님우대대출, 예탁금자동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어린이집대출, 부동산경락대금대출, 냉동수산물담보대출, 교회대출, NPL채권담보대출
	주택자금대출	공동주택 중도금집단대출, 주택마련도우미대출, 임차(전세)보증금대출, 수협모기지론, 부동산경락대금대출
	신용대출	우량직장인퀵론, 우량고객우대대출, 더블플러스론, S-ClassLoan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개인사업자대출	카마스터즈론, 주유소대출, 우리사장님우대대출, 어린이집대출, 스마트택시론, 수산물판매업자우대대출, 매일매일행복대출, 더블플러스론, 냉동수산물담보대출, 교회대출, S-ClassLoan
	기업자금대출	카마스터즈론, 주유소대출, 우리사장님우대대출, 어린이집대출, 더블플러스론, 냉동수산물담보대출, 교회대출, S-ClassLoan
	공공자금대출	교회대출
	틈새 여신상품	26개 상품
	지역특화 여신상품	25개 상품

제2절 발전 과정

1. 태동

상호금융의 역사는 전통적인 어업계 활동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나 근대적인 상호금융은 1907년 「지방금융 조합령」에 의한 금융조합의 발족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하에서 수산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수산금융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고, 일제시대 어업조합체제에서도 어민들은 사금융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해방 이후 수협으로 조직이 정비된 이후 1960년대 말까지도 어민들은 여전히 사금융에 의존하였고, 이에 정부는 1972년 8월 3일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통하여 사채를 양성화하고, 농어촌 사설계와 유사금융조직을 규제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1972년 8월 17일에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 공포되어 제93조의 특례조항에 의거하여 수협이 상호금융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즉시 업무를 시작하지 못하다가 1974년부터 1980년까지 전개하는 농어촌 1조 원 저축운동의 세부계획에 따라 상호금융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게 되었다

2. 첫 출발

1974년 6월 10일 제주시수협과 한림수협에서 처음으로 상호금융업무를 취급하였고, 업무 개시 첫해에 47개 조합 67개 점포에서 4개의 수신상품으로 12억 7,800만 원의 예탁금 실적을 올렸다.

1976년 12월 31일에는 「수협법」 제14조 제3항을 신설하여 어촌계에서 상호금융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1978년 3월 18일 여수수협 율촌 어촌계를 시작으로 법인 어촌계에서도 상호금융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1970~80년대 상호금융 점포

3. 조직 확충

1983년 1월 10일부터 자기앞수표 발급업무를 시작하였고, 1991년 4월 1일에는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그리고 국민주청약예탁금을 온라인으로 취급하게 되었다. 또한 1993년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신지원부에서 상호금융부를 분리 신설하였다.

1997년 IMF 체제 이후 예금자보호제도의 일환으로 1998년 1월에 상호금융 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0년 말에는 예탁금 규모가 6조 2,349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회원조합의 꾸준한 예탁금 증가로 대출금 이외 다른 운용처가 필요해 짐에 따라 체계적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2002년 1월에는 조합자금부를 신설하였고, 2018년에는 자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4. 상호금융 관리강화

2001년 1월 「수협법」 개정으로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검사권이 해양수산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었고,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에 의거 규제를 받음에 따라 제충당금 100% 적립과 경영공시 의무가 생겨났다.

또한,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는 조합별로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자기자본이 취약한 회원조합은 업무취급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해양수산부의 '수협 경영혁신 및 합리적 지원 방안'에 따라 영업점 설치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는데 경영개선대상 영업점이나 조합원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편의 영업점을 지정하는 등 영업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5. 상호금융 발전방안 수립(수협발전 5개년 계획)

2007년에는 회원조합 상호금융사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호금융 발전방안을 수립하였는데, 여기서는 예탁금 14조 원, 대출금 9조 5,000억 원, 연체율 7%, 내부적립률 4%를 2012년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본 발전방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고, 이하에서는 이들 추진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과 이에 따라 실제 추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수협 상호금융 발전방안 (수협발전 5개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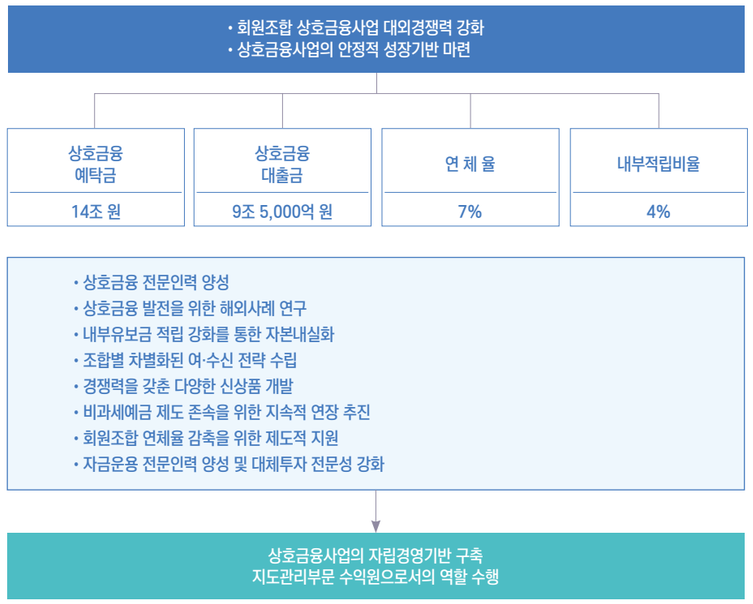

2013년 2월 상호금융 5개년계획 목표달성 시상식 및 경영전략협의회.

가. 중점추진 사항

1) 상호금융 전문인력 양성

중앙회 금융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2001년 예금보험공사와의 MOU 체결 이후 입사한 중앙회 상호금융사업 소속 직원에 대하여 금융영업점을 체험하게 하였고, 금융관련 1인 1자격증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처음 상호금융을 접하는 직원과 상호금융에 대해 알고 싶은 직원을 위하여 사이버연수 교육자료를 제작하였다.

회원조합 상호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수협 자체 전문역 제도를 마련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였고, 마케팅 상담전문역, 여신심사역 등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아울러 CS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조합자체 서비스 강사로 활동하게 하였고, 직원 개별 친절서비스 평가 시스템도 마련하였다.

2) 내부유보금 적립 강화를 통한 자본내실화

상호금융 내부유보금 적립에 대한 내부규정을 명확히 하고, 5개년 계획 기간 내 상호금융특별회계 위험가중자산 대비 적립금 비율 목표를 2012년까지 4%로 설정하고 매년 적립하되 구체적인 적립금액은 리스크관리협의회에서 별도로 결정하여 추진하였다.

3) 조합별 차별화된 여·수신 전략 수립

가) 여신전략

채무자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위험프리미엄을 차별화함으로써 신용대출을 활성화

하기로 하고, 지역별, 조합별 특성에 따라 최적의 틈새시장, 예를 들면 각종 수산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수산물 유통, 운반, 판매업자 등 수산관련 유관업체에 대해 여신 지원과 같은 지역밀착형, 고객밀착형 여신전략을 수립하였다.

2013년 10월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CS리더 교육

나) 수신전략

영업점별 목표 부여 후 성과결과에 따라 물품지원 등을 차등화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신용카드와 공제상품을 연계 판매하였으며,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수익증권 판매 등의 수신업무영역을 확대하였다

4)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신상품 개발

가) 수신 신상품 개발

전자금융 이용고객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 위주로 전환하고 관련 상품을 개발하였으며, 어업인 전용상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신용카드, 공제 등과 연계한 복합상품을 개발하였다.

나) 여신 신상품 개발

틈새시장 상품으로 자동차 등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을 개발하였고, 후순위 부동산담보 대출로 수산물 유통, 운반, 판매업자 등 대출 소외계층을 위한 대출상품을 개발하였다. 또한 인터넷뱅킹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 즉시 대출상품을 병행 개발하였고, 외부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저위험성 대출상품도 개발하였다.

5) 비과세 예탁금 제도[1] 존속을 위한 지속적 연장 추진

예탁금 비과세 시한 연장이 2009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수혜기관인 농협, 신협 등과 공동실무 추진팀을 구성하여 2009년 초 시한 연장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사적으로 비과세 연장을 추진하였다.

6) 회원조합 연체율 감축을 위한 지원 강화

연체대출금 과다 보유 및 연체율 급등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연체감축 지원을 집중 실시하였으며, 본회 연수원 집합교육 및 우편 원격교육 등 다양한 교육채널을 통하여 채권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체감축 캠페인 및 프로모션 등을 실시하여 우수 회원조합 및 관련 임직원을 포상하였다.

또한, 회원조합 부실채권 매각 활성화를 위해 수협 NPL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였으며, 채권관리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및 채권매각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추정손실 분류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농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과의 채권관리 업무교류 등 파트너십을 통하여 회원조합 연체율 감축에 기여하였다.

7) 자금운용 전문인력 양성 및 대체투자 전문성 강화

상호금융 분야 종사 1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운용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차적, 직급별,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였고, 자금운용업무 관련 자격취득자 우대 제도를 실시하였다.

나. 목표와 실적

상호금융 발전방안에 따라 'POWER START 1410', 'DYNAMIC RUN 1410', 'DOUBLE SPEED 1510', 'SUPER JUMP 1510', 'PERFECT FINISH 1510'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상호금융 경영혁신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표 4-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11월에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였고, 2012년 말에는 예탁금 15조 6,942억 원, 대출금 10조 3,789억 원을 달성하였다.

아울러 2010년과 2011년 연속 당기순이익 1,000억 원을 돌파하였고 2012년 11월 말 기준 연체율 4.85%를 달성하였다.

1 1976년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현행 「조례특례제한법」에 의거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하여 1인당 3,0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표 4-4-2〉 수협 상호금융 발전방안(수협발전 5개년 계획) 목표 대 실적

(단위 : 억 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11
예금	목표	-	100,000	112,000	124,000	137,000	150,000
	실적	90,846	101,161	121,421	134,880	143,339	156,079
	달성률	-	101.16	108.41	108.77	104.63	104.05
대출금	목표	-	68,000	76,000	83,000	91,000	100,000
	실적	63,893	72,293	81,292	86,020	95,196	102,668
	달성률	-	106.31	106.96	103.64	104.61	102.67
연체율	목표	-	8.00	7.00	6.75	6.50	6.25
	실적	7.27	6.75	6.44	5.57	4.62	4.85
	달성률	-	118.51	108.69	121.18	140.69	128.86

6. 비이자 부문 영역 확장

가. 외국환업무

2010년에는 진해수협과 제주어류양식수협을 시작으로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하였는데 2021년 10월 말 기준 61개 조합에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최근 8년간 취급 실적 1억 4,695만 달러에 수수료 수입 15억 원을 실현하였다.

나. 신용카드와 펀드업무

신용카드업무는 2000년 12월부터 대리 취급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 2조 95억 원, 수수료 수입 368억 원의 실적을 실현했다. 2011년에는 펀드업무도 취급함에 따라 비이자 부문에도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마케팅 역량도 강화하였다.

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판매 대행사업 개시

2014년부터는 영업점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의 일환인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대행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2021년 말 기준 지난 8년간 판매 및 회수 6,139억 원, 수수료 수입 65.1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

7. 상호금융 경영목표 및 전략 수립(수협 비전 2021 발전계획)

2012년 1월에 '수협 비전 2021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바다 너머 미래를 봅니다(we see beyond sea)'라는 슬로건으로 '하나의 가치, 하나된 힘, 최고의 협동조합'이라는 비전 2021을 선포하였고, 상호금융사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표 4-4-3〉 2021 수협 상호금융사업 경영목표

(단위 : 억 원)

경영목표	2011년(실적)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21년
조합예수금	143,339	150,000	159,000	168,000	178,000	250,000
자산	48,531	52,500	55,650	58,800	62,300	88,000

가. 회원조합 수익원 확대

지방소재 조합의 대도시권 진출 방향을 설정하고, 개별조합의 대도시권 점포 설치 시 리스크관리 및 대출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대도시권에 진출하는 영업점 간의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대도시권에 상호금융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을 만들며 주식과 채권 등의 전통적 투자수단 이외 대체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대체투자팀을 신설하였다.

나. 고객만족경영체계 구축

수협 상호금융 브랜드 구축활동 및 마케팅 지원활동이 각 사업부문에서 분산되어 있어 집중화 및 고효율적인 마케팅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마케팅 성공사례 분석 및 공동마케팅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합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Sales Manager(SM)을 마케팅 핵심인력 양성과정으로 자체 추진하되, 자격인증제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였다. 또한, 상품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품 수익분석 및 사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실적배당상품 도입을 검토하며, 마케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다. 효율적 리스크관리

상호금융부 내 론리뷰 담당직제 신설을 검토하고, 조합 론리뷰 제 규정을 정비하며, 론리뷰 교육(조합 방문 현장지도 포함)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합 론리뷰 담당 직제(리스크관리실)의 운영을 지도하며, 론리뷰 전산시스템(Nextro System)을 개선·보완하고, 전사적 통합 리스크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

8. 마케팅 역량 강화

2012년에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케팅 역량강화 프로그램(SSP : Sales Stimulation Program)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하여 교육전문 인력(사내강사)을 양성하였다. 또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영업점 직원의 마케팅 역량을 키우고 있는데 2021년 말 누적 기준으로 사내강사는 70개 조합에 178명을 양성하였다.

〈표 4-4-4〉 마케팅 역량강화 프로그램(SSP) 실시 현황

구분	SSP 1.0 (2013~2014)	SSP 2.0 (2015~2016)	2017	2018	2019	2020~2021
참여조합	68개 조합 357개 점	23개 조합 147개 점	12개 조합 76개 점	21개 조합 148개 점	28개 조합 177개 점	코로나19로 미실시

9. 예탁금 비과세 기한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에 의하여 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한 상호금융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2018년 말에 일몰됨에 따라 그 기한연장을 위하여 대응하였다. 특히, 준조합원에 대한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응하여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국회 등 관계기관 설득 작업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상호금융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종전과 동일하게 2020년 말까지 기한연장이 이루어졌으며, 2020년에는 2022년까지 그 기한이 다시 연장되었다.

2011년 4월 수협SSP설명회

10. 근저당권 전자등기 시스템 도입

2019년 12월에 근저당권 전자등기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근저당권 전자등기 시스템이란 법무사에게 서면으로 직접 의뢰·신청(서면등기)하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전자등기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전자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근저당권 전자등기 시스템 도입으로 서면등기 대비 신속한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해 채권보전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었고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약 60%(1억 원 대출 취급액 기준) 정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수협 상호금융사업의 발전과정을 요약하면 <표 4-4-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4-5〉 수협 상호금융사업 연혁

일자	연혁
1972. 8. 17	수협의 상호금융업무 근거 명시(신협법 제93조)
1974. 6. 10	제주시 수협 상호금융업무 개시
1978. 3. 18	여수수협 율촌 법인어촌계 상호금융업무 개시
1993. 10. 1	종합온라인 업무 개시
1994. 12. 30	금융결제원 공동전산망 가입
1998. 1. 1	상호금융 예금자보호제도 시행
2000. 1. 28	상호금융 감독·검사권 금감위 이관(수협법 제151조)
2007. 7. 27	'수협발전 5개년 계획'의 상호금융 발전방안 수립
2010. 1. 15	외국환업무 취급 개시
2012. 3. 15	'수협 비전 2021 발전계획'의 상호금융 경영목표 및 전략 수립
2012. 10. 31	마케팅 역량강화 프로그램(SSP) 도입
2014. 8. 25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 대행사업 개시
2016. 10. 31	여신심사역 사전 심사제도 도입과 여신심사역 양성교육 실시
2019. 12. 26	전자등기시스템 도입
2021. 3. 25	예탁금 30조 원 달성

제3절 부문별 사업실적

1. 수신

가. 수신금리

2009년에 1년제 정기예탁금의 이자율은 4.84%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에는 2.10% 수준이다.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중금리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며 2020년에 최저점 1.69%를 나타냈으나 2021년에는 반등하였다.

〈표 4-4-6〉 수협 정기예탁금 금리(2009~2021)

(단위 : %)

연도	이율
2009	4.84
2010	4.45
2011	4.55
2012	4.15
2013	3.14
2014	2.83
2015	2.22
2016	1.94
2017	2.01
2018	2.33
2019	2.35
2020	1.69
2021	2.10

주) 1년제 정기예탁금의 신규취급 연평균 금리

수협 정기예탁금 금리 추이(2009~2021)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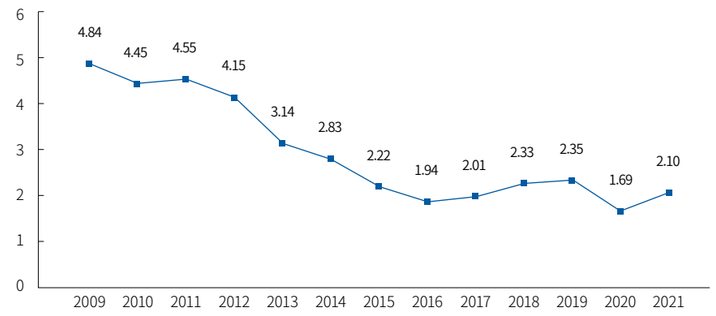

나. 수신실적

1) 지난 50년(1962~2011)

1974년 12억 원이었던 예탁금은 43배 증가하여 1980년에 519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1992년에는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하며 1조 5,227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2001년에는 6조 2,349억 원을 달성하였고, 2008년에는 10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2011년에는 14조3,339억 원을 달성함으로써 예탁금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표 4-4-7〉 수협 예탁금 실적(1974~2011년)

(단위 : 억 원)

연도	예탁금
1974	12
1977	86
1980	243
1983	519
1986	1,104
1989	3,288
1992	15,227
1995	27,643
1998	49,804
2001	62,349
2004	73,499
2007	90,846
2011	143,339

주) 잔액 기준. 이하 같음

수협 상호금융 대출금 추이(2002~2021년)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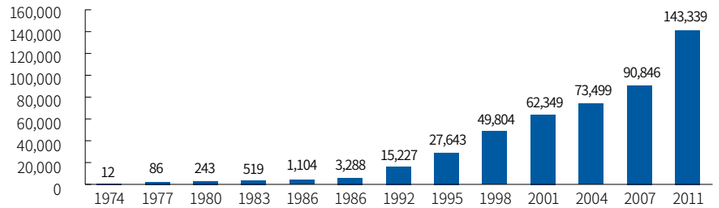

2) 최근 10년(2012~2021)

최근 10년간 예탁금 규모는 2012년 15조 7,942억 원이었으나, 2021년 말에는 32조 8,972억 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8%의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2012년에는 요구불 예탁금이 전체 예탁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5%였으나 2021년에는 그 비율이 18.4%로 증가하여 예탁금의 질적 구조도 개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4-8〉 수협 예탁금 실적(2012~2021년)

(단위 : 억 원)

연도	합계	요구불 예탁금	저축성 예탁금
2012	157,942	21,269	136,673
2013	161,616	24,179	137,437
2014	171,628	27,529	144,099
2015	180,081	32,866	147,215
2016	203,204	36,894	166,310
2017	229,310	38,025	191,285
2018	252,984	39,119	213,865
2019	278,312	42,207	236,105
2020	288,713	54,550	234,163
2021	328,972	60,477	268,495

수협 예탁금 추이(2012~2021년)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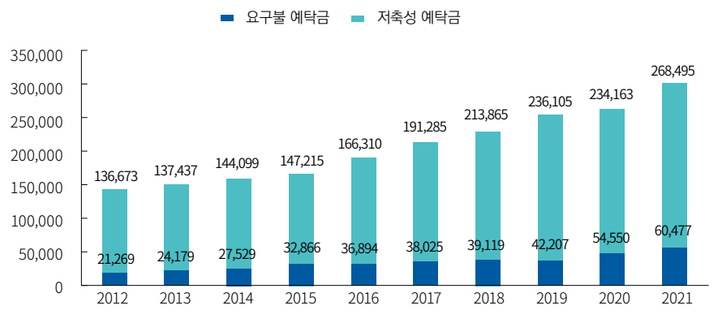

2021년 5월 상호금융 예탁금 30조원 달성 기념행사

2. 여신

가. 여신 금리

2009년 개인 신용대출의 금리는 10.09%였으나 2021년에는 5.07%까지 하락하였고, 기업일반대출 금리는 2009년 7.86%에서 2021년에는 4.06%로 하락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금시장 안정으로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는데 최근에는 경기불황에 따른 대출수요 감소와 금융권의 경쟁심화로 대출금리가 하락하였다.

〈표 4-4-9〉 수협 상호금융 여신금리(2009~2021)

(단위 : %)

연도	개인 신용대출	기업일반대출
2009	10.09	7.86
2010	9.76	7.57
2011	9.35	7.26
2012	9.11	6.86
2013	8.39	6.30
2014	7.72	5.83
2015	6.81	5.00

연도	개인 신용대출	기업일반대출
2016	6.31	4.64
2017	6.19	4.68
2018	6.17	4.87
2019	5.92	4.65
2020	5.27	4.01
2021	5.07	4.06

주) 대출 잔액 평균 금리 기준

수협 상호금융 여신금리 추이(2009~2021)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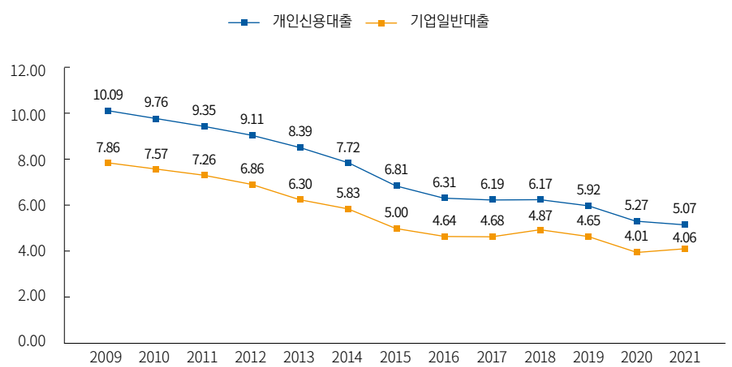

나. 여신실적

대출규모는 2002년 3조 3,735억 원에서 2011년에는 2.8배 증가한 9조 5,196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2012년 대비 2.6배 증가한 26조 8,842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대출규모는 상호금융사업 기반확대를 위하여 2008년과 2012년 2차에 걸쳐 추진한 여신확대 정책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표 4-4-10〉 수협 상호금융 대출 실적(2002~2021년)

(단위 : 억 원)

연도	대출금
2002	33,735
2006	57,902
2011	95,196
2012	103,789
2013	109,894

연도	대출금
2014	119,418
2015	129,231
2016	152,727
2017	179,642
2018	195,158
2019	208,639
2020	230,570
2021	268,842

주) 잔액기준

수협 상호금융 대출금 추이(2002~2021년)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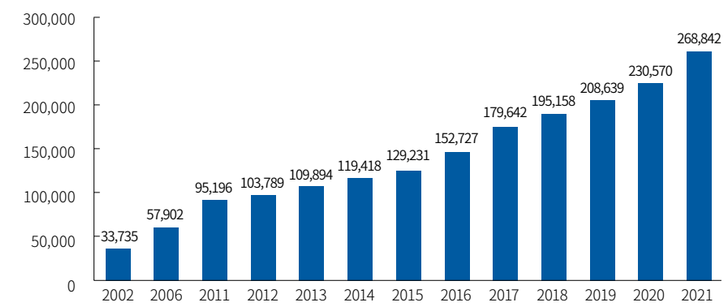

다. 특화 여신상품

금융기관 간 치열한 시장상황하에서 수협 상호금융사업은 틈새시장 전략으로 2011년부터 26개 틈새 여신상품을 개발하여 여신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조합의 지역별·조합별 상황에 특화된 25종의 차별화 여신상품도 개발하여 맞춤형 여신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차별화 여신상품의 대출실적은 1조 3,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표 4-4-11〉 수협 상호금융 틈새 여신상품(2011~2021)

출시연도	상품명	특징
2011	고시원사업자 대출	고시원을 경영하거나 시작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2011	유치원운영자 대출	현재 유치원 운영자 및 운영하고자 하는 고객
2011	더드림 신용대출	수협 우수고객에 대하여 예금, 적금, 공제 납입액의 최대 2배까지 지원하는 무보증 신용대출
2011	주택건설자금대출	주택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2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

출시연도	상품명	특징
2012	우리사장님 부동산 담보 우대대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금 지원 시 대출비율 우대
2012	수산물판매업자 우대대출	수산물 판매업자에 대한 한도우대 신용대출
2012	해피하우스론	수익형 부동산 운영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시 대출한도 우대
2013	다 되는 체크카드론	체크카드에 50만 원 한도를 부여하여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토록 한 신용대출 상품
2013	수협 My Car 대출	신규 자동차 구입대금을 지원해주는 대출
2014	NPL채권 담보대출	론세일 방식에 의한 NPL 매입 시 근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매입잔금을 지원하는 대출
2014	비주거용 부동산 중도금대출	신규로 분양되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지원 대출
2015	매일매일 행복대출	개인사업자 대상 사업기간 및 신용카드매출대금 기준 최고 2억 5,000만 원 한도로 대출 가능한 신용대출상품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매일 상환시키는 일일 자동 상환방식 적용
2015	우량직장인 퀵론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 우량직군 종사자들 대상 최고 2,000만 원 한도로 대출 가능한 신용대출상품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만으로 대출가능한 간편심사 프로세스 적용
2015	평생 함께海 종합통장대출	평생 함께海 주거래통장의 거래 조건에 따라 300만 원 ~ 500만 원까지 금리우대를 적용한 종합통장대출상품
2015	스마트 택시론	개인택시 사업자 대상 최고 3,000만 원 한도로 신용대출 및 택시구입자금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개인택시운송조합 등과 연계하여 판매할 경우 1,000만 원 우대 한도 적용
2015	우량고객 우대대출	수협에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 중 소정의 요건을 갖춘 우량고객에게 별도의 신용한도를 부여함으로써 차주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대출
2016	임대사업자 전용대출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올리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2016	Sh프리미엄 신용대출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 우량직군 정규직 외 대출대상을 확대하여 프리랜서 및 계약직군도 포함한 신용대출
2017	상호금융 중금리 사잇돌대출	기존 카드론/저축은행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은행대출이 거절됐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
2017	그린 쏠라론	국가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부응하며 중소기업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태양광발전소 설립 및 운영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대출
2018	실버사업자대출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비영리법인 포함)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담보대출
2018	이주비대출	주택건설업자인 시공사 또는 시행사의 일괄보증 또는 업무협약에 의거 일반분양자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집단으로 대출해주는 상품
2019	근해어선 소유자신용대출	근해 어업허가를 보유하고 실제 어업을 영위하며 근해어선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직전연도 감척사업지침 폐업지원금을 기초한도로 지원하는 신용대출
2020	실버건강보험금 여채권대출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급여비용청구채권을 견질담보(채권양도)로 취급하는 대출
2021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대출	상호금융업권의 사회적 경제기업 금융지원의 필요성과 정부정책에 동참하고자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담보대출
2021	브릿지 보증대환대출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를 위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취급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부 담보대출

〈표 4-4-12〉 수협 상호금융 지역특화 여신상품(2008~2021)

상품명	상품내용
거문도 어업인 신용대출	거문도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위판실적에 따라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신용대출
동해구 트롤선·기관장신용대출	통해구 트롤 및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는 선 기관장과 사무장에 대한 중금리 신용대출
드림신용대출	강원 영동지역 직장인, 자영업자, 조합원을 대상으로 차주 소득에 따라 한도를 부여하는 신용대출
면세유류구매 자신용대출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모슬포어업경영인 우대대출	모슬포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위판실적에 따라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신용대출
어업경영자금 (뱀장어 담보)대출	민물장어양식수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성만 + 양만장 담보대출
넙치 양식장(양어장) 담보대출	제주지역 소재 넙치양식장(양어장)을 운영하는 자 중 양식장을 담보로 조합원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
어업인 도우미대출	고흥군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어업인 우대대출	해남관내 어업인에 대해 위판실적에 따라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신용대출
잠수기선박소유자 신용대출	잠수기 허가어선의 소유자 대상 폐업지원금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신용대출
수산물판매업자 우대대출	포항수협 관내 상호금융 영업점 인근에서 수산물 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자 대상 신용대출
조합원우대 신용대출	냉동냉장 수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출자금과 자본금액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신용대출
화물운송 사업자대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화물차를 담보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택지개발지구 분양자금 대출	세종시 및 수도권 지역 택지를 상업용 건물건축의 목적으로 분양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어선소유자대출	영광군 및 부안 관내 허가어선을 소유한 조합원 대상 폐업지원금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신용대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대출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매일 입금되는 교통비를 수협계좌로 지정하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신용대출
메디컬론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급여를 채권양도받고 월평균 보험급여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대출
그린 쏠라론	태양광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전으로부터 수령하는 발전대금을 수협으로 양도받고 대출하는 상품
영광군 천일염 담보대출	영광군 관내 천일염 생산업자를 대상으로 영광군 수협 내 창고에 보관중인 천일염을 담보로 하는 동산담보대출 상품
버스담보대출	관광버스, 전세버스 법인을 대상으로 버스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어선특화대출	근해안강망, 근해자망, 근해개량안강망, 연안개량안강망 허가어선을 소유한 목포수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전년도 폐업지원금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신용대출
Sh스탁론	주식계좌를 담보로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하고 리스크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식담보가치를 평가하여 주식가치 하락 시 반대매도를 통해 대출원금을 확보하는 상품
숙박사업자대출	숙박시설을 운영하거나 구입하여 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건축자금과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공공기관매입조건부 건축자금대출	SH나 LH와 공공임대주택 매매이행약정(또는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건축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사업자후순위 아파트담보대출	서울 및 수도권에 KB시세가 있는 아파트를 소유한 사업자 대상으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후순위 대출

3. 비이자 부문

가. 외국환 업무

2010년에는 진해수협과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 취급하기 시작한 외국환 업무는 취급조합 수가 계속 증가하여 2021년 말 현재 61개 조합이 취급하고 있고, 취급실적은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2,744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21년 말 기준은 481만 5,000달러의 취급실적을 보이고 있다. 수수료 수입도 2017년에 3억 원의 실적을 올린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4-13〉 수협 상호금융 외국환 취급실적(2014~2021)

(개, 천$, 억 원)

연도	취급조합 수	취급실적(천$)	수수료
2014	29	5,090	1
2015	44	21,389	2
2016	52	27,440	3
2017	56	27,245	3
2018	57	25,347	2
2019	60	24,457	2
2020	61	11,164	1
2021	61	4,815	1

수협 상호금융 외국환 취급 추이(2014~2021)

(단위 : 개, 천$,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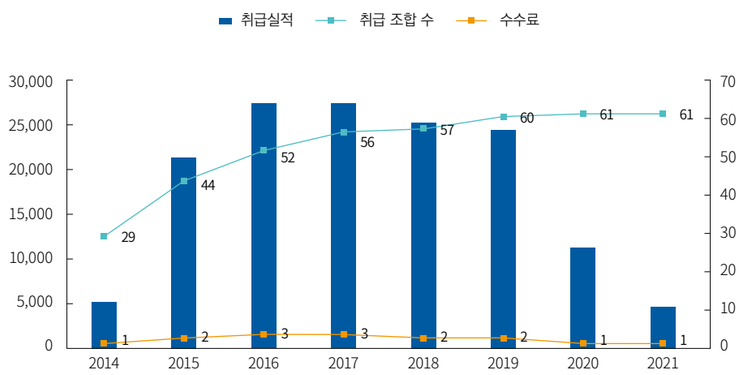

나. 신용카드

2000년 12월부터 수협은행의 카드 업무를 대리 취급하기 시작하였는데 취급조합은 2011년 67개 조합에서 2021년 말 86개 조합으로 늘어났다.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여 2019년에는 연간 2,426억 원을 기록하였고, 2021년 말 2,479억 원을 보이고 있으나, 수수료 수입은 2018년 43억 원을 올린 이후 감소하여 2021년 말 기준 26억 원에 그치고 있다.

〈표 4-4-14〉 수협 상호금융 신용카드 취급실적(2011~2021)

(단위 : 개, 억 원)

연도	취급조합 수	매출액	수수료
2011	67	1,329	26
2012	71	1,335	28
2013	71	1,367	27
2014	76	1,506	36
2015	76	1,713	41
2016	80	1,997	35
2017	82	2,175	50
2018	84	2,330	43
2019	85	2,426	30
2020	85	2,338	26
2021	86	2,479	26

수협 상호금융 신용카드 취급 추이(2011~2021)

(단위 : 개,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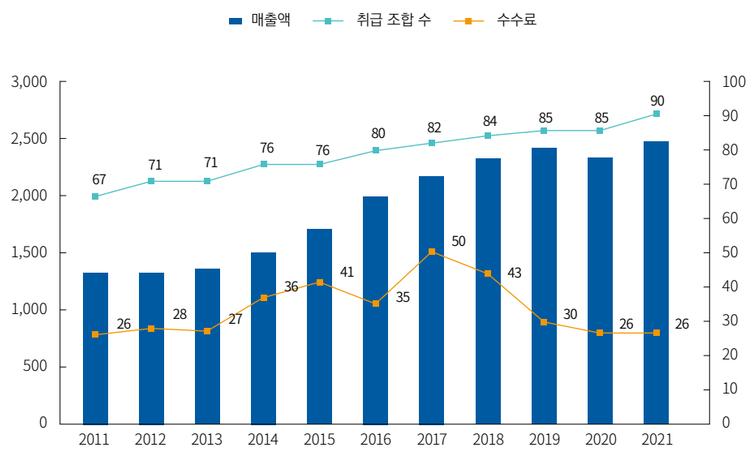

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 대행

2014년부터 상호금융 영업점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대행판매하기 시작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첫해에 12억 원 판매 및 회수 실적에 수수료 수입 1,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8년이 지난 2021년에는 연간 취급실적 2,153억 원에 수수료 수입 21억 원을 올렸다.

〈표 4-4-15〉 수협 상호금융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취급실적(2014~2021)

(단위 : 억 원)

연도	취급실적(판매+회수)	수수료
2014	12	0.1
2015	168	2
2016	337	3
2017	391	4
2018	589	9
2019	715	8
2020	1,774	18
2021	2,153	21

수협 상호금융의 전통시장 상품권 취급 추이(2014~2021)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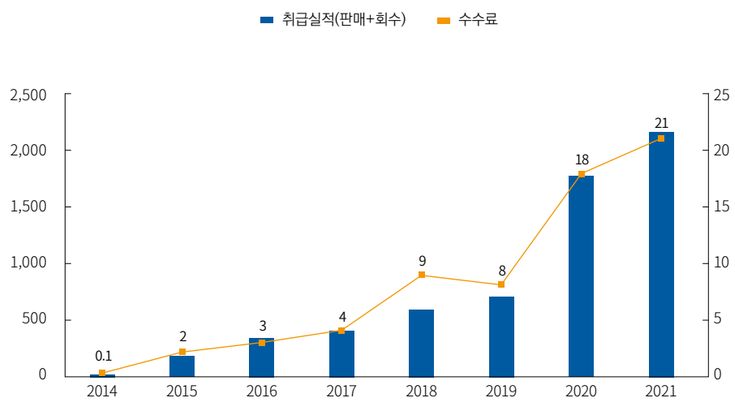

제4절 경영실적

1. 수익성

2001년에는 대손충당금 일시 적립으로 675억 원의 순손실을 입었으나, 2002년부터는 바로 흑자로 전환되었고, 2011년에는 1,140억 원의 당기순이익으로 1,000억 원을 돌파하였다. 이후 다소 저조하였던 수익성은 2013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여 2021년에는 2,22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다. 한편 명목순이자 마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2.43%에서 2021년에는 1.96%까지 하락하였다.

2022년 4월 상호금융 경영전략협의회

〈표 4-4-16〉 수협 상호금융 수익성(2001~2021)

(단위 : 억 원, %)

연도	당기순이익	명목순이자 마진율
2001	-1,184	
2004	630	
2007	656	
2011	1,140	2.43

연도	당기순이익	명목순이자 마진율
2012	898	2.20
2013	711	2.30
2014	913	2.37
2015	1,243	2.24
2016	1,385	2.20
2017	1,666	2.18
2018	1,776	2.17
2019	1,310	1.98
2020	1,335	1.86
2021	2,227	1.96

수협 상호금융 수익성 추이(2001~2021)

(단위 :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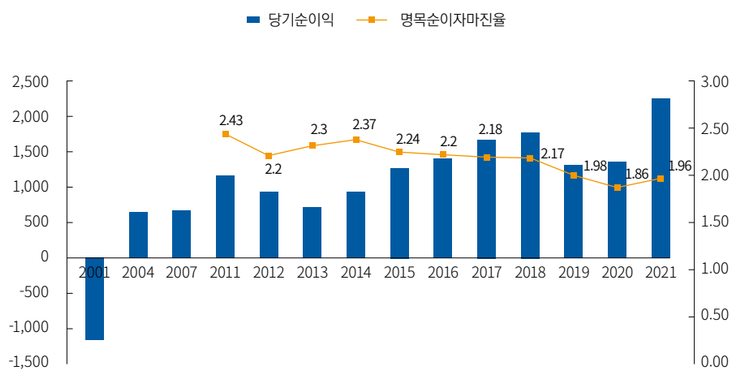

2. 생산성

지난 20년간 예탁금은 연평균 8%의 성장세를 보여 2021년 말 직원 1인당 및 1영업점당 예탁금은 각각 92억 원, 632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대출금은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여 2021년 말 기준 직원 1인당 및 1영업점당 대출금은 각각 74억 원, 508억 원을 보였다. 특히 2008년과 2012년 2차에 걸쳐 추진한 상호금융 발전계획 실행으로 예탁금과 대출금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조합 전체 사업에서 상호금융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도 점차 확대되었다.

〈표 4-4-17〉 수협 상호금융 생산성(2001~2021)

(단위 : 억 원)

연도	직원 1인당 예탁금	직원 1인당 대출금	1영업점당 예탁금	1영업점당 대출금
2001	20	10	138	72
2004	25	16	175	109
2007	33	22	223	152
2011	46	31	321	213
2012	51	34	352	231
2013	54	36	373	248
2014	55	38	381	263
2015	58	40	406	282
2016	60	44	432	313
2017	68	51	484	368
2018	72	55	524	401
2019	77	58	562	424
2020	84	64	581	449
2021	92	74	632	508

수협 상호금융 생산성 추이(2001~2021)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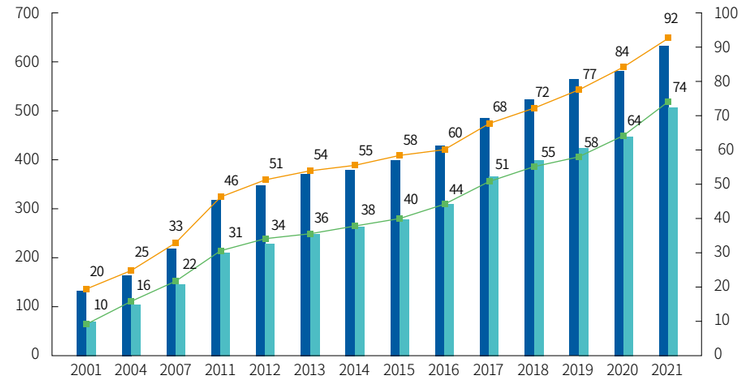

3. 건전성

여신의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연체율은 2001년 12.94%에서 2011년 4.62%, 2021년 1.64%로 각각 하락하였으며,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2001년 11.26%

에서 2011년 3.29%, 2021년 1.95%로 하락하였다. 이렇게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조합 리스크 관리조직의 정비와 2016년 이후 여신심사역 양성 등 부실여신에 대한 사전 발생 억제 노력과 대대적으로 전개한 연체감축 캠페인의 성과이다.

〈표 4-4-18〉 수협 상호금융 건전성(2001~2021)

(단위 : %)

연도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2001	12.94	11.26
2004	10.19	4.12
2007	7.27	2.70
2011	4.62	3.29
2012	4.53	2.64
2013	4.28	3.57
2014	3.67	3.97
2015	2.56	2.96
2016	1.89	2.36
2017	1.68	2.06
2018	2.05	2.27
2019	2.78	3.08
2020	2.44	2.84
2021	1.64	1.95

수협 상호금융 건전성 추이(2001~2021)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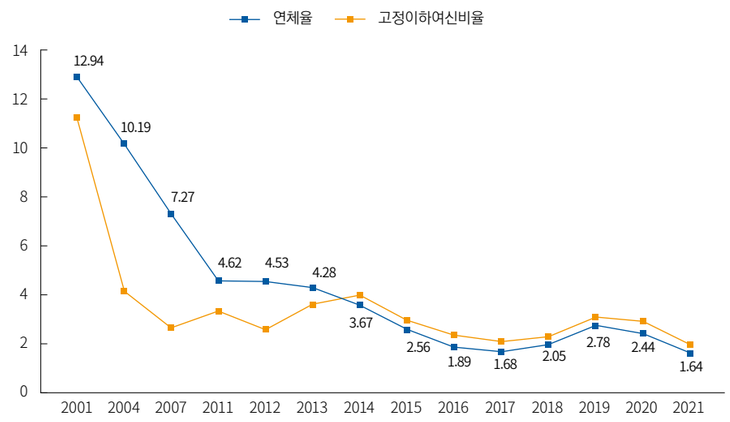

4.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1998년 1월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되어 조합이 파산 시 대위변제 또는 유동성 지원에 대비하게 하였는데, 수협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신용사업(상호금융)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 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2020년 8월부터 중앙회는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적립액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에 도달한 경우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였다[1].

조합은 상기 법률에 따라 0.25%를 출연하여[2]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으나, 목표기금제에 따라 2021년 기준 실질보험료율은 0.075%이고, 예탁금 등에 대하여 5,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예탁금 고객을 보호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기금의 잔액은 4,879억 원이며 기금의 건전성 척도인 적립률은 2020년 말 기준 1.58%로 상호금융권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표 4-4-19〉 수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1998~2021)

(단위 : 억 원)

구분	기금 누계액
1998	20
2001	178
2004	60
2007	490
2012	464
2013	808
2014	1,370
2015	1,809
2016	2,264
2017	2,786
2018	3,419
2019	4,143
2020	4,619
2021	4,879

1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기금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할 경우, 구간별로 보험료를 30~100% 범위에서 감액하고 상한액에 도달했을 경우 보험료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2 조합은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매 분기 말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 × 1/4 × 1천분의 5 이내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험료(0.25%)를 납부하였다.

수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추이(1998~2021)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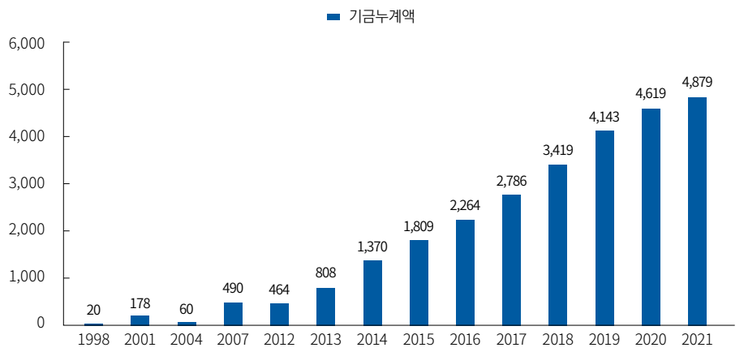

5. 적립금 비율

금융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의 2(경영지도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자산[3]에 대한 적립금[4]비율을 5%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수협은 대내외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 목표 비율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 3.96%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1년에는 8.05%를 나타내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표 4-4-20〉 수협 상호금융 적립금 비율(2011~2021)

(단위 : %)

연도	적립금 비율
2011	3.96
2012	3.71
2013	4.13
2014	4.28
2015	4.64
2016	5.03
2017	5.88
2018	5.47
2019	5.02
2020	6.98
2021	8.05

주) 위험가중자산 대비 적립금 비율

3 보유 중인 채권, 유가증권, 기타자산 등에 대해 자산별 위험가중치(0%~100%)를 개별 적용하여 산출한다.

4 법정적립금 외에 자산운용 규모와 이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위한 자본확충 등의 필요에 따라 매년 특별적립금을 별도로 적립한다.

수협 상호금융 적립금 비율 추이(2011~2021)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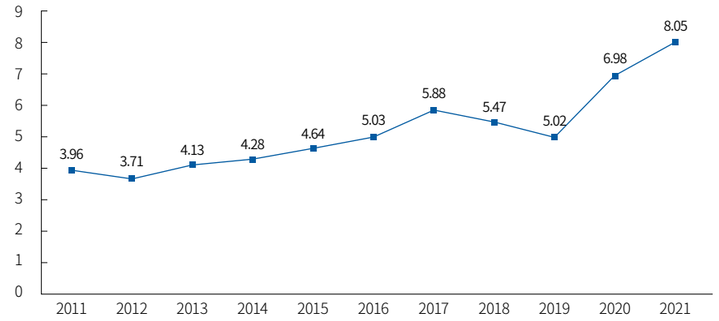

6. 영업망

1967년 67개이던 상호금융 영업점은 1991년 123개소, 2001년 443개소, 2011년 422개소, 그리고 2021년 496개소로 증가하였다. 최근 들어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경제 집중화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영업점 증설이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2021년 말 현재 전체 영업점의 30%인 153개 영업점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표 4-4-21〉 수협 상호금융 영업점의 지역별 분포(2011~2021)

(단위 : 개소)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422	430	426	436	434	444	452	465	478	487	496
강원	16	16	16	16	17	17	17	17	17	17	17
경기	37	39	38	39	40	42	45	46	47	48	50
경남	76	77	77	79	78	78	79	81	81	81	81
경북	31	31	31	31	31	31	31	31	32	32	32
광주	6	6	6	6	5	5	5	5	5	5	5
대구	2	2	2	2	2	2	2	2	3	3	4
부산	39	37	36	37	37	38	38	40	41	42	43
서울	18	20	21	22	22	26	32	40	49	57	59
울산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인천	47	47	46	46	44	45	45	45	45	44	44
전남	62	63	63	68	67	67	66	65	66	66	69
전북	27	31	32	32	32	32	31	31	29	29	29
제주	22	22	21	21	21	22	22	23	23	23	23
충남	24	24	22	22	23	24	24	24	25	25	25

제5장
수협은행(신용사업)

1962
2022

제1절 개요

1. 의의

수협은행(신용사업)은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는데[1]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업무 등)에 따라 수산자금 등 어업인 및 조합에서 필요한 자금의 대출,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그리고 중앙회가 위탁하는 공제상품의 판매 및 그 부수업무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를 위하여 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과 조합 및 중앙회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수협은행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70~80년대 은행창구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 4

첫째, 어업인과 조합이 필요로 하는 수산자금 등과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자금을 적기에 조달 공급함으로써 해양수산전문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조합과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자금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계통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수협은행이 취급하는 수산정책자금을 회원조합에서도 병행 취급함으로써 어업인의 금융편익을 도모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수산정책 목적의 달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셋째, 은행법에 따른 일반은행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일반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수산자금의 재원을 적기 조달 공급하고, 정부의 재정자금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며, 제반 은행 업무를 통하여 수익적 경영도 도모하고 있다.

2. 사업추진체계

2021년 말 현재 수협은행은 본부에 경영전략그룹을 비롯한 5개 그룹과 1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본부를 포함한 5개 특정업무전담본부를 두고 있고, 영업점은 본점영업부, IB사업본부, 2개 기업금융본부, 9개 지역금융본부 그리고 115개의 지점·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자회사로 수협마이크로파이낸스(수협MFI) 미얀마 법인을 두고 있다.

3. 사업의 종류

가. 수신사업

수협은행은 수신사업을 통하여 일반고객의 여유자금을 유치하여 수산업의 생산자금을 공급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수신사업은 수협은행의 존립 근거가 되는 핵심 사업이다.

이 사업은 '100억 원 자체자금 조성' 운동을 시작한 1969년부터 큰 성과를 거두며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독립 사업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0년대와 2010년대는 물론, 2016년 수협은행이 중앙회의 자회사로 분리 독립된 이후에도 수협은행의 중심사업이 되고 있다.

2021년 말 현재 수신사업의 종류를 보면, 목돈마련을 위한 상품 21종,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상품 10종,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 21종, 공익상품 2종 등 총 55종의 상품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표 4-5-1〉 수협은행 수신상품(2021년 말 기준)

구분	상품
목돈마련	정기적금(정액적립식), 상호부금(정액적립식), 신 자유부금, 파트너 가계적금(정액적립식), 더플러스 정액적금, 더플러스 자유적금 Ver.2, 더플러스 회전적금, 달려라-2030정기적금, 달려라-2030자유적금, 독도사랑 학생부금, SH 월복리자유적금, 사랑해 독도정기적금, 사랑해 독도자유적금, Sh 스마트 ONE적금, Sh 행복한 미래적금, Sh 100세 만기자유적금, Sh 평생주거래 우대적금, Sh 내가 만든 적금, 잇자유적금, Sh 평화수호적금, Sh 쑥쑥키우는 부모 적금,
여유자금 운용	표지어음, 환매조건부 채권, 노후보장 정기예금, 양도성 예금증서, 정기예금, 사랑해 정기예금(실세금리정기예금), 사랑해 나누리예금, 독도사랑예금, 사랑해 독도정기예금, Sh 평생주거래 우대예금
수시 입출금	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스페셜 플러스예금, 샐러리맨 리치예금, 사랑해 주거래통장, 사랑해 사장님통장, 기업자유예금, 스페셜 기업예금, EveryDay 기업예금, 사랑해 기업예금, 샬롬예금, E-free예금, Sh 평생주거래 우대통장, 수협 행복지킴이통장, 수협 국민연금 안심통장, Sh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사랑해 독도통장, Sh 평생 주거래통장
공익상품	Sh 해양플라스틱 Zero! 적금, Sh 해양플라스틱 Zero! 예금
세금혜택	비과세종합저축

나. 여신사업

수협은행은 여신사업으로서 어업인과 회원조합에 수산자금을 공급하는 수산금융과 일반은행의 상업금융 그리고 경제정책 수행에 필요한 정책금융 등을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수협 설립 초기에는 재정대여금에 의한 수산금융을 주로 취급하였고, 1969년부터는 일반 여신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2021년 말 현재 개인과 가계, 기업과 공공용도로 76종류의 다양한 일반여신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Sh 더드림 신용대출을 비롯한 온라인 전용대출상품과 Sh새희망홀씨II(해양수산인)와 같은 서민금융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현재 수협이 취급하고 있는 일반대출 상품의 구체적인 종류는 <표 4-5-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5-2〉 수협은행 일반대출 상품(2021년 말 기준)

구분	상품
온라인전용대출	Sh더드림신용대출, 비대면 예적금담보대출(개인), 헤이(Hey)플러스대출, 헤이(Hey)전세자금대출
개인담보대출	집단주택자금대출(개인), Sh실버리치주택연금대출, 부동산경락대금대출(개인), 토지분양자금대출(개인), 바다사랑대출, New-Start론, 예금담보대출
개인 주택자금 대출	Sh으뜸모기지론, Sh금리고정형적격대출, 월상환액고정형주택담보대출, Sh전세보증대출(주택금융공사), Sh전세보증대출(서울보증보험), Sh전세금안심대출, Sh파워전세자금대출, 청년맞춤형전월세대출, 공공주택임차보증금담보대출, U보금자리론,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개인신용대출	A-클래스론, 사랑海직장인우대대출, Sh군인생활안정자금대출, Sh 실버리치연금대출, Sh 평생주거래마이너스대출, Sh올라잇신용대출, 파랑새패밀리대출, 목회자대출, 학자금대출, Sh중금리신용대출

구분	상품
서민금융상품	Sh새희망홀씨II(해양수산인), Sh사잇돌중금리대출, Sh징검다리론, Sh새희망홀씨II, 햇살론15, 안전망대출 II, 햇살론뱅크, 대학생·청년햇살론
기업담보대출	Sh소호대출, Sh산업밸리론, Sh 사회적경제기업 성공지원대출, Sh 안전협약 주택보증대출, 집단주택 자금대출(기업), 부동산경락 대금대출(기업), New 땡큐사장님대출, Sh 창업기업 지원보증서대출, Sh 신용보증서Plus대출, My 편의점대출, 동산담보대출, 매입조건부 주택건축자금 대출, 임대비즈니스론, 냉동수산물 담보대출, 고시원사업자 대출, 카마스터즈론, 기업운전자금대출, 징검다리 대출, Sh프라임 주택건설 보증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기업), Sh 기술평가 우수기업대출, Hi-버스사업자대출, 온렌딩대출, 토지분양자금 대출(기업), 알찬기업 알찬대출, 상업어음할인, 기업시설자금대출, B2B 기업구매 자금대출
기업신용대출	더해드림론, 매일매일신바람대출
공공자금대출	교회대출, 행복 실버사업자대출, 사랑海 꿈나무대출, 파랑새 둥지대출

다. 수산정책금융

수산정책금융이란 정부의 수산정책 목적하에서 어업인 및 회원 조합에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수협은행은 재정자금과 한은 차입금 그리고 수협 자체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의 취급지침하에 수산정책자금을 전담취급하고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과 이차보전 등의 지원조치를 하고 있으며, 2021년 말 현재 18종류의 자금을 어업인에게 공급하고 있다.

〈표 4-5-3〉 수산정책자금의 종류(2021년 말 기준)

구분	자금의 종류
수산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어업경영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 피해복구자금, 부채대책자금, 배합사료 구매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귀어창업지원자금, 양식시설현대화자금, 수산연관우수기술사업화자금, 안전복지형연근해어선기반구축자금[2]
수산발전기금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재해 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산물수매지원자금, 우수수산물지원자금, 가공시설및운영자금,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수산장비구입지원자금, 노후 소형유조선현대화자금

라. 해양투자금융

해양투자금융은 항만 SOC사업, 선박금융, 기타 투자금융 참여 등을 말하는데, 항만 SOC사업은 허브 및 피더항 개발사업 참여, 기존 항만시설 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 참여, 항만 운영사에 대한 각종 금융서비스 제공, 항만 배후시설 개발사업 참여 등을 말한다.

2 과거의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자금이다.

다음 선박금융은 해운사에 대한 선박자금 지원, 국내 선사 간 인수금융 지원, 선박건조사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선박투자회사의 재무적 투자자 및 여신지원 등을 말하며, 기타 투자금융은 도로, 철도, 교량 등의 SOC사업 금융 주선, 부동산개발 PF 참여, 인수금융(M&A)참여 등을 말한다.

마. 외환사업

외환(外換) 또는 외국환이란 국제경제 활동에서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수협은행은 외화송금, 외화추심, 외화매매, 출입업무, 외화 여수신, 국제금융, 해외투융자 등 외국환 업무 전반을 영위하고 있는데, 2021년 말 현재 11종의 외화예금과 외화대출 상품, 인터넷 (모바일) 외화송금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외화송금 서비스와 수출입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4-5-4〉 수협은행 외환상품(2021년 말 기준)

구분	상품
외화예금	외화보통예금, 외화당좌예금, 외화정기예금, 자유적립식 외화예금, SAFEZONE 외화예금, Sh 외화레인지예금, 외화 딴주머니, 나눔으로 함께海 외화예금, DREAM 해외로 유학외화예금, 자동갱신 외화정기예금, 글로벌 외화 MMDA예금
외화대출	기업의 판매, 투자활동 등에 소요되는 해외 실수요자금 지원
외화송금	외화송금, 실시간 국내자금이체, Sh-웨스턴유니온 특급송금, Sh-웨스턴유니온 자동송금(AUTO-SEND), Sh스위프트자동송금
인터넷 외화송금	인터넷(모바일) 외화송금
수출입관련서비스	수출신용장 전자유통(E-L/C), 수출선적서류 트레킹서비스-DHL, 무역자동화(EDI), 수출환어음 인수후 매입제도, 조건변경부 해외양도, Firm Banking

바. 카드사업

신용카드 사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에 의거 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과 관리,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회원에 대한 자금융통,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그리고 기타 신용카드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말한다. 2021년 말 현재 20종의 신용카드, 12종의 체크카드, 기프트카드 등을 판매하고 있다.

〈표 4-5-5〉 수협은행 카드 상품(2021년 말 기준)

구분	상품
신용카드(일반)	찐(ZZIN)카드, Real?Real!2카드, 다통해카드, 부자되세요홈쇼핑카드, S1카드, 사랑해카드, 크리스챤카드, 필(Feel)카드, 독도사랑카드, 비즈플러스카드, biz top카드, Sh 그린카드
신용카드(특화)	국민행복카드, S1쑥숙멤버십카드, 휴먼라이프S1카드, 약손명가2카드, 후불하이패스, e나라도움카드, 정부구매카드, 연구비카드
체크카드(일반)	Real Zero카드, S2카드, Sh그린카드, 파트너체크카드, 프라임체크카드, 더마일리지카드, 부자되세요홈쇼핑카드
체크카드(특화)	국민행복카드, 학생증카드, e나라도움카드, 정부구매카드, 제주도 보조금카드
기프트카드	선불 기프트카드

사. 펀드사업

펀드(Fund)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모은 자금의 집합체 또는 집합투자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수협은행은 「은행법」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에 의거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인 펀드사업을 2003년부터 시작하였으며, 2021년 말 현재 국내 주식형과 해외주식형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를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표 4-5-6〉 수협은행 펀드상품(2021년 말 기준)

구분	상품(내용)
판매펀드	국내주식형, 국내혼합형, 국내채권형, MMF, 해외주식형, 해외채권형, 해외혼합형, 기타
연금저축펀드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한 상품
인터넷전용펀드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가입 가능한 펀드로 영업점에서 판매되는 펀드보다 보수 및 수수료가 저렴함.

아. IT 서비스

수협은행은 1984년에 최초로 자체 컴퓨터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업무 전산화를 이루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 종합온라인시스템을 가동하였고, 2000년대에는 고객정보통합관리시스템, 인터넷뱅킹 서비스 체계, 경영정보시스템(MIS)과 통합정보DB, 차세대 시스템과 금융안전시스템 등을 구축하였다.

급격한 IT 기술 진전으로 2010년대 후반기부터는 모바일 뱅킹서비스, 인공지능 등 새로운 디지털 혁명기를 맞이하고 있다.

자. 신탁사업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익자 간의 특별한 신탁관계에 의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데, 수협은행은 1988년에 「신탁업법」 제3조에 의거 국민주신탁에 한한 신탁업 겸영인가를 받아 신탁사업을 시작하였고, 2021년 말 현재 특정금전신탁, 재산신탁 3종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판매하고 있다.

〈표 4-5-7〉 수협은행 신탁상품(2021년 말 기준)

구분		상품(내용)
특정금전신탁		위탁자(고객)가 신탁 재산의 운용방법을 수탁자(은행)에게 지시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실적배당하는 단독운용 신탁상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상품
재산신탁	부동산신탁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은행)에게 이전하여 신탁부동산을 관리·처분·환가하여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채무이행을 위한 담보목적의 신탁상품
	금전채권신탁	일반 금전채권을 인수 받아 수탁자(은행)가 보관하고 기일이 도래하면 추심절차를 대행하여 추심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상품
	유가증권관리신탁	수탁유가증권의 보관업무와 원리금, 배당금 등의 수령, 기타 유가증권상의 제반 권리의 보전 및 행사 등의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상품

차. 관리부문

1) 채권관리

채권관리는 경매처분, 채권추심, 그리고 채권매각 등을 통하여 불건전채권을 조기에 감축하여 자산건전성 제고와 건전결산을 도모하고, 이미 손실(상각) 처리한 특수채권에 대하여 일반여신에 준하여 추심활동을 전개하며, 고정이하 여신비율 등 불건전여신비율을 감축하여 대외신인도를 제고한다.

2) 리스크관리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기업여신과 만기구조를 무시한 자금운용으로 인해 국내 은행들은 극단적인 외부충격이 왔을 때 그 위험이 극에 달하였고, 구조조정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수협도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비상처방에 의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였다. 이에 따라 「수협법」과 「신용사업 소이사회 규약」에 제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명시하였는데, 1999년 12월에 리스크관리팀을 최초로 신설하였고 2001년 이후에는 리스크 관리조직을 더욱 확대 보강하여 건전 경영을 도모하고 있다.

3) 준법감시

준법감시란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고객 자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제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회규범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도록 사전적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수협에서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점검활동을 수행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및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윤리강령 및 임직원 행동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규정 등의 제·개정 및 이사회 안건·중요문서 등에 대한 법규준수 측면의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2절 발전과정

1. 신용사업 발전과정

가. 초창기(1960년대)

1) 「수협법」 상의 규정과 현실의 괴리

1962년 「수협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65조와 제132조에 의거 신용사업 취급근거가 마련되었고, 1962년 5월 「은행법」 개정[1]으로 수협은 특수은행의 법적지위를 완전히 갖게 되었으나, 조직, 인력, 자금 등의 미비로 본격적인 신용사업을 취급하지 못하였다.

또한, 「수협법」 제132조 제3항에 의거 수협만이 수산 자금을 전담하여 취급할 수 있었으나, 설립 당시에는 농협,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일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수산자금을 취급하고 있었다.

2) 여신업무 개시와 수산금융체계 일원화

수협에서는 1963년 5월부터 정부재정자금 대여금 2억 6,400만 원을 가지고 우선 여신업무를 시작으로 신용사업을 취급하기 시작하였으나, 제도 미비와 재원부족 등으로 수산자금 취급에 대한 어업인들의 불편은 컸다.

이후 1965년 4월 16일에 산업은행과 농업은행으로부터 연근해 수산자금 3억 6,300만 원을 인수함으로써 수산자금 공급체계를 수협으로 완전히 일원화되었으나 동 자금은 전액 재정자금으로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였다.

한편, 일반여신은 1969년에 첫 취급을 시작하여 이후 감정평가와 융자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저축증대자금을 재원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취급하였다.

1 개정 은행법 제3조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은 1개의 금융기관으로 본다"라고 명시함

3) 자체자금 100억 원 조성 운동과 수신업무 개시

한정 공급되는 재정자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민들의 저축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1968년부터 100억 원 자체자금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1969년부터 1973년까지 5개년 동안 출자금과 예수금 등 자체자금 100억 원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1968년 10월 22일에 부산수협 등 3개 회원조합에서 수신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속초수협도 수신업무를 개시하였다. 1969년 4월 1일부터 중앙회도 본격적으로 수신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중앙회는 우선 영업부를 개점하였고, 이어서 8개 도지부를 개점함으로써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다 같이 수신과 여신업무를 취급하는 특수은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자체자금[2]이 조성되면서 1971년에 총 조달액 중 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불과했으나, 1980년에는 그 비중이 38%까지 신장되었고, 이후 자금운용 규모가 확대되면서 1999년에는 70%까지 확대되었다.

나. 도약기(1970년대~1996년)

1) 차관자금 도입과 외국환업무 개시

정부의 재정자금만으로는 수산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없어 외자도입을 추진하였다. 첫 번째로 1968년에 한일어업협정 차관 3,000만 달러를 도입하였고, 1970년대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각각 1,330만 달러, 306만 달러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자금들은 실수요자에게 전대하였고, 1996년 마지막 잔액을 상환함으로써 차관사업은 종료되었다.

1969년 6월 100억 자체자금조성 어민궐기대회

2 자체자금에는 예수금과 상호금융예탁금이 포함된다.

한편, 1970년대 들어 정부의 강력한 수출장려 정책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무역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수산부문에서도 수출입거래가 급증했고, 외국환업무의 취급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수협은 1978년 12월 8일 재무부로부터 외국환 취급인가를 받아 다음해 1월 10일에 을류 외국환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2) 온라인 업무

1984년 5월부터 보통예금, 저축예금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1985년 7월에는 자유저축예금을, 1986년 7월에는 별단예금을, 1987년 11월에는 정기적금을, 1988년 6월에는 돌고래 해외적금을, 1989년 2월에는 기업자유예금을 온라인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1988년 12월에는 103개의 전 영업점이 온라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1991년부터 2년여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종합온라인시스템을 1993년에 도입하였다. 과목 중심의 온라인 업무에서 고객 중심의 전산체제를 구축 완료함으로써 금융 온라인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신상품의 개발기간 단축, 대외기관의 자료요구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1984년 5월 온라인 업무 개시식

3) 신탁업무 취급

1988년에는 국민주 보급계획에 따라 「신탁업법」 제3조에 의거, 재무부 장관의 인

가를 받아 수협에서도 국민주 신탁 업무를 취급하게 되었으며, 1989년 2월에는 신탁업무의 취급범위가 불특정 금전신탁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의 취급범위 확대 인가를 받았다.

1990년 11월에는 가계금전신탁을 취급하기 시작하였고, 1991년 7월에는 특정금전신탁과 기금운용신탁 업무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 확대인가를 받았으며, 독립 사업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1년 이후에는 재산신탁과 퇴직연금신탁 취급으로 그 취급범위가 확장되었다.

4) 금리 자유화

1988년 12월 5일부터 금리자유화 조치에 따라 여신금리가 자유화되었고, 수신상품 중 2년 이상의 정기예금 금리와 양도성예금증서의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1991년 8월에는 정부의 4단계 금리자유화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금리가 자유화됨에 따라 규제금리에서 자유금리로 금리환경이 바뀌었고, 새로운 형태의 이익관리와 위험관리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수협도 금융제도 개선반을 편성 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금융자율화 대응방안을 수립하였다.

〈표 4-5-8〉 1991년의 금리자유화 계획

단계	수신	여신	채권	실행일자
1단계 (1991년 하반기~ 1992년 상반기)	CD, 거액RP 등 단기시장성 수신상품	당좌대월, 상업어음할인 등 단기여신	2년 이상 회사채	1991. 11
2단계 (1993년 중)	제1,2금융권의 2년 이상 정기예금 및 3년 이상 정기적금 등	재정 및 한은 지원대상대출을 제외한 모든 제1,2금융권 대출	2년 미만 회사채, 2년 이상 금융채	1993. 11
3단계 (1994~1996년)	단기시장성 상품 자유화폭 확대(1994~95년 중)요구불예금을 제외한 2년 미만 수신(1996년 중)	한은 지원대상 정책자금대출(1994~95년 중)	-	1994. 7 1994. 12 1995. 7 1995. 11
4단계 (1997년 이후)	전 단계에서 자유화가 완료되지 않은 단기수신 및 요구불예금	-	-	1997. 7

5) 신용카드업무 취급

수협에서는 1990년에 신용카드업무 취급 준비에 착수하여 그해 7월 13일 국민신용카드(주)와 업무제휴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12월 26일에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고, 1991년 3월 4일에는 VISA Int'l 회원가입 승인을 받아 그해 10월 1일에 회원모집을 시작하였다.

특히, 수협 신용카드는 다른 은행계 카드와는 다르게 BC카드사의 회원 카드사가 아닌, 전업카드사인 국민신용카드사와 제휴한 독자적인 브랜드 카드 사업으로 시작함으로써 초창기에는 사업 저변확대에 다소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는 회원조합 상호금융 영업점에서도 신용카드 업무를 대리 취급할 수 있게 되면서 기반확대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지금은 수협은행과 회원조합 상호금융이 상생 협력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되었다.

다. 시련기(1997년~2000년)

1) IMF체제와 금융구조조정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추진된 금융자유화와 개방화는 잘못된 금융관행에 철퇴를 가하였고,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를 야기시켜 국가부도 위기까지 갔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결국 1997년 11월에 IMF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렀고 부실금융기관들이 퇴출되게 되었다.

이러한 금융구조조정은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의 비용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협은 대우채권 관련 평가손실 등으로 거액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2) 재무상황 악화

IMF 구제금융 신청과 기업들의 줄도산, 부실 금융기관들의 퇴출·합병과 해외매각 등의 비상상황 속에서 수협도 자구책을 강구해 나갔다. 즉 1997년 12월 경영혁신 대책반을 편성하고 대손충당금, 유가증권 평가충당금 적립을 위한 재원 확보,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3] 충족을 위한 회원조합의 특별증자와 수산금융채권 발행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1997년에 397억 원, 1998년엔 3,283억 원의 결손이 발생하면서 1999년 초에 정부에 「수협법」 개정과 5,700억 원의 우선출자를 요청하게 되었다.

〈표 4-5-9〉 IMF 당시 수협의 재무상황

(단위 : 억 원,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출자금	259	1,410	2,203	2,208	2,210
자본합계	311	1,300	272	-1,569	-7,629
손익	8	-397	-3,283	-1,338	-6,167
BIS비율	2.00	7.36	1.18	-4.60	-40.69

3 은행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비율로 BIS 금융위원회(바젤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산의 신용·시장·운영리스크(외은지점의 경우 운영리스크 제외)에 따라 자기자본 보유를 의무화하는 "자기자본 측정과 적정자기자본 수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근거로 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경영지도비율의 하나로서 금융감독원의 지도비율은 8% 이상이다.

IMF 당시 수협의 재무상황 추이

(단위 :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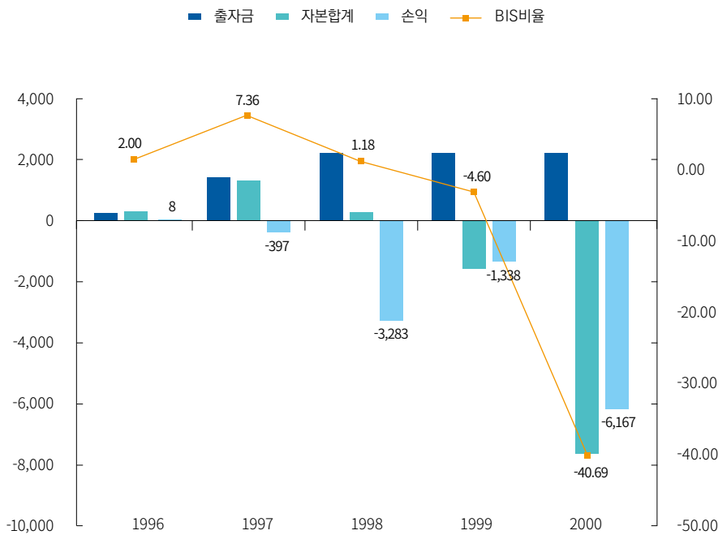

3) 공적자금 투입

수협은행(신용사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1999년 해양수산부의 요청에 의한 외부경영진단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2000년에 2차에 걸친 「수협법」 개정에 따라 정부 출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총 5차에 걸쳐 진행된 정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한 의견조율, 2차례의 전국조합장 협의회,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 대토론회와 경제장관회의 최종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적자금 투입이 결정되었다. 그 주요 추진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0년 1월 28일 우선출자제도와 신용·경제사업 대표이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협법」이 개정됨으로써 정부의 지원방안이 관련 부처 간에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때 수협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라는 기존의 「은행법」 제5조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로 2000년 7월에 개정되었다.

2000년 2월 24일 관계부처(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1차 차관회의에서 경영혁신방안 추진을 전제로 지원하되 경영혁신방안 마련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재무실태를 조사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 3월 9일 해양수산부에서 수협경영정상화를 위해 4,600억 원을 정부 현물출자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부처 간 의견대립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2000년 6월 22일 제2차 차관회의에서 신용사업 분리방안 등 향후 수협운영의 방향에 대하여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므로 수협에서 자체 방안을 제출토록 조치하고 관계부처와 재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0년 7월 21일 제3차 차관회의에서 강화된 독립 사업부제, 자회사 완전분리, 정책자금만 취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000년 7월 27일 제4차 차관회의에서 공적자금 지원 비율, 정부 현물 출자와 공적자금의 지원 등 신용자회사 설립 시 선결 조치사항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2000년 7월 31일 긴급 조합장협의회에서 정부 공적자금 투입추진에 따른 현안사항을 협의하였고, 공적자금 조기 투입과 신용자회사 분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2000년 8월 8일 2차 조합장협의회에서 정부 공적자금 추진과 관련하여 범 수협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대 국회 및 정부활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0년 9월 4일 해수부 장관 주재 신용사업 운영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회원조합장, 어업인 후계자 대표, 민주당. 자민당 전문위원 그리고 재경부 은행제도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일선 조합장들과 어업인 후계자들은 신용사업의 완전 분리에 반대하였고, 재경부에서는 독립사업부제를 주장하였으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다수 조합장 등 참석자들의 의견에 따라 향후 중앙회 신용사업은 독립사업부제 강화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2000년 9월 4일 해수부 장관 주재 수협 신용사업 운영방안 토론회

2000년 9월 26일 제5차 차관회의에서 재경부 측에서 독립사업부제 강화방안에 대하여 수용을 시사하였고, 금감위 측에서는 자회사 분리방안보다 현행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한 출자가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독립사업부제 체제하에서 예금자보호법의 절차에 의한 방안, 독립사업부제 체제하에서 수협법 개정을 통한 지원방안, 자회사 분리 후 금산법 체계에 의한 지원방안 등 3개 안을 검토하여 2000년 10월 10일 이전에 경제조정정책회의에서 최종방침을 확정 발표키로 하였다.

2000년 10월 10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공적자금 투입 및 관리를 자회사 수준으로 투명하게 한다는 전제하에 신용사업 부문의 독립사업부제 강화방안을 채택하였고, 「수협법」을 개정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출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BIS비율은 일반은행에 대한 지원 예를 따르기로 하였고, 부실을 초래한 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2000년 12월 30일에 수협법을 개정하여 국가나 예금보험공사는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수협법」 제152조의 2).

그리고 마침내 2001년 1월에 예금보험공사 주관의 재산분리를 위한 재산실사를 통하여 2000년 말 미처리결손금 9,887억 원, BIS비율 10% 유지에 필요한 공적자금 1조 1,581억 원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침으로써 우선출자 방식의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실무적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2001년 4월 26일에 공적자금 1차분 1조1.095억 원, 그리고 2001년 12월 31일에 2차분 486억 원이 투입되면서 최종 완결되었다.

4)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emorandum Of Undertaking)

이것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에 의거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공적자금의 지원조건,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약정이다. 2001년 4월 25일에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수협중앙회 회장 및 신용사업 대표이사가 연대 서명하여 체결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대표[4] 간에 대주주 자격유지 시점까지 2년 이내 단위로 약정하는 것으로 공적자금 지원규모 및 방법과 필수 이행사항 미 이행시 예보의 조치사항(경영책임, 구조조정 등) 등을 약정하고 있다.

나) 경영정상화 계획

재무비율 목표(BIS자기자본비율, 1인당 조정영업이익, 총자산순이익률, 판매관리비용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및 비재무부문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다) 필수 이행사항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의 부속서류로서 비재무부문으로는 경영지배구조 개편, 비신용사업부문과의 거래, 여신리스크 관리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재무부문으로는 재무비율 개선 등을 명시하고 있다.

라) 경영진의 정상화계획 이행각서와 MOU에 대한 노사합의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수협 전체 임원(비상임이사 포함)의 각서와 노사합의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라. 시련 극복기(2000년대)

1) 경영혁신 운동(2001~2010년)

공적자금에 의해서 자본금이 확충되고 독립 사업부제로 새롭게 정비된 수협은행은 2001년 4월 1일에 긴 구조조정의 여파로 침체된 조직의 분위기를 일신시키고 우량 CLEAN BANK로 도약하고자 직원 의식개혁운동인 'New Start 180 운동'을 전사적으로 전개하였다.

2002년에는 기반확대와 수익성 배가로 견실하고 경쟁력 있는 해양수산전문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Jump 2&2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결과 당기순이익 550억, BIS비율 10.61%를 달성하였고, 예금보험공사와 약정한 MOU 재무비율 목표를 모두 초과 달성하였다.

2003년에는 '일류 해양수산은행으로의 전진'이라는 기치 하에 수익의 극대화 및 비용의 최소화, 그리고 임직원 마인드 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Dash-3M'운동을 전개하여 당기순이익 711억, BIS비율 11.71% 등 예금보험공사와 약정한 MOU 재무비율도 모두 초과하였다.

2004년에는 'NICE 2004'경영혁신 운동을 전개하여 영업 패러다임을 수익중심 경영체제로 바꾸고, 조직 역량의 극대화를 추진하여 1,042억 원의 당기순이익과 11.2%에 이르는 BIS비율 등 괄목할 만한 경영실적을 올렸다. 그 결과 세계적 신용평

4 2016년 12월 1일 자회사 분리 이후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주체는 수협은행장으로 변경되었다.

가기관인 Moody's와 S&P 및 국내 신용평가사들로부터 국내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획득하여 경영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2001년 4월 1일 수협은행의 New Start 180 운동 선포식

2005년부터 2006년에는 적극적 해양금융 진출, 선진적 수산금융 구현, 지속적 상업금융 강화 그리고 효율적 경영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OK ACE 0506'경영혁신 운동을 지속하였다. 그 결과 2005년은 수협 창립 이래 최고인 1,24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BIS비율은 12.59%를 달성하였다.

또한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무디스 A3, S&P A-(S)등급을 부여받음으로써 수협은행의 브랜드 가치와 대고객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2006년에도 수익중심의 경영패러다임을 더욱 강화하고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여 1,186억 원의 당기순이익과 11.40%의 BIS비율을 달성하였다.

2004년 6월 Moody's 신용평가등급 A3 획득

2007년에서 2008년에는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BLUE I 0708'운동을 전개하여 2007년에 당기순이익 879억 원, BIS비율 11.38%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거액 부실여신 발생 등으로 당기순이익 76억 원, BIS비율 11.26%에 그쳤다.

2009년에는 새로운 경영진이 선임됨에 따라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어 일류해양수산은행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WIN START 2009'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당기순이익 330억 원, BIS비율은 13.53%라는 실적을 올렸다.

그리고 2010년을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향후 조직발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원년'으로 설정하고 해양수산부문에 특화된 상업은행으로의 도약과 성공을 위해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 跳躍 2010 운동'을 전개하여 당기순이익은 2009년보다 89억 원 증가한 419억 원, BIS비율은 13.09% 실적을 올려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였다.

2) 해양투자금융업무 개시

2004년 당기순이익 1천억 초과 달성 등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나 은행 간 합병에 따른 대형화,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에 따른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전문은행으로 특화하기 위한 장기비전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장기비전 달성을 위해 2005년 1월에 해양투자금융부를 발족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내부조직을 정비하여 해양투자금융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주요 사업내용은 항만 SOC사업, 선박금융, 그리고 기타 투자금융 등이다.

마. 새로운 도전기(2010년대)

1) 해양수산유관단체와 주거래 업무협약 체결

2011년 1월에 국립 부경대학교와 수협은행의 전통적인 산학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금융 업무 제반 서비스를 지원 관리하는 주거래은행 협약을 체결하였다. 수협은행은 부경대학교 학교발전기금 출연을, 부경대학교는 수협은행에 20년간 단독 입점 보장 및 학교자금 80% 이상 예치 등의 준수 사항 이행을 약정하였다.

또한, 수협은행은 국내 유일 어업인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전문은행으로서 2021년 12월 현재 87개의 해양수산유관단체와 주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수산업과 어업인의 복지와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2) 차세대 新전산시스템 '넥스트로' 오픈

수협의 신 차세대 시스템은 자본시장통합법, IFRS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수협 창사 이래 최대 IT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2009년 11월 본격 구축에 착수하여 22개월 후인 2011년 9월 14일 Nextro라는 이름으로 성공적인 오픈을 하였다.

분개자동화, 24X365 등 Nextro 시스템은 그동안 타 행의 차세대 시스템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창출하며, 오픈 당일 모든 영업점 일일마감이라는 신화를 기록하였고, 신 차세대 시스템 '넥스트로(Nextro, New EXtension of The Remarkable Ocean-bank)'라는 명칭이 의미하듯 '일류 해양수산은행'으로 새롭게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1년 9월 차세대 전산시스템 "넥스트로" 오픈

3) 수협은행 출범

가) 배경

2010년 12월에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08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은행의 자본규제를 보통주 중심의, 더욱 강화된 바젤Ⅲ[5] 도입 방침을 발표하였고, 국내 은행들은 자본구조 개편에 착수하였다.

IMF 금융위기 당시 여러 은행들은 상환의무가 면제된 출연 형태로 공적자금을 수혈받았으나, 수협은행(신용사업부문)은 상환의무가 있는 출자형태로 지원받음에 따라 공적자금 1조 1,581억 원이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되었고, 후순위 채권 등 부채성 자본(약 1조 1,900억 원)도 상환의무가 있어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5 바젤Ⅲ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제고코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제정한 새로운 BIS비율 산출 기준으로, 자본의 경우 상환의무 없는 보통

〈표 4-5-10〉 바젤Ⅲ 도입 시 수협은행 자본비율 변화(2014년 3월 말 기준)[6]

(단위 : %)

구분	기본 자본비율	보통주 중심 자본비율
현행(A)	7.15	-
변경(B)	△1.43	△1.43
(B-A)	△9.28	△1.43

나) 출범과정

2013년부터 도입되는 바젤Ⅲ, 2014년 도입되는 IFRS[7]에서 수협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 우선출자금이 모두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자기자본 부족으로 중장기 규제인 자본비율이 미달된다. 따라서 글로벌 신용등급이 하락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타 행과의 BIS비율 격차도 확대되므로 정상경영이 곤란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2012년 9월에 해양수산부는 민관합동 '수협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동 위원회를 통하여 우선출자금을 보통주로 전환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관련부처와 예금보험공사 그리고 수협 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2013년에 국내 은행들은 바젤Ⅲ를 도입하여 새로운 자본규제를 받게 되었으나, 금융위원회는 수협은행에 대하여 3년간 적용유예를 발표함으로써, 자본규제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다.

2014년 1월에는 정부 경제현안회의에서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추진'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관계부처(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는 합동 TF를 구성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하되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동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015년 4월부터는 우선출자금을 보통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실무적 검토와 법적 기초 검토를 위하여 관계기관(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예금보험공사, 수협) 간의 실무 협의가 수차례 이루어졌다.

2015년 8월 26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수협은행을 수협중앙회에서 분리하고, 수협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금을 보통주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졌다.

6 공적자금의 적격자본 미전환 시 자본비율 변화이다.

7 자본시장의 개방 등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회계처리 기준을 말한다.

이에 따라 2015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2015년 9월 7일 수협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16년 5월 19일 수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수협은행을 수협중앙회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이 완성되게 되었다. 이어서 2016년 6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수협사업구조개편지원단'을 발족하여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실무절차를 진행하였고, 2016년 12월 1일에 자회사 수협은행이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2016년 12월 1일 수협은행 출범식

다) 자회사 분리 내용

수협은행을 수협중앙회에서 분리하고, 수협중앙회 내에 공적자금 잔류를 위한 신용사업특별회계 설치함으로써 공적자금(1조 1,581억 원)이 바젤Ⅲ 보통주 요건에 부합되게 하였다.

즉, 공적자금 상환의 주체가 신용사업부문에서 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로 하되 상환재원은 신용자회사의 배당금으로 하기로 변경되었고 MOU 약정도 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와 체결하도록 변경되었다.

아울러, 중앙회가 수금채 5,500억 원을 발행하여 조달(이자비용만 정부가 5년간 한시 지원, 1.87% 기준 연 103억, 5년 515억 원)하도록 하고, 수협의 자구노력으로 임직원 출자(240억 원), 회원조합 출자 등 (760억 원), 수금채 발행 등(2,500억 원)을 통해 3,500억 원 자금을 마련하여 추가자본 9,000억 원을 조달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협법」을 개정하여 수협은행 신설 및 명칭사용료 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사업특별회계 설치근거도 마련하였으며, 조특법으로 자회사 분리 전후 발생하는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면제조건도 마련하였다.

라) 기대 효과

수협은행의 분리로 인해 중앙회는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성 자본 중심에서 보통주 중심 자본구조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중앙회 및 회원조합을 통한 장기적인 자본조달 시스템이 갖추어졌고, 조직문화 혁신과 수익성 및 생산성 향상 등 은행 경쟁력을 제고시켜 공적자금을 원활하게 상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회사인 수협은행이 지급하는 명칭사용료는 어업인 교육지원사업,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협동조합 고유목적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수협은행이 협동조합의 수익 센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아울러 수협은행은 사업구조 개편 이후에도 공제상품 판매, 회원조합에 대한 IT지원, 신용카드·외환 위탁업무 등을 지원함으로써 회원조합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게 하였다.

4) 모바일뱅킹 서비스 '헤이뱅크(Hey Bank)' 앱 출시

2017년부터 정식 영업을 시작한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2017년 4월)와 카카오뱅크(2017년 7월)의 등장으로 고객 금융거래의 비대면화·간편화·편리성 추구는 더욱 가속화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환경에 대응하고 스마트뱅킹의 확장 및 고도화를 위해 2018년 12월에 기존의 스마트뱅킹인 파트너뱅킹보다 간편하고 편리한 뱅킹 서비스인 '헤이뱅크(Hey Bank)' 앱을 출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헤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의 고객 편의성 제공을 위한 뱅킹 핵심기능 및 간편한 상품가입 프로세스를 갖추었고, 이를 통해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단순하고 직관적인 UI/UX[8]를 구현하였다. 그리고 헤이뱅크 앱은 고객의 본원적 니즈를 충족시키는 금융상품을 탑재하여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거하고, 고객의 금융거래 목표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5) 안정적인 외화조달 위한 3억 달러 규모 해외채권 발행

가) 배경

중장기 외화자산 운용 및 효율적 외화유동성 관리를 위한 조달 필요성으로 외화공모채권 발행을 통해, 2007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3억 달러 수준의 외화조달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IB사업부의 해외투자 관련 운용과 매칭하기 위한 조달이다.

나) 발행내용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해외투자자 대상 IR을 실시했고, 기관투자자와

8 UI(User Interface : 이용자 인터페이스)는 휴대폰, 컴퓨터,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기기를 작동시키는 명령어나 기법을 포함하는 사용자 환경을 뜻하며, UX(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는 단순히 기능뿐만 아니라 지각 가능한 모든 면에서 사용자가 참여하고 상호교감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다양한 경험을 말한다.

의 미팅을 통하여 타 국내 은행 수준의 성공적인 공모채권 발행이 가능하였다. 수협은행은 고정금리 외화채권을 발행하여, 이자율스와프를 통한 변동금리 지급 구조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 금리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였다.

Sh수협은행 헤이뱅크 출시

〈표 4-5-11〉 수협은행 외화공모채권 발행 실적

발행일	만기일	금액(백만 달러)	금리*	해외 IR 진행
2007.04.24	2012.04.24	300	3ML+0.25%	싱가폴, 홍콩 등
2009.07.21	2014.07.21	300	3ML+3.57%	싱가폴, 홍콩 등
2012.05.03	2017.05.03	300	3ML+2.30%	싱가폴, 홍콩 등
2014.04.16	2019.04.16	300	3ML+0.84%	싱가폴, 홍콩 등
2019.01.29	2024.01.29	300	3ML+0.93%	싱가폴, 홍콩 등

6) 수협마이크로파이낸스(수협MFI) 미얀마 법인 출범

미얀마는 금융서비스와 인프라가 취약하고 15세 이상 인구의 은행 계좌 보유율은 22% 수준에 그칠 정도로 금융 산업이 낙후되어 있으며, 서민들은 금리가 월 10~15% 수준인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액대출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27일에 '수협 마이크로 파이낸스 미얀마'를 설립하고, 2019년 7월 MFI 영업허가 승인, 2019년 9월 2일부터 행정수도인 네피도 주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후 네피도 주에 추가하여 샨 주, 마궤 주, 양곤 주까지 총 4개 주에서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2021년 말 현재 자본금은 미화 800만 달러이고, 직원 82명(주재원 2명, 현지 직원 80명)이 1개 본사와 5개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대출금 23억 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19년 9월 16일 수협MFI 미얀마 법인 출범식

7)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달성

수협은행에는 2001년에 공적자금 1조 1,581억 원이 투입된 이후 2004년 카드채 혼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3년 바젤Ⅲ 도입에 따른 부채성 자본의 자본금 불인정, 그리고 사업구조개편에 의한 독립법인화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었다.

수협은행에서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내부 경영혁신을 통해 시중은행과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 결과 경영 전반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표 4-5-12〉 수협은행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재무비율 실적(2001~2021)

(단위 : 억 원, %)

구분	BIS비율		ROA		판매관리 비용율		1인당조정영업이익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2001	10.0	10.7	0.3	0.4	63.0	62.7	1.0	1.1	4.0	1.7
2002	10.0	10.6	0.6	0.6	50.0	48.2	1.4	1.7	2.0	0.9
2003	10.5	11.7	0.7	0.7	47.0	45.4	1.6	2.0	2.0	0.9
2004	10.5	11.2	0.8	0.9	45.0	42.7	1.8	2.4	1.5	0.9
2005	10.5	12.6	0.8	1.0	46.2	42.4	2.3	2.7	1.4	0.9
2006	11.0	11.4	0.7	0.8	48.7	48.4	2.1	2.6	1.4	0.6
2007	10.5	11.4	0.6	0.8	53.3	48.5	2.3	2.7	1.1	0.7
2008	10.0	11.3	0.6	0.2	53.2	49.7	2.2	2.6	1.1	1.8
2009	10.0	13.5	0.3	0.3	51.8	45.1	2.4	2.8	2.0	1.3
2010	10.0	15.6	0.5	0.3	51.9	42.3	2.3	3.0	1.5	2.6
2011	10.0	12.6	0.38	0.47	47.9	45.1	2.7	3.0	2.1	1.3
2012	10.0	13.1	0.36	0.37	46.6	48.1	2.8	2.8	1.6	1.5
2013	10.0	13.6	0.35	0.77	44.0	39.1	2.7	3.4	1.5	1.5
2014	10.0	12.3	0.36	0.71	47.0	41.6	2.7	3.3	1.5	1.5
2015	10.0	12.1	0.37	0.78	49.0	41.0	2.8	3.3	1.5	1.1
2016	10.0	15.6	0.39	0.56	50.6	43.1	2.8	3.3	1.3	0.4
2017	10.0	14.6	0.49	0.95	46.8	42.5	3.0	3.8	1.1	0.4
2018	11.0	13.6	0.61	0.86	46.4	44.0	3.2	4.0	1.0	0.2
2019	11.0	13.6	0.66	0.73	50.0	49.8	3.1	3.1	0.5	0.3
2020	11.0	14.0	0.65	0.56	52.1	48.2	3.1	3.3	0.4	0.2
2021	11.0	13.8	0.56	0.68	52.1	46.4	3.3	3.8	0.4	0.2

8) 경영성과와 공적자금 상환

수협은행은 2016년 자회사로 분리 독립 후 수익규모 및 건전성 등 제반 지표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시현하였다. 특히, 소매여신 중심의 안정적 자산 증대 등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였고, 자본 효율적 자산 증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동안 이룩한 경영성과로 2001년부터 2016년에 걸쳐 미처리결손금 9,887억 원을 전액 정리하였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공적자금 4,007억 원 상환하여 잔액 7,574억 원을 남겨두고 있다.

〈표 4-5-13〉 수협은행의 공적자금 상환 실적(2001~2021)

(단위 : 억 원)

구분		2001~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미처리결손금 정리액		9,469	418	-	-	-	-		9,887
공적자금	상환액	-	127	1,100	1,320	501	350	609	4,007
	잔여액	11,581	11,454	10,354	9,034	8,533	8,183	7,574	7,574

바. 금융혁명기(2020년대)

디지털 금융혁명기를 맞이하여 인공지능·블록체인·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컴퓨팅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스마트폰의 확대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금융산업의 영역은 큰 도전에 직면하였다. 또한 ICT기술과 금융을 접목한 핀테크 기업과 IT기술 및 플랫폼 확장력에 기반을 둔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하여 빠른 속도로 고객을 흡수함으로써 전통 금융 산업을 위협하였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은 대면 채널 위주의 기존 은행들로 하여금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이게 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고, 수협은행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부문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2018년에 분산되어 있던 업무 및 인력을 통합하고 스마트금융실을 디지털금융부로 승격하고(개인그룹 소속) 비대면 전용상품과 간편 뱅크를 출시하였으며, 외부제휴를 통해 디지털금융 확장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였다.

2019년에는 비대면 전세자금 출시 및 이종업종 제휴를 통해 지속적인 고객성장과 비대면 상품라인업을 확대하였다. 또한 디지털창구시스템을 전 영업점에 도입하여 서류 없이 신속한 고객응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디지털금융부를 디지털금융본부로 승격하고 디지털전략부, 디지털마케팅부, 디지털개발부 3개의 부서를 배치하는 등 디지털화를 위한 업무영역을 더욱 확대하였다.

2020년에는 비대면 고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플랫폼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고객 서비스의 향상과 비대면 채널의 고도화에 집중하였다. 또한, 비대면 전용상품출시와 마케팅, 디지털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병행하였다.

2021년에는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하여 업무프로세스를 효율화했는데 이를 위해 영업점 창구업무의 디지털화, 여신프로세스 효율화, 후선업무 간소화, 콜센터 고도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급성장한 디지털 개인고객의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고객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고객의 비대면 거래를 위해 디지털 기업금융 지원 활동을 실시하였다.

2019년 11월 4일 디지털창구시스템

〈표 4-5-14〉 수협은행 연혁

연월일	연혁
1962. 04. 01	수협 발족
1963. 05. 01	여신업무 개시
1965. 04. 16	수산금융체계 일원화
1969~1973	'100억 원 자체자금 조성 운동'
1969. 04. 01	수신업무 개시
1979. 01. 10	외국환업무 개시
1982. 09. 14	유가증권업무 취급
1984. 05. 14	온라인업무 개시
1988. 05. 13	신탁증권업무 취급
1991. 04. 01	타행환업무 개시
1991. 10. 01	신용카드업무 개시
2000. 01. 28	수협법 개정(사업대표이사제, 정부우선출자 근거 마련)
2000. 12. 30	수협법 개정(신용사업 소이사회 운용, 대표이사 독립경영권 확보)

연월일	연혁
2001. 04. 25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체결
2001	공적자금 1차 11,095억 원 투입(4/26), 2차 486억 원 투입(12/31)
2001~2010	경영혁신운동 전개('New Start 180 운동' 등 총 8회)
2004. 06. 29	Moody's 신용평가등급 'A3' 획득
2004. 11. 02	국내 신용평가등 급 'AAA' 획득
2005. 01. 20	해양투자금융업무 개시
2005. 07. 27	S&P 신용평가등급 " A-(S)" 획득
2005. 10. 21	대한체육회 공식후원은행 지정
2011. 01. 17	부경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2011. 09. 14	차세대 新전산시스템 '넥스트로' 오픈
2016. 12. 01	수협은행 설립
2018. 12. 06	모바일뱅킹 서비스 '헤이뱅크(Hey Bank)' 앱 출시
2019. 01. 23	외화조달을 위한 3억 달러 규모 해외채권 발행
2019. 09. 16	수협 마이크로파이낸스(MFI) 미얀마 법인 출범
2019. 11. 01	디지털창구시스템 전 영업점 도입
2020. 08. 18	오픈뱅킹 고도화 시스템 구축
2021. 08. 23	웨스턴유니온 특급송금 시행

2. 사업부문별 발전과정

가. 수신사업

1969년 수신업무를 시작할 당시에는 보통예금, 정기적금 등 9종의 예금으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별단예금과 당좌예금을 취급하여 일반은행의 예금을 대부분 취급하게 되었다.

1976년에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저축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목돈마련저축제도가 신설되었고, 1977년에는 가계당좌예금이 신설하였다.

1983년에는 국민은행이 전담 취급해 오던 상호부금제도의 문호가 개방되어 상호부금을 취급하게 되었고, 1984년에는 할인식 양도성 정기예금을 할인식 양도성예금(CD)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판하였으며, 1986년에는 국민의 저축률 제고를 위하여 소액가계저축제도를 도입하여 세금우대종합통장제도를 시행하였다.

1997년에는 독도사랑연구보전협회와 협약을 통해 공익기금인 독도사랑기금[9]을

9 세후 대고객 지급이자의 0.5% 해당액을 수협 단독으로 부담

출연하는 독도사랑예금을 개발하여 시판하였고, 2000년대에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실세금리 정기예금 등 다양한 예금상품을 개발하였다. 2001년 독립사업부제 시행 후에는 해양수산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21세기 바다로 통장을 개발하여 판매하였으며, 2002년에는 우수고객 초청 경영설명회를 최초로 개최하여 고객과 함께하는 은행으로서의 수협 이미지를 제고시켰다.

2004년에는 대고객 이미지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1년 365일 구름 한 점 없이 싱싱한 은행'이라는 차별화된 광고 전략을 개발하여 TV, 신문을 비롯한 LED, POP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시행하였다. 2005년에는 마케팅-오퍼레이션(M/O) 분리와 CRM전략 프로젝트 추진 및 고객응대 서비스 진단, 고객만족도조사, CS마일리지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고객관계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08년에는 개인사업자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한 스페셜 사업자통장, 스페셜 주거래통장을 개발하였고, 허베이 스피릿호 유류유출 사고 1주년을 맞아 해양환경의 중요성과 해양수산 전문은행으로서의 공익성을 홍보하고자 바다사랑지킴이예금을 출시하였다.

2009년 3월 독도사랑기금전달식

2010년대에도 수시입출금식 우리사장님 우대통장 출시 등 새로운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였고, 스마트폰 뱅킹 상품인 달려라 -2030 정기적금, 자유적금을 시판하였으며, 2016년 자회사 분리 이후에는 인터넷뱅킹전용상품 'Sh 내가 만든 적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그리고 '보고싶다 명태야 적금', '쑥쑥크는 아이 적금' 상품 등을 출시하여 수협은행의 고객기반 확대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2013년~2015년에는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국수산자원관

리공단,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 국립해양박물관 등 유관기관과 주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해양수산 유관단체에 대한 금융거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2020년에는 해양쓰레기 저감 활동을 지원하는 'Sh해양플라스틱Zero!예·적금' 상품을 출시하였다. 수협은행은 독도사랑예금, 명태야 적금에 이어 해양플라스틱Zero!예·적금 출시로 수산·해양·환경 부문의 금융권 ESG 선도은행으로 자리 잡았다. Sh해양플라스틱Zero!예·적금은 연 평균잔액의 0.05% 이내에서 기금을 조성 및 출연하는 상품으로 2021년 해양환경관리공단 및 해양경찰청에 단독으로 지정 기탁하여 해양수산 전문은행 이미지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 마련에 기여하였다.

Sh해양플라스틱Zero!예금&적금

나. 여신사업

여신업무는 1969년에 첫 일반여신 취급을 시작하여 저축증대자금을 재원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취급하였고, 1987년 여신약정체제를 정비하였으며, 1989년에는 어음할인과 지급보증의 대상을 확대하며 그 업무범위를 확장하였다. 그리고 1993년에는 회사채 보증업무를 전 영업점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취급점 제한을 철폐했다.

또한, 1997년에는 여신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액여신을 취급하는 절차를 정비하였고, 1998년에는 동일인당 대출한도와 지급보증한도를 중앙회 자본금의 15%, 20%로 각각 제한함으로써 거액여신 취급에 제한을 두었다. 1999년에는 여신의사결정을 심사합의체에서 하도록 하였고, 2000년에는 기업신용평가모형 개발하여 시행하였다.

한편, 독립사업부제 시행된 이후 2001년에는 일반여신 1조 원 증대운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반여신 확대 전략을 통하여 여신의 수익적 운용에 중점을 두었고, 2002년에는 여신심사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지역심사제를 운용하여 여신경쟁력을 높였으며, 개인 신용평가시스템도 구축 완료하였다.

2003년에는 특화대출과 집단대출 제도를 시행하여 틈새시장 여신전략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2004년에는 여신업무방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여신업무의 효율성 및 표준화를 제고하여 여신규정 체계를 실무 지향적으로 재편하였다. 즉, 선진화된 금리결정체계의 도입 등을 위하여 여신종합관리시스템(CRMS)을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였고 여신전반에 걸친 업무프로세스의 전산시스템화를 구축하였다.

2005년에는 RM제도를 도입하여 기업고객에 대한 마케팅 역량과 상업금융을 강화하였고, 2006년에는 기업금융센터(RMC) 2개소를 설치하여 중소기업 유치를 통한 기업금융 확대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2008년에는 알찬기업알찬대출 등 신상품을 개발하였고, MVP123 운동 전개하여 기업금융 기반확대 등으로 수협은행의 여신경쟁력을 강화하였다.

2009년에는 '사랑海희망대출'을 출시하여 저신용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여신지원을 도모하였고, 2011년에는 타 행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6대 전략상품을 선정하여 판매하였으며, '업종별 심사반'을 신설하여 업종 전문 심사역을 양성하는 등 시장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2년 8월에는 수협은행 차주 특성에 맞는 최적화 된 개인·기업·신용카드 신용평가시스템(모형)을 개발 오픈함으로써 선진 여신심사와 여신건전성을 도모하였고, 2014년에는 부실 및 저수익성 여신을 디 마케팅하였으며, 소매여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15년에는 회원조합 연계 공동대출 및 금융 중개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중앙회·회원조합 간 상생협력·공동성장 체계를 마련하였고, 2016년에는 영업점의 비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류심사제를 도입하여 심사업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2017년에는 인터넷 기반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여 스마트금융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2019년에는 여신승인시스템을 개발(2018년 10월 ~ 2019년 7월, 약 10개월)하여 영업점의 승인신청서와 심사부의 심사보고서를 전산 표준화하였다. 또한 심사에 필요한 기초데이터(타행여신거래현황, 론리뷰 현황, 조기경보 등)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제공하게 됨으로써 업무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다. 수산정책금융

1965년 수산금융 공급체계가 수협으로 일원화된 이후, 1966년에 노후어선 대체 건조자금을 공급하기 시작하여 1967년 수협 총대출의 52.7% 비중(지원 잔액 32억 3,100만 원)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1971년 1월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1972년부터 담보력이 취약한 어업인에게 보증서에 의하여 수산자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1973년에는 원양어업자금을 농협에서 이관받아 어업자금 지원창구를 수협으로 일원화하였으며, 1974년에는 자체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수산자금에 대하여 정부가 이자 차이를 보전하는 이차보전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1981년에는 어업인에 대한 어업자금 신용대출한도를 30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이용한도도 어민에 대해서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어촌계에 대해서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였다.

1986년에는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어가부채경감대책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1988년에는 영어자금 한도거래제를 시행하였고, 1994년에는 원양어업자금에 대하여 선별(船別) 담보 취득도 가능하게 되었다.

1995년에는 대손보전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동일인당 대출한도는 수산정책자금은 2,000만 원, 농어업인 후계자금은 3,000만 원까지 인상되고, 1998년에는 「귀어가 어촌정착자금 지원지침」을 제정하여 귀어가에게도 정책자금을 지원하였다.

2002년에는 1999년 7월 이후 5.0%로 지원해 오던 영어자금 금리를 4.0%로 인하하였고, 양식어업인에게 배합사료구입자금과 기자재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에는 수산해양일반자금대출 제도를 시행하여 수산정책자금 한도가 부족한 어업인뿐만 아니라 수산 가공업, 유통업, 수산식자재 등 수산업 전후방 산업에까지 금융 지원을 하게 되었다.

2012년에는 태풍피해 어업인에게 특별영어자금과 피해복구자금을 공급하였고, 수산정책자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회원조합 연체감축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2015년에는 8월 1일부터 영어자금 등 9개 사업자금 고정금리 대출에 대하여 어업인은 금리 2.5%, 조합 등은 3.0%가 적용되었으며, 9월1일부터는 어업인이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어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에는 수산해양일반자금대출 증대 특별 프로모션을 전개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보증서 활용도를 제고시켰고, 어업인과 수산물 가공·유통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수산정책금융 대표은행으로서 위상을 제고하였다.

2019년 8월에는 우수수산물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선별적 대출 확대 방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Sh수산물 제조·가공업체론'을 출시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피해 어업인을 위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분할상환금 상환을 유예하였고, 어업경영자금 등에 대한 금리를 인하하였다.

라. 해양투자금융

2005년 시작한 해양투자금융은 2006년 4,000억 원(약정고 기준) 사업목표에 6,134억 원의 실적을 올려 1년 만에 해양·투자금융의 입지를 확보하였고, 2007년에는 실적이 대폭 증가하여 3조 2,721억 원의 약정고 실적을 나타냈다.

2009년에는 투자금융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구조화 금융팀을 신설하여 자산유동화 부문을 적극 개척하였고, 2014년 초에는 투자금융의 영역확대를 위해 해양투자금융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신규 투자금융 영역을 적극 개척하였다.

2016년에는 대체투자 및 부동산 개발금융 등 IB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신사업 추진에 매진하였고, 2017년에는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보증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동산 관련 투자금융 활성화에 주력하였으며, 수협은행 최초로 항공기금융시장에 진출하여 미화 1,300만 달러 규모의 금융을 취급하였다.

2019년에는 IB사업본부로 확대 개편되었고, 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서를 활용한 후순위 선박금융 및 컨테이너박스 금융 확대를 통해서 전년 대비 약 167% 증가한 약 2,639억 원 투자 잔액을 실현하였으며, 2020년에는 주거용 부동산뿐 아니라 안정성이 높은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였다.

마. 외환사업

1978년 12월에 재무부로부터 외국환업무 취급인가를 받아 1979년 1월부터 외국환업무(을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1982년 5월에는 갑류 외국환업무를 개시하였다. 1986년 3월에는 서울 소재 영업점에서 외국환 중계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하였고, 1995년 7월에는 마침내 외환업무 종합온라인도 시작하게 되었다.

2004년에는 기존 금융결제원 대행 EDI방식에서 자체 변환 EDI(무역금융망) 시스템으로 재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으며, 2005년에는 e-L/C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체 전산망을 통한 무역업체와의 수출입 외환거래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6년 3월에는 인천 제2국제여객터미널에 수협은행 최초로 환전전문 영업점을 개점하였고, 2007년 2월부터는 해외유학 및 이주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 고조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해외유학·이주센터 설치하여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에는 해외송금 자동이체 서비스,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해외송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CD, ATM) 이용 해외송금 서비스, 중국 위안화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행하였고, 2009년에는 외화여신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하여 '외화여신 연체관리반'과 수출입금융 취급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무역금융 애로상담반'을 운영하였다.

2011년에는 외교통상부와 해외 긴급 경비 신속 송금 제도 협약을 체결하여 해외출국자, 여권 발급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여 외환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외환고객 신규 확보를 위한 'Newface 333'운동, 예수금 증대를 목표로 한 외화예금 캠페인 '모아(MORE) 드림(DREAM)'을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외화시재모점을 전국 지역금융본부로 확대하여 총 10개소의 모점을 운영함으로써 지방소재 영업점 및 증가하는 상호금융 점포의 환전 업무를 지원하였다. 2015년에는 외화관련 조달과 운용을 일원화한 국제금융실로 조직 개편하였고, 회원조합 해외송금 위탁업무, 기업발행신용장 매입업무, 수출 포페이팅·팩토링 거래 등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2016년에는 외화 특급송금(Xpress Money) 서비스를 회원조합으로 확대 실시하여 회원조합 외환거래를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외환업무 역량과 향후 발전가능성을 인정받아 독일 코메르츠 은행으로부터 '2018 외환거래부문 한국 최우수은행'으로 선정되었다.

2019년에는 안정적 외화조달을 위해 3억 달러 규모 해외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하였고, 모바일 해외송금 서비스 및 외환 페이퍼리스 시스템도 도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1개 수출입 거래업체에 대하여 만기연장이나 보증금 면제 방식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였다.

2018년 9월 코메르츠은행 2018 한국 최우수은행 선정

바. 카드사업

1991년 3월에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시작한 카드 사업은 1993년 10월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업무도 개시함으로써 회원과 가맹점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는 본격적인 신용카드 사업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1995년 6월에는 직불카드 업무도 인가받으면서 직불카드 업무도 겸하게 되었다.

1996년 3월에는 공익카드사업의 일환으로 부경대학교 학생증 카드를 발급하고, 1997년 2월에는 독도사랑카드를 발급 개시함으로써 공익적 협력 모델을 만들었다. 이러한 협력방식은 2004년 해양수산인 우대카드, 2005년 항만물류비용 결제전용카드인 KPS카드, 2010년 해양경찰청 신용카드, 2017년 사랑해 카드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1997년 9월에는 VISA Interink 정회원 가입하고 1998년 9월에 VISA Int'l 준회원 가입함으로써 해외에서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되었고, 1999년 7월에는 직불카드로 해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외이용 카드의 범위도 확대하였으며, 2009년에는 글로벌 구매카드제도도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다.

한편, 2001년 4월에는 교통카드 발급을 개시하였고, 2006년에는 후불 교통카드도 발급함으로써 현재는 전국 어디나 사용가능한 교통카드의 기능이 탑재된 카드가 되었으며, 각종 무이자 할부서비스, 항공료 및 주유 할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2년에는 BC카드와 업무협약 체결함으로써 은행계열의 카드로서 수협카드의 지위가 바뀌게 되었고, 2015년에는 마스터 카드 및 신용보증기금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전업카드사에 못지않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이후에 Biz Plus 등 다양한 종류의 카드상품을 출시하여 2021년 말 현재는 총 33종의 카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수협카드 상품

사. 펀드사업

2003년에 처음으로 펀드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에 펀드상품에 대한 고객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장기운용수익률이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지속 출시하였으며 영업점 판매 인력의 마케팅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전문역을 채용하여 마케팅 지원 및 교육을 강화하였다.

2011년에는 금융감독원의 미스터리쇼핑에서 평가대상 35개 금융회사 중 전체 4위를 차지하여 '최우수판매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어 초기 펀드 판매 시 발생하였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였다. 2012년에는 주력상품으로 판매한 ELF가 전년 대비 2배 성장한 1,200억 원을 판매하여 펀드사업 수수료 증대에 기여하였다.

2013년에는 저금리기조 속에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해외채권형 판매확대를 통해 신규수익원을 확대하였고, 2014년에는 고객별 맞춤형 특화 ELF 출시하여 차별화된 펀드상품을 선보였다.

2015년에는 저금리 기조 속에 보수적인 투자자 및 중위험·중수익 추구형 고객 흡수를 위한 상품을 출시하였고, 시중 유동자금 흡수를 위한 비주식형 상품(MMF, 채권형펀드) 확대 등 시장상황을 고려한 선제적 상품으로 대응하였다.

2018년에는 ELF 불완전판매 근절 및 판매직원과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대면상담 녹취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20년에는 DLF 및 코로나19 사태로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와 글로벌 각국의 유동성 확대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증대되어 투자자 심리가 위축되었고, 이로 인해 안정성 위주 공모 ELF 펀드를 포함한 채권형펀드를 적극적으로 판매하였다.

아. IT 서비스

1) 초장기(1977~1988)

전산업무는 중앙회 조사부 내의 한 부서로 1977년 2월부터 시작하였는데, 전산용역센타에서 컴퓨터 설비를 빌려 금융업무 등을 전산 처리하였다. 1984년 4월에는 최초로 자체 컴퓨터 UNIVAC 1100/61 설치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했는데 동년 5월에 보통예금, 저축예금 온라인 처리를 시작으로 1988년 12월에 전 영업점이 온라인 처리를 하게 되었다.

2) 도약기(1989~1993)

영업점의 확대 등으로 포화상태에 이른 주 컴퓨터의 용량 부족을 해결하고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1989년 9월에 주 컴퓨터를 UNISIS 2200/401로 교체 설치하였고, 전자계산소를 독립부서로 확대 개편하였다.

1990년에 기업금전신탁, 어선보통공제, 당좌예금 온라인화, 1991년 금융결제원 공동망인 ARS공동망, CD공동망, 타행환 공동망 개발 시행, 동년 4월에 상호금융업무 온라인 개시, 1992년 2월에는 단말제어기를 경기, 제주지역까지 확대, MUX장비를 통한 56Kbps의 온라인 통신망 개선, 1993년에는 신용업무 편중에서 신탁, 공제, 상호금융업무까지 확대하여 내부 업무처리를 금융공동망까지 연결하는 확대된 온라인 업무를 하게 되었다.

1993년 10월 2일에는 종합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였다. 종합온라인은 과목 중심의 온라인 업무에서 고객의 실명번호를 기준으로 부여한 고객 중심의 전 과목을 하나의 원장 범주 내에서 구축하여 고객의 금융정보와 거래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3) 성장기(1994~2000)

1994년에는 CD공동망 계좌이체를 시행하였고, 상호금융 점포 자동화기기 도입 등의 업무를 개발 시행하였으며, 1995년에는 자산부채종합관리시스템(ALM)을 구축하였고, 전자문서유통망을 중앙회 전체로 확대 시행하였다. 그리고 1996년에는 여·수신, 공제, 외환업무 등의 전산개발을 지속하였고, 주 컴퓨터 자동관리시스템(VIEW POINT SYS)을 도입하여 주 컴퓨터의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능을 강화하였다.

1997년에는 19종의 신상품과 134종의 신규업무를 전산 개발하였고, 영업점 실적관리시스템과 영업점 상시감시시스템 구축하였고, 온라인 시스템 원장의 백업을 재구축하였다. 1998년에는 노후화된 개발용 시스템 대체하여 신규기종(UNISYS IXR 5801)의 주전산기와 디스크(214GB) 도입하였고, 통신프로토콜 통합과 통신 속도 향상을 위하여 NATIVE SYSTEM 구축 완료하였으며, 고객의 편의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MOBILE-BANK(무선휴대용 단말시스템)도 금융기관 최초로 시행하였다.

1999년에는 신용사업의 신규상품 10종, 업무개선 105종, 회원조합 상호금융정보시스템 구축 등 15종 개발, 경제사업 바다마트, 공판업무의 13종을 개발하여 업무 지원하였으며, Y2K인증 및 검증을 획득하였다. 2000년 3월에는 텔레뱅킹 시스템 구축, 8월에는 인터넷뱅킹시스템, 11월에는 모바일뱅킹시스템을 구축하였다.

4) 발전기(2001~2010)

2001년에 전산부문의 중장기 계획인 '종합 IT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했는데, 주요 추진목표는 24시간 365일 영업지원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전사적 자원관리,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보화 기반구축, 영업점 통신망 및 단말 환경 개선, 종합고객관리체계 구축 등이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2001년에 데이터저장창고(D/W), 상시감시시스템과 상호금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02년에 차세대온라인시스템, 신영업점시스템(단말 및 통신망)과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여신종합관리시스템, 2005년에는 종합수익관리시스템, 2007년에는 종합고객관리시스템(CRM)을 각각 구축 완료하였다.

특히, 2002년에 구축한 신영업점시스템을 통하여 운영 중인 뱅킹전용 단말기를 통합단말기로 교체하여 심사,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 및 리스크관리 등을 영업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하였고, 2007년에 구축한 종합고객관리(CRM)시스템 통하여 고객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고객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전개하게 되었다.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시장 확대에 따라 기업고객에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에 기업인터넷뱅킹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정부의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입추진과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를 목적으로 관련법률 제정과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유출 및 탈세 등의 자금 세탁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에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업무 정보화를 추진하여 2009년에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다.

5) 도전기(2011~2021)

금융 IT 패러다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진 개념의 Nextro시스템(신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2009.11월 착수하여 2011.9월 오픈하였다. Nextro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본시장통합법, IFRS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2년에는 보이스피싱 고객 피해 방지 시스템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고,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서버OTP관리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의 신규도입을 통해 취약점을 이용한 내부정보 유출 및 전자적 침해시도 예방을 위하여 시스템의 보안성을 강화하였다.

안정적 대고객 서비스 및 중요 시스템의 보호를 위해 2014년에 사이버 보안관제센터를 개소하였고, 2015년에는 전사 네트워크 망분리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 망분리 구축을 완료하였다.

4차 산업혁명 등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로 빅데이터, AI(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등 비대면 채널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금융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고객 니즈에 맞는 상품 및 IT서비스의 적기 지원이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바일 비지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뱅킹 독자 앱 'Sh 파트너 뱅크'를 2017년에 구축하였다. 이를 통하여 서비스 인프라를 확보하고 자체개발 역량을 증대하여 신상품 및 IT서비스를 적기 지원하였으며, 모바일 마케팅 지원을 통해 고객기반의 신규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2018년에는 비대면 거래고객 확대 및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Hey(미니)뱅크앱과 모바일 웹뱅킹 서비스를 구축 완료하였고 창구업무 선진화 시스템(Paperless 도입) 개발에 착수하였다.

창구업무 선진화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의하여 2019년에 종이 없는 영업점 환경을 구축하였고, 영업점 방문 없이 해당 지점 예·적금, 카드 등 모바일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 브랜치도 개발 시행하였다. 2020년에는 RPA(로봇업무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오픈뱅킹 서비스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산관리사업의 발판도 마련하였다.

자. 신탁사업

1988년 5월 국민주 신탁업무를 개시하면서 시작한 신탁업무는 불특정금전신탁, 가계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기금운용신탁, 재산신탁 그리고 퇴직연금신탁을 순차적으로 취급하게 되면서 그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

2002년에는 신탁자산의 건전성도모 및 보유자산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하이닉스채권에 대하여 81%의 충당률을 반영하였다.

2004년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으로 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신탁이 중지됨에 따라 수탁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5년에는 신규 사업인 부동산신탁과 금전채권신탁 등 재산신탁의 수탁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재산신탁(유가증권의 신탁, 금전채권의 신탁, 동산·부동산의 신탁)은 그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신탁사업의 중심사업이 되었으며, 2017년에는 회원조합과 제2금융권의 틈새 담보신탁을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부동산신탁 사업이익 52억 원을 달성하였다.

2005년에는 퇴직연금신탁의 전산화를 완료하였고, 2008년에는 퇴직연금 기반확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으며, 2011년에는 퇴직연금 Road Show와 회원조합과 거래업체 등에 대하여 집중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2009년부터는 새로운 수익원으로 특수목적회사(SPC) 사무수탁업무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2010년에는 업계 1위 실현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루었다.

2016년 3월에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관리하면서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하고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하여 118억 원의 수탁고를 달성하였으며, 2017년 5월에는 수협 회원조합 예금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을 출시하여 연간 3,147억 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하였다.

2018년에는 단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 가능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리가 낮은 MMT, 전자단기사채, 조합예금 등을 편입한 신탁상품을 출시하였고, 금전신탁 상품의 다양한 라인업을 위해 2019년 1월에는 ELT상품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금융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 최초로 금전채권신탁 프로세스를 전산화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간산업(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항공제조, 정유, 석유화학) 협력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기간사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총예산 5.5조)의 총괄 수탁사로 선정되었다.

차. 채권관리

1980년대까지 수협은 수산정책사업의 수행 범위 내에서 일반여신을 취급하였으나 1990년대에 이르러 일반은행과 대등한 경쟁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자금 및 정책자금 신용대출 확대, 대기업 여신지원 등을 통하여 수익증대를 꾀하여 왔다. 그러나 IMF라는 엄청난 장애물을 맞이하여 대기업 여신 등을 포함한 여신의 부실화로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되었고, 2001년에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루어가면서 채권관리 체제와 제도를 정비하였다.

2002년에는 수도권 및 9개 지역에 채권회수팀을 설치하여 불건전채권을 집중관리하여 불건전채권을 조기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여신감리제도(론리뷰)를 운용하여 여신실행 이후 차입자의 신용리스크 변동 상태를 평가하고 관리하였다. 아울러 차입자의 신용상태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차입자의 신용등급의 정기적인 조정 등의 조치를 하였다. 또한, 조기경보제도를 운영하여 이상 징후 차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정하였다.

2004년에는 론리뷰, 조기경보제도 등 여신감리제도를 확정하고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였다. 또한 연체대출금 감축을 위하여 콜센터 운영은 물론 연체관리 TF팀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 운용하는 등 전사적인 연체감축 캠페인을 추진한 결과 원화대출금 기준 1.61%의 건전한 연체비율을 유지하였다.

2005년에는 부실채권의 감축 위주 업무처리에서 예방적 관리체제로 전환하였고, 거액 부실채권의 사후관리 진행사항 및 소송업무 관리상황을 수시 파악하는 등 사후관리에 주력하였다. 2008년에는 불건전채권의 조기 감축 및 사후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역여신관리센터를 하나의 여신관리센터로 통합하고 지역여신관리팀을 둠으로써 관리체계를 집중화하였다.

2009년에는 구조조정 여신의 증가로 워크아웃에 전력하였으며, 연체감축전담반, 잠재부실관리반을 구성·운영하였다. 2010년에는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취약부문 잠재부실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강화되어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009년 말 2.15%에서 3.86%로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부동산PF 부실채권에 대한 유형별 정리방안을 마련하여 조기 감축하였다.

2011년에는 이·수관 채권에 대한 사업목표 조정을 통해 영업점 부실채권을 조기 이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신속한 법적절차 착수와 더불어 다양한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였다. 2012년에는 채권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여 총 12개월 소요되던 부실채권을 4개월 이내에 정리함으로써 자산건전성을 제고시켰다. 2013년 들어서는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경기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증가함에 따라 '임원별 전담 영업점 관리체계'를 가동하였다.

2014년 2월부터 잠재 부실여신(이자납입빈발, 조기경보 대상차주 등)의 부실전이 사전 차단을 위하여 '잠재부실 예방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고, 2020년에도 부실채권 예방을 위해 일일 부실채권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단계별 연체관리 강화와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법률리스크 지원을 위해 '여신사후관리지원반'을 운영하여 담보물 하자,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카. 리스크관리

「수협법」 제126조의3 및 신용사업 소이사회 규정 제9조 중 신용사업 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신용위험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리스크별 세부내용 및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과 수익의 안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1999년 12월 리스크관리팀을 신설하였다.

2001년 7월에 트레이딩 정책지침, 2001년 12월에는 시장리스크 관리지침을 각각 제정하여 트레이딩 포지션 및 시가평가대상 포지션의 리스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파생상품거래와 트레이딩 활동 증대로 시장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자기자본 규제제도(신 BIS 규제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대비하여 2002년 6월에는 시장리스크 측정시스템도 구축 완료하였다.

2003년 1월에는 리스크관리팀을 리스크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하였고, 2005년 10

월에는 리스크관리부로 개편하였으며, 2016년 12월에는 수협은행의 신설과 함께 리스크관리본부로 재개편하였다.

리스크관리는 각종 리스크별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제반 리스크의 세부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리스크관리협의회를 중심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리스크관리본부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BIS 자기자본비율 관리 및 통합리스크 등으로 구분하여 은행 전체의 리스크 인식, 측정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리스크관리 현황을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협의회 및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005년 4월에는 운영리스크관리 업무방법을 제정하여 경영관리리스크, 사무리스크, 전산리스크, 평판리스크, 법적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운영위험을 축소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리스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우리나라는 바젤위원회의 「자기자본의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IMF와 1997년 12월 합의하였으므로 수협 또한 일반은행과 같이 BIS 자기자본비율 최저 기준(8%)을 준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은행의 리스크관리 선진화와 자본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신 BIS 규제(바젤Ⅱ)가 2008년에 국내 은행에 전면 도입됨에 따라 2007년에는 BIS산출 시스템, 2008년에는 자본적정성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위험가중자산 한도관리 등을 통하여 자본적정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시장리스크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2002년에 구축한 시장리스크 측정시스템을 2007년에 업그레이드하였고, 2003년에 구축한 신용리스크 측정시스템도 2011년에 업그레이드하였으며, 2014년에는 바젤Ⅲ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동성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고, 2002년에 구축한 ALM시스템도 2019년에 재구축하였다.

리스크관리위원회

〈표 4-5-15〉 리스크관리 측정시스템 현황(2021. 12말)

시스템 명칭	주요 기능
신용리스크관리시스템	• 신용리스크(Credit VaR) 측정 및 한도관리 • 신용포트폴리오 관리 • 리스크 요소(PD, LGD, EAD 등) 산출 •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시장리스크관리시스템	• 시장리스크 측정 및 한도관리 • 표준방법에 의한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시스템	• 자산 부채 종합관리(금리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 • 금리 및 자금량 변동 시나리오에 의한 순이자 이익 및 순자산가치 시뮬레이션
위험조정성과평가(RAPM) 시스템	•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평가 지원

금융위기 발생 시 자본에 대한 손실 흡수 강화를 기본으로 한 보통주 자본 중심의 바젤Ⅲ 자기자본규제(2013년 시행)를 수협은행은 3년간 유예받았으며, 자회사로 분리한 2016년 12월부터 보통주자본 요건을 충족하여 동 제도를 적용받게 되었다.

2021년 말 현재 수협은행의 리스크관리체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리스크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리스크관리 기본계획과 방침을 수립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리스크관리협의회에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본계획 및 방침에 따라 세부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과 주요 사안에 대하여 협의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리스크관리본부장(의장) 및 주요 부서장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는 리스크관리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전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금리 및 신용리스크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넷째, 리스크관리본부는 전체 리스크를 파악하고 측정 및 통제, 보고업무를 수행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협의회를 보좌하는 리스크관리업무 전담부서이다.

수협은행 리스크관리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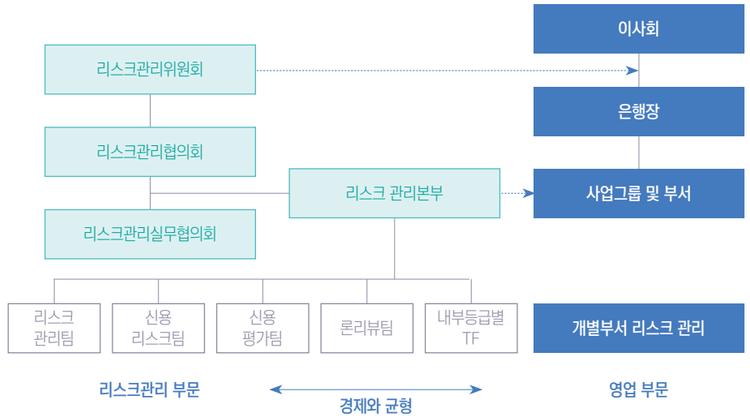

타. 준법감시

2003년에 「은행법」 제23조의 3에 의거하여 처음으로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하였고, 내부통제규정에 의거 리스크관리본부장이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준법감시업무규정에 의거 준법감시업무의 보고 대상을 '상임감사 및 소이사회'로 정하고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였다.

2005년 10월에 수협은행에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되었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10],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①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기획 입안
② 내부통제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및 미비점 개선·시정
③ 내부통제·법규준수 등과 관련한 자문 및 보고
④ 법규준수 여부 사전검토
⑤ 사고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
⑥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 등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임직원 교육 실시 및 교육현황 관리
⑦ 임직원 윤리강령 제·개정 및 준수여부 점검
⑧ 외부 감독기관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지원
⑨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관련 업무 총괄
⑩ 준법감시 결과의 주기적인 기록유지 및 준법감시인의 연간 활동계획·결과에 대하여 이사회 및 은행장에게 보고

또한, 내부통제를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영업점 간에 상호교차해서 점검하는 제도를 2005년에 시행하였고, one to one 운동을 시작하여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1직원 1봉사활동을 실천하였다.

2012년에는 내부통제역 운용지역을 수도권과 대구권에서 경기권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인 자점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금융사고예방 교육도 수행하였으며, 아름다운 가게 행사 등 윤리경영 실천운동도 그 범위를 넓힘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반부패 경쟁력평가 '최고등급'을 획득하였다.

2014년에는 고객프로슈머단을 발족하여, 각계각층에 있는 고객의 의견을 듣고 이를 상품개발 등 제반 경영활동에 반영하기 시작하였고, 2017년에는 '1社 1校 금융교육'활동으로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19년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가상호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팀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등 감독당국의 요구 및 규제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 체제를 구축하였다.

1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절 부문별 사업실적

1. 수신사업

가. 수신금리 변동

1) 지난 50년(1962~2011년)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수신금리는 전반적으로 우하향하는 추세를 보였다. 자금시장이 불안정했던 2007년 말부터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는 예금금리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하락안정세를 유지하며 2011년 9월 기준 정기예금 금리가 3.5%(1년~2년)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표 4-5-16〉 수협은행 정기예금 금리(2001~2011)

(단위 : %)

기간별	2001.1	2001.9	2004.12	2007.6	2007.12	2010.2	2010.12	2011.1	2011.9
1~3개월 미만	3.0	-	3.2	3.8	4.5	2.2	2.0	2.1	2.2
3~6개월 미만	4.0	3.5	3.2	4.2	4.9	2.9	2.5	2.6	2.8
6개월~1년 미만	5.0	4.0	3.7	4.4	5.2	3.0	2.8	2.9	3.1
1년~2년	5.5	4.5	4.2	4.6	5.4	3.7	3.4	3.5	3.5
2년~3년	5.5	4.7	4.1	-	-	-	-	-	
3년 초과	-	-	4.5	-	-	-	-	-	-

수협은행 정기예금 금리 추이(2001~2011)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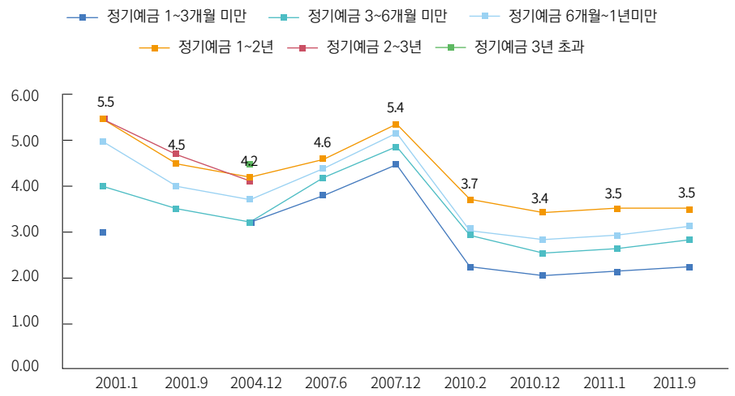

2) 최근 10년(2012~2021년)

2012년 2월 3.35%였던 1년제 정기예금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 2월 1.10%까지 하락하였다. 2018, 2019년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는 잠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하하면서 2021년 2월 0.75%까지 하락하였다.

〈표 4-5-17〉 수협은행 정기예금 금리(2012~2021)

(단위 : %)

기간별	2012.2	2013.2	2014.2	2015.2	2016.2	2017.2	2018.2	2019.2	2020.2	2021.2
3개월 이상	2.75	2.10	1.70	1.55	1.05	0.80	1.10	1.30	1.25	0.45
6개월 이상	3.05	2.20	1.80	1.65	1.15	0.90	1.20	1.50	1.35	0.55
1년	3.35	2.55	2.05	1.85	1.30	1.10	1.40	1.80	1.55	0.75
2년 이상	2.80	2.80	2.80	2.30	1.65	1.38	1.68	2.00	1.40	0.85
3년 이상	2.80	2.80	2.80	2.30	1.65	1.38	1.68	2.00	1.40	0.85

수협은행 정기예금 금리 추이(2012~2021)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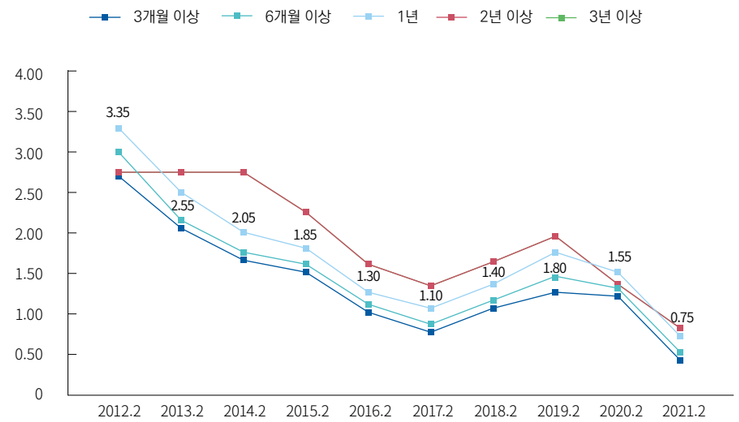

나. 수신실적

1) 지난 50년(1962~2011년)

1969년 자체자금 100억 원 증대운동을 시작하면서 수신사업이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 1992년에는 예금 1조 원을 달성하였고, 1999년 5조 2,268억 원을 예금조달하면서 5조 원대의 수신고를 달성하였다. 2000년의「수협법」 개정으로 회원조합은 상호금융, 중앙회는 신용사업부문으로 분리되기도 하였지만, 2001년부터 경영혁신 운동과 대고객 마케팅 강화 등으로 2007년 수신고 10조 원을 달성하였다. 2002~2011년 동안 연평균 10%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표 4-5-18〉 수협은행 수신 실적(1969~2011년)

(단위 : 억 원)

연도	합계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수입부금	주택부금	외화예수금	CD
1969	20	7	13	-	-	-	-
1972	52	17	35	-	-	-	-
1975	206	96	110	-	-	-	-
1978	765	247	518	-	-	-	-
1981	1,679	411	1,268	-	-	-	-
1984	2,395	717	1,678	-	-	-	-
1987	4,366	997	3,271	14	-	-	84
1990	7,490	2,100	4,662	17	-	-	711
1993	13,831	3,376	6,860	21	-	-	3,574
1996	24,147	4,941	10,700	465	-	-	8,041

연도	합계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수입부금	주택부금	외화예수금	CD
1999	52,268	4,289	29,363	2,052	-	-	16,564
2002	52,047	3,111	45,187	1,965	-	548	1,236
2005	75,801	5,393	47,864	1,069	-	383	21,092
2008	112,963	24,371	53,058	1,292	125	962	33,155
2011	120,911	17,917	72,297	2,292	52	535	27,818

주) 잔액기준, 이하 같음

수협 수신고 추이(1969~2011)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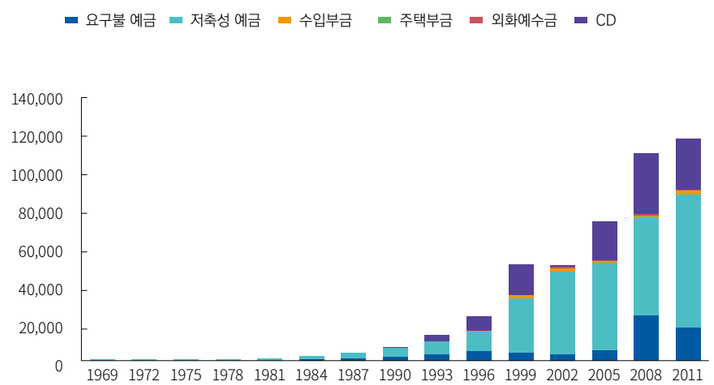

2) 최근 10년(2012~2021년)

최근 10년간의 수신고는 연평균 14% 성장하여 2021년 말 현재 38조 7,377억 원의 예수금 실적을 거양하였다. 저축성 예금이 2012년 7조 5,659억 원에서 2021년에 33조 3,636억 원으로 440% 증가한 덕분이다. 그러나, 저원가성의 요구불 예금은 2012년 1조 8,225억 원에서 2021년에는 3조 6,102억 원으로 198% 성장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예수금의 구조개선을 통한 수신의 질적 성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표 4-5-19〉 수협은행 수신 실적(2012~2021)

(단위 : 억 원)

연도	합계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수입부금	주택부금	외화예수금	CD
2012	119,869	18,225	75,659	1,655	43	1,128	23,159
2013	120,800	7,726	85,363	1,374	35	700	25,602
2014	123,480	9,590	89,302	2,420	30	810	21,328
2015	137,007	13,296	95,320	5,622	25	1,763	20,981
2016	167,237	16,429	119,743	7,501	23	3,764	19,777

연도	합계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수입부금	주택부금	외화예수금	CD
2017	212,319	19,861	158,489	6,929	21	5,345	21,674
2018	272,676	19,768	225,431	10,412	18	6,115	10,932
2019	304,254	20,149	259,900	16,559	16	5,246	2,384
2020	344,531	26,584	296,681	16,636	15	4,533	82
2021	387,377	36,102	333,636	8,050	14	4,091	5,484

수협은행 수신고 추이(2012~2021)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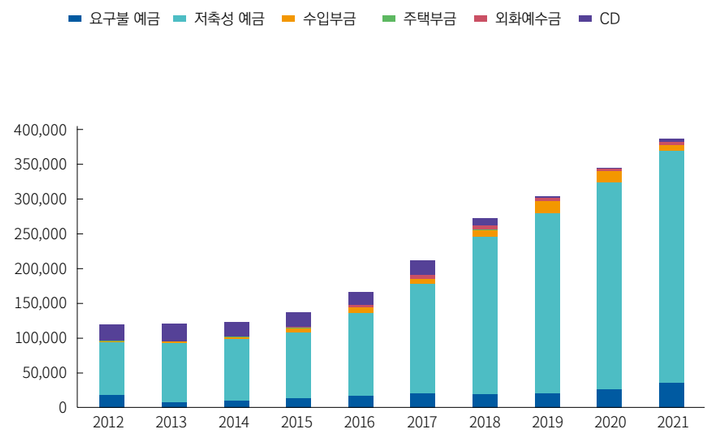

2. 여신사업

가. 여신금리 변동

1) 지난 50년(1962~2011년)

과거에는 금융단협정 및 금융기관 여수신 최고이율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모든 은행들이 동일한 대고객 여신금리를 적용하였다. 1988년 12월 5일 금리자유화 조치 이후 은행들이 자체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금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면서, 수협은행도 고객의 거래상황, 신용상태, 담보 등에 따라 신용등급별 차등금리 체계를 확립하였다. 2002년 이후 여신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 2월에는 개인 신용대출 6.39%, 기업일반대출 7.29%였다.

〈표 4-5-20〉 수협은행 여신금리(2002~2011)

(단위 : %)

연도	개인 신용대출	기업일반대출
2002	12.76	6.75~13.5
2004. 2	10.76	6.6~7.4
2006. 2	10.76	6.5~9.5
2008. 2	10.18	8.85
2010. 2	7.51	7.45
2011. 2	6.39	7.29

주1) 신용등급 최다차주에 대한 1년제 여신금리임. 이하 같음.
주2) 기업일반대출은 소기업모형(중소기업) 대출임. 이하 같음.

수협은행 여신금리 추이(2002~2011)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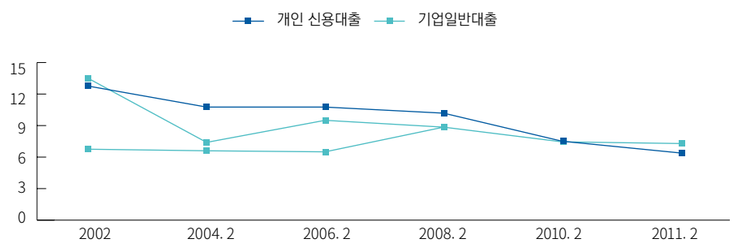

2) 최근 10년(2012~2021년)

2012년에는 최적화된 신용평가시스템(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여신금리를 차주 특성에 맞게 더욱 세분화하여 적용하였다. 2012년 이후 대출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에 최저점을 나타낸 이후 반등하였다. 2019년 이후에는 기준금리 하락과 풍부한 유동성으로 계속 하락하여 2021년 2월에는 개인 신용대출 3.68%, 기업일반대출 4.62%의 수준을 나타냈다.

〈표 4-5-21〉 수협은행 여신금리 추이(2012~2021)

(단위 : %)

연도	개인 신용대출	기업일반대출
2012. 2	6.84	7.35
2013. 2	6.33	7.47
2014. 2	5.64	5.56
2015. 2	5.11	4.52
2016. 2	4.69	4.32
2017. 2	4.89	4.54
2018. 2	5.26	4.90

연도	개인 신용대출	기업일반대출
2019. 2	5.10	5.33
2020. 2	4.64	4.89
2021. 2	3.68	4.62

수협은행 여신금리 추이(2012~2021)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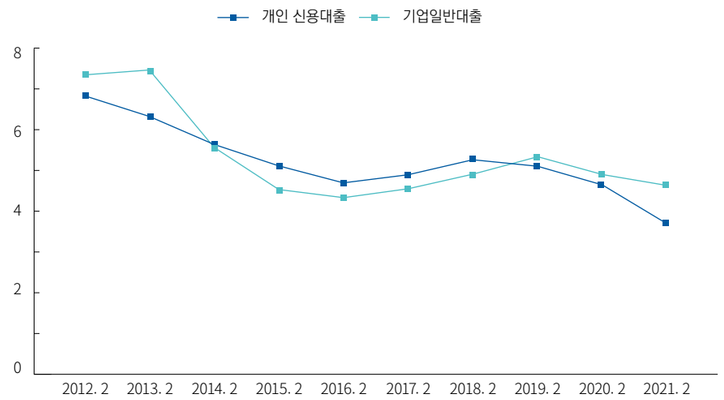

나. 용도별 대출실적

1) 지난 50년(1962~2011)

여신사업 초창기에는 영어자금 위주의 수산정책운전자금 취급이 많았으나, 1967년부터는 양식자금, 어선건조자금 등의 시설성 자금으로도 점차 확대되었다. 특히, 1990년에는 수협 창립 28년 만에 대출 1조 원을 달성하였는데, 영어자금 공급실적이 5,484억 원, 양식자금과 어선건조자금이 2,375억 원으로 대출의 70%를 차지하였다.

2001년 공적자금 수혈 이후에는 수산정책자금 공급이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 수익적 여신운용 측면이 중요해졌고, 일반여신 1조 원 증대운동 등의 대출자산 확대 전략을 펼친 결과, 2011년까지 연평균 14%의 대출자산 증가세를 보였다.

〈표 4-5-22〉 수협은행의 용도별 대출실적(1963~2000)

(단위 : 억 원)

연도	합계	운전자금	시설자금
1963	4	2	2
1966	22	12	10
1969	131	41	90
1972	227	102	125
1976	647	478	169
1979	1,245	914	331
1981	1,721	1,521	200
1984	6,053	4,806	1,247
1987	5,825	4,906	919
1990	11,105	8,448	2,657
1993	17,099	14,749	2,350
1996	25,287	23,339	1,948
1999	39,186	30,634	8,552
2000	39,538	29,368	10,170

수협은행의 용도별 대출실적 추이(1963~2000)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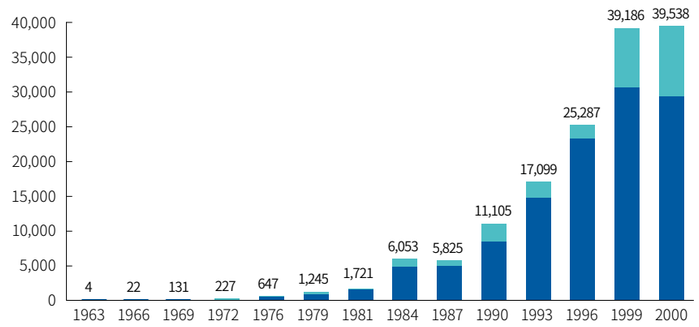

〈표 4-5-23〉 수협은행의 용도별 대출실적(2001~2011)

(단위 : 억 원)

연도	합계	기업	가계	공공 기타
2001	40,064	30,165	9,750	149
2004	70,103	41,092	20,752	8,259
2007	121,605	77,624	25,963	18,018
2011	151,920	100,969	22,929	28,022

2) 최근 10년(2012~2021)

최근 10년간 기업대출은 개인사업자를 비롯한 소액 대출과 중소기업대출 증가로 연평균 6% 성장하여 2021년 말 18조 9,983억 원에 이르고 있다. 가계대출은 2016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활황과 주택담보대출 수요 증가로 2021년 말에는 2012년 대비 8.6배 증가한 16조 3,371억 원을 달성하였다. 전체 대출실적은 37조 3,433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3배 증가하였다.

〈표 4-5-24〉 수협은행의 용도별 대출실적(2012~2021)

(단위 : 억 원)

연도	계	기업	가계	공공 기타
2012	160,166	111,112	19,073	29,981
2013	164,181	120,174	16,740	27,267
2014	170,051	124,092	19,914	26,045
2015	184,116	131,060	28,709	24,347
2016	212,062	137,040	52,120	22,902
2017	244,544	143,864	79,064	21,616
2018	285,432	144,716	120,646	20,070
2019	322,393	161,595	141,141	19,657
2020	348,905	179,149	150,670	19,086
2021	373,433	189,983	163,371	20,079

수협은행의 용도별 대출실적 추이(2012~2021)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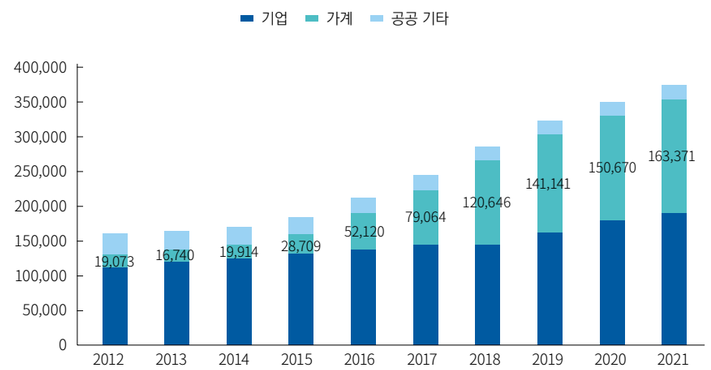

다. 업종별 대출실적

1) 지난 50년(1962~2011)

2001년~2011년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업종에 대한 여신이 2001년 2,286억 원에서 2011년 9조 4,906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2년 이후 틈새 여신전략의 일환으로 시행한 교회대출, 파랑새둥지대출 등의 특화대출과 집단대출의 확대가 주효하였다.

〈표 4-5-25〉 수협은행의 업종별 대출실적(2001~2011)[1]

(단위 : 억 원)

연도	합계	농어업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부동산, 임대업	가계대출	기타 업종
2001	40,064	20,504	4,235	2,931	358	824	9,750	1,462
2004	70,103	21,705	3,469	3,598	1,202	4,129	20,999	15,001
2007	138,061	26,475	9,958	8,419	2,907	14,813	26,364	49,125
2011	172,934	22,574	13,965	13,974	4,586	25,679	22,929	69,227

수협은행의 업종별 대출실적 추이(2001~2011)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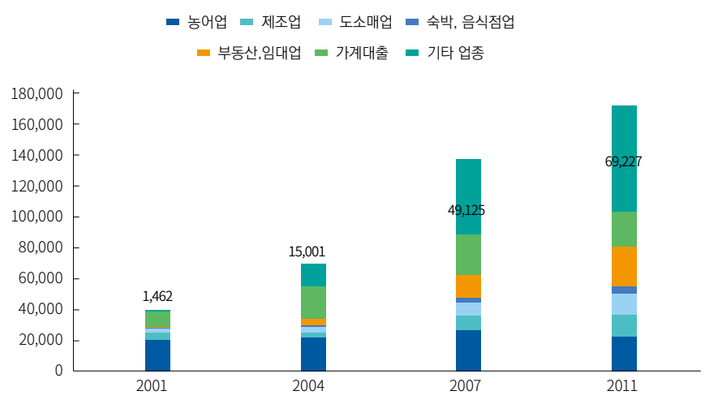

2) 최근 10년(2012~2021)

2012년 가계대출 잔액은 1조 9,073억 원으로 전체 대출의 10%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만 현재 16조 3,371억 원, 44%의 점유율을 달성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자회사로 출범한 2016년만 이후에는 주택경기 활황과 우수고객 확보 및

1 무수익 여신 산정대상 여신 기준임, 이하 같음

비이자 수익 확대 전략의 성공으로 연평균 26%의 빠른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표 4-5-26〉 수협은행의 업종별 대출실적(2012~2021)

(단위 : 억 원)

연도	합계	농어업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부동산, 임대업	가계대출	기타업종
2012	178,586	24,981	16,422	15,766	7,702	29,985	19,073	64,657
2013	179,719	27,171	14,972	16,366	9,683	36,237	16,913	58,377
2014	187,851	29,575	15,516	17,527	11,088	36,083	20,083	57,979
2015	199,423	31,630	14,202	15,655	13,116	41,276	28,877	54,667
2016	227,465	33,350	13,328	15,896	14,290	46,708	52,303	51,590
2017	256,731	32,921	12,002	14,014	15,409	56,856	79,297	46,232
2018	299,103	36,564	12,575	15,085	14,268	54,153	121,015	45,443
2019	335,168	39,606	12,264	15,328	16,425	59,477	141,661	50,407
2020	360,526	42,258	12,646	14,351	15,415	70,211	151,419	54,226
2021	373,433	45,538	11,242	13,887	13,134	73,550	163,371	54,780

수협은행의 업종별 대출실적 추이(2012~2021)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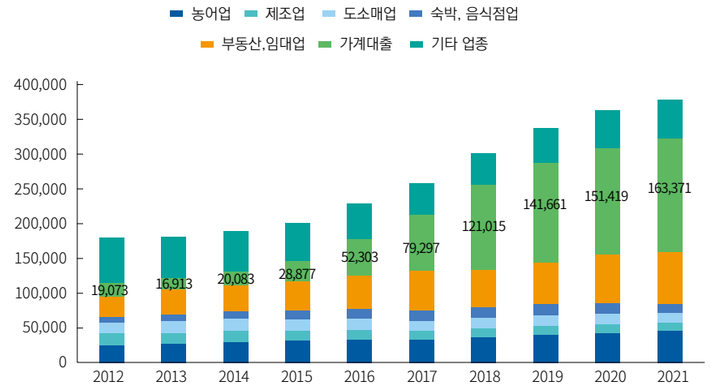

3. 수산정책금융

가. 수산정책자금 조달과 운용

1) 지난 50년(1962~2011)

가) 조달

1973년 이전까지 수산정책자금의 재원은 주로 재정대여금으로 조달(65% 수준)하였으나, 1974년 이후에는 자체자금 증대에 따라 금융(자체자금과 금융차입금)으로 충당하는 비율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2011년에는 전체 재원의 64%를 수협 자체자금(수협중앙회자금과 조합자금)으로 충당하였다.

〈표 4-5-27〉 수산정책자금 조달(1972~2000)

(단위 : 억 원)

연도	합계	재정	금융
1972	226	148	78
1976	647	155	492
1979	1,346	367	979
1982	2,939	871	2,068
1985	5,146	2,088	3,058
1988	8,094	3,288	4,806
1991	12,694	5,337	7,357
1994	18,961	8,748	10,213
1997	29,982	15,360	14,622
2000	39,539	19,138	20,401

주) 일반자금 포함 전체 대출금 조달 재원임

〈표 4-5-28〉 수산정책자금 조달(2003~2011)

(단위 : 억 원)

연도	합계	재특회계자금	농특회계자금	제기금 등 자금	수협중앙회자금	조합자금
2003	28,425	8,439	5,927	2,060	7,228	4,771
2006	30,943	6,568	3,881	3,510	11,472	5,512
2009	30,956	5,665	2,623	5,055	15,087	2,526
2011	31,651	4,775	1,922	4,657	17,964	2,333

나) 운용

수산정책자금은 어업인의 생산 활동에 소요되는 단기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어업경영자금(영어자금)으로 우선 공급되었고, 기타운전자금, 양식자금, 어선건조자금 등에도 지원되었다. 1997년 이후에는 기타시설자금이 증가하였는데, 대단위 수산물 유통 및 가공생산에 필요한 냉동, 냉장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였기 때문이다.

1997년에는 2조 1,703억 원이었던 수산정책자금은 2006년에는 3조 943억 원, 2011년에는 3조 1,651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영어자금이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에 어가부채경감조치에 따른 부채경감대책자금과 피해복구자금이 새로이 지원되었기 때문이다.

〈표 4-5-29〉 수산정책자금 운용(1972~2000)

(단위 : 억 원)

연도	합계	영어자금	기타운전자금	양식자금	어선건조자금	기타시설자금
1972	223	59	39	35	72	18
1976	599	361	69	44	71	54
1979	1,124	707	85	28	12	292
1982	2,556	1,575	334	459	164	24
1985	4,674	2,606	471	1,182	233	182
1988	7,264	3,704	1,134	1,720	453	253
1991	10,809	5,878	2,476	1,886	533	36
1994	14,823	7,537	5,183	1,380	360	363
1997	21,703	11,374	4,553	1,087	386	4,303
2000	27,731	13,580	3,980	435	355	9,381

〈표 4-5-30〉 수산정책자금 운용(2003~2011)

(단위 : 억 원)

연도	합계	영어 자금	원양어업 경영자금	피해복구 자금	부채대책 자금	농특회계 자금	수산발전 기금	기타자금
2003	28,425	12,391	1,026	875	6,737	5,541	492	1,363
2006	30,943	13,695	1,448	1,420	8,352	2,733	2,524	771
2009	30,956	14,818	1,458	1,269	4,577	1,588	3,830	3,416
2011	31,651	16,863	1,438	1,026	2,407	1,076	3,911	4,930

2) 최근 10년(2012~2021)

가) 조달

최근 10년간의 수산정책자금의 재원은 수협 자체자금과 수산발전기금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지속 감소하여 2020년부터는 수산정책자금의 재원을 더 이상 정부재정(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담하지 않는다. 수협이 직접 조달한 중앙회자금과 조합자금의 조달비율은 2012년 6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말에는 91%까지 확대되었다.

〈표 4-5-31〉 수산정책자금 조달(2012~2021)

(단위 : 억 원)

연도	합계	공공자금 관리기금	농특회계 자금	수산발전 기금	수협중앙회 자금	조합자금
2012	31,356	3,961	1,627	5,365	19,742	661
2013	32,174	3,148	1,346	5,809	21,430	441
2014	33,669	2,386	1,119	5,440	24,424	300
2015	34,789	1,691	827	5,281	26,762	228
2016	36,552	1,080	658	5,731	28,925	158
2017	34,843	626	525	6,029	25,976	1,687
2018	37,065	306	414	5,497	28,745	2,103
2019	38,939	102	312	5,126	31,344	2,055
2020	40,057	0	230	4,329	33,856	1,642
2021	40,821	0	159	3,609	35,755	1,298

수산정책자금 조달 추이(2012~2021)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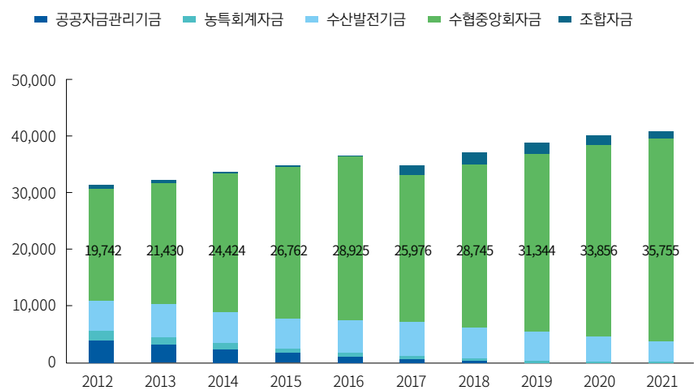

나) 운용

어업경영자금 공급은 2012년 1조 8,140억 원에서 2021년 말 2조 3,966억 원으로 5,826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수산정책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58%에서 2021년 말 59%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10년간 어업경영자금의 소요액 대비 지원율이 31~36% 수준으로 유지되는 반면, 수산물 유통 관련 농안 자금 등 기타자금의 공급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4-5-32〉 수산정책자금 운용(2012~2021)

(단위 : 억 원)

연도	합계	어업경영 자금	원양어업 경영자금	피해복구 자금	부채대책 자금	농특회계 자금	수산발전 기금	기타자금
2012	31,356	18,140	1,450	944	1,847	825	4,225	3,925
2013	32,174	19,098	1,272	1,169	1,468	593	3,909	4,665
2014	33,669	19,788	2,241	1,114	1,171	396	3,022	5,937
2015	34,789	20,935	1,619	993	955	273	2,604	7,410
2016	36,552	21,708	997	873	785	203	2,662	9,324
2017	34,843	21,611	857	775	654	147	2,551	8,248
2018	37,065	22,326	1,082	659	552	81	2,458	9,907
2019	38,939	22,967	1,005	583	432	59	2,244	11,649
2020	40,057	23,370	919	516	326	37	2,166	12,723
2021	40,821	23,966	643	467	239	23	2,037	13,446

수산정책자금 운용 추이(2012~2021)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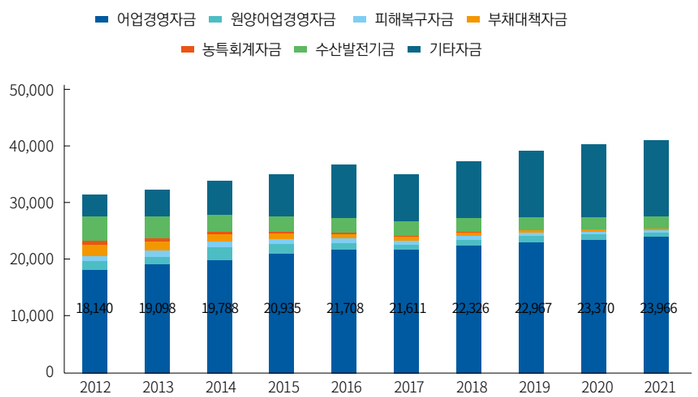

나. 수산정책자금 금리변동

1) 지난 50년(1962~2011)

2011년 기준 수산업 생산자금인 영어자금과 원양어업경영자금은 고정금리 3.0%, 배합사료자금은 고정금리 1.0%로 공급되었다. 사업별 공급금리는 피해복구자금 1.5%, 어가부채경감대책자금 1.0~3.0%, 후계어업인육성자금 2.0%, 귀어귀촌정착지원자금 2.0%, 수산발전기금 2.0~4.0%, 농특회계자금 2.5~4.0%이었으며, 귀어귀촌정착지원자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금은 2008년 이후 금리의 큰 변동은 없었다.

〈표 4-5-33〉 수산정책자금 금리(2008~2011)

(단위 : %)

사업	2008	2009	2010	2011
영어자금	3.0	3.0	3.0	3.0
신고, 마을, 종묘생산어업	-	-	-	
피해복구자금	1.5	1.5	1.5	1.5
어가부채경감대책자금	1.0~5.0	1.0~5.0	1.0~3.0	1.0~3.0
원양어업경영자금	3.0	3.0	3.0	3.0
환경친화형배합사료자금	1.0	1.0	1.0	1.0
후계어업인육성자금	3.0	3.0	2.0	2.0
귀어귀촌정착지원자금	-	3.0	2.0	2.0
양식시설현대화자금	-	-	-	-
연근해노후어선현대화	-	-	-	-
수산발전기금	3.0~4.0	2.0~4.0	2.0~4.0	2.0~4.0
농특회계	2.5~4.0	2.5~4.0	2.5~4.0	2.5~4.0

2) 최근 10년(2012~2021)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6월 1.50%까지 하락하였다. 그 결과 수산정책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가 고조되었고, 마침내 2015년 8월, 아래의 9개 자금에 대하여 금리 인하 조치가 단행되었다.

어업인 대상 영어자금은 3.0%에서 2.5%로 0.5% 포인트 인하되었고, 조합 등에 대하여는 4.0%에서 3.0%로 1.0% 포인트 인하되었으며,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과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자금도 2.5%에서 2.0%로 인하되었다. 특히, 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최초로 금리선택권을 부여하여 시중실세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어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였고[2], 동년 10월에는 수산발전기금과 농특회계자금까지 변동금리제도가 확대 시행되었다.

〈표 4-5-34〉 수산정책자금 금리(2012~2021)

(단위 : %)

사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영어자금	3.0	3.0	3.0	2.5~3.0/변동	2.5~3.0/변동	2.5~3.0/변동	2.5~3.0/변동	2.5~3.0/변동	2.5~3.0/변동	2.5~3.0/변동
신고, 마을, 종묘생산어업	-	-	-	-	2.0또는 변동	2.0~3.0/변동	2.0~3.0/변동	2.0~3.0/변동	2.0/변동	2.0/변동
피해복구자금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어가부채경감대책자금	1.0~3.0	1.0~5.0	1.0~5.0	1.0~3.0	1.0~3.0	1.0~3.0	1.0~3.0	1.0~3.0	1.0~3.0	1.0~3.0

2 2016년 12월 기준 어업인 대상 영어자금 변동금리는 0.94%임

사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원양어업경영자금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환경친화형배합사료자금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후계어업인육성자금	2.0	3.0	3.0	2.0	2.0	2.0	2.0	2.0	2.0	2.0
귀어귀촌정착지원자금	2.0	3.0	3.0	2.0	2.0	2.0	2.0	2.0	2.0	2.0
양식시설현대화자금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연근해노후어선현대화	-	-	3.0	3.0	2.0~3.0/변동	2.0~3.0/변동	2.0~3.0/변동	2.0~3.0/변동	2.0~3.0/변동	2.0~3.0/변동
수산발전기금	2.0~4.0	1.5~4.0	1.5~4.0	1.5~3.0 또는 변동	1.5~3.0 또는 변동	2.4~3.0/변동	2.4~3.0/변동	2.4~3.0/변동	2.4~3.0/변동	2.4~3.0/변동
농특회계	2.5~4.0	2.5~4.0	2.5~4.0	2.5~3.0 또는 변동	2.5~3.0 또는 변동	1.0~3.0	1.0~3.0	1.0~3.0	1.0~3.0	1.0~3.0

다. 어업경영자금(영어자금) 공급실적

1) 지난 50년(1962~2011)

지난 50년간의 어업경영자금(영어자금)은 1975년에 127억 원을 공급함으로써 처음으로 100억 원을 돌파하였는데, 1981년에 1,000억 원, 2001년에는 1조 원을 돌파하여 1조 900억 원 기록하였다.

1977년 영어자금 소요액 조사 이후부터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89년에는 소요액 대비 68%까지 공급하기도 하였다. 이후 공급률은 하락하였으나 공급액은 계속 증가하여 2011년에는 공급을 39%, 공급액 1조 9,050억 원을 기록하였다.

〈표 4-5-35〉 어업경영자금 공급실적(1962~2011)

(단위 : 억 원, %)

연도	소요액	공급액(계획)	공급을
1962	-	1	-
1965	-	7	-
1968	-	19	-
1971	-	39	-
1974	-	78	-
1977	580	315	54
1980	1,051	950	49
1983	3,056	1,800	59
1986	4,811	2,710	56

연도	소요액	공급액(계획)	공급율
1989	6,146	4,210	68
1992	9,845	5,190	53
1995	14,098	6,500	46
1998	20,813	9,650	46
2001	26,858	10,900	41
2004	36,928	14,050	38
2007	41,299	15,060	36
2011	48,689	19,050	39

주) 공급액(계획)은 해양수산부 지침상 공급액(계획)임, 이하 같음

어업경영자금 공급 추이(1962~2011)

(단위 :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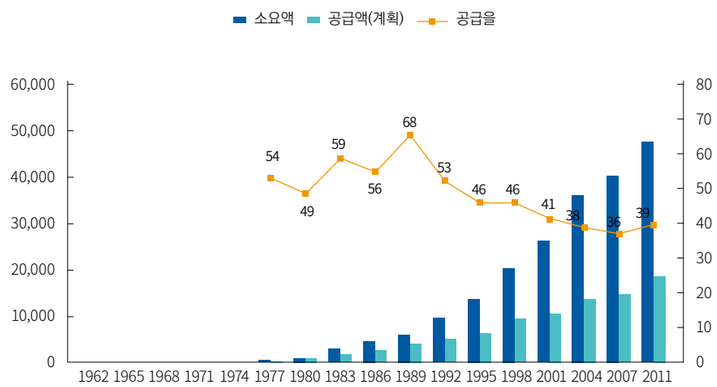

2) 최근 10년(2012~2021)

최근 10년간 영어자금 소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7조 7,337억 원에 달하였으나, 공급액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해 2013년 29%의 공급률에 그쳤다. 2013년 이후 영어자금 공급액은 2.2~2.6조 원 수준으로 2013년 이후 영어자금 소요액은 증가율이 다소 정체되었으나, 영어자금 공급액이 2.2~2.6조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여 2021년말 현재 공급률은 소요액 대비 36% 수준이다.

〈표 4-5-36〉 어업경영자금 공급실적(2012~2021)

(단위 : 억 원, %)

연도	소요액	공급액(계획)	공급률	실지원액
2012	62,352	19,050	31	18,140
2013	77,337	22,230	29	21,358
2014	73,966	23,330	32	22,029

연도	소요액	공급액(계획)	공급률	실지원액
2015	65,025	21,800	34	19,788
2016	64,757	21,800	34	21,708
2017	65,090	22,200	34	21,611
2018	66,198	23,200	35	22,326
2019	67,635	23,400	35	22,967
2020	70,148	24,400	35	23,370
2021	71,093	25,900	36	23,966

어업경영자금 공급 추이(2012~2021)

(단위 :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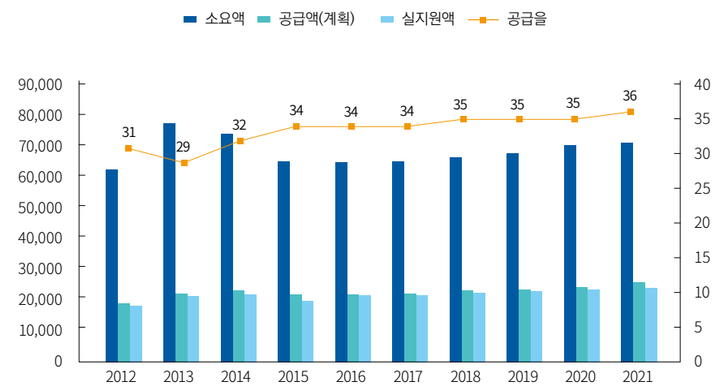

라. 어가부채경감대책

우루과이라운드·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어업인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3] 정책자금의 상환연기, 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지원 등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농어가 부채경감조치는 정책목적상 정부 자금으로 지원해야 하는데도, 회원조합 상호금융자금으로 대체 지원하도록 하여 조합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경영안정특별자금과 특별경영자금 공급, 수차례에 걸친 연기조치 및 보증인 면제, 농신보 보증으로의 전환과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어가부채 경감대책지원 등으로 어업인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총 8차례에 걸쳐 1조 8,207억

3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원이 지원되었고, 2021년 말 현재 잔액은 중장기정책자금 등 4개 자금 239억 원이다.

〈표 4-5-37〉 어가부채경감대책자금 지원현황(2000~2021)

(단위 : %, 백만 원)

구분		금리	당초 지원액	대출 잔액	
				2020년 말	2021년 말
경영안정특별자금		5.0	20,928	-	-
특별경영자금		6.5	179,217	3	-
상호금융 저리대체 자금	2000년 대책	6.5	130,500	-	-
	2001년 대책	3.0	365,880	-	-
	2004년 대책	5.0	215,606	-	-
	2006년 대책	3~5	152,184	-	-
	2009년 대책	5.0	47,126	-	-
	소계		911,296	-	-
중장기 정책 자금	2000년 대책	5.0	12,800	-	-
	2001년 대책	3.0	83,447	26	19
	2004년 대책	1.5	241,507	27,781	19,773
	소계		337,754	27,807	21,021
수산업 경영개선 자금	2000년 대책	3.0	200,000	206	180
	2001년 대책	3.0	88,181	3	3
	소계		288,181	209	183
연대보증 피해 대책자금	2001년 대책	3.0	25,264	130	11
	2004년 대책	3.0	7,117	-	-
	소계		32,381	130	11
수산업경영회생자금(2004~2016년) 2015.2.3일부터 1.0%(종전 3.0%)		1.0	50,029	4,481	3,901
기타 부채대책			963	-	-
합계			1,820,749	32,630	23,888

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4조에 의거하여 1972년에 설립되었다. 이 기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신청 시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3년부터는 취급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분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부분보증은 부실발생 시 농신보가 90%를 보상하고, 대출금융기관은 대출손실의 10%를 부담토록 하여 보증심사의 책임을 대출기관도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최근 10년간 수협의 농신보 신규 담보대출은 2012년에 2,990억 원 취급에 그쳤으나, 2014년 이후 수산해양일반자금에 대한 농신보 담보대출 확대 정책으로 2019년

에는 1조 원을 돌파하였고, 2021년에는 1조 617억 원을 취급하였다.

〈표 4-5-38〉 수협은행 농신보 담보대출 취급실적(2012~2021)

(단위 : 억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2,990	3,597	4,599	5,769	6,673	7,633	8,613	10,157	10,507	10,617
일반자금	510	850	1,320	1,935	2,582	3,434	4,118	5,361	5,512	5,385
정책자금	2,480	2,747	3,279	3,834	4,090	4,200	4,495	4,796	4,995	5,232

주) 신규취급 기준

수협은행 농신보 담보대출 취급 추이(2012~2021)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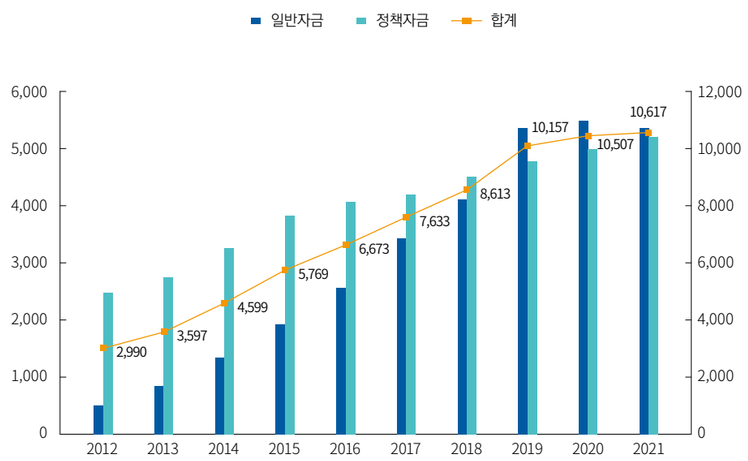

바. 이차보전 실적

이차보전제도는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수협에서 수산사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4]로써 1974년 5월부터 금융수산자금에 대하여 시행하였고, 1981년에 중단되었다가 1987년부터 재개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11개 수산정책자금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이차보전 규모는 연평균 898억 원 수준이고, 이중 어업경영자금(영어자금)의 이차보전은 규모는 연평균 581억 원이다.

4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009-188호)

〈표 4-5-39〉 수협은행 이차보전실적(2016~2021)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97,884	85,478	82,400	102,597	85,793	84,642
양식어업경영자금	62,352	59,472	55,033	44,192	40,069	41,381
어선어업등경영자금				15,085	15,500	15,551
신고마을종묘생산	2,264	2,908	2,970	2,714	2,388	2,345
피해복구자금	10,097	2,261	2,057	4,394	1,929	922
부채대책자금	2,069	1,208	983	813	423	278
원양어업경영자금	1,814	978	1,027	1,384	875	876
사료구매자금	5,390	4,282	3,870	5,567	4,865	4,790
후계어업인육성자금	5,323	5,761	6,643	10,308	9,151	8,753
귀어귀촌정착자금	1,317	1,682	2,189	3,665	3,404	3,489
양식시설현대화	6,519	6,348	7,075	8,516	6,935	6,020
수산물수매지원자금	739	578	553	436	254	237
17년 이차보전부족액	-	-	-	5,523	-	-

사. 대손보전기금 조성

대손보전기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의 신용경색을 방지하고 원활한 대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로서[5] 1995년부터 시행되었다. 대손보전기금 잔액은 2001년 780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04년에는 기금이 고갈되기도 하였다. 2011~2015년까지는 출연금 증가 등으로 다소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적시적인 손실보전을 위해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표 4-5-40〉 대손보전기금 현황(1995~2021)

(단위 : 억 원)

연도	기금잔액
1995	114
1998	665
2001	780
2004	-23
2007	-274
2011	25
2012	15
2013	141
2014	236
2015	249
2016	217
2017	202
2018	180
2019	156
2020	133
2021	118

5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농림수산부 훈령 제807호)

4. 해양투자금융

해양투자금융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초년도에 약정고 6,139억 원 실적을 거두었고, 2009년에는 잔액 1조 3,288억 원(자산유동화, 외화대출 제외)의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두었다. 20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 이후는 부동산 PF 대출 증가 등에 힘입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4-5-41〉 수협은행 해양투자금융 실적(2009~2021)[6]

(단위 : 억 원, 백만 달러)

연도	합계	부동산금융	SOC 금융	인수금융	자산유동화	외화대출($)
2009	13,288	10,145	1,899	1,244	1,337	398
2010	11,242	8,422	2,402	418	1,790	434
2011	9,159	6,015	2,697	447	924	427
2012	7,392	4,303	2,478	611	300	427
2013	7,783	3,871	2,525	1,387	352	415
2014	8,320	4,402	2,506	1,412	6	398
2015	7,085	3,387	1,978	1,720	-	308
2016	7,141	3,866	1,963	1,312	-	257
2017	7,406	5,190	1,881	335	-	172
2018	7,686	6,334	1,254	98	-	171
2019	9,847	9,232	418	197	-	268
2020	10,868	9,967	393	508	-	268
2021	9,631	8,855	370	406	-	285

6 실적 통계가 집계된 2009년부터 실적임

수협은행 해양투자금융 실적 추이(2009~2021)

(단위 : 억 원,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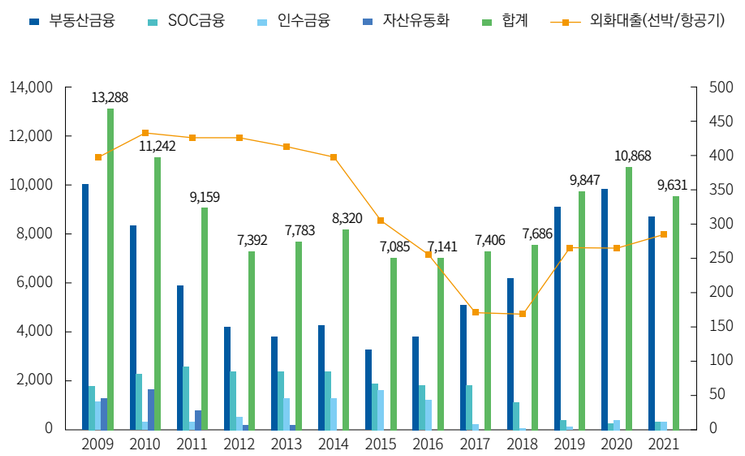

5. 외환사업

가. 취급물량과 이익

1) 지난 50년(1979~2011)

외환취급 물량은 1982년에 1.4억 달러, 1991년 2억 달러, 1997년 13억 달러, 2011년에는 82억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과거 33년간 연평균 14%의 성장세를 보였다. 사업이익도 연평균 18%의 성장세를 보였는데, 2006년의 경우 외환 비이자 이익 확대와 외환 우량고객 확보를 통한 외화대출 증가로 223억 원의 사업이익을 시현하였다.

〈표 4-5-42〉 수협은행 외환취급물량과 사업이익(1979~2011)

(단위 : 억 달러, 억 원)

구분	1979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11
취급물량	1.3	1.4	1.5	1.6	2.3	9	13	17	20	48	82
사업이익	0.3	4.2	12	9	3	33	77	75	79	223	205

수협은행 외환취급물량과 사업이익 추이(1979~2011)

(단위 : 억 달러,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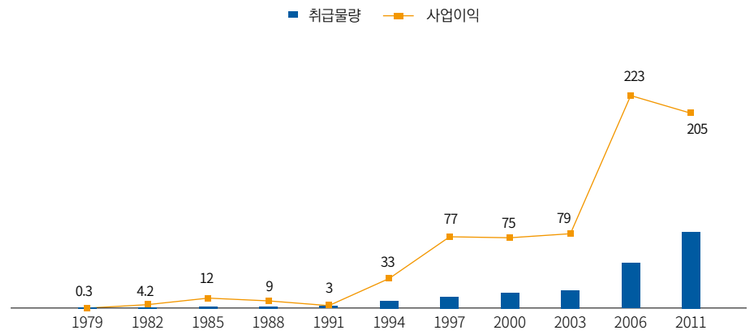

2) 최근 10년(2012~2021)

외환취급물량은 2012년 67억 달러에서 2021년 33억 달러로 감소추세이나, FX/파생상품 거래활성화 노력 등으로 2015년 사업이익은 262억 원,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지속된 취급물량 감소 등으로 2015년 이후의 사업이익은 하향 추세이며, 2021년에는 147억 원에 그쳤다.

〈표 4-5-43〉 수협은행 외환취급물량과 사업이익(2012~2021)

(단위 : 억 달러, 억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취급물량	67	57	61	61	69	60	60	55	34	33
사업이익	220	224	249	262	233	206	191	184	154	147

수협은행 외환취급물량과 사업이익 추이(2012~2021)

(단위 : 억 달러,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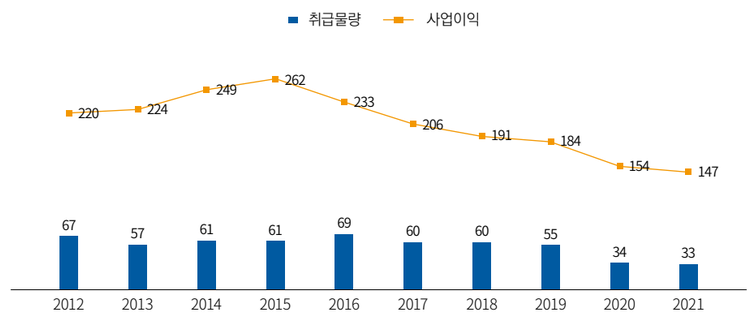

나. 외화 여수신

외화대출은 우량고객 확보를 위한 수출입업체 지원과 선박금융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초기 외화대출 재원은 해외은행의 차입에 의존하였으나, 2007년 수협은행 최초로 외화채권 3억 달러를 발행하고, 2015년 이후 외화예수금의 비중도 점차 확대하며 조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였다.

〈표 4-5-44〉 수협은행 외화 여수신 실적(2001~2021)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외화대출금	외화예수금
2001	5	25
2004	259	71
2007	730	73
2011	1,290	46
2012	1,276	106
2013	1,029	67
2014	986	74
2015	936	150
2016	810	312
2017	673	500
2018	695	549
2019	780	454
2020	703	417
2021	833	345

수협은행 외화 여수신 실적 추이(2001~2021)

(단위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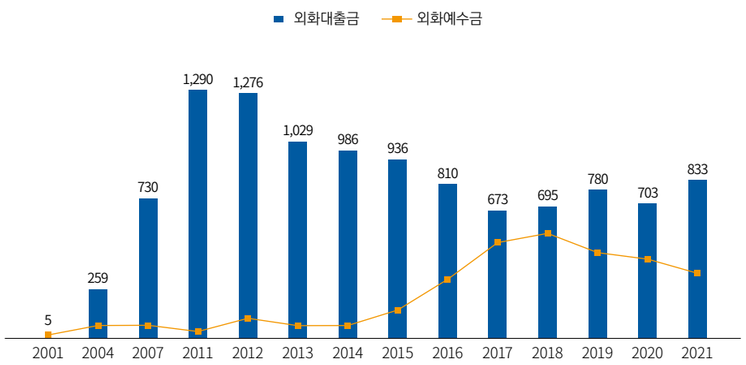

다. 차관 도입과 상환

차관사업은 1968년 한일어업협력자금 3,000만 달러(어선 및 수산물처리가공시설 기자재 도입 목적), 1972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자금 1,330만 달러(선박 및 기자재 도입과 동력개량), 1975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자금 306만 달러(광주권 지역개발) 등 총 4억6,360만 달러를 도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전대하였다. 차관사업은 1996년 전액 상환함으로써 종료되었다.

〈표 4-5-45〉 수협의 차관 도입과 상환내역(1968~1996)

(단위 : 천$)

구분	1968	1971	1974	1977	1980	1983	1986	1989	1992	1996
도입	2,902	2,845	0	8,959	633	141				
상환	0	857	1,694	2,455	3,745	3,434	3,315	185	215	93
잔액	2,902	7,520	6,018	26,074	22,891	14,726	4,957	1,904	1,287	0

수협의 차관 도입과 상환 추이(1968~1996)

(단위 :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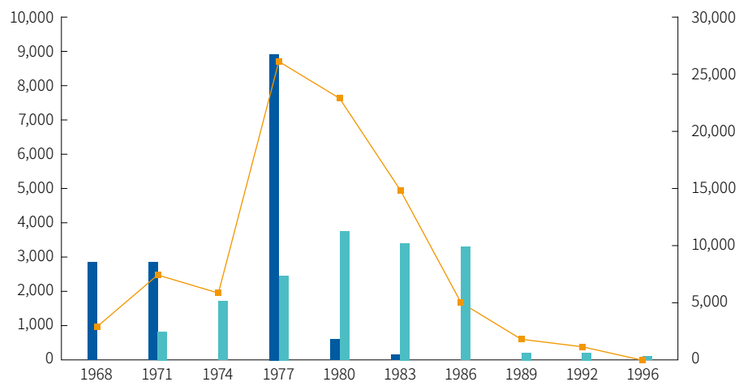

6. 카드사업

가. 지난 50년(1962~2011)

카드회원 수는 20년간 연평균 12% 성장하여 2011년 55만 5,000명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카드사업 초창기부터 회원수 증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부실채권도 증가되는 부작용도 발생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회원자격 조건을 강화하면서 회원 수가 감소하였으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2001년부터 회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매출액은 20년간 연평균 17% 성장하여 2011년 6,085억 원의 실적을 거양하였다.

〈표 4-5-46〉 수협은행 카드실적(1992~2011)

(단위 : 천명, 억 원)

구분	1992	1995	1998	2001	2004	2008	2011
회원수	66	208	104	160	253	449	555
매출액	284	2,728	2,443	4,223	4,099	6,497	6,085

수협은행 카드실적 추이(1992~2011)

(단위 : 천명,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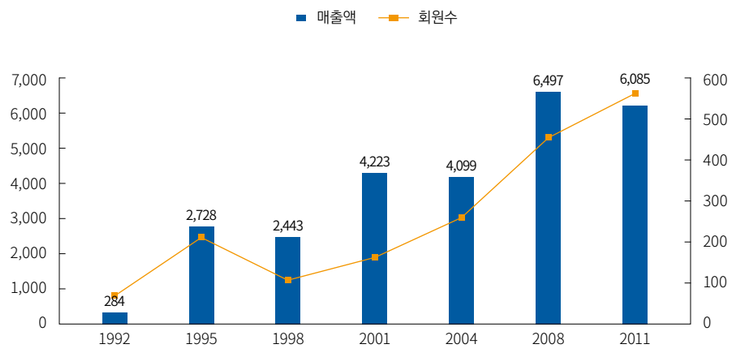

나. 최근 10년(2012~2021)

최근 10년간에는 카드 미사용 회원을 정리하는 등 질적 성장에 역점을 두어 2021년 회원수는 2012년 대비 1.7배 증가한 98만 명에 그쳤다. 반면, 매출액은 구매카드 매출증가 등에 힘입어 2013년에 처음으로 1조 원을 달성하였으며, 이후 증가폭을 확대하며 2020년에는 2조 원을 돌파하였다.

〈표 4-5-47〉 수협은행 카드실적(2012~2021)

(단위 : 천명, 억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회원수	587	626	693	760	767	786	858	937	959	980
매출액	7,940	10,310	12,875	11,410	12,517	14,625	17,140	19,480	21,572	22,539

수협은행 카드실적 추이(2012~2021)

(단위 : 천명,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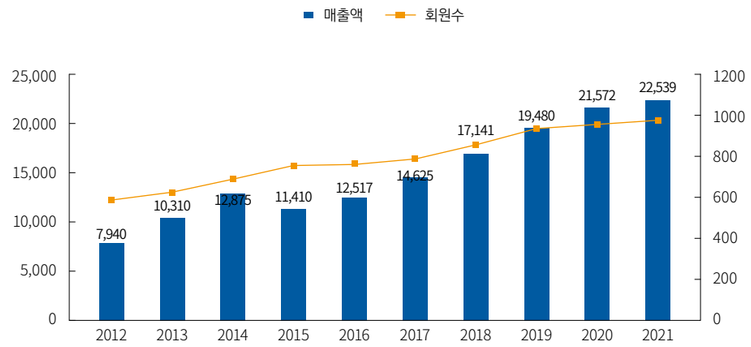

7. 펀드사업

펀드사업이익은 2014년 33억 원으로 최고의 실적을 시현한 이후 주식시장 침체로 실적이 후퇴하였다. 2018년부터는 다양한 펀드상품 출시로 수탁고가 증가하여 2021년에는 3,514억 원의 수탁고 및 24.3억 원의 사업이익을 기록하였다.

〈표 4-5-48〉 수협은행 펀드 실적(2012~2021)

(단위 : 억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이익	25	31	33	31	13	17	17	17.4	17.3	24.3
펀드수탁고	2,820	3,024	3,167	3,598	3,230	2,156	2,561	2,369	2,298	3,514

수협은행 펀드 실적 추이(2012~2021)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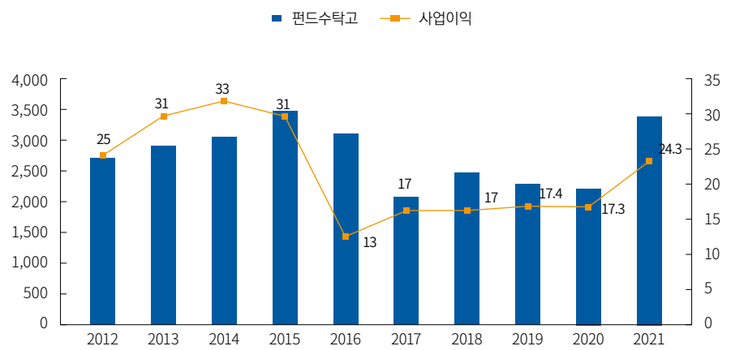

8. IT 서비스

가. 주요 시스템 구축

1) 차세대 온라인 시스템

차세대 온라인 시스템은 대량의 트랜잭션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용량확장과 무중단 고품질 서비스를 목표로 하여 2002년 구축되었다. 동 시스템은 Multi-Host 구축으로 온라인시스템의 백업화와 24시간 365일 영업을 지원하며,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2) 여신종합관리시스템(CRM)

2002년에 1차로 구축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은 대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여신을 방지하며,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창구 텔러의 업무량을 경감시켰다. 아울러 여신업무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부담이 경감되어 신용대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였고, 2004년에 2차로 기업여신 및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함으로써 여신종합관리시스템(CRM)을 구축 완료하였다.

3) Nextro시스템(신 차세대시스템)

금융 IT 트렌드는 계정중심 처리에서 대용량 온라인 처리, 정보화 역량 강화, 프로세스 중심의 시스템을 지나 최종적으로 고객 중심 시스템으로 변화를 거듭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 역시 자체 개발 및 단위 업무 중심 처리에서 전체 시스템의 표준화, 기능 중심의 통합, 패키지 기반의 개발 등으로 구축 트렌드가 바뀌어 가고 있다.

2002년에 구축한 코어뱅킹시스템은 기반기술이 노후화되어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당행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어려웠다. 이에 2009년 11월 Nextro시스템(신 차세대시스템)으로 새로이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착수하였으며, 2011년 9월 성공적으로 오픈하였다.

Nextro 시스템을 통해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안정적인 금융거래 제공, 고객정보 보호의 보안체계 강화, 계좌번호 선택 기능, 맞춤식 상품정보 제공 등 선진화된 금융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Nextro 시스템의 상품영역 확대 적용과 분개 표준화 구현 등 다른 금융권과 차별화된 요소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과 맞춤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Nextro 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SSO/EAM, 서버계정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Nextro시스템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문서보안 (DRM) 솔루션, 보안USB관리시스템, 서버로그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내부직원과 외부개발자에 의한 주요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 신종 해킹에 대비해 신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시스템 보안성과 고객정보 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4) 스마트폰뱅킹 독자 앱

수협은행의 스마트폰뱅킹은 금융결제원 금융권 공동앱을 사용하여 고객니즈(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카카오뱅크, K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규고객 확보와 기존고객 유지를 위해서는 비대면 채널의 경쟁력 확보가 불가피해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9월에 스마트폰뱅킹 독자앱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 5월에 구축 완료하였다.

새로운 스마트폰뱅킹은 플랫폼 기반의 독자적인 운영환경을 갖추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UI개선, 금융 상품몰 통합 등과 함께 은행·공제·회원수협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5) Hey(미니)뱅크 및 웹 뱅킹

2017년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한 이후 간편한 모바일 뱅킹서비스가 은행 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었다. 마케팅 측면에서도 제휴채널이나 SNS를 통한 비대면상품 가입 시 추가 '앱 설치'과정이 불편하여 신규고객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단순한 상품 구조와 개인고객에 맞춤화된 화면 및 프로세스는 최상의 고객 편의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의 본원적 니즈에 집중할 수 있고, 생활 밀착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간편 뱅킹 플랫폼, Hey뱅크를 도입하였다.

2018년 12월에 구축 완료한 Hey뱅크는 뱅킹 핵심기능을 부각하여, 간편하게 상품 가입할 수 있게 했으며, 직관적이고 심플한 구성으로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비대면 상품 라인업을 새로이 강화하였고, 영업점 방문 없이 다양한 대출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가능토록 하여 경쟁력 있는 판매 채널로서 발돋움하였다.

6) 디지털창구업무 시스템 개발 착수

핀테크가 기술혁신을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함에 따라 금융시장 잠식 우려가 증대되었다. 디지털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와 영업점 대면서비스 경쟁우위 부재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어 은행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대두되자, 2018년 11월 창구업무 선진화 시스템 개발(Paperless 도입)에 착수하였다.

창구업무 선진화 시스템 개발은 '영업점 창구업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중·장기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였다. 총 3단계로 추진 중이며, 1단계는 종이서식을 모두 전자서식으로 바꾸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2018~2019년 완료하였다. 2단계로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0~2022년까지 디지털 신 영업모델 도입 등의 디지털 과제를 발굴하고 도입하였다. 향후 3단계는 선도은행 수준의 디지털 경쟁력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AI) 활용, 로봇어드바이저,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상용화 할 계획이다.

나. 전산운영비 공통배분

수협은행은 「수협법」 제141조의9(업무 등)에 따라 중앙회 및 조합 전산시스템의 위탁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산운영비 배분 기준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전산운영비는 사용처별 업무량 비율 등에 따라 수협은행과 회원조합 등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2021년 말 현재 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는 회원조합 대표 4인(회장이 위촉하는 조합장), 중앙회 상호금융담당 상무, 은행 기획담당 집행부행장, 은행 전산담당 집행부행장, 중앙회 상호금융담당 부서장, 은행 전산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회원조합 대표 4인 중에서 호선 조합장으로 한다.

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업무전산화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전산운영비 배부기준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9. 신탁사업

가. 지난 50년(1962~2011)

수협의 신탁사업은 1988년에 국민주신탁을 시작한 이래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꾸준한 수탁고 증가로 1997년에는 수탁고 1조 원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에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수탁고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IMF 구제금융 체제하에서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2000년에는 사업이익이 575억 적자를 기록했다.

2005년부터는 재산신탁 업무를 개시하면서 전체 수탁고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 재산신탁은 전체 수탁고에서 83%로 비중까지 성장하여 신탁사업의 중심사업이 되었다.

〈표 4-5-49〉 수협은행 신탁실적(1988~2011)

(단위 : 억 원)

구분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11
신탁 합계	2	1,427	5,565	10,625	3,006	1,662	6,522	8,331
금전신탁	2	1,427	5,565	10,625	3,006	1,662	1,546	1,444
재산신탁	-	-	-	-	-	-	4,976	6,887
사업이익	0	19	82	75	(575)	108	167	82

수협은행 신탁실적 추이(1988~2011)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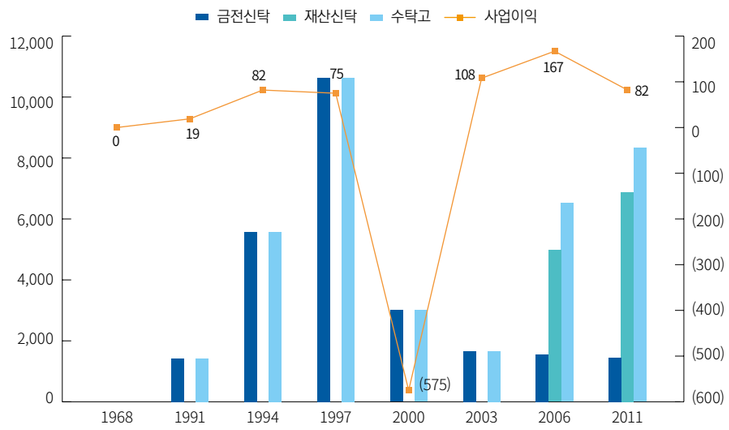

나. 최근 10년(2012~2021)

2012년에는 재산신탁 수탁고 증가로 전체 수탁고가 1조 원을 다시 돌파하였으며, 2016년 독립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부동산 개발시장 활성화에 따른 신탁사업 증대 마케팅 추진과 ELT 판매기반 강화, MMT, 조합예금 등 금전신탁 상품구조 다변화 및 라인업 증대로 수탁고가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18년에 5조 4,807억 원, 2021년에는 10조 원을 돌파하면서 10조 57억 원의 수탁고를 기록하였고 사업이익도 최고의 실적인 392억 원을 달성하였다.

〈표 4-5-50〉 수협은행 신탁실적(2012~2021)

(단위 : 억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신탁 합계	14,339	27,470	49,803	61,390	56,704	45,143	54,807	69,896	92,350	100,057
금전신탁	3,818	4,885	3,066	3,439	2,597	5,194	11,174	14,593	18,638	14,014
재산신탁	10,521	22,585	46,737	57,951	54,107	39,949	43,633	55,303	73,712	86,043
사업이익	99	137	147	137	11	121	265	382	352	392

주1) 사업이익=신탁이익+신탁보수
주2) 재산신탁=유가증권의 신탁+금전채권의 신탁+동산·부동산의 신탁

수협은행 신탁실적 추이(2012~2021)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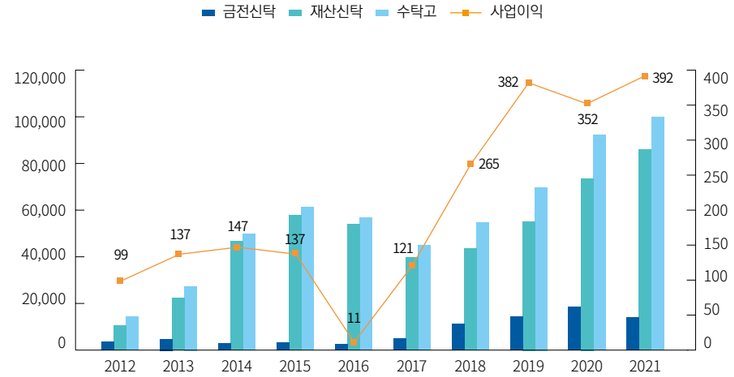

10. 채권관리

가. 대출채권 매각

부실채권의 외부매각은 채권회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매처분보다 공매 등의 방법으로 부실채권을 조기에 매각함으로써 부실여신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방법이다. 수협에서는 2011년에 기업부실채권을 대거 외부매각하기 시작하였고, 2013년에는 최고 2,863억 원을 매각하였으며, 이후 점차 매각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표 4-5-51〉 수협은행의 대출채권 매각실적(2011~2021)

(단위 : 억 원)

연도	합계	가계자금대출금	신용카드채권	기업자금대출금 등
2011	1,428	90	1	1,337
2012	1,866	161	1	1,704
2013	2,863	283	10	2,570
2014	1,314	116	6	1,192
2015	1,710	47	1	1,662
2016	1,189	102	3	1,084
2017	687	56	1	630
2018	924	50	1	873
2019	1,174	70	4	1,100
2020	686	38	1	647
2021	787	54	3	730

수협은행의 대출채권 매각 추이(2011~2021)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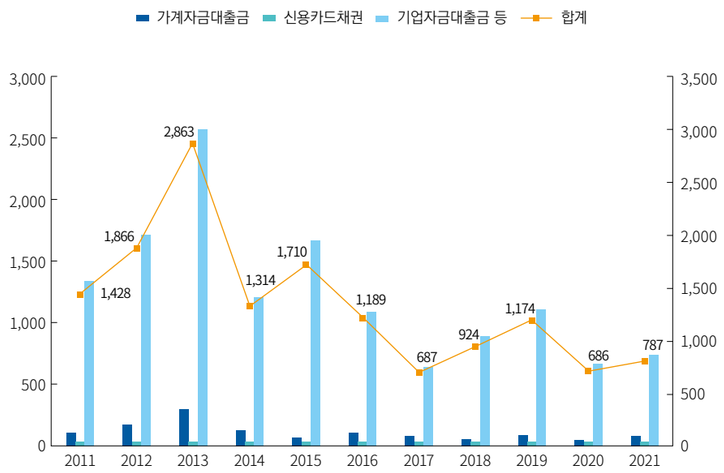

나. 대손상각

대손상각(비용)처리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발생한 부실기업여신을 대거 처리하면서 2011년에 1,888억 원으로 최고치에 달하였다. 이후 2014년과 2017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상각 처리한 채권은 특수채권으로 분류하여 부실여신에 준하여 지속적으로 회수관리를 하게 된다.

〈표 4-5-52〉 수협은행의 대손상각 실적(2011~2021)

(단위 : 억 원)

연도	합계	가계자금대출금	신용카드채권	기업자금대출금 등
2011	1,888	9	21	1,858
2012	704	64	15	625
2013	309	31	23	255
2014	864	22	54	788
2015	664	15	56	593
2016	365	18	17	330
2017	730	29	12	689
2018	502	10	9	483
2019	173	13	12	148
2020	244	43	10	191
2021	323	74	32	217

수협은행의 대손상각 추이(2011~2021)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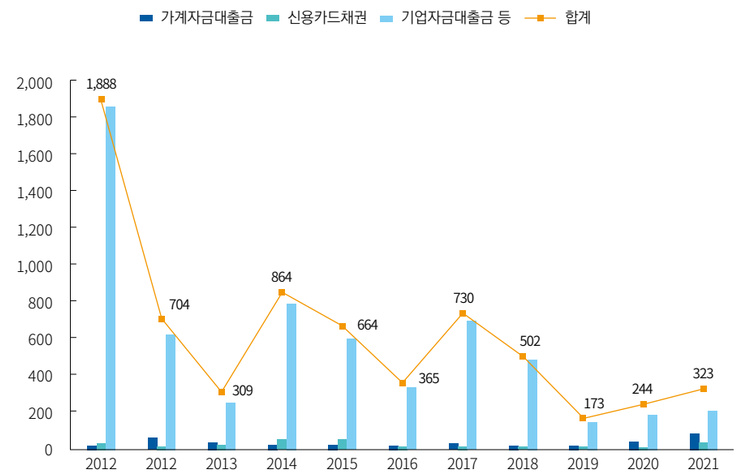

11. 리스크관리

가. BIS 자기자본

2000년 말 미처리결손금 9,887억 원을 고려하여 BIS비율 10% 유지에 필요한 공적자금 1조 1,581억이 2001년에 투입되었고, 동년 말에는 기본자본 비율 7.51%, 총자본비율 10.65%로서 부실은행의 기준이 되는 총자본비율 10%를 초과하였다. 2013년에는 미처리결손금 9,887억 원을 모두 정리하고 기본자본이 1조 2,866원이 되면서 총자본비율 13.57%의 우량은행 자본비율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8년부터 국내 은행이 국제결제은행의 신 BIS 자본건전성을 도입하면서 수협은행에 투입된 상환 우선주 형태의 공적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 12월 1일 수협은행을 수협중앙회의 자회사로 완전히 분리하였다. 그 결과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그리고 총자본의 신 BIS 자본건전성을 수협은행도 도입하였으며, 2016년 말 총자본비율 15%의 초우량은행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표 4-5-53〉 수협은행 BIS 자기자본(2001~2021)

(단위 : 억 원, %)

연도	보통주 자본	기본 자본	보완 자본	총자본	위험가중 자산	보통주 자본비율	기본 자본비율	보완 자본비율	총 자본비율
2001	-	1,985	828	2,813	26,403	-	7.51	3.14	10.65
2004	-	4,167	1,920	6,087	54,307	-	7.67	3.54	11.21
2007	-	7,085	5,977	13,062	114,781	-	6.17	5.21	11.38
2011	-	11,022	8,721	19,743	156,770	-	7.03	5.56	12.59
2012	-	11,478	9,778	21,256	161,906	-	7.09	6.04	13.13
2013	-	12,866	9,248	22,114	162,956	-	7.89	5.68	13.57
2014	-	12,691	8,263	20,944	170,237	-	7.45	4.86	12.31
2015	-	13,465	7,479	20,944	173,424	-	7.76	4.32	12.08
2016	20,501	22,499	6,765	29,264	187,627	10.93	11.99	3.61	15.60
2017	21,134	23,131	4,940	28,071	192,850	10.96	11.99	2.56	14.56
2018	22,787	24,784	4,067	28,851	211,746	10.76	11.70	1.92	13.63
2019	24,156	28,049	2,901	30,950	227,730	10.61	12.32	1.27	13.59
2020	25,419	31,007	2,317	33,324	238,336	10.67	13.01	0.97	13.98
2021	27,685	32,973	2,131	35,104	253,623	10.92	13.00	0.84	13.84

수협은행 BIS 자기자본 추이(2001~2021)

(단위 :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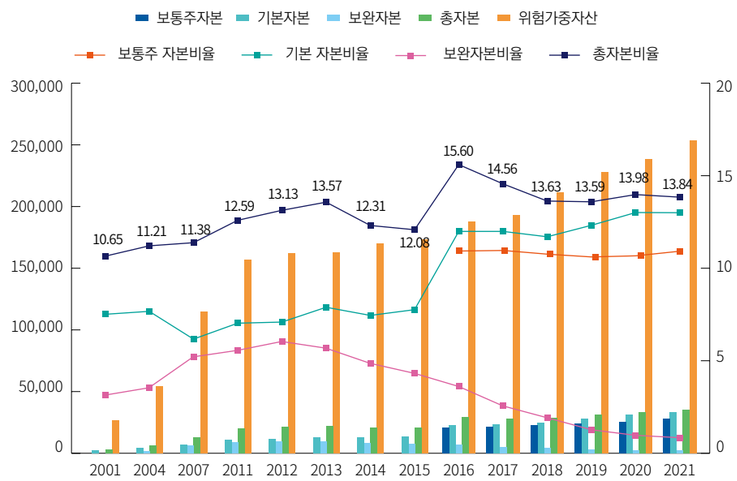

나. 건전성 분류

자산건전성 분류상 부실여신 기준이 되는 고정이하여신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여신의 부실증가로 2011년 3,573억 원, 2014년 4,07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 이후는 여신심사 능력강화와 부실여신 신속회수로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호전되었으며, 2021년 말 현재는 고정이하여신은 1,540억 원이다.

〈표 4-5-54〉 수협은행의 건전성 분류(2001~2021)

(단위 : 억 원)

연도	고정이하여신 합계	고정[7]	회수의문[8]	추정손실[9]
2001	1,720	895	665	160
2004	1,096	796	162	138
2007	1,540	966	369	205
2011	3,573	2,673	591	309
2012	3,555	3,142	235	178
2013	3,875	3,388	172	315
2014	4,071	3,531	286	254
2015	3,520	2,630	510	380
2016	2,764	1,126	300	1,338
2017	2,314	1,070	281	963
2018	1,671	731	288	652
2019	1,535	906	290	339
2020	1,586	900	228	458
2021	1,540	862	278	400

수협은행의 건전성분류 추이(2001~2021)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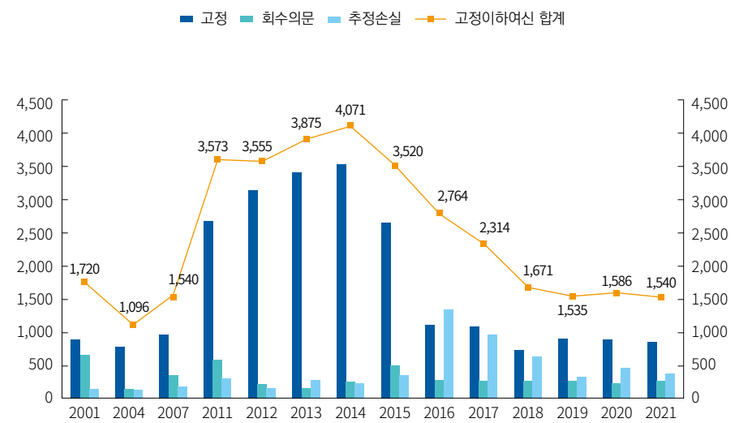

7 고정 : 총여신 중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불량한 거래처에 대한 여신 중 회수예상가액해당 여신액

8 회수의문: 총여신 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9 추정손실: 총여신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은행의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12. 준법감시

가. 내부통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사고예방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아울러 사고예방 중점이행사항을 선정하고, 부·점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사고예방 점검과 사고예방 교육 등을 통해 금융사고 없는 건전한 수협은행을 지향하고 있다.

〈표 4-5-55〉 수협은행 내부통제 실적(2012~2021)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내부통제 점검(회)	영업점	6,943	5,900	6,781	8,415	7,982	9,515	9,648	9,037	10,369	8,494
	본부	12	12	12	16	60	38	42	29	45	47
내부교육(명)		2,385	3,351	2,599	3,728	4,086	3,434	4,433	7,130	5,661	1,344

나. 윤리경영

윤리경영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 기업 생존의 필수요건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04년에는 윤리강령 및 임직원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윤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윤리경영워크숍을 연 2회 부·점별로 자체 실시하고 있고, 윤리·준법의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기점검프로그램도 연 4회 실시하고 있다.

다. 법규준수

제 규정 등의 제·개정사항, 이사회 등에 부의되는 사항 및 금융상품 개발 등 중요 업무에 대하여 법규준수 측면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뿐만 아니라 법률자문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금융상품 약관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심의가 증가하고 있다.

〈표 4-5-56〉 수협은행 법규준수 실적(2012~2021)

(단위 : 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전 검토	규정 등 제·개정	106	92	118	105	125	100	152	161	237	157
	금융상품 약관 등	205	147	254	293	337	272	1,537	1,948	2,504	4,692
법률자문		320	785	370	374	333	394	499	492	544	534

라. 자금세탁방지

자금세탁방지제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행하는 불법재산 등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 고액현금거래 보고, 고객확인의무 조치를 의미한다.

이때 의심거래보고(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는 금융거래(카지노에서의 칩 교환 포함)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이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1,645건을 보고하였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로서, 1거래일 동안 1,000만 원 이상[10]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 보고한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6만 1,717건이 보고되었다.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27만 4,907건을 확인하였다.

10 2006년 제도도입 당시 보고 기준금액은 5,000만 원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3,000만 원, 2010년부터는 2,000만 원, 2019년부터는 1,000만 원으로 인하되었음.

〈표 4-5-57〉 수협은행 자금세탁방지 실적(2012~2021)

(단위 : 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의심거래보고	156	313	1,037	2,112	2,030	1,821	1,395	2,638	2,549	2,402
고객확인의무	133,656	102,579	118,110	147,169	194,194	150,186	898,809	453,779	304,377	246,215
고액현금 거래보고	115,671	85,634	75,362	61,238	38,212	34,049	34,983	54,110	62,875	55,039

마. 나눔경영

2003년부터 '사랑의 헌혈운동'을 시작으로 2005년 '지역사회공헌활동'과 '사랑해(海) 동전 모으기' 등 나눔경영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를 실시하고 포상함으로써 전 직원이 나눔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표 4-5-58〉 수협은행의 나눔경영 현황(2003~2018)

구분	시작연도	주요 내용
사랑해 헌혈운동	2003	어업인을 위하여 혈액지원 및 헌혈증 기증
지역사회공헌활동	2005	사회복지시설 환경정화 및 재능기부
사랑해 동전 모으기	2005	급여 중 1,000원 미만 자투리를 성금으로 기부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	2006	기증물품 판매 및 판매수익금 기부
장학금 전달	2006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 판매수익금을 어촌지역 학교 장학금으로 지원
사랑해 이웃 찾기	2008	설, 추석 명절 어촌지역 소외이웃 지원
사랑해 김장담그기 지원	2013	회원조합과 공동으로 김장하기 인력지원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정화	2015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 결연묘역 헌화 및 정화 활동
공원의 친구되는 날	2015	어린이 대공원을 방문, 오일스테인 작업 활동
1사 1교 금융교육	2016	금융 강사가 어촌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방문, 금융교육
적십자 바자회	2010	바자행사에서 수산물 판매 및 수익금 기부
아름다운 나눔	2015	불우이웃 필요물품 지원을 위한 기부금 지원
해안가 환경정화활동	2017	Sh사랑해 봉사단이 전국 해안가 대청소 및 어촌계 실질적 지원
사랑해 PC나눔	2018	불용PC를 재활용업체(사회적 기업)에 기부

제4절 경영실적[1]

1. 사업규모 총괄

수협은행은 공적자금을 수혈한 2001년에는 총자산이 8조 9,344억 원에 불과했으나 10년 후인 2011년에는 2.5배 증가한 22조 2,218억 원이었고, 20년 후인 2021년에는 6.4배 증가한 57조 1,667억 원으로 그 규모가 증가하였다. 특히, 여신사업은 그 규모가 2011년에는 4배 증가한 17조 2,934억 원으로, 2021년에는 9배 증가한 38조 6,783억 원으로 성장하였다.

이는 2001년 독립 사업부제(신용사업부문)로 체제가 개편된 이후 6차에 걸친 경영혁신운동과 2016년 12월 자회사로 분리 독립한 후 확충된 자본금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경영전략을 펼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4-5-59〉 수협은행의 총자산 및 여수신 규모(2001~2021)

(단위 : 억 원)

연도	총자산	여신	수신
2001	89,344	42,899	45,249
2004	116,026	74,684	67,963
2007	183,848	138,061	105,000
2011	222,218	172,934	122,355
2012	235,059	178,586	123,687
2013	247,518	179,719	125,686
2014	277,724	187,851	126,546
2015	303,932	199,422	140,448
2016	332,462	227,464	169,835
2017	364,471	256,731	217,515
2018	426,091	299,103	283,850
2019	476,270	335,168	318,845
2020	525,664	360,526	363,170
2021	571,667	386,783	401,391

1 2001년 독립 사업부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실적이다.

수협은행의 총자산 및 여수신 규모 추이(2001~2021)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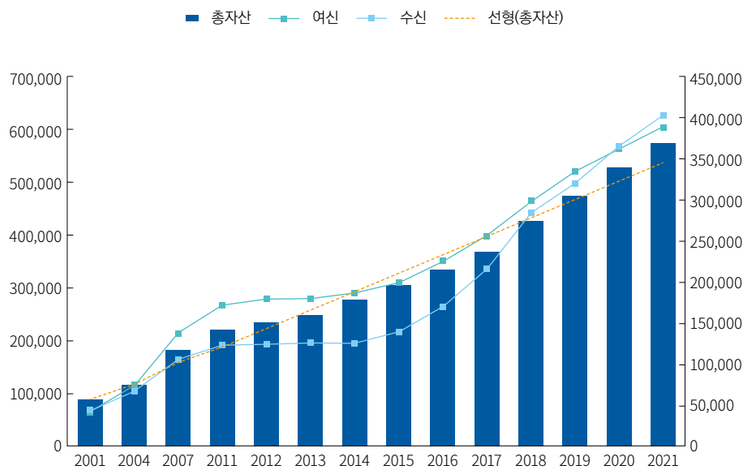

2. 수익성

2001년 275억 원 수준이던 당기순이익은 2005년에는 1,247억 원, 2006년에는 1,186억 원으로 2001~2005년간 4배 이상 증가하는 괄목한 실적을 보였다. 이는 여신 증대 및 자산 확대에 따른 이익증가와 대손충당금 적립요인이 감소하여 나타난 성과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시장금리 급락으로 순이자 마진이 급감하고, 부실채권 정리로 대손비용이 증가하는 등 은행권의 수익성이 전체적으로 급락하였다. 수협은행도 손익이 급락하여 7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당기순이익이 2011년에는 764억 원, 2015년에는 585억 원으로 회복되었으며, 2016년 독립 자회사로 전환된 이후에는 확충된 자본력을 바탕으로 2,000억 원대 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2018년 1.76%를 정점으로 하여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경쟁은행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원화대출금의 이자수익 확대로 1.50%로 호전되었으며, NIM 개선도도 경쟁은행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4-5-60〉 수협은행의 수익성(2001~2021)

(단위 : 억 원, %)

연도	당기순이익	총자산순이익율 (ROA)	자기자본순이익율 (ROE)	명목순이자마진 (NIM)
2001	275	0.35	-	1.67
2004	1,042	0.96	22.11	2.18
2007	879	0.52	11.97	1.76
2011	764	0.37	8.59	1.95
2012	511	0.23	5.32	1.72
2013	434	0.19	4.34	1.67
2014	443	0.19	4.24	1.68
2015	585	0.25	5.32	1.61
2016	598	0.24	5.68	1.55
2017	1,952	0.65	8.18	1.73
2018	2,303	0.67	9.32	1.76
2019	2,192	0.56	7.68	1.40
2020	1,820	0.43	5.72	1.39
2021	2,216	0.49	6.59	1.50

수협은행의 수익성 추이(2001~2021)

(단위 :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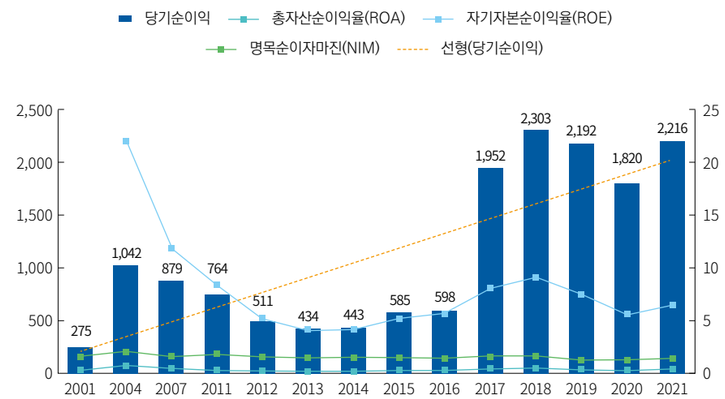

3. 생산성

직원 1인당 영업이익(충당 전)은 2011년 1.47억 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추세로 반전되어 독립법인화 이후인 2018년에는 1.75억 원까지 증가하였고, 2021년 말 현재는 1.88억 원으로 최고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직원 1인당 예수금과 대출금은 과거 20년간 각각 연평균 9%, 10%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특히,

대출금의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이는 수익성 위주의 여신증대 영업 전략에 기인한 것이며, 영업점당 예수금과 대출금도 지난 20년간 연평균 각각 10%, 11%씩 성장하였다.

2022년 제1차 수협은행 경영전략회의

〈표 4-5-61〉 수협은행의 생산성(2001~2021)

(단위 : 억 원)

연도	직원 1인당 영업이익(충당 전)	직원 1인당 예수금	직원 1인당 대출금	1영업점당 예수금	1영업점당 대출금
2001	0.4	35	31	421	378
2004	1.5	56	60	682	727
2007	1.3	74	95	886	1,135
2011	1.47	78	106	1,088	1,483
2012	0.94	74	101	1,122	1,403
2013	0.85	77	105	1,125	1,435
2014	0.98	76	106	1,108	1,539
2015	1.07	79	111	1,143	1,596
2016	1.35	97	127	1,408	1,852
2017	1.54	112	137	1,625	1,978
2018	1.75	128	142	1,958	2,170
2019	1.35	149	155	2,295	2,378
2020	1.56	175	176	2,680	2,682
2021	1.88	203	195	3,084	2,964

수협은행의 생산성 추이(2001~2021)

(단위 :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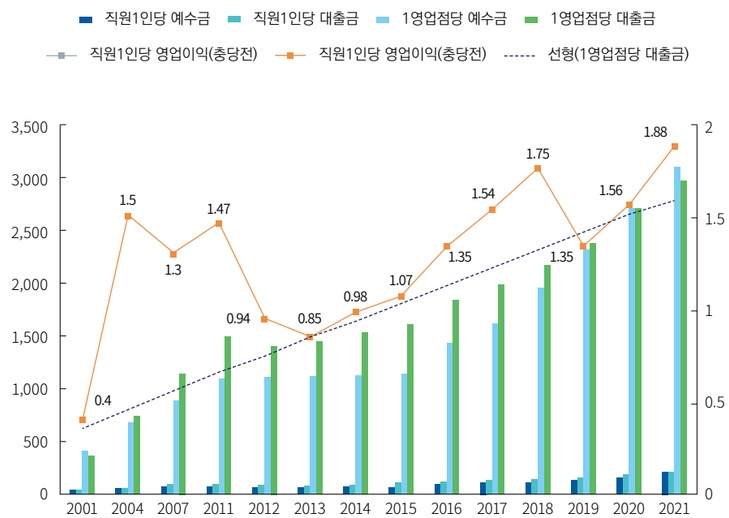

4. 건전성

불건전여신비율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01년 4.0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는 1.12%까지 하락하였으나 금융위기 여파로 다시 상승하여 2011년에는 2.07%로 상승하였다. 이후에도 2014년까지는 다소 높은 2%대를 보였으나 건전여신 증대와 부실화 초기단계 적극적인 채권관리로 1%대를 유지하였으며, 2017년 이후는 우량 국내 은행 수준인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연체율도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2011년부터 다소 상승하였으나 2016년 이후 0%대로 관리되고 있다.

〈표 4-5-62〉 수협은행의 건전성(2001~2021)

(단위 : %)

연도	고정이하여신비율	무수익여신비율	연체율
2001	4.01	2.42	-
2004	1.47	1.10	1.62
2007	1.12	0.68	0.57
2011	2.07	1.51	1.23
2012	1.99	1.66	1.44
2013	2.16	1.26	1.25
2014	2.17	1.85	1.02

연도	고정이하여신비율	무수익여신비율	연체율
2015	1.77	1.05	1.09
2016	1.22	1.03	0.71
2017	0.90	0.61	0.37
2018	0.56	0.38	0.31
2019	0.46	0.28	0.29
2020	0.44	0.30	0.32
2021	0.40	0.26	0.24

수협은행의 건전성 추이(2001~2021)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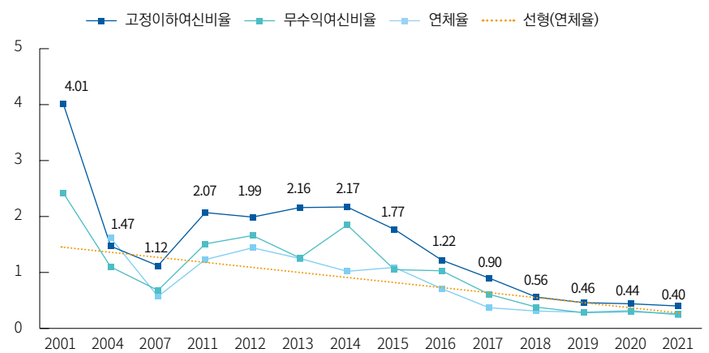

5.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은 기업의 부도 가능성을 평가하거나 기업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장·단기 채권을 발행할 때 평가받는 채권의 등급을 말하는데, 은행의 국내외 신인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하기도 한다.

공적자금 수혈 후 수협은행의 글로벌 신용평가등급은 2004~2005년에 A3(S), BBB+(S), A-(S) 등급이었고, 2007년 이후는 안정적으로 A2(S), A-(S), A(S) 등급의 투자적격등급[2]을 유지하여 국제신인도에서도 우량은행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 신용평가등급도 2005년 이후 초우량등급 AAA를 획득하고 있어, 경쟁은행에 비하여 우량한 은행으로 평가받고 있다.

2 A-에서 A+, 또는 A3에서 A1은 "현재 안정성은 적당하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Upper-Medium Grade)"을 의미하는 투자적격등급임

〈표 4-5-63〉 수협은행 신용평가등급 추이(2002~2021)

구분	국내 신용평가			국제 신용평가		비고
	한기평	한신평	NICE 신용평가	Moody's	S&P	
2002	AA-		AA-			한기평, 한신정 신규
2003	AA-		AA-			
2004	AAA		AAA	A3 (S)	BBB+	무디스, S&P 신규, 한기평, 한신정 등급 상향 조정
2005	AAA		AAA	A3 (S)	A- (S)	S&P 상향 조정
2006	AAA		AAA	A3 (S)	A- (S)	
2007	AAA	AAA	AAA	A2 (S)	A- (S)	한신평 신규, 무디스 상향 조정
2008	AAA	AAA	AAA	A2 (S)	A- (S)	
2009	AAA	AAA	AAA	A2 (N)	A- (S)	무디스 등급전망 하향 조정
2010	AAA	AAA	AAA	A2 (N)	A- (S)	
2011	AAA	AAA	AAA	A2 (N)	A- (S)	
2012	AAA	AAA	AAA	A2 (S)	A- (S)	무디스 등급전망 상향 조정
2013	AAA	AAA	AAA	A2 (S)	A- (S)	
2014	AAA	AAA	AAA	A2 (S)	A- (S)	
2015	AAA	AAA	AAA	A2 (S)	A- (S)	
2016	AAA	AAA	AAA	A2 (S)	A (S)	S&P 상향 조정
2021	AAA	AAA	AAA	A2 (S)	A (S)	2016.12.01. 이후 변동 없음

〈표 4-5-64〉 국내 은행 해외신용평가등급 비교(2021. 12. 31)

구분	Moody's	S&P	Fitch
특수은행			
수협은행	A2(S)	A(S)	-
농협은행	A1(P)	A+(S)	A(S)
수출입은행	Aa2(S)	AA(S)	AA-(S)
산업은행	Aa2(S)	AA(S)	AA-(S)
기업은행	Aa2(S)	AA-(S)	AA-(S)
시중은행			
국민은행	Aa3(S)	A+(S)	A(S)
신한은행	Aa3(S)	A+(S)	A(S)
우리은행	A1(S)	A+(S)	A(S)
KEB하나은행	A1(S)	A+(S)	A(S)
SC제일은행	A2(S)	A(S)	A+(N)
지방은행			
경남은행	A2(S)	-	
대구은행	A2(S)	A-(S)	
부산은행	A2(S)	A-(S)	
전북은행	A3(P)	-	
광주은행	A3(P)	-	
제주은행	A2(S)	-	

〈표 4-5-65〉 국내 은행 국내신용평가등급 비교(2021. 12. 31)

구분	한신평	한기평	NICE신용평가
특수은행			
수협은행	AAA	AAA	AAA
농협은행	AAA	AAA	AAA
수출입은행	AAA	AAA	AAA
한국산업은행	AAA	AAA	AAA
중소기업은행	AAA	AAA	AAA
시중은행			
국민은행	AAA	AAA	AAA
신한은행	AAA	AAA	AAA
우리은행	AAA	AAA	AAA
하나은행	AAA	AAA	AAA
SC제일은행	AAA	AAA	AAA
지방은행			
경남은행	AA+	AA+	AA+
대구은행	-	AAA	AAA
부산은행	AAA	AAA	AAA
전북은행	AA+	AA+	AA+
광주은행	AA+	AA+	AA+
제주은행	AA+	AA+	-
금융지주회사			
KB금융지주	AAA	AAA	AAA
우리금융지주	AAA	AAA	AAA
신한금융지주	AAA	AAA	AAA
하나금융지주	AAA	AAA	AAA
농협금융지주	AAA	AAA	AAA
BNK금융지주	AAA	AAA	AAA
JB금융지주	AA+	AA+	AA+

6. 영업망

수협은행 영업점은 2001년 104개에서 2011년에는 112개로, 그리고 2019년에는 135개까지 확대되었으며 전국에 걸쳐 소재하고 있다. 2021년 말 현재는 128개의 영업점을 갖추고 있으며, 이 중 69%인 88개 영업점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2019년에는 수협은행 최초로 미얀마에 해외법인인 수협마이크로파이낸스(수협MFI)를 설립하여 동남아 소매금융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2019년 9월 2일 수협은행 평택비전동지점 개점

〈표 4-5-66〉 수협은행 영업망(2001~2021)

(단위 : 개)

연도	합계	지점	출장소	해외법인
2001	104	100	4	-
2004	98	91	7	-
2007	111	105	6	-
2011	112	108	4	-
2012	115	111	4	-
2013	118	113	5	-
2014	119	115	4	-
2015	120	117	3	-
2016	122	118	4	-
2017	126	120	6	-
2018	133	126	7	-
2019	135	127	7	1
2020	132	123	8	1
2021	129	123	5	1

APPENDIX

Glory & Document

01. 수협 CI 및 브랜드
02. 수협중앙회·수협은행 임원 및 집행간부
03. 역대 회장
04. 역대 임원 명단
05. 조합장 및 상임이사(전무) 명단
06. 어촌계 명단
07. 주요 수산 통계
08. 중앙회 재무제표
09. 수협은행 재무제표

01. 수협 CI 및 브랜드

가. 수협 CI

1) 심벌마크

- CI(Corporate Identity)는 기업의 이미지를 통합하는 작업으로서 수협 심벌마크는 수협운동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조형.

- 외곽 타원은 푸른 바다, 맑은 물을 상징
- 4마리의 물고기는 어민과 어민, 수협과 어민, 수협과 정부 사이의 상호협동을 의미
- 물고기와 파도문양은 수협운동을 통한 진취적인 선진 국가로의 발전을 추구하는 수협의 기상을 의미

2) 로고타이프

- 로고타이프는 심벌마크와 함께 수협 CI 디자인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
- 국문 로고타이프 표시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표기하되 세로 표기도 가능

수협 수협보험

수협중앙회 SUHYUP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SUHYUP BANK

수협은행 Suhyup Bank

나. 브랜드

- 경제사업 기업브랜드

Sh수협 정직한 수산식품

- 상품 브랜드

- 사업 브랜드

수협바다마트 Sh수협마트 바다회상

02. 수협중앙회·수협은행 임원 및 집행간부

수협중앙회

제1대
윤춘근
1962.4.1~1963.2.1

제2대
길항진
1963.3.6~1964.3.31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제3대
김재식
1964.4.2~1966.7.12

제4대
노명우
1966.8.9~1968.7.4

제5대
박상길
1968.7.22~1971.7.21

제6대
김덕엽
1971.7.22~1973.9.25

제7대
장덕희
1973.10.10~1976.5.10

제8, 9대
남문희
1976.5.12~1979.9.25

제10, 14대
홍종문
1976.5.12~1979.9.25

제11대
이동용
1980.7.12~1983.7.11

제12대
이은수
1983.7.12~1986.7.11

제13대
박희재
1986.7.12~1990.4.19

제15, 16대
이방호
1990.8.21~1995.4.24

제17, 18, 21대
박종식
1995.5.22~2000.12.29
2001.6.24~2006.12.27

제19대
정상욱
2001.1.27~2001.6.12

제20대
차석홍
2001.7.4~2004.5.25

제22, 23대
이종구
2007.1.25~2015.3.24

제24대
김임권
2015.3.25~2019.3.26

04. 역대 임원 명단

부회장

	직 위	성 명	임기개시일	임기종료일
1	부회장	노갑술	1962. 04. 01	1962. 05. 31
2	부회장	변재갑	1963. 04. 10	1964. 03. 31
3	부회장	조운현	1964. 06. 27	1966. 07. 12
4	부회장	김명년	1966. 07. 13	1968. 04. 26
5	부회장	박상길	1968. 05. 09	1968. 07. 21
6	부회장	이형민	1968. 07. 23	1968. 10. 31
7	부회장	이철모	1968. 11. 07	1969. 09. 28
8	부회장	이장우	1969. 09. 29	1970. 01. 19
9	부회장	김대권	1970. 02. 13	1971. 08. 23
10	부회장	한신욱	1971. 08. 24	1971. 09. 28
11	부회장	전상기	1972. 04. 03	1975. 04. 02
12	부회장	전상기	1975. 04. 03	1978. 04. 02
13	부회장	조영제	1978. 04. 15	1980. 07. 07
14	부회장	함긍열	1980. 08. 20	1983. 08. 19
15	부회장	최익성	1983. 08. 23	1986. 08. 22
16	부회장	신재기	1986. 09. 13	1988. 04. 05
17	부회장	이종휘	1988. 04. 06	1990. 03. 22
18	부회장	안중철	1990. 04. 23	1994. 04. 22
19	부회장	정종민	1994. 04. 23	1995. 06. 22
20	신용외부회장	민경언	1995. 06. 23	1998. 04. 18
21	신용부회장	이일훈	1995. 06. 23	1998. 03. 26
22	신용외부회장	강평수	1998. 05. 07	2000. 11. 29
23	신용부회장	강중홍	1998. 04. 19	2000. 03. 29
24	신용부회장	김성희	2000. 04. 19	2000. 11. 29

신용대표이사

	직 위	성 명	임기개시일	임기종료일
1	신용대표이사	장병구	2000. 11. 29	2001. 04. 12
2	신용대표이사	장병구	2001. 04. 13	2005. 04. 12
3	신용대표이사	장병구	2005. 04. 13	2009. 04. 12
4	신용대표이사	이주형	2009. 04. 13	2013. 04. 12
5	신용대표이사	이원태	2013. 04. 13	2017. 04. 12

지도경제대표이사

	직 위	성 명	임기개시일	임기종료일
1	경제대표이사	박영일	2000. 11. 29	2001. 04. 12
2	경제대표이사	박영일	2001. 04. 13	2004. 03. 12
3	경제대표이사	김홍철	2004. 05. 11	2008. 05. 10
4	경제대표이사	박규석	2008. 05. 11	2012. 05. 10
5	지도경제대표이사	김영태	2012. 05. 23	2016. 01. 20
6	지도경제대표이사	공노성	2016. 02. 16	2019. 07. 31
7	지도경제대표이사	홍진근	2019. 08. 08	2021. 08. 07
8	지도경제대표이사	홍진근	2021. 08. 08	2023. 08. 07

상임이사

	직 위	성 명	임기개시일	임기종료일
1	총무	홍종호	1962. 04. 01	1962. 05. 31
2	신용	조병학	1962. 04. 01	1963. 03. 21
3	사업	한만호	1962. 04. 01	1963. 04. 15
4	총무	노춘식	1962. 06. 05	1963. 06. 12
5	신용	탁장제	1963. 03. 22	1964. 03. 31
6	사업	김계봉	1963. 04. 16	1964. 03. 31
7	총무	조태환	1963. 06. 13	1964. 03. 31
8	총무	박영찬	1964. 04. 16	1966. 07. 12
9	신용	이영길	1964. 04. 16	1966. 07. 12
10	사업	윤영춘	1964. 04. 16	1967. 04. 15
11	신용	주석범	1966. 07. 13	1968. 04. 22
12	총무	김형곤	1966. 07. 13	1968. 07. 05
13	총무사업	김윤하	1967. 04. 20	1969. 09. 28
14	신용	이민우	1968. 05. 08	1971. 05. 08
15	사업	이철모	1968. 07. 05	1968. 11. 06
16	사업	어용주	1968. 11. 07	1969. 04. 15
17	사업	이장우	1969. 04. 16	1969. 09. 28
18	사업	김용규	1969. 09. 29	1971. 08. 23
19	총무	박성진	1969. 09. 29	1971. 08. 23
20	신용	김윤하	1971. 06. 15	1973. 09. 24
21	사업	박정욱	1971. 08. 24	1974. 08. 23
22	총무	정상진	1971. 08. 24	1974. 08. 23
23	신용	백용찬	1973. 09. 25	1976. 09. 24
24	총무	박정욱	1974. 08. 24	1975. 04. 09
25	총무사업	문 수	1974. 08. 24	1977. 08. 23
26	사업신용	함긍열	1976. 02. 07	1979. 02. 06
27	신용,사업	신연중	1976. 09. 28	1979. 09. 15
28	총무사업	문 수	1977. 08. 24	1980. 08. 23
29	지도	신외식	1978. 02. 01	1978. 03. 16
30	지도	이길우	1978. 03. 20	1980. 07. 19
31	신용	함긍열	1979. 02. 07	1980. 08. 19
32	사업	이남섭	1979. 09. 25	1980. 07. 09
33	총무	정동원	1979. 11. 24	1982. 11. 23
34	사업	정술화	1980. 08. 20	1983. 02. 10
35	신용사업	박용협	1980. 09. 09	1983. 09. 08
36	지도	신재기	1980. 11. 01	1983. 10. 31
37	신용	정동원	1982. 11. 24	1985. 11. 23
38	지도사업	정홍래	1983. 03. 14	1986. 03. 13
39	총무지도	유재덕	1983. 09. 09	1986. 09. 08
40	총무	신재기	1983. 11. 10	1986. 09. 13
41	총무지도	박선만	1985. 12. 06	1988. 12. 05
42	신용	안중철	1986. 09. 13	1988. 09. 14
43	총무사업	유재덕	1986. 09. 13	1990. 04. 21
44	사업지도	안형선	1986. 09. 13	1990. 04. 22
45	총무신용	유회영	1988. 09. 15	1990. 04. 22
46	신용	최영식	1988. 12. 06	1990. 04. 22
47	사업	정근호	1990. 04. 23	1990. 09. 03
48	총무	김성호	1990. 04. 23	1994. 04. 22
49	신용	신종기	1990. 04. 23	1994. 04. 22
50	지도	오세득	1990. 04. 23	1994. 04. 22
51	사업	이양우	1990. 12. 04	1994. 12. 03
52	총무	장상한	1990. 12. 04	1994. 12. 03
53	신용	권영두	1994. 04. 23	1995. 04. 24
54	총무	안중기	1994. 04. 23	1995. 06. 22
55	신용	정철석	1994. 04. 23	1995. 06. 22
56	지도	고석희	1994. 12. 04	1995. 06. 22
57	사업	김승열	1994. 12. 04	1995. 06. 22
58	관리	서정욱	2000. 11. 29	2000. 12. 29
59	신용	신숙문	2000. 11. 29	2001. 04. 12
60	경제	양성일	2000. 11. 29	2001. 04. 12
61	관리	강병순	2001. 04. 13	2001. 07. 23
62	경제	양성일	2001. 04. 13	2002. 02. 18
63	신용	박종수	2001. 04. 13	2003. 04. 12
64	신용	정근용	2001. 04. 13	2003. 04. 12
65	관리	김용방	2001. 08. 13	2003. 08. 12
66	관리	여경호	2002. 02. 19	2004. 02. 25
67	경제	김홍철	2002. 02. 19	2004. 02. 25
68	신용	김철기	2003. 04. 13	2005. 04. 12
69	신용	박종본	2003. 04. 13	2005. 04. 12
70	관리	김용방	2003. 08. 13	2004. 05. 12
71	경제	김홍철	2004. 02. 26	2004. 05. 10
72	관리	공창석	2004. 03. 10	2006. 03. 16
73	경제	장한규	2004. 06. 08	2006. 06. 07
74	관리	염기영	2004. 07. 16	2006. 07. 15
75	신용	김철기	2005. 04. 13	2006. 01. 20
76	신용	박종본	2005. 04. 13	2007. 04. 12
77	신용	강명석	2006. 02. 08	2008. 03. 27
78	관리	박성기	2006. 03. 17	2008. 03. 27
79	경제	김광근	2006. 06. 20	2008. 06. 19
80	관리	염기영	2006. 07. 16	2008. 07. 15
81	신용	박종본	2007. 04. 13	2009. 03. 19
82	신용	강명석	2008. 03. 28	2009. 03. 19
83	관리	김영태	2008. 03. 28	2010. 03. 27
84	경제	김영섭	2008. 06. 20	2010. 06. 19
85	관리	염기영	2008. 07. 16	2010. 07. 15
86	신용	임영호	2009. 04. 15	2011. 04. 14
87	신용	이재헌	2009. 04. 15	2011. 04. 14
88	지도경제	김영태	2010. 03. 28	2012. 03. 27
89	지도경제	이증수	2010. 06. 20	2012. 06. 19
90	지도경제	김홍섭	2010. 07. 16	2012. 07. 15
91	신용	이재헌	2011. 04. 15	2013. 03. 24
92	신용	임동홍	2011. 04. 15	2013. 04. 14
93	지도경제	서기환	2012. 03. 28	2014. 03. 27
94	지도경제	공노성	2012. 06. 20	2014. 06. 19
95	지도경제	김종수	2012. 07. 16	2014. 06. 19
96	신용	김진배	2013. 04. 09	2014. 01. 15
97	신용	임동홍	2013. 04. 15	2014. 01. 15
98	신용	이길동	2014. 01. 22	2016. 03. 24
99	신용	박일곤	2014. 01. 22	2016. 03. 24
100	지도경제	서기환	2014. 03. 28	2016. 01. 20
101	지도경제	공노성	2014. 06. 20	2016. 02. 02
102	지도경제	김종수	2014. 06. 20	2016. 01. 20
103	지도경제	김병욱	2016. 03. 03	2018. 03. 02
104	지도경제	강신숙	2016. 03. 03	2018. 03. 02
105	지도경제	안재문	2016. 03. 03	2017. 01. 03
106	신용	이길동	2016. 03. 25	2016. 11. 30
107	신용	박일곤	2016. 03. 25	2016. 11. 30
108	경제	이중찬	2018. 03. 29	2020. 03. 28
109	경제	양동욱	2020. 03. 29	2022. 03. 28
110	경제	양동욱	2022. 03. 29	2024. 03. 28

감사위원장

	직 위	성 명	임기개시일	임기종료일
1	상임감사	진도석	1962. 04. 04	1962. 07. 31
2	상임감사	신연식	1963. 04. 26	1964. 03. 31
3	상임감사	한문조	1964. 06. 30	1966. 06. 29
4	상임감사	한문조	1964. 06. 30	1968. 06. 29
5	상임감사	장필남	1968. 06. 30	1970. 06. 29
6	상임감사	김중태	1970. 06. 30	1970. 12. 31
7	상임감사	장필남	1971. 02. 26	1972. 06. 29
8	상임감사	장필남	1972. 06. 30	1974. 06. 29
9	상임감사	장필남	1974. 07. 09	1976. 07. 08
10	상임감사	진석문	1976. 07. 15	1978. 07. 14
11	상임감사	진석문	1978. 07. 15	1980. 07. 14
12	상임감사	이성우	1980. 08. 20	1982. 08. 19
13	상임감사	이성우	1982. 08. 20	1984. 08. 19
14	상임감사	김종숙	1984. 08. 20	1986. 08. 19
15	상임감사	김종숙	1986. 09. 15	1988. 09. 14
16	상임감사	안중철	1988. 09. 15	1990. 04. 18
17	상임감사	고달익	1990. 04. 19	1993. 04. 18
18	상임감사	고달익	1993. 04. 19	1995. 04. 24
19	상임감사	김성호	1995. 05. 22	1996. 04. 18
20	상임감사	김성호	1996. 04. 19	1999. 04. 18
21	상임감사	이성찬	1999. 04. 19	2000. 12. 29
22	상임감사	서정욱	2001. 01. 27	2004. 02. 25
23	상임감사	신숙문	2004. 02. 26	2005. 09. 27
24	감사위원장	박건재	2005. 12. 30	2006. 04. 12
25	감사위원장	김영규	2006. 04. 19	2008. 04. 12
26	감사위원장	강병순	2008. 04. 30	2010. 04. 12
27	감사위원장	강병순	2010. 04. 13	2012. 04. 12
28	감사위원장	김철기	2013. 03. 14	2015. 04. 12
29	감사위원장	서정욱	2015. 05. 14	2018. 05. 13
30	감사위원장	정경득	2018. 05. 14	2021. 05. 13
30	감사위원장	김규옥	2021. 05. 14	2024. 05. 13

조합감사위원장

	직 위	성 명	임기개시일	임기종료일
1	조합감사위원장	양동정	2001. 04. 13	2004. 04. 12
2	조합감사위원장	장맹수	2004. 04. 23	2006. 09. 15
3	조합감사위원장	김영환	2007. 05. 22	2010. 03. 11
4	조합감사위원장	이경일	2010. 05. 03	2013. 05. 02
5	조합감사위원장	서재연	2013. 05. 03	2016. 05. 02
6	조합감사위원장	서재연	2016. 05. 03	2018. 03. 28
7	조합감사위원장	박신철	2018. 04. 23	2019. 05. 02
8	조합감사위원장	박신철	2019. 05. 03	2022. 05. 02
9	조합감사위원장	조신희	2022. 07. 11	2025. 07. 10

05. 조합장 및 상임이사(전무) 명단 (2022년 5월 말 기준)

관내	조합명	조합장	상임이사	전무
서울 (3)	통조림가공	임승언	최광식	
	냉동냉장	권중천	김병주	
	근해안강망	최민석	최해성	
경인 (5)	경인북부	이만식	한상호	
	옹진	박경서	김현숙	
	인천	조창남	구본선	
	경기남부	정승만	차귀원	
	영흥	백철희		공 석
강원 (9)	고성군	송근식	김성호	
	동해시	김동진	박영록	
	삼척	박수진	김용철(직대)	
	원덕	김만억		공 석
	속초시	박혜철	공 석	
	양양군	김정태	조성욱	
	강릉시	고병남	김상현	
	죽왕	박상철	장공순	
	대포	김영준(직대)	공 석	
충남 (8)	당진	양명길	인기동	
	보령	최요한	조승기	
	서산	김성진	정봉영	
	서천군	박정진	나승철	
	서천서부	최병진	오준영	
	태안남부	문승국	가순복	
	안면도	문정식	손병석	
	대천서부	고영욱	전병규	
전북 (4)	군산시	김광철	이성준(신용)	
			김형문(경제)	
	김제	김영주	정수영	
	부안	송광복	유 현	
	고창군	김 충	김영식	
전남 (20)	강진군	박범석	오광남	
	목포	김청룡	정대성(신용)	
			김태형(경제)	
	신안군	김길동	고정훈	
	영광군	서재창	박호해	
	완도금일	서광재	박영수(신용)	
			황 훈(경제)	
	완도소안	장명순	위종환	
	진도군	김기영	최정태	
	해남군	김성주	이용배	
	거문도	김석환	김영선	
	고흥군	이홍재	최형진	
	나로도	고철웅	김종남	
	여수	김상문	최재경	
	장흥군	이성배	장부기	
	전남동부	서광연	박주인	
	전남정치망	조선현		문형기
	제3,4구잠수기	도연태	양광승	
	근해유망	김이태	박창규	
	서남해수어류	이강호	백명준	
	민물장어양식	이성현	최정수	
	전남서부어류	김양곤	왕세호	

관내	조합명	조합장	상임이사	전무
경북 (9)	경주시	이영웅	최남영	
	강구	강신국	한형철	
	구룡포	김재환	김형준	
	울릉군	김형수	김명규	
	죽변	조학형	허인태	
	영덕북부	김영복	김일호	
	포항	임학진	이진관	
	후포	김대경	어준선	
	동해구기선	송재일	김철규	
경남 (19)	거제	엄 준	신영철	
	고성군	이성헌(직대)	김월섭(직대)	
	마산	최기철	전성일	
	삼천포	홍석용	정도근	
	울산	오시환	유천택	
	부경신항	손원실	이성호	
	진해	노동진	강태욱	
	통영	김덕철	황기철	
	하동군	손영길	진성구	
	남해군	김창영	차상준(직대)	
	욕지	최판길		강 현
	사천	김기영	백봉현	
	멸치권현망	박성호	장희래	
	굴수하식	지홍태	엄철규	
	근해통발	김봉근	이병훈	
	패류살포	김홍곤	문상열	
	멍게수하식	정두한	최성도	
	사량	이형석	김성진	
	창원서부	이진용	공 석	
부산 (7)	부산시	김용실	김종열	
	기장	문용환	이인택	
	대형선망	천금석	한창은(직대)	
	제1,2구잠수기	김정길	양근생	
	경남정치망	김대성	차영호	
	서남구기선	전갑출	정동근	
	대형기선	임정훈	이철규	
제주 (7)	서귀포	김미자	한종관	
	성산포	김계호	김훈범	
	제주시	김성보	김옥근	
	추자도	이강구	김재민	
	한림	김시준	함재홍(신용)	
			이치형(경제)	
	모슬포	강정욱	박학준	
	제주어류	한용선	오동훈	
계 (91)	합계	91	90	4
	현직	89	83	2
	직무대행	2	4	0
	관리인	0	0	0
	공석	0	3	2

조합 현황 : 지구별(70), 업종별(19), 수산물가공(2)
(직대) : 직무대행 / (관리) : 관리인

06. 어촌계 명단 (2021년 12월 말 기준)

경인지역

● 경기남부수협(28어촌계)

고온리	고정리	고포리	국화리	궁평리	권관리	독지리	만호리	매향리	백미리
사 동	석천리	송교리	시 리	신영리	신외리	어 도	여 주	원안리	장덕리
장수리	전곡리	제부리	지화리	초지동	평택내수면	호곡리	화산리		

● 경인북부수협(25어촌계)

가 평	강 후	김 포	김포한수	내 가	내 리	더리미	동 검	매 음	볼 음
북파주	사하동	서 도	선 두	아차도	양 도	양 평	연 천	청 평	초 지
파 주	한 강	행 주	화 도	흥 왕					

● 영흥수협(6어촌계)

내 리	선 재	업 벌	영 암	외 리	용 담

● 옹진수협(35어촌계)

남3리	덕 적	동 리	두 서	말부흥	모 도	문 갑	백 아	상 동	선 감
선 진	소 야	소연평	소이작	소 청	승 봉	신 시	연 지	연 평	오이도
옥 죽	울 도	월 곶	이 작	자 월	장 봉	종 현	중부흥	지 도	진 촌
탄 도	풍 도	행낭곡	흘 곶	흥 성					

● 인천수협(18어촌계)

광 명	구 읍	남 북	덕 교	마시안	세어도	소 래	소무의	송 도	송 산
신 불	연 안	운 북	운 서	을 왕	척 전	큰무리	포 내		

강원지역

● 강릉시수협(13어촌계)

강 문	경포사근진	남항진	사 천	소 돌	심 곡	안 목	안인진	영 진	정동진
정동1리	주문5리	주문리							

● 강원고성수협(10어촌계)

거 진	교 암	대 진	동 호	반 암	봉 포	천 진	아야진	청 간	초 도

● 대포수협(3어촌계)

내물치	대 포	외옹치

● 동해시수협(6어촌계)

금진리	대진동	도직리	묵호동	어달동	천곡동

● 삼척수협(14어촌계)

갈 남	광 진	궁촌1리	대 진	덕 산	오 분	용 화	장 호	장호2리	정 라
증 산	초 곡	추 암	후 진						

06. 어촌계 명단 (2021년 12월 말 기준)

● 속초시수협(5어촌계)

교 동	금 호	동 명	장 사	청 호

● 양양군수협(13어촌계)

광 진	기사문	낙 산	남애1리	남애2리	동 산	동 호	물 치	수 산	오 산
인 구	전진2리	하광정							

● 원덕수협(5어촌계)

노 곡	비 화	신 남	임 원	호 산

● 죽왕수협(5어촌계)

가 진	공현진	문암1리	문암2리	오 호

충남지역

● 당진수협(8어촌계)

가 곡	고 대	교 로	난 지	신 평	인 주	장고항	한 진

● 대천서부수협(3어촌계)

군 헌	현 포	신흑고잠

● 보령수협(30어촌계)

거 차	고대도	광 암	궁 리	낙 동	남 당	남포죽도	녹 도	독 산	무창포
사 호	삽시도	상 황	선 진	소 영	신 리	어 사	어 항	외연도	육 소
장고도	장 은	점 치	주 교	죽 도	증 산	진 창	학 성	호 도	효자도

● 서산수협(55어촌계)

가느실	가로림	가의도	간월도	갈음이	고장동	고파도	남 산	노 룡	당 산
대 로	대 영	대 일	도 성	도 황	독 곶	마 금	만 대	만리포	모 항
모항2구	벌 말	법 산	사 창	삼 동	소 근	송 현	신 덕	신 두	신진도
아랫목	안 기	안 흥	어 도	오 지	왕 산	용 신	웅 도	의항2구	의항3구
이 원	장구도	정산포	중 왕	진 골	창 리	채석포	천리포	청 산	파 도
팔 봉	팔봉호리	학암포	화 곡	활 곡					

● 서천군수협(8어촌계)

백 사	비 인	송 림	송 석	신 창	원 수	월 포	죽 산

● 서천서부수협(12어촌계)

공 암	남 촌	내도둔	도둔리	동 리	띄섬목	마 량	요포공정	월하성	장 벌
홍 원	춘장대								

● 안면도수협(44어촌계)

가경주	고 남	구 매	귀 곡	그물목	꽃지관광체험	누동1	누동2, 4	누동3	대야도
도 항	독 개	둔두리	라 향	만수동	밧 개	방 포	백사장	병술만	삼 봉
선바위	신야1	신야2	안장곰	영 항	옷 점	외 도	율 포	장곡4	장 돌
장 문	정당1	정당2	창기1	창기2	창기3	창기4	창기7	탄 개	통 개
평 풍	호 포	화 성	황 도						

● 태안남부수협(12어촌계)

곰 섬	달 곳	달산포	당 미	당 암	드르니	몽산1리	몽산포	신온마검포	양잠리
원청리	진 산								

전북지역

● 고창군수협(13어촌계)

광 승	구시포	동 호	만 월	반 월	상 포	선 운	용 기	자 룡	장 호
죽 도	하 전	후 포							

● 군산시수협(21어촌계)

개야도	관리도	대 야	동 부	말 도	명 도	무녀도	방축도	비안도	비응도
서 부	선유도	신시도	야미도	어 은	어청도	연 도	옥 선	월 연	장자도
하 제									

● 김제수협(12어촌계)

거 전	구 복	규 동	대 창	동 부	명 동	석 소	심 포	안 하	창 제
청 하	화 포								

● 부안수협(19어촌계)

격 포	계 화	곰 소	대 리	대 항	도 청	돈 지	문 포	백 련	벌 금
식 도	왕 등	운 호	장 신	조 포	줄 포	진 리	창 북	치 도	

전남지역

● 강진군수협(30어촌계)

강진읍남포	구 곡	구 로	남 호	덕 남	만 덕	미 산	백 사	벌 정	봉 황
사 초	상 저	서 중	송 산	송 천	송 학	수 동	수 인	숙 마	신 기
신 마	연 동	영 복	용 흥	원마1구	원마2구	장 계	중 저	하 분	하 저

● 거문도수협(11어촌계)

거 문	대 동	덕 촌	서 도	소거문	손 죽	유 촌	의 성	죽 촌	진 막
평 도									

● 고흥군수협(160어촌계)

가 야	강 동	객 산	거 군	관 청	광 석	구 룡	군 농	군 학	궁 전
금 능	금 성	금 장	금 진	금 호	남 당	남 성	남 암	남 양	남 열
남 천	남 촌	남 흥	내 봉	내 초	노 일	단 장	대 봉	대 전	대 촌
대 통	대 포	덕 산	도 야	독 대	동 봉	동 율	동 정	동촌(2)	동 풍
매 곡	매 동	명 교	명 천	발 포	배 천	백 일	벌 교	봉산(2)	봉 서
북 촌	분 매	사 덕	사 도	상동(2)	상 오	상 장	상 진	상하촌	서 당

06. 어촌계 명단 (2021년 12월 말 기준)

서 촌	서 풍	석 간	석 교	석 정	선 소	선 창	성 두	성 치	송 강
송 림	슬 항	시 산	신 강	신 개	신 곡	신 금	신 양	신 장	신정(2)
신 촌	신 평	신흥(2)	안 남	양 사	여의천	여 호	여화덕	연 소	연 홍
영 등	영 오	예 회	오 마	오천동촌	옥 룡	옹 암	외 래	외 로	외 봉
외 호	용 당	용 동	용 신	우 도	우두(2)	우 산	우 천	원도동	원주도
월 악	월 정	월 포	월 하	율 포	은 전	이목동	익금(2)	일 정	잠 두
장 도	장 선	장 수	장 양	장 예	제 두	죽 도	죽 암	중 동	중 산
중촌(2)	지 등	지주도	지 죽	청 석	청 암	취 도	평 지	풍 류	하 도
하 동	하 장	한 적	해 도	해 평	호 산	홍 연	화 강	화 도	화 옥
화 죽	황 촌								

● 나로도수협(21어촌계)

대 영	덕 흥	동 광	동 포	봉 남	사 양	상 초	선 창	소 영	신 금
신 초	애 도	양 화	염 포	예 내	예 당	와 교	외 초	진 기	창 포
축 정									

● 목포수협(47어촌계)

가 입	고 하	곡 지	광 산	구 로	내 동	달 리	대 반	도 대	도리포
동 산	동 암	두 모	마 동	만 풍	목 서	복 길	북 항	삼 학	삼 호
서 북	석 두	석 창	성 내	성 동	송 정	송 현	신 월	압 창	옥 정
용 유	원 동	월 두	월 천	유 달	율 도	장 재	주 포	죽 교	창 매
청 호	탄 도	하 묘	학 산	해 운	현 화	호 포			

● 신안군수협(72어촌계)

가거1구	가거2, 3구	가 란	고 이	고 장	고평사	곤 촌	구 대	노 은	다물도
다 수	당 사	대 리	대 벌	대 천	도목리	마 리	마 진	만재도	매 화
반 월	방 축	병 풍	복 용	봉 리	비 리	사 리	사옥도	사 치	상중태도
상 태	선 도	송 곡	송 공	수 대	수 리	수 치	신 도	심 리	안 창
어의리	영산리	예리1구	예리2구	오 리	오 상	오 음	옥 도	욕 지	우 목
우이도	원 평	이 곡	익 금	자 라	장 감	장도리	장 병	장산마진	재 원
전장포	전 증	죽 련	진 리	진리1구	진리2구	추 포	팽 진	하우리	하태도
홍도1구	홍도2구								

● 여수수협(107어촌계)

감 도	거 차	고 장	군 내	굴 전	금 봉	나 발	나 진	낭 도	내 동
노 월	달 천	대 대	대소여	대 율	도 독	도 실	동 부	두 라	두 모
두 문	둔 병	둔 전	마 상	만 흥	모 장	묘 도	묘 읍	무 풍	미 포
방죽포	백 야	백 초	백 포	벌 가	복 산	복 촌	봉 전	사 곡	사 도
상 동	상 화	서고지	서 부	서 촌	성 두	세 포	소 경	소 장	송 고
송 도	신덕(순천)	신덕(여천)	신 복	신 월	신 흥	심 포	쌍 봉	안 도	안 포
여 석	여 자	역 포	연 도	오 복	오 천	오천동	온 동	와 온	외 동
용 두	용 진	우 명	우 학	웅 천	원 포	월 항	월 호	육달천	율 림
이 목	이 천	임 포	자 매	자 봉	작 금	장 문	장 지	적 금	제 도
조 발	종 포	죽 포	중 앙	직 포	창 산	평 사	하 동	하 화	학 동
함구미	현 천	호 전	화 산	화 태	화 포	횡 간			

● 영광군수협(16어촌계)

계 마	구 수	두 우	백 수	법 성	상낙월	송 각	안 마	야 월	옥 실
월 봉	월 산	창 우	칠 곡	하낙월	향화도				

● 완도금일수협(125어촌계)

가 교	가 래	가 사	가 용	가 인	가 학	갈 문	감 목	강 독	고 마
관 산	교 성	교 인	구 동	구 성	군 내	궁 항	금곡1	금곡2	남 선
내동1	내동2	내 정	넙 고	넙 도	농 상	달 도	당 목	당 인	대 곡
대 문	대 신	대야1	대야2	대창1	대창2	대 평	덕 동	덕 우	도 남
도 장	동 고	동 백	동 송	동 촌	득 암	망 남	망 석	백 일	봉 명
봉 성	봉 암	불 목	비 견	사동1	사동2	사 후	삼 두	삼 마	삼 산
상 정	상화전	서 성	석 장	세 동	소 랑	송 곡	신 기	신 도	신 리
신 상	신 평	신 학	신 흥	양 지	양 천	어 두	여 동	연 동	영 부
영 풍	영 흥	용 초	용 출	용 항	우 도	우 두	울 포	원 동	월 부
월 송	유 촌	육 동	윤 동	일 정	임 촌	장 도	장 용	장 좌	장 중
장 풍	장 항	정 도	죽 선	죽 청	중 도	중 리	차 우	척 찬	척 치
천 동	청 용	청 학	충 도	충 무	칠 인	토 도	하화전	항 동	해 동
화 가	화 성	황 진	회 룡	흑 일					

● 완도소안수협(63어촌계)

가 학	구 도	구 목	구 장	국 화	권 덕	내 리	당 리	당 사	당 산
도 락	도청(노화)	도청(청산)	동 고	동 진	동 촌	마 삭	맹 선	모 동	모 북
모 서	미라(노화)	미라(소안)	방 축	백 도	보 옥	부 상	부 황	북 고	북 암
비 동	비 서	삼 마	상 서	서 리	서 중	선 창	소 진	신 리	신 흥
여 서	여 항	예 송	예 작	원 동	월 송	월 항	읍 리	이목(노화)	이목(소안)
잘 포	정 동	정 자	중 리	중 흥	지 리	진 산	천 구	청 계	충 도
통 리	포 전	횡 간							

● 장흥군수협(42어촌계)

가 학	고 마	남 포	내 저	노 력	대 리	대 평	덕 산	덕 촌	도 청
동 두	방 촌	사 금	사 촌	산 동	산 서	상 발	송 현	수 문	신 기
신 당	신 리	신 상	신 월	안삭금	양 하	어 은	옹 암	용 곡	우 산
율 산	이진목	이회진	잠 두	장 산	장 환	죽 청	지 정	진 목	평 촌
해 창	회 진								

● 전남동부수협(30어촌계)

고 길	골 약	광양읍	광 영	구 산	금 곡	길 호	늑 도	대 전	동 천
두 봉	망 덕	반 월	사 항	삼간도	송 도	신 산	신 풍	오 사	외 진
장 도	조 화	중 마	진월동부	진월서부	취 적	태 인	평 촌	하 포	황 방

● 진도군수협(60어촌계)

가 사	가 학	갈 두	거 제	관 매	관 호	굴 포	금 갑	나 리	나 배
남 동	남 선	내 동	내 병	녹 진	눌 옥	대 마	도 목	독 거	동거차
동 구	마 사	맹 골	맹 성	명 지	모 도	벌 포	보 전	산 행	상 만
서거차	서 망	세 방	세 포	소 포	송 군	수 품	신 동	신전(조도)	여 미
오 류	옥 도	외 병	원 두	원 포	육 동	율 목	읍 구	저 도	전 두
죽 림	죽 전	죽 항	진 목	창 유	청 등	초 사	팽 목	혈 도	회 동

● 해남군수협(73어촌계)

가 좌	가 차	갈 두	갈 산	관 동	구 림	구 성	궁 항	금 호	남 성
남 전	남 창	내 동	내 장	동 현	두 모	땅 끝	만 수	묵 동	미 학
방 산	별 암	부 동	사 구	사 포	산 두	산 소	산 정	삼 정	상 마
서 홍	석 호	선 두	성 산	소 죽	송 종	송 평	송 호	신 방	신 홍

06. 어촌계 명단 (2021년 12월 말 기준)

신 흥	안 평	양 정	어 란	어 불	억 수	엄 남	영 전	오 산	옥 동
와 룡	외 장	우 근	원 동	월 산	이 진	임 하	중 리	중 마	중 정
증 도	징 의	청 용	초 두	촌 정	통 호	평 호	하 마	학 가	한 자
황 조	후 산	흑 석							

경북지역

● 강구수협(13어촌계)

강 구	구 계	금 진	노 물	대 부	부 경	부 흥	삼 사	석 리	오 포
원 척	창 포	하 저							

● 경주시수협(16어촌계)

가 곡	감 포	나정1	나정2	대 본	모 곡	봉 길	선 창	수 렴	연 동
읍 천	전 촌	죽 전	지 경	척 사	하 서				

● 구룡포수협(32어촌계)

강사1리	강사2리	계원1리	계원2리	구룡포리	구만1리	구만2리	구평1리	구평2리	대동배1리
대동배2리	대보1리	대보2,3리	대진리	두원리	모포리	병포리	삼정1리	삼정2리	삼정3리
석병1리	석병2리	신창1리	신창2리	양포리	영암1리	영암2리	영암3리	장길리	하정1리
하정2리	하정3리								

● 영덕북부수협(13어촌계)

경정1리	경정2리	경정3리	금곡2리	대진1리	대진2리	대진3리	백석2리	병곡2리	사진1리
사진2리	사진3리	축산리							

● 울릉군수협(10어촌계)

남 양	도 동	신 흥	저 동	죽 암	천 부	태 하	통구미	학 포	현 포

● 죽변수협(17어촌계)

고 포	곡 해	골 장	공 세	나 곡	대나리	덕 신	무 릉	봉 수	산 포
석 호	양 정	오산1리	죽 변	진 복	초 산	현 내			

● 포항수협(31어촌계)

두호동	마산리	발산1리	발산2리	방석리	방어리	여남동	오도1리	오도2리	용한1리
용한2리	우목리	월포리	이가리	임곡리	입암1리	입암2리	조사리	죽천리	지경리
청진1리	청진2리	청진3리	칠포1리	칠포2리	항구동	해송동	화진1리	화진2리	환호동
흥환리									

● 후포수협(15어촌계)

거일1리	거일2리	구산리	금음3리	금음4리	기성리	망양1리	망양2리	봉산1리	봉산2리
사동2리	사동3리	직산1리	직산2리	후포리					

경남지역

● 거제수협(75어촌계)

가 배	거 제	견내량	계 도	관 포	광 리	구 영	구조라	군령포	궁 임
근 포	금 포	남 부	내 도	내 송	능 포	다 대	다 포	대 곡	대 금
대 포	덕 곡	덕 포	도장포	동 호	둔 덕	명 사	법 동	사 곡	산 달
선 창	성 포	소 랑	소 림	수 산	술 역	시 방	신 교	신 촌	신 현
실 전	쌍 근	양 망	양 화	어 온	연 구	영 북	영 월	예 구	오 송
옥 포	와 현	외 포	유 호	율 포	이수도	장 목	장승포	저 구	죽 림
지 세 포	창 내	창 도	창 외	청 곡	탑 포	학 동	학 산	한 내	함박금
함박금삼마을	해금강	호 곡	화 도	황 포					

● 경남고성수협(28어촌계)

가 룡	거 운	내 곡	내 신	당 동	당 항	덕 곡	덕 산	동 해	동 화
두 포	미 룡	병 산	봉 암	삼 봉	송 천	수 남	신 평	신 화	용 정
우 두	임 포	자란도	장 산	장 좌	전 도	춘 암	하 이		

● 남해군수협(110어촌계)

가 인	가 천	갈 화	감 암	강 진	고 두	고 모	고 사	곤 유	광 두
광 천	구 미	금 송	금 천	금 평	금 포	남 상	내동천	냉 천	노구(미조)
노구(서면)	노 량	다 천	단 항	답 하	당 저	당 항	대 곡	대 량	대 벽
대지포	덕 월	동 대	동도마	동 비	동 산	동 흥	두 곡	두 모	둔 촌
모 천	문 항	물 건	벽 련	보 천	본 촌	사 촌	사 포	사 항	상 신
상 주	서 상	서창선	선 구	선 소	설 리	섬 호	소 량	소 벽	송 남
숙 호	식 포	신 전	신 흥	심 천	양화금	언 포	염 해	영 지	예 계
와 현	왕 지	용 소	원 천	월 곡	월 포	유 구	유 포	율 도	은 점
이 어	작장(상남)	장 포	장 항	적 량	전 도	정 포	조 도	조도큰섬	지 족
지족2리	진 목	차 면	창지족	천 포	천 하	초 양	초 전	토 촌	팔 량
평산1리	평산2리	항 도	항 촌	호 도	홍 현	화 계	화 전	화 천	회 룡

● 마산수협(21어촌계)

가 포	구 복	난 포	내 포	덕 동	명 주	반 동	삼 귀	수 정	시 락
신마산	실리도	심 리	옥 계	용마산	용 호	욱 곡	원 전	율 티	이 창
장 구									

● 부경신항수협(14어촌계)

김 해	남 양	녹 산	눌 차	대 항	동 선	서낙동강	성 북	송 정	신 호
안 골	용 원	천 성	청 안						

● 사량수협(14어촌계)

내 지	능 양	답 포	대 항	덕 동	돈 지	먹 방	백 학	사 금	수 우
옥 동	외 지	읍 포	진 촌						

● 사천수협(9어촌계)

구 랑	구 포	내 구	다 맥	비 토	선 전	신 소	조 도	중 촌

06. 어촌계 명단 (2021년 12월 말 기준)

● 삼천포수협(21어촌계)

곤 양	노 량	늑 도	대 방	대 포	동 동	마 도	모 례	산분령	서 동
선 진	송 포	신수도	신 향	실 안	용 현	저 도	중 항	초 양	팔 포
한 내									

● 욕지수협(18어촌계)

덕 동	도 동	동 제	두미남구	두미북구	목청송	불 곡	산 등	상노대	서 부
연 화	옥동산내	옥동산외	우 도	유 동	자 부	탄 항	하노대		

● 진해수협(14어촌계)

경 화	남 문	명 동	삼 포	속 천	수 도	수 치	연 도	우 도	잠 도
장 천	제 덕	죽 곡	행 암						

● 창원서부수협(8어촌계)

고 현	광 암	다 구	송양도	장 기	주 도	죽 전	진 동

● 통영수협(86어촌계)

견 유	고 포	곡용포	곤 리	관 암	궁 항	내 항	당 금	덕 포	도 남
도 선	동 달	동 좌	두 억	두억1구	마 동	만 지	매물도대항	문어포	미 남
미수1	미수2	법 송	봉 암	봉 전	북 신	비산도	삼 덕	삼 화	상양지
서 부	서 좌	세 포	소고포	소매물도	수 도	수 륙	수 월	신 봉	신 촌
안 정	야 소	어 의	연 기	연 대	연 명	염 호	영 운	예 곡	오 륜
오륜동	오 비	오 수	외 항	용 초	용 호	원 평	원 항	의 암	이 운
인 평	입정포	장 문	장작지	장 촌	저 도	저 산	정 량	죽 도	중 부
중 화	지 도	창 좌	추 도	추 원	평 림	풍 동	풍 서	하양지	하 전
학 림	해 란	호 두	화 삼	화 포	황 리				

● 하동군수협(27어촌계)

객 길	고 전	고 포	광 평	광 포	구노량	궁 항	나 팔	내 도	대 도
대 송	대 치	두 곡	명 덕	목 도	서 근	송 문	술 상	신노량	신 비
양 포	연 막	용 포	조 금	중 평	화 목	화 송			

부산 및 울산지역

● 기장수협(18어촌계)

공 수	길 천	대 변	동 백	동 암	두 호	문 동	문 중	서 암	신 암
신 평	월 내	월 전	이 동	이 천	임 랑	칠 암	학 리		

● 부산시수협(23어촌계)

구 포	남부민	남 천	남 항	다 대	대 저	대 포	동 리	동 삼	미 포
민 락	송 정	신 전	암 남	엄 궁	용 호	우 동	장 림	중 리	진 목
청 사	하 단	홍 치							

● 울산수협(29어촌계)

강 양	나 사	달 포	당 사	당 월	대 송	미 포	방 도	방어진	비 학
송 정	신 리	신 명	신 암	어 물	우 가	우 봉	원 산	이 진	일 산
전 하	정 자	제 전	주 전	진 하	처 용	판 지	평 동	화 암	

제주지역

● 모슬포수협(13어촌계)

가 파	대 평	동 일	마 라	무 릉	사 계	상 모	신 도	영 락	일과1
일과2	하 모	화 순							

● 서귀포수협(19어촌계)

강정동	남원리	대포동	법환동	보목동	색달동	서귀동	신례리	신흥리	위미1리
위미2리	중문동	태흥1리	태흥2리	태흥3리	토평동	하례리	하예동	하효동	

● 성산포수협(13어촌계)

고성신양	삼달리	성산리	세 화	시흥리	신산리	신천리	신풍리	오조리	온평리
토산리	표선리	하천리							

● 제주시수협(34어촌계)

고 내	곽 지	구 엄	귀 일	금 성	김 녕	내 도	도 두	동 귀	동 북
북 촌	산 지	삼 양	서 광	세 화	신 엄	신 촌	신 흥	애 월	오 봉
외 도	용 담	월 정	이 호	조 일	조 천	종 달	천 진	평 대	하 도
한 동	함 덕	행 원	화 북						

● 추자도수협(5어촌계)

대 서	묵	신 양	영 흥	예 초

● 한림수협(18어촌계)

고 산	귀덕1	귀덕2	금 능	금 등	두 모	비 양	수 원	신 창	옹 포
용 당	용 수	용 운	월 령	판 포	한 림	한 수	협 재		

07. 주요 수산 통계

1) 어업별 생산량

(단위 : 톤)

연도	총 생산량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1971	1,071,578	764,179	147,221	159,307	871
1976	2,405,011	1,255,095	410,670	724,260	14,986
1981	2,810,227	1,526,670	701,065	542,357	40,135
1986	3,659,724	1,725,820	946,965	929,886	57,053
1991	2,906,131	1,226,779	775,419	873,533	30,400
1996	3,247,564	1,623,822	874,810	718,684	30,248
2001	2,665,124	1,252,099	655,827	739,057	18,141
2006	3,032,116	1,108,815	1,259,274	639,184	24,843
2011	3,255,929	1,235,489	1,477,546	510,624	32,270
2016	3,269,433	907,580	1,872,400	454,053	35,400
2021	3,820,047	941,069	2,397,490	438,825	42,663

출처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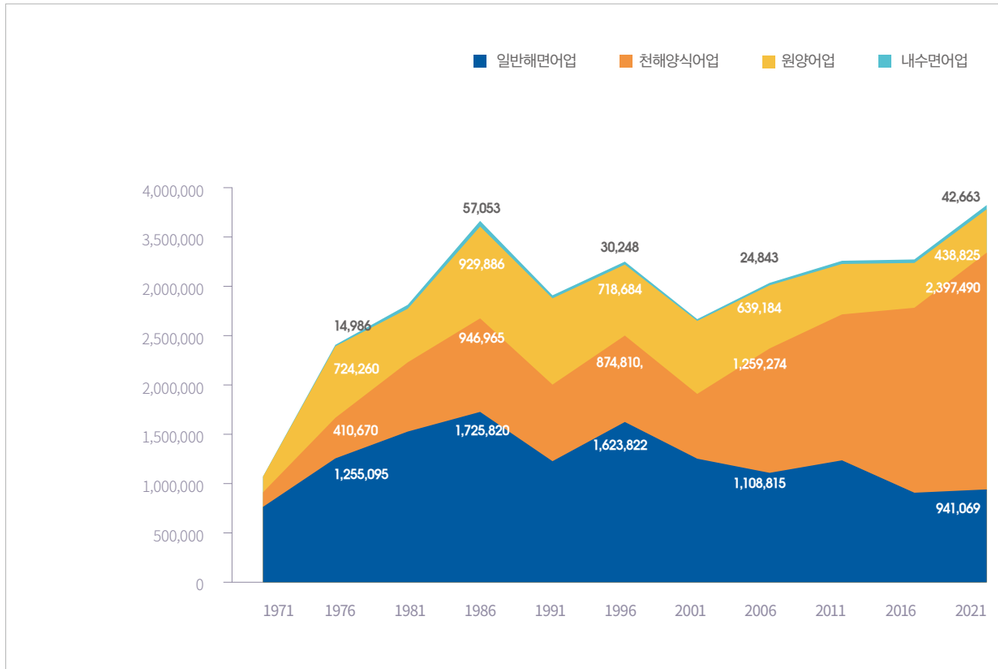

2) 어업가구 및 어업인구

(단위 : 가구, 명)

연도	어업가구수	어업인구
1980	134,109	725,314
1985	126,800	602,237
1990	121,525	496,089
1995	104,480	347,210
2000	81,569	251,339
2005	79,920	221,058
2010	65,743	171,083
2015	54,793	128,352
2020	43,149	97,062
2021	43,327	93,798

출처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해수면 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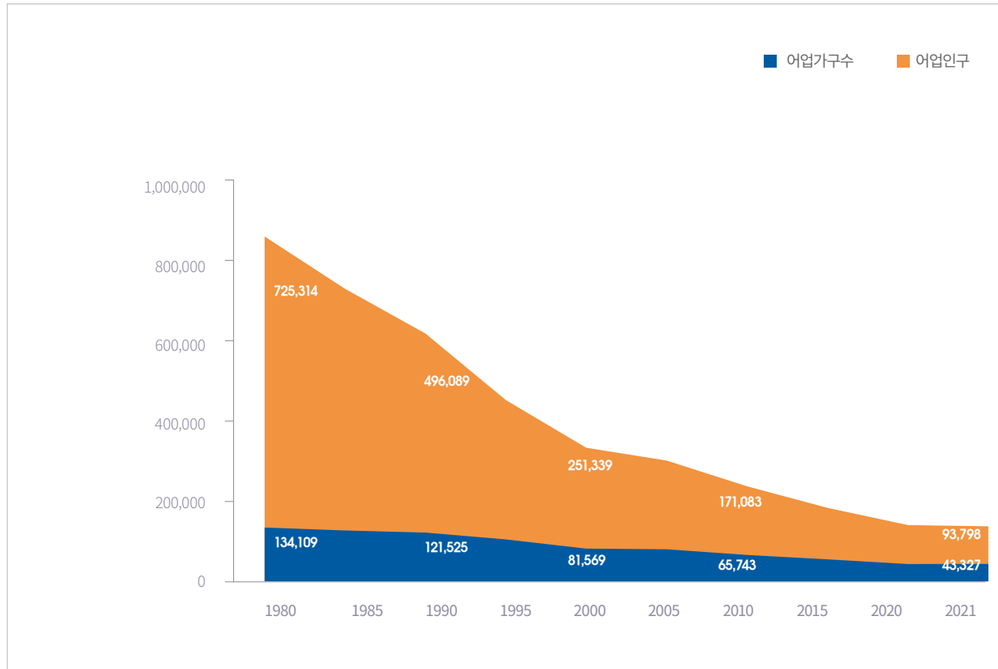

3) 어업형태별 어가 현황

(단위 : 가구)

연도	총 가구수	어로어업가구	양식어업가구
1980	134,109	78,207	55,902
1990	121,525	71,798	49,727
1995	104,480	70,471	34,009
2000	81,569	56,760	24,809
2005	79,942	55,867	24,075
2010	65,743	48,369	17,374
2015	54,793	41,299	13,494
2020	43,149	32,814	10,335
2021	43,338	32,110	11,228

출처 : 통계청 「등록어선통계」 해수면 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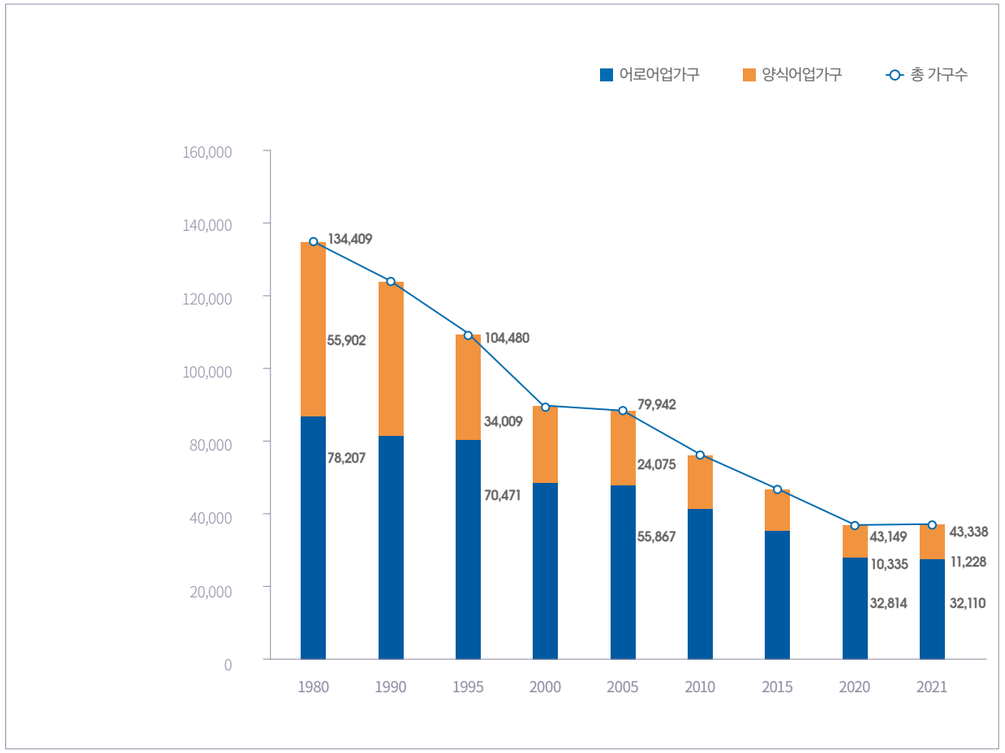

4) 어업형태별 어선세력

(단위 : 척)

연도	총계	원양어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천해양식	내수면	기타어업
1992	94,135	734	6,765	49,210	31,734	2,967	2,905
1997	81,000	637	6,345	50,073	19,162	5,116	2,225
2000	95,890	597	5,287	63,342	20,359	7,328	2,641
2005	90,735	493	3,687	60,892	18,244	8,328	3,255
2010	76,974	379	2,875	47,882	17,594	5,946	5,271
2015	67,226	348	2,643	42,692	16,976	3,101	1,466
2020	65,744	199	2,613	37,271	18,707	3,081	3,873

출처 : 통계청 「등록어선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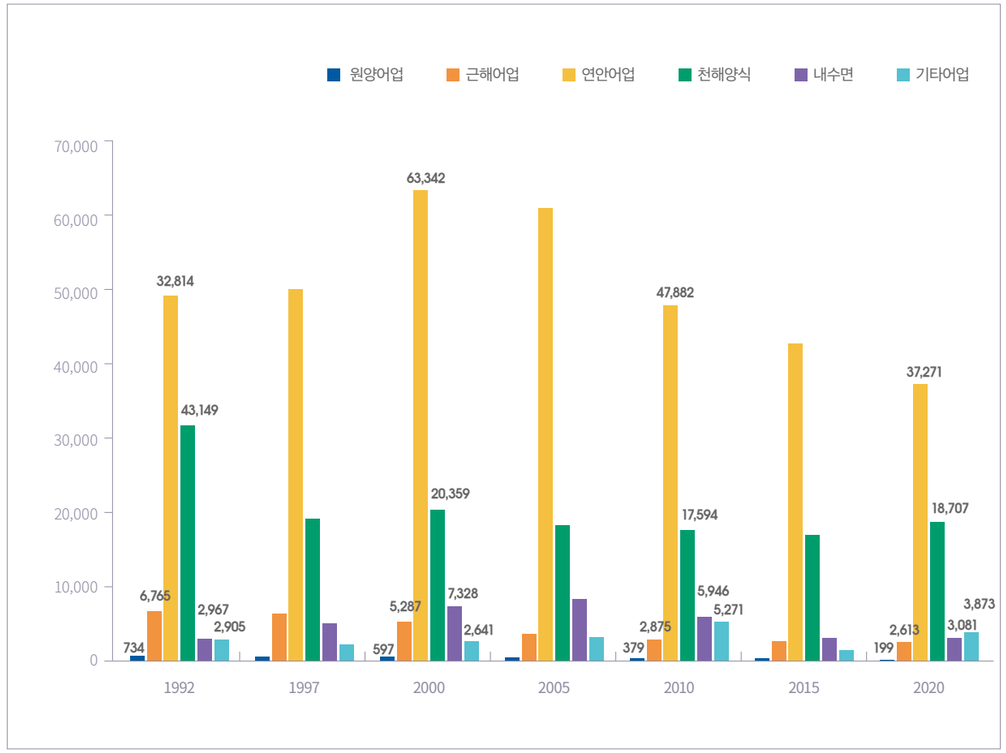

07. 주요 수산 통계

5) 어가소득 및 어가부채

(단위 : 천원)

연도	어가소득	어가부채
2005	28,028	34,531
2010	35,697	35,640
2015	43,895	41,645
2020	53,187	63,903
2021	52,392	64,397

출처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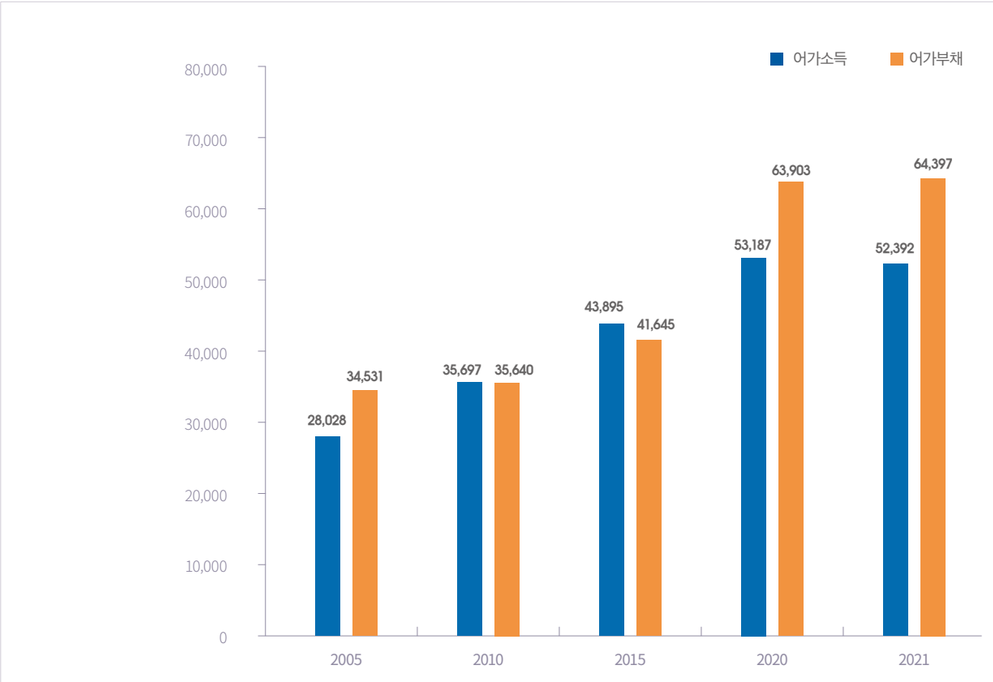

6) 수산물 수출 및 수입

(단위 : 톤, 천USD)

연도	수출		수입	
	중량	금액	중량	금액
2010	793,045	1,798,162	4,715,726	3,458,400
2011	686,929	2,308,154	4,845,662	4,191,944
2012	708,421	2,361,261	4,829,157	3,974,627
2013	687,308	2,151,370	5,387,008	3,894,740
2014	701,554	2,066,975	5,231,332	4,505,880
2015	650,797	1,924,375	5,503,737	4,555,634
2016	611,530	2,127,592	5,372,630	4,791,147
2017	539,512	2,329,315	5,492,224	5,268,329
2018	632,134	2,377,020	6,419,397	6,125,289
2019	687,534	2,505,265	5,606,344	5,793,895
2020	614,242	2,305,535	5,518,025	5,621,145

출처 :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수산물 수출입 통계」

수출입 중량(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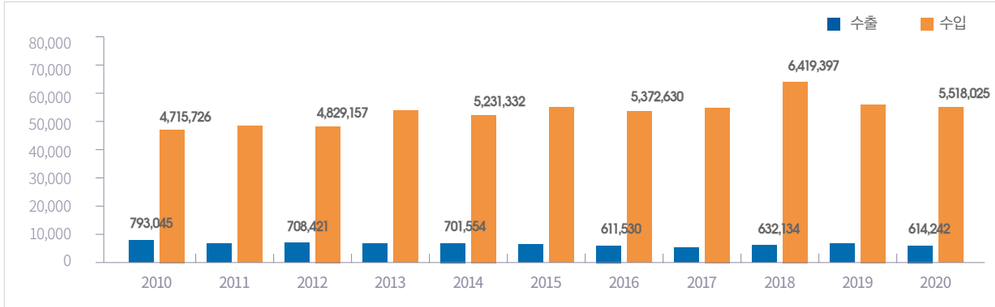

수출입 금액(천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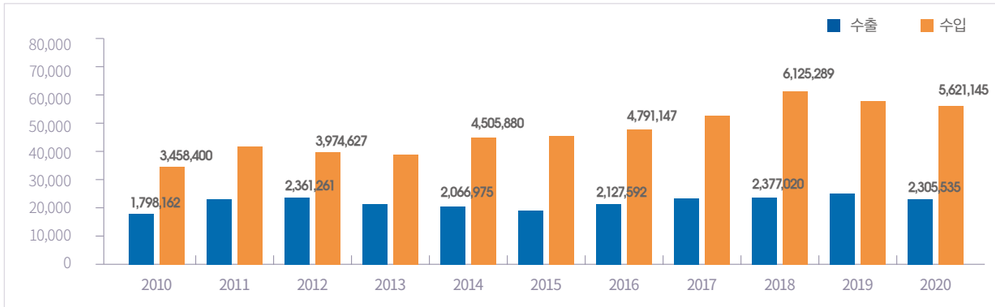

08. 중앙회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60기
2021년 12월 31일

제59기
2020년 12월 31일

지도경제사업부문

(단위 : 원)

과목	제60(당)기	제59(전)기
(자 산)		
Ⅰ. 현 금 및 예 치 금	480,719,822,306	476,795,373,113
1. 보통예치금	395,623,656,601	372,755,999,031
(자산취득전국고보조금)	-1,505,100,000	-2,000,000,000
2. 기타예치금	86,601,265,705	106,039,374,082
Ⅱ. 유 가 증 권	9,587,103,303,388	8,852,021,451,139
1. 단기매매증권	123,702,823,311	82,202,901,254
1) 국채	0	10,006,350,000
2) 금융채	0	9,981,500,000
3) 주식	33,256,139,600	1,611,660,700
4) 수익증권	60,025,313,711	30,026,990,554
5) 파생결합증권	30,421,370,000	30,576,400,000
2. 매도가능증권	7,254,560,221,721	6,621,786,732,115
1) 원화수익증권	1,939,905,074,638	1,479,615,286,055
2) 국채	167,080,850,000	105,254,860,000
3) 금융채	538,553,203,900	374,321,403,350
4) 회사채	3,079,770,436,821	3,160,452,576,194
5) 주식	15,878,296,205	15,972,347,660
6) 특수채	49,959,765,000	30,251,580,000
7) 수익증권	641,883,757,700	543,078,477,517
8) 기타유가증권	821,528,837,457	912,840,201,339
3. 만기보유증권	2,180,292,624,831	2,119,664,960,334
1) 국채	197,142,393	196,320,452
2) 금융채	759,928,518,024	719,908,903,423
3) 회사채	799,775,371,477	909,893,445,611
4) 지방채	0	50,000
5) 특수채	620,391,592,937	489,666,240,848
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8,547,633,525	28,366,857,436
Ⅲ. 대 출 채 권	1,586,251,011,074	1,600,593,111,243
(대손충당금)	-12,495,485,103	-12,863,466,063
(이연대출부대수익)	-1,191,627,608	-1,584,492,082
1. 공제대출금	746,319,985,453	751,134,798,550
2. 상호금융대출금	853,618,138,332	863,906,270,838
Ⅳ. 대 여 금	1,216,271,082,104	1,068,427,550,411
(대손충당금)	-10,010,115,969	-8,762,963,117
1. 회원지원자금	32,900,000,000	6,374,000,000
2. 조합육성자금	13,285,000,000	6,374,000,000
3. 경제사업선급금	80,096,198,073	70,816,513,528
4. 기타대여금	1,100,000,000,000	1,000,000,000,000
Ⅴ. 매 출 채 권	81,534,090,605	83,720,830,145
(대손충당금)	-4,259,613,665	-5,092,101,373
1. 매출채권	85,793,704,270	88,812,931,518
Ⅵ. 재 고 자 산	109,514,514,484	137,641,499,052
(재고자산평가충당금)	-1,189,422,605	-355,923,235
1. 상품	107,078,525,695	133,827,822,715
2. 가공품	3,625,411,394	4,169,599,572
Ⅶ. 유 형 자 산	762,149,313,534	755,022,642,416
1. 유형자산	1,151,791,980,992	1,124,850,716,583
(감가상각누계액)	-233,078,720,712	-213,796,984,523

(단위 : 원)

과목	제60(당)기	제59(전)기
(자산취득후국고보조금)	-156,563,946,746	-156,031,089,644
1) 토지	477,966,614,167	477,554,891,515
2) 건물및구축물	507,315,568,243	490,065,900,885
3) 동산	157,599,817,942	142,202,931,076
4) 기타유형자산	2,078,315,493	2,078,315,493
5) 건설중인자산	6,831,665,147	12,948,677,614
Ⅷ. 기 타 자 산	342,775,941,079	346,133,317,482
1. 가지급금	207,422,442	199,340,951
(대손충당금)	-92,314,072	-136,982,175
2. 미수금	31,618,639,553	35,667,553,254
(대손충당금)	-3,555,666,983	-3,557,492,226
3. 선급비용	506,042,602	402,182,915
4. 미수수익	44,878,053,093	41,547,446,028
5. 보증금	23,581,880,375	23,150,479,758
1) 임차보증금	23,596,207,375	23,166,806,758
(자산취득후국고보조금)	-200,000,000	-200,000,000
2) 기타보증금	185,673,000	183,673,000
6. 투자부동산	978,251,500	969,108,000
7. 비축품	0	1,247,737,605
8. 입체금	7,740,000	10,500,000
9. 잡자산	1,206,594,100	1,206,594,100
10. 예보기금대여금	0	32,994,000,000
11. 선급금	61,729,856	62,419,520
12. 미상각신계약비	35,786,476,856	39,069,950,372
13. 가지급공제금	236,001,346	231,232,866
14. 이연법인세자산	185,610,715,261	157,204,151,826
15. 공제미수금	8,615,859,152	7,604,338,772
16. 구상채권	130,891,707	64,688,489
17. 무형자산	12,997,624,291	8,196,067,427
(국고보조금)	-90,000,000	-150,000,000
18. 타회계자금	0	0
(국고보조금)	-983,800,000	0
1) 임차보증금	983,800,000	0
자 산 총 계	14,166,319,078,574	13,320,355,775,001
(부 채)		
Ⅰ. 예 수 부 채	6,660,806,556,463	6,107,860,265,998
1. 상호금융예수금	6,660,806,556,463	6,074,866,265,998
2. 회원경영지원예수금	0	32,994,000,000
Ⅱ. 차 입 부 채	118,838,069,161	134,780,796,027
1. 경제사업차입금	118,838,069,161	134,780,796,027
1) 단기차입금	115,438,069,161	127,724,796,027
2) 장기차입금	3,400,000,000	7,056,000,000
Ⅲ. 사 채	1,710,000,000,000	1,630,000,000,000
1. 수산금융채권	1,710,000,000,000	1,630,000,000,000
Ⅳ. 매 입 채 무	82,542,922,794	91,017,963,799
1. 매입채무	82,542,922,794	91,017,963,799
Ⅴ. 책 임 준 비 금	4,026,502,168,248	3,944,536,431,149
(출재보험준비금)	-19,643,356,852	-22,475,798,590
1. 공제료적립금	3,929,574,022,091	3,853,031,118,926

과목	제60(당)기	제59(전)기
2. 미경과공제료적립금	12,948,609,692	13,319,356,413
3. 지급준비금	103,622,893,317	100,661,754,400
VI. 비 상 위 험 준 비 금	2,271,355,645	2,402,146,916
VII. 계 약 자 지 분 조 정	128,522,188	92,081,150
VIII. 공 제 기 금	237,701,748,730	218,271,748,730
IX. 양 식 기 금	1,840,000,000	1,120,000,000
X. 안 전 기 금	1,976,000,000	1,641,000,000
XI. 기 타 부 채	692,981,743,786	612,483,649,480
1. 계통육성기금충당부채	47,416,650,660	42,895,971,186
1) 조합육성기금	18,889,025,037	18,963,108,063
2) 유류사업지원자금	2,533,998,462	3,192,879,492
3) 수산물유통손실보전자금	25,993,627,161	20,739,983,631
2. 유류오염피해구제자금충당금	6,136,518,258	6,075,864,112
3. 자연재난구호기금충당금	5,501,321,217	4,963,509,970
4. 퇴직급여충당부채	91,309,017,838	85,192,316,610
(국민연금전환금)	-20,583,800	-22,397,300
(퇴직신탁예치금)	-6,920,728,541	-7,265,189,256
5. 휴면공제충당금	2,073,278,692	2,687,086,712
6. 포인트카드충당금	567,849,682	172,428,305
7. 수입보증금	46,933,120,795	50,481,041,295
8. 가수공제료	8,880,250	193,974,631
9. 가수금	13,850,364,237	11,913,564,492
10. 예수금	1,204,480,008	1,129,841,775
11. 미지급금	17,346,273,766	17,586,245,060
12. 선수공제료	4,683,373,164	1,822,423,052
13. 선수금	22,717,285,169	11,443,487,397
14. 선수수익	180,054,793	189,153,282
15. 미지급비용	22,909,918,781	20,443,834,051
16. 미지급법인세	15,857,830,216	2,685,654,146
17. 수입제세	933,483,720	925,298,850
18. 공제미지급금	4,055,930,024	2,571,042,571
19. 부가가치세선수금	928,452,018	511,364,771
20. 미지급이자	20,255,540,267	24,166,892,841
21. 대리점	110,000,000	140,000,000
22. 특별유보금	334,575,157,126	279,391,134,889
23. 기타충당부채	11,223,385,235	279,391,134,889
24. 타회계자금	29,144,890,211	52,189,106,038
1) 재해보상자금	28,161,090,211	52,189,106,038
2) 공제-양식자금	983,800,000	0
부채합계	13,535,589,087,015	12,744,206,083,249
(자 본)		
I. 자 본 금	192,861,724,669	174,492,110,383
1. 출자금	168,263,044,370	149,893,430,084
2. 회전출자금	199,620,299	199,620,299
3. 우선출자금	24,399,060,000	24,399,060,000
II. 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	77,714,343,737	68,516,048,657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77,835,029,599	68,660,349,092
2. 지분법자본변동	-120,685,862	-144,300,435
III. 이 익 잉 여 금	360,153,923,153	333,141,532,712
1. 법정적립금	49,922,068,787	43,671,616,356
2. 임의적립금	273,265,806,098	258,217,654,203

과목	제60(당)기	제59(전)기
3. 미처분이익잉여금	36,966,048,268	31,252,262,153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6,098,370,229	2,131,768,660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989,697,798	-989,697,798
(당기순이익)	31,857,375,837	30,110,191,291
자 본 합 계	630,729,991,559	576,149,691,752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4,166,319,078,574	13,320,355,775,001

손익계산서

| 제60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제59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도경제사업부문

(단위 : 원)

과 목	제60(당)기	제59(전)기
I. 영 업 수 익	2,387,651,240,334	2,230,740,738,719
1. 명칭사용료수익	31,237,105,860	30,467,872,902
2. 이자수익	211,947,961,847	226,986,048,609
1) 예치금이자	1,386,935,358	1,644,131,709
2) 단기매매증권이자	142,976,522	141,183,300
3) 매도가능증권이자	96,672,871,189	116,145,497,776
4) 만기보유증권이자	61,521,902,946	59,349,068,867
5) 대출금이자	51,879,548,715	48,404,428,622
6) 사모사채이자	0	553,129,778
7) 기타수입이자	59,980,459	72,921,802
8) 수입내부자금이자	283,746,658	675,686,755
3.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59,560,168,941	73,119,595,026
1)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1,030,697,343	870,714,924
2)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5,423,078,535	4,530,273,364
3)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53,106,393,063	67,069,353,493
4)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	0	649,253,245
4. 대출채권평가및처분이익	2,689,365,632	175,000,000
1) 대손충당금환입액	2,689,365,632	175,000,000
5. 배당금수익	105,283,715,527	83,964,010,318
1) 단기매매증권배당금	1,299,033,329	119,325,000
2) 매도가능증권배당금	103,984,682,198	83,844,685,318
6. 경제매출액	1,036,452,515,207	892,458,930,182
1) 상품매출	1,012,613,981,431	869,812,822,776
2) 제품매출	1,510,880,414	1,253,711,007
3) 이용가공수익	6,639,932,133	5,170,763,514
4) 수수료매출	13,842,099,632	14,329,793,064
5) 비축수수료	1,845,621,597	1,891,839,821
7. 기타수입수수료	1,714,222,242	1,592,684,627
8. 공제료수익	898,455,899,096	873,430,038,329
1) 생명	768,933,973,062	751,958,212,785
2) 손해	102,139,273,855	90,135,788,450
3) 양식	24,247,222,209	28,363,521,724
4) 안전	3,135,429,970	2,972,515,370
9. 재보험수익	35,358,596,286	44,516,188,058
10. 비상위험준비금환입액	130,791,271	0
11. 구상이익	66,203,218	0
12. 지도사업수익	4,705,235,947	3,987,371,540
13. 기타영업수익	49,459,260	42,999,128

과 목	제60(당)기	제59(전)기
II. 영 업 비 용	2,135,181,698,322	2,012,729,113,068
1. 이자비용	92,954,777,492	110,937,453,047
1) 예수부채이자	87,330,635,310	105,457,366,386
2) 기타차입부채이자	4,636,679,355	4,546,352,452
3) 지연이자	690,169,495	554,017,157
4) 지급내부자금이자	297,293,332	379,717,052
2.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37,905,358,105	57,409,136,984
1)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1,398,821,829	256,935,891
2)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3,307,027,813	8,075,423,655
3)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0,975,133,155	18,738,732,493
4)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22,224,375,308	30,338,044,945
3.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2,330,173,354	2,370,928,249
1) 대손상각비	2,330,173,354	2,370,928,249
4. 기타수수료비용	165,151,904	186,925,668
5. 경제매출원가	961,796,175,996	818,512,294,121
1) 상품매출원가	955,512,653,920	814,377,782,608
2) 제품매출원가	1,203,698,449	913,533,022
3) 이용가공비용	5,079,823,627	3,220,978,491
6. 경제구판비용	34,447,537,432	39,452,704,390
7. 책임준비금전입액	81,965,737,099	121,578,291,841
8. 비상위험준비금전입액	0	167,970,153
9. 지급공제금	830,527,063,252	776,561,677,692
10. 재산관리비	232,927,441	124,710,801
11. 할인료	962,184,237	1,164,301,406
12. 재보험비용	42,744,156,205	42,932,804,391
13. 공제기금전입액	19,430,000,000	11,700,000,000
14. 양식기금전입액	720,000,000	1,120,000,000
15. 안전기금전입액	335,000,000	221,000,000
16. 무형자산상각비	1,505,187,721	863,511,486
17. 구상비용	0	28,155,469
18. 지도사업비용	27,160,268,084	27,397,247,370
1) 조직강화비	2,646,347,349	4,586,691,741
2) 생산지도비	5,220,683,079	4,753,400,785
3) 교육훈련비	2,367,120,708	2,314,177,308
4) 조사연구비	1,315,844,884	1,611,564,506
5) 선전계몽비	4,933,825,226	4,567,403,251
6) 어로통신비	10,676,446,838	9,564,009,779
III. 영 업 총 이 익	252,469,542,012	218,011,625,651
IV. 판 매 비 와 관 리 비	173,945,412,979	173,629,540,299
(이연신계약비)	-15,324,289,005	-18,345,112,895
1. 인건비	68,848,642,177	68,078,754,783
2. 퇴직급여	13,978,054,116	15,956,897,342
3. 경비	57,763,250,148	55,994,470,190
4. 신계약비	27,667,892,215	29,812,878,434
5. 신계약비상각비	18,607,762,521	19,852,794,576
6. 교육지원사업비	2,404,100,807	2,278,857,869
V. 영 업 이 익	78,524,129,033	44,382,085,352
VI. 영 업 외 수 익	50,626,720,182	54,571,653,323

과 목	제60(당)기	제59(전)기
1. 유형자산처분이익	1,212,221,929	2,110,449,201
2. 수입임대료	20,185,494,685	20,570,109,997
3. 수입보조금	1,433,689,665	1,537,700,686
4. 이자수익	7,559,725,660	5,834,099,484
1) 선급금이자	3,153,066,126	3,392,982,950
2) 지체상금이자	437,172,548	462,280,917
3) 예치금이자	1,382,699,408	1,978,833,341
4) 만기보유증권이자	215	2,276
5) 대여금이자	2,586,787,363	60,167,708
5. 지분법이익	1,510,037,965	5,213,251,462
6. 휴면공제충당금환입액	613,808,020	0
6. 위탁수수료등	7,286,836,920	6,788,167,830
7. 외환차익	53,433,543	53,362,470
8. 외화환산이익	2,735,930	3,819,274
9. 대손충당금환입액	131,008,900	797,320,485
10. 기타영업외수익	10,578,476,968	11,594,888,059
11. 수입분담금	59,249,997	8,316,667
VII. 영 업 외 비 용	89,649,676,101	64,160,634,581
1. 유형자산처분손실	276,189,438	336,125,402
2. 기부금	135,510,290	162,237,400
3. 외환차손	38,704,246	85,687,699
4. 외화환산손실	2,487,673	3,881,604
5. 지분법손실	1,360,415,666	1,063,348,846
6. 이자비용	19,815,541,371	19,984,408,537
1) 차입금이자	1,764,909,653	1,985,643,278
2) 수산금융채권이자	18,050,631,718	17,998,765,259
7. 휴면공제충당금전입액	0	534,330,859
8. 대손상각비	525,337,949	30,526,000
9. 공제복지사업비	18,020,000	21,420,000
10. 특별유보금전입액	55,184,022,237	40,940,000,000
11. 기타충당부채전입액	11,223,385,235	0
12. 기타영업외비용	1,070,061,996	998,668,234
VIII. 법 인 세 비 용 차 감 전 순 이 익	39,501,173,114	34,793,104,094
IX. 법 인 세 비 용	7,643,797,277	4,682,912,803
X. 당 기 순 이 익	31,857,375,837	30,110,191,291

09. 수협은행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6(당)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5(전)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협은행

(단위 : 원)

	과목	제6(당)기	제5(전)기
	(자 산)		
Ⅰ.	현금및예치금	1,529,752,662,036	1,596,019,969,602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63,892,943,886	459,257,019,687
Ⅲ.	파생상품자산	43,939,261,893	83,286,136,659
Ⅳ.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금융자산	2,814,647,737,007	2,419,662,419,974
Ⅴ.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38,518,562,983,015	35,703,647,998,489
Ⅵ.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2,525,178,309,834	2,148,639,830,964
Ⅶ.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1,220,100,063,499	709,817,978,155
Ⅷ.	종속기업투자	8,941,900,000	8,941,900,000
Ⅸ.	유형자산	132,711,106,143	139,076,411,868
Ⅹ.	투자부동산	17,733,821,206	18,132,286,755
Ⅺ.	무형자산	50,969,075,101	52,166,896,911
Ⅻ.	이연법인세자산	50,303,820,335	54,502,551,052
XIII.	당기법인세자산	1,062,706,080	1,282,590,850
XIV.	기타자산	2,697,793,133	4,073,666,174
	자 산 총 계	47,180,494,183,168	43,398,507,657,140
	(부 채)		
Ⅰ.	예수부채	38,737,747,611,815	34,453,105,104,724
Ⅱ.	파생상품부채	29,523,332,497	58,950,090,000
Ⅲ.	차입부채	1,275,430,238,591	1,573,972,059,829
Ⅳ.	발행사채	2,567,088,139,339	3,159,673,618,460
Ⅴ.	기타금융부채	857,843,179,618	705,439,080,767
Ⅵ.	충당부채	22,334,001,061	25,912,796,621
Ⅶ.	순확정급여부채	155,595,656,131	156,153,573,198
Ⅷ.	당기법인세부채	37,402,739,900	25,376,651,813
Ⅸ.	기타부채	14,597,979,078	13,673,871,685
	부 채 총 계	43,697,562,878,030	40,172,256,847,097
	(자 본)		
Ⅰ.	자본금	723,753,590,000	691,876,795,000
Ⅱ.	신종자본증권	598,648,440,000	598,648,440,000
Ⅲ.	자본잉여금	1,293,246,613,241	1,225,283,020,851
Ⅳ.	이익잉여금	874,801,335,325	711,873,686,355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518,673,428)	(1,431,132,163)
	자 본 총 계	3,482,931,305,138	3,226,250,810,043
	부채와자본총계	47,180,494,183,168	43,398,507,657,140
	<각주사항>		
	확정지급보증	180,953,061,340	177,459,832,587
	미확정지급보증	243,931,396,588	207,193,654,858
	약정	7,070,004,010,077	7,336,746,416,509
	배서어음	65,819,391,211	22,501,938,383
	파생금융상품거래	3,895,191,248,671	4,106,308,203,409
	대손상각채권	353,105,176,621	330,569,165,964

연결재무상태표

제6(당)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5(전)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협은행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목	제6(당)기	제5(전)기
	(자 산)		
Ⅰ.	현금및예치금	1,581,346,453,736	1,622,347,291,563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71,789,442,951	481,212,830,442
Ⅲ.	파생상품자산	43,939,261,893	83,286,136,659
Ⅳ.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814,647,737,007	2,419,662,419,974
Ⅴ.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38,520,803,313,063	35,724,018,568,424
Ⅵ.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2,525,178,309,834	2,148,639,830,964
Ⅶ.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1,219,945,740,423	709,654,225,839
Ⅷ.	유형자산	133,017,446,070	139,556,216,968
Ⅸ.	투자부동산	17,733,821,206	18,132,286,755
Ⅹ.	무형자산	51,092,835,163	52,374,092,513
Ⅺ.	이연법인세자산	51,834,323,900	55,555,795,566
Ⅻ.	당기법인세자산	1,062,706,080	1,282,590,850
XIII.	기타자산	2,719,283,627	4,093,175,391
	자 산 총 계	47,235,110,674,953	43,459,815,461,908
	(부 채)		
Ⅰ.	예수부채	38,784,658,718,650	34,501,060,504,795
Ⅱ.	파생상품부채	29,523,332,497	58,950,090,000
Ⅲ.	차입부채	1,275,430,238,591	1,573,972,059,829
Ⅳ.	발행사채	2,567,310,139,339	3,159,895,618,460
Ⅴ.	기타금융부채	864,995,827,563	716,844,787,992
Ⅵ.	충당부채	22,334,001,061	25,912,796,621
Ⅶ.	순확정급여부채	155,595,656,131	156,153,573,198
Ⅷ.	이연법인세부채	-	34,336,225
Ⅸ.	당기법인세부채	37,402,739,900	25,376,651,813
Ⅹ.	기타부채	14,598,220,531	13,673,871,685
	부 채 총 계	43,751,848,874,263	40,231,874,290,618
	(자 본)		
Ⅰ.	자본금	723,753,590,000	691,876,795,000
Ⅱ.	신종자본증권	598,648,440,000	598,648,440,000
Ⅲ.	자본잉여금	1,294,897,108,648	1,226,933,516,258
Ⅳ.	이익잉여금	874,308,191,150	711,467,777,962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345,529,108)	(985,355,930)
	자 본 총 계	3,483,261,800,690	3,227,941,171,290
	부채와자본총계	47,235,110,674,953	43,459,815,461,908
	<각 주 사 항>		
	확정지급보증	180,953,061,340	177,459,832,587
	미확정지급보증	243,931,396,588	207,193,654,858
	약정	7,070,004,010,077	7,336,746,416,509
	배서어음	65,819,391,211	22,501,938,383
	파생금융상품거래	3,895,191,248,671	4,106,308,203,409
	대손상각채권	348,296,690,971	330,569,165,964

포괄손익계산서

| 제6(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제5(전)기
2020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수협은행

(단위 : 원)

과목	제6(당)기	제5(전)기
Ⅰ. 순이자손익	748,886,033,855	646,793,112,783
1. 이자수익	1,176,549,672,226	1,189,858,490,200
2. 이자비용	427,663,638,371	543,065,377,417
Ⅱ 순수수료손익	20,553,076,410	29,255,155,048
1. 수수료수익	41,941,506,505	49,733,826,147
2. 수수료비용	21,388,430,095	20,478,671,099
Ⅲ.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808,743,490	7,133,182,82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1,557,613,314	15,251,719,343
Ⅴ. 기타영업손익	(79,360,284,665)	(77,182,617,187)
Ⅵ. 판매비와관리비	(320,092,867,670)	(297,899,370,786)
Ⅶ. 충당금 및 충당부채순전입액	(56,041,752,414)	(55,290,425,949)
Ⅷ. 영업이익	316,310,562,320	268,060,756,073
Ⅸ. 기타영업외손익	(31,659,898,490)	(34,459,080,744)
1. 기타영업외수익	10,275,675,203	8,482,905,569
2. 기타영업외비용	(41,935,573,693)	(42,941,986,313)
Ⅹ.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84,650,663,830	233,601,675,329
Ⅺ. 법인세비용	63,022,459,305	51,611,173,150
Ⅻ. 당기순이익	221,628,204,525	181,990,502,179
XIII. 기타포괄이익(손실)	(6,087,541,265)	(124,894,996)
XIV. 당기총포괄이익	215,540,663,260	181,865,607,183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제6(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제5(전)기
2020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수협은행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목	제6(당)기	제5(전)기
Ⅰ. 순이자손익	750,152,573,547	642,763,617,819
1. 이자수익	1,178,314,990,048	1,191,522,255,939
2. 이자비용	428,162,416,501	548,758,638,120
Ⅱ 순수수료손익	20,481,475,966	28,993,910,098
1. 수수료수익	41,893,658,407	49,745,615,787
2. 수수료비용	21,412,182,441	20,751,705,689
Ⅲ.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808,750,084	7,133,078,74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1,557,613,314	15,251,719,343
Ⅴ. 기타영업손익	(79,808,746,815)	(72,387,120,490)
Ⅵ. 판매비와관리비	(321,081,602,209)	(298,939,264,187)
Ⅶ. 충당금 및 충당부채순전입액	(56,057,067,332)	(55,313,009,156)
Ⅷ. 영업이익	316,052,996,555	267,502,932,176
Ⅸ. 기타영업외손익	(31,593,199,052)	(34,373,948,420)
1. 기타영업외수익	10,275,675,203	8,482,905,569
2. 기타영업외비용	(41,868,874,255)	(42,856,853,989)
Ⅹ.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84,459,797,503	233,128,983,756
Ⅺ. 법인세비용	62,918,826,760	51,570,592,160
Ⅻ. 당기순이익	221,540,970,743	181,558,391,596
XIII. 기타포괄이익(손실)	(7,360,173,178)	183,819,457
XIV. 당기총포괄이익	214,180,797,565	181,742,211,053

우리 바다, 우리 수협

수협 60년사

1962 —— 2022

편찬위원회 및 편찬실무팀

편찬위원장

서봉춘 수협중앙회 기획부대표

편찬위원

우동근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
신황용 수협중앙회 기획조정실장
박 웅 수협중앙회 홍보실장
배현두 수협중앙회 회원지원부장
김성훈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장
도문옥 수협중앙회 전략기획부장

편찬실무팀

박광범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경영조사실장
최 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과장

집 필

신영태 사단법인 한국수산어촌연구원 원장
최정윤 前 부경대 교수
박일곤 前 수협은행 부행장
전석산 남서울대학교 연구교수

도움 주신 분들

기 획 정재우
디자인 류미연, 김은영, 김선경, 고주희, 한예담

우리 바다, 우리 수협 **수협 60년사**

1962 — 2022

발 행 일 2022년 07월 08일 인쇄
2022년 08월 03일 발행

발 행 인 수협중앙회장 임준택
편 집 인 수산경제연구원장 우동근
발 행 처 수협중앙회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02-2240-2114
www.suhyup.co.kr

기획·디자인·제작 경성문화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11 퍼스텍빌딩 1, 4, 5, 7, 8, 9층
02-786-2999

※「수협 60년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인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협중앙회의 인용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